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

고 용 보 험 기 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임 금 채 권 보 장 기 금
근 로 복 지 진 흥 기 금

2026. 9.

고 용 노 동 부

- 순 서 -

Ⅰ. 고용보험기금 ····· 1

(1) 고용유지지원금(1045-350) ····· 3
(2) 고용창출장려금(1046-350) ····· 12
(3) 고용서비스모니터링(1051-351) ····· 28
(4) 고용전산망관리(정보화)(1054-510) ····· 45
(5) 청년내일채움공제(고보)(1061-350) ····· 62
(6) 고용보험징수위탁지원(1083-350) ····· 70
(7) 고용보험적용부과지원(1083-351) ····· 77
(8) 고용보험사업 부정수급방지(1083-357) ····· 90
(9) 내일배움카드(고보)(1151-352) ····· 95
(10) 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1152-350) ····· 105
(11)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1153-350) ····· 117
(12) 산업현장일학습병행지원(1154-356) ····· 126
(13) 기능인력양성및장비확충(폴리텍)(1155-350) ····· 134
(14) 직업훈련생계비대부(융자)(1160-352) ····· 162
(15) 구직급여(1280-350) ····· 168
(16) 조기재취업수당(1280-351) ····· 174
(17) 자영업자 실업급여(1292-350) ····· 179
(18) 실업크레딧지원(고보)(1293-350) ····· 185
(19) 고용안정장려금(1345-350) ····· 191
(20) 직장어린이집지원(1345-351) ····· 203
(21) 모성보호육아지원(1345-358) ····· 214
(22) 모성보호육아지원 사각지대 해소(고보)(1345-361) ····· 229
(23) 고령자고용안정지원금(1347-350) ····· 233
(24) 고용보험적용부과 정보시스템 구축(정보화)(1083-355) ····· 243
(25) 근로복지공단 인건비(7076-115) ····· 251
(26) 고용보험운영 인건비(7076-119) ····· 256
(27) 기금관리비 기타경비(7076-201) ····· 261
(28) 근로복지공단 기타경비(7076-210) ····· 266
(29) 근로복지공단 청사임차보증금지원(7076-213) ····· 271
(30) 고용안정사업운영(7076-220) ····· 276
(31) 고용서비스선진화지원(7076-222) ····· 281

(32) 실업급여운영 기타경비(7076-223) ····· 286
(33) 실업급여심사·재심사 기타경비(7076-225) ····· 291
(34) 고용보험운영 기타경비(7076-226) ····· 298
(35) 고용센터자체청사관리비(7076-228) ····· 303
(36) 지역고용 정책협의회 운영지원(7076-234) ····· 309
(37) 직업능력개발사업운영(7276-240) ····· 313
(38) 근로자능력개발사업운영(7076-241) ····· 318
(39) 모성보호사업운영(7076-250) ····· 323
(40) 고령자고용촉진캠페인(7076-252) ····· 328
(41) 고용보험연구용역(7077-271) ····· 333
(42) 한국직업능력연구원조사연구지원(7077-272) ····· 337
(43)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제도 홍보(7078-280) ····· 342
(44) 자영업자 고용보험지원(7078-281) ····· 347
(45)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수이자상환(9201-840) ····· 352
(46)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탁(9001-840) ····· 356
(47) 한국은행예치(9710-970) ····· 360
(48) 비통화금융기관예치(9710-972) ····· 364

Ⅱ.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 369
(1) 산재보험급여(4051-350) ····· 371
(2) 산재노동자 일터복귀 종합지원(4052-350) ····· 378
(3) 연구기관 및 케어센터 지원(4052-356) ····· 390
(4) 산재근로자 요양관리(4053-351) ····· 399
(5) 산재병원지원(4054-350) ····· 413
(6) 산재보험 시설건립(4055-350) ····· 422
(7) 산재보험정보시스템 구축(정보화)(4057-350) ····· 429
(8) 산재보험 징수위탁지원(4058-350) ····· 437
(9) 산재보험 적용부과지원(4058-351) ····· 444
(10)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4060-350) ····· 457
(11) 클린사업장조성지원(4151-350) ····· 464
(12) 산재예방시설융자(융자)(4151-351) ····· 480
(13) 업종별재해예방(4152-350) ····· 488
(14)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4152-351) ····· 505
(15) 유해작업환경개선(4152-352) ····· 516
(16) 근로자건강보호(4152-353) ····· 531

(17)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4152-355) ····· 552
(18) 자율안전관리체계 구축(4152-356) ····· 559
(19) 안전보건문화정착(4154-350) ····· 572
(20) 산재예방시설건립(4154-351) ····· 585
(21) 안전한 일터 신고포상금(4154-357) ····· 596
(22) 안전보건 연구개발 및 국제협력(4155-350) ····· 601
(23) 안전보건관리정보시스템 운영(정보화)(4155-351) ····· 613
(24) 미래환경변화대응 산업안전보건 연구개발(R&D)(4155-361) ····· 621
(25) 근로자 보호 기술개발 및 사업장 안전 실증(R&D)(4155-362) ····· 628
(26) 기금관리비 인건비(7084-101) ····· 633
(27) 산재보험운영 인건비(7084-102) ····· 637
(28) 산재예방운영 인건비(7084-103) ····· 641
(29) 근로복지공단 인건비(7084-104) ····· 646
(30)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건비(7084-105) ····· 651
(31) 기금운영관리(7084-106) ····· 657
(32) 기금관리비 기타경비(7084-201) ····· 662
(33) 산재보험운영 기타경비(7084-202) ····· 667
(34) 산재예방운영 기타경비(7084-203) ····· 672
(35) 근로복지공단 기관운영경비(7084-204) ····· 677
(3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기관운영경비(7084-205) ····· 682
(37) 근로복지공단 청사임차(7084-206) ····· 688
(38)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청사임차(7084-207) ····· 693
(39) 산재보험 적용징수보상(7084-208) ····· 698
(40) 산재보험 및 예방 연구개발(7085-200) ····· 703
(41)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탁(9005-840) ····· 707
(42) 비통화금융기관예치(9705-972) ····· 711

Ⅲ.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 715

(1) 장애인고용장려금(1452-303) ····· 717
(2) 장애인고용관리지원(1452-306) ····· 726
(3) 장애인취업지원(1452-311) ····· 737
(4)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지원(1452-315) ····· 749
(5) 최저임금 적용제외 근로장애인 전환지원(1452-317) ····· 758
(6) 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비용 지원(1452-318) ····· 765
(7)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1453-304) ····· 772

(8) 보조공학기기지원(1453-305) ····· 780
(9) 장애인직업능력개발(1457-314) ····· 787
(10) 장애인기능경기대회(1457-319) ····· 797
(11) 장애인고용연구(1459-324) ····· 805
(12) 장애인인식개선지원(1459-327) ····· 815
(13) 지역주도권리중심중증장애인참여공공서비스개선사업(1459-328) ····· 824
(14) 장애인고용증진융자(1462-330) ····· 828
(15) 장애인고용정보화(정보화)(1466-240) ····· 835
(16) 기금관리비(인건비)(7079-110) ····· 842
(17) 장애인고용공단 인건비(7079-120) ····· 846
(18) 기금관리비(기타경비)(7079-210) ····· 851
(19) 장애인고용공단 사업운영비(7079-220) ····· 856
(20) 장애인고용공단 청사임차보증금(7079-230) ····· 861
(21) 장애인고용공단 대외협력(7079-250) ····· 866
(22)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탁(9006-840) ····· 871
(23) 한국은행예치(9702-971) ····· 876
(24) 비통화금융기관예치(9702-973) ····· 881

Ⅳ. 임금채권보장기금 ····· 887
(1) 대지급금 지급(3051-300) ····· 889
(2) 무료법률구조지원(3052-302) ····· 917
(3) 체불청산지원 융자(융자)(3054-304) ····· 927
(4) 임금채권정보화경비(정보화)(3055-301) ····· 938
(5) 기금관리비(인건비)(7082-101) ····· 943
(6) 사업운영비(제도운영인건비)(7082-102) ····· 947
(7) 사업운영비(공단인건비)(7082-103) ····· 951
(8) 기금관리비(기타경비)(7082-201) ····· 956
(9) 사업운영비(제도운영기타경비)(7082-202) ····· 960
(10) 사업운영비(공단기타경비)(7082-203) ····· 965
(11)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수이자상환(9202-840) ····· 970
(12) 한국은행예치(9704-971) ····· 974
(13) 비통화금융기관예치(9704-973) ····· 978

Ⅴ. 근로복지진흥기금 ····· 983
(1) 근로자복지지원(3061-301) ····· 985
(2) 퇴직연금사업운영(3061-318) ····· 995

(3) 근로복지기금지원(3061-322) ····· 1005
(4) 근복기금(중소계정) 정보화경비(정보화)(3061-325) ····· 1011
(5) 근로복지정보시스템(정보화)(3061-500) ····· 1016
(6) 생활안정자금(융자)(3062-306) ····· 1024
(7) 근복기금(신용계정) 정보화경비(정보화)(3063-326) ····· 1036
(8) 신용보증대위변제 (3064-308) ····· 1040
(9) 기금관리비(인건비) (7081-101) ····· 1048
(10) 사업운영비(신용보증인건비) (7081-102) ····· 1052
(11) 기금관리비(기타경비) (7081-201) ····· 1056
(12) 기금관리비(법인세) (7081-202) ····· 1061
(13) 사업운영비(근로자생활안정대부) (7081-204) ····· 1065
(14) 사업운영비(근로자휴양시설지원)(7081-205) ····· 1071
(15) 사업운영비(신용보증기타경비) (7081-209) ····· 1076
(16) 복권기금전출(8999-841) ····· 1081
(17)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탁(9005-840) ····· 1085
(18)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탁(9005-841) ····· 1089
(19) 신용보증사업계정 전출(9301-860) ····· 1093
(20) 통화금융기관예치(9713-970) ····· 1097
(21) 통화금융기관예치(9713-971) ····· 1101
(22) 비통화금융기관예치(9713-977) ····· 1105
(23) 비통화금융기관예치(9713-978) ····· 1109
(24) 비통화금융기관예치(9713-979) ····· 1113

Ⅰ. 고용보험기금

사 업 명
(1) 고용유지지원금(1045-350)

1. 사업 총괄 정보

1) 사업 기본 정보

(1-1) 일반 정보

소관	실·국	과·팀	기금	계정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	기업일자리지원과	고용보험기금	-

(1-2) 코드·명칭 정보

구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080	08D	1000	1045	350
명칭	사회복지	고용	고용창출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

2)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N	Y	N	N	N	N

3)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Y	N	N	N	N	-	-

4) 기능별(내역사업별)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내역사업명	소관	사업시행주체
고용유지지원금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 기업일자리지원과	직접수행
고용유지자금융자 채권관리비용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 기업일자리지원과	근로복지공단

2. 지출계획 총괄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사업명	2025년 결산액	2026년 당초계획액 (A)	2026년 수정계획액	2027년 요구액	2027년 정부안액 (B)	증감액 (B-A)	증감률 (B-A) /A×100
고용유지지원금	71,692	70,225	88,784	59,691	59,691	△10,534	△15.0

1)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계획액 (수정)	2025년 계획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계획액 (수정)	2026년 계획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81,368	81,368	71,692	-	9,676	88,784	88,784	34,377	59,691
·고용유지지원금	81,318	81,318	71,679	-	9,639	88,764	88,764	34,359	59,671
- 유급 고용유지조치	80,270	71,190	71,190	-	9,080	87,248	87,248	34,306	59,165
- 무급 고용유지조치	1,048	1,048	489	-	559	1,516	1,516	53	506
·고용유지자금융자 채권관리비용	50	50	13	-	37	20	20	18	20

2) 비목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계획액 (수정)	2025년 계획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계획액 (수정)	2026년 계획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81,368	81,368	71,692	-	9,676	88,784	88,784	34,377	59,691
·일반용역비(210-01)	50	50	13	-	37	20	20	18	20
·보험금(320-04)	81,318	81,318	71,679	-	9,639	88,764	88,764	34,359	59,671

3. 사업 설명

1) 사업목적·내용

(1-1) 고용유지지원금

사업목적	사업주의 고용유지조치를 지원하여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기여
사업내용	경기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노동자를 고용조정하지 않고 휴업 등을 통해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수당 등 금품의 일부를 지원

(1-2) 고용유지자금융자 채권관리비용

사업목적	고용유지자금융자('20.7~'21.12) 수혜 사업주 대상 융자금 채권관리를 위한 소요 비용 반영
사업내용	고용유지자금융자 미상환 채권 관리

2) 사업개요

(2-1)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사업근거	○ 고용유지지원금 - 고용보험법 제21조(고용조정의 지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고용조정의 지원내용 등), 제19조(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대상), 제20조(고용유지조치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신고), 제20조의2(고용유지조치계획 위반에 대한 지원제한), 제21조(고용유지지원금의 금액 등), 제21조의2(고용안정 조치에 따른 피보험자의 금품감소 수준), 제21조의3(고용안정 조치에 따른 피보험자 지원요건 등) ○ 고용유지자금융자 채권관리비용 - 고용보험법 제25조(고용안정 및 취업촉진)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고용안정과 취업의 촉진), 제37조의3(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고용유지 비용의 대부)
추진경위	○ 고용유지지원금 - 최초 사업 시작년도: 1995년 - 경기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매출액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노동자를 퇴직시키지 않고 계속 고용할 경우 지원함으로써 노동자의 고용안정 도모 * 『일자리만들기 사회협약』('04.2.10) 제2장 2-4-가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합의('09.2.23) 1-2-(2)-나 - 무급 고용유지지원은 기존 지원방식이 휴업수당 등 금품을 지급한 사업주 지원방식으로 설계되어, 만약 사업주가 경영난 악화로 무급(또는 아주 낮은 수당)으로 고용을 유지(휴업·휴직)하려고 하는 경우 노동자가 생계불안으로 휴업·휴직에 합의가 어렵고 동 사업 지원도 안 되어, 고용안정장치로서 효과가 제한적임에 따라 노동자의 생계안정과 노동시장 안정성을 위해 마련 * 무급 고용유지조치 시 노동자를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13.1.22.)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13.4.12.) 개정 ○ 고용유지자금융자 채권관리비용 - 최초 사업 시작년도: 2020년(고용유지자금 융자사업) - 고용유지자금융자사업('20.7.30.~'21.12.31.)* 종료에 따른 채권관리비용 편성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일시적 경영난을 겪고 있는 고용유지조치 사업주에게 고용유지지원금과 연계하여 휴업·휴직수당을 저리로 대부('20.4.22. 관계부처 합동 고용안정특별대책)

(2-2) 사업규모

○ 사업기간 : 1995년~계속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계획액 기준, 기금운용계획변경 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정부안
사업비	197,374	71,372	81,368	88,784	59,691

(2-3)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고용유지자금융자 채권관리는 근로복지공단 위탁)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 (고용유지자금융자 채권관리는 근로복지공단 위탁)

○ 사업 수혜자 : 고용보험가입 사업주 및 노동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3) 기능별(내역사업별) 산출 내역

(3-1) 내역사업별 세부 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계획액(수정)(A)	2027년 정부안액(B)	증감 (B-A)
합 계	88,784	59,691	△29,093
고용유지지원금	88,764	59,671	△29,093
고용유지자금융자 채권관리비용	20	20	-

○ **고용유지지원금 (2026년) 88,764 → (2027년 정부안) 59,671백만원, △32.8%**

- (설명)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감액' 등급 등을 고려하여 전년 대비 32.8% 감액
- (산출)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59,165백만원(36,902명×747천원×2.15개월)
  무급 고용유지지원금: 506백만원(94명×2,671천원×2.02개월)

○ **고용유지자금융자 채권관리비용 (2026년) 20 → (2027년 정부안) 20백만원, 전년동**

- (설명) 고용유지자금융자('20.7.~'21.12.) 상환 기간 종료가 '24.8월 이후 도래됨에 따라 미상환 사업장에 대한 채권관리 소요비용 반영
- (산출) 소송관련 비용 등 20백만원

4) 사업효과

(4-1) 최근 5년(2023년~2027년)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 성과지표: 고용유지율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목표	84.4%	86.5%	87.7%	86.5%	86.8%
실적	86.9%	86.1%	87.8%	-	-
달성도	103.0%	99.5%	100.1%	-	-

- **측정산식 :** (6개월 경과 시점의 피보험자격 유지자)÷ (지원금 수급 사업장의 지원 종료자)
- **목표치 설정근거 :** 최근 3년간 평균실적 및 증감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
- **자료수집방법/출처 :** 고용행정전산망 통계/한국고용정보원

(4-2) 성과지표 이외의 최근 4년(2023년~2026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연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3년	6,204개 사업장, 61,176명 지원
2024년	3,727개 사업장, 44,842명 지원
2025년	3,065개 사업장, 32,797명 지원
2026년(7월말)	1,883개 사업장, 19,707명 지원

(4-3) 향후(2027년 이후) 기대효과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안정 조치를 취하는 경우 지원하여 '27년 36,996명의 재직노동자 고용안정에 기여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고용유지지원금>

○ 사업주는 매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24를 통해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신고한 후 계획에 따라 고용유지조치를 실시*

○ 관할 고용센터는 사업주의 고용유지조치계획을 검토·승인*, 사실관계 확인 후 지급요건 충족 시 지원금을 지급

* 무급고용유지조치의 경우 계획서를 관할 고용센터에서 승인한 후 승인된 계획에 따라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 실시

<고용유지자금융자 채권관리>

○ 미상환 사업장에 납부 요청 및 독촉

○ 필요시 가압류 등 보전조치, 집행권원 확보 및 강제집행 절차 진행

8) 최근 3년간(2024년~2026년)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8-1) 정부 사업평가

구분	연도	주요내용
재정지원 일자리사업평가	2024년	○ 의견 : 개선필요 ○ 결과 : 예산 집행률이 64.3%로 저조, 현재 추진중인 제도 개선방안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노력 필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평가	2025년	○ 의견 : 양호 ○ 결과 : 예산 집행률이 크게 향상, 제도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재정지원 일자리사업평가	2026년	○ 의견 : 개선필요 ○ 결과 : 예산 집행률이 88.1%로 고용장려금 전체(98.0%) 평균보다 낮아 성과관리 강화 필요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	2026년	○ 의견 : 감액 ○ 결과 : 적정 수준으로 감액하여 사업을 실효성 있게 운영하는 방안 모색 필요

(8-2) 국회 지적사항

구분	연도	주요내용
예결위	2025년 (1차 추경)	○ 지적 : 연내 집행 가능성 제고 및 휴업과 휴직의 지원조건을 혼동하여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신청함으로써 부정수급 처분되지 않도록 신청 사업주를 대상으로 철저한 안내 교육 절차 준비 필요 ○ 조치 : 제도 이해 부족으로 인한 부정수급 처분 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중*, 지방관서를 통한 사업 설명도 병행 실시중 *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동영상 필수 시청 실시('23.7.13.~), 고용유지지원금 활용 안내서 제작·배포 및 홈페이지 게시('24.5.7.~)
기노위, 예결위	2026년 (1차 추경)	○ 지적 : 과거 추경으로 증액 후 불용 사례가 있고, 중동전쟁에 따라 고용 충격이 매우 유동적이므로 면밀한 상황 점검과 집행 추이 점검 필요 ○ 조치 : 중동전쟁으로 인해 원료 수급 애로를 겪고 있는 기초화학 제조업종 및 관련 지역을 중심으로 고용지표를 지속 모니터링, 고용충격 수준 및 파급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필요시 지원대상으로 적극 인정* * (근거법령)「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24조제1항제3호 해당 업종, 지역경제 상황의 악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사업의 사업주

(8-3) 감사원, 총리실, 기타(언론, 시민단체 등) 결과

구분	연도	주요내용
감사원	2025년	○ 지적 : 고용유지지원금과 모성보호급여 중복 수혜 의심 건을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반환명령 등의 조치를 할 것 ○ 조치 : 조사 대상 483건에 대한 조사 및 반환명령 등 조치 완료('25.11월), 고용유지지원금과 모성보호급여 지급대상기간과 중복시 경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자체 적발 방안 마련('25.9월)

4. 최근 4년간(2023년~2026년) 결산내역

1) 결산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연도	당초 계획액	수정 계획액 (A)	전년도 이월액	기금변경 증감액 등	계획 현액	집행액 (B)	집행률 (B/Ax100)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3년	197,374	197,374	-	-	197,374	126,956	64.3	-	70,418
2024년	71,372	71,372	-	-	71,372	70,126	98.3	-	1,246
2025년	70,255	81,368	-	11,113	81,368	71,692	88.1	-	9,676
2026년	70,225	88,784	-	18,559	88,784	34,377	38.7	해당없음	해당없음

2) 연도별 결산 주요사항

연도	유형	금액 (백만원)	사유
2023년	불용	70,418	'23년 경기·고용상황 호전으로 지원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불용액 70,418백만원 발생 * 예산상 지원인원 6.5만명 중 6.1만명(93.8%)을 지원했으나, 지원기간은 감소하여 예산액 대비 적게 집행
2025년	불용	9,676	미국 관세부과, 경기 불확실성 등에 따른 국내기업의 구조조정 가능성에 대비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관세협상 조기 타결 등으로 예상보다 기업의 신청이 저조하여 불용액 9,676백만원 발생

5. 기타 추가자료

(참고 1)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개요

(참고 2) 고용유지자금융자 채권관리비용 제도 개요

참고 1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개요

□ **(개요)**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등 **고용유지조치시 지원금을 지급**하여 노동자의 고용안정 지원

* 직전 6개월 평균 대비 매출액 15% 이상 감소 또는
직전 6개월 중 3개월씩의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 추세에 있는 경우 등

□ **(지원요건)** **고용유지조치 및 이후 1개월**까지의 **고용조정 제한의무** 이행,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신규채용 제한*** 등

* 단, 법령기준 충족을 위한 채용 등 신규 채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 가능

구분	실시 요건	지급하여야 하는 금품 수준
유급	피보험자별 월 소정근로시간 중 20% 이상 단축	고용유지조치 기간 **평균임금 70% 이상**의 금품 지급
무급	①사전 노동위원회 승인, ②30일 이상 실시, ③실시비율: ▲50% 이상 (5명~19명), ▲10명 이상 (20명~99명), ▲10% 이상 (100명~999명), ▲100명 이상 (1,000명 이상)	고용유지조치 기간 **평균임금 50% 미만**의 금품 지급 (금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포함)

□ **(지원내용)**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수당 등 금품의 일부를 지원

* 단, 무급의 경우 평균임금의 50% 내에서 결정된 금액을 대상 노동자에게 지급

구분	유급 고용유지조치 (사업주 지원)		무급 고용유지조치 (노동자 지원)	
	지원수준 (사업주 지급금품 기준)	지원한도(기간)	지원수준	지원한도(기간)
일반업종	• 우선지원 2/3 • 대규모 1/2 또는 2/3* * 단축률 50%이상	• 1일 68,100원 (연 180일)	• 평균임금의 50% 범위내에서 결정	• 1일 68,100원 (재직기간 중 최대 180일)
고용위기 선제대응 지역	• 우선지원 8/10 • 대규모 6/10 또는 7/10* * 단축률 50%이상	• 1일 68,100원 (연 180일)		
특별고용 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 우선지원 9/10 • 대규모 2/3 또는 3/4* * 단축률 50%이상	• 우선지원 1일 7만원 • 대규모 1일 68,100원 (연 180일)		

□ **(지원절차)**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	→	고용유지조치계획 승인 여부 결정 (무급만 해당)	→	고용유지조치 실시 (고용조정제한의무준수)	→	지원금 신청 (매월)	→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
사업주 → 고용센터		고용센터		사업주		사업주 → 고용센터		고용센터 → 사업주 또는 노동자

참고 2 고용유지자금융자 채권관리비용 제도 개요

□ **(추진배경) 자금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에 대해 **휴업·휴직수당을 저리**(低利)**로 대부**(고용유지비용 대부사업 '20.7.31.~'21.12.31.한시사업)

○ 고용유지조치 시행 후 지급되는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상환한 금액 外 **대부잔액에 대한 상환 관리** * 근로복지공단 위탁 수행

□ **(관리대상)** 대부잔액 **미상환 사업주**

□ **(법적근거)** 고용보험법 제25조제1항제3호, 동법 시행령 제35조제8호, 제37조의3, 제145조제2항제8호의3

○ 고용유지비용의 대부 규정(제2022-제84호)

□ **(융자상환)** 대부 잔여원금 1년 거치 후 대부 실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다음 달 15일 일시 상환, 연체이율 연 9%

* 총 대부잔액 **1억원 초과시** 근로복지공단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3년 이내 원금균등분할상환 선택 가능**

□ (관리절차)

대부	①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	➡	② 공단에 대부 신청서 접수	➡	③ 적격여부 확인	➡	④ 대부금액 확인
	⑤ 사업장 정보 확인	➡	⑥ 대부 결정 및 약정, 실행	➡	⑦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요청	➡	⑧ 대부 (미)지급 결정 통지
수납	① 사업장별 대부현황 관리	➡	② 이자통지서 발송	➡	③ 조기상환 수납조치	➡	④ 기타 관리
채권관리	**① 채권관리 거점기관 이관**	➡	**② 신용정보 관리**	➡	**③ 납부요청 및 독촉**	➡	**④ 재산조사**
	⑤ 가압류 등 보전조치	➡	**⑥ 집행권원 확보**	➡	**⑦ 배당요구 및 강제집행**	➡	**⑧ 관리정지 및 소멸정리**

사 업 명
(2) 고용창출장려금(1046-350)

1. 사업 총괄 정보

1) 사업 기본 정보

(1-1) 일반 정보

소관	실·국	과·팀	기금	계정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	기업일자리지원과	고용보험기금	-

(1-2) 코드·명칭 정보

구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080	08D	1000	1046	350
명칭	사회복지	고용	고용창출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창출장려금

2)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N	Y	N	N	N	N

3)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Y	N	N	N	N	-	-

4) 기능별(내역사업별)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내역사업명	소관	사업시행주체
고용촉진장려금 일자리함께하기 국내복귀기업 지원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 기업일자리지원과	직접수행
지역고용촉진지원금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 지역산업고용정책과	직접수행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 청년채용기반과	직접수행

2. 지출계획 총괄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사업명	2025년 결산액	2026년 당초계획액 (A)	2026년 수정계획액	2027년 요구액	2027년 정부안액 (B)	증감액 (B-A)	증감률 (B-A) /A×100
고용창출장려금	20,358	21,420	21,420	25,350	20,916	△504	△2.4

1)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계획액 (수정)	2025년 계획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계획액 (수정)	2026년 계획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26,003	26,003	20,358	-	5,645	21,420	21,420	11,203	20,916
·고용촉진장려금	22,997	22,997	18,353	-	4,644	20,654	20,654	10,888	18,353
·지역고용촉진지원금	-	-	-	-	-	-	-	-	1,920
·고용창출장려금(잔여사업비)	2,275	2,275	1,282	-	993	135	135	5	12
- 일자리 함께하기	573	573	149	-	424	-	-	-	-
- 국내복귀기업 지원	1,051	1,051	859	-	192	-	-	-	-
- 신중년적합직무 지원	651	651	274	-	377	-	-	-	-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	-	-	-	-	-	-	-	-
·운영비	731	731	723	-	8	631	631	310	631

2) 비목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계획액 (수정)	2025년 계획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계획액 (수정)	2026년 계획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26,003	26,003	20,358	-	5,645	21,420	21,420	11,203	20,916
·일반수용비(210-01)	569	569	565	-	4	482	482	264	482
·공공요금 및 제세(220-02)	17	17	17	-	-	9	9	2	9
·특근매식비(210-05)	41	41	39	-	2	41	41	14	41
·임차료(210-07)	9	9	9	-	-	9	9	-	9
·국내여비(220-01)	79	79	78	-	1	75	75	24	75
·사업추진비(240-01)	16	16	15	-	1	15	15	6	15
·기타보전금(310-04)	2,275	2,275	1,282	-	993	135	135	5	12
·보험금(320-04)	22,997	22,997	18,353	-	4,644	20,654	20,654	10,888	20,273

3. 사업 설명

1) 사업목적·내용

(1-1) 고용촉진장려금

사업목적	취업취약계층을 고용한 사업주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내용	취업프로그램 이수자,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가구주 등 취업취약계층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금 지급 * 신규고용 노동자 1인당 연간 360~720만원 지원(최대 2년)

(1-2)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사업목적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사업을 이전·신설·증설한 사업주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내용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사업 이전, 신설 또는 증설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 지급 * 해당 지역에 3개월 이상 거주한 구직자를 6개월 이상 채용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 지원(월 임금의 1/2, 대규모기업의 경우, 월 임금의 1/3)

(1-3) 고용창출장려금(잔여사업비)

사업목적	신규지원 종료사업*의 잔여사업비 * 일자리 함께하기, 국내복귀기업 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지원('24년 종료), 청년추가고용장려금('21년 종료)
사업내용	○ (일자리함께하기) 교대제 개편, 실근로시간단축을 도입하여 기존 노동자의 근로시간을 줄임으로써 실업자를 신규 고용해 노동자 수가 증가한 사업주에게 지원금 지급 ('24년 사업종료) * 증가 노동자 1인당 연간 480~960만원 지원(최대 2년) * 임금감소액 보전 노동자 1인당 연간 120~480만원 지원(최대 2년) ○ (국내복귀기업 지원) 산업부 장관이 지정한 국내복귀기업으로써 실업자를 신규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금 지급 ('24년 사업종료) * 증가 노동자 1인당 연간 360~720만원 지원(최대 2년) ○ (신중년적합직무 지원)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신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사업주에게 지원금 지급 ('24년 사업종료) * 신규고용 노동자 1인당 연간 480~960만원 지원(최대 1년)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로 고용한 중소·중견기업(5인 이상)에 인건비를 지원 ('21년 사업종료) * 추가 채용한 청년 1인당 年900만원 지원(월 75만원, 최대 3년간 2,700만원)

2) 사업개요

(2-1)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사업근거	○ (고용촉진장려금) - 고용보험법 제23조(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고용촉진장려금) ○ (지역고용촉진지원금) - 고용보험법 제22조(지역고용의 촉진)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지역고용촉진 지원금) ○ (일자리함께하기, 국내복귀기업 지원, 신중년적합직무 지원, 청년추가고용장려금) - 고용보험법 제20조(고용창출의 지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고용창출에 대한 지원)
추진경위	○ (고용촉진장려금) - '04년 제도 시행 후 그동안 각각 운영되고 있던 취약계층 고용촉진 지원제도들을 신규고용촉진장려금으로 통합하고 지원대상을 청년, 장애인까지 확대 - '11년부터는 제도개선을 통해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등록 한 사람으로써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 - '17년부터 취약계층 선별 지원 강화(취성패2유형 청·장년층 지원대상 제외 등) 등 제도개선, 고용창출장려금으로 통합 - '20년부터 취업지원 요구를 반영하여 지원대상에 취성패2유형 중장년층 및 일반고 특화과정 이수자 추가 - '20년~'21년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여건 악화에 대응한 특별고용촉진장려금 한시 운영 - '23년부터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종료 ○ (지역고용촉진지원금) - 대통령 업무보고('08.12.24): 경제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고용기회가 현저히 부족하거나 인력확보가 시급한 지역을 지역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지원 - 노사민정 합의문('09.2): 정부는 국내외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고용여건이 급격히 악화된 지역이 발생한 경우 해당 지역을 고용촉진개발지역으로 지정하여 지방정부 및 기업의 고용촉진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강구한다. - '14.8.25. 고시개정: '고용촉진특별구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명칭 변경 - '26.2.5. 고용위기 선제대응 지역까지 지원을 확대하는 고시 개정 - 27년부터 고용창출장려금 내역사업으로 통합·이관 ○ (일자리함께하기) - '11년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인 교대제, 실근로시간 단축제, 일자리 순환제 등을 도입한 사업장에서 노동자수가 증가하는 경우 인건비를 지원하는 '고용증가 노동자 인건비 지원' 제도 도입

	- '14년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를 도입하고 노동자수가 증가한 경우 설비투자비를 지원해주는 '설비투자비 지원', 고용확대를 위해 설비투자를 한 기업에 대한 융자지원인 '설비투자비 융자지원',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감소한 기존 노동자에게 사업주가 임금 보전을 해줄 경우 이를 지원하는 '임금감소 기존노동자 임금보전'이 추가 - '17년부터 고용창출장려금으로 통합 - '18년부터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주근로시간 단축제' 지원 유형 추가 - '22년부터 일자리 순환제, 주근로시간단축제 신규지원 종료 - '24년부터 사업 폐지에 따른 잔여사업비 편성 ○ (국내복귀기업 지원) - '11년 중소기업 및 지역 특화된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고용창출지원사업의 내역사업으로 신규 실시 - '17년부터 고용창출장려금으로 통합 - '18년부터 지원 유형 중 성장유망업종 지원, 지역특화사업 지원은 신규지원 종료, 국내복귀기업은 계속 지원 - '24년부터 사업 폐지에 따른 잔여사업비 편성 ○ (신중년적합직무 지원) - 제2차 고령자고용촉진 기본계획(2012-2016): 취업에 특히 애로를 겪는 구직자 지원 강화를 위해 기업 현장연수를 제공하여 재취업촉진 - '12년 현장연수사업인 「50+새일터적응지원사업」 시행 - '13년 인턴사업으로 개편·시행, '13년 공약사항 및 국정과제 선정 - '16년 사업명칭을 '장년고용지원금'으로 변경 - '17년부터 고용창출장려금으로 통합 - '18년부터 장년고용지원(구 장년인턴)은 신규지원은 종료, 지원 유형으로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실시 - '24년부터 사업 폐지에 따른 잔여사업비 편성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 '17년 하반기 추경예산에 반영('17.7.22, 48억원) → '17.8.17. 사업 시행 - '18.3.15. 「청년대책」을 반영하여 제도 개편 및 추경을 통해 물량 확대 - '21.5.31. 신규 신청 종료 - '27년부터 고용창출장려금 잔여사업비 내역사업으로 통합·이관

(2-2) 사업규모

○ 사업기간 : '17년 통합 ~ 계속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계획액 기준, 기금운용계획변경 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정부안
사업비	139,407	55,315	26,003	21,420	20,916

(2-3)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고용센터)

○ 사업 수혜자 :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 및 노동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3) 기능별(내역사업별) 산출 내역

(3-1) 내역사업별 세부 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계획액(수정)(A)	2027년 정부안액(B)	증감 (B-A)
합 계	21,420	20,916	△504
고용촉진장려금	20,654	18,353	△2,301
지역고용촉진지원금	해당없음	1,920	순증
고용창출장려금(잔여사업비)	135	12	△123
운영비	631	631	전년동

○ **고용촉진장려금 (2026년) 20,654 → (2027년) 18,353백만원, △11.1%**

- (설명) 최근 2년간 평균 지원인원에서 10% 감소분 반영한 지원인원 및 실집행단가 등 고려, '26년 대비 11.1% 감액
- (산출) 18,353백만원 = 3,990명 × 460만원

○ **지역고용촉진지원금 (2026년) 해당없음 → (2027년) 1,920백만원, 순증**

- (설명)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 확대·적용 고려하여 편성 (*'27년부터 통합·이관)
- (산출) 고용위기 선제대응 지정 6개 지역×신규 고용 목표 인원 40명×8백만원

○ **고용창출장려금(잔여사업비) (2026년) 135 → (2027년) 12백만원, △91.1%**

- (설명) 신규지원이 종료된 사업의 잔여 지원분 편성
- (산출) 일자리함께하기, 국내복귀기업 지원, 신중년적합직무 지원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①일자리 함께하기: 3백만원=증가노동자 인건비(1명×240만원)+임금감소액 보전(1명×48만원)
②국내복귀기업 지원: 2백만원 = 1명×180만원
③신중년적합직무 지원: 5백만원 = 1명 × 4,356천원
④청년추가고용장려금: 2백만원 = 20명 × 88천원 (*'27년부터 통합·이관)

○ **운영비 (2026년) 631 → (2027년) 631백만원, 전년동**

- (설명)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국내여비 등 편성(전년동)
- (산출) 일반수용비 482백만원, 공공요금 9백만원, 특근매식비 41백만원, 임차료 9백만원, 국내여비 75백만원, 업무추진비 15백만원

4) 사업효과

(4-1) 최근 5년(2023년~2027년)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 성과지표: 고용유지율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목표	81.3%	82.0%	84.8%	88.7%	84.5%
실적	83.9%	91.2%	92.2%	-	-
달성도	103.2%	111.2%	108.7%	-	-

- **측정산식 :** (1년 이상 고용유지자수/ 지원 인원수) × 100
- **목표치 설정근거 :** 최근 4년간 평균실적 및 증감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
- **자료수집방법/출처 :** 고용행정통합포털 통계/한국고용정보원

(4-2) 성과지표 이외의 최근 4년(2023년~2026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연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3년	○ 고용촉진장려금 9,805명 지원 ○ 일자리 함께하기 2,020명 지원 ○ 국내복귀기업 지원 808명 지원 ○ 신중년적합직무 지원 4,995명 지원 ○ 청년채용특별장려금 5,556명 지원
2024년	○ 고용촉진장려금 4,472명 지원 ○ 일자리 함께하기 1,413명 지원 ○ 국내복귀기업 지원 475명 지원 ○ 신중년적합직무 지원 1,881명 지원
2025년	○ 고용촉진장려금 4,001명 지원 ○ 일자리 함께하기 51명 지원 ○ 국내복귀기업 지원 167명 지원 ○ 신중년적합직무 지원 60명 지원
2026년(7월말)	○ 고용촉진장려금 2,752명 지원 ○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인원 없음 ○ 국내복귀기업 지원 지원인원 없음 ○ 신중년적합직무 지원 1명 지원

(4-3) 향후(2027년 이후) 기대효과

○ 취업취약계층 고용, 장년 고용,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 도입, 국내 복귀,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사업을 이전·신설·증설 등 구직자의 고용기회를 확대한 사업주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여 '27년 4,254명의 일자리 창출 지원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국내복귀기업 고용지원, 고용촉진장려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 2~4 생략>

1 사업계획 수립	⇨	2 사업참여 신청서(계획서 포함) 제출	⇨	3 사업참여 신청서(계획서 포함) 심사 및 승인	⇨	
고용노동부		사업주		고용센터		
4 심사결과 통보	⇨	5 지원 제도 도입 및 사업시행	⇨	6 장려금 지급 신청서 제출	⇨	
고용센터		사업주		사업주		
7 장려금 지급 및 지도 · 점검	⇨	8 사업평가 및 사후관리				
고용센터		고용노동부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지원>

1 고용위기지역 또는 고용위기 선제대응 지역 지정 고시	⇨	2 고시한 지역으로 사업 이전·신설·증설에 따른 지역고용계획 신고	⇨	3 지역고용계획 제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전·신설·증설을 완료하고 조업개시	⇨	
고용노동부		사업주		사업주		
4 조업시작신고서를 조업시작 후 1월 이내 고용센터 제출	⇨	5 해당 지역 3개월 이상 거주한 구직자를 6개월 이상 피보험자로 고용하고 지원금 신청	⇨	6 신청내용 검토 후 지원금 지급		
사업주		사업주		고용센터		

8) 최근 3년간(2024년~2026년)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8-1) 정부 사업평가

구분	연도	주요내용
재정지원 일자리사업평가	2024년	○ 의견 : 감액(고용촉진장려금) ○ 결과 : 운영의 적절성과 운영성과 측면에서 개선 요구 및 향후 중증장애인, 여성 가장 등의 취약계층이 제도의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도록 제도 다각화 방안 마련 필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평가	2025년	○ 의견 : 감액(고용촉진장려금) ○ 결과 :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 전국 확대 사업수요를 다각화 할 수 있는 방안 모색 필요 및 홍보 강화를 통한 운영의 내실화

구분	연도	주요내용
재정지원 일자리사업평가	2026년	○ 의견 : 개선필요(고용촉진장려금) ○ 결과 : 실수요에 기반한 적정 예산 편성을 추진하고, 지원요건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여 사업주의 제도 이해도 제고 필요

(8-2) 국회 지적사항

구분	연도	주요내용
기노위	2024년 ('23년 결산)	○ 지적 : 고용촉진장려금을 타 장려금 사업과 차별화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등 예산 집행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 필요 ○ 조치 : 지역별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취약계층 수요 다각화 * ('24년) 지역별 맞춤형 취업지원프로그램 운영 (5개 → 16개 관서 → 전국 확대) * ('25년) 중기부 희망리턴패키지 연계(폐업소상공인) * ('26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유형·중장년 경력지원제 연계
국정감사	2025년	○ 지적 : 임금체불 안전망 확충을 위하여 임금체불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장려금을 제한하는 방안 등 전면적 재구조화를 실시할 것 ○ 조치 : 기존 임금체불 명단공표 사업주에 한정되던 장려금 지원제한 대상을 상습체불사업주까지 확대하여,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고용장려금 지원 제한 *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 개정완료(시행일: '26.6.1.)

(8-3) 감사원, 총리실, 기타(언론, 시민단체 등) 결과: 해당없음

4. 최근 4년간(2023년~2026년) 결산내역

1) 결산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연도	당초 계획액	수정 계획액 (A)	전년도 이월액	기금변경 증감액 등	계획 현액	집행액 (B)	집행률 (B/Ax100)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3년	139,504	139,407	-	△97	139,407	103,562	74.3	-	35,845
2024년	48,277	55,315	-	7,038	55,315	37,451	67.7	-	17,864
2025년	26,003	26,003	-	-	26,003	20,358	78.3	-	5,645
2026년	21,420	21,420	-	-	21,420	11,203	52.3	해당없음	해당없음

2) 연도별 결산 주요사항

연도	유형	금액 (백만원)	사유
2023년	계획변경	△97	세대간 상생지원 사업 예산 부족으로 인한 기금운용계획 변경 (청년채용특별장려금 97백만원 감액)
2023년	불용	35,845	- (고용촉진장려금) ①인건비 등 고용비용 상승 등으로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유인 한계 발생, ②지원금액이 큰 고용장려금 선호 등으로 고용촉진장려금 수요 감소 -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주의 신규 고용창출 부담 및 제도의 복잡성으로 신규 지원수요 감소
2024년	계획변경	7,038	'24년 신규지원 종료 사업* 예산 부족으로 인한 기금운용계획 변경 * 일자리 함께하기, 국내복귀기업 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지원 - (증액) 일자리함께하기 455백만원, 국내복귀기업 지원 3,357백만원, 신중년 적합직무 지원 10,626백만원 - (감액) 고용촉진장려금 7,400백만원
2024년	불용	17,864	- (고용촉진장려금) 경제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유인 한계 발생으로 신규지원 수요 감소 - (신중년 적합직무 지원) 최근 3년간 집행추이 등을 고려해 잔여사업비를 편성했으나 '24년부터 신규지원 종료에 따라 실제 신청이 저조하여 불용 발생
2025년	불용	5,645	- (고용촉진장려금) 임금 상승, 경기 불황 등으로 사업장의 채용 여력 위축, 낮은 지원단가 등으로 인한 사업 수요 저조 - (일자리 함께하기, 신중년 적합직무 지원) 집행 추이 등을 고려하여 잔여사업비를 편성하였으나, '24년 신규지원 종료에 따라 실제 신청이 저조

5. 기타 추가자료

(참고 1) 고용촉진장려금 사업 개요

(참고 2)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사업 개요

(참고 3)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 개요

(참고 4)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개요

(참고 5) 신중년 적합직무 사업 개요

(참고 6)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 개요

참고 1 고용촉진장려금 사업 개요

□ 사업 개요

○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의 취업 촉진을 위해 취업 취약계층을 고용한 사업주 지원

□ 지원내용

○ **지원대상**: 모든 사업주(우선지원대상기업, 대규모 기업)

○ **지원요건**: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업취약계층 실업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

①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을 이수한 사람

②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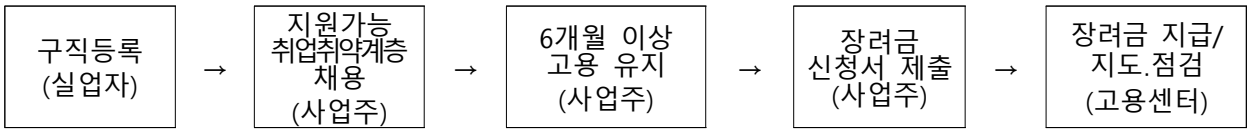
③ 가족 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실업자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취업대상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고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 **지원수준**: 신규 채용 노동자 1명당 월 30~60만원

○ **지급기간 및 주기**: 1년 범위내에서 6개월 단위로 지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이수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중 중증장애인 및 여성가장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은 최대 2년간 지원

□ 지원절차



참고 2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사업 개요

□ 사업개요

○ 지역 노동시장간 형평성 제고와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에서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

*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현황('26.2.5부터 적용): ▲여수('25.8.~'27.8.), ▲광주 광산구('25.8.~'26.8.), ▲서산·포항('25.11.~'26.11.), ▲울산 남구('26.1.~'27.1.), ▲광양('26.2.~'27.2.), ▲인천 제물포구('26.7.~'27.7.), ▲충남 당진('26.8.~'27.8.) / **현재 고용위기지역 지정 없음**

□ 지원내용

○ 지정지역으로 **사업을 이전·신설·증설**하는 사업주가 해당 지역 거주자를 6개월 이상 고용 시 **최대 1년간 월임금의 1/2* 지원**

* 대규모기업은 1/3, 1일 상한액 6.81만원

□ 지원요건(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4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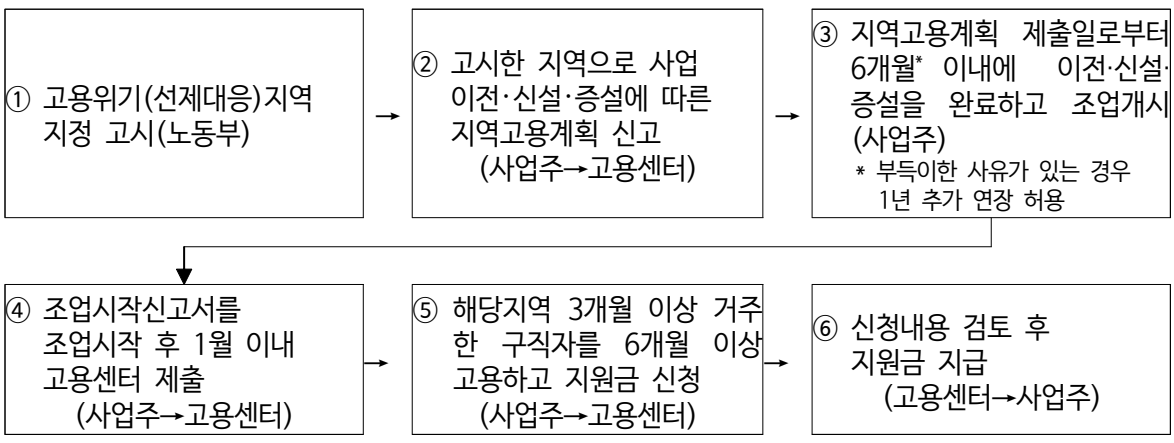
① 지정기간에 사업의 이전·신설·증설 및 고용에 관한 **지역고용계획을 세워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 및 시행**

② 지역고용계획 제출일부터 6개월 이내(필요시 1년 추가 연장 허용)에 이전·신설·증설된 사업의 조업이 시작

* 이전·신설·증설은 원칙적으로 기계·장비의 구입, 사무실 임차 등 **생산활동과 관련된 1,000만원 이상의 물적 투자가 있을 때에 인정**

③ 이전·신설·증설된 사업의 조업시작일 현재 해당지역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구직자**를 해당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고용할** 것

〈 추진 체계 〉



* 지정기간 내 사업 이전.신설.증설에 따른 지역고용계획서를 제출한 후, 최대 1년 6개월 이내 조업을 시작하고 조업시작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지원금 신청을 하면 조업시작일로부터 최대 1년간 지원 가능,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 종료 후 최대 3년까지 예산 집행 가능**

참고 3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 개요

□ 사업 개요

○ 일자리함께하기 제도*를 새로 도입하거나 확대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노동자수가 증가하는 경우 지원

* 교대제 도입확대, 실근로시간 단축 등

** '24년부터 잔여사업비 지원

□ 지원내용

< 인건비 지원 >

○ **지원요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월평균 노동자 수가 증가한 경우

○ **지원수준**: 증가노동자 1명당 월 40~80만원

○ **지급기간 및 지급주기**: 1~2년간 3개월 단위로 지급

* 제조업을 영위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최대 2년간 지원

< 임금감소액 보전 지원 >

○ **지원요건**: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감소한 기존 노동자의 임금감소액 일부 또는 전부를 사업주가 보전한 경우

○ **지원수준**: 노동자 1인당 월 10~40만원(사업주 지급금액의 80% 한도)

○ **지원한도**: 증가노동자 1명당 임금이 감소한 노동자 10명까지 지원

○ **지급기간 및 지급주기**: 1~2년간 3개월 단위로 지급

* 제조업을 영위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최대 2년간 지원

□ 지원절차 <공모형>

사업 신청서제출 (사업주) → 심사 및 승인 (고용센터) → 제도도입 및 사업 시행 (사업주) → 장려금 신청서 제출 (사업주) → 장려금 지급 및 지도·점검 (고용센터)

참고 4 국내복귀기업 지원 사업 개요

□ 사업 개요

○ 국내복귀기업(산업부 지정) 지정일로부터 5년 이내*인 기업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노동자수가 증가하는 경우 지원

* 지정일로부터 2년 이내(`11년) → 3년 이내(`19년) → 5년 이내(`21년)

** '24년부터 잔여사업비 지원

□ 지원내용

< 인건비 지원 >

○ **지원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 **지원요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월평균 노동자 수가 증가*한 경우

* (신규 고용을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매 3개월 평균노동자수) – (신규 고용을 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의 평균노동자수)

○ **지원수준**: 증가노동자 수 1명당 월 30~60만원, 최대 100명까지 지원

*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60만원, 중견기업 월 30만원

○ **지급기간 및 주기**: 2년* 범위내에서 3개월 단위로 지원

* 지급기간: 1년(`11년) → 2년(`19년)

□ 지원절차 <비공모형>

신규고용 (사업주)	→	신규 고용개시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간 보다 이후 3개월간 월평균 노동자수가 증가한 경우	→	장려금 신청서 제출 (사업주)	→	장려금 지급 및 지도.점검 (고용센터)

* 사업방식: 공모형(`11년) → 요건심사형(`21년)

참고 5 신중년 적합직무 사업 개요

□ 사업 개요

○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신중년 일자리 창출('18년~)

* 근거법령: 고용보험법 제20조(고용창출의 지원)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7호

** '24년부터 잔여사업비 지원

□ 지원내용

○ (사업규모) '24년 70억원(1,862명) → '25년 7억(174명)

○ (지원대상)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사업참여 신청 후 승인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

○ (지원요건) 지원제외 직무(붙임) 외의 직무에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규고용+6개월간 고용유지+고용 후 만 50세 이상 피보험자 수 증가

○ (지원금액)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80만원, 중견기업 월 40만원

○ (지원한도) 직전 연도 피보험자 수의 30%(최대 30명 한도, 10명 미만인 경우 3명)

○ (지급주기 및 기간) 6개월 단위로 1년간 지원

□ 지원절차<공모형>

사업계획서 제출 (사업주) → 계획서 심사 및 승인 (고용센터) → 신중년 채용 및 고용유지 (사업주) → 장려금 지급신청서 제출 (사업주) → 장려금 지급 및 지도·점검 (고용센터) → 사업평가 및 사후관리 (고용노동부)

참고 6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 개요

□ 사업 개요

○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로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

* '17~'21년 한시사업으로 '22년부터는 잔여지원분만 지원

○ (근거법령) 고용보험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 지원내용

○ (지원대상) 청년(만15~34세)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이라도 지원가능)

* 사행·유흥업등 일부 업종은 지원 제외

○ (지원요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①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 기업 규모별 청년 최저고용 요건* 이상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야 함

* ▲(30인 미만) 1명 ▲(30~99인) 2명 ▲(100인 이상) 3명 이상 최소 고용유지기간(6개월) 종료 후 3개월 이내 신청

② (기업 노동자수 증가) 기업이 청년을 채용한 후 기업의 전체 노동자수가 증가(전년 연평균 대비)해야 함

○ (지원내용) 청년 신규채용 1명당 월 최대 75만원을 최장 3년간 지원

○ (지원한도) 기업당 최대 30명까지 지원

○ (지원절차)



사 업 명
(3) 고용서비스모니터링(1051-351)

1. 사업 총괄 정보

1) 사업 기본 정보

(1-1) 일반 정보

소관	실·국	과·팀	기금	계정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고용서비스정책과	고용보험기금	-

(1-2) 코드·명칭 정보

구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080	08D	1000	1051	351
명칭	사회복지	고용	고용창출	직업정보지원	고용서비스모니터링

2)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N	Y	N	N	N	N

3)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Y	N	Y	N	N	-	-

4) 기능별(내역사업별)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내역사업명	소관	사업시행주체
고용서비스 평가	고용서비스정책과, 국가고용서비스혁신TF, 고용서비스기반과	한국고용정보원 등
고용서비스우수기관인증 및 민간위탁성과평가	고용서비스기반과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사업 평가	기업일자리지원과, 고용보험기획과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서비스 전문교육 실시	국가고용서비스혁신TF	한국기술교육대
고용동향분석 모니터링	미래고용분석과	직접수행(위탁)

2. 지출계획 총괄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사업명	2025년 결산액	2026년 당초계획액 (A)	2026년 수정계획액	2027년 요구액	2027년 정부안액 (B)	증감액 (B-A)	증감률 (B-A) /A×100
고용서비스모니터링	4,111	8,057	8,057	5,785	5,396	△2,661	△33.0

1)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계획액 (수정)	2025년 계획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계획액 (수정)	2026년 계획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4,111	4,111	4,111	-	-	8,057	8,057	5,499	5,396
· 고용서비스평가	702	702	702	-	-	2,432	2,432	1,862	1,987
· 고용서비스우수기관 인증 및 민간위탁성과평가	407	407	407	-	-	407	407	325	407
· 고용보험사업평가	995	995	995	-	-	995	995	697	995
· 고용서비스전문교육실시	2,007	2,007	2,007	-	-	2,007	2,007	1,506	2,007
· 고용동향조사분석모니터링	-	-	-	-	-	2,216	2,216	1,108	-

2) 비목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계획액 (수정)	2025년 계획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계획액 (수정)	2026년 계획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4,111	4,111	4,111	-	-	8,057	8,057	5,499	5,396
·일반용역비(210-14)	-	-	-	-	-	3,056	3,056	1,696	1,195
·법정민간대행사업비 (320-08)	995	995	995	-	-	995	995	697	995
·사업출연금(350-02)	3,116	3,116	3,116	-	-	4,006	4,006	3,106	3,206

3. 사업 설명

1) 사업목적·내용

(1-1) 고용서비스 평가

사업목적·내용	공공 고용서비스의 성과를 평가하여 개선을 유도하고, 고용정책 모니터링 및 정책 제언을 통해 고용서비스 선진화 촉진하는 한편, 민간 구인광고 모니터링을 통해 구직자 보호

(1-2) 고용서비스우수기관 인증 및 민간위탁성과평가

사업목적·내용	민간고용서비스기관 대상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을 통해 구인·구직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하고 우수 고용서비스 모델을 민간시장에 확산하는 한편, 민간위탁사업의 성과 평가 및 환류 활동을 통해 고용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

(1-3) 고용보험사업 평가

사업목적·내용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변화된 경제 및 고용환경에 맞게 고용보험제도 개편을 지원

(1-4) 고용서비스 전문교육 실시

사업목적·내용	고용서비스 전문 인력양성 및 직업상담원 직무향상 보수교육 운영

(1-5) 고용동향분석 모니터링

사업목적·내용	한국노동패널조사를 통해 노동시장 구조변화 등을 추적 관찰하고, 노동시장 이슈를 분석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연구사업 수행

2) 사업개요

(2-1)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사업근거	**<고용서비스 평가>** **- 고용정책기본법 제18조(한국고용정보원의 설립)** ① 고용정보의 수집·제공과 직업에 관한 조사·연구 등 제40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와 그 밖에고용지원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고용정보원을 설립한다. ④ 한국고용정보원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고용서비스의 평가 및 지원 **- 고용보험법 제33조(고용정보의 제공 및 고용 지원 기반의 구축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 및 피보험자등에 대한 구인·구직·훈련 등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훈련 상담 등 직업지도, 직업소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에 관한 기반의 구축 및 그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배치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다. **- 고용정책기본법 제12조(민간에 의한 고용서비스 제공 지원 등)** ① 국가는 민간 고용서비스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고용서비스 전문가의 양성 2. 공공부문과 민간의 고용 관련 정보망의 연계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고용서비스 제공사업 중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의 발굴과 그 사업의 위탁 4. 우수한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기관에 대한 인증

	- 직업안정법 제3조(정부의 업무)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2. 구인자, 구직자에게 국내외의 직업을 소개하는 업무 ② 정부는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의 업무에 관한 사업을 다음 각 호의 자와 공동으로 하거나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4. 그 밖에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의 업무와 관련된 전문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직업안정법 제34조(거짓구인광고 등 금지)** ① 제18조·제19조·제28조·제30조 또는 제33조에 따른 직업소개사업,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은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직업안정법시행령 제2조의3(민간과의 공동사업 등의 지원)** ①법 제3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사업주단체·근로자단체 또는 각각의 그 연합체 **<고용서비스우수기관 인증 및 민간위탁성과평가>** **- 직업안정법 제4조의5(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구인자·구직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직업소개 또는 취업정보 제공 등의 방법으로 구인자·구직자에 대한 고용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는 기관을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인증할 수 있다. **-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조의5(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업무의 위탁)** 법 제4조의5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한국고용정보원 **- 고용서비스우수기관인증제운영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4-16호) 제4조(인증운영기관)** ① 한국고용정보원을 인증업무를 주관하여 운영하는 기관(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 고용정책기본법 제12조(민간에 의한 고용서비스 제공 지원 등)** ① 국가는 민간 고용서비스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고용서비스 전문가의 양성 2. 공공부문과 민간의 고용 관련 정보망의 연계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고용서비스 제공사업 중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의 발굴과 그 사업의 위탁 4. 우수한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기관에 대한 인증 **- 고용정책기본법 제18조(한국고용정보원의 설립)** ① 고용정보의 수집·제공과 직업에 관한 조사·연구 등 제40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와 그 밖에 고용지원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고용정보원을 설립한다. ④ 한국고용정보원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고용서비스의 평가 및 지원 **- 고용서비스우수기관인증제운영규정 제4조(인증운영기관)** ① 한국고용정보원을 인증업무를 주관하여 운영하는 기관(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고용보험사업평가>** **- 고용보험법 제11조(보험 관련 조사·연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시장·직업 및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연구와 보험 관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조사·연구 사업 등을 할 수 있다. **- 고용보험법 제11조의2(보험사업의 평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보험사업에 대하여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보험사업을 조정하거나 제81조에 따른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고용서비스 전문교육 실시>** **-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제52조의2 (기술교육대학의 설립·운영)** ② 제1항에 따른 기술교육대학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다른 법령에서 담당하도록 되어 있거나 고용노동부장관,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사업주 등이 위탁하는 사업 **- 직업안정법 제40조의2 (직업소개사업을 하는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②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직업

	소개사업을 하는 자 및 그 종사자가 직업소개, 직업상담 등을 할 때 필요한 전문지식 및 직업윤리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교육훈련을 하여야 한다. **<고용동향조사분석 모니터링>** **- 고용정책기본법 제17조(고용 관련 통계의 작성·보급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정책의 효율적 수립·시행을 위하여 산업별·직업별·지역별 고용구조 및 인력수요 등에 관한 통계를 작성·공표하여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통계를 국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고용보험법 제11조(보험 관련 조사·연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시장·직업 및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연구와 보험 관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조사·연구 사업 등을 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조(업무의 대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노동시장에 관한 연구와 고용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 관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조사·연구 사업을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가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보험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추진경위	**<고용서비스 평가>** - '06 :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서비스평가센터 신설 - '11 : 고용서비스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 '14 : '고용복지+센터'업무 프로세스 모니터링 및 개선 등 서비스 활성화 방안 제시 - '15 : 고용복지+센터 신규 개소기관 조기안착을 위한 '운영 가이드북'제작 - '16 : 취업성공패키지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및 고용서비스 민간위탁 사업의 개선 방안 제시

	- ‘16 : 고용복지 관련 자문위원단을 구성하고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고용서비스 포럼(대토론회) 실시 - ‘17 : 고용복지연계 협업을 위한 워크숍 실시 - ’08~’24 : 고용센터 고용서비스 품질지수 조사 실시 - ’15~’24 : 고용센터, 지차체, 새일센터, 기타 유관기관 등 공공부문 취업알선기관의 취업알선실적 모니터링 실시 - ‘17~’24 : 고용서비스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고용서비스 포럼(대토론회) 실시 - ’24 : 구직자·기업 도약보장 패키지 품질관리 사업 실시 및 표준 운영모델 개발 등 - ’25 : 기업지원종합서비스사업 모니터링 및 성과분석 실시 - ’25 : 국정감사(‘25.10월, 과장·거짓구인광고 대응방안 마련필요), 당정협의(’25.11월, 구인광고 개선방안 마련)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및 민간위탁 성과평가>** - ’07: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시범운영실시 - ’08: 고용서비스우수기관 인증제 실시 - ’11: 고용서비스 민간위탁 기관 성과평가 실시 - ‘15: 복합고용서비스 인증제 시범운영 - ‘17: 민간위탁기관 고용서비스 품질 제고 국정과제(19-3) 선정 및 일자리정책로드맵(15-2) - ‘18: 고용부 민간위탁사업을 수행하‘ 고용서비스기관을 대상으로 품질인증 시범사업 실시 - ‘19: 고용서비스 질적 향상과 취업성과 제고를 위한 민간위탁기관 고용서비스 품질인증 · 컨설팅 · 모니터링 · 민간위탁기관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실시 및 고용서비스 품질관리시스템 구축 - ’20: 민간고용서비스기관의 역량 강화를 위한 인증평가를 실시하고 인증평가 참여기관의 고용서비스 품질개선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해 모니터링·컨설팅·성과평가·종사자교육 실시 및 고용서비스 품질관리 정보망 구축 사업 운영 - ’20: 고용부 지방관서 정성평가 사업 실시 - ’20 ~’21: 민간고용서비스기관의 역량 강화를 위한 인증평가를 실시하고 인증평가 참여기관의 고용서비스 품질개선 및 체계적 관리를‘위해 모니터링·컨설팅·성과평가 및 고용서비스 품질관리 정보망 사업 운영 - ’22 ~’23: 민간 고용서비스기관 기본역량심사·컨설팅·성과평가·우수기관 인증 등 프로세스별 연계 및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 체계적 정보관리를 통해 민간고용서비스 품질관리 강화 및 취업성과 제고 - '24: 기본역량심사 및 고용서비스 품질관리 컨설팅 사업 폐지 - '24: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사업 개편 시행 **<고용보험사업평가>** - '05, '06: 사업 평가체계 구축의 필요성 지적(기금운용평가단) - '06: "비용이 들더라도 사업을 제대로 평가할 필요"(임시국회 장복심의원) - '07: 「고용보험사업 심층평가」 연구용역실시 - '08: 「고용보험사업 심층평가」 연구용역실시 - '08.5.7.: 고용보험사업에 관한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평가체계를 갖출 것을 내용으로 하는 노사정 합의문 채택 (노사정위원회) - '09 평가의 법적근거 마련, '11년도부터 제도개선방안 및 고용보험사업 평가 실시 - '18~'26년: 「고용안전망연구센터」 위탁사업 지정·운영(한국노동연구원) - '21~'23년: 「고용보험 사업 위탁사업」 3년간 지정·운영(한국고용정보원) - '24~'26년: 「고용보험사업 평가 위탁사업」 3년간 지정·운영(한국고용정보원) **<고용서비스 전문교육실시>** - '19: 고용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전문성 및 역량강화, 직업상담사 자격 개편 관련 내용이 담긴 공공 고용서비스 발전방안 발표(제11차 일자리위원회) - '20: 민간 고용서비스 종사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보수교육 및 전문상담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예산(과정평가형 기반 직업상담사 1, 2급 양성) 반영('21년 본예산) - '21: 민간 고용서비스 종사자를 위한 보수교육 시행 방안 등 공공 고용서비스 강화 방안 발표(제20차 일자리위원회), 교육 실시('21~) - '22: 과정평가형 직업상담사 1급 과정 중심으로 사업예산 및

	물량 변경, 보수교육 물량 확대(5,000명 → 7,000명) - ’23: 고용서비스품질을 올리기 위하여 서비스 중심으로 민간 종사자에 대한 교육 강화(’23년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 발표) - ‘24: 고용서비스 현장 AI 활용 관련 교과 개발(’24년 1개) - ‘25: 고용서비스 현장 AI 활용 관련 교과 개발(’25년 1개) 및 기존 교과의 효과성과 신뢰도 확보를 위해 온라인 컨텐츠 개편(4개) **<고용동향조사분석 모니터링>** - ’98: 제1차 한국노동패널조사 실시(약 5,000 가구의 15세이상 가구원) - ’09: 제6차 한국노동패널조사 실시 및 농어촌지역 1,500가구 추가 - ’13: 일자리 창출이 국정 핵심 과제로 부각되면서 심층적인 노동시장 분석을 위해 노동시장 분석센터 위탁사업 실시 - ’18: 제21차 한국노동패널조사 실시(약 5,000 가구 추가) - ’19~’24년: 제22~27차 한국노동패널조사 실시(약 12,000가구) - ‘27년: 고용동향조사분석 모니터링 일반회계로 이관

(2-2) 사업규모

○ 사업기간 : ’06년~ 계속(고용서비스 평가), ‘07년~ 계속(고용서비스우수인증 및 민간위탁성과평가) ‘07년 ~ 계속(고용보험사업평가) ‘21년~ 계속(고용서비스 전문교육 실시) ’98년 ~ 계속 (고용동향조사분석 모니터링)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계획액 기준, 기금운용계획변경 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사업비	5,253	4,848	4,111	8,057	5,396

(2-3)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및 위탁

○ 사업시행주체 : 한국고용정보원(출연 및 위탁), 한국기술교육대학교(출연) 등

○ 사업 수혜자 : 구인·구직자, 취약계층, 사업체, 일자리사업 수행기관 등 전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기관명	2027년 지원금액 (백만원)	지원 비율(%)	법적근거
고용서비스 평가	출연 및 위탁	한국고용정보원 등	1,987	100	고용정책기본법 제18조(한국고용정보원의 설립) 및 제40조(위탁)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인증 및 민간위탁성과평가	출연	한국고용정보원	407		
고용보험사업평가	위탁	한국고용정보원 등	995		
고용서비스 전문교육실시	출연	한국기술교육대학교	2,007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제52조의 2

3) 기능별(내역사업별) 산출 내역

(3-1) 내역사업별 세부 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계획액(수정)(A)	2027년 정부안액(B)	증감 (B-A)
합 계	8,057	5,396	△2,661
고용서비스 평가	2,432	1,987	△445
고용서비스우수기관인증 및 민간위탁성과평가	407	407	-
고용보험사업 평가	995	995	-
고용서비스 전문교육 실시	2,007	2,007	-
고용동향조사분석 모니터링	2,216	-	△2,216

○ 고용서비스 평가 (2026년) 2,432 → (2027년) 1,987백만원, △18.3%

① 고용서비스 평가

○ 고용서비스 품질평가: (2026) 150백만원 → (2027) 150백만원(전년동)

- (산출) 20,000(샘플) × 7,500원

○ 고용부 지방관서 정성평가 사업: (2026) 105백만원 → (2027) 105백만원(전년동)

- (산출) 48개 청·지청 × 2,187,500원

○ 취업실적 모니터링 : (2026) 75백만원 → (2027) 75백만원(전년동)

- (산출) 10,000(샘플) × 7,500원

○ 도약보장패키지 품질관리: (2026) 70백만원 → (2027) 70백만원(전년동)

- (산출) 48개 청·지청 × 2개 사업 × 729,166원

○ 고용서비스성과관리시스템 운영: (2026) 125백만원 → (2027) 125백만원(전년동)

- (산출) 유지관리비용 125백만원

○ 기타운영비(특근매식비, 비정규직보수 등): (2026) 167백만원 → (2027)167백만원(전년동)

② 민간 구인광고 모니터링

○ 통합 구인광고 모니터링 및 거짓구인광고 AI 점검 시스템 구축: (2026) 1,740백만원 → (2027년) 1,295백만원 (△445백만원)

- (산출) 통합 구인광고 모니터링 1,195백만원 + 거짓 구인광고 AI점검 시스템 100백만원

○ 고용서비스우수기관인증 및 민간위탁성과평가 (2026) 407 → (2027년) 407백만원(전년동)

○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사업: (2026) 290 → (2027) 290백만원(전년동)

- (산출) 인증사업 운영 188백만원 + 사후 모니터링 34백만원 + 해외우수모델, 지표개선 등 연구 31백만원 + 기타운영비(여비, 사업추진비 등) 37백만원

○ 민간위탁사업 성과평가: (2026) 117 → (2027) 117백만원(전년동)

- (산출) 만족도 조사, 모니터링 108백만원 + 자문수당 1백만원 + 지표설명 자료 제작비 3백만원 + 기타운영비(여비, 사업추진비 등) 5백만원

○ 고용보험사업 평가 (2026) 995 → (2027년) 995백만원(전년동)

○ 고용보험사업평가: (2026) 435 → (2027) 435백만원(전년동)

- (산출) 435백만원 × 1식

○ 고용안전망 연구센터: (2026) 560 → (2027) 560백만원(전년동)

- (산출) 560백만원 × 1식

○ 고용서비스 전문교육 실시 (2026) 2,007 → (2027년) 2,007백만원(전년동)

○ 고용서비스 전문인력 양성교육 등: (2026) 964 → (2027) 964백만원(전년동)

- (산출) 교육 운영비 6,426천원 × 150명

○ 고용서비스 민간종사자 보수교육: (2026) 1,043 → (2027) 1,043백만원(전년동)

- (산출) 149천원 × 7,000명

○ 고용동향조사분석 모니터링 (2026) 2,216백만원 → (2027년) 일반회계 이관(△2,216백만원)

4) 사업효과

(4-1) 최근 5년(2023년~2027년)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 성과지표: 고용서비스 품질지수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목표	신규	신규	신규	83.5	83.5
실적	신규	신규	신규	-	-
달성도	-	-	-	-	-

- 측정산식 : 전국 고용센터를 이용한 구직자와 구인업체를 대상으로 고용서비스 품질 조사

- 측정방법 및 목표치 설정근거 : 설문조사 및 품질조사 만족도(만족점수) 임계점 도달(고용서비스 품질지수 지표 개편, ~'26. 12.)

- 자료수집방법/출처 : 표본(총 2만건) 설문조사

(4-2) 성과지표 이외의 최근 4년(2023년~2026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연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3년	<고용서비스평가> ○ '23년 고용센터 고용서비스 품질지수 조사 실시(상·하반기 각 1회)와 집합, 방문 컨설팅 실시 ○ 취업알선실적 모니터링 조사(연1회) 및 현장 모니터링 실시 ○ 고용부 소속기관 정성평가 실시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및 민간위탁성과평가> ○ 민간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 -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59개 기관 신청·접수, 47개 기관 인증 ○ 민간위탁 고용서비스기관 기본역량심사 실시 - 기관건전성심사, 역량심사 실시('23.7~9월) 및 기본역량심사 결과 발표('23.10월) ○ 민간고용서비스기관 대상 품질관리 컨설팅 실시 - 고용서비스 품질관리 입문컨설팅 실시('23.3월, 6월) - 역량강화 컨설팅(집합)('23.8~11월), 역량강화 컨설팅(현장방문) 실시('23.10~11월) - '23년 우수인증기관 대상 집합컨설팅 실시('23.11월) ○ 고용서비스 민간위탁사업 6개 성과평가 실시 <고용보험사업 평가> ○ 고용보험사업 평가 - 고용보험사업에 대한 목적, 집행 및 성과를 체계적으로 점검·평가하여 효율화 등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 고용보험사업 주요 사업(군)에 대해 고용형태, 장기고용유지율 등 성과지표 분석, 제도·전달체계 개선방안, 사업구조 개편방안 도출 ○ 고용안전망연구센터 운영(위탁기관: 한국노동연구원) - 고용보험 중장기 제도개선 관련 조사·연구 <고용서비스 전문교육 실시> ○ 직업상담원 보수교육 - 2023년 민간 고용서비스 종사자 보수교육 실시('23.2월~'24.2월) ○ 과정평가형 전문인력 양성 - 2023년 직업상담사 1급 과정평가형 양성과정 실시('23.3월~'24.2월)
2024년	<고용서비스 평가> ○ '23년 품질지수 하위 20% 고용센터 대상(20개) 집단 컨설팅 수행('24.6월) ○ '24년 고용센터(101개) 대상 고용서비스 품질지수 조사('24.9~12월) ○ 취업알선 실적 상반기 현장 모니터링('24.5~6월, 17개소), 하반기 정기 모니터링('24.10~11월) 수행

	○ 금융·고용 복합지원 정책 모니터링 및 과제 수행 ○ 고용부 지방관서 고용분야 평가 -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를 '24년부터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병행 운영 ○ 구직자 및 기업 도약보장패키지 품질 관리 - 전국 고용센터 48개소 대상 현장 모니터링(104회), 사업성과 분석, 성과지표 개발 <고용서비스우수기관인증 및 민간위탁성과평가> ○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 *고용서비스모니터링 → 고용서비스품질관리로 내역사업 간 이동 - 사업공고('24.4월) → 사업신청('24.5월, 118개 기관) → 서면심사('24.6~7월, 118개 기관) → 현장실사('24.8~9월, 104개 기관) → 발표심사('24.10월, 103개 기관) → 평가위원회('24.10월, 인증심의 대상 기관 103개 기관) → 인증위원회 심의('24.11월, 48개 기관 인증) → 우수기관 인증('24.12월, 48개 기관) → 인증수여식('24.12월) ○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사후관리 모니터링 - '22년도 고용서비스 우수 인증기관 대상 온라인 점검 및 자체평가 설문 실시('24.7~8월, 총 38개 기관) - '22년도 고용서비스 우수 인증기관 대상 현장방문 모니터링 실시('24.7월, 총 6개 기관) - '22년도 고용서비스 우수 인증기관 대상 온라인 인터뷰 모니터링 실시('24.7월, 총 14개 기관) ○ 고용서비스 민간위탁사업 성과평가 수행 - 국민취업지원제도, 중장년내일센터,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구직자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등 4개 사업의 취업알선 수준, 상담실적, 고객만족도 등을 평가 - 국민취업지원제도 성과지표 간소화와 내실화로 평가 신뢰도 및 타당도 제고 - 국민취업지원제도, 중장년내일센터 고객만족도 조사 One-page report 각 민간기관에 제공 <고용서비스 전문교육실시> ○ 직업상담원 보수교육 - 2024년 민간 고용서비스 종사자 보수교육 실시('24.2월~'25.2월) ○ 과정평가형 전문인력 양성 - 2024년 직업상담사 1급 과정평가형 양성과정 실시('24.3월~'25.2월) - 교육과정 확대(旣 36개 과정 → 37개 과정)
2025년	<고용서비스평가> ○ 고용센터 고용서비스 품질지수 '24년 하위 기관 집합 컨설팅 및 '25년 조사 준비 ○ 취업알선실적 현장 모니터링 수행('25.6~7월, 20개소) ○ 고용부 소속기관 대상 정량 평가 및 자율형(정성)평가 준비 ○ 기업지원종합서비스 시범사업 모니터링 및 성과분석('25.3~7월) - 시범사업 참여센터 12개소 1:1 모니터링, 성과 분석, 성과목표와 평가지표 개발 ○ 현장체감형 모니터링 및 고용서비스 정책과제 제언 ○ 금융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이력과 복합애로요인 분석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인증 및 민간위탁성과평가> ○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 - 사업공고('25.4월) → 사업신청('25.5월, 106개 기관) → 서면심사*('25.6월, 26개 기관) → 현장실사('25.7월~9월, 총 103개 기관) → 발표심사('25.9월, 총 101개 기관) → 평가위원회('25.11월, 인증심의 대상 기관 101개 기관) → 인증위원회 심의 및 우수기관 인증('25.11월, 63개 기관 인증) → 인증수여식('25.12월) * 신규기관으로 한정(재인증 기관 서류심사 제외) ○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사후관리 모니터링 - '23년도 고용서비스 우수 인증기관 대상 온라인 점검 및 자체평가 설문 실시('25.5~6월, 총 44개 기관) - '23년도 고용서비스 우수 인증기관 대상 현장방문 모니터링 실시('25.7월, 총 10개 기관) ○ 고용서비스 민간위탁사업 성과평가 수행 - 국민취업지원제도, 중장년내일센터, 심리안정지원, 구직자 취업역량강화 등 4개 사업의 취업알선 수준, 상담실적 및 고객만족도 평가 수행 - 참여자 만족도 요약보고서(one-page report)를 국민취업지원제도 및 중장년내일센터 전 기관 대상으로 확대 및 지속 제공함으로써 현장 친화적 환류도구 정착 <고용보험사업평가> ○ 고용보험사업 평가 - 고용보험사업에 대한 목적, 집행 및 성과를 체계적으로 점검·평가하여 효율화 등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 고용보험사업 주요 사업(군)에 대해 고용형태, 장기고용유지율 등 성과지표 분석, 제도·전달체계 개선방안, 사업구조 개편방안 도출 ○ 고용안전망연구센터 운영(위탁기관: 한국노동연구원) - 고용보험 중장기 제도개선 관련 조사·연구 <고용서비스 전문교육실시> ○ 2025년 민간 고용서비스 종사자 보수교육 실시('25. 3월-'26. 2월) - 고용서비스 현장 AI 활용 관련 교과 개발('24년 1개, '25년 1개) - 旣 교과의 효과성 및 신뢰도 확보를 위한 온라인컨텐츠 개편(4개) ○ 'AI를 활용한 고용서비스 업무 효율화' 경진대회 최초 개최 <고용동향분석 모니터링> - 제28차 한국노동패널조사 실시('25.2월~'25.12월) - 분기별 고용동향점검회의를 통해 고용이슈 및 전망 관련 논의
2026년	<고용서비스평가> ○ 고용센터 고용서비스 품질지수 '25년 하위 기관 집합 컨설팅 및 '26년 조사 준비 ○ 취업알선실적 모니터링 수행 ○ 고용부 소속기관 대상 정성평가 지표 개선 ○ 기업지원종합서비스 시범사업 모니터링 및 성과분석 ○ 지역·산업특화센터 고용센터 운영 모니터링 및 개선방안 도출 ○ 거짓 구인광고 통합 모니터링 수행('26.3~12월) <고용서비스우수기관인증 및 민간위탁성과평가> ○ 2026년도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

	- 사업시행계획 공고('26.4.8) 및 사업설명회('26.4.23) - 우수기관 인증 신청 및 접수('26.5.11~5.26, 102개 기관 신청) -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사후관리 모니터링('26.7월) ○ 민간위탁사업 성과평가 - 민간위탁사업 성과평가 고객만족도 및 모니터링 조사 - 국민취업지원제도, 중장년내일센터 성과평가 지표정의서 검토와 실적데이터 추출, 검증 <고용보험사업평가> ○ 고용보험사업 평가 - 고용보험사업에 대한 목적, 집행 및 성과를 체계적으로 점검·평가하여 효율화 등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 고용보험사업 주요 사업(군)에 대해 고용형태, 장기고용유지율 등 성과지표 분석, 제도·전달체계 개선방안, 사업구조 개편방안 도출 ○ 고용안전망연구센터 운영(위탁기관: 한국노동연구원) - 고용보험 중장기 제도개선 관련 조사·연구 <고용서비스 전문교육실시> ○ 직업상담원 보수교육 - 2026년 민간 고용서비스 종사자 보수교육 실시('26. 3월-'27. 1월) ○ 과정평가형 전문인력 양성 - 2026년 직업상담사 1급 과정평가형 양성과정 실시('26. 3월-'27. 1월) <고용동향분석 모니터링> - 제29차 한국노동패널조사 실시('25.2월~'25.12월) - 분기별 고용동향점검회의를 통해 고용이슈 및 전망 관련 논의

(4-3) 향후(2027년 이후) 기대효과

<고용서비스평가>

- 고용센터(중형센터 30개 포함)의 고객서비스 평가 및 피드백 실시로 효율적 관리 지원
- 고용센터·지자체·새일센터·유관기관 취업알선실적 모니터링을 통해 기관별 실적의 투명성 확보 및 처리절차 표준화 틀 마련
- 고용센터 성과평가체계 개선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고용서비스정책의 노동시장 성과 제고
- 민간 취업포털의 통합 구인광고 모니터링을 통해 거짓구인광고로부터 구직자 보호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인증 및 민간위탁성과평가>

- 구인자·구직자에 대한 고용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는 기관을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인증·지원하고, 우수 고용서비스 모델을 민간서비스 시장 전반에 확산
-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한 민간 고용서비스기관 고용서비스 품질 저하 예방
- 성과평가 결과를 사업 수행기관 선정에 반영하여 민간위탁사업 수행기관의 고용서비스 품질제고

<고용보험사업 평가>

- 고용보험사업 평가에 따른 체계적 사업성과 관리를 통해 예산연계, 사업개편 등 환류기능 강화
- 고용보험 중장기 제도개선 관련 조사·연구를 통한 고용보험제도 개선에 기여

<고용서비스 전문교육 실시>

- 민간 고용서비스 종사자의 역량 강화를 통한 고용서비스 품질 제고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사업기준 및 지침 수립	고용노동부
↓	
연간 사업계획 수립 및 계획서 제출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등
↓	
운영계획서 검토 및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재배정	고용노동부
↓	
사업수행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등
↓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	고용노동부

8) 최근 3년간(2024년~2026년)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8-1) 정부 사업평가

구분	연도	주요내용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2025년	○ 결과 : 우수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2026년	○ 의견 : ①서비스 품질 향상도와 같은 성과지표 전환 필요, ②민간위탁 성과평가 인센티브 및 데이터 공유 강화 필요, ③고용서비스 전문교육 회계연도 불일치에 따른 결산 부적황성 해소 ○ 결과 : 감액

(8-2) 국회 지적사항

구분	연도	주요내용
기재부	2024년	○ 지적 : 고용동향분석 모니터링사업은 사업 성격상 고용보험 기금으로 운영하는 것이 부적절하므로 2026년 예산 편성시 일반회계 이관 필요 ○ 조치 : 일반회계 이관

(8-3) 감사원, 총리실, 기타(언론, 시민단체 등) 결과: 해당없음

4. 최근 4년간(2023년~2026년) 결산내역

1) 결산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연도	당초 계획액	수정 계획액 (A)	전년도 이월액	기금변경 증감액 등	계획 현액	집행액 (B)	집행률 (B/Ax100)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3년	5,253	5,253	-	-	5,253	5,041	96.0	-	212
2024년	4,848	4,848	-	-	4,848	4,833	99.7	-	15
2025년	4,111	4,111	-	-	4,111	4,051	98.5	-	60
2026년	8,057	8,057	-	-	8,057	5,499	68.3	해당없음	해당없음

2) 연도별 결산 주요사항: 해당없음

5. 기타 추가자료: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4) 고용전산망관리(정보화)(1054-510)

1. 사업 총괄 정보

1) 사업 기본 정보

(1-1) 일반 정보

소관	실·국	과·팀	기금	계정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정책관	고용서비스기반과	고용보험기금	-

(1-2) 코드·명칭 정보

구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080	08D	1000	1054	510
명칭	사회복지	고용	고용창출	고용전산망관리(정보화)	고용전산망관리(정보화)

2)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N	Y	N	N	N	N

3)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N	N	Y	N	N	-	-

4) 기능별(내역사업별)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내역사업명	소관	사업시행주체
고용전산망 운영 및 유지관리	고용서비스기반과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전산망 인프라 확충	고용서비스기반과	한국고용정보원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고용서비스기반과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전산망 운영 지원	고용서비스기반과	한국고용정보원

2. 지출계획 총괄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사업명	2025년 결산액	2026년 당초계획액 (A)	2026년 수정계획액	2027년 요구액	2027년 정부안액 (B)	증감액 (B-A)	증감률 (B-A) /A×100
고용전산망관리 (정보화)	39,230	39,470	39,470	70,170	51,341	11,871	30.1

1)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계획액 (수정)	2025년 계획 현액	2025년 집행액 [실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계획액 (수정)	2026년 계획 현액	2026년 집행액 [실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기능별 분류(합계)	39,230	39,230	39,230 [39,555]	-	-	39,470	39,470	32,000 [22,553]	51,341
· 고용전산망 운영 및 유지관리	10,842	10,842	10,842 [10,854]	-	-	13,736	13,736	11,119 [7,004]	26,778
· 고용전산망 인프라 확충	6,562	6,562	6,562 [6,562]	-	-	4,785	4,785	4,785 [4,785]	3,809
·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2,377	2,377	2,377 [2,795]	-	-	2,377	2,377	2,174 [2,044]	2,377
· 고용전산망 운영지원	19,449	19,449	19,449 [19,344]	-	-	18,572	18,572	13,922 [8,720]	18,377

2) 비목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계획액 (수정)	2025년 계획 현액	2025년 집행액 [실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계획액 (수정)	2026년 계획 현액	2026년 집행액 [실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비목별 분류(합계)	39,230	39,230	39,230 [39,555]	-	-	39,470	39,470	32,000 [22,553]	51,341
· 사업출연금 (350-02)	39,230	39,230	39,230 [39,555]	-	-	39,470	39,470	32,000 [22,553]	51,341

3. 사업 설명

1) 사업목적·내용

(1-1) 고용전산망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목적·내용	고용노동시장 안전망을 위한 법·제도 개선 내용이 대국민에 신속·정확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구인·구직정보시스템(워크넷), 고용보험시스템, 직업능력개발정보망(HRD-Net),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 정보시스템 등 관련 전산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고용서비스 고도화 추진

(1-2) 고용전산망 인프라 확충

사업목적·내용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행안부)에 따라 고용전산망 노후장비 교체, 전산장비 이중화 등 개선을 통한 고용정보망의 안정적 업무 연속성 확보

(1-3)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사업목적·내용	대규모 개인정보 취급에 따른 안전성 확보 및 지능화되는 사이버 침해위협에 대비한 고용전산망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확보하고, 보안관제센터의 설치·운영을 통해 보안사고를 사전 예방

(1-4) 고용전산망 운영지원

사업목적·내용	고용전산망 시스템을 24시간 365일 중단 없이 운영하고, 개인정보보호 등 관계 법령 준수, 서비스 만족도 관리를 위한 고용전산망 시스템 운영 지원

2) 사업개요

(2-1)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사업근거	○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고용·직업정보의 수집·관리), 제15조의2(고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제18조(한국고용정보원의 설립), 제40조(위탁) **제15조(고용·직업 정보의 수집·관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와 기업에 대한 고용서비스 향상과 노동시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고용·직업에 관한 정보(이하 "고용·직업 정보"라 한다)를 수집·관리하여야 한다. 1. 구인·구직 정보 2. 고용보험제도 및 고용안정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정보 3. 직업의 현황과 전망에 관한 정보 및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필요한 정보 4. 외국인 고용관리에 필요한 정보

	5.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정보 6. 산업별·지역별 고용 동향 및 노동시장 정보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정보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구직자·구인자, 직업훈련기관, 교육기관 및 그 밖에 고용·직업 정보가 필요한 자가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책자를 발간·배포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직업 정보의 수집·관리를 위하여 노동시장의 직업구조를 반영한 고용직업분류표를 작성·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제15조의2(고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5조제1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같은 항 각 호의 **고용·직업 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전자정보시스템(이하 "고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원·법무부·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국세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공 및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보유·이용할 수 있다. 1. 사업자등록증 2.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보훈급여·공무원연금·공무원 재해보상급여·군인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별정우체국연금의 가입 여부, 가입종별, 소득정보, 부과액 및 수급액 3. 건물·토지·자동차·건설기계·선박의 공시가격 또는 과세표준액 4. 주민등록등본·초본 5.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6. 북한이탈주민확인증명서 7. 범죄사실에 관한 정보 8. 출입국 정보 9. 외국인등록 자료 중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10. 장애 정도 11. 사회보장급여 수급 이력 12.「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취득 정보

	13. 학교교육에 관한 정보 14. 지방자치단체 등이 수집한 고용·직업 정보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료와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등 일자리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위탁받은 기관·단체(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사업수행 및 관리를 위하여 개인정보 등의 활용을 요청하는 경우 고용정보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관할 전산망을 연계하여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행기관으로의 정보 제공 및 이를 위한 정보시스템 운영에 소요 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⑥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자료 제공 및 관계 전산망 이용에 관하여는 수수료·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제18조(한국고용정보원의 설립)** ① 고용정보의 수집·제공과 직업에 관한 조사·연구 등 제40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와 그 밖에 고용지원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고용정보원을 설립한다. ② 한국고용정보원은 법인으로 한다. ④ 한국고용정보원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용 동향, 직업의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정보의 수집·관리 2. 인력 수급의 동향 및 전망에 관한 정보의 제공 3. 고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제40조(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제18조에 따른 한국고용정보원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15조에 따른 고용·직업 정보의 수집·관리 등에 관한 업무 2. 제15조의2에 따른 고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관한 업무 3. 제15조의5에 따른 통합정보전산망의 구축·운영 등에 관한 업무
추진경위	○ 추진경위 - ‘95.7: 고용보험전산시스템 서비스 개시(적용·징수, 지원금, 기타) - ‘96.9: 국내·외 취업알선 서비스 개시 - ‘98.11: Work-Net 서비스 개시 - ‘02.1~12: 직업훈련종합정보망 구축 - ‘03.1: HRD-Net(직업훈련종합정보망) 서비스 개시 - ‘04.3~8: 외국인고용허가제 시행에 따른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 구축 - ‘05.11~’06. 2: HRD-Net 종합서비스망 구축

	- ‘07.5~’08.8: 워크넷시스템 혁신사업 추진 - ‘08.10: 고용보험시스템 중장기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등 - ‘10.6～11: 차세대 종합 고용서비스망 구축을 위한 정보전략계획(ISP) 수립 - ‘12.6: 차세대 종합고용서비스 시스템 구축 2차 사업 추진 - ‘13.6: “바로ONE” 시스템 구축·운영을 통한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13～‘14: 차세대고용보험시스템 구축 추진 - ‘13.8: 차세대일모아 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 - ‘14.6: 차세대고용보험시스템 서비스 개시 - ‘14.12: “바로ONE” 시스템을 통한 맞춤 서비스 제공 - ‘16~‘17년: 차세대 HRD-Net 시스템 구축 - ‘17.10: 대국민 개방통계 홈페이지(eis.work.go.kr) 구축 및 서비스 개시 - ‘18.3: 일자리 관련 정보 연계·공유의 기반이 되는 고용사업장 DB 구축 - ‘18.10: 데이터사전, 표준직무기술서 오픈API 서비스 개시 - ‘18.12: 국가일자리정보 플랫폼 기반 및 일자리포털 구축 - ‘19.2: 워크넷 일자리 자동상담(챗봇) 시스템 시범서비스 오픈 - ‘20.10: HRD-Net 홈페이지·모바일 개편(국민내일배움카드 제도 적용, 성과정보 공개 강화, 훈련정보 자동 표출 및 검색 지원 등) - ‘21.6: 워크넷 이용자 및 기업회원 양방향 화상면접서비스 제공 - ‘21.12: 디지털 업무 기반 청년내일채움공제 시스템 서비스 개시 - ‘21.12: 고용보험 적용 확대(플랫폼종사자) - ‘21.12: 범부처 디지털 훈련정보 통합플랫폼 구축 - ‘22.10: 워크넷 구직자도약보장패키지 사업 전산망 구축 - ‘22.12: AI·데이터분석 기반 맞춤형 직업상담 지원 서비스 잡케어(Job Care) 서비스의 사용자 확대(6개 고용센터 → 전국 고용센터) - ’23.7: 미래내일 일경험 지원사업 시행 관련 시스템 개발 - ’23.8: 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사업 전산망 구축 - ’23.12: 고용보험시스템, 국민취업지원시스템,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 등 온라인 민원 이용행태 분석을 통한 민원신청 편의성 제고 - ’23.12: 실업급여 내부, 고용안정 내부 및 외부 서비스, HRD-Net

	대민포털 서비스 고용24 이관 - '24.4: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활용한 국가자격·훈련 디지털배지 시스템을 구축하여 혁신적인 디지털 고용서비스 제공 - '25.1: EPS 대민홈페이지 외국인서비스 위주 메인화면 개편 - '25.1: 차세대 일모아시스템 서비스 개시 - '25.1~2: 고용보험 육아지원정책 개정 관련 반영 - '25.6: 고용24 행정업무망 싱글뷰(Single view) 구인목록, 인재목록 개발 - '25.6: K-디지털 트레이닝 심사·평가 관리시스템 구축

(2-2) 사업규모

○ 사업기간 : '06년 ~ 계속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계획액 기준, 기금운용계획변경 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사업비	31,517	37,381	39,230	39,470	51,341

(2-3)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한국고용정보원

○ 사업 수혜자 : 구직자, 청소년, 실업자, 구인업체, 진로지도담당자 등 전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7계획안)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고용전산망 운영 및 유지관리	출연	한국고용정보원	26,778	100%	고용정책기본법 제18조(한국고용 정보원의 설립) 및 제40조(위탁)
고용전산망 인프라 확충			3,809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2,377		
고용전산망 운영지원			18,377		

3) 기능별(내역사업별) 산출 내역

(3-1) 내역사업별 세부 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계획액(수정)(A)	2027년 정부안액(B)	증감 (B-A)
합 계	39,470	51,341	11,871
고용전산망 운영 및 유지관리	13,736	26,778	13,042
고용전산망 인프라 확충	4,785	3,809	△976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2,377	2,377	-
고용전산망 운영지원	18,572	18,377	△195

○ **고용전산망 운영 및 유지관리 (2026년) 13,736백만원 → (2027년) 26,778백만원, +94.9%**

1 워크넷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26) 3,591→ ('27요구) 4,431백만원, +840백만원

- (요구)

■ 워크넷시스템 운영비

* 시스템 이관·제도 확대에 따라 유지관리 대상이 증가하여 운영비 상승분 반영

■ 고용전산망관리 내역사업 통·폐합으로 '26년 「워크넷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내역사업에서 이관

- (산출)

■ 워크넷시스템 운영비: ('26) 3,591→ ('27) 4,431백만원(+840백만원)

* 대민서비스 운영 및 유지관리: ('26) 2,069→ ('27) 2,485백만원(+416백만원)
  · (FP) '26년 12,911.0→ '27년 15,506.9FP
  · (요율) '26년 14.35→ '27년 14.35%
* 행정서비스 운영 및 유지관리: ('26) 1,522→ ('27) 1,946백만원(+424백만원)
  · (FP) '26년 9843.8→ '27년 12,586.7FP
  · (요율) '26년 13.85→ '27년 13.85%

2 고용보험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26) 3,305→ ('27요구) 17,330백만원, +14,025백만원

- (요구)

■ 고용보험시스템 운영비

* 신규·개편 제도 시행으로 유지관리 대상이 증가하여 운영비 상승분 반영

■ 부정수급시스템 운영비

■ 소득기반 고용보험시스템 체계 개편

* (사업내용) '26년 BPR 결과에 따라 재설계된 업무 프로세스 및 ISMP 결과에 따라 고용보험시스템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반 전면 재구축

* (사업기간 및 사업비) 2년 / 35,966백만원
  · 소득기반 고용보험시스템 체계 개편 사업은 총 2개년, 35,966백만원(당초 신청금액)으로 사업을 수행할 예정으로, 년도별 순차적 예산요구 예정
* (필요성 및 시급성) 소득기반 고용보험 체계 전환('28년 제도 시행)을 위해 26년에 수행한 BPR 결과에 따라 재설계한 고용보험 업무 프로세스 적용, 국가 클라우드 전환계획(행안부) 및 디지털 고용서비스 마스터플랜(고용부) 핵심과제 등에 따라 클라우드 기반의 고용보험시스템 재구축 필요
* (기대효과) 소득기반 고용보험 체계 전환에 따른 제도 적기 시행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처리 제공 및 고객 편의성 향상

■ 고용전산망관리 내역사업 통·폐합으로 '26년 「고용보험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내역사업에서 이관

- (산출)

■ 고용보험시스템 운영비: ('26) 1,491→ ('27) 1,342백만원(△149백만원)
  * 고용보험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26) 1,491→ ('27) 1,342백만원(△149백만원)
    · (FP) '26년 10,680.1→ '27년 9,617.3FP
    · (요율) '26년 14.00→ '27년 14.00%

■ 부정수급시스템 운영비: ('26) 912→ ('27) 962백만원(+50백만원)
  * 부정수급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26) 550→ ('27) 600백만원(+50백만원)
    · (FP) '26년 4,087.1→ '27년 4,460.9FP
    · (요율) '26년 13.50→ '27년 13.50%
  * 부정수급 분석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26) 362→ ('27) 362백만원(전년동)
    · (총 투입공수) '26년 14.52→ '27년 13.25M/M

■ 소득기반 고용보험시스템 체계 개편: ('26) 0→ ('27) 15,026백만원(순증)
    · (SW 재개발비) ('26) 0→ ('27) 5,000백만원(순증)
    · (일반용역비) ('26) 0→ ('27) 977백만원(순증)
    · (HW/SW 구매비) ('26) 0→ ('27) 9,049백만원(순증)
    ※ 총 2개년 사업중 1차년도(2027년) 소요예산 산출

■ 소득기반 고용보험 체계 전환에 따른 시스템 개선사업: ('26) 404백만원→ ('27) 0원(순감)

■ 고용보험 BPR/ISMP: ('26) 498백만원→ ('27) 0원(순감)

3 직업능력개발정보망 운영 및 유지관리: ('26) 2,436→ ('27요구) 2,470백만원, +34백만원

- (요구)

■ 직업능력개발정보망 및 일학습병행시스템 운영비
  * 법·제도 개정, 지침 반영에 따라 유지관리 대상이 증가하여 운영비 상승분 반영

■ 고용전산망관리 내역사업 통·폐합으로 '26년 「직업능력개발정보망 운영 및 유지관리」내역사업에서 이관

- (산출)

■ 직업능력개발정보망 운영비: ('26) 1,845→ ('27) 1,879백만원(+34백만원)
  * 직업능력개발정보망 운영 및 유지관리: ('26) 1,845→ ('27) 1,879백만원(+34백만원)
    · (FP) '26년 12,941.3→ '27년 13,178.5FP
    · (요율) '26년 14.30→ '27년 14.30%

■ 일학습병행시스템 운영비: ('26) 591→ ('27) 591백만원(전년동)

* 일학습병행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26) 591→ ('27) 591백만원(전년동)
  · (FP) '26년 4,148.3→ '27년 4,148.3FP
  · (요율) '26년 14.30→ '27년 14.30%

4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26) 1,133→ ('27요구) 1,226백만원, +93백만원

- (요구)

■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 정보시스템 운영비
  * 신규·개편 제도에 따라 유지관리 대상이 증가하여 운영비 상승분 반영
■ 고용전산망관리 내역사업 통·폐합으로 '26년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내역사업에서 이관

- (산출)

■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 정보시스템 운영비: ('26) 1,133→ ('27) 1,226백만원(+93백만원)
  *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26) 1,133→ ('27) 1,226백만원(+93백만원)
    · (FP) '26년 7,999.0→ '27년 8,409.0FP
    · (요율) '26년 13.40→ '27년 13.80%

5 일모아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26) 1,653→ ('27요구) 803백만원, △850백만원

- (요구)

■ 일모아시스템 운영비
  * 일모아시스템 개선 사업에 따라 유지관리 대상이 증가하여 운영비 상승분 반영
■ 고용전산망관리 내역사업 통·폐합으로 '26년 「일모아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내역사업에서 이관

- (산출)

■ 일모아시스템 운영비: ('26) 653→ ('27) 803백만원(+150백만원)
  * 일모아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26) 653→ ('27) 803백만원(+150백만원)
    · (FP) '26년 3,975.0→ '27년 4,904.9FP
    · (요율) '26년 13.50→ '27년 13.50%
■ 일자리사업 체계적 관리를 위한 일모아시스템 개선사업 : ('26) 1,000백만원→ ('27) 0원(순감)

6 고용복지통합정보망 운영 및 유지관리: ('26) 1,366→ ('27요구) 266백만원, △1,100백만원

- (요구)

■ 고용복지통합정보망 운영비
  * 고용복지통합정보망 클라우드 전환 구축에 따라 유지관리 대상이 증가하여 운영비 상승분 반영
■ 고용전산망관리 내역사업 통·폐합으로 '26년 「고용복지통합정보망 운영 및 유지관리」내역사업에서 이관

- (산출)

■ 고용복지통합정보망 운영비: ('26) 268→ ('27) 266백만원(△2백만원)
  * 고용복지통합정보망 운영 및 유지관리: ('26) 268→ ('27) 266백만원(△2백만원)
■ 고용복지통합정보망 클라우드 전환 구축사업 : ('26) 1,098백만원→ ('27) 0원(순감)

⑦ 고용서비스통합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26) 252→ ('27요구) 252백만원, 전년동

- (요구)

■ 고용서비스통합시스템 운영비

■ 고용전산망관리 내역사업 통·폐합으로 '26년「고용서비스통합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내역사업에서 이관

- (산출)

■ 고용서비스통합시스템 운영비: ('26) 252→ ('27) 252백만원(전년동)

* 고용서비스통합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26) 252→ ('27) 252백만원(전년동)

· (FP) '26년 2,518.2→ '27년 2,467.4FP

· (요율) '26년 13.15→ '27년 13.55%

○ **고용전산망 인프라 확충 (2026년) 4,785백만원 → (2027년) 3,809백만원, △20.4%**

- (요구)

■ 고용정보망 노후장비 보강 및 행정시스템 개선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행안부)에 따라 노후장비 교체

■ 고용전산망관리 내역사업 통·폐합으로 '26년「고용전산망 운영지원」내역사업에서 이관

- (산출)

■ 고용정보망 노후장비 보강 및 행정시스템 개선: ('26) 4,785→ ('27) 3,809백만원(△976백만원)

* 고용정보망 노후장비 보강 및 행정시스템 개선: ('26) 4,785→ ('27) 3,809백만원(△976백만원)

· (HW/SW 구매비) '26년 4,785→ '27년 3,809백만원

○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2026년) 2,377백만원 → (2027년) 2,377백만원, 전년동**

- (요구)

■ 고용정보망 취약점 분석·평가비

* AI 등 신기술에 따른 새로운 보안 위협 대응에 따른 비용 상승 반영

■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강화 및 영향평가비

* 정보보호컨설턴트 월평균임금('22년 대비 48%) 상승과 AX 전환 등 신기술 사업증가에 따른 개인정보영향평가 건수 증가 반영 ('24 3건→ '25 4건→ '26.3월 6건)

■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시스템 운영관리비

* 이용기관(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고용노동부 등)에서 개인정보 접속기록을 자체점검하는 소명시스템 개시('26.4월)에 따른 유지보수 비용 반영

■ 보안 라이센스 갱신 및 수수료

* PC 자산 증가에 따른 백신 및 패치 관리 솔루션 비용 증가 및 웹서비스 증가에 따른 SSL 보안인증서 비용 증가 반영

■ 노후 보안장비 교체 및 정보보호 강화

* 기술지원 종료(EOS)된 노후 장비 교체와 고도화되는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한 정보보안 강화 사업 비용 반영

■ 고용전산망 보안관제센터 운영비

* 3년간 동일 금액 계약('24~'26년) 체결에 따라 '27년 신규 계약 시 평균임금 상승분 반영 및 신규서비스 추가에 따른 관제 대상 확대 반영

■ 고용전산망관리 내역사업 통·폐합으로 '26년 「국가사이버 안전관리」내역사업에서 이관
- (산출)
■ 고용정보망 취약점 분석·평가비: ('26) 225→ ('27) 225백만원(전년동)
  * 고용정보망 취약점 분석·평가: ('26) 225→ ('27) 225백만원(전년동)
    · (총 투입공수) '26년 7.1→ '27년 6.53M/M
■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강화 및 영향평가비: ('26) 192→ ('27) 192백만원(전년동)
  *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강화 및 영향평가: ('26) 192→ ('27) 192백만원(전년동)
    · (총 투입공수) '26년 6.16→ '27년 5.57M/M
■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시스템 운영비: ('26) 100→ ('27) 100백만원(전년동)
  *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26) 100→ ('27) 100백만원(전년동)
    · (총 투입공수) '26년 6.18→ '27년 6.02M/M
■ 보안 라이센스 갱신 및 수수료: ('26) 280→ ('27) 280백만원(전년동)
  * 보안라이센스 갱신 및 수수료: ('26) 280→ ('27) 280백만원(전년동)
■ 노후 보안장비 교체 및 정보보안 강화: ('26) 65→ ('27) 65백만원(전년동)
  * 노후 보안장비 교체 및 정보보안 강화: ('26) 65→ ('27) 65백만원(전년동)
  * 리스료: 최초 1분기 납입금이며, 조달 수수료(1.008)와 금리(연 5.5%) 적용
■ 고용전산망 보안관제센터 운영비 : ('26) 1,515→ ('27) 1,515백만원(전년동)
  * 고용전산망 보안관제센터 운영: ('26) 1,515→ ('27) 1,515백만원(전년동)

○ **고용전산망 운영지원 (2026년) 18,572백만원 → (2027년) 18,377백만원, △1.0%**
- (요구)
■ 도입장비 임차료 및 유지관리비
  * `21~22년도 도입 장비의 리스계약 만기, `26년 신규 도입 장비 임차료, 3년 경과 임차료의 금리 인상분 10% 반영 및 시스템 SW 유지관리비 증가 반영
■ 회선사용료 및 통신요금
■ 본인인증 및 알림 서비스
  * 고용24 통합된 시스템에 대한 서비스 비용 감액
■ 국민연금공단 4대사회보험 연계센터 분담금
  * 27년도 국민연금공단 4대사회보험 연계센터 요구안에 따른 금액 산정
■ 고용전산망 지원서비스 운영비
  * '26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적용에 따른 운영비 상승분 반영
  * 고용24 UI·UX 개선 및 신규서비스 구축을 위한 전문 퍼블리싱 개발 인력과 디자이너 노임단가 상승 및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상승분 반영
■ 기타 운영비
  * 재해복구센터 관리비(보안관제료, 국유재산대부료 등) 및 AI기반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 및 확산을 위한 대국민 홍보비 반영
■ 고용전산망관리 내역사업 통·폐합으로'26년 「고용전산망 콘텐츠 및 UI·UX 기획·디자인」, 「취업정보 발굴·수집」내역사업에서 이관
- (산출)
■ 도입장비 임차료 및 유지관리비: ('26) 12,339→ ('27) 12,416백만원(+77백만원)
  * 도입장비 임차료: ('26) 733→ ('27) 810백만원(+77백만원)
  * 시스템 유지보수료: ('26) 11,379→ ('27) 11,379백만원(전년동)

* 시스템 SW 유지관리비: ('26) 227→ ('27) 227백만원(전년동)

■ 회선사용료 및 통신요금: ('26) 1,650→ ('27) 1,650백만원(전년동)

* 회선사용 및 통신요금: ('26) 1,590→ ('27) 1,590백만원(전년동)
* 보험료: ('26) 60→ ('27) 60백만원(전년동)

■ 본인인증 및 알림 서비스: ('26) 410→ ('27) 210백만원(△200백만원)

* 본인인증 및 알림 서비스: ('26) 410→ ('27) 210백만원(△200백만원)

■ 국민연금공단 4대사회보험 연계센터 분담금: ('26) 301→ ('27) 229백만원(△72백만원)

* 운영 및 차세대 구축비: ('26) 301→ ('27) 229백만원(△72백만원)

■ 고용전산망 지원서비스 운영: ('26) 1,927→ ('27) 1,927백만원(전년동)

* 고용정보망 콘텐츠 및 UI·UX 기획·디자인: ('26) 980→ ('27) 980백만원(전년동)
* 취업정보 발굴·수집 용역: ('26) 456→ ('27) 456백만원(전년동)
* 고용정보망 민원처리시스템 유지관리: ('26) 200→ ('27) 200백만원(전년동)
* EA관리시스템 유지관리: ('26) 195→ ('27) 195백만원(전년동)
* 고용정보망 웹사이트 품질관리 점검: ('26) 96→ ('27) 96백만원(전년동)

■ 기타 운영비: ('26) 1,945→ ('27) 1,945백만원(전년동)

* 재해복구센터 관리비: ('26) 160→ ('27) 160백만원(전년동)
* 실업급여, 국민취업지원 등 동영상 서비스 이용료: ('26) 60→ ('27) 60백만원(전년동)
* 마이데이터 연계 등 데이터 구매비: ('26) 75→ ('27) 75백만원(전년동)
* 정보화 사업 심의, 전문가 회의 및 간담회 운영: ('26) 40→ ('27) 40백만원(전년동)
* 감리용역비 및 조달청 수수료 등: ('26) 498→ ('27) 398백만원(△100백만원)
* 국내·외 출장비: ('26) 305→ ('27) 305백만원(전년동)
* 특근매식비: ('26) 54→ ('27) 54백만원(전년동)
* 전산소모품 구매 등 일반 운영성 경비: ('26) 300→ ('27) 200백만원(△100백만원)
* 고용전산망 관련 공모전, 이벤트, 홍보 등: ('26) 400→ ('27) 600백만원(+200백만원)
* 화상면접서비스 운영비용: ('26) 53→ ('27) 53백만원(전년동)

4) 사업효과

(4-1) 최근 5년(2023년~2027년)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 **성과지표:** 디지털 고용서비스 이용률(단위: %)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목표	-	-	65.53	67.87	69.84
실적	-	65.4 *9월 (서비스개시) ~12월	66.23	-	-
달성도	-	-	101.1	-	-

- **측정산식 :** 온라인 신청 건수 / (온라인 신청건수 + 오프라인 신청건수) X 100
- **측정방법 및 목표치 설정근거 :** 실적 및 변동 추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
- **자료수집방법/출처 :** 고용24시스템

(4-2) 성과지표 이외의 최근 4년(2023년~2026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연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3년	- 잡케어 대국민 시범운영 오픈 - 미래내일 일경험 지원사업 시행 관련 시스템 개발 - 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사업 전산망 구축 - 재직자 내일배움카드 자동발급 서비스 도입, 청년 및 취약계층 맞춤형 고용서비스 도입, 취약계층 고용위기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한 관련 시스템을 신속하게 개선 등 고용정보시스템 개선을 통한 고용안전망 강화 지원 -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활용한 국가자격·훈련 디지털배지 시스템을 구축하여 혁신적인 디지털 고용서비스 제공 - 고용보험시스템, 국민취업지원시스템,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 등 온라인 민원 이용행태 분석을 통한 민원신청 편의성 제고 - 디지털 부정수급관리 기능 강화를 통한 국가 재정·행정 효율화 - 실업급여 내부, 고용안정 내부 및 외부 서비스, HRD-Net 대민포털 서비스 고용24 이관
2024년	- 사이버위협 대응을 위한 자체 365일 24시간 고용전산망 보안관제센터 운영 - 워크넷 고용형태공시제 2차 인증 로그인 적용 -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시스템 구축 - HRD-Net 내일배움카드 돌봄서비스 특화훈련 신규 개발 - 국민취업지원 내부, 외국인 내부 서비스 고용24 이관
2025년	- 차세대 일모아시스템 서비스 개시 - 고용보험 육아지원정책 개정 관련 반영 - 고용24 행정업무망 싱글뷰(Single view) 구인목록, 인재목록 개발
2026년	- K-디지털 트레이닝 심사·평가 관리시스템 구축 - 소득기반 고용보험 체계 전환에 따른 시스템 개선 - 일자리사업 체계적 관리를 위한 일모아시스템 고도화(2차) - 고용복지통합정보망 클라우드 전환 구축

(4-3) 향후(2027년 이후) 기대효과:

-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국가고용정보망의 활용률 제고 및 품질 개선
- 법/제도 신설·변경 및 시스템 개선요구에 따른 기존 행정지원서비스 시스템 기능 강화 사업으로 대민서비스 제고 및 노동행정서비스의 안정적인 지원
- 고용노동부 및 고용센터 등 사용자의 다양한 요구사항 반영과 기능 개선
- **(고용률 제고)** 정부 일자리사업 관련 채용정보, 정부·공공기관·강소기업 등 구인정보를 종합 제공하여 청년의 노동시장 유입을 유도하여 고용률 제고
- **(미스매치 해소)** 청년층의 눈높이 상승, 안정적인 일자리 선호 현상으로 빚어진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경쟁력 강화
- **(이용편의 향상)** 스마트폰을 이용한 원스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으로 대국민 이용편의 향상
- **(고객만족도 향상)** 다양한 채널을 통해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수렴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반영함으로써 고객 만족도 향상에 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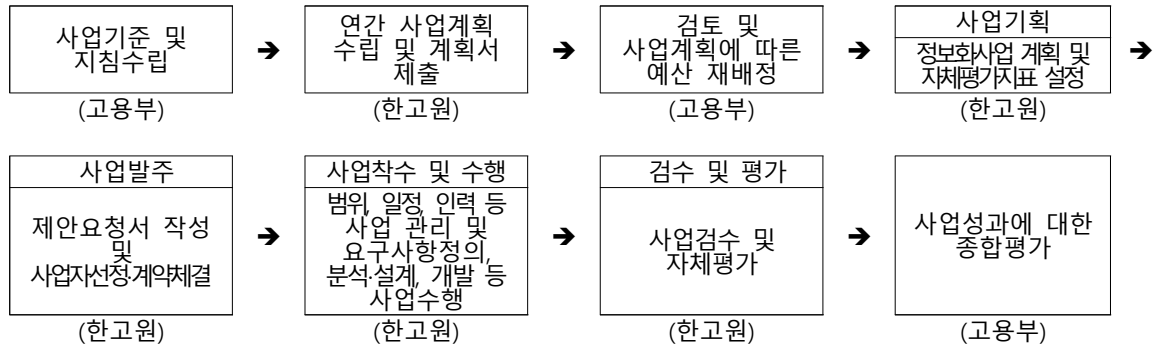
- **(수요자 측면)** 수요자 특성 기반 지능형 매칭서비스 제공으로 수요자의 취업(채용), 직무 만족도 제고, 비대면 면접시스템 도입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취업기회 확대
- **(정책 측면)** 채용의 평등한 기회와 공정한 심사를 위한 블라인드 채용 문화 확산 및 고용서비스 역량 강화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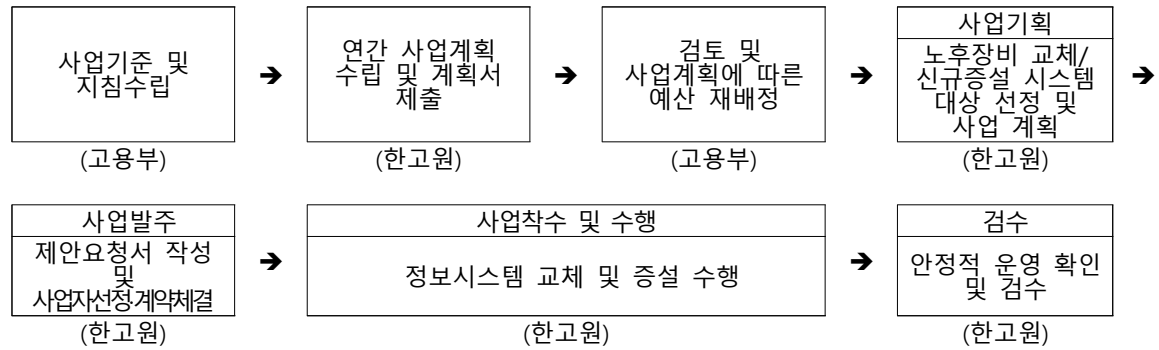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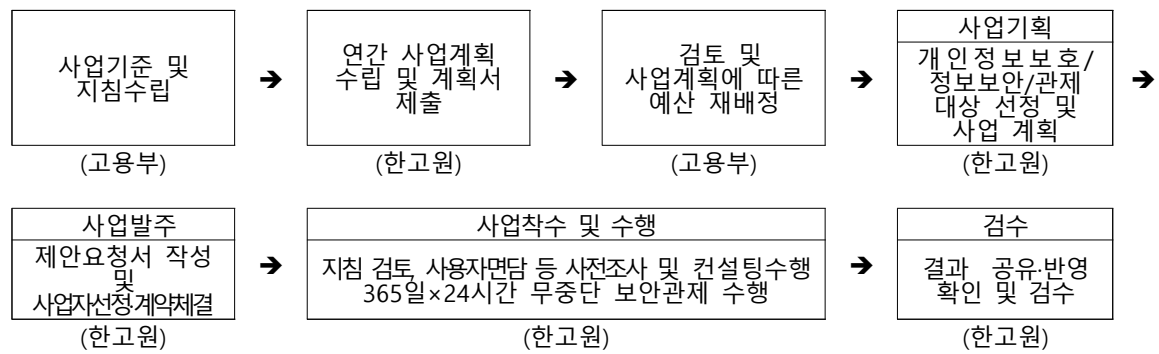
- **고용전산망 운영 및 유지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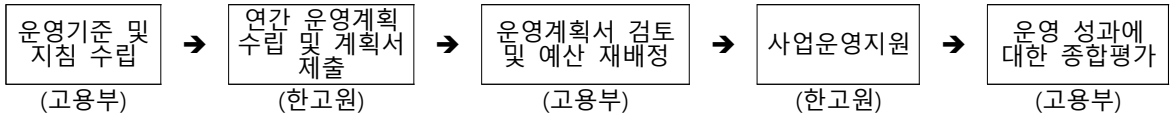
- **고용전산망 인프라 확충**



-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 고용전산망 운영지원



8) 최근 3년간(2024년~2026년)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8-1) 정부 사업평가:

구분	연도	주요내용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2023년	○ 의견 : 사업의 중요성, 운영의 적절성, 일자리사업 운영성과, 제도개선 노력, 예산 집행률 등 사업 수행결과 양호 ○ 결과 : 양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2024년	○ 의견 : 예산집행률과 실집행률(100%, 99.6%)은 우수한 것으로 평가 전반적으로 고용서비스 유형에서 평균 수준의 성과를 제시한 사업으로 평가 ○ 결과 : 양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2025년	○ 의견 : 사업의 중요성, 운영의 적절성, 일자리사업 운영성과, 제도개선 노력, 예산 집행률 등 사업 수행결과 양호 ○ 결과 : 양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2026년	○ 의견 : 국정과제 수행 및 고용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용자 만족도와 업무 편의성 제고 등 우수한 성과를 도출함 단, ❶온라인 민원 신청 서비스 개선 로드맵 마련, ❷외국인 등 다양한 사용자의 접근성 제고 방안 마련, ❸AI 기반 지능형 서비스의 지속적인 개선 등 제도개선 권고 ○ 결과 : 우수

(8-2) 국회 지적사항: 해당없음

(8-3) 감사원, 총리실, 기타(언론, 시민단체 등) 결과: 해당없음

4. 최근 4년간(2023년~2026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연도	당초 계획액	수정 계획액 (A)	전년도 이월액	기금변경 증감액 등	계획 현액	집행액 (B)	집행률 (B/Ax100)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3년	31,517	31,517	-	-	31,517	31,517	100.0	-	-
2024년	37,381	37,381	-	-	37,381	37,381	100.0	-	-
2025년	39,230	39,230	-	-	39,230	39,230	100.0	-	-
2026년	39,470	39,470	-	-	39,470	32,000	81.1	해당없음	해당없음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계획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당초	수정(A)								
2023년	31,517	31,517	31,517	31,517	878	32,395	32,268	-	127	102.4
2024년	37,381	37,381	37,381	37,381	-	37,381	36,504	703	174	97.7
2025년	39,230	39,230	39,230	39,230	703	39,933	39,555	247	131	100.8
2026년	39,470	39,470	32,000	32,000	247	32,247	22,553	64	-	57.1

2) 연도별 결산 주요사항: 해당없음

2023	- 해당없음
2024	- 해당없음
2025	- 해당없음
2026	- 해당없음

5. 기타 추가자료

사 업 명
(5) 청년내일채움공제(고보)(1061-350)

1. 사업 총괄 정보

1) 사업 기본 정보

(1-1) 일반 정보

소관	실·국	과·팀	기금	계정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	청년취업지원과	일반회계	-

(1-2) 코드·명칭 정보

구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080	08D	1000	1044	301
명칭	사회복지	고용	고용창출	청년내일채움공제(고보)	청년내일채움공제(고보)

2)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N	Y	N	N	N	N

3)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Y	N	N	N	N	-	-

2. 지출계획 총괄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사업명	2025년 결산액	2026년 당초계획액 (A)	2026년 수정계획액	2027년 요구액	2027년 정부안액 (B)	증감액 (B-A)	증감률 (B-A) /A×100
청년내일채움공제(고보)	3,729	872	872	143	143	△729	△83.6

1)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계획액 (수정)	2025년 계획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계획액 (수정)	2026년 계획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9,514	9,514	3,729	-	5,785	872	872	581	143
·청년내일채움공제(고보)	9,514	9,514	3,729	-	5,785	872	872	581	143

2) 비목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계획액 (수정)	2025년 계획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계획액 (수정)	2026년 계획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9,514	9,514	3,729	-	5,785	872	872	581	143
·일반수용비(210-01)	160	160	101	-	59	110	110	49	50
·임차료(210-07)	3	3	-	-	3	-	-	-	-
·일반용역비(220-01)	649	649	109	-	540	29	29	18	5
·국내여비(220-01)	20	20	17	-	3	14	14	8	10
·사업추진비(240-01)	17	17	13	-	4	12	12	6	10
·기타보전금(310-04)	8,665	8,665	3,489	-	5,176	707	707	500	68

3. 사업 설명

1) 사업목적·내용

(1-1) 청년내일채움공제(고보)

사업목적	청년·기업·정부 3자 적립을 통해 제조·건설업 중소기업 등에 취업한 청년의 장기근속 유도
사업내용	청년·기업·정부 3자 적립을 통해 노동시장 중소기업 신규취업 진입 청년에게 만기공제금 지원

2) 사업개요

(2-1)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사업근거	* **고용정책기본법** 제25조 ① 국가는 **청년**·여성·고령자 등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들의 취업에 적합한 직종의 개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개설, 고용기회 확대를 위한 **제도의 마련**, 관련 법령의 정비, 그 밖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고용보험법** 제25조(고용안정 및 취업 촉진) ①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 및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실시하거나 이를 실시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대부할 수 있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5조(고용안정과 취업의 촉진) 법 제2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2.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 및 취업 촉진을 위한 직업소개, 직업진로지도, 채용지원, **장기근속지원** 및 전직지원서비스사업 등 취업지원사업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7조(중소기업체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 ① 정부는 인건비 등 경비 과중으로 인한 중소기업체의 경영 애로를 타개하고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체가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그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중소기업 인력지원특별법** 제35조의2(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의 설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고용과 핵심인력의 장기재직 촉진 및 중소기업 인력양성**을 위하여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이하 "성과보상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5조의3(성과보상기금의 조성)①성과보상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기여금** **2.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이 납부하는 공제납입금** 3. 성과보상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차입금 4. 성과보상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5. 중소기업 또는 그 밖의 자의 출연금 제35조의4(성과보상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성과보상기금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관리·운용**한다. 제35조의5(성과보상기금의 용도)제35조의5(성과보상기금의 용도) 성과보상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에 대한 성과보상공제사업(이하 “공제사업”이라 한다) 2.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의 직무역량 강화 및 전수를 위한 교

	육사업 3.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에 대한 복지사업 4. 성과보상기금의 관리 및 운용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사업 제35조의6(공제사업의 운영) 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공제규정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 중도해지 시 환급금 처리, 회계기준 및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추진경위	- ('16.4월)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 방안(정부합동)」의 주요 내용으로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를 개편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설 결정 - ('16.7월) 「청년내일채움공제」 시범사업 시행 * 청년취업인턴제 예산·물량 활용하여 총 1만명 지원(인턴제 수료자 1만명) - ('17.1월) 「청년내일채움공제」 본 사업 시행(참여경로 다양화) - ('17.8월) 지원금 상향* (추경) * (청년) 2년간 600만원 → 900만원 (기업) 2년간 500만원(인턴 경로) 또는 600만원(취성패 경로) → 700만원 - ('18.1월) 제도개선(참여경로 폐지)을 통해 참여권 확대 - ('18.3.15.) 「청년일자리대책(정부합동)」의 주요 내용으로 '3년형' 신설 결정 * (2년형) 청년 300 + 정부 900(일반회계) + 기업 400(고보기금) = 2년 1,600만원 (3년형) 청년 600 + 정부 1,800(일반회계) + 기업 600(고보기금) = 3년 3,000만원 - ('18.6.1.) 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개시 - ('21.1.1.) 「청년내일채움공제」 2·3년형 통합 시행 * (2년형) 청년 300 + 기업 300(고보기금) + 정부 600(일반회계) = 2년 1,200만원 - ('21.9.8.) 추경을 통해 2만명 지원 확대 및 기업 자부담 일부 정상화 * 50인 이상 기업 기업자부담 지원(80%) - ('22.1.1.) 기업 자부담 지원 축소 * (지원율) 30~49인 80%, 50~199인 50%, 200인 이상 미지원 - ('23.1.1.) 재정건전성 및 사중손실 등을 고려한 청년·기업적립금 상향 조정, 기업자부담 정상화(미지원) 등 제도 개편 * 청년 400 + 기업 400 + 정부 400(일반회계 200, 고보기금 200) = 2년 1,200만원 - ('24.1.1.) 신규지원 중단, 기가입자만 계속 지원

(2-2) 사업규모

○ 사업기간 : 2017~계속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계획액 기준, 기금운용계획변경 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사업비	210,693	76,653	9,514	872	143

(2-3)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고용센터)

○ 사업 수혜자 : '23년까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고, 청년내일채움공제 청약을 유지 중인 청년이 재직 중인 기업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3) 기능별(내역사업별) 산출 내역

(3-1) 내역사업별 세부 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계획액(수정)(A)	2027년 정부안액(B)	증감 (B-A)
합 계	872	143	△729
청년내일채움공제(고보)	872	143	△729

○ 청년내일채움공제(고보) **(2026년) 872 → (2027년 정부안) 143백만원, △83.6%**

- (설명) 2023년까지 기가입자의 잔여 정부지원금 지급시기 도래분 지원
- (산출) 311백만원
  * 정부지원금(고보) : ('23년 가입자) 17백만원(33명x50만원),
    ('22년 가입자) 51백만원(67명x75만원)
  * 일반용역비 : '22년 가입자 근속관리비 5백만원
  * 기타 경상경비 : 수용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운영비 70백만원

4) 사업효과

(4-1) 최근 5년(2023년~2027년)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3	2024	2025	2026	2027	2027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15~64세 고용률(%)	목표	68.0	69.0	69.5	70.0	70.3	최근 3년간 평균실적 및 증감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	(만15~64세 취업자수 / 만15~64세 인구) *100	국가데이터처
	실적	69.2	69.5	69.8	-	-			
	달성도	101.8	100.7	100.4	-	-			
청년(15~29세) 경제활동참가율(%)	목표	-	-	-	47.2	46.2	최근 3년간 평균실적 및 변동 추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	(만15~29세 경제활동인구 수 / 만15~29세 인구) *100	국가데이터처
	실적	-	-	-	-	-			
	달성도	-	-	-	-	-			
상용직 근로자비율(%)	목표	71.4	-	-	-	-	-	상용근로자 수 / 임금 근로자 수 *100	국가데이터처
	실적	74.1	-	-	-	-			
	달성도	103.8	-	-	-	-			
청년고용률(%)	목표	43.8	-	-	-	-	-	(청년취업자 / 청년층 인구)*100	국가데이터처
	실적	46.5	-	-	-	-			
	달성도	106.2	-	-	-	-			
청년공제 가입자의 2년 이상 고용(공제) 유지율(%)	목표	68.0	-	-	-	-	-	(t-2)년 청년공제 가입자 중 2년 이상 유지자수(만기자 포함) /(t-2)년 청년공제 가입인원(철회·취소 제외)*100, t:당해연도	청년층고용보험피보험자 전수조사/중소벤처 기업진흥공단
	실적	64.6	-	-	-	-			
	달성도	95.0	-	-	-	-			

(4-2) 성과지표 이외의 최근 4년(2023년~2026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연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3년	○ '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 시행('23.2월, 신규 2만명 목표) ○ '23년 청년 4,065명, 기업 2,964개소 신규가입 * 누적 청년 579,352명, 기업 128,206개소 가입, 297,795명 만기공제금 수령
2024년	○ '24년 신규지원 중단(기가입자 7.6만명 계속 지원) * 누적 청년 580,924명, 기업 128,587개소 가입, 355,162명 만기공제금 수령
2025년	○ '24년 신규지원 중단(기가입자 0.4만명 계속 지원) * 누적 청년 580,924명, 기업 128,587개소 가입, 377,979명 만기공제금 수령
2026년	○ '24년 신규지원 중단(기가입자 0.1만명 계속 지원) * 누적 청년 580,924명, 기업 128,587개소 가입, 378,529명 만기공제금 수령('26.7월기준)

(4-3) 향후(2027년 이후) 기대효과

○ 기존 가입자 지속적 관리 및 지원으로 청년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중소기업의 숙련인력 확보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16. 7월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사업의 제도를 개편하여 시범사업으로 실시된 사업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미실시

* 청년취업인턴제의 물량(5만)을 활용하여 시범사업으로 도입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가입자 관리방안 마련(고용노동부) → 지도점검 등 참여자 관리(고용센터, 운영기관) → 공제금 적립 및 지원금 지급(고용센터) → 공제부금 운영 및 만기금 지급(중진공)

8) 최근 3년간(2024년~2026년)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8-1) 정부 사업평가

구분	연도	주요내용
중소기업 지원사업평가	2024년	○ 의견 : 개선필요 ○ 결과 : 연례적 실집행률 부진, 성과지표 달성도 미흡 등

(8-2) 국회 지적사항

구분	연도	주요내용
예결위 결산 시정요구	2024년	○ 지적 : 장기근속 및 자산형성 청년일자리 지원정책으로의 전환 필요 ○ 조치 : ‘청년도약계좌(금융위원회)’ 및 ‘청년내일저축계좌(보건복지부)’ 등을 통해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2’를 신설하여 빈일자리 업종 기업이 청년 정규직 채용 시 청년에게 2년간 최대 480만원 지원
예결위 결산 시정요구	2025년	○ 지적 : 청년 자산형성 및 중소기업 장기근속 지원 확대 강화 필요 ○ 조치 : 정부차원에서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미래적금(금융위 주관)을 신설하였으며, 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 등에 취업한 청년의 장기근속을 직접 지원하는 방향으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개편

(8-3) 감사원, 총리실, 기타(언론, 시민단체 등) 결과: 해당없음

4. 최근 4년간(2023년~2026년) 결산내역

1) 결산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연도	당초 계획액	수정 계획액 (A)	전년도 이월액	기금변경 증감액 등	계획 현액	집행액 (B)	집행률 (B/Ax100)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3년	210,693	210,693	-	-	210,693	172,781	82.0	-	37,912
2024년	76,653	76,653	-	-	76,653	53,875	70.3	-	22,778
2025년	9,514	9,514	-	-	9,514	3,729	39.2	-	5,785
2026년	872	872	-	-	872	581	66.6	해당없음	해당없음

2) 연도별 결산 주요사항

연도	유형	금액 (백만원)	사유
2023년	불용	37,912	집행 잔액
2024년	불용	22,778	집행 잔액
2025년	불용	5,785	집행 잔액

5. 기타 추가자료: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6) 고용보험징수위탁지원(1083-350)

1. 사업 총괄 정보

1) 사업 기본 정보

(1-1) 일반 정보

소관	실·국	과·팀	기금	계정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고용보험기획과	고용보험기금	-

(1-2) 코드·명칭 정보

구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080	08D	1000	1083	350
명칭	사회복지	고용	고용창출	고용보험징수관리	고용보험징수위탁지원

2)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N	Y	N	N	N	N

3)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N	N	Y	N	N	-	-

4) 기능별(내역사업별)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내역사업명	소관	사업시행주체
고용보험징수위탁지원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국민건강보험공단

2. 지출계획 총괄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사업명	2025년 결산액	2026년 당초계획액 (A)	2026년 수정계획액	2027년 요구액	2027년 정부안액 (B)	증감액 (B-A)	증감률 (B-A) /A×100
고용보험 징수위탁지원	16,959	17,238	17,238	16,651	16,562	△676	△3.9

1)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계획액 (수정)	2025년 계획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계획액 (수정)	2026년 계획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16,959	16,959	16,959	-	-	17,238	17,238	12,498	16,562
·고용보험징수위탁지원	16,959	16,959	16,959	-	-	17,238	17,238	12,498	16,562

2) 비목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계획액 (수정)	2025년 계획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계획액 (수정)	2026년 계획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16,959	16,959	16,959	-	-	17,238	17,238	12,498	16,562
·사업출연금(350-02)	16,959	16,959	16,959	-	-	17,238	17,238	12,498	16,562

3. 사업 설명

1) 사업목적·내용

(1-1) 고용보험징수위탁지원

사업목적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사회보험통합징수업무를 수행하여 징수업무 효율성 제고 및 국민편익 증진에 기여
사업내용	고용보험료 징수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사업비, 인건비, 경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출연

2) 사업개요

(2-1)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사업근거	○ 고용보험법 제80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 2. 실업급여의 지급 2의2. 제55조의2에 따른 국민연금 보험료의 지원 3.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 4. 보험료의 반환 5. 일시 차입금의 상환금과 이자 6. 이 법과 보험료징수법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거나 위탁받은 자에 대한 출연금 7. 그 밖에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딸린 경비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기금으로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출연하는 금액은 징수업무(고지·수납·체납 업무를 말한다)가 차지하는 비율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③ 제1항제6호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기준, 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조(보험사업의 수행주체)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사업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수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징수업무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강보험공단”이라 한다)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행한다. 1. 보험료등(제17조 및 제19조에 따른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 제26조에 따른 징수금은 제외한다)의 고지 및 수납 2. 보험료등의 체납관리
추진경위	○ 사회보험 통합징수 추진기획단 출범(‘08.7.17) :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사회보험징수통합 실무추진단」출범(‘09.6.1) ○ 사회보험 징수통합관련 노·사·정 합의서 서명(‘09.6.4) ○ 사회보험 징수통합준비위원회」구성·운영(‘09.6.12) : 보건복지부 ○ 분야별 실무협의회 구성·운영 · 노사정실무협의회 : 정부, 공단, 노조 등 관계자 · 정보화실무협의회 : 복지부 , 노동부, 공단, 한국고용정보원 등 관계자 ○ 각 공단별 징수통합 실무준비조직 구성·운영 ○ 전환인력 국민건강보험공단 징수인력 배치(‘11.1.1) · 건강(1,512명), 연금(712명), 근복공단(317명) ○ 사회보험 통합징수 시작(‘11.1.1)

(2-2) 사업규모

○ 사업기간 : ‘11년 ~ 계속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계획액 기준, 기금운용계획변경 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사업비	15,582	15,882	16,959	17,238	16,562

(2-3)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국민건강보험공단

○ 사업 수혜자 : 사업주 및 근로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기관명	2027년 지원금액 (백만원)	지원 비율(%)	법적근거
고용보험 징수위탁지원	출연	국민건강 보험공단	16,562	100.0	고용보험법 제80조

3) 기능별(내역사업별) 산출 내역

(3-1) 내역사업별 세부 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계획액(수정)(A)	2027년 정부안액(B)	증감 (B-A)
합 계	17,238	16,562	△676
고용보험징수위탁지원	17,238	16,562	△676

○ **인건비 ('26년) 10,854백만원 → ('27년 계획) 11,277백만원(증 423백만원)**

- 인건비: 10,854백만원('26년 인건비) × 103.9%(처우개선)

○ **사업비 ('26년) 6,109백만원 → ('27년 계획) 5,009백만원(감 1,100백만원)**

- 고지관리 3,336백만원 (감 259백만원)
  · 고지서발송 : 9,068천 건 × 430원 × 12개월 × 5.9% = 2,761백만원
  · 고지서제작 및 인쇄 : 7,864천 건 × 94.5원 × 12개월 × 5.9% = 526백만원
  · 모바일고지수수료 : 605천 건 × 104원 × 12개월 × 5.9% = 45백만원
  · 여비 등 : 4백만원
- 수납관리 634백만원 (감 70백만원)
  · 자동이체·환급금신청안내문 발송 : 231천 건 × 430원 × 12개월 × 5.9% = 70백만원
  · 안내문 제작·인쇄 : 368천 건 × 45원 × 12개월 × 5.9% = 12백만원

· 수납대행수수료 : 6,881천 건 × 113원 × 12개월 × 5.9% = 551백만원

· 여비 등 : 1백만원

- 체납관리 632백만원 (감 70백만원)

· 체납·압류통보서 발송 : {(637천 건 × 430원) + (143천 건 × 2,830원)} × 12개월 × 5.9% = 481백만원

· 통보서 제작·인쇄 : 2,203천 건 × 45원 × 12개월 × 5.9% = 70백만원

· 예금전자전송수수료 : 16,086천 건 × 55원 × 5.9% = 52백만원

· 여비 등 : 29백만원

- 징수행정지원 9백만원 (전년동)
- 고객상담 도급비 249백만원 (증 23백만원) : 3,457,680원 × 12개월 × 6명
- 시스템 유지보수료 172백만원 (증 46백만원) : 2,915백만 원 × 5.9%

○ **경비 ('25년) 275백만원 → ('26년 계획) 276백만원(증 1백만원)**

- 비급여성 복리후생비 및 인건비에 따른 각 소득세 등

4) 사업효과

(4-1) 최근 5년(2023년~2027년)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 **성과지표1: 15~64세 고용률(%)**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목표	68.0	69.0	69.5	70.0	-
실적	69.2	69.5	69.8	-	-
달성도	101.8	100.7	100.4	-	-

- **측정산식** : (만15~64세 취업자 수 / 만15~64세 인구) *100

- **자료수집방법/출처** : 국가데이터처

○ **성과지표2: 체납 고용보험료 징수율(%)**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목표	-	-	-	-	37.0
실적	-	-	-	-	-
달성도	-	-	-	-	-

- **측정산식** : (체납보험료 징수액 / 체납액) * 100

- **자료수집방법/출처** : 내부통계

(4-2) 성과지표 이외의 최근 4년(2023년~2026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연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3년	- 징수율 99.8%(부과액 162,362억원, 징수액 161,981억원)
2024년	- 징수율 99.8%(부과액 166,643억원, 징수액 166,231억원)
2025년	- 징수율 99.8%(부과액 174,186억원, 징수액 173,788억원)
2026년	- 징수율 99.6%(부과액 96,873억원, 징수액 96,461억원)

(4-3) 향후(2027년 이후) 기대효과

○ 효율적인 징수·체납업무 수행을 통해 징수율 향상 및 보험재정 건전성 도모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보험료 산정· 부과	■ (연금) 국민연금공단 ■ (산재, 고용) 근로복지공단
⇩		
건강보험공단	고지서 발송	■ 정기고지서 ■ 독촉고지서(정기ㆍ수시) ■ 반송고지서 정리 및 현지 확인 ■ 고지서 외주용역 및 인쇄업체 확인 점검
	⇩	
	보험료 수납	■ 보험료 수납·정산처리(창구수납, 자동이체, 신용카드, 표준OCR, CD/ATM, 가상계좌 등) ■ 보험료 자동이체 신청 및 해지 안내문 발송 ■ 보험료 과오납 환급금 안내문 발송 ■ 보험료 납부확인서 발송
	⇩	
	체납자 관리	■ 체납보험료 납부독려(유선 및 출장) ■ 재산 및 행방조사 ■ 압류예정통보서(최고서) 발송 ■ 압류 및 압류해제 처리(통지서 발송) ■ 교부청구서 및 추심요청서 발송 ■ 공매예정통지서 및 공매통지서 발송 ■ 고액·상습체납자 인적공개 예고문 및 대상 통보 ■ 체납자료 금융기관 제공 통보
	⇩	
	결손 처분	■ 체납보험료 결손처분 ※ 결손처분 절차(대상자조사 및 승인신청 → 1차심사 → 2차심사 → 이사장결재 → 재정운영위원회 심의·의결)

8) 최근 3년간(2024년~2026년)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8-1) 정부 사업평가

구분	연도	주요내용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2026년	○ 의견 - 고용보험기금의 안정적 수입 기반 마련을 위한 필수적 기반 사업으로 재정지원의 필요성과 타당성 인정 및 사업운영의 안정성 확보, 대국민 편의성 및 효율성 제고 인정 - 성과 목표 설정에 대한 개선 필요 ○ 결과 : 성과 목표 설정방식 개선

(8-2) 국회 지적사항: 해당없음

(8-3) 감사원, 총리실, 기타(언론, 시민단체 등) 결과: 해당없음

4. 최근 4년간(2023년~2026년) 결산내역

1) 결산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연도	당초 계획액	수정 계획액 (A)	전년도 이월액	기금변경 증감액 등	계획 현액	집행액 (B)	집행률 (B/Ax100)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3년	15,582	15,582	-	-	15,582	15,582	100.0	-	-
2024년	15,882	15,882	-	-	15,882	15,882	100.0	-	-
2025년	16,959	16,959	-	-	16,959	16,959	100.0	-	-
2026년	17,238	17,238	-	-	17,238	12,498	72.5	-	-

2) 연도별 결산 주요사항: 특이사항 없음

5. 기타 추가자료: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7) 고용보험적용부과지원(1083-351)

1. 사업 총괄 정보

1) 사업 기본 정보

(1-1) 일반 정보

소관	실·국	과·팀	기금	계정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고용보험기획과	고용보험기금	-

(1-2) 코드·명칭 정보

구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080	08D	1000	1083	351
명칭	사회복지	고용	고용창출	고용보험징수관리	고용보험적용부과지원

2)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N	Y	N	N	N	N

3)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N	N	Y	Y	N	100.0	-

4) 기능별(내역사업별)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내역사업명	소관	사업시행주체
고용보험료 부과지원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운영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피보험자관리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근로복지공단
영세사업장 보험사무지원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근로복지공단

2. 지출계획 총괄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사업명	2025년 결산액	2026년 당초계획액 (A)	2026년 수정계획액	2027년 요구액	2027년 정부안액 (B)	증감액 (B-A)	증감률 (B-A) /A×100
고용보험 적용부과지원	35,677	34,787	34,787	29,569	27,609	△7,178	△20.6

1)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계획액 (수정)	2025년 계획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계획액 (수정)	2026년 계획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37,033	37,033	35,677	-	1,356	34,787	34,787	25,856	27,609
·고용보험료 부과지원	10,082	10,082	10,082	-	-	9,844	9,844	7,137	7,685
·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운영	5,255	5,255	5,255	-	-	5,382	5,382	3,902	5,502
·고용보험 피보험자관리	6,594	6,594	6,594	-	-	6,644	6,644	4,817	5,389
·영세사업장 보험사무지원	15,102	15,102	13,746	-	1,356	12,917	12,917	10,000	9,033

2) 비목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계획액 (수정)	2025년 계획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계획액 (수정)	2026년 계획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37,033	37,033	35,677	-	1,356	34,787	34,787	25,856	27,609
·사업출연금(350-02)	21,931	21,931	21,931	-	-	21,870	21,870	15,856	18,576
·민간경상보조(320-01)	15,102	15,102	13,746	-	1,356	12,917	12,917	10,000	9,033

3. 사업 설명

1) 사업목적·내용

(1-1) (고용보험료 부과지원)

사업목적	가입 및 보수정보를 철저히 관리하고 가입누락자 등의 방지를 통해 보험재정 건전성 도모 및 사회안전망 강화
사업내용	· 근로자 개인별 보수에 기초하여 매월 보험료 산정·부과, 근로자 개인별 가입 및 보수정보 관리, 보험료 부과자료 구축 · 사회적 취약계층에 속하는 노무제공자를 실업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21.7월부터 고용보험 적용 확대

(1-2)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운영

사업목적	민원상담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고객에게 신속·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한 국민편익 및 원활한 사업수행 지원
사업내용	고용보험 적용·부과 등에 대한 전화, 인터넷 등 민원상담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고객(고용보험 가입 또는 가입대상 사업주와 노동자)에게 신속·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한 국민편익 및 원활한 사업수행 지원

(1-3) 고용보험 피보험자관리

사업목적	고용보험 피보험자관리업무 수행
사업내용	고용보험료 부과의 기초자료로 실업급여 적정 지급 및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운영을 위한 기본 데이터베이스인 '피보험자'의 자격관리

(1-4) 영세사업장보험사무지원

사업목적	행정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주의 보험사무 처리부담 경감 및 적용·징수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보험사무대행제도 운영
사업내용	보험사무대행기관을 통한 보험사무 지원 및 플랫폼운영자에 대한 보험사무 이행지원금 지원

2) 사업개요

(2-1)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사업근거	○ 고용보험료 부과지원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10(보수총액등의 신고) 제1항~제7항 -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적용) - '고용보험법' 제77조의6(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적용) ① 사업주는 전년도에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등을 매년 3월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8조의2제6항 또는 제48조의4제3항에 따른 보험료납부자가 사업주,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보험료를 원천공제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사업주는 사업의 폐지·종료 등으로 보험관계가 소멸한 때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등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의 성명 및 주소지 등을 해당 근로자를 고용한 날 또는 해당 예술인·노무제공자의 노무제공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근로자를 새로 고용한 때

	2.「고용보험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때 3.「고용보험법」 제77조의6제1항에 다른 노무제공계약(이하 “노무제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때 ④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고용관계 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노무제공계약의 종료일 등을 해당 고용관계 또는 계약이 종료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1.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종료한 때 2. 예술인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종료한 때 3.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계약을 종료한 때 ⑤ 사업주는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가 휴직하거나 다른 사업장으로 전보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신고사항, 신고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사업주 또는 발주자·원수급인이「고용보험법」제15조, 제77조의2제3항, 제77조의5제1항, 제77조의10제1항에 따라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운영 - 고용보험법 제80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 2. 실업급여의 지급 2의2. 제55조의2에 따른 국민연금 보험료의 지원 3.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 4. 보험료의 반환 5. 일시 차입금의 상환금과 이자 6. 이 법과 보험료징수법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거나 위탁받은 자에 대한 출연금 7. 그 밖에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딸린 경비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기금으로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출연하는 금액은 징수업무(고지·수납·체납 업무를 말한다)가 차지하는 비율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③ 제1항제6호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기준, 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관리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권한의 위임등)제2항 ② 법 제1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근로복지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1. 법 제15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의 수리 등 2. 삭제 2-2. 법 제17조(법 제77조의5제1항 및 제77조의10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확인 2-3. 법 제77조의2 및 제77조의5제1항에 따른 예술인인 피보험자의 피보험자격 신고의 접수 2-4. 법 제77조의6 및 제77조의10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피보험자격 신고의 접수 3. 법 제108조에 따른 보고, 관계 서류의 제출 및 출석의 요구(위탁된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4. 법 제109조에 따른 사무소 출입, 관계인에 대한 질문과 서류의 조사(위탁된 사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5. 법 제110조에 따른 자료 제출의 요청(위탁된 사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6.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가입대상 공무원에 대한 보험 가입 신청의 수리 및 가입 신청 사실의 통보 7. 제3조의2제4항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공무원의 탈퇴신청의 수리 8. 제4조에 따른 대리인 선임·해임의 신고 수리(대리인이 법 제15조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영세사업장보험사무지원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지원 등)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보험사무대행기관) ① 사업주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로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 「민법」 제3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공인노무사 또는 세무사(이하 “법인등”이라 한다)는 사업주로부터 위임을 받아 보험료 신고, 고용보험 피보험자에 관한 신고 등 사업주가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공단에 대하여 하여야 할 보험에 관한 사무(이하 “보험사무”라 한다)를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 사업주의 범위 및 법인등에 위임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지원 등) 공단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제33조제1항에 따라 보험사무를 대행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과 그 밖의 지원금을 교부할 수 있다.
추진경위	○ 고용보험료 부과지원 - 사업시작년도: ’11년 -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과 함께 보험료 징수체계 변경 및 근로자 고용정보관리제도 도입 ※ 보험료징수법 개정(’09.12.30.) 및 하위법령 개정(’10.9.29.) -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확대)

	· ’17.7.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 국정과제 선정 · ’17.9.부터 고용부 「고용보험제도 개선TF」, 종사자·사업주단체 의견수렴, 국회 토론회 등 실시 · ’20.5.11. 환경노동위원회 및 ’20.5.20. 법제사법위원회·본회의 의결(’20.12.10. 시행) -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확대) · ’17.7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 국정과제 선정 · ’18.7월 고용보험위원회 ‘특고·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방안’ 심의·의결 · ’20.9월 특고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보험료징수법」 개정안 국회 제출 → ’21.1.5. 개정(’21.7.1. 시행) · 특고·플랫폼종사자 등 일하는 모든 국민을 실업급여로 보호하기 위한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수립·발표(’20.12.23.) - (고용보험 적용확대 경과) · ’95년 7월 고용보험제도 도입(실업급여: 30인 이상, 고안·직능: 70인 이상) · ’98년 10월 全(1인 이상 고용) 사업장으로 적용 확대 · ’04년 1월 일용근로자(1개월 미만 고용) 고용보험 당연적용 · ’12년 1월 자영업자(50인 미만 근로자 고용) 고용보험 임의적용 · ’20년 12월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 ’21년 7월 노무제공자 12개 직종 고용보험 적용 · ’22년 1월 플랫폼 기반 노무제공자 2개 직종 고용보험 적용 · ’22년 7월 노무제공자 5개 직종 고용보험 추가 적용 ○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운영 - ’11년 위탁상담에 의한 콜센터(광주) 개소(상담사 110명) - ’12년 콜센터(광주) 위탁상담원 40명 증원 - ‘15년 콜센터(인천) 개소(시간선택제 위탁상담사 92명) - ’16년 콜센터(울산) 개소(시간선택제 위탁상담사 100명) - ’19년 콜센터 상담사 350명 정규직 전환 - ‘23년 근로복지공단 직제규정 개정에 따라 고객센터로 명칭 변경 ○ 고용보험 피보험자관리 - 사업위탁년도: ’17년 - 기존 고용노동부에서 수행하던 업무를 ’17.1.1.자로 근로복지공단에 위탁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권한의 위임 등) 개정(’16.10.18.) ○ 영세사업장보험사무지원 - 사업시작년도: ’71년(산재보험료 징수가 곤란했던 건설업에 대해 보험료 징수를 위탁하고 징수비용 교부) - ’84년: 소규모 사업주의 보험사무 처리부담을 덜어주고, 산재보험의 가입촉진 및 적정한 징수를 도모하기 위해 보험사무조합으로 변경 - ’05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과 함께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명칭 변경

(2-2) 사업규모

○ 사업기간
(고용보험료 부과지원) '11년～계속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운영) '11년~'14년(운영비), '15년~(사업비)
(고용보험 피보험자관리) '17년~계속
(영세사업장보험사무지원) '19년~계속(운영비→사업비 이관)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확대) '20년 12월～계속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확대) '21년 7월～계속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계획액 기준, 기금운용계획변경 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사업비	37,140	35,772	37,033	34,787	27,609

(2-3)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고용보험료 부과지원,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운영, 고용보험 피보험자관리
(민간경상보조) 영세사업장보험사무지원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 사업 수혜자 : 사업주 및 근로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기관명	2027년 지원금액 (백만원)	지원 비율(%)	법적근거
고용보험료 부과지원	출연	근로복지공단	7,685	100.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10 고용보험법 제80조 및 시행령 제145조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운영	출연	근로복지공단	5,502	100.0	고용보험법 제80조 및 시행령 제145조
고용보험 피보험자관리	출연	근로복지공단	5,389	100.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10 고용보험법 제80조 및 시행령 제145조
영세사업장 보험사무지원	보조	근로복지공단	9,033	100.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7조

3) 기능별(내역사업별) 산출 내역

(3-1) 내역사업별 세부 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계획액(수정)(A)	2027년 정부안액(B)	증감 (B-A)
합 계	34,787	27,609	△7,178
고용보험료 부과지원	9,844	7,685	△2,159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운영	5,382	5,502	120
고용보험 피보험자관리	6,644	5,389	△1,255
영세사업장 보험사무지원	12,917	9,033	△3,884

○ 고용보험료 부과지원 **(2026년) 9,844 → (2027년) 7,685백만원, -21.9%**

- (산출)

▪ 근로자정보조사원 인건비 3,329백만원

- 기본임금 3,256백만원

· 기본임금 3,248백만원(3,069천원×180명×12월×49%)

· 휴직대체 비정규직 공정수당 8백만원

- 복리후생비 73백만원

· 복지포인트 35백만원(40만원×180명×49%)

· 자생조직지원비 7백만원(80천원×180명×49%)

· 직무역량계발비 31백만원(350천원×180명×49%)

▪ 사업장안내 1,792백만원

- 보수총액 신고 안내 775백만원(739원×214만개소×49%)
- 사업장 부과근거 안내 118백만원(560원×43만개소×49%)
- 보수총액 미신고사업장 부과근거 안내 102백만원(560원×37만개소×49%)
- 연계정산내역 통지 71백만원(560원×26만개소×49%)
- 상실자 보험료 통지 676백만원(560원×411만개소×60%×49%)
- 지역별 사업주설명회 50백만원(1,855,300원×55개소×49%)

▪ 보험료 부과자료 확보 101백만원

- 유관기관자료수집 및 자료연계협의, 사업장조사 101백만원 (315천원×12월×55개소×49%)

▪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확대 156백만원

- 가입안내 16백만원(530원×3만건)
- 피보험자격 통지 140백만원(460원×30.5만건)

▪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확대 2,277백만원

- 가입안내 85백만원(530원×160,000건)
- 피보험자격 통지 2,190백만원(460원×4,765,000건)

▪ 일용근로종사자 적용확대 30백만원
- 가입안내 및 자격통지 30백만원(560원×54,000건)

○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운영 (2026년) 5,382백만원 → (2027년) 5,502백만원, +2.2%**

- (산출)

▪ 상용임금 등 5,053백만원
- 인건비 4,879백만원
· 전일제상담사 3,078백만원(2,850천원×90명×12월)
· 반일제상담사 1,207백만원(1,547천원×65명×12월)
· 선임상담사 539백만원(2,996천원×15명×12월)
· 책임상담사 55백만원(4,589천원×1명×12월)
- 복리후생비 167백만원
· 전일제상담사 96백만원(1,069천원×90명)
· 반일제상담사 54백만원(830천원×65명)
· 선임상담사 16백만원(1,069천원×15명)
· 책임상담사 1백만원(1,069천원×1명)
- 상담사 처우개선 7백만원

▪ 일반운영비 등 449백만원
- 일반운영비 449백만원

○ 고용보험 피보험자관리 **(2026년) 6,644 → (2027년) 5,389백만원, -18.9%**

- (산출)

▪ 근로자정보입력원 인건비 2,090백만원
- 기존임금 2,060백만원(3,012천원×57명×12월)
- 복리후생비(복지포인트) 22백만원(40만원×57명)
- 휴직대체 비정규직 공정수당 8백만원

▪ 사업운영비 3,299백만원
- 피보험자격신고 제도안내 41백만원
· 사업장 안내문 제작발송 23백만원(300원×75천개)
· 신고서식 제작 18백만원(30원×10종×6만)
- 피보험자 신고서처리 및 사실관계 조사지원 3,258백만원
· 통지서제작발송 3,171백만원(300원×1,057만건)
· 신고내역사실 관계조사 등 87백만원(115천원×64개소×12월)

○ 영세사업장 보험사무지원 **(2026년) 12,917 → (2027년) 9,033백만원, - 30.1%**

- (산출)

▪ 영세사업장 보험사무지원 9,033백만원
- 보험사무대행지원금 7,933백만원
-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장 지원금 1,100백만원

4) 사업효과

(4-1) 최근 5년(2023년~2027년)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 성과지표: 15～64세 고용률(%)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목표	68.0	69.0	69.5	70.0	-
실적	69.2	69.5	69.8	-	-
달성도	101.8	100.7	100.4	-	-

- **측정산식** : (만15~64세 취업자수/만15~64세 인구)*100
- **측정방법 및 목표치 설정근거** : 최근 3년간 평균실적 및 증감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
- **자료수집방법/출처** : 국가데이터처

○ 성과지표: 보험사무대행실적(천건)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목표	-	-	-	-	5,834건
실적	-	-	-	-	-
달성도	-	-	-	-	-

- **측정산식** : 5개년 실적에 따른 표준치와 표준편차를 활용한 목표부여(편차) 방식으로 목표 설정
- **측정방법 및 목표치 설정근거** : 5개년 실적에 따른 표준치와 표준편차를 활용한 목표부여(편차) 방식으로 목표 설정
- **자료수집방법/출처 : 내부 통계**

(4-2) 성과지표 이외의 최근 4년(2023년~2026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고용보험료 부과지원)

연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3년	- 221만개 사업장에 대한 매월 보험료 부과
2024년	- 224만개 사업장에 대한 매월 보험료 부과
2025년	- 226만개 사업장에 대한 매월 보험료 부과
2026년	- 225만개 사업장에 대한 매월 보험료 부과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운영)

연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3년	- 상담응대건수 : 3,317,881건, 응대율 95.7% - 직접민원업무처리(증명원 발급 등) : 76,730건
2024년	- 상담응대건수 : 3,417,808건, 응대율 92.9% - 직접민원업무처리(증명원 발급 등) : 164,439건
2025년	- 상담응대건수 : 3,149,384건, 응대율 90.1% - 직접민원업무처리(증명원 발급 등) : 230,159건
2026년	- 상담응대건수 : 1,839,686건, 응대율 84.9% - 직접민원업무처리(증명원 발급 등) : 296,862건

(고용보험 피보험자관리)

연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3년	= 피보험자 14,899천명 관리
2024년	- 피보험자 15,365천명 관리
2025년	- 피보험자 15,556천명 관리
2026년	- 피보험자 15,925천명 관리

(영세사업장보험사무지원)

연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3년	- 위탁사업장수 894천개소(위탁률 33.3%), 지원금액 14,006백만원
2024년	- 위탁사업장수 952천개소(위탁률 37.0%), 지원금액 13,563백만원
2025년	- 위탁사업장수 1,018천개소(위탁률 37.5%), 지원금액 13,746백만원
2026년	- 위탁사업장수 1,060천개소(위탁률 36.4%), 지원금액 8,700백만원

(4-3) 향후(2027년 이후) 기대효과

○ **(고용보험료 부과지원)**
- 근로자의 월 보수, 입·퇴사 등 근로자 가입정보 관리를 통해 적용근로자 누락방지 등 사회안전망 및 보험재정 건전성 강화

○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운영)**
- 고객센터 운영 효율화 및 상담 인프라 확대를 통한 상담서비스 품질 향상 및 고객만족도 제고

○ **(고용보험 피보험자관리)**
- 피보험자에 대한 입·퇴사 등 관리를 통해 적용근로자 누락방지 등 보험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 보험재정 건전성 도모

○ **(영세사업장보험사무지원)**
- 보험사무 위탁률 제고를 통한 소규모 사업주의 보험사무 처리부담 경감 및 적용·징수업무의 효율성 제고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고용보험료 부과지원)

- 매년 3.15까지 보수총액신고서 제출(사업주)→월평균보수를 근거로 월별 보험료 산정(근로복지공단)

구 분		신고종류	기한	관련법령
보수관리	보수총액신고	보수총액신고서	매년 3. 1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10 제1항~제8항
	보수총액 착오신고	보수총액 수정신고	변경사유 발생 시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운영)

고객 전화	⇒	상담콜 인입	⇒	1차(IB)상담	⇒	2차상담
대표번호 1588-0075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고용보험 가입·부과 등 고용보험 사업에 대한 상담 서비스 제공		1차 상담에서 해결되지 않는 민원은 선임/책임 상담사가 상담 서비스 제공
				⇓		
				OB상담 1차 상담 중 바로 상담이 안 되는 상담 요청 건은 종료 후 재 안내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운영)

- 피보험자의 입·퇴사 신고(사업주)→ 신고내역 확인 및 통지(근로복지공단) → 월별보험료 산정(근로복지공단)
- 퇴사 및 이직확인신고(사업주)→ 신고내역 확인 및 처리(근로복지공단) → 실업급여 지급(고용노동부)

구 분		신고종류	기한	관련법령
피보험자관리	입 사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	다음달 15일	고용보험법 제13조~제18조
	퇴 사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	
	휴 직	휴직등신고서	14일 이내	
	전근(전보)	전보신고서	〃	
	정보 변경	정보변경신고서	〃	
	일 용 직	근로내용확인신고서	다음달 15일	

(영세사업장보험사무지원)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사업목적에 맞게 보험사무대행기관을 인가하고, 인가받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보험관계성립신고, 피보험자신고, 보수총액신고 등 보험사무 업무를 수행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을 산정 및 지급

보험사무대행기관	➡	근로복지공단	➡	보험사무대행기관	➡	근로복지공단	➡	보험사무대행기관	➡	근로복지공단
인가신청		인가결정		위탁계약 체결, 보험사무업무대행		보험사무대행 지원금 산정		지원금 신청		지원금 대사 및 지급, 사후관리

8) 최근 3년간(2024년~2026년)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8-1) 정부 사업평가

구분	연도	주요내용
보조사업 연장평가	2024년	○ 의견 : 사업방식 변경 ○ 결과 :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효과 등에 대한 점검·관리를 통해 사업 내실화 필요, 단순 편익을 위한 대행 서비스 이용 수요에 대한 경계가 필요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2026년	○ 의견 : 다층 전달체계로 인해 정책부처·집행기관·민간 대행기관 간 책임 주체가 분산되어 정책성과에 대한 책임성 확보에 한계, 지정형 보조사업 방식은 수행 효율성과 비용 적정성에 대한 외부 검증을 제한할 가능성 잔존 ○ 결과 : 감액

(8-2) 국회 지적사항: 해당없음

(8-3) 감사원, 총리실, 기타(언론, 시민단체 등) 결과: 해당없음

4. 최근 4년간(2023년~2026년) 결산내역

1) 결산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연도	당초 계획액	수정 계획액 (A)	전년도 이월액	기금변경 증감액 등	계획 현액	집행액 (B)	집행률 (B/Ax100)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3년	37,140	37,140	-	-	37,140	36,199	97.5	-	941
2024년	35,772	35,772	-	-	35,772	35,433	99.1	-	339
2025년	37,033	37,033	-	-	37,033	35,677	96.3	-	1,356
2026년	34,787	34,787	-	-	34,787	25,856	74.3	-	-

2) 연도별 결산 주요사항

연도	유형	금액 (백만원)	사유
2023년	불용	941	플랫폼 지원금 예산 추계시 추정 행정대상과 실제 집행대상 차이로 미집행액 발생
2024년	불용	339	배달플랫폼 이용 감소에 따른 지원대상 신고건수 하락, 지원금 제급제외 사유인 과세소득 3억 이상 사업장 신고분 증가로 잔여 예산 발생
2025년	불용	1,356	지원대상 근로자·사업장 수 증가율 둔화, 지급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과세소득 3억원 이상 사업장 신고분 증가로 잔여 예산 1,356백만원 발생

5. 기타 추가자료: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8) 고용보험사업 부정수급방지(1083-357)

1. 사업 총괄 정보

1) 사업 기본 정보

(1-1) 일반 정보

소관	실·국	과·팀	기금	계정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고용보험기금	

(1-2) 코드·명칭 정보

구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080	08D	1000	1083	357
명칭	사회복지	고용	고용창출	고용보험징수관리	고용보험사업 부정수급방지

2)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N	Y	N	N	N	N

3)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Y	N	N	N	N	-	-

4) 기능별(내역사업별)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소관	사업시행주체
고용보험사업 부정수급방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2. 지출계획 총괄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사업명	2025년 결산액	2026년 당초계획액 (A)	2026년 수정계획액	2027년 요구액	2027년 정부안액 (B)	증감액 (B-A)	증감률 (B-A) /A×100
고용보험사업 부정수급방지	3,430	4,167	4,167	3,542	3,542	△625	△15.0

1)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계획액 (수정)	2025년 계획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계획액 (수정)	2026년 계획 현액	2026년 집행액 (7월말)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4,285	4,285	3,430	-	855	4,167	4,167	1,652	3,542
고용보험사업 부정수급방지	4,285	4,285	3,430	-	855	4,167	4,167	1,652	3,542

2) 비목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계획액 (수정)	2025년 계획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계획액 (수정)	2026년 계획 현액	2026년 집행액 (7월말)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4,285	4,285	3,430	-	855	4,167	4,167	1,652	3,542
·일반수용비(210-01)	434	434	434	-	0	412	412	127	487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56	56	56	-	0	56	56	22	56
·피복비(210-03)	50	50	50	-	0	50	50	50	50
·특근매식비(210-05)	18	18	17	-	1	18	18	6	18
·국내여비(220-01)	90	90	90	-	0	90	90	41	90
·사업추진비(240-01)	21	21	21	-	0	21	21	12	21
·특정업무경비(250-03)	335	335	334	-	1	335	335	183	335
·포상금(310-03)	3,240	3,240	2,387	-	853	3,048	3,048	1,166	2,444
·자산취득비(430-01)	41	41	41	-	0	137	137	45	41

3. 사업 설명

1) 사업목적·내용

(1-1) 고용보험사업 부정수급방지

사업목적	고용보험재정 건전성 도모
사업내용	실업급여, 모성보호 등 고용보험 사업의 부정수급 예방 활동, 고용보험수사관 제도 운영, 부정수급 적발을 위한 각종 지원 활동 및 신고포상금 지급

2) 사업개요

(2-1)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사업근거	○ 「사법경찰직무법」 제5조제51호, 제6조제48호, 「고용보험법」 제112조 및 제116조, 「평생직업능력법」 제62조의3 등
추진경위	○ 최초 사업시작년도 : '08년 ○ 사업추진배경 · '07.12월 브로커 개입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건을 계기로 부정수급 전담팀 구성 · '08.01월 고용보험사업 부정수급방지사업 개시 · '10.12월 고용보험 부정수급 방지 보완대책 수립·시행 · '13.12월 복지사업 부정수급 제도개선 종합대책(국무조정실 관계부처 합동) · '14.01월 고용보험 부정수급 방지대책 마련 · '15.01월 6개청 부정수급조사과(청장 직속) 설치 · '17.12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으로 수사권 부여 · '18.03월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 47개 관서 부정수급 조사 업무 일원화 · '20.08월 부정수급 제재강화 및 고용안정사업에 대한 수사권 도입 · '22.01월 광역·기획조사 활성화를 위한 부정수급 기획조사 기본계획 시달

(2-2) 사업규모

○ 사업기간 : 계속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계획액 기준, 기금운용계획변경 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사업비	3,567	4,185	4,285	4,167	3,542

(2-3)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 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3) 기능별(내역사업별) 산출 내역

(3-1) 내역사업별 세부 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계획액(수정)(A)	2027년 정부안액(B)	증감 (B-A)
합 계	4,167	3,542	△625
고용보험사업 부정수급방지	4,167	3,542	△625

○ 고용보험사업 부정수급방지 **(2026년) 4,167 → (2027년) 3,542백만원, △15.0%**

- (설명) 포상금 집행실적, 자산취득비 특이 예산 소요 해소 등에 따라 일부 감액 및 고용보험수사관 역량 제고 비용 일부 증액
- (산출) 3,542백만원 = 운영비 1,098백만원 + 신고포상금 2,444백만원

4) 사업효과

(4-1) 최근 5년(2023년~2027년)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 **성과지표: 부정수급 적발액(백만원)**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목표	-	-	-	50,744	50,744
실적	52,387	45,668	50,209	-	-
달성도	-	-	-	-	-

※ '26부터 성과지표 설정

- **측정산식 :** 해당연도 고용보험사업 부정수급 적발액
- **측정방법 및 목표치 설정근거 :** 최근 5년 평균 적발액
- **자료수집방법/출처 : 한국고용정보원 추출**

(4-2) 성과지표 이외의 최근 4년(2023년~2026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연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3년	부정수급 24,454건(524억원) 적발
2024년	부정수급 25,764건(457억원) 적발
2025년	부정수급 27,064건(502억원) 적발
2026년 7월	부정수급 14,653건(254억원) 적발

(4-3) 향후(2027년 이후) 기대효과

○ 고용보험 부정수급 예방 및 적발 등을 통해 고용보험 재정건전성 제고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신고포상금 지급)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각종 급여 및 지원금을 지급받은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지원

[신고인]		[지방관서]		[신고인]		[지방관서]
고용보험 부정수급 신고	⇨	신고일부터 30일 이내 부정수급 여부 조사 → 부정수급 적발 시 조사 결과 통보	⇨	포상금 신청	⇨	포상금 지급 여부 검토 → 신청일부터 14일 이내 포상금 지급 * 피신고인 심사청구, 소송 등 이의제기 시 법률관계 확정 후 지급

8) 최근 3년간(2024년~2026년)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8-1) 정부 사업평가

구분	연도	주요내용
재정사업 자율평가	2024년	○ 보통
통합재정사업성과평가	2025년	○ 집행 부진 등으로 인한 감액 필요

(8-2) 국회 지적사항: 해당없음

(8-3) 감사원, 총리실, 기타(언론, 시민단체 등) 결과: 해당없음

4. 최근 4년간(2023년~2026년) 결산내역

1) 결산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연도	당초 계획액	수정 계획액 (A)	전년도 이월액	기금변경 증감액 등	계획 현액	집행액 (B)	집행률 (B/Ax100)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3년	3,567	3,567	-	-	3,567	3,466	97.2	-	101
2024년	4,185	4,185	-	-	4,185	3,546	84.7	-	639
2025년	4,285	4,285	-	-	4,285	3,430	80.0	-	855
2026년	4,167	4,167	-	-	4,167	1,652	39.6	해당없음	해당없음

※ 2026년은 7월말 기준

2) 연도별 결산 주요사항

연도	유형	금액(백만원)	사유
2023년	불용	101	- 집행 잔액 불용
2024년	불용	639	- 집행 잔액 불용
2025년	불용	855	- 집행 잔액 불용

5. 기타 추가자료: 해당없음

사 업 명
(9) 내일배움카드(고보)(1151-352)

1. 사업 총괄 정보

1) 사업 기본 정보

(1-1) 일반 정보

소관	실·국	과·팀	기금	계정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	인적자원개발과	고용보험기금	-

(1-2) 코드·명칭 정보

구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080	08D	1100	1151	352
명칭	사회복지	고용	직업능력개발	실업자및근로자 능력개발지원	내일배움카드 (고보)

2)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N	Y	N	N	N	N

3)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Y	N	N	N	/N	-	-

4) 기능별(내역사업별)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내역사업명	소관	사업시행주체
일반직종 훈련	직업능력정책국 인적자원개발과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
국가기간산업직종 훈련	직업능력정책국 인적자원개발과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직업능력정책국 인적자원개발과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

2. 지출계획 총괄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사업명	2025년 결산액	2026년 당초계획액 (A)	2026년 수정계획액	2027년 요구액	2027년 정부안액 (B)	증감액 (B-A)	증감률 (B-A) /A×100
내일배움카드(고보)	543,471	508,979	508,979	432,632	410,980	△97,999	△19.3

1)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계획액 (수정)	2025년 계획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계획액 (수정)	2026년 계획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603,198	603,198	543,471	37	59,690	508,979	509,016	327,000	410,980
· 일반직종훈련	332,890	332,890	278,021	-	54,869	266,039	266,039	179,993	225,473
· 국가기간산업직종훈련	205,160	191,160	186,798	-	18,362	159,995	159,995	106,056	121,834
·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64,103	78,103	77,732	-	371	82,122	82,122	40,616	62,850
· 운영비 등	1,045	1,045	920	37	88	823	860	335	823

2) 비목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계획액 (수정)	2025년 계획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계획액 (수정)	2026년 계획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603,198	603,198	543,471	37	59,690	508,979	509,016	327,000	410,980
· 일반수용비(210-01)	460	460	418	-	52	466	466	192	466
· 일반용역비(210-14)	2,600	2,600	2,486	-	114	2,400	2,400	1,680	2,400
· 국내여비(220-01)	65	65	61	-	4	62	62	42	62
· 사업추진비(240-01)	28	28	27	-	1	27	27	7	27
· 관서업무추진비(240-02)	46	46	46	-	-	44	44	43	44
· 일반연구비(260-01)	250	250	213	37	-	-	37	37	-
· 정책연구비(260-02)	-	-	-	-	-	28	28	-	28
· 기타보전금(310-04)	266,663	266,663	262,044	-	4,619	239,717	239,717	144,992	182,284
· 보험금(320-04)	332,890	332,890	278,021	-	54,869	266,039	266,039	179,993	225,473
· 공사비(420-03)	96	96	61	-	35	96	96	-	96
· 자산취득비(430-01)	100	100	93	-	7	100	100	13	100

3. 사업 설명

1) 사업목적·내용

(1-1) 일반직종 훈련

사업목적	급격한 기술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생애에 걸친 역량개발 향상 등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 지원
사업내용	실업·재직 등 경제활동 상태에 관계없이 1인당 5년간 300만원(소득수준 등에 따라 200만원 추가 지원) 이내 훈련비 지원 등

(1-2) 국가기간산업직종 훈련

사업목적	금속, 동력, 전기, 전자 등 우리나라 중요 산업분야에서 부족하거나 새로운 수요가 예상되는 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여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기능인력 양성·공급
사업내용	인력수급 상황, 산업별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하여 선정·고시된 직종에 대한 훈련 실시, 훈련비 및 훈련장려금(특별훈련수당) 지원

(1-3)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사업목적	산업구조 변화 및 고용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직자, 자영업자 등의 고용유지, 이·전직을 신속히 지원하고 인력양성이 필요한 산업계의 인력수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장 수요 반영 훈련을 수시 공급하고 훈련비 등 지원
사업내용	AI 및 육성산업·직종 등에 대해 훈련비 및 훈련장려금(특별훈련수당 추가지급) 지원

2) 사업개요

(2-1)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사업근거	○「국민 평생 직업능력개발법」 제12조, 제15조, 제17조 및 제18조 **제12조(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고용창출,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사람에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대상, 훈련과정의 요건, 훈련수당,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직종(이하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이라 한다)에 대한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필요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경제의 기간(基幹)이 되는 산업 중 인력이 부족한 직종 2. 정보통신산업·자동차산업 등 국가전략산업 중 인력이 부족한 직종 3. 그 밖에 산업현장의 인력수요 증대에 따라 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직종 ②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의 선정기준 및 절차, 훈련대상, 훈련과정의 요건, 훈련수당,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재직 중인 근로자의 자율적인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제1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수강 비용 2.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과정의 수업료 및 그 밖의 납부금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를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근로자를 우대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에 고용된 근로자 2. 제3조제4항제9호 또는 제10호에 따른 근로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의 요건·내용·절차·수준 및 우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직업능력개발계좌의 발급 및 운영)**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2조 및 제17조에 따라 국민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지원하는 계좌(이하 "직업능력개발계좌"라 한다)를 발급하고 이들의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이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받은 국민이 직업능력개발계좌를 활용하여 필요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직업능력개발계좌에서 훈련 비용이 지급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이하 “계좌적합훈련과정”이라 한다)에 대한 정보 제공 2. 직업능력개발 진단 및 상담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받은 국민에게 직업·진로 상담 및 경력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계좌의 발급, 계좌적합훈련과정의 정보 제공, 직업능력개발 진단 및 상담,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계좌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추진경위	<일반직종 훈련> - ‘98년 실업자의 (재)취업을 촉진하고자 취·창업훈련 및 고학력 미취업자 대상 취업유명분야 훈련 실시 - ’08.9월 공급자 중심의 기존 직업훈련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고자 직업능력개발계좌제 도입 - ‘11년 계좌제 훈련 전면 실시(물량배정방식 실업자훈련 폐지) - ’15년 직업능력개발계좌제와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운영방식 통합 - ‘20년 실업자·근로자 내일배움카드 제도를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통합 <국가기간산업직종훈련> - ’84년 신체장애자, 생활보호대상자 및 비진학 청소년 등 취약계층 대상 직업훈련 실시 - ‘97년 실업대책 및 인력부족직종 양성 사업의 일환으로 전환 - ’11년 민간우선선정직종훈련과 대한상의우선선정직종훈련 통합 및 명칭 변경(→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 ‘15년 직업능력계좌제와 운영방식 및 실시규정 등 통합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 ’22년 종사자 및 산업계 등의 산업환경 변화 등에 따라 고용유지, 이·전직 등을 위해 희망하는 훈련수요에 기반한 훈련과정 실시

(2-2) 사업규모

○ 사업기간 : ‘97년~계속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계획액 기준, 기금운용계획변경 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사업비	887,312	734,204	603,198	508,979	410,980

(2-3)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지방고용노동관서)

○ 사업 수혜자 : 15세 이상의 실업자, 영세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3) 기능별(내역사업별) 산출 내역

(3-1) 내역사업별 세부 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계획액(수정)(A)	2027년 정부안액(B)	증감 (B-A)
합 계	508,979	410,980	△97,999
일반직종 훈련	266,039	225,473	△40,566
국가기간산업직종 훈련	159,995	121,834	△38,161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82,122	62,850	△19,272
운영비 등	823	823	-

○ 일반직종 훈련: **(2026년) 266,039 → (2027년) 225,473백만원, △15.2%**

- (설명) 훈련인원 감소 및 지원단가 인상

- (산출) 훈련비 등: 225,473백만원(=455,500명×495천원)

○ 국가기간산업직종 훈련: **(2026년) 159,995 → (2027년) 121,834백만원, △23.9%**

- (설명) 훈련인원 감소, 훈련장려금 및 특별훈련수당(전년동) 등

- (산출) 훈련비 등: 121,834백만원(=18,500명×6,586천원)

○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2026년) 82,122 → (2027년) 62,850백만원, △23.5%**

- (설명) 훈련인원 감소, 훈련장려금 및 특별훈련수당(전년동) 등

- (산출) 훈련비 등: 60,450백만원(=16,400명×3,686천원)
  운영비: 2,400백만원(=10개소×240천원)

4) 사업효과

(4-1) 최근 5년(2023년~2027년)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 **성과지표:** K-Digital Training 취업률(단위: %)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목표	68.2	-	-	-	-
실적	57.5	-	-	-	-
달성도	84.3	-	-	-	-

○ **성과지표:** 폴리텍하이테크과정 취업률(단위: %)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목표	80.3	-	-	-	-
실적	80.1	-	-	-	-
달성도	99.8	-	-	-	-

○ **성과지표:** 일학습병행 학습근로자수료율(단위: %)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목표	78.8	-	-	-	-
실적	78.6	-	-	-	-
달성도	99.7	-	-	-	-

○ **성과지표:** 국민내일배움카드훈련인원(단위: 명)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목표	-	786,600	690,258	-	-
실적	-	664,681	661,994	-	-
달성도	-	84.5	95.9	-	-

○ **성과지표:** 훈련 양성률(단위: %)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목표	-	-	-	89.8	89.8
실적	-	-	-	-	-
달성도	-	-	-	-	-

- **측정산식 :** (내일배움카드 수료인원/훈련실시인원) x 0.8(가중치) + (폴리텍 훈련 수료인원/훈련실시인원) x 0.2(가중치)

- **측정방법 및 목표치 설정근거 :** 최근 3년 실적 평균치*
  * (22) 88.8 (23) 89.7 (24) 89.5

- **자료수집방법/출처 :** 전수조사(한국고용정보원 및 한국폴리텍대학)

(4-2) 성과지표 이외의 최근 4년(2023년~2026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연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3년	실시인원 804,936명, 655,434백만원 지원
2024년	실시인원 645,858명, 571,022백만원 지원
2025년	실시인원 624,818명, 543,471백만원 지원
2026년	실시인원 378,271명, 327,000백만원 지원(2026.7월말 기준)

(4-3) 향후(2027년 이후) 기대효과: 산업구조, 노동시장 변화에 따른 이·전직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업훈련 수요에 반영하고 다양한 훈련과정을 공급하여 국민의 고용안정과 노동이동, 생애에 걸친 직업능력개발 등에 기여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일반직종 및 국가기간산업직종훈련)

훈련과정 심사 계획 공고	⇨	훈련과정 선정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	훈련 실시	⇨	훈련비 등 지급
고용부·심평원		고용부·심평원		고용센터		훈련생·훈련기관		고용센터

○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운영기관 공고·심사	⇨	훈련 수요조사 및 훈련과정 심사	⇨	훈련과정 실시·운영	⇨	비용·수료 처리	⇨	운영비용 등 지급
고용부		운영기관 (RSC, ISC)		훈련기관 고용센터		한고원		고용센터

8) 최근 3년간(2024년~2026년)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8-1) 정부 사업평가

구분	연도	주요내용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평가	2024년	○ 의견 : 집행률 제고방안 마련 등 ○ 결과 - 일반직종훈련(구직자): 개선필요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구직자): 개선필요 -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양호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평가	2025년	○ 의견 : 집행률 제고방안 마련 등 ○ 결과 - 일반직종훈련(구직자): 개선필요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구직자): 개선필요 -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개선필요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2026년	○ 의견 - (집행 효율성) 내일배움카드제 내 유사 훈련 사업과의 직종의 중복성과 프로그램의 중복성을 검토하여 예산의 비효율적인 부분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확인 필요 - (성과 달성도) 종합적이고 도전적인 성과목표 발굴이 요구됨(종합적으로 성과평가와 환류가 가능하도록 검토 필요 ○ 결과 - (집행률 효율성 제고) '26년부터 국기 훈련 중 인공지능 등 전략산업직종을 KDT 훈련으로 旣 통합하였음 - (성과지표 발굴) 평생에 걸친 직업능력개발 지원을 위해 그간 全 연령 ·분야의 직업훈련을 대표하는 내배카 훈련 참여인원을 성과지표로 설정

(8-2) 국회 지적사항

구분	연도	주요내용
예결위	2024년	○ 지적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 사업과 KDT 사업 간 중복해소 방안 마련하여 효율적 예산 집행 필요 ○ 조치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 사업과 KDT 사업 간 중복해소를 위한 직종 개편 완료

(8-3) 감사원, 총리실, 기타(언론, 시민단체 등) 결과: 해당없음

4. 최근 4년간(2023년~2026년) 결산내역

1) 결산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연도	당초 계획액	수정 계획액 (A)	전년도 이월액	기금변경 증감액 등	계획 현액	집행액 (B)	집행률 (B/Ax100)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3년	887,312	887,312	76	-	887,388	655,434	73.9	32	231,922
2024년	734,204	721,342	32	△12,862	721,374	571,022	79.2	-	150,352
2025년	603,198	603,198	-	-	603,198	543,471	90.1	37	59,690
2026년	508,979	508,979	37	-	509,016	327,000	64.2	해당없음	해당없음

2) 연도별 결산 주요사항

연도	유형	금액 (백만원)	사유
2023년	이월	32	용역계약이 익년도 종료되어 일반연구비 32백만원 이월
2024년	불용	150,352	훈련기간이 장기과정인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 참여 저조로 인한 불용 발생
2025년	이월	37	용역계약이 익년도 종료되어 일반연구비 32백만원 이월

5. 기타 추가자료: 해당없음

사 업 명
(10) 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1152-350)

1. 사업 총괄 정보

1) 사업 기본 정보

(1-1) 일반 정보

소관	실·국	과·팀	기금	계정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	기업훈련지원과	고용보험기금	-

(1-2) 코드·명칭 정보

구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080	08D	1100	1152	350
명칭	사회복지	고용	직업능력개발	사업주능력개발지원금	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

2)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N	Y	N	N	N	N

3)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Y	N	Y	Y	N	100	-

4) 기능별(내역사업별)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내역사업명	소관	사업시행주체
일반훈련	고용노동부, 기업훈련지원과	한국산업인력공단
현장맞춤형체계적훈련	고용노동부, 기업훈련지원과	한국산업인력공단
운영비	고용노동부, 기업훈련지원과	한국산업인력공단

2. 지출계획 총괄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사업명	2025년 결산액	2026년 당초계획액 (A)	2026년 수정계획액	2027년 요구액	2027년 정부안액 (B)	증감액 (B-A)	증감률 (B-A) /A×100
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	291,799	249,668	249,668	237,136	235,749	△13,919	△5.5

1)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계획액 (수정)	2025년 계획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계획액 (수정)	2026년 계획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300,670	300,670	291,799	-	8,871	249,668	249,668	167,177	235,749
· 일반훈련	195,424	211,351	206,860	-	4,491	210,237	210,237	132,453	194,478
· 혁신형 기업훈련	51,867	38,867	35,535	-	3,332	-	-	-	-
· 현장맞춤형체계적훈련	32,706	29,279	28,431	-	849	35,899	35,899	31,192	38,039
· 지역산업맞춤형훈련	19,041	19,541	19,446	-	95	-	-	-	-
· 운영비	1,632	1,632	1,527	-	105	3,532	3,532	3,532	3,232

2) 비목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계획액 (수정)	2025년 계획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계획액 (수정)	2026년 계획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300,670	300,670	291,799	-	8,871	249,668	249,668	167,177	235,749
· 일반용역비(210-14)	6,007	6,007	5,800	-	207	9,262	9,262	9,262	8,962
· 민간경상보조(320-01)	1,365	1,365	1,365	-	-	4,230	4,230	4,230	7,695
· 보험금(320-04)	286,659	286,659	277,996	-	8,663	231,037	231,037	149,574	218,353
· 출연금(350-02)	6,639	6,639	6,638	-	1	5,139	5,139	4,111	739

3. 사업 설명

1) 사업목적·내용 : 사업주가 재직노동자, 채용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경우 소요비용 일부를 지원

(1-1) 일반훈련

사업목적	훈련 비용을 지원해 인적자원개발 및 기업 경쟁력 제고
사업내용	훈련과정을 인정받아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경우 기업 규모별로 훈련에 소요된 비용 지원

(1-2) 현장맞춤형체계적훈련

사업목적	중소기업의 체계적인 직무훈련 지원 서비스 제공
사업내용	중소기업 훈련컨설팅(능력개발전담주치의, 중소기업AI훈련확산센터 등)을 통한 기업 맞춤형 훈련프로그램 개발·실시 지원, 민간주치의 육성, 행정 지원

2) 사업개요

(2-1)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사업근거	○「고용보험법」 제27조(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지원), 「고용보험법」 제31조 (직업능력개발의 촉진) 및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제20조(사업주 및 사업주단체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27조(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의 직업능력을 개발·향상시키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 지원할 수 있다.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기간제근로자 2.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의 단시간근로자 3.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파견근로자 4. 일용근로자 5.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제31조(직업능력개발의 촉진)** ①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의 직업능력개발·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거나 이를 실시하는 자에게 그 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직업능력개발 사업에 대한 기술지원 및 평가 사업 2. 자격검정 사업 및 「숙련기술장려법」 에 따른 숙련기술 장려 사업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 개발·향상과 인력의 원활한 수급(需給)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사업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0조(사업주 및 사업주단체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하는 사업주나 사업주단체·근로자단체 또는 그 연합체(이하 "사업주단체등"이라 한다)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자격검정사업 3. 「고용보험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기업(이하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 한다) 또는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4.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기숙사를 포함한다) 및 장비·기자재를 설치·보수하는 등의 사업 5.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조사·연구,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 및 매체의 개발·보급 등의 사업 6. 삭제 <2010. 5. 31.>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를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등을 우대할 수 있다. 1. 해당 사업주 외의 다른 사업주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2.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3.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노사협의회에서 의결된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에 따라 실시되는 직업능력개발훈련(노사협의회가 없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대표자와 협의하여 수립된 훈련계획에 따라 실시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말한다) 4. 유급휴가(「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는 제외한다)를 주어

	서 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5.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의 사업주가 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7.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준고령자를 대상(전직하려는 경우에 한정한다)으로 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의 요건·내용·절차·수준 및 우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9조(사업주 및 사업주단체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① 법 제20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업의 학습조직·인적자원 개발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 2. 근로자의 경력개발관리를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 3.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정보망 구축사업 4. 직업능력개발사업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사업 5. 건설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6. 「고용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의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7.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이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라 한다) 및 인력개발담당자(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기업 등에서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기획·운영·평가 등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능력개발사업 8. 그 밖에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② 법 제20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란 우선지원 대상기업을 말한다. ③ 법 제20조에 따른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근로자단체 또는 그 연합체(이하 "사업주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한 비용의 지원·융자 및 우대 지원 등에 관하여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42조·제48조·제49조·제51조·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다.
추진경위	- '95.7.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근거 마련 - '05.7. 사업주 수요가 많은 단기훈련 지원 확대(3일 20시간 이상

	→중소기업 1일 8시간 이상, 대기업 2일 16시간 이상,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개정) - '17.12. 중소기업훈련지원센터 설치, 중소기업 고숙련·신기술 훈련(고급훈련) 지원 확대(NCS 100% → 300%), 중소기업 체계적 현장훈련 지원 근거 등 규정 등 신설 - '19.1. 공통법정훈련(개인정보보호, 성희롱예방교육 등) 지원 중단, 법정직무훈련 지원율 인하, 과다 공급과정 지원율 인하 등 재정 효율화 시행 - '19.9. 자체훈련과 위탁훈련을 혼합하여 훈련 시 지원금 지급기준(집체훈련 수료인원이 전체 훈련실시 인원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 지원) 등 신설 - '22.1. 최소훈련시간 단축(중소기업 1일 8시간 이상, 대기업 2일 16시간 이상→기업규모와 관계없이 4시간 이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개정) - '22.下. 기업직업훈련 혁신 및 활성화 방안으로 3대 혁신 사업(기업직업훈련카드, 패키지 구독형 원격훈련, 자체훈련 탄력운영제) 및 능력개발전담주치의 운영 시범 도입 - '25.1. 기업의 실제 훈련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절차는 줄이고, 훈련품질은 높인 '혁신형 기업훈련(기업훈련 탄력운영제, 중소기업 근로자주도 훈련, 최신원격훈련)'을 시범 도입

(2-2) 사업규모

○ 사업기간 : 계속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계획액 기준, 기금운용계획변경 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사업비	401,405	369,690	300,670	249,668	235,749

(2-3)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보조, 출연

○ 사업시행주체 : 한국산업인력공단

○ 사업 수혜자 :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기관명	2027년 지원금액 (백만원)	지원 비율(%)	법적근거
현장맞춤형 체계적훈련	보조	한국산업 인력공단	7,695백만원	100.0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실시규정(고시) 제3조 3항, 제11조
현장맞춤형 체계적훈련	출연	한국산업 인력공단	739백만원	100.0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14조

3) 기능별(내역사업별) 산출 내역

(3-1) 내역사업별 세부 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계획액(수정)(A)	2027년 정부안액(B)	증감 (B-A)
합 계	249,668	235,749	△13,919
일반훈련	210,237	194,478	△15,759
현장맞춤형체계적훈련	35,899	38,039	2,140
운영비	3,532	3,232	△300

○ **일반훈련: (2026년) 210,237 → (2027년) 194,478백만원, △7.5%**

① 일반직무훈련: 111,494백만원
- (설명) 재직근로자 등의 훈련을 위해 자체·위탁 및 집체·원격훈련 방식의 일반직무 훈련을 지원
- (산출내역) 1,040,187명×107,186원 <△18,479백만원 >
  ↳ 일반 위탁훈련을 축소하고 자체훈련 확대

② 유급휴가훈련: 15,864백만원
- (설명) 5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고 20시간 이상 훈련을 실시하여 숙련인력 양성지원 필요
- (산출내역) 11,380명×1,394,000원 <전년 동>

③ 중소기업재직노동자 지원: 37,120백만원
- (설명) 재직자 직무능력 향상에 필요한 훈련과정을 기업훈련 여건 및 수요에 맞게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도록 훈련비 지원을 강화한 동 사업 확대(AI 과정 및 비수도권 우대)
- (산출내역) 172,339명×215,389원 <△5,300백만원 >
  ↳ 非 AI훈련(16,811명) + AI 기초훈련(100,000명) + AI 융합훈련(55,528명)

④ 최신원격훈련: 30,000백만원
- (설명) 훈련시장에서 수요가 높은 훈련기관이 보유한 고품질 원격훈련 콘텐츠를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
  ↳ 비용지원방식 개선(과정단위 진도율이 아닌 1인당 이수시간 충족시 지원)을 통해 노동자가 필요부분을 선택수강(넷플릭스 방식)할 수 있어 현장만족도가 높은 구독형 원격훈련인 최신원격훈련 확대('26. 22개 기관 → '27. 30개 기관 선정목표)
- (산출내역) 214,285명×140천원 <전년 동>

○ **현장맞춤형 체계적훈련: (2026년) 35,899 → (2027년) 38,039백만원, +6.0%**

① 체계적현장훈련: 16,100백만원
- (설명) 기업 현장의 개선과제를 문제해결 방식으로 구성하여 훈련과정을 개발하고, 실무중심의 문제 해결 훈련을 통해 직무역량 개발지원
- (산출내역) 2,300개소×7백만원 <전년 동>

② 능력개발전담주치의: 5,730백만원
- (설명) 기업DB를 활용하여 AI 훈련이 미흡한 기업을 발굴하고, 훈련에 시간 투자가 어려운 중소기업 찾아가는 훈련 컨설팅 확대를 위해 관련 운영비 증액
- (산출내역) 운영비 (32개소×170.3백만원) + 기업진단관리시스템 유지 관리비 280백만원 <전년 동>

③ 중소기업AI훈련확산센터: 15,470백만원
- (설명) 중소기업의 AI 훈련 확산을 위해 지역별 전문기관 선정 → AI분야 등 역량있는 전문인력을 AI 훈련코치로 선발·육성하여 중소기업 AI역량진단·훈련체계 수립 및 AI+PBL훈련과정 개발 지원
- (산출내역) 15개센터×363백만원 + 3천개소×750천원 + 750개소×7,830천원 + 300개소×6,330천원 <+6,540백만원>

↳ AI 훈련 확산을 위해 권역별 개소수 확대(10→15개소), AI 청년코치 300명 도입

④ 기업인적자원개발인증: 739백만원
- (설명) 인적자원개발 및 관리 우수기관에 대해 인증 수여 및 각종 혜택(감독 면제, 가점 부여 등) 제공 유지
- (산출내역) 123개소×6,010천원 <전년 동>

○ **현장맞춤형 체계적훈련: (2026년) 3,532 → (2027년) 3,232백만원, △8.5%**
- (설명) 사업주훈련 성과관리, 사업수행을 위한 기본경비 등 운영비, 사업주훈련 업무 프로세스(과정 적정성 심사, 비용 지급 등)에 AI 시스템 유지관리비용, 청년코치 교육비용 등
- (산출내역) 1,632백만원(사업운영비) + 900백만원(유지관리비) + 700백만원(청년코치 교육 등)

4) 사업효과

(4-1) 최근 5년(2023년~2027년)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 **성과지표:** K-Digital Training 취업률(단위: %)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목표	68.2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실적	57.5	-	-	-	-
달성도	84.3	-	-	-	-

○ **성과지표:** 폴리텍하이테크과정 취업률(단위: %)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목표	80.3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실적	80.1	-	-	-	-
달성도	99.8	-	-	-	-

○ **성과지표:** 일학습병행학습근로자 수료율(단위: %)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목표	78.8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실적	78.6	-	-	-	-
달성도	99.7	-	-	-	-

○ **성과지표:**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인원(단위: %)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목표	68.2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실적	57.5	-	-	-	-
달성도	84.3	-	-	-	-

○ **성과지표:** K-Digital Training 취업률(단위: 명, %)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목표	(신규)	786,600	690,258	(삭제)	(삭제)
실적	-	664,681	661,694	-	-
달성도	-	84.5	95.9	-	-

○ **성과지표:** 훈련 양성률(단위: %)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목표	(신규)	(신규)	(신규)	89.8	90.0
실적	-	-	-	-	-
달성도	-	-	-	-	-

- **측정산식 :** (내일배움카드 수료인원/훈련실시인원) x 0.8(가중치) + (폴리텍 훈련 수료인원/훈련실시인원) x 0.2(가중치)
- **목표치 설정근거 : 최근 3년 실적 평균치('23. 89.7, '24. 89.5, '25. 90.2)**
- **자료수집방법/출처 :** 전수조사(한국고용정보원 및 한국폴리텍대학)

(4-2) 성과지표 이외의 최근 4년(2023년~2026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연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3년	(훈련 실시) 2,764천명, (지원 금액) 398,366백만원
2024년	(훈련 실시) 2,148천명, (지원 금액) 368,023백만원
2025년	(훈련 실시) 1,989천명, (지원 금액) 291,799백만원
2026년7월	(훈련 실시) 1245천명, (지원 금액) 167,177백만원

(4-3) 향후(2027년 이후) 기대효과

○ 4차 산업혁명, 디지털전환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현장맞춤형 훈련지원 강화 및 기업의 훈련자율성 강화를 통한 근로자 직무능력 향상 및 기업경쟁력 제고

○ AI 활용역량이 기업의 경쟁력이 되고 있으나, 중소기업은 그 필요성은 알면서도 인력부족 및 당면한 현업 등으로 개별기업 대응에 한계 ⇒ 중소기업의 AI훈련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 필요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일반훈련>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행정비용
① 사업계획 수립	고용노동부	사업계획 및 공고 승인	해당없음
⇩			
② 사업공고	한국산업인력공단	사업공고 게시	해당없음
⇩			
③ 과정심사 및 훈련실시	한국산업인력공단 직업능력심사평가원	과정(원격·집체) 심사 및 훈련 실시	해당없음
⇩			
④ 훈련비용 지급	한국산업인력공단	훈련비용 접수 및 지급	해당없음

<현장맞춤형체계적훈련>

1) 보조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행정비용
① 사업계획 수립	고용노동부	사업계획 및 공고 승인	해당없음
⇩			
② 사업 공고	한국산업인력공단	사업공고 게시	해당없음
⇩			
③ 운영기관 선정	한국산업인력공단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해당없음
⇩			
④ 보조금 교부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기관별 운영비·사업비 교부	해당없음
⇩			
⑤ 사업수행	민간보조사업자	사업 운영	해당없음
⇩			
⑥ 회계감사 및 정산	회계법인 한국산업인력공단	예산 집행 적정성 검토	해당없음

2) 출연

[기업인적자원개발 인증]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행정비용
① 사업계획 수립	고용노동부	사업계획 및 공고 승인	해당없음
⇩			
② 인증심사 공고	한국산업인력공단	사업공고 게시	해당없음
⇩			
③ 인증기관 선정	한국산업인력공단	인증위원회 심의·의결	해당없음
⇩			
④ 인증서 수여	한국산업인력공단	4개부처 공동 인증서 수여 (산자부, 교육부, 노동부, 중기부)	해당없음

8) 최근 3년간(2024년~2026년)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8-1) 정부 사업평가

구분	연도	주요내용
보조사업 연장평가	2024년	○ 의견 : 사업방식 변경 ○ 결과 : 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 사업의 정책성과 제고를 위해 성과 및 사업관리 방식 개선 필요
재정지원일자리 사업 평가	2024년	○ 의견 : 양호
	2025년	○ 의견 : 개선필요 ○ 결과 : 전체 훈련생 중 300인 미만 중소기업 훈련생 비중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중소기업 훈련 활성화 노력이 실제 성과로 이어졌는지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방향을 수정할 필요
	2026년	○ 의견 : 양호
통합 재정사업평가	2026년	○ 의견 : 사업개선 ○ 결과 : 상위 정책 목표(단위사업, 프로그램, 국정과제, 대통령 공약 등) 달성에 충분히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새로운 성과지표 발굴 및 도전적 목표설정 요구

(8-2) 국회 지적사항

구분	연도	주요내용
결산시정요구	2024년	○ 지적 : 외국인력(E-9) 특화훈련의 현실적인 목표인원 설정 및 집행 제고 방안 마련 필요 ○ 조치 : 외국인력(E-9) 특화훈련 참여기업 대상으로 고용허가시 가점부여, 훈련목표인원 현실화
예결위 부대의견	2025년	○ 지적 : 탄력운영제 운영을 위해 철저하고 효과적인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한다. 추진중인 빈일자리 재직청년 기술연수 사업은 중소기업의 인력 공백이 최소화되도록 연수지역을 국내로 한정하고, 연수기간도 대폭 단축하는 등 중소기업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 조치 : 탄력운영제 성과분석 및 부정부실 예방을 위한 관리방안 정책연구 실시 및 상임위 보고 완료('25.10.13.), 청년기술채움 연수 지역은 국내로 한정·연수기간은 2~6월로 구성하여 사업추진

(8-3) 감사원, 총리실, 기타(언론, 시민단체 등) 결과: 해당없음

4. 최근 4년간(2023년~2026년) 결산내역

1) 결산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연도	당초 계획액	수정 계획액 (A)	전년도 이월액	기금변경 증감액 등	계획 현액	집행액 (B)	집행률 (B/Ax100)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3년	303,030	401,405	-	98,375	401,405	398,366	99.2	-	3,040
2024년	356,828	369,690	-	12,862	369,690	368,023	99.5	-	1,667
2025년	300,670	300,670	-	-	300,670	291,799	97.0	-	8,871
2026년	249,668	249,668	-	-	249,668	167,177	66.9	해당없음	해당없음

2) 연도별 결산 주요사항

연도	유형	금액 (백만원)	사유
2023년	기금운용 계획변경	98,375	'22년이후 코로나19 등으로 위축되었던 훈련 수요 증가
2024년	기금운용 계획변경	12,862	훈련 참여인원 증가
2025년	불용	8,871	훈련비 잔액 등
2026년	-	-	정상 집행 중

5. 기타 추가자료: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11)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1153-350)

1. 사업 총괄 정보

1) 사업 기본 정보

(1-1) 일반 정보

소관	실·국	과·팀	기금	계정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	기업훈련지원과	고용보험기금	-

(1-2) 코드·명칭 정보

구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080	08D	1100	1153	350
명칭	사회복지	고용	직업능력개발	중소기업능력개발지원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

2)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N	Y	N	N	N	N

3)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N	N	N	Y	N	80%	-

4) 기능별(내역사업별)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내역사업명	소관	사업시행주체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 (산업맞춤형, 하이테크형, 일반용역비)	고용노동부, 기업훈련지원과	한국산업인력공단

2. 지출계획 총괄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사업명	2025년 결산액	2026년 당초계획액 (A)	2026년 수정계획액	2027년 요구액	2027년 정부안액 (B)	증감액 (B-A)	증감률 (B-A) /A×100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지원	129,239	192,240	192,240	163,420	163,220	△29,020	△15.1%

1)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계획액 (수정)	2025년 계획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계획액 (수정)	2026년 계획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129,325	129,325	129,239	-	86	192,240	192,240	141,685	163,220
·산업맞춤형	71,225	71,225	71,225	-	-	154,840	154,840	104,285	120,570
·하이테크형	38,000	38,000	38,000	-	-	35,600	35,600	35,600	40,850
·대중소상생 아카데미	18,300	18,300	18,300	-	-	내역이관	내역이관	내역이관	내역이관
·일반용역비	1,800	1,800	1,714	-	86	1,800	1,800	1,800	1,800

2) 비목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계획액 (수정)	2025년 계획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계획액 (수정)	2026년 계획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129,325	129,325	129,239	-	86	192,240	192,240	141,685	163,220
·일반용역비(210-14)	1,800	1,800	1,714	-	86	1,800	1,800	1,800	1,800
·민간경상보조(320-01)	127,525	127,525	127,525	-	-	94,885	94,885	94,885	92,635
·보험금(320-04)	-	-	-	-	-	95,555	95,555	45,000	68,785

3. 사업 설명

1) 사업목적·내용

-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 대기업의 우수한 인프라를 활용, 자체 훈련 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의 체계적인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여 대-중소 상생의 직업훈련 생태계 조성

유형	내용
산업맞춤형	- 공동훈련센터: 대기업, 협·단체가 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협약체결)하여 중소기업의 훈련 수요조사를 통해 공통의 훈련과정을 개발, 훈련을 실시하기 위한 인프라(시설·장비 등) 비용을 공동훈련센터에 지원 - 대중소상생 아카데미: 대기업이 자사 근로자를 위해 개발한 우수 훈련프로그램을 협력 중소기업 근로자에 제공하는 모듈형 훈련프로그램을 '대중소상생 아카데미'로 인정하여 훈련비, 운영비 등 지원
하이테크형	- K-하이테크 플랫폼: 디지털 및 첨단분야 직무훈련 제공 및 인프라 공유·개방 -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중소기업 재직자 등을 대상으로 직무전환 훈련, 경력재설계 등 서비스 제공

2) 사업개요

(2-1)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사업근거	○ 「고용보험법」 제31조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의 직업능력 개발·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거나 이를 실시하는 자에게 그 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2조 ① 법 제31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6. 사업주, 사업주단체,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등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중소기업 근로자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0조(사업주 및 사업주단체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하는 사업주나 사업주단체·근로자단체 또는 그 연합체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3. 「고용보험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기업(이하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 한다) 또는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추진경위	○ 2000. 4월 “지식기반경제 발전전략”(재경부, 노동부 등) ○ 2000. 12월 “직업능력개발 3개년 계획”의 주요과제로 선정 ※ 노동연구원 등의 중소기업 인적자원개발 활성화 방안으로 “훈련컨소시엄 제안” ○ 2001. 2월 “중소기업훈련컨소시엄 계획” 수립 및 6개 시범 훈련기관 선정(‘01.6월) ○ 2010. 11월 ‘중소기업훈련컨소시엄’을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으로 확대・개편 ※ 수요자 중심 재정지원 일자리 효율화 방안(국무회의, ’10.7.6.)에 따라, 정부 각 부처에서 산재되어 수행하는 인력양성사업을 ’11년부터 인력양성 전문 부처인 고용노동부로 통합·운영 ○ 2019. 12월 미래유망분야 맞춤형훈련, 산업계주도 청년 맞춤형 훈련 신설 ○ 2021. 1월 거점형 ’디지털 융합훈련 플랫폼(K-Digital Platform)‘ 신설 ○ 2022. 1월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신설 ○ 2023. 3월 ’비전문 외국인력(E-9) 특화훈련‘ 조선사 대상 시범사업 운영 ○ 2023. 4월 ’첨단산업 공동훈련센터‘ 신설 ○ 2024. 1월 컨소시엄 유형통합(8개→2개) 및 ’대중소상생 아카데미‘ 신설 ○ 2026. 1월 ’AI 특화 공동훈련센터‘ 신설

(2-2) 사업규모

○ 사업기간 : ’01년~ 계속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계획액 기준, 기금운용계획변경 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사업비	144,521	125,000	129,325	192,240	163,220

(2-3)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보조)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 위탁)

○ 사업 수혜자 : 고용보험 가입 중소기업 사업주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기관명	2027년 지원금액 (백만원)	지원 비율(%)	법적근거
산업맞춤형	보조	포스코 등 186여개소	120,570	- 훈련시설·장비비 및 인건비 80% - 운영비 및 프로그램개발비 100%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운영규정
하이테크형	보조	삼성전자 등 106여개소	40,850	100%	

3) 기능별(내역사업별) 산출 내역

(3-1) 내역사업별 세부 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계획액(수정)(A)	2027년 정부안액(B)	증감 (B-A)
합 계	192,240	163,220	△29,020
산업맞춤형	154,840	120,570	△34,270
하이테크형	35,600	40,850	5,250
일반용역비	1,800	1,800	-

○ **산업맞춤형 (2026년) 154,840 → (2027년) 120,570백만원, △22.1%**

- (설명) 사업 내실화를 통한 공동훈련센터 조정
- (산출) ❶ 공동훈련센터 운영비 51,785백만원
  * 운영비 : (일반) 기존 183개소 × 258백만원 + (거점) 3개소 × 1,500백만원

  ❷ 훈련비(보험금) 68,785백만원
  * 훈련비 : 공동훈련센터 159,390명 × 365,675원 = 58,285백만원
  대중소상생 아카데미 150개 × 70백만원 = 10,500백만원

○ **하이테크형 (2026년) 35,600 → (2027년) 40,850백만원, +14.8%**

- (설명) AI 특화 공동훈련센터 확대
- (산출) ❶ K-하이테크 플랫폼 : 43개소 × 350백만원 = 15,050백만원
  ❷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 기존 38개소 × 350백만원 = 13,300백만원
  ❸ AI특화 공동훈련센터 : 25개소 × 500백만원 = 12,500백만원

○ **일반용역비 (2026년) 1,800 → (2027년) 1,800백만원, 전년동**

- (산출) 1식 × 1,800백만원 = 1,800백만원

4) 사업효과

(4-1) 최근 5년(2023년~2027년)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3	2024	2025	2026	2027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사업주훈련 참여자만족도 (단위: 점)	목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	-	-
	실적	-	-	-	-	-			
	달성도	-	-	-	-	-			
사업주훈련 사업주 만족도 (단위: 점)	목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	-	-
	실적	-	-						
	달성도	-	-						
K-Digital Training 수료율 (단위: %)	목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	-	-
	실적	-	-	-	-	-			
	달성도	-	-	-	-	-			

성과지표	구분	2023	2024	2025	2026	2027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일학습병행 학습근로자수 (단위: 명)	목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	-
	실적	-	-	-	-	-			
	달성도	-	-	-	-	-			
K-Digital Training 취업률 (단위: %)	목표	68.2	(삭제)	(삭제)	(삭제)	(삭제)	-	-	-
	실적	57.5	-	-	-	-			
	달성도	84.3	-	-	-	-			
폴리텍 하이테크과정 취업률 (단위: %)	목표	80.3	(삭제)	(삭제)	(삭제)	(삭제)	-	-	-
	실적	80.1	-	-	-	-			
	달성도	99.8	-	-	-	-			
일학습병행 학습근로자 수료율 (단위: %)	목표	78.2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실적	78.6	-	-	-	-			
	달성도	99.7	-	-	-	-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인원	목표	(신규)	786,600	690,258	(삭제)	(삭제)	3개년 평균인 786.6천명으로 목표 설정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훈련에 참여한 인원 (24.1.1~12.31)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정보통합분석시스템)
	실적	-	664,681	661,694	-	-			
	달성도	-	84.5	95.9	-	-			
훈련 양성률 (단위: %)	목표	(신규)	(신규)	(신규)	89.8	-	최근 3년 실적 평균치* * (23) 89.7 (24) 89.5 (25) 90.2	(내일배움카드 수료인원/훈련실시인원) x 0.8(가중치) + (폴리텍 훈련 수료인원/훈련실시인원) x 0.2(가중치)	전수조사 (한국고용정보원 및 한국폴리텍대학)
	실적	-	-	-	-	-			
	달성도	-	-	-	-	-			

(4-2) 성과지표 이외의 최근 4년(2023년~2026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3	- 270개 공동훈련센터, 239,285명훈련실시
2024	- 290개 공동훈련센터, 254,729명 훈련실시
2025	- 320개 공동훈련센터, 272,422명 훈련실시
2026	- 319개 공동훈련센터, 189,094명 훈련실시('26.7월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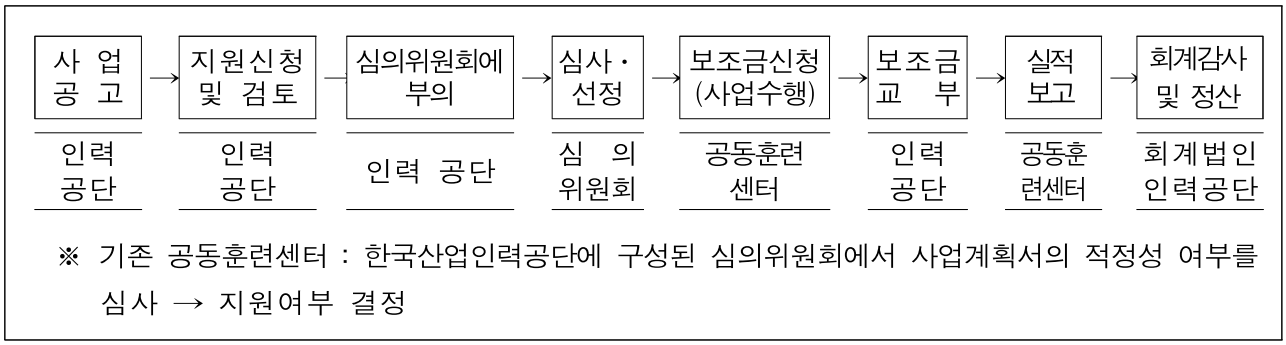
(4-3) 향후(2027년 이후) 기대효과

○ AI 대전환 등 급속한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대기업의 우수 훈련 인프라를 활용하여 중소기업 재직자의 직무역량 강화 지원→ 대중소 기업 훈련 격차 완화 및 중소기업 생산성 제고에 기여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기존 공동훈련센터 : 한국산업인력공단에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 → 지원여부 결정

8) 최근 3년간(2024년~2026년)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8-1) 정부 사업평가

구분	연도	주요내용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2026년	○ 의견 : 참여 기관 간의 우수사례 적극 공유로 중장기 발전 방향을 모색함 ○ 결과 : 감액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2025년	○ 의견 : 대중소기업 상생기반 직업훈련 생태계를 조성하고 훈련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 재직자 및 채용 예정자에게 공동훈련을 제공하는 중요한 사업 ○ 결과 : 우수

(8-2) 국회 지적사항: 해당없음

(8-3) 감사원, 총리실, 기타(언론, 시민단체 등) 결과: 해당없음

4. 최근 4년간(2023년~2026년) 결산내역

1) 결산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연도	당초 계획액	수정 계획액 (A)	전년도 이월액	기금변경 증감액 등	계획 현액	집행액 (B)	집행률 (B/Ax100)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3년	144,521	144,521	-	-	144,521	144,287	99.8	-	234
2024년	125,000	125,000	-	-	125,000	124,802	99.8	-	198
2025년	119,225	119,225	-	10,100	129,325	129,325	100.0	-	-
2026년	192,240	192,240	-	-	192,240	141,685	73.7	해당없음	해당없음

2) 연도별 결산 주요사항

연도	유형	금액 (백만원)	사유
2023년	불용	234	특이사항 없음
2024년	불용	198	(집행 부진) ①K-하이테크플랫폼 사업개편에 따른 신규기관 선정 지연, ②'24년 신규추진한 시범사업인 대중소상생 아카데미의 하반기 선정프로그램의 경우 훈련생 모집 등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필요한 기간 부족으로 집행실적 저조0
2025년	-	10,100	(계획 변경) '25.7.4. 2차 추경안 국회 통과(+10,100백만원)
2026년	-	-	특이사항 없음

5. 기타 추가자료: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 사업개요

참고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 사업개요**

○ **(개요) 자체훈련 인프라**가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해 **우수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대기업, 대학** 등이 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협약체결),

- **협약 중소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훈련수요를 발굴 및 제공**하는 공동훈련센터 등에 **훈련에 소요되는 운영비 및 인프라 비용**을 지원



○ **(유형) 훈련분야**에 따라, **전산업**을 대상으로 하는 [1]**산업맞춤형**과 **첨단산업 등 신기술·신산업**에 특화된 [2]**하이테크형** 등으로 구분

* 대기업의 우수한 훈련프로그램 확산을 위한 콘텐츠 기반 공동훈련모델 **'대중소상생 아카데미'** 운영('24~)

사업유형	훈련분야	내용
산업맞춤형	全 산업	- 대기업 등이 중소 협력사를 위한 훈련 수요조사, 직무분석 등을 통해 맞춤형 훈련과정 운영 - 정부 부처가 관련 협회 등과 정부 정책목표 달성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 훈련과정 운영
하이테크형	신기술·신산업	
K-하이테크 플랫폼	디지털, 반도체·바이오 등 첨단분야	- 협력사 근로자에 대한 디지털, 첨단분야 훈련과정을 운영 - 구축된 훈련 인프라를 활용, 지역 내 중소기업 재직자 등 훈련 수요자에게 디지털 등 관련 분야 직무역량 강화 교육 등 및 훈련인프라 공유·개방토록 지원
산업전환	산업구조가 변화하는 전통산업	- 저탄소 등 산업 전환에 따라 산업전환 진행단계 진단, 근로자의 전환 직무분석 등을 통한 직무전환훈련 및 경력재설계 등 지원
대중소상생 아카데미	전분야	- 대기업 등이 자사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우수한 훈련프로그램을 협력사 근로자에 제공토록 지원

○ **(훈련대상)** 재직자 및 채용예정자 등

○ **(지원내용)** 시설·장비비, 프로그램개발비, 운영비 등 최대 20억 지원(훈련비 별도)

* 하이테크형 공동훈련센터 1년차 최대 8억, 2~5년차 최대 4억 총 24억 지원

○ **(지원체계)** 고용부 → 한국산업인력공단 → 공동훈련센터

사 업 명
(12) 산업현장일학습병행지원(1154-356)

1. 사업 총괄 정보

1) 사업 기본 정보

(1-1) 일반 정보

소관	실·국	과·팀	기금	계정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	기업훈련지원과	고용보험기금	-

(1-2) 코드·명칭 정보

구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080	08D	1100	1154	356
명칭	사회복지	고용	직업능력개발	한국산업인력공단 능력개발사업지원	산업현장일학습 병행지원

2)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N	Y	N	N	N	N

3)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Y	N	Y	Y	N	-	-

4) 기능별(내역사업별)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내역사업명	소관	사업시행주체
일학습병행 운영지원	고용노동부, 기업훈련지원과	한국산업인력공단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고용노동부, 기업훈련지원과	한국산업인력공단
일학습병행 훈련비	고용노동부, 기업훈련지원과	한국산업인력공단

2. 지출계획 총괄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사업명	2025년 결산액	2026년 당초계획액 (A)	2026년 수정계획액	2027년 요구액	2027년 정부안액 (B)	증감액 (B-A)	증감률 (B-A) /A×100
산업현장 일학습병행지원	275,522	267,952	267,952	281,367	277,426	9,474	3.5

1)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계획액 (수정)	2025년 계획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계획액 (수정)	2026년 계획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276,632	276,632	275,522	-	1,110	267,952	267,952	207,048	277,426
·일학습병행 운영지원	73,159	73,159	73,159	-	-	70,159	70,159	60,804	70,159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67,246	67,246	66,542	-	704	68,516	68,516	51,387	74,796
·일학습병행 훈련비	136,227	136,227	135,821	-	406	129,277	129,277	94,857	132,471

2) 비목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계획액 (수정)	2025년 계획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계획액 (수정)	2026년 계획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276,632	276,632	275,522	-	1,110	267,952	267,952	207,048	277,426
·출연금(350-02)	73,159	73,159	73,159	-	-	70,159	70,159	60,804	70,159
·민간경상보조(320-01)	67,246	67,246	66,542	-	704	68,516	68,516	51,387	74,796
·보험금(320-04)	136,227	136,227	135,821	-	406	129,277	129,277	94,857	132,471

3. 사업 설명

1) 사업목적·내용

(1-1) 일학습병행 운영·지원

사업목적	학습기업의 훈련을 위한 각종 인프라 지원 및 일학습병행 제도 전반 운영
사업내용	일학습병행 훈련하는 학습기업에 기업전담인력수당, 훈련과정 개발 등 지원하며, 일학습병행 훈련 모니터링·컨설팅, 훈련기준 관리 및 평가체계 운영

(1-2)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사업목적	고교, 대학 등을 공동훈련센터로 지정·운영하여 기업이 자체로 하기 어려운 이론교육(OFF-JT) 실시
사업내용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에 훈련을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운영비·인건비·시설장비비 등 지원

(1-3) 일학습병행 훈련비

사업목적	일학습병행 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하여 원활한 일학습병행 훈련 지원
사업내용	학습기업·공동훈련센터에 현장훈련(OJT), 이론교육(Off-JT) 훈련비 및 훈련장려금 등 지원

2) 사업개요

(2-1)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사업근거	○ 산업현장일학습병행지원에 관한 법률('20.8.28 시행)
추진경위	○ 「한국형 듀얼시스템 도입방안」 세부계획 확정('13.9월. 경제관계장관회의) ○ 「성과제고를 위한 일학습병행제 확산 방안」 마련('14.9월. 국가정책조정회의) ○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19.8.27) → 시행('20.8.28.)

(2-2) 사업규모

○ 사업기간 : 2014~계속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계획액 기준, 기금운용계획변경 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사업비	299,232	311,632	276,632	267,952	277,426

(2-3)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보조, 출연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

○ 사업 수혜자 : 일학습병행 참여기업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기관명	2027년 지원금액 (백만원)	지원 비율(%)	법적근거
일학습병행 운영지원	출연	한국산업인력공단	70,159	100	한국산업인력공단 제14조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보조	고교·대학 등 215개 기관	74,796	80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34조

3) 기능별(내역사업별) 산출 내역

(3-1) 내역사업별 세부 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계획액(수정)(A)	2027년 정부안액(B)	증감 (B-A)
합 계	267,952	277,426	9,474
일학습병행 운영지원	70,159	70,159	0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68,516	74,796	6,280
일학습병행 훈련비	129,277	132,471	3,194

○ **일학습병행 운영·지원 (2026년) 70,159 → (2027년) 70,159백만원, 전년동**
- (설명) 26년 기준 훈련 물량 유지
- (산출) 신규기업 700개, 일학습병행 훈련실시 기업 6,690개소 기준

○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2026년) 68,516 → (2027년) 74,796백만원, +9.2%**
- (설명) 도제(고교)→P-TECH(전문학사)→경력개발고도화(학사)로 이어지는 후학습 경로의 지역 내 미구축(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거점 대학 중심 인프라 확충을 위한 후학습 운영기관 확대, 청년의 지역정주 지원을 위한 지역정착금 신설
- (산출) 후학습 운영기관 확대 10개소(250→260개소) 2,680백만원, 지역정착금 지원 3,600백만원

○ **일학습병행 훈련비 (2026년) 129,277 → (2027년) 132,471백만원, +2.5%**
- (설명) 후학습 훈련인원 확대 반영
- (산출) 일학습병행 훈련 확대 710명(28,728→29,438명) 3,194백만원

4) 사업효과

(4-1) 최근 5년(2023년~2027년)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3	2024	2025	2026	2027	2027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사업주훈련 참여자만족도 (단위: 점)	목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	-	-
	실적	-	-	-	-	-			
	달성도	-	-	-	-	-			
사업주훈련 사업주 만족도 (단위: 점)	목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	-	-
	실적	-	-						
	달성도	-	-						
K-Digital Training 수료율 (단위: %)	목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	-	-
	실적	-	-	-	-	-			
	달성도	-	-	-	-	-			

성과지표	구분	2023	2024	2025	2026	2027	2027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일학습병행 학습근로자수 (단위: 명)	목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	-
	실적	-	-	-	-	-			
	달성도	-	-	-	-	-			
K-Digital Training 취업률 (단위: %)	목표	68.2	(삭제)	(삭제)	(삭제)	(삭제)	-	-	-
	실적	57.5	-	-	-	-			
	달성도	84.3	-	-	-	-			
폴리텍 하이테크과정 취업률 (단위: %)	목표	80.3	(삭제)	(삭제)	(삭제)	(삭제)	-	-	-
	실적	80.1	-	-	-	-			
	달성도	99.8	-	-	-	-			
일학습병행 학습근로자 수료율 (단위: %)	목표	78.2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실적	78.6	-	-	-	-			
	달성도	99.7	-	-	-	-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인원	목표	(신규)	786,600	690,258	(삭제)	(삭제)	3개년 평균인 786.6천명으로 목표 설정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훈련에 참여한 인원 (24.1.1~12.31)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정보통합분석시스템)
	실적	-	664,681	661,694	-	-			
	달성도	-	84.5	95.9	-	-			
훈련 양성률 (단위: %)	목표	(신규)	(신규)	(신규)	89.8	90.0	최근 3년 실적 평균치* * (23) 89.7 (24) 89.5 (25) 90.2	(내일배움카드 수료인원/훈련실시인원) x 0.8(가중치) + (폴리텍 훈련 수료인원/훈련실시인원) x 0.2(가중치)	전수조사 (한국고용정보원 및 한국폴리텍대학)
	실적	-	-	-	-	-			
	달성도	-	-	-	-	-			

(4-2) 성과지표 이외의 최근 4년(2023년~2026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연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3년	참여기업 20,412개, 학습근로자수 145,302명
2024년	참여기업 21,535개, 학습근로자수 158,219명
2025년	참여기업 22,544개, 학습근로자수 169,775명
2026년	참여기업 23,140개, 학습근로자수 177,835명

(4-3) 향후(2027년 이후)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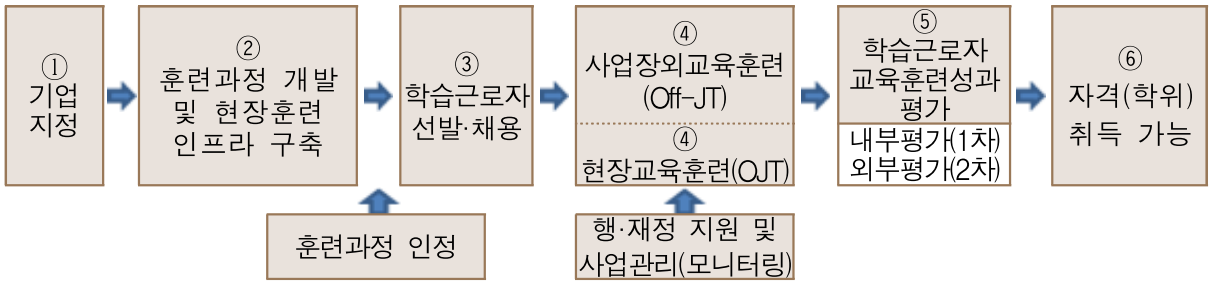
○ 기업·산업계가 현장에 맞는 인력을 직접 양성함으로써 청년 조기입직 및 고용률 제고, 노동시장 미스매치 완화 및 숙련인력 양성

- 기업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직무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 불요한 재교육 비용 절약
- 장기간 현장훈련을 통해 훈련생의 기업 적응력을 높이고, 장기근속을 유도함으로써 기업 핵심인재로 육성
- 학교, 자격, 학력, 인사 시스템 개편을 통해 능력중심사회 토대 마련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기업지정→훈련과정 개발 및 현장훈련 인프라 구축→학습근로자 선발·채용→사업장외교육훈련(OFF-JT) 및 현장교육훈련(OJT)→학습근로자 교육훈련성과 평가→자격(학위) 취득 가능

8) 최근 3년간(2024년~2026년)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8-1) 정부 사업평가

구분	연도	주요내용
통합재정사업 성과 평가	2026년	○ 의견 : 본 사업은 기업이 청년을 선채용후 훈련을 통해 숙련인력을 양성하여 노동시장의 미스매치를 완화하고 지역 정착률을 향상하는데 기여하고자하는 측면에서 우수함 ○ 결과 : 정상추진, 최우수사업 및 국민체감 우수사업 선정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2026년	○ 의견 : 과거 평가에서 지적되던 문제점(중도탈락률)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제도개선을 이룸 ○ 결과 : 양호

(8-2) 국회 지적사항

구분	연도	주요내용
예결위 결산	2024년	○ 지적 : 일학습병행법은 '부정수급액의 5배 이내 금액'을 추가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시행령은 '부정수급액 이하'의 금액을 추가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는 부정수급액 징수 기준 마련 필요 ○ 조치 : 부정수급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추가 징수의 구체적인 근거 마련하여 시행령 개정('25.6)
예결위 결산	2025년	○ 지적 : 외국인 유학생 일학습병행 사업 준비 미흡 시정 및 재발방지 필요 ○ 조치 : 외국인 유학생 일학습병행 사업 준비 미흡 시정 및 재발방지를 위한 관련 부처 협의 완료('25.11)

(8-3) 감사원, 총리실, 기타(언론, 시민단체 등) 결과: 해당없음

4. 최근 4년간(2023년~2026년) 결산내역

1) 결산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연도	당초 계획액	수정 계획액 (A)	전년도 이월액	기금변경 증감액 등	계획 현액	집행액 (B)	집행률 (B/Ax100)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3년	299,232	299,232	-	-	299,232	294,608	98.5	-	4,624
2024년	311,632	311,632	-	-	311,632	301,547	96.8	-	10,085
2025년	276,632	276,632	-	-	276,632	275,522	99.6	-	1,110
2026년	267,952	267,952	-	-	267,952	207,048	77.3	해당없음	해당없음

2) 연도별 결산 주요사항

연도	유형	금액 (백만원)	사유
2023년	불용	4,624	특이사항 없음(사업비 진행잔액)
2024년	불용	10,085	비자 문제 등 제도개편 지연으로 외국인유학생 훈련 실적 저조
2025년	불용	1,110	특이사항 없음(사업비 진행잔액)
2026년	-	해당없음	특이사항 없음

5. 기타 추가자료: 산업현장일학습병행지원 개요

참고 **산업현장일학습병행지원 개요**

□ 사업개요

○ **기업이 청년 등을 先채용 후** 체계적 **현장훈련(OJT)**을 실시하고, **학교에서 이론교육(Off-JT)** 후 일학습병행 자격취득까지 연계하는 현장 중심의 교육훈련제도

○ '13년 일학습병행 사업 도입, '20년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통해 제도적 뒷받침 강화

□ 제도 운영현황

❖ 학습근로자의 훈련 전 신분에 따라 **재학생·재직자 유형**으로 구분하며 훈련 이수 후 **내·외부평가 합격자**에게 **일학습병행자격** 부여

* 직업계고 졸업자의 경력개발은 **후학습 유형**으로 별도 구분

○ **(재학생)** 고교/전문대/4년제 재학생 중 빠른 취업을 원하는 **학생 선발·학습기업과 매칭**한 뒤, 근로계약 체결 후 일학습병행 참여
→ 청년 '조기 취업'지원

* 재학생 참여 현황('25.12.) : 직업계고(7,035명), 대학(3,726명)

○ **(재직자)** 학습기업에 채용된 **입직 3년 미만의 신규 입직자 중 학습근로자 선발**하여 일학습병행 참여 → 직장'조기 적응'지원

* 재직자 참여 현황('25.12.) : 15,207명

○ **(후학습)** 고교 일학습병행(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이수자를 포함한 **직업계고 졸업생**의 일학습병행 통한 **전문대, 4년제대*** **등 경력개발 지원**

* 후학습 참여 현황('25.12.) : P-TECH(전문대) 3,394명, 경력개발고도화(4년제대) 221명

□ 추진실적

○ 2014년부터 학습기업 22,544개, 학습근로자 169,775명 참여(~'25.12월 누적 기준)

< 일학습병행 훈련 프로세스 >



사 업 명
(13) 기능인력양성및장비확충(폴리텍)(1155-350)

1. 사업 총괄 정보

1) 사업 기본 정보

(1-1) 일반 정보

소관	실·국	과·팀	기금	계정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	직업능력정책과	고용보험기금	-

(1-2) 코드·명칭 정보

구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080	08D	1100	1155	350
명칭	사회복지	고용	직업능력개발	한국폴리텍대학 능력개발사업지원	기능인력양성및 장비확충(폴리텍)

2)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N	Y	N	N	N	N

3)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N	N	Y	N	N	-	-

4) 기능별(내역사업별)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내역사업명	소관	사업시행주체
전문기술과정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하이테크과정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중장년특화과정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AX과정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이주배경 구직자 직업훈련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내역사업명	소관	사업시행주체
소규모사업장훈련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기능장과정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훈련장려금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교육훈련과정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교과개발및교재발간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신기술장비확충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2. 지출계획 총괄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사업명	2025년 결산액	2026년 당초계획액 (A)	2026년 수정계획액	2027년 요구액	2027년 정부안액 (B)	증감액 (B-A)	증감률 (B-A) /A×100
기능인력양성및 장비확충(폴리텍)	61,611	59,778	59,778	50,717	50,717	△9,061	△15.2

1)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계획액 (수정)	2025년 계획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계획액 (수정)	2026년 계획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61,961	61,961	61,611	-	350	59,778	59,778	46,300	50,717
·전문기술과정	7,287	7,287	7,287	-	-	6,319	6,319	5,000	6,317
·하이테크과정	12,150	12,150	12,150	-	-	12,997	12,997	10,250	11,153
·중장년특화과정	9,189	9,189	9,189	-	-	10,556	10,556	8,400	10,759
·AX과정	-	-	-	-	-	1,500	1,500	920	1,500
·여성재취업훈련	4,756	4,756	4,756	-	-	3,791	3,791	3,100	-
·이주배경 구직자 직업훈련	2,200	2,200	2,200	-	-	2,200	2,200	1,750	550
·소규모사업장훈련	1,270	1,270	1,270	-	-	1,261	1,261	1,000	1,261
·기능장과정	603	603	603	-	-	569	569	430	569
·훈련장려금	4,899	4,899	4,549	-	350	4,978	4,978	3,910	3,768
·교육훈련과정	1,488	1,488	1,488	-	-	1,488	1,488	850	1,170
·교과개발및교재발간	2,419	2,419	2,419	-	-	2,419	2,419	1,600	1,970
·신기술장비확충	11,700	11,700	11,700	-	-	11,700	11,700	9,090	11,700
·학과신설 및 개편	4,000	4,000	4,000	-	-	-	-	-	-

2) 비목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계획액 (수정)	2025년 계획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계획액 (수정)	2026년 계획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61,961	61,961	61,611	-	350	59,778	59,778	46,300	50,717
·사업출연금(350-02)	57,062	57,062	57,062	-	-	54,800	54,800	42,390	46,949
·민간경상보조(320-01)	4,899	4,899	4,549	-	350	4,978	4,978	3,910	3,768

3. 사업 설명

1) 사업목적·내용

(1-1) 전문기술과정

사업목적	무기능·단순기능 실업자, 비진학 청소년 등 취업애로계층의 기능 습득 및 취업 촉진
사업내용	만 15세 이상 실업자를 대상으로 기능사 수준의 직업훈련 지원

(1-2) 하이테크과정

사업목적	국가 미래산업 선도인력 양성 및 청년 실업 해소
사업내용	전문대졸 이상의 고학력 청년 실업자를 대상으로 4차산업 관련 신산업·신기술 분야 고급 교육훈련과정

(1-3) 중장년특화과정

사업목적	초고령화 사회진입에 따른 만 40세 이상의 중장년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전직, 창업 등 재취업 특화 교육훈련 제공
사업내용	만 40세 이상 중장년 맞춤형 교육훈련과정

(1-4) AX과정

사업목적	산업 전반에 걸친 AI 전환 가속화에 따른 구직자·재직자 대응력 제고
사업내용	기존 산업기술에 대한 AI 기술 적용 실무과정

(1-5) 이주배경 구직자 직업훈련

사업목적	이주배경 학생 및 외국인의 취업역량 강화
사업내용	다문화·외국인 구직자 맞춤형 진로·직업프로그램 및 직업훈련 지원

(1-6) 기능장과정

사업목적	기능장 자격을 필요로 하는 재직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기능장 수준의 훈련을 실시하여 산업현장의 기능과 연륜을 겸비한 중간관리자 공급
사업내용	생산현장을 지도·감독하는 기능계 최고 숙련 과정

(1-7) 훈련장려금

사업목적	훈련생이 경제적 부담 없이 직업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일정 수준의 훈련장려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기능인력 양성 도모
사업내용	비학위과정 훈련생 대상 훈련기간 장려금 지급

(1-8) 소규모사업장훈련

사업목적	교육훈련 여건이 열악한 영세사업장 재직자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재직근로자의 직무능력 개발 및 기업 경쟁력 제고 지원
사업내용	영세사업장 재직근로자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직무·기술 지도 등

(1-9) 교육훈련과정

사업목적	재학생 및 졸업(수료)생에 대한 취업역량 강화 및 취업률 제고
사업내용	기업전담제 기반 취업프로그램 운영

(1-10) 교과개발및교재발간

사업목적	직업교육훈련의 품질 제고
사업내용	4차산업 신기술 분야 융합형 교과과정 개발 및 교재 보급 지원 등

(1-11) 신기술장비확충

사업목적	미래 산업변화 추이를 선도하는 교육훈련 인프라 구축
사업내용	노후부족 및 교과과정 개편에 따른 신장비 보강 등

2) 사업개요

(2-1)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사업근거	○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제39조(기능대학의 설립)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이하 "학교법인"이라 한다)은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양성하고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능대학을 설립·경영할 수 있다. ○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제48조(기능대학 및 학생 등에 대한 지원)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주 등은 기능대학 설립·경영자에게 교육·훈련시설의 설치, 장비구입, 학교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능대학의 설립·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기능대학의 설립·경영자(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설립한 학교법인에 한정한다)에게 국유·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으며,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축조하기 위한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능대학의 다기능기술자과정의 학생 및 직업훈련과정의 훈련생에 대하여 그 재학기간 중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추진경위	○ 다기능기술자과정 학생들에게 학위를 수여하기 위하여 '98. 2. 5일자로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분리하여 학교법인기능대학 설립・운영 ○ 국고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1996년부터 다기능기술자과정 재학생으로부터 등록금을 징수하여 예산에 편성 ○ 2005년 공공훈련인프라 혁신계획에 의거 '06. 3. 1일자로 공공훈련기관 운영 일원화 및 기능대학 개편(24개 기능대학, 21개 직업전문학교⇒한국폴리텍 11개 대학운영) ○ 2012년 특성화 대학 체제 개편(11개→8개) 및 다솜학교 개교 ○ 2016년 분당융합기술교육원 개원 ○ 2020년 광명융합기술교육원, 석유화학공정기술교육원 개원 ○ 2021년 로봇캠퍼스(영천) 개원 ○ 2025년 전력기술교육원(나주) 개원

(2-2) 사업규모

○ 사업기간 : 계속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계획액 기준, 기금운용계획변경 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사업비	53,132	55,226	61,961	59,778	50,717

(2-3)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 사업 수혜자 : 재학생, 재직근로자, 미취업자, 비진학청소년 등 사회 취업 취약 계층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기관명	2027년 지원금액 (백만원)	지원 비율(%)	법적근거
전문기술과정	출연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6,317	100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제11조의2~3, 39조, 40조, 48조
하이테크과정			11,153		
중장년특화과정			10,759		
AX과정			1,500		
이주배경 구직자 직업훈련			550		
기능장과정			569		
훈련장려금			3,768		
소규모 사업장훈련			1,261		
교육훈련과정			1,170		
교과개발 및 교재발간			1,970		
신기술장비확충			11,700		

3) 기능별(내역사업별) 산출 내역

(3-1) 내역사업별 세부 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계획액(수정)(A)	2027년 정부안액(B)	증감 (B-A)
합 계	59,778	50,717	△9,061
전문기술과정	6,319	6,317	△2
하이테크과정	12,997	11,153	△1,844
중장년특화과정	10,556	10,759	203
AX과정	1,500	1,500	-
여성재취업훈련	3,791	-	순감
이주배경 구직자 직업훈련	2,200	550	△1,650
기능장과정	569	569	-
훈련장려금	4,978	3,768	△1,210
소규모사업장훈련	1,261	1,261	-
교육훈련과정운영	1,488	1,170	△318
교과개발및교재발간	2,419	1,970	△449
신기술장비확충	11,700	11,700	-

○ **전문기술과정 (2026년) 6,319 → (2027년) 6,317백만원, △0.0003%**

- (설명) 훈련인원 2,390명*의 교육훈련비용 및 급식비 단가** 인상을 감안, '26년 대비 △0.0003% 감액
  * 전문기술과정 훈련인원 조정(2,500→2,390명, △110명)
  ** 일반적인 급식비 단가에 못 미치는 급식비 단가 인상(2,700→3,000원, +300원)
- (산출) 정원 감소, 급식비 단가 인상을 고려한 사업비 감액(△2백만원)
  * 훈련비 △110명x2.528백만원 (△277백만원)
  ** 급식비 단가 인상 2,700 → 3,000원 (+275백만원)

○ **하이테크과정 (2026년) 12,997 → (2027년) 11,153백만원, △14.2%**

- (설명) 훈련인원 2,100명*의 교육훈련비용 및 급식비 단가** 인상을 감안, '26년 대비 △14.2% 감액
  * 하이테크과정 정원 조정(2,500→2,100명, △400명)
  ** 일반적인 급식비 단가에 못 미치는 급식비 단가 인상(2,700→3,000원, +300원)
- (산출) 정원 감소, 급식비 단가 인상을 고려한 사업비 감액(△1,844백만원)
  * 훈련비 △400명x5.199백만원 (△2,080백만원)
  ** 급식비 단가 인상 2,700 → 3,000원 (+236백만원)

○ **중장년특화과정 (2026년) 10,556 → (2027년) 10,759백만원, +1.9%**

- (설명) 훈련인원 7,700명*의 교육훈련비용 및 급식비 단가** 인상을 감안, '26년 대비 +1.9% 증액

* 중장년 특화 교육훈련인원 7,700명(전년동)
** 일반적인 급식비 단가에 못 미치는 급식비 단가 인상(2,700→3,000원, +300원)

- (산출) 급식비 단가 인상에 따른 사업비 증액(+203백만원)
  * 급식비 단가 인상 2,700 → 3,000원(+203백만원)

○ **AX과정 (2026년) 1,500 → (2027년) 1,500백만원, 전년동**

- (설명) 훈련인원 1,000명의 교육훈련비용(전년동)

- (산출) 구직자·재직자 대응력 제고를 위한 AX과정 훈련비
  * 훈련비 1,000명x1.5백만원(1,500백만원)

○ **여성재취업훈련 (2026년) 3,791 → (2027년) 0백만원, 순감**

- (설명) 중장년특화과정으로 통합운영

○ **이주배경 구직자 직업훈련 (2026년) 2,200 → (2027년) 550백만원, △75.0%**

- (설명) 훈련인원 100명의 교육훈련비용 및 교육 프로그램 변화를 감안, '26년 대비 △75.0% 감액
  * 이주배경 구직자 직업훈련 정원 조정(200→100명, △100명)
  ** 교육프로그램 변화로 단가 조정(11백만원 →5.5백만원, △5.5백만원)

- (산출) 훈련인원 감소 및 교육프로그램 변화로 사업비 감액(△1,650백만원)
  * 훈련비 100명 x 5.5백만원 = 550백만원

○ **소규모사업장훈련 (2026년) 1,261 → (2027년) 1,261백만원, 전년동**

- (설명) 훈련인원 6,500명의 교육훈련비용(전년동)

- (산출) 훈련비 6,500명 x 0.194백만원 = 1,261백만원

○ **기능장과정 (2026년) 569 → (2027년) 569백만원, 전년동**

- (설명) 훈련인원 250명의 교육훈련비용(전년동)

- (산출) 훈련비 250명 x 2.274백만원 = 569백만원

○ **훈련장려금 (2026년) 4,978 → (2027년) 3,768백만원, △24.3%**

- (설명) 훈련인원 13,290명*의 훈련장려금 반영 및 집행률을 감안, '26년 대비 △24.3% 감액
  * 전문기술과정 2,390명, 하이테크과정, 2,100명, 중장년특화과정 7,700명, AX과정 1,000명, 이주배경 구직자 직업훈련 100명

- (산출) 과정별 훈련인원 x 훈련 기간 x 단가 x '27년 지급률
  * 1) 전문기술과정: 2,390명×10월×116천원×45.47%=1,261백만원
    2) 하이테크과정: 2,100명×10월×116천원×42.76%=1,042백만원
    3) 중장년특화(장기): 1,500명×6월×116천원×52.71%=550백만원
    4) 중장년특화(집중1): 1,500명×3월×116천원×53.81%=280백만원
    5) 중장년특화(집중2): 4,700명×1.5월×116천원×53.81%=440백만원
    6) AX과정: 1,000명×3월×116천원×51.94%=181백만원
    7) 이주배경구직자직업훈련: 100명×3월×116천원×41.99%=14백만원

○ **교육훈련과정운영 (2026년) 1,488 → (2027년) 1,170백만원, △21.4%**

- (설명) 취업지원 활동 등 교육훈련과정운영 지원비, '26년 대비 △21.4% 감액
  * 취업지원 및 기업전담제운영 지원비(1,170백만원, 전년동)
  ** 연구활동종사자 법정의무비(특수건강진단비)(△317백만원, 순감, 고특회계로 내역이관)
- (산출) 취업지원 및 기업전담제 40개소 x 29.25백만원 = 1,170백만원(전년동)
  연구활동종사자 특수건강진단 △318백만원(내역이관)

○ **교과개발및교재발간 (2026년) 2,419 → (2027년) 1,970백만원, △18.6%**

- (설명) 교육훈련을 위한 교과개발 및 교재발간 사업비, '26년 대비 △18.6% 감액
  * 지출효율화를 통한 지원단가 감액(60.5백만원 → 49.3백만원, △11.3백만원)
- (산출) 40개소 x 49.25백만원 = 1,970백만원(△449백만원)

○ **신기술장비확충 (2026년) 11,700 → (2027년) 11,700백만원, 전년동**

- (설명) 40개 캠퍼스 노후장비보강비 반영(전년동)
- (산출) 40개소 x 292.5백만원 = 11,700백만원

4) 사업효과

(4-1) 최근 5년(2023년~2027년)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 **성과지표**

- **측정산식 :** 하단 표 기재
- **측정방법 및 목표치 설정근거 :** 하단 표 기재
- **자료수집방법/출처 :** 하단 표 기재

성과지표	구분	2023	2024	2025	2026	2027	2027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K-Digital Training 취업률 (단위: %)	목표	68.2	(삭제)	(삭제)	(삭제)	(삭제)	-	-	-
	실적	57.5	-	-	-	-			
	달성도	84.3	-	-	-	-			
폴리텍 하이테크과정 취업률 (단위: %)	목표	80.3	(삭제)	(삭제)	(삭제)	(삭제)	-	-	-
	실적	80.1	-	-	-	-			
	달성도	99.8	-	-	-	-			
일학습병행 학습근로자 수료율 (단위: %)	목표	78.2	(삭제)	(삭제)	(삭제)	(삭제)	-	-	-
	실적	78.6	-	-	-	-			
	달성도	99.7	-	-	-	-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인원 (단위: 명)	목표	(신규)	786,600	690,258	(삭제)	(삭제)	-	-	-
	실적	-	664,681	661,694	-	-			
	달성도	-	84.5	95.9	-	-			

성과지표	구분	2023	2024	2025	2026	2027	2027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훈련 양성률 (단위: %)	목표	(신규)	(신규)	(신규)	89.3	89.8	최근 3년 실적 평균치* * (23) 89.7 (24) 89.5 (25) 90.2	(내일배움카드 수료인원/훈련 실시인원) x 0.8(가중치) + (폴리텍 훈련 수료인원/훈련 실시인원) x 0.2(가중치)	전수조사 (한국고용정보원 및 한국폴리텍대학)
	실적	-	-	-	-	-			
	달성도	-	-	-	-	-			

(4-2) 성과지표 이외의 최근 4년(2023년~2026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연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3년	- 계획인원: 14,010명, 참여인원: 14,385명 - 신기술장비확충 노후장비보강 3,190점 및 DX-Academy 학과개편 2개과
2024년	- 계획인원: 14,385명, 참여인원: 14,778명 - 신기술장비확충 노후장비보강 2,771점 및 전력기술교육원 학과신설 장비 수급 1개과
2025년	- 계획인원: 19,495명, 참여인원: 30,753명 - 신기술장비확충 노후장비보강 1,525점 및 전력기술교육원 학과신설 장비 수급 2개과
2026년	- 계획인원: 22,000명, 참여인원: 17,497명(7월말 기준) - 신기술장비확충 노후장비보강 진행 중

(4-3) 향후(2027년 이후)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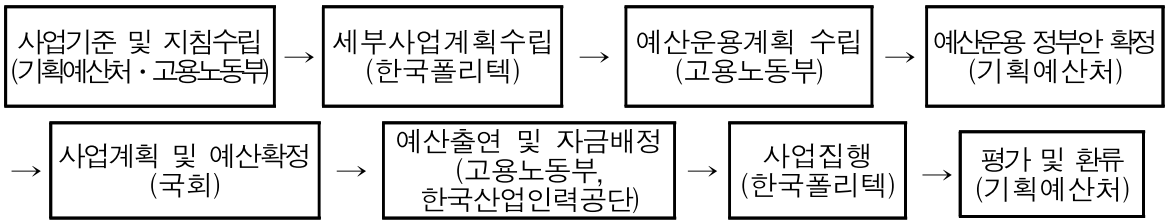
○ 전문기술과정 : 2,390명
○ 하이테크과정 : 2,100명
○ 중장년특화과정 : 7,700명
○ AX과정 : 1,000명
○ 이주배경 구직자 직업훈련 : 100명
○ 기능장과정 : 250명
○ 소규모사업장훈련 : 6,500명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사업집행절차 : 정부에서 국가기간·전략산업에 필요한 기술기능인력 양성사업을 한국폴리텍대학에 위탁 실시하고, 재원은 한국산업 인력공단을 통하여 학교법인에 재출연
- 사업추진 흐름도



* (예산출연 및 자금배정-인력공단)
-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6조(사업)제2호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를 위한「국민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의 설립·운영 지원
-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14조(공단의 수입·지출)제2항 공단의 지출은 제6조에 따른 사업에 드는 비용과 제26조에 따라 공단 산하에 설립되는「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학교법인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연금으로 한다.

* (사업진행-폴리텍)
-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제11조의3(소요재원) 이 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사업과 그 지원 또는 융자에 필요한 재원은 일반회계,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기금 등에 의한다.
-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제39조(기능대학의 설립)
-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제40조(과정구분 등)
-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제48조(기능대학 및 학생 등에 대한 지원)

8) 최근 3년간(2024년~2026년)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8-1) 정부 사업평가

구분	연도	주요내용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2026년	○ 의견 : 프로그램 사업들의 타부처 및 주관부처 내 유사성이 존재할 것으로 판단되어 사업 개선을 고려한 감액을 권고함 ○ 결과 : 감액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2026년	○ 결과 : 전문기술과정(평가제외), 하이테크과정(양호), 소규모사업장훈련(우수), 이주배경 구직자 직업훈련(양호), 중장년특화과정(감액), 여성재취업과정(감액)

(8-2) 국회 지적사항

구분	연도	주요내용
환노위 부대의견	2023년 (2024년 예산안)	○ 지적 : 다문화청년특화교육 사업을 운영할 때 차별적 요소가 없도록 방안 마련 ○ 조치 : 다문화 청년 모집 대상 확대를 통한 차별적 요소와 연구용역을 통한 교과개발을 통해 직장문화, 산업안전보건, 한국어 등 다문화 청년 교육 요구 반영
예결위 결산 시정요구	2024년 (2023회계연도)	○ 지적 : 경력단절 여성 직업훈련 사업의 성과제고 필요 ○ 조치 : 산업 수요와 여성 특화 적합성을 검토하여 여성 취업의 양과 질을 충족시키는 과정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겠음
환노위 예산심사	2024년 (2025년 예산안)	○ 지적 :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사업장훈련 사업의 철저한 준비 필요 ○ 조치 : 훈련 참여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국 27개 캠퍼스에서 훈련 과정을 개설하였고, '25년 시범 운영을 통한 훈련 성과 및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대책 마련
국정감사	2025년	○ 지적 : 폴리텍 급식비 지원단가가 1인당 2,400원 수준으로 열악하므로 급식비 등 제반 예산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할 것 ○ 조치 : '26년 예산 급식비 지원 단가 2,700원 수준으로 인상

(8-3) 감사원, 총리실, 기타(언론, 시민단체 등) 결과: 해당없음

4. 최근 4년간(2023년~2026년) 결산내역

1) 결산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연도	당초 계획액	수정 계획액 (A)	전년도 이월액	기금변경 증감액 등	계획 현액	집행액 (B)	집행률 (B/Ax100)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3년	53,132	53,132	-	-	53,132	52,284	98.4	-	848
2024년	55,226	55,226	-	-	55,226	54,678	99.0	-	548
2025년	57,689	61,961	-	4,272	61,961	61,611	99.4	-	350
2026년	59,778	59,778	-	-	59,778	46,300	77.5	해당없음	해당없음

2) 연도별 결산 주요사항

연도	유형	금액 (백만원)	사유
2023년	불용	848	교육생들에게 지급되는 훈련수당 집행잔액 반납 등
2024년	불용	548	교육생들에게 지급되는 훈련수당 집행잔액 반납 등
2025년	불용	350	교육생들에게 지급되는 훈련수당 집행잔액 반납 등

5. 기타 추가자료

(1) 2027학년도 교육훈련 계획
(2) 한국폴리텍대학 교육훈련과정 개관
(3) 전문기술과정
(4) 하이테크과정
(5) 중장년특화과정
(6) 직업교육과정 급식비 단가 인상
(7) AX과정
(8) 이주배경 구직자 직업훈련
(9) 기능장과정
(10) 소규모사업장훈련
(11) 훈련장려금
(12) 교육훈련과정운영
(13) 교과개발 및 교재발간
(14) 신기술장비확충

참고 1 2027학년도 교육훈련 계획

(단위: 명)

과 정		2023 학년도	2024 학년도	2025 학년도	2026 학년도 (A)	2027 학년도 (B)	증감 (B-A)
총 계		27,960	27,655	32,195	34,115	31,610	△2,505
<미래대응기금> 학위과정 소계		13,950	13,270	12,700	12,115	11,570	△545
2년제 학위과정	계	13,500	12,865	12,320	11,715	11,230	△485
	1학년	6,630	6,235	6,085	5,630	5,550	△80
	2학년	6,870	6,630	6,235	6,085	5,630	△455
	특성화고 연계과정	-	-	-	-	50	+50
학위전공 심화과정	계	450	405	380	400	340	△60
	3학년	200	205	200	200	160	△40
	4학년	250	200	180	200	180	△20
<고보기금> 직업교육과정 소계		14,010	14,385	19,495	22,000	20,040	△1,960
전문기술과정	계	3,805	3,430	3,000	2,500	2,390	△110
	일반	3,380	3,070	2,740	2,305	2,215	△90
	고교위탁	425	360	260	195	175	△20
중장년 특화과정 (舊, 신중년 특화과정)	계	2,500	2,550	7,500	7,700	7,700	-
	장기(480H)	1,100	1,150	1,350	1,500	1,500	-
	집중1(240H)	1,400	1,400	1,450	1,500	1,500	-
	집중2(120H)	-	-	4,700	4,700	4,700	-
AX과정		-	-	-	1,000	1,000	-
하이테크과정		1,530	2,030	2,430	2,500	2,100	△400
여성재취업훈련		1,700	1,700	1,700	1,350	0	△1,350
기능장(1, 2년차)		275	275	265	250	250	-
소규모사업장훈련		4,200	4,200	4,400	6,500	6,500	-
이주배경구직자훈련		0	200	200	200	100	△100

※ 캠퍼스 신설 환경변화 및 정부정책의 공공직업훈련 강화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참고 2 한국폴리텍대학 교육훈련과정 개관

구분	학위과정		비학위과정						
	다기능 기술자	전공 심화 과정	전문 기술 과정	하이 테크 과정	중장년 특화 과정	기능장	소규모 사업장 훈련	여성 재취업 훈련	이주배경 구직자 직업훈련
수혜 자격	고등학교 졸업이상 학력소지자	산업학사 (전문학사) 졸업 및 1년 이상 재직자	만 15세 이상 누구나	2년제 대학이상 졸업 (예정)자, 만39세 이하	만40세 이상 ~	산업기사, 또는 기능사 자격소지자 또는 실무경력 9년 이상	1인 ~300인 소규모 사업장 재직 근로자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했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외국인, 다문화가족 구직자
('26년) 인원	11,715명	400명	2,500명	2,500명	(장기)1,500명 (집중1)1,500명 (집중2)4,700명	250명	6,500명 (4h기준)	1,350명	200명
운영 캠퍼스	28개소	5개소 (정수,인천, 아산,창원 부산)	32개소	35개소	(장기)22개소 (집중1)36개소 (집중2)39개소	5개소 (정수,인천, 화성, 창원,부산)	38개소	36개소	11개소
훈련 기간	2년		1년	10~12월	2~6월	2년, 1년	최대 4시간	3월	3~6월
운영 시기	'98~계속	'12~계속	'98~ 계속	'17~ 계속 (예산반영 '18)	'18~계속 ('17추경 학과개편) (예산반영'19)	'98~계속	'06~ 계속	'14~계속	'24~계속
지원 내용	실습재료비, 식비 (50%),등 훈련비		실습재료비, 식비 등 훈련비						
과정	컴퓨터 응용기계 등 159개 학과	전기공학 등 11개 학과	특수용접 등 96개 직종	정보보안 등 119개 학과	자동차복원, 시니어헬스케어 등	전기과 등 10개 학과	공조냉동 설비 등	주얼리제작 등 85개 과정	전기내선 등 13개 과정
특징	산업학사 학위수여	공학사 학위 수여	훈련장려금 (월 116~250천원)			기능장 국가기술 자격검정 응시 부여	현장이동 및 대학훈련 등	훈련장려금 (월 116~250천원)	
수업료	2,432천원 ('26년기준)	2,432천원 ('26년기준)	없음						

참고 3 전문기술과정

□ 사업개요

○ (사업목적) 무기능·단순기능 실업자, 비진학 청소년 등 취업애로계층의 기능습득을 위한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취업을 촉진

○ (사업기간) '98년 ~ 계속

○ (필요성)

- 만 15세 이상의 구직자에게 직업훈련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취업 지원 및 고용안정 기여

□ 사업내용

○ 주간 1년 과정 기능인력 양성훈련을 위한 훈련비

○ 수료기준: 주간 1,200시간

○ 학급당 평균 20~25명

□ 사업특성

○ 중위연령 상승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중장년특화과정을 확대함에 따라, 전문기술과정 연차별 정원 축소

○ 산업트렌드 반영을 위해 국가기간·전략, 뿌리산업 등 전통산업을 고도화한 학과개편을 추진하고, 장비·시설 인프라 확충 및 과정 재설계하여 훈련품질 제고

○ 학교밖청소년, 자립준비 청년 등 직업훈련 사각지대 지속 발굴을 통해 입학자격을 완화하고, 폐업 개인사업자 가산점 신설 등으로 폐업한 소상공인 등에 대한 재취업 지원

□ 연차별 운영 계획

연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안)
합계	**3,985명**	**3,805명**	**3,430명**	**3,000명**	**2,500명**	**2,390명**
일반	3,535명	3,380명	3,070명	2,740명	2,305명	2,215명
고교위탁	450명	425명	360명	260명	195명	175명

□ 기대효과

○ 실업자 및 취업애로계층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통해 국가 산업발전에 기여하고, 사회안전망으로써의 역할 강화

참고 4 하이테크과정

□ 사업개요

○ (사업목적) AI·반도체 등 첨단산업 성장에 대응한 적기 인력 공급을 위해 고학력 실업자를 고급 기술인력으로 신속하게 양성

○ (사업기간) '17년 ~ 계속

○ (필요성) 고학력 청년 구직자 선호 분야 및 눈높이에 맞는 직업훈련을 제공하여 청년의 신속한 노동시장 진입 지원

* '쉬었음' 청년 (20~29세) 454천명, (30~39세) 299천명(경제활동인구조사, 국가데이터처, '26.2.)

** 청년층(25~34세) '쉬었음' 주된 사유 '원하는 일자리 찾기 어려움'(32.4%), (경제전망보고서, 한국은행, '24.11.)

□ 사업특성

○ (훈련수준) NCS L5 수준 이상을 포함한 훈련실시

○ (훈련분야) 인공지능SW, 스마트전기자동차, 바이오의약시스템 등

○ (훈련방식) 주당 40시간 내외의 훈련을 통해 이론 및 기초실습(8개월) 진행 후 현장실무 중심 프로젝트(2개월) 실시하여, 대학 기준 약 2년이 소요되는 과정을 1년으로 단축

- 직종 신설 및 개편을 통해 신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학사 일정에 유연성을 강화한 모듈식 프로그램 운영

□ 연차별 훈련인원

○ 산업구조 변화 및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인한 신산업분야 인력 수요 증가 및 고학력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고품질 훈련으로 인력 양성

연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안)
인원	1,230명	1,530명	2,030명	2,430명	2,500명	2,100명
과정	51개	66개	91개	111개	119개	102개

참고 5 중장년특화과정

□ 사업개요

○ (사업목적) 초고령화 사회진입에 따른 만 40세 이상의 중장년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전직, 창업 등 재취업 특화 교육훈련 제공

○ (사업기간) '18년 ~ 계속

○ (필요성) 954만명에 달하는 2차 베이비붐세대('64~74년생)가 법정 은퇴연령인 60세에 진입함에 따라 공공직업훈련의 역할 확대 필요

- 계속 근로를 희망하는 중장년은 69.4%로(10년간 8.4%p↑) 재취업훈련 수요*를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훈련 인원 확대 필요**

* 조기 퇴직 후 연금 수급까지 최대 13년(52세-65세)의 소득 공백에 따라 재취업훈련 수요 급증('25.5. 국가데이터처, 2025년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

□ 사업특성

○ (사업통합) 중위연령 상승 등 인구구조 변화 및 훈련 대상(여성, 중장년)의 유사·중복성을 고려하여 중장년특화과정으로 통합 운영

○ (훈련방식) 장기(480시간 내외), 집중1(240시간 내외), 집중2(120시간 내외)의 훈련 수요에 따른 다양한 훈련과정을 탄력적으로 제공

- 기존 전통산업 중심의 훈련에서 첨단산업, 여성특화 중장년 과정 등으로 확대 운영
- 평일, 주간 위주의 훈련에서, 야간, 주말까지 훈련을 운영하여 이·전직 희망 중장년의 훈련 참여기회 확대

□ 연차별 훈련인원

(단위:명)

연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안)
합계	**900명**	**2,500명**	**2,500명**	**2,550명**	**7,500명**	**7,700명**	**7,700명**
장기 (480시간 내외)	900명	1,100명	1,100명	1,150명	1,350명	1,500명	1,500명
집중1 (240시간 내외)	-	1,400명	1,400명	1,400명	1,450명	1,500명	1,500명
집중2 (120시간 내외)	-	-	-	-	4,700명	4,700명	4,700명

참고 6 직업교육과정 급식비 단가 인상

□ 사업개요

○ (사업목적) 폴리텍 직업교육과정 급식비 단가 인상 추진

○ (사업내용) 과정별 교육훈련비 내 **급식비 단가 인상**

* 폴리텍 급식비 단가 : 2,700원 → 3,000원 (+300원)

□ 필요성

○ 물가 대비 낮은 급식비 단가*를 인상하여 공공직업훈련의 품질 제고

* 소비자 물가지수(구내식당식사비, 2020=100): '07년 63.64 → '25년 123.9 (94.7%↑)
폴리텍 급식비 단가 평균: '07년 1,550 → '25년 2,340 (51.0%↑)

<급식비 단가 비교>

구분	급식비 단가	운영방식	식단가 포함내역
폴리텍	2,700원	직영	식재료비
서울시 기술교육원	4,500원	위탁	공공요금, 식재료비, 인건비, 기타비용
장애인고용공단 직업능력개발원	5,500원	위탁	식재료비, 인건비, 기타비용
경기도 기술학교	6,000원	위탁	식재료비, 인건비, 기타비용

□ 소요예산: 714백만원

○ **(산출방법)** '27년 직업교육과정 훈련비 內 급식비 산출

(단위 : 백만원)

훈련과정	요구액	산출내역
합계	**714**	-
전문기술과정	275	2,390명×300원×3식×7일×36주×82.1%×50%(기숙사) 2,390명×300원×1식×5일×36주×82.1%×50%(통학)
하이테크과정	236	2,100명×300원×3식×7일×36주×80.0%×50%(기숙사) 2,100명×300원×1식×5일×36주×80.0%×50%(통학)
중장년특화과정	203	(장기)1,500명×300원×3식×7일×24주×90.0%×20%(기숙사) 1,500명×300원×1식×5일×24주×90.0%×80%(통학)
		(집중1)1,500명×300원×3식×7일×12주×90.0%×20%(기숙사) 1,500명×300원×1식×5일×12주×90.0%×80%(통학)
		(집중2)4,700명×300원×3식×7일×8주×90.0%×20%(기숙사) 4,700명×300원×1식×5일×8주×90.0%×80%(통학)

* 산출식은 '26년도 예산각목명세(d-brain) 기준

참고 7 AX과정

□ 사업개요

○ (사업목적) 산업 전반에 걸친 AI 전환 가속화에 따른 구직자·재직자의 대응 역량 제고

○ (사업기간) '26년 ~ 계속

○ (필요성) AI 대전환 뒷받침을 위해 기존 산업현장 실무에 AI 기술을 융합·활용할 수 있는 인재양성 체계 필요

□ 사업내용

○ (훈련내용) 기존 산업기술에 대한 AI 적용(AX) 실무

○ (훈련대상) "구직자" + 산업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직무능력 향상 지원을 위해 "재직자" 포함

○ (훈련역량 강화) 교원 역량강화 연수, 피지컬 AI 테스트베드 구축 등

○ (교과) X-AI Track, 피지컬 AI Track 등 두 가지 TRACK으로 운영, 각각 240시간 내외 편성, 산업체별 맞춤형 과정 개설 가능

구분	X-AI Track	피지컬 AI Track
개요	현장에 도입된 산업 분야별 AI 기술 활용 훈련	현실세계의 정보를 AI가 실시간으로 인식하여 제어하는 "피지컬 AI" 제조공정 훈련
활용 인프라	기존 학과 인프라 활용	폴리텍 피지컬 AI 테스트베드 활용('26년 4개소 구축 예정)
교과 내용	(기초) AI 기술의 이해와 활용 * 예시: AI데이터활용 등 (심화) 산업별 AI 기술 * 예시: <금형> AI최적화 가공, <전자> AI 전력수요 관리	피지컬 AI 로봇 기반 공정설계, 지능형 영상관제, 디지털 트윈 등
훈련 규모	총 1,000명, TRACK별·캠퍼스별 수요를 연중 탄력 배분 * 훈련대상·내용을 고려하여 훈련인원·시간 탄력 편성 가능 ↳ 예시: 재직자 16시간 집중과정 운영 가능	
기타	산업체별 맞춤형 과정 개설 가능	

□ ('27년 예산요구) 1,500백만원

○ (산출내역) 1,000명 x 1,500천원

참고 8 이주배경 구직자 직업훈련

□ 사업개요

○ (사업목적) 정부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3~'27년)」에 따라 다문화 청년 대상 진로·직업프로그램 확대 및 직업교육 강화

-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다문화 청년 및 급격히 증가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특화 직업교육훈련을 통해 경제활동인구 확충 및 안정적 정주 토대 마련 지원

○ (사업기간) '24년 ~ 계속

□ 추진배경

○ 다문화 청년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24년 "다문화 청년 특화훈련"을 신설하고 '25년 교육부 정책*에 발맞춰 사업대상 확대 및 사업명칭 변경**

* "이주배경학생 인재양성 지원방안"('23.9, 교육부)에 따라 대상 외국인까지 확대

** <'24> 다문화 청년 특화훈련 → <'25> 이주배경 구직자 직업훈련(現)

○ '26년부터 "이주배경 구직자 직업훈련"과 "한국어 훈련"을 통합 운영하여 구직자의 한국어 역량강화 집중 지원과 사업 효율화 추진하며, 사할린 동포 및 동반 가족의 입학을 허용하여 직업교육 참여기회 확대, 안정적인 국내 정착과 경제활동 참여 기반 마련

□ 사업내용

○ 훈련대상: 만 15세 이상 외국인 및 다문화 가족 구직자

* 외국인: 외국국적 동포(F-4 비자), 영주 자격(F-5 비자) 소지 외국인, 난민 등

** 다문화 가족: 결혼이민자, 국내출생자녀, 중도입국자녀

○ 훈련규모: 100명

○ 훈련과정: 기술훈련, 자격취득, 전문상담, 기술한국어 등 이주배경 구직자의 한국적응과 취업을 위한 과정으로 운영

□ ('27년 예산요구) 550백만원

○ ('26) 2,200백만원 → ('27) 550백만원 (△1,650백만원)

- (산출내역) 100명 x 5,500천원*

* 훈련인원 △100명, 훈련시간 조정을 통한 단가 감액 11백만원 → 5.5백만원

참고 9 기능장과정

□ 사업개요

○ (사업목적) 전공 분야의 최상급 숙련기능 및 생산관리기법에 관한 지식을 보유함으로써 제품의 개발로부터 제작에 이르는 전 공정에서 생산성 향상과 기술적 문제의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인력 양성

○ (사업기간) '98년 ~ 계속

○ (필요성)

- 기능장 자격을 필요로 하는 재직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기능계 최고자격인 기능장 수준의 훈련을 실시하여 산업현장의 기능과 연륜을 겸비한 중간관리자 공급
- 폴리텍 기능장과정은 기능장 자격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 국내 유일한 교육과정

□ 사업내용

○ 기능장과정 훈련실시를 위한 훈련비

○ 서울정수 등 5개 캠퍼스, 250명('26년 기준)

○ 졸업기준: (1년) 40학점 이상, (2년) 60학점 이상

○ 학급당 20~25명

□ 그간의 투자현황 및 사업성과

○ 투자현황

(단위: 백만원)

연 도	'23	'24	'25	'26	'27안
예 산	625	625	603	569	569

○ 사업성과

(단위: 명)

연 도	'23	'24	'25	'26	'27안
정 원	275	275	265	250	250

□ 기대효과

○ 숙련기능 및 생산관리기법 등을 통하여 생산 현장의 중간관리자를 양성 공급함으로써 평생직업능력개발 도모

참고 10 소규모사업장훈련

□ 사업개요

○ (사업목적) 소상공 재직근로자를 대상으로 “생산성 및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찾아가는 이동훈련”을 실시하여 재직근로자의 능력개발과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공공훈련기관의 역할 강화

○ (사업기간) ‘06년 ~ 계속

○ (필요성) 디지털 전환 시대 도래에 따른 기술 수명 단축 및 숙련 수준 격차 확대로, 소상공 재직근로자의 적기 리스킬(re-skill) 및 업스킬(up-skill) 지원 필요

* (’25년) 4,400명 → (’26년) 6,500명 → (’27년) 6,500명

□ 사업내용

○ (훈련대상) 소상공 재직근로자(5인미만 사업장 등)

○ (훈련형태)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직무·기술 시연 지도, 산업안전 점검 등

○ (훈련장소) 기업 內, 임차 시설, 폴리텍 캠퍼스

○ (훈련시간) 1회 1~4시간, 연중 수시

□ 그간의 투자현황 및 사업성과

○ 투자현황

(단위: 백만원)

연 도	’20	’21	’22	’23	’24	’25	’26	’27안
예 산	1,113	1,113	1,113	1,113	1,113	1,270	1,261	1,261

○ 사업성과

(단위: 명)

연 도	’20	’21	’22	’23	’24	’25	’26
인 원	4,200	4,200	4,200	4,200	4,200	4,400	6,500
성 과	4,373	4,459	4,416	4,456	4,475	12,905	진행중

□ 기대효과

○ 영세 소상공 기업에 “찾아가는 이동훈련”을 실시하여 재직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 및 기업의 생산성 제고

참고 11 훈련장려금

□ 사업개요

○ (사업목적) 훈련생이 경제적 부담 없이 직업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일정 수준의 훈련장려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기능인력 양성 도모

○ (지급대상) 직업훈련과정 훈련생

* 전문기술과정, 하이테크과정, 중장년특화과정, AX과정, 이주배경구직자

○ (지급조건) 단위기간 출석률 80% 이상 시 일할계산 지급

○ (지급액) 대상자별 차등 지급

- 일반 : 월 116천원
-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 월 250천원

□ 2027년도 예산요구

○ (소요예산) ('26) 4,978백만원 → **('27) 3,768백만원 (△1,210백만원)**

- 장려금 지급인원 감소(15,250 → 13,290명) 반영
- 불용액 감안하여 장려금 지급률 평균 △10% 조정 반영

○ (산출내역) 과정별 훈련인원 × 훈련 기간 × 단가 × '27년 지급률

(단위: 백만원)

과정구분	금액	산출내역
합계	**3,768백만원**	
전문기술과정	1,261백만원	2,390명×10월×116천원×45.47%
하이테크과정	1,042백만원	2,100명×10월×116천원×42.76%
중장년특화(장기)	550백만원	1,500명×6월×116천원×52.71%
중장년특화(집중1)	280백만원	1,500명×3월×116천원×53.81%
중장년특화(집중2)	440백만원	4,700명×1.5월×116천원×53.81%
AX과정	181백만원	1,000명×3월×116천원×51.94%
이주배경 구직자	14백만원	100명×3월×116천원×41.99%

참고 12 **교육훈련과정**

1 취업지원

□ 사업개요

○ (사업목적) 재학생 및 졸업(수료)생에 대한 체계적인 취업알선 및 멘토·멘티의 장을 통한 취업률 제고

○ (사업기간) 1998년 ~ 계속

○ (필요성) 취업률 제고를 통한 직업교육훈련기관으로서의 정체성 확립

□ 사업내용

○ 취업 알선

- 취업정보 제공을 위한 캠퍼스별 경력개발센터 선택 운영(40개 캠퍼스)
- 취업캠프 운영을 통한 취업률 향상에 기여(캠퍼스별 1회 이상)
- 멘토링 시스템 활성화를 통한 올바른 직업관 확립 및 직업정보 공유, 취업연계 : 멘토·멘티 만남의 장 운영
- 취업역량강화시스템을 통해 기업체 취업정보를 재학생 및 졸업(수료)생에게 제공하여 맞춤형 취업 지원

○ 사후관리

- 졸업(수료)생을 졸업 후 3년 동안 관리(취업알선)하는 사후관리를 통한 고객만족도 제고

□ 사업성과

○ 취업률 성과

취 업 률	'21	'22	'23	'24	'25
다기능기술자	78.1%	80.6%	79.8%	77.9%	-
직업훈련과정	73.6%	74.3%	72.8%	69.5%	70.2%

○ 유지취업률 성과

취 업 률	'21	'22	'23	'24	'25
다기능기술자	90.4%	92.7%	92.3%	92.4%	-
직업훈련과정	87.0%	87.2%	89.6%	89.7%	89.2%

* 취업률, 유지취업률은 졸업(수료) 연도 기준

** 2025년 정보공시 취업률(전국 167개 전문·기능대학 중 졸업생 20인 이상) 단독 1위(남인천, 95.3%) 포함 상위 10위권 내 6개 캠퍼스 기록

2 산학협력활동지원(기업전담제)

□ 목적 및 필요성

○ 기업과 대학이 상생할 수 있는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산학협력을 통해 직업교육 및 향상훈련을 잘하는 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한 제도

○ 1개 학급당 20개의 기업체를 전담관리하여 기업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기업체 정보를 DB화하고 분석하여 산학협력 활동에 활용

□ 운영방법

○ 1개 학급당 20개 내외의 기업을 전담 관리

○ 우량업체와 MOU체결을 통해 우수 기업을 발굴하여 졸업(수료)생 취업, 향상훈련, 장비무상 수증 등의 협업 연계 추진

○ 대학별 전담활동 실적 분석 및 모니터링

□ 기업정보 데이터베이스 분석자료 활용

○ 기업체 기술동향 분석자료 → 학과 개편 및 특성화, 교과편성, 프로젝트 실습 시 활용

○ 기업체 장비 및 S/W 보유현황 → 현장성 높은 장비 기준, 장비 수급계획 시 활용

○ 현장실습 요구 기업체 리스트 → 현장실습 및 취업률 제고

○ 향상훈련 참여업체 리스트 → 향상훈련 수요조사, 교과목 개설 및 훈련 시 활용

○ 강의 참여 전문가 리스트 → 산학겸임, 시간강사, 특강 등 우수한 산업체 강사 활용

○ 공동연구 리스트 → 기술지도 및 기술개발지원, 기업 맞춤형 인재 공급, 향상훈련 수요조사, 교과목 개설 및 훈련 시 활용

□ 연도별 기업전담업체 운영 현황

기준연도	'21	'22	'23	'24	'25
관리업체 수	8,735개	8,650개	8,681개	8,937개	9,084개
학급당 평균 관리업체	19.4개	19.6개	19.4개	19.9개	20.0개
향상훈련 횟수	284건	302건	323건	361건	361건

□ 2027년도 예산요구 : 1,170백만원

○ 취업지원 및 기업전담제 40개소 × 29.25백만원

참고 13 교과개발 및 교재발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미래 신기술분야 융합형 교과과정 개발, 학습모듈·신기술교재를 개발, 정책연구 및 학술진흥을 통한 직업교육훈련 품질 제고

○ (사업기간) '06년 ~ 계속

○ (필요성) 기술의 융·복합화, 고학력 청년 실업 증가 등 다양한 환경 요구에 부응하는 교육훈련 품질 강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

□ 사업내용

○ (교과개발) NCS 기반 융합형 교과과정개발 및 학습모듈 발간

○ (교재발간) K-SHIFT 기반 온·오프라인 연계 학습을 위하여 종이교재와 디지털콘텐츠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교재* 개발

○ (정책연구) 인구구조, 교육·산업 수요, 산업구조 변화에 선제적인 대응을 위한 직업교육 정책 연구 수행

○ (학술진흥) 학술활동을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교육연구를 수행하여 세계적 기술 경쟁력 갖춘 인재 양성 필요

□ 그간의 투자현황 및 사업성과

○ 투자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2	'23	'24	'25	'25
사업예산	2,419	2,419	2,419	2,419	2,419

○ 신산업개편학과 등 교과과정 개발 실적

구 분	'21	'22	'23	'24	'25
교과과정 개발	전공심화: 10 다기능: 230 전문기술기능장: 138 하이테크: 52 중장년특화: 25	전공심화: 10 다기능: 226 전문기술기능장: 132 하이테크: 67 중장년특화: 25	전공심화: 10 다기능: 210 전문기술기능장: 123 하이테크: 92 중장년특화: 26	전공심화: 11 다기능: 214 전문기술기능장: 106 하이테크: 115 중장년특화: 31	전공심화: 11 다기능: 210 전문기술기능장: 115 하이테크: 120 중장년특화: 41

○ 신산업개편학과 등 교재개발, NCS 학습모듈 교재발간 및 보급 실적

구 분	'21	'22	'23	'24	'25
신기술 교재개발(종)	9	14	14	15	12
학습모듈 등 교재발간 및 보급(권)	123,204	130,668	73,503	104,094	58,335

□ 2027년도 예산요구 : 1,970백만원

○ 교과개발 및 교재발간 40개소 × 49.25백만원

참고 14 신기술장비확충

□ 사업개요

○ (사업목적) 학위과정, 직업훈련과정 교육훈련에 활용하기 위한 노후 교육훈련장비 교체, 장비 수리 및 비품 구입비 지원

- 다기능기술자, 전문기술(하이테크), 중장년특화과정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의 노후된 교육훈련장비 교체, 장비수리 및 비품 구입

○ (사업기간) '98년 ~ 계속

○ (사업물량) 40개 캠퍼스(인재원 및 다솜고교 제외)

○ (필요성) 교과과정 개편에 따른 신장비, 노후 부족 장비보강으로 산업변화를 선도하는 교육훈련 인프라 구축 기반 마련

□ 기대효과

○ 대학 내 보유장비 중 매년 내구 연한이 경과한 노후장비 교체로 직업능력개발 인프라 확충

○ 내용연수가 초과된 교육훈련장비(전체 장비 중 41% 수준)의 대규모 수리를 통한 내구연한 연장 및 교육 품질 제고

□ 2027년도 예산요구 : 11,7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산출내역	예산액
계		**11,700**
신기술장비확충 (노후장비)	40개소×292.5백만원	11,700

사 업 명
(14) 직업훈련생계비대부(융자)(1160-352)

1. 사업 총괄 정보

1) 사업 기본 정보

(1-1) 일반 정보

소관	실·국	과·팀	기금	계정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	인적자원개발과	고용보험기금	-

(1-2) 코드·명칭 정보

구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080	08D	1100	1160	352
명칭	사회복지	고용	직업능력개발	능력개발융자지원(융자)	직업훈련생계비대부(융자)

2)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N	Y	N	N	N	N

3)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Y	N	N	N	Y	-	-

4) 기능별(내역사업별)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내역사업명	소관	사업시행주체
직업훈련생계비대부(융자)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 인적자원개발과	근로복지공단

2. 지출계획 총괄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사업명	2025년 결산액	2026년 당초계획액 (A)	2026년 수정계획액	2027년 요구액	2027년 정부안액 (B)	증감액 (B-A)	증감률 (B-A) /A×100
직업훈련생계비대부(융자)	24,481	25,055		24,481	24,481	△574	△2.2

1)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계획액 (수정)	2025년 계획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계획액 (수정)	2026년 계획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34,788	34,788	24,481 [24,481]		10,307	25,055	25,055	15,403	24,481
·직업훈련생계비대부(융자)	34,788	34,788	24,481 [24,481]		10,307	25,055	25,055	15,403	24,481

2) 비목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계획액 (수정)	2025년 계획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계획액 (수정)	2026년 계획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34,788	34,788	24,481		10,307	25,055	25,055	15,403	24,481
·기타민간융자금(450-04)	34,788	34,788	24,481		10,307	25,055	25,055	15,403	24,481

3. 사업 설명

1) 사업목적·내용

(1-1) 직업훈련생계비대부(융자)

사업목적	대부지원을 통해 장기간 직업훈련에 따른 생계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직업훈련 몰입도 제고를 및 더 나은 일자리로의 취업 지원
사업내용	140시간 이상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실업자, 무급휴직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중 소득요건 만족하는 자에게 대부지원

2) 사업개요

(2-1)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사업근거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고용보험법」 제29조(피보험자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 ③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소득 피보험자등이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계비를 대부할 수 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2(직업능력개발훈련 중 생계비 대부) ① 법 제2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소득 피보험자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소득수준 및 종전의 대부실적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피보험자로서 휴직수당 등 금품을 받지 않고 휴직 중인 사람 2.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3. 법 제2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보험자등 4.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생계비 대부 신청 시 실업상태에 있는 피보험자 등이었던 사람(법 제4장에 따른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5. 제35조제5호바목에 해당하는 피보험자등 6. 그 밖에 생계비 대부가 필요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피보험자 등 ②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생계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부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따른 생계비의 대부를 신청하는 사람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대부 대상자 해당 여부의 확인절차를 거친 후에 대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대부의 신청·결정 절차에 관한 사항, 대부결정의 취소에 관한 사항, 대부금액 및 상환방법, 그 밖에 대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추진경위	- ‘09. 1월 신규실업자 훈련생계비 대부 사업 시행 - ‘10. 2월 대부이자율 하향 조정(2.4%→ 1%), 거치 및 상환기간 선택 - ‘17. 4월 대부한도 인상(월 100만원→200만원), 대부요건 완화(배우자 합산 연간소득금액 8천만원 이하로 확대)

	- ‘19. 1월 소득요건을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으로 조정 - ‘20. 1월 소득요건을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로 조정 - ‘22. 8월 소득요건을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80% →100%로 완화(’22년 한시) - ‘24. 1월 대부대상 훈련 정비(콘텐츠 재생형 원격훈련 제외) - ‘24. 8월 대부한도 인상(총 1,000만원→1,500만원)(’24년 한시)

(2-2) 사업규모

○ 사업기간 : ‘09년 ~ 계속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계획액 기준, 기금운용계획변경 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사업비	53,520	45,492	34,788	25,055	24,481

(2-3)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융자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 사업 수혜자 : 총 140시간 이상 직업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 전직실업자, 무급휴직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가구원합산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3) 기능별(내역사업별) 산출 내역

(3-1) 내역사업별 세부 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계획액(수정)(A)	2027년 정부안액(B)	증감 (B-A)
합 계	25,055	24,481	△574
직업훈련생계비대부(융자)	25,055	24,481	△574

○ 직업훈련생계비대부(융자) **(2026년) 25,055 → (2027년) 24,481 백만원, △2.2%**

- (설명) 전년도 집행실적 반영하여 산출
- (산출) 4,312×5,677천원 = 24,481,000천원

4) 사업효과

(4-1) 최근 5년(2023년~2027년)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해당없음

(4-2) 성과지표 이외의 최근 4년(2023년~2026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연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3년	14,611명, 78,953백만원 지원
2024년	4,535명, 25,055백만원 지원
2025년	4,312명, 24,481백만원 지원
2026년	2,867명, 15,403백만원 지원

(4-3) 향후(2027년 이후) 기대효과:

○ 장기간 직업훈련에 따른 생계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직업훈련 몰입도 제고하여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대부 신청 (인터넷 또는 방문)	→	훈련사실 확인	→	대부결정 통보 (신용보증 병행)	→	대부금 입금 (신청인 계좌)
신청인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대부 대행은행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대부신청

8) 최근 3년간(2024년~2026년)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8-1) 정부 사업평가:

구분	연도	주요내용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	2026년	○ 지적 : 직업훈련생계비대부 대상자의 실질적인 자활 및 역량 강화를 측정할 수 있는 결과 중심 지표인 대부 지원 인원의 직업훈련 수료율을 신규 성과지표로 검토* * 정보연계를 위한 근로복지공단의 전산망 신규 구축 필요(~'28년) ○ 조치 : 전산망 구축 전까지는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인원으로 지표 설정 추진

(8-2) 국회 지적사항

구분	연도	주요내용
결산국회	2023년	○ 지적 : 국회 의결취지와 다르게 예산을 증감하여 집행하여 「국가재정법」 위반소지가 없도록 국회 의결취지에 맞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 ○ 조치 : 제도개선에 따른 인원 감축 및 사업 집행추이 등을 고려하여 '25년 예산 감액 편성(△23.5%), 관련 기관 간 연계를 통한 홍보 및 사업 활성화 추진 등을 통해 변경 및 불용 요인 해소

(8-3) 감사원, 총리실, 기타(언론, 시민단체 등) 결과: 해당없음

4. 최근 4년간(2023년~2026년) 결산내역

1) 결산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연도	당초 계획액	수정 계획액 (A)	전년도 이월액	기금변경 증감액 등	계획 현액	집행액 (B)	집행률 (B/Ax100)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3년	53,520	95,559				78,953	82.6	-	16,606
2024년	45,492	45,492				25,055	55.1	-	20,437
2025년	34,788	34,788				24,481	70.3	-	10,307
2026년	25,055	25,055				15,403	61.5	해당없음	해당없음

2) 연도별 결산 주요사항

연도	유형	금액 (백만원)	사유
2023년	추경	42,039	물가·민생경제 상황 및 분야별 대응 방향('23.2)」에 따른 생계비 대부한도 한시적 확대 반영으로 추가 소요 발생
	불용	16,606	집행잔액
2024년	불용	20,437	사업 제도 개선 등으로 훈련 수요자 감소로 불용
2025년	불용	10,307	집행잔액 및 사업 제도 개선 등으로 훈련 수요자 감소로 불용

5. 기타 추가자료: 해당없음

사 업 명
(15) 구직급여(1280-350)

1. 사업 총괄 정보

1) 사업 기본 정보

(1-1) 일반 정보

소관	실·국	과·팀	기금	계정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고용보험기금	-

(1-2) 코드·명칭 정보

구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080	08D	1200	1280	350
명칭	사회복지	고용	고용안전망확충	실업급여	구직급여

2)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N	Y	N	N	N	N

3)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Y	N	N	N	N	-	-

4) 기능별(내역사업별)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내역사업명	소관	사업시행주체
구직급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2. 지출계획 총괄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사업명	2025년 결산액	2026년 당초계획액 (A)	2026년 수정계획액	2027년 요구액	2027년 정부안액 (B)	증감액 (B-A)	증감률 (B-A) /A×100
구직급여	12,365,489	11,537,611	11,537,611	11,679,948	11,679,948	142,337	1.2

1)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계획액 (수정)	2025년 계획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계획액 (수정)	2026년 계획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12,607,046	12,607,046	12,365,489	-	24,156	11,537,611	11,537,611	7,390,000	11,679,948
·구직급여	12,607,046	12,607,046	12,365,489	-	24,156	11,537,611	11,537,611	7,390,000	11,679,948

2) 비목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계획액 (수정)	2025년 계획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계획액 (수정)	2026년 계획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12,607,046	12,607,046	12,365,489	-	24,156	11,537,611	11,537,611	7,390,000	11,679,948
·보험금(320-04)	12,607,046	12,607,046	12,365,489	-	24,156	11,537,611	11,537,611	7,390,000	11,679,948

3. 사업 설명

1) 사업목적·내용

사업목적	○ 실직자의 생활안정 및 조속한 노동시장 복귀 지원
사업내용	○ 18개월간 180일 이상* 근무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법령에서 정한 사유로 이직하여 근로의 의사·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120~270일 간 구직급여 등 지급 * 예술인은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9개월 이상(노무제공자는 12개월 이상)

2) 사업개요

(2-1)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사업근거	○ 고용보험법 제40조 *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이하 생략> ○ 고용보험법 제51조 * **고용보험법 제51조(훈련연장급여)** ①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급자격자의 연령·경력 등을 고려할 때 재취업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이 필요하면 그 수급자격자에게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도록 지시할 수 있다.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도록 지시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자가 그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기간 중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는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하여 지급하는 구직급여(이하 "훈련연장급여"라 한다)의 지급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한도로 한다. <이하 생략> ○ 고용보험법 제52조 * **고용보험법 제52조(개별연장급여)** ①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격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는 그가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고용보험법 제53조 * **고용보험법 제53조(특별연장급여)** ①고용노동부장관은 실업의 급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수급자격자가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이직 후의 생활안정을 위한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수급자격자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수급자격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생략> ○ 고용보험법 제57조 * **고용보험법 제57조(지급되지 아니한 구직급여)** ①수급자격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급자격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구직급여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급자격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수급자격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사람의 청구에 따라 그 미지급분을 지급한다. <이하 생략> ○ 고용보험법 제63조 * **고용보험법 제63조(질병 등의 특례)** ①수급자격자가 제42조에 따라 실업의 신고를 한 이후에 질병·부상 또는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날에 대하여는 제4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수급자격자의 청구에 의하여 제46조의 구직급여일액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상병급여"라 한다)을 구직급여를 갈음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고용보험법 제77조의3 * **고용보험법 제77조의3(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 ① 예술인의 구직급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단기예술인이었던 사람만 해당한다. <이하 생략> ○ 고용보험법 제77조의8 * **고용보험법 제77조의8(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 ① 노무제공자의 구직급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단기노무제공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이하 생략>
추진경위	○ 1992. 3월 한국노동연구원에「고용보험연구기획단」발족 ○ 1993. 4월「고용보험 실무 작업반」구성 및 시행방침 확정 ○ 1993.12월 고용보험법 제정 및 공포 ○ 1995. 7월 고용보험사업(실업급여 등) 시행 이후 1996년부터 지급 ○ 2020.12월 고용보험법 개정 및 예술인 고용보험제도(실업급여 등) 시행 ○ 2021. 7월 고용보험법 개정 및 노무제공자 고용보험제도(실업급여 등) 시행

(2-2) 사업규모

○ 사업기간 : 1995년 7월 1일 ~ 계속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계획액 기준, 기금운용계획변경 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안)
사업비	11,346,824	11,787,793	12,607,046	11,537,611	11,679,948

(2-3)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고용센터

○ 사업 수혜자 : 구직급여 수급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3) 기능별(내역사업별) 산출 내역

(3-1) 내역사업별 세부 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계획액(수정)(A)	2027년 정부안액(B)	증감 (B-A)
합 계	**11,537,611**	**11,679,948**	**142,337**
구직급여	11,537,611	11,679,948	142,337

○ **구직급여 (2026년) 11,537,611 → (2027년) 11,679,948백만원, +1.2%**

- **(설명)** '25년 지원인원·지급일수 및 고용보험기금 재정추계 증감률, '26~'27년 최저임금 인상률 등 적용하여 '26년 대비 +1.2%(142,337백만원) 증액

- **(산출)** 11,679,948백만원 = 구직급여 11,677,949백만원 + 개별연장급여 1,882백만원 + 훈련연장급여 117백원

4) 사업효과

(4-1) 최근 5년(2023년~2027년)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 **성과지표: 구직급여 수급 중 재취업률**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목표	신규	신규	신규	신규	28.9%
실적	30.3%	30.6%	30.9%	36.6%	-
달성도	-	-	-	-	-

- **측정산식 :** 수급기간 중 재취업자 수 ÷ 구직급여 지급 종료자 수 × 100

- **측정방법 및 목표치 설정근거 :** 최근 10개년('16~'25년) 평균 재취업률

- **자료수집방법/출처 :** 고용정보통합분석시스템(EIS)

(4-2) 성과지표 이외의 최근 4년(2023년~2026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연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3년	수급자 167만명에게 구직급여 등 113,071억원 지급
2024년	수급자 170만명에게 구직급여 등 117,405억원 지급
2025년	수급자 172만명에게 구직급여 등 123,655억원 지급
2026년	'26.7월까지 수급자 125만명에게 구직급여 등 73,900억원 지급

(4-3) 향후(2027년 이후) 기대효과

○ 실업에 따른 소득상실 위험을 완화하고,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재취업 및 노동시장 복귀를 촉진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	고용보험법 제42조 (실업의 신고)	실직자 → 고용센터
수급자격 인정여부 결정	고용보험법 제43조 (수급자격의 인정)	고용센터 → 실직자
실업인정 신청(재취업활동 및 취업 여부 증빙자료 제출)	고용보험법 제44조 (실업의 인정)	수급자격자 → 고용센터
구직급여 지급 및 구직상담 등 재취업활동 지원	고용보험법 제44조 (실업의 인정)	고용센터 → 수급자격자

8) 최근 3년간(2024년~2026년)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8-1) 정부 사업평가

구분	연도	주요내용
재정일자리사업 평가	2026년	○ 노동 보상의 양극화와 고령화 등 최근 노동시장 변화에 따른 구직급여의 역할과 기능 재정립 필요

(8-2) 국회 지적사항

구분	연도	주요내용
2024회계연도 결산	2025년	○ 지적 : 구직급여 반복수급 해소를 위한 개선 필요 ○ 조직 : 반복수급자의 조속한 노동시장 복귀 지원을 위한 실업인정 방식과 재취업활동 기준 강화 등 관리 강화 방안 마련·시행 중

(8-3) 감사원, 총리실, 기타(언론, 시민단체 등) 결과: 해당없음

4. 최근 4년간(2023년~2026년) 결산내역

1) 결산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연도	당초 계획액	수정 계획액 (A)	전년도 이월액	기금변경 증감액 등	계획 현액	집행액 (B)	집행률 (B/Ax100)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3년	11,183,948	11,346,824	-	162,876	11,346,824	11,307,122	99.7	-	39,702
2024년	10,914,396	11,787,793	-	873,397	11,787,793	11,740,486	99.6	-	47,307
2025년	10,917,074	12,607,046	-	1,689,972	12,607,046	12,365,489	98.1	-	241,557
2026년	11,537,611	11,537,611	-	-	11,537,611	7,390,000	64.1	해당없음	해당없음

2) 연도별 결산 주요사항

연도	유형	금액 (백만원)	사유
2023년	계획변경	162,876	- 예산 조기 소진 전망에 따른 기금운용계획 변경
	불용	39,702	- 집행잔액 불용
2024년	계획변경	873,397	- 예산 조기 소진 전망에 따른 기금운용계획 변경
	불용	47,307	- 집행잔액 불용
2025년	계획변경	1,689,972	- 예산 조기 소진 전망에 따른 기금운용계획 변경
	불용	241,557	- 집행잔액 불용

5. 기타 추가자료: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16) 조기재취업수당(1280-351)

1. 사업 총괄 정보

1) 사업 기본 정보

(1-1) 일반 정보

소관	실·국	과·팀	기금	계정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고용보험기금	-

(1-2) 코드·명칭 정보

구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080	08D	1200	1280	351
명칭	사회복지	고용	고용안정망확충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2)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N	Y	N	N	N	N

3)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Y	N	N	N	N	-	-

2. 지출계획 총괄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사업명	2025년 결산액	2026년 당초계획액 (A)	2026년 수정계획액	2027년 요구액	2027년 정부안액 (B)	증감액 (B-A)	증감률 (B-A) /A×100
조기재취업수당	486,922	585,196	585,196	500,350	464,200	△120,997	△20.7

3. 사업 설명

1) 사업목적·내용

사업목적	○ 구직급여 수급자에게 구직활동을 촉진하는 인센티브를 지급함으로써 장기실업 방지 및 조기재취업 지원
사업내용	○ (조기재취업수당) 구직급여 수급자가 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을 남기고 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면 잔여 소정급여의 1/2 지급 ○ (직업능력개발수당) 구직급여 수급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는 경우 훈련참여기간에 1일당 실비성격의 수당을 지급 ○ (광역구직활동비) 구직급여 수급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거주지에서 25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을 하면 교통비 등 지급 ○ (이주비) 구직급여 수급자가 취업으로 인해 거주지를 이전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화물운송 실비 등 지급

2) 사업개요

(2-1)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사업근거	○ 고용보험법 제64조부터 제69조
추진경위	○ '92.3월 한국노동연구원에 「고용보험연구기획단」 발족 ○ '93.4월 「고용보험실무작업반」 구성 및 '95년 시행방침 확정 ○ '93.12월 고용보험법 제정·공포 ○ '95.7월 고용보험사업(실업급여 등) 시행 이후 '96년부터 지급

(2-2) 사업규모

○ 사업기간 : 1995. 7. 1. ~ 계속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계획액 기준, 기금운용계획변경 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안)
사업비	470,260	558,717	525,484	585,196	464,200

(2-3)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고용센터)

○ 사업 수혜자 : 구직급여 수급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3) 기능별(내역사업별) 산출 내역

(3-1) 내역사업별 세부 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계획액(수정)(A)	2027년 정부안액(B)	증감 (B-A)
합 계	585,196	464,200	△120,997

4) 사업효과

(4-1) 최근 5년(2023년~2027년)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 **성과지표:** 구직급여 수급중 재취업률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목표	신규	신규	신규	신규	28.9%
실적	30.0%	30.6%	30.9%	-	-
달성도				-	-

- **측정산식 :** 수급기간 중 재취업자 수 ÷ 구직급여 지급 종료자수 × 100
- **측정방법 및 목표치 설정근거 :** 최근 10개년 ('16~'25년) 평균
- **자료수집방법/출처 :** 고용보험 전산망

(4-2) 성과지표 이외의 최근 4년(2023년~2026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연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3년	수급자 97천명에게 조기재취업수당 등 4,684억원 지급
2024년	수급자 111천명에게 조기재취업수당 등 5,443억원 지급
2025년	수급자 99천명에게 조기재취업수당 등 4,869억원 지급
2026년	'26.7월까지 수급자 62천명에게 조기재취업수당 등 3,150억원 지급

(4-3) 향후(2027년 이후) 기대효과

○ 실업급여 수급자의 생활안정 및 조속한 노동시장 복귀 지원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1. 조기재취업수당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서 제출	고용보험법 제64조 (조기재취업 수당)	수급자 → 고용센터
지급요건 확인	고용보험법 제64조 (조기재취업 수당)	고용센터 → 수급자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고용보험법 제75조 (조기재취업 수당)	고용센터 → 수급자

- 고용노동부가 고용센터를 통해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 고용보험법 제64조에 따른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을 받고자 하는 수급자는 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고용센터는 법령에서 정한 지급 요건 등을 확인 후 지급

2.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수당 신청서 제출	고용보험법 제65조~제67조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	수급자 → 고용센터
지급요건 확인 (서류심사, 심의위원회 등 개최)	고용보험법 제65조~제67조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	고용센터 → 수급자
수당 지급	고용보험법 제65조~제67조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	고용센터 → 수급자

- 고용노동부가 고용센터를 통해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 고용보험법 제64조~제67조 근거한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수급자는 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고용센터는 법규에서 정한 지급요건을 확인하고 지급대상이 되는 수급자에게 지급

8) 최근 3년간(2024년~2026년)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8-1) 정부 사업평가: 해당없음

(8-2) 국회 지적사항:

구분	연도	주요내용
예결위 ('22년 결산)	2023년	○ 지적 : 연중 분포를 고려하지 않아 부족분 과다 추계 ○ 조치 :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액의 연간 추이 등 고려하여 추계 정확성 및 집행률 제고
예결위 ('24년 결산)	2025년	○ 지적 : 조기재취업수당 제도개선 추진 필요 ○ 조치 : 정책연구용역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개편안 마련 예정

(8-3) 감사원, 총리실, 기타(언론, 시민단체 등) 결과

구분	연도	주요내용
감사원	2025년	○ 지적 : 사중손실에 따른 제도 효과성 제고 등 필요 ○ 조치 : 지급 제외 요건 개편을 위한 관계법령 개정 추진 중

4. 최근 4년간(2023년~2026년) 결산내역

1) 결산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연도	당초 계획액	수정 계획액 (A)	전년도 이월액	기금변경 증감액 등	계획 현액	집행액 (B)	집행률 (B/Ax100)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3년	386,659	470,260	-	83,601	470,260	468,354	99.6	-	1,906
2024년	463,837	558,717	-	94,880	558,717	544,284	97.4	-	14,433
2025년	525,484	525,484	-	-	525,484	486,922	92.7	-	38,562
2026년	585,196	585,196	-	-	585,196			해당없음	해당없음

2) 연도별 결산 주요사항

연도	유형	금액 (백만원)	사유
2023년	불용	1,906	- 집행잔액 불용
2024년	불용	14,433	- 집행잔액 불용
2025년	불용	38,562	- 집행잔액 불용

5. 기타 추가자료: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17) 자영업자 실업급여(1292-350)

1. 사업 총괄 정보

1) 사업 기본 정보

(1-1) 일반 정보

소관	실·국	과·팀	기금	계정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 고용서비스정책관	고용보험기획과	고용보험기금	-

(1-2) 코드·명칭 정보

구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080	08D	1200	1292	350
명칭	사회복지	고용	고용안전망확충	자영업자 실업급여	자영업자 실업급여

2)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N	Y	N	N	N	N

3)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Y	N	N	N	N	-	-

4) 기능별(내역사업별)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내역사업명	소관	사업시행주체
자영업자 실업급여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고용노동부(고용센터)

2. 지출계획 총괄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사업명	2025년 결산액	2026년 당초계획액 (A)	2026년 수정계획액	2027년 요구액	2027년 정부안액 (B)	증감액 (B-A)	증감률 (B-A) /A×100
자영업자 실업급여	20,535	19,915	19,915	22,995	22,995	3,080	15.5

1)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계획액 (수정)	2025년 계획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계획액 (수정)	2026년 계획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자영업자 실업급여	18,444 (21,619)	21,619	20,535	0	1,084	19,915	19,915	13,346	22,995
·자문수당	23 (23)	23	9	0	14	23	23	8	20
·보험금	18,421 (21,596)	21,596	20,526	0	1,070	19,892	19,892	13,339	22,975

2) 비목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계획액 (수정)	2025년 계획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계획액 (수정)	2026년 계획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18,444 (21,619)	21,619	20,535	0	1,084	19,915	19,915	13,346	22,995
·일반수용비(210-01)	23 (23)	23	9	0	14	23	23	8	20
·보험금(320-04)	18,421 (21,596)	21,596	20,526	0	1,070	19,892	19,892	13,339	22,975

3. 사업 설명

1) 사업목적·내용

(1-1) 자영업자 실업급여

사업목적	비자발적 폐업 자영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을 통한 적정한 재취업·재창업 활동 보장
사업내용	폐업전 24개월 동안 1년 이상 가입하고, 매출액 감소 등의 사유로 폐업한 자영업자에게 기초일액의 60%를 120~210일간 지급

2) 사업개요

(2-1)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사업근거	○ 「고용보험법」 제4장제4절(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의 특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9까지)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
추진경위	○ 2013년: 자영업자 실업급여 지급 관련 구체적 업무처리절차 마련 ○ 2014년: 가입률 제고를 위한 가입요건 등 완화 방안 검토 ※「자영업자 고용보험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14.6월~12월) ○ 2015년: 기준보수 등급 신설(총 5등급 → 7등급) ○ 2016년: 임의가입기간 확대(개업일로부터 6개월 → 1년 이내) ○ 2017년: 임의가입기간 추가 확대(개업일로부터 1년 → 5년 이내) ○ 2019년: 임의가입기간 폐지(개업일로부터 5년 → 폐지) 실업급여보장성 강화('19.10.1.시행) * 지급수준 10%p 인상(50%→60%), 지급일수 30일 확대(90~180일→120~210일) ○ 2020년: 전국민고용보험 로드맵 발표('12.23), 자영업자 가입대상 및 방식과 적용시기 단계적 확대방안 논의('21년 상반기부터) ○ 2021년: 자영업자 고용보험 확대적용 관련 경사노위 등 사회적 논의 추진 ○ 2022년: 가입대상 확대(고유번호를 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 * (노동부 고시) 가정·민간어린이집 및 노인장기요양기관 중 대표자와 기관장이 동일한 개인인 경우 ○ 2023년: 고유번호증 보유 자영업자 실업급여 지급 관련 업무처리 절차 마련 ○ 2024년: 농어업경영체 등록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및 실업급여 지급 관련 업무처리 절차 마련

(2-2) 사업규모

○ 사업기간 : 2013~계속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계획액 기준, 기금운용계획변경 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사업비	18,757	20,196	21,619	19,915	22,995

(2-3)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고용센터)

○ 사업 수혜자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후 비자발적으로 폐업한 자영업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3) 기능별(내역사업별) 산출 내역

(3-1) 내역사업별 세부 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계획액(수정)(A)	2027년 정부안액(B)	증감 (B-A)
합 계	19,915	22,995	3,080
자문수당	23	20	△3
보험금	19,892	22,975	3,083

○ **자문수당 (2026년) 23 → (2027년) 20백만원, △13.0%**

- (설명) '23~'25년 자문건수 등을 고려하여 '26년 대비 3백만원 감액(△13.0%) 요구
- (산출) (2026년) 228건×100,000원 → (2027년) 195건×100,000원
  * 자문건수 : ('26년) 228건 → ('27년) 195건 / 자문건당 단가 : 100,000원

○ **보험금 (2026년) 19,892 → (2027년) 22,975백만원, +15.5%**

- (설명) 최근 5년간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 및 실업급여 수급자 지속 증가 추세*, 내수경기 악화 전망 등을 고려하여 '26년 대비 3,083백만원 증액(+15.5%) 요구
- (산출) (2026년) 3,611명×53,277원×103.4일 → (2027년) 4,489명×53,930원×94.9일
  * 수급자 : ('26년) 3,611명 → ('27년) 4,489명
  * 급여일액 : ('26년) 53,277원 → ('27년) 53,930원
  * 지급일수 : ('26년) 103.4일 → ('27년) 94.9일

4) 사업효과

(4-1) 최근 5년(2023년~2027년)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 성과지표: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자 수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목표	-	-	-	-	4,489명
실적	-	-	-	-	-
달성도	-	-	-	-	-

- 측정산식 : 연도 내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자 수
- 측정방법 및 목표치 설정근거 : '25년 수급자수에 '23~'25년 연평균 수급자 증가율 적용하여 목표치 산출
- 자료수집방법/출처 : 고용보험 전산망

(4-2) 성과지표 이외의 최근 4년(2023년~2026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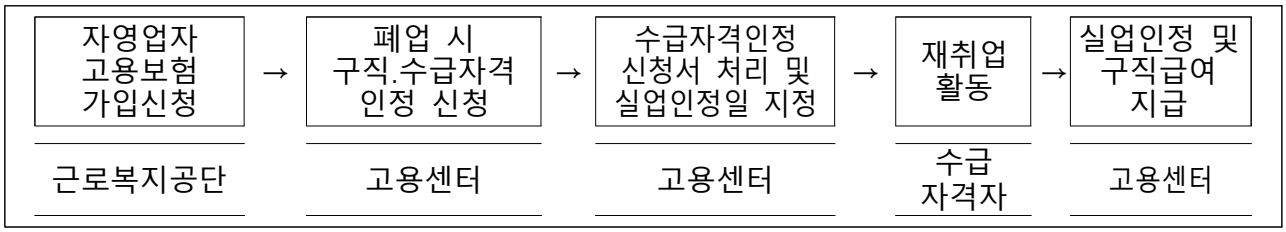
연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3년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자수 3,248명
2024년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자수 3,490명
2025년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자수 3,820명
2026년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자수 2,968명

(4-3) **향후(2027년 이후) 기대효과:**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확대에 따른 신규 가입자 및 실업급여 수급자 증가로 사회안전망 강화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8) 최근 3년간(2024년~2026년)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8-1) 정부 사업평가

구분	연도	주요내용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2024년	○ 의견 - 운영성과 향상을 위한 심도 있는 현황파악 및 분석 필요 - 가입촉진을 위해 타부처 사업과의 협업을 통한 사업 연계 검토 ○ 결과 : 개선필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2025년	○ 의견 - 재취업활동 지원 시 업종이나 지역별 이질성이 높은 자영업자 특성 고려 필요 - 수행인력의 전문성 제고 및 중기부와의 협력관계 강화 필요 ○ 결과 : 개선필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2026년	○ 의견 - 잦은 제도변경 지양 및 변경사항 전달 명확화, 자영업자 유형별 심층연구 수행 - 성과지표 고도화 및 국세청 등 타기관 자료 협조 필요 ○ 결과 : 개선필요

(8-2) 국회 지적사항: 해당없음

(8-3) 감사원, 총리실, 기타(언론, 시민단체 등) 결과: 해당없음

4. 최근 4년간(2023년~2026년) 결산내역

1) 결산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연도	당초 계획액	수정 계획액 (A)	전년도 이월액	기금변경 증감액 등	계획 현액	집행액 (B)	집행률 (B/Ax100)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3년	11,222	18,757	0	7,535	18,757	16,784	89.5	0	1,973
2024년	17,541	20,196	0	2,655	20,196	18,833	93.3	0	1,363
2025년	18,444	21,619	0	3,175	21,619	20,535	95.0	0	1,084
2026년	19,915	19,915	0	0	19,915	13,346	67.0	0	0

2) 연도별 결산 주요사항

연도	유형	금액 (백만원)	사유
2023년	불용	1,973	- (계획변경) 7,535백만원 증액 - (계획변경 사유) '23.6월 기준 8,450백만원이 집행(75.4%)되어 8월 중 조기 소진될 것으로 예상 - (불용 사유) 8월 이후 월평균 지급액이 예상보다 적어 불용 발생
2024년	불용	1,363	- (계획변경) 2,655백만원 증액 - (계획변경 사유) '24.9월 기준 14,597백만원이 집행(83.3%)되어 11월 중 조기 소진될 것으로 예상 - (불용 사유) 11월 이후 집행액이 예상보다 적어 불용 발생
2025년	불용	1,084	- (계획변경) 3,175백만원 증액 - (계획변경 사유) '25.9월 기준 15,584백만원이 집행(84.5%)되어 11월 중 조기 소진될 것으로 예상 - (불용 사유) 11월 이후 집행액이 예상보다 적어 불용 발생

5. 기타 추가자료: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18) 실업크레딧지원(고보)(1293-350)

1. 사업 총괄 정보

1) 사업 기본 정보

(1-1) 일반 정보

소관	실·국	과·팀	기금	계정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고용보험기금	-

(1-2) 코드·명칭 정보

구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080	08D	1200	1293	350
명칭	사회복지	고용	고용안전망확충	실업크레딧지원	실업크레딧지원(고보)

2)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N	Y	N	N	N	N

3)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Y	N	N	N	N	-	-

4) 기능별(내역사업별)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내역사업명	소관	사업시행주체
실업크레딧지원(고보)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2. 지출계획 총괄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사업명	2025년 결산액	2026년 당초계획액 (A)	2026년 수정계획액	2027년 요구액	2027년 정부안액 (B)	증감액 (B-A)	증감률 (B-A) /A×100
실업크레딧지원(고보)	31,720	33,234	33,234	28,249	28,249	△4,985	△15.0

1)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계획액 (수정)	2025년 계획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계획액 (수정)	2026년 계획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31,720	31,720	31,720	-	-	33,234	33,234	19,933	28,249
·실업크레딧지원(고보)	31,720	31,720	31,720	-	-	33,234	33,234	19,933	28,249

2) 비목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계획액 (수정)	2025년 계획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계획액 (수정)	2026년 계획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31,720	31,720	31,720	-	-	33,234	33,234	19,933	28,249
·기타보전금(310-04)	31,720	31,720	31,720	-	-	33,234	33,234	19,933	28,249

3. 사업 설명

1) 사업목적·내용

사업목적	○ 실업자의 노후 소득보장 및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
사업내용	○ 국민연금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구직급여 수급자*에게 구직급여 수급기간 범위에서 최대 12개월까지 보험료의 75%를 지원**하고,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그 기간만큼 추가 산입 *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구직급여 수급자 중에서 재산 6억원 이하, 종합소득(사업·근로소득 제외)이 1,68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일반회계, 고보기금, 국민연금기금 각 25% 지원, 자부담 25%

2) 사업개요

(2-1)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사업근거	○ 국민연금법 제19조의2 * **국민연금법 제19조의2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①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고용보험법」제37조제1항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는 경우로서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산입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 다만, 추가로 산입하는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1.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람 중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을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또는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하일 것 ②제1항에 따라 산입되는 가입기간에 대하여는「고용보험법」제45조에 따른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을 월액으로 환산한 금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인정소득"이라 한다)으로 가입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인정소득의 상한선 및 하한선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은 제1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하려는 경우 인정소득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는 연금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반회계, 제101조에 따른 국민연금기금 및「고용보험법」제78조에 따른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후략)
추진경위	○ 2014년 5월 실업크레딧 도입 여·야·정 합의 ○ 2014년 12월 국민연금법 개정 및 2015년 7월 제도 시행 ○ 2016년 5월 고용보험법 개정 및 8월 시행

(2-2) 사업규모

○ 사업기간 : 2016년 8월 1일～계속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

(단위: 백만원)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안)
사업비	34,474	33,658	31,720	33,234	28,249

(2-3)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고용센터),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

○ 사업 수혜자 : 국민연금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구직급여 수급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3) 기능별(내역사업별) 산출 내역

(3-1) 내역사업별 세부 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계획액(수정)(A)	2027년 정부안액(B)	증감 (B-A)
합 계	33,234	28,249	△4,985
실업크레딧지원(고보)	33,234	28,249	△4,985

○ **실업크레딧지원(고보) (2026년) 33,234 → (2027년) 28,249백만원, △15.0%**

- **(설명)** 최근 5개년의 지원인원, 평균 인정소득, 지원기간 등의 실적을 종합 반영하여 ’26년 대비 △15.0%(4,985백만원) 감액
- **(산출)** 28,249백만원 = 440천명 × 17,325원 × 3.7개월

4) 사업효과

(4-1) 최근 5년(2023년~2027년)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 **성과지표: 고용보험 가입자수**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목표	15,710천명	15,993천명	16,188천명	16,449천명	16,597천명
실적	15,835천명	16,060천명	16,303천명		
달성도	100.8%	100.4%	100.7%		

- **측정산식 :** 해당연도의 12월말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수 추출
- **측정방법 및 목표치 설정근거 :** ’27년 성과목표는 ’26년 성과목표의 100.9% 수준으로 상향하여 설정
- **자료수집방법/출처 :** 고용정보통합분석시스템(EIS)

(4-2) 성과지표 이외의 최근 4년(2023년~2026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연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3년	56만명에게 국민연금 보험료 320억원 지원
2024년	56만명에게 국민연금 보험료 322억원 지원
2025년	57만명에게 국민연금 보험료 317억원 지원
2026년 7월	’26.7월까지 40만명에게 국민연금 보험료 200억원 지원

(4-3) 향후(2027년 이후) 기대효과

○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실업급여 수급자의 실업기간 중 연금 가입기간 공백을 최소화하여 노후소득 보장 강화 및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실업크레딧 신청	국민연금법 제19조의2제1항	수급자 → 고용센터/국민연금공단
재산 및 소득요건 검토	국민연금법 제19조의2제1항	국민연금공단 → 수급자
실업크레딧 지원 대상자 확정 및 납입고지서 송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3제2항	국민연금공단 → 수급자
자부담분 25% 납부	국민연금법 제19조의2제3항	수급자 → 국민연금공단
자부담분 납부한 신청자에 대해 보험료지원금 예산 요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4조의2제1항	국민연금공단 → 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
보험료지원금 예산 지급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4조의2제2항	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국민연금법 제19조의2제1항	국민연금공단 → 수급자

8) 최근 3년간(2024년~2026년)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8-1) 정부 사업평가

구분	연도	주요내용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2026년	○ 양호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2026년	○ 감액 : 자부담(25%) 구조로 재산·임금 수준이 높은 집단의 제도 활용가능성 有 → 점검 필요

(8-2) 국회 지적사항

구분	연도	주요내용
환노위 '22회계연도 결산	2023년	○ 지적 : 연례적 예산 부족에 따른 집행 지연 방지 필요 ○ 조치 : 정확한 예산 추계를 통해 충분한 재원 확보 노력

(8-3) 감사원, 총리실, 기타(언론, 시민단체 등) 결과: 해당없음

4. 최근 4년간(2023년~2026년) 결산내역

1) 결산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연도	당초 계획액	수정 계획액 (A)	전년도 이월액	기금변경 증감액 등	계획 현액	집행액 (B)	집행률 (B/Ax100)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3년	34,474	34,474	-	-	34,474	31,967	92.7	-	2,507
2024년	33,658	33,658	-	-	33,658	32,157	95.5	-	1,501
2025년	31,720	31,720	-	-	31,720	31,720	100.0	-	-
2026년	33,234	33,234	-	-	33,234	19,933	60.0	해당없음	해당없음

2) 연도별 결산 주요사항

연도	유형	금액 (백만원)	사유
2023년	불용	2,507	- 집행잔액 불용
2024년	불용	1,501	- 집행잔액 불용

5. 기타 추가자료: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19) 고용안정장려금(1345-350)

1. 사업 총괄 정보

1) 사업 기본 정보

(1-1) 일반 정보

소관	실·국	과·팀	기금	계정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정책관 노동시장정책관 노 동 정 책 관 근로기준정책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기업일자리지원과 임금근로시간정책과 고 용 차 별 개 선 과	고용보험기금	-

(1-2) 코드·명칭 정보

구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080	08D	1300	1345	350
명칭	사회복지	고용	고용평등증진	일·가정양립지원	고용안정장려금

2)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N	Y	N	N	N	N

3)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Y	N	N	Y	N	-	-

4) 기능별(내역사업별)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내역사업명	소관	사업시행주체
워라밸일자리장려금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기업일자리지원과, 임금근로시간정책과	직접수행
정규직 전환 지원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2. 지출계획 총괄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사업명	2025년 결산액	2026년 당초계획액 (A)	2026년 수정계획액	2027년 요구액	2027년 정부안액 (B)	증감액 (B-A)	증감률 (B-A) /A×100
고용안정장려금	381,299	439,394	-	517,773	517,773	78,379	17.8

1)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계획액 (수정)	2025년 계획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계획액 (수정)	2026년 계획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390,894	390,894	381,299	-	9,595	439,394 (439,394)	439,394	319,003	517,773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35,826	30,726	28,051	-	2,675	58,362 (55,362)	55,362	23,440	83,938
· 정규직전환 지원	2,500	2,500	1,778	-	722	6,900 (4,900)	4,900	679	8,100
·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15,931	21,031	20,620	-	411	14,644 (19,644)	19,644	17,242	21,417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336,637	336,637	330,850	-	5,787	359,488 (359,488)	359,488	277,642	404,318

2) 비목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계획액 (수정)	2025년 계획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계획액 (수정)	2026년 계획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390,894	390,894	381,299	-	9,595	439,394 (439,394)	439,394	319,003	517,773
· 일반수용비(210-01)	861	855	805	-	50	911 (894)	894	177	911
· 특근매식비(210-05)	22	22	22	-	0	22 (22)	22	8	22
· 임차료(210-07)	4	10	9	-	1	4 (4)	4	4	4
· 일반용역비(210-14)	834	834	809	-	25	1,734 (1,751)	1,751	1,207	1,550
· 국내여비(220-01)	29	29	29	-	-	29 (29)	29	27	29
· 사업추진비(240-01)	36	36	34	-	2	36 (36)	36	22	36
· 일반연구비(260-01)	220	220	220	-	-	-	-	-	-
· 정책연구비(260-02)	-	-	-	-	-	587 (587)	587	411	587
· 기타보전금(310-04)	52,251	52,251	48,521	-	3,730	74,183 (74,183)	74,183	37,825	107,916
· 민간경상보조(320-01)	3,000	3,000	3,000	-	-	3,000 (3,000)	3,000	1,642	2,945
· 민간위탁사업비(320-02)	-	-	-	-	-	2,500 (2,500)	2,500	1,750	2,500
· 보험금(320-04)	333,637	333,637	327,850	-	5,787	356,388 (356,388)	356,388	275,930	401,273

3. 사업 설명

1) 사업목적·내용

○ (고용안정장려금)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제, 육아휴직 등 제도를 도입·활용하거나,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업주 지원**을 통해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및 고용안정**을 지원

(1-1)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사업목적 및 내용	**(소정근로시간단축)** 근로자가 가족돌봄, 본인건강, 임신, 육아 등으로 일을 그만두지 않고, 일정기간 소정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고 전일제로 복귀할 수 있도록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사업주 지원 ※ '육아기 10시 출근제' ('26년~, 육아기 근로자의 임금 감소없는 하루 1시간 근로시간 단축 지원) **(실근로시간 단축)**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도입하여 연장근로 감소 등 기업 전반의 실근로시간을 단축한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사업주 지원 ※ '24년 신설, '26년부터 신규지원 종료 **(워라밸+4.5 프로젝트)** 노사 합의로 임금 감소 없이 주 4.5일제 도입 등 실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운영하는 20인 이상 300인 이하의 우선지원 대상기업을 지원 * 생명·안전 관련 업종, 장시간 근로 발생 사업장, 교대제 개편 추진 기업 등은 선정·지원 우대

(1-2)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목적 및 내용	**(장려금 및 임금증가 보전금)** 6개월 이상 2년 이하 고용(사용)한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 또는 6개월 이상 상시적으로 노무를 제공한 노무제공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직접 고용하는 30인 미만 기업 및 청년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30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 '24년부터 신규지원 종료, '26년 지원 재개

(1-3)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사업목적 및 내용	**(유연근무 장려금)** 소속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유연근무제(재택·원격·선택·시차출퇴근)를 활용하게 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사업주에 장려금 지원 **(일·생활 균형 시스템 지원)** 유연근무(재택·원격·선택·시차출퇴근, 근로시간 단축) 및 시간단위 연차, 모성보호 제도 활용 등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에 일·생활 균형 시스템 설치비용 지원

(1-4)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사업목적 및 내용	**(장려금)**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지원 **(대체인력 지원금)** 출산전후휴가(유·사산휴가 포함),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또는 파견근로자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업무분담 지원금)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또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사용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사업주에 대한 장려금 지원

2) 사업개요

(2-1)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사업근거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고용보험법 제25조(고용안정 및 취업촉진)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고용안정과 취업의 촉진) 제6호 및 제7호, 제37조의2(고용안정 지원사업 등에 대한 지원) ○ 정규직 전환 지원: 고용보험법 제25조(고용안정 및 취업촉진)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고용안정과 취업의 촉진) 제5호, 제37조의2(고용안정 지원사업 등에 대한 지원) ○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고용보험법 제25조(고용안정 및 취업촉진)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고용안정과 취업의 촉진) 제7호, 제37조의2(고용안정 지원사업 등에 대한 지원)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고용보험법 제23조(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추진경위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 (추진경위) 근로자 사정(임신, 육아, 가족돌봄, 학업 등)에 따라 일을 그만두지 않고 일정기간 근로시간을 단축해서 근무하는 것을 지원함으로써 일·가정 양립을 도모하고, 연장근로 단축 등 장시간 근로관행을 개선하여 근로자의 삶의 질 제고 - ('15년) '시간선택제 전환지원' 사업 도입 - ('17년) 고용장려금 통합에 따라 '고용창출장려금' 사업의 내역으로 통합 - ('18년) '고용안정장려금' 사업의 내역으로 통합 - ('20년)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으로 사업명칭 변경 - ('24년)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내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 유형 신설 - ('26년) 실근로시간 단축 유형 신규지원 종료 및 워라밸+4.5프로젝트 유형 신설, 소정근로시간 내 '육아기 10시 출근제' 사업 신설 - ('27년) 소정근로시간 단축 유형 다자녀 근로자 지원기간 연장(1년) ○ **정규직 전환 지원** - (추진경위) 인건비 절감목적의 비정규직 사용을 자제하고, 상시·지속적 업무에 가급적 정규직을 고용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고용창출지원사업'의 내역사업으로 '정규직 전환 지원' 신설('15년)

	-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및 새경제팀 경제정책방향('14.3월, 7월 발표) - 비정규직 종합대책('14.12월 발표) -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통한 상생고용 촉진대책('16.3월 발표) - ('17년) 고용장려금 개편 및 지원한도 인상: (임금상승분 70%<청년80%> → 임금상승분 80%, 간접노무비 20만원 포함 60만원 한도) - ('18년) 지원한도 인상 : 간접노무비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 ('18.7.18.이후 전환자부터 적용) - ('22년) 지원금액 및 지급방식 개편 : 임금 20만원 이상 증가 시 임금 증가 보전액 20만원 정액 지급(20만원 미만 증가 시 간접노무비만 지급) - ('24~'25년) 신규 지원 종료, 기승인인원에 대해서만 지급 - ('26년) 비정규직 규모 및 정규직과의 격차 지속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30인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신규 지원 재개 - ('27년) 지원대상 범위 확대 : 30인 미만 기업 + 청년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30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 ('16년)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제3차 건강가정 기본계획에 따라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사업' 도입 - ('17년) 지원대상 확대(중소→중소·중견기업),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구축비 지원 신설 - ('20년) 재택근무종합 컨설팅 신설 - ('23년) 유연근무종합 컨설팅으로 확대 - ('24년) 육아기 근로자 시차출퇴근 지원 신설 - ('25년) 유연근무 종합 컨설팅 일터혁신 상생 컨설팅(일반회계 이관)에 통합 - ('27년) 임신기 근로자 시차출퇴근 지원, 3명이상 다자녀 지원 기간 추가 부여 신설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 ('95.7월) 육아휴직등 부여 장려금 도입 - ('04.3월)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사업주 지원 - ('06년) 대체인력채용장려금 인상(15~20만원 → 20~30만원) 및 지원요건 완화 - ('08.6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 시에도 지원 - ('11년) 육아휴직등 장려금의 50%는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간 고용 유지된 이후 지급 - ('13년)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 상향(우선지원대상 기업 월 40만원) - ('14년)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육아휴직등 부여) 지원 수준 조정(대규모 기업 월 10만원), 대체인력지원금 지원 수준 상향(우선지원대상 기업 월 60만원/대규모 기업 월 30만원)

	- (’15.7월) 출산육아기고용지원금(육아휴직 등 부여)을 국가·공공기관 폐지, 1,000인 이상 대규모기업은 5만원, 1,000인 미만은 10만원 - (’17년) 육아휴직등 부여 장려금 대규모기업 지원 폐지, 우선지원대상기업 지원 상향(월 30만원), 최초 육아휴직자 월 10만원 추가 지원, 대체인력지원금 지원기간에 2주간의 업무 인수인계기간 포함 - (’18.7월) 대체인력지원금 지원요건 완화: 육아휴직 등 사용 후 복귀 전 또는 복귀 후 30일이 경과하지 않아도 자진퇴사 한 경우 지원 - (’19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인상(우선지원대상기업 월 30만원),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 지원 기간 확대 등(인수인계기간 2개월/인수인계기간에 한하여 우선지원대상기업 지원금 월 120만원) - (’19년) 사업 효율화 차원에서 비정규직 재고용 지원금 폐지(제도 활용 저조 및 정규직 전환 지원금과 중복) - (’20.3월) 지원금 지급 방식 변경 : 지원금의 100분의 50은 육아휴직 등의 기간 중에 3개월 주기로 지급하고, 나머지 100분의 50은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해당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 지급 - (’21년)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우선지원대상기업 간접노무비 지원 확대 * 우선지원대상기업 : 최초~세번째까지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할 경우 사업주에게 각각 월 10만원 추가지원(1호~3호 인센티브) - (’22년)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중소기업의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지원 강화 등이 과제로 반영)에 따라 ‘육아휴직 지원금(특례)’ 신설(육아휴직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 폐지), 대규모기업에 대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폐지 - (’24.7월) 육아기 단축에 따른 업무를 분담한 근로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사업주에 대한 장려금 지원제도 신설(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월 최대 20만원) - (’25.1월) ①육아휴직 지원금 남성 인센티브 신설, ②대체인력지원금 지원수준 상향(80만원→120만원) 및 파견근로자 사용시에도 지원, ③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및 업무분담지원금 신설 - (’26.1월) ①육아휴직 지원금 특례 지원수준 축소(첫 3개월간 월 200만원→100만원), ②대체인력지원금 지원수준 상향(월 최대 120만원→30인 미만 사업장 월 최대 140만원 / 30인 이상 사업장 월 최대 130만원), ③대체인력지원금 사후지급금 폐지(제도 사용기간 내 지원금 100% 지급), ④육아휴직자 복직 후 인수인계기간(최대 1개월) 대체인력지원금 추가 지원, ⑤육아휴직 업무분담지원금 지원수준 상향(월 최대 20만원→30인 미만 사업장 월 최대 60만원 / 30인 이상 사업장 월 최대 40만원), ⑥배우자 출산휴가 업무분담 지원금 신설(26.7월~)

(2-2) 사업규모

○ 사업기간 : 계속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계획액 기준, 기금운용계획변경 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사업비	211,632	347,495	390,894	439,394	517,773

(2-3)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민간위탁(워라밸+4.5 프로젝트) / 보조(인재채움뱅크)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고용센터) / 민간위탁(노사발전재단 등)

○ 사업 수혜자 : 고용안정장려금 지원사업 참여신청(사업계획 포함)을 하여 승인받거나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 등 제도 활용하여 지원금 지급을 신청한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기관명	2027년 지원금액 (백만원)	지원 비율(%)	법적근거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인재채움뱅크)	보조	인재채움뱅크 선정기관	2,945	100%	고용보험법 제25조 (고용안정 및 취업촉진)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고용안정과 취업의 촉진)

3) 기능별(내역사업별) 산출 내역

(3-1) 내역사업별 세부 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계획액(수정)(A)	2027년 정부안액(B)	증감 (B-A)
합 계	**439,394**	**517,773**	**78,379**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58,362	83,938	25,576
정규직 전환 지원	6,900	8,100	1,200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14,644	21,417	6,773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359,488	404,318	44,830

○ **워라밸일자리장려금 (2026년) 58,362 → (2027년) 83,938백만원, +43.8%**

- ・소정근로시간단축: ’25년 지원실적 반영, 다자녀 가구 지원 확대,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요건 완화로 지원인원 확대, 제도 개편 반영 등
  ・실근로시간단축: ‘26년 신규지원 종료(잔여비 편성)
  ・워라밸+4.5 프로젝트: ‘국정과제(75, 95),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법(하반기 제정 예정),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노사정 공동선언(‘25.12.30.)의 이행을 위해 지원 대상 확대

- 소정근로시간단축: 26,884백만원
  · 장려금: 26,296백만원
  = 일반사유[(12,493명×300천원×4.9개월)+(11,263명×25%×200천원×3개월)]
  + 육아기 10시 출근제(6,242백만원=3,468명×300천원×6개월)
  · 운영비: 588백만원

- 실근로시간단축: 200백만원 = 222명×30만원×3개월

- 워라밸+4.5 프로젝트: 56,854백만원
  · 장려금: 54,354백만원
  = 신규지원(310개소x13.3백만원x6개월)
  +기승인 지원(20개소×16백만원×3개월)+(132개소×16백만원×6개월)+(111개소×16백만원×9개월)
  · 민간위탁사업비: 2,500백만원(운영 및 인식확산)

○ **정규직 전환 지원 (2026년) 6,900 → (2027년) 8,100백만원, +17.4%**

- 청년 등 비정규직 규모 증가에 대응하여 청년이 선호하는 괜찮은 일자리로의 안정적 고용지원 및 국정과제 추진 등에 따라 지원 대상을 30인 이상 기업 중 청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기업으로 확대 조정

- 장려금: 8,100백만원
  = 기승인 지원(600명×60만원×6개월)
  + 30인 미만 기업 신규 지원(1,000명×60만원×6개월)
  + 30인 이상 청년 전환 기업 신규 지원(650명×60만원×6개월)
  * 지원인원 확대: (’26) 2,010명 → (’27) 2,250명
  ↳ • ①30인 미만 기업(기존 대상): 1,600명(신규 1,000명+기승인인원 600명)
  • ②청년을 전환한 30인 이상 기업(신설): 650명

○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2026년) 14,644 → (2027년) 21,417백만원, +46.3%**

- 유연근무 장려금 지원실적 증가 추세 반영, 육아기에 더해 임신기 근로자의 시차 출퇴근 활용에 대해서도 지원, 다자녀 근로자의 경우 유연근무 장려금 지원기간 연장(추가 1년) 등 고려

- 유연근무제 장려금 지원: 17,566백만원

= 일반지원 13,500백만원(9,000명×250천원×6개월)

+ 우대지원 4,066백만원[(2,259명(육아기+임신기+다자녀)×300천원×6개월]

- 일·생활 균형시스템 지원: 1,400백만원 = 200개소 × 7백만원
- 일생활 균형 네트워크 구축: 950백만원 = 운영비(50백만원)+용역비(900백만원)
-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487백만원
- 일·생활 균형인식개선: 800백만원
- 운영비: 214백만원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2026년) 359,488 → (2027년) 404,318백만원, +12.5%**

- '25~26년 실집행 추세 반영, 제도 개선에 필요한 소요 예산(육아휴직 지원금-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지원단가 인상, 배우자 출산휴가 업무분담지원금) 등 고려

- 지원금: 401,273백만원

· 육아휴직 지원금: 180,450백만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46,875백만원

· 대체인력 지원금: 154,188백만원

· 업무분담 지원금: 19,760백만원

- 인재채움뱅크 등: 3,045백만원

· 인재채움뱅크 운영비: 2,945백만원

· 실태조사: 100백만원

4) 사업효과

(4-1) 최근 5년(2023년~2027년)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 성과지표: 30~40대 여성고용률(%)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목표	63.8	67.0	69.0	70.8	71.0
실적	66.9	68.9	70.7	-	-
달성도	달성	달성	달성	-	-

- **측정산식:** 30～40대 여성취업자 수 / 30～40대 여성 생산인구 × 100
- **측정방법 및 목표치 설정근거:** 전년도 실적 및 집행추이 고려
- **자료수집방법/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조사

(4-2) 성과지표 이외의 최근 4년(2023년~2026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연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3년	36,966개소, 72,176명 지원
2024년	52,425개소, 99,783명 지원
2025년	63,717개소, 127,365명 지원
2026.7월	64,011개소, 122,526명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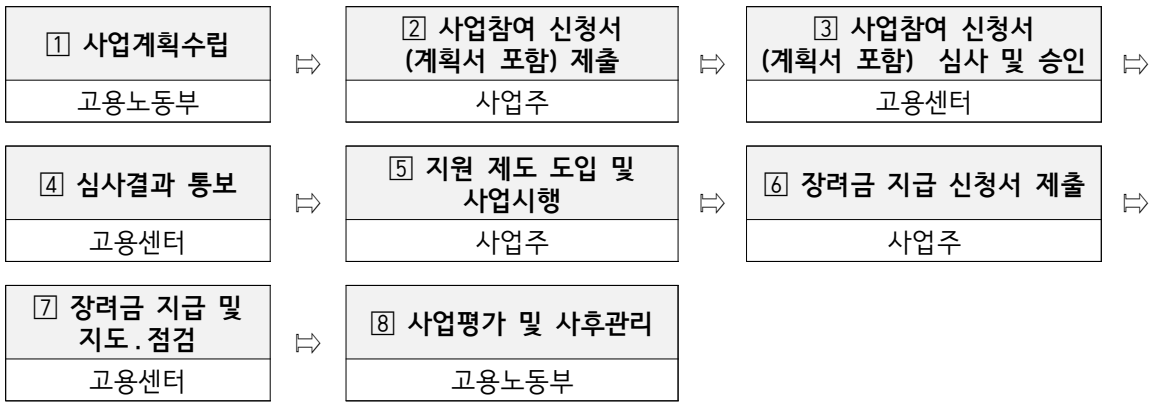
(4-3) 향후(2027년 이후) 기대효과:

○ 근로시간 단축·유연한 근무방식 활성화를 통해 전일제 위주의 장시간 근로 문화를 개선하여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고용이 불안정한 기간제 근로자 등에 대해 정규직으로 전환 또는 직접 고용토록 유도하여 바람직한 고용 관행을 유도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소정근로시간) 또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경우 2~4 생략

8) 최근 3년간(2024년~2026년)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8-1) 정부 사업평가

구분	연도	주요내용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성과평가	2026년	ㅇ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양호 ㅇ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 양호
중소기업 지원사업 성과평가	2026년	ㅇ 고용안정장려금: 우수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	2026년	ㅇ 고용안정장려금: 사업개선

(8-2) 국회 지적사항

구분	연도	주요내용
예정처	2024년	ㅇ 지적 : ① 실근로시간 단축 유형 참여 저조, ② 업무분담 지원금 홍보 강화 및 향후 적정 수준 예산 편성 필요 ㅇ 조치 : ① 현장의견을 수렴하여 제도 개편 추진, ② 다각도의 홍보 강화, '26년 예산 감액 편성
환노위·예결위	2024년	ㅇ 지적 : '26년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 재실시 ㅇ 조치 : '26년 사업재개(1.1) 및 사업 활성화 도모 위한 홍보 등 실시
예정처	2025년	ㅇ 지적 : 단기 육아휴직의 활용 제고 위한 업무분담 지원금 지원 등 기업 문화 개선방안 마련 및 홍보 강화필요 ㅇ 조치 : 육아휴직 업무분담지원금 도입('25년~), 홍보를 강화하여 제도 활용 유도
예결위	2025년	ㅇ 지적 : 실근로시간 단축 유형의 집행실적을 높이기 위해 일·생활 균형 인프라 구축비 지원 연계, 홍보 강화, 우수사례 확산 등 기업의 참여 유도를 위한 제도개선 검토 ㅇ 조치 : '25년부터 일·생활 균형 인프라 구축비 지원과 연계하여 근태관리시스템 구축비 지원, 기업발굴을 위한 홍보 추진
환노위·예결위	2026년	ㅇ 지적 : '배우자 출산휴가'의 실질적 사용촉진을 위한 '업무분담 지원금'의 지급범위 확대 ㅇ 조치 :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배우자 출산휴가 업무분담지원금' 신설('26.7월~)

(8-3) 감사원, 총리실, 기타(언론, 시민단체 등) 결과: 해당없음

4. 최근 4년간(2023년~2026년) 결산내역

1) 결산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연도	당초 계획액	수정 계획액 (A)	전년도 이월액	기금변경 증감액 등	계획 현액	집행액 (B)	집행률 (B/Ax100)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3년	199,518	211,632	-	12,114	211,632	209,488	99.0	-	2,144
2024년	233,836	347,495	-	113,659	347,495	339,913	97.8	-	7,582
2025년	390,894	390,894	-	-	390,894	381,299	98.8	-	9,595
2026년 7월	439,394	439,394	-	-	439,394	319,003	72.6	-	-

2) 연도별 결산 주요사항

연도	유형	금액 (백만원)	사유
2023년	계획 변경	12,114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장려금 지원 수요 증가에 따라 지원인원 확대 및 집행 예상잔액 내역사업 간 기금변경을 통해 효율적 예산 집행
2024년	계획 변경	113,659	육아지원제도 활성화 등에 따른 육아휴직지원금, 대체인력지원금 등 지원 수요 증가에 따라 지원인원 확대

5. 기타 추가자료: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20) 직장어린이집지원(1345-351)

1. 사업 총괄 정보

1) 사업 기본 정보

(1-1) 일반 정보

소관	실·국	과·팀	기금	계정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정책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고용보험기금	

(1-2) 코드·명칭 정보

구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080	08D	1300	1345	351
명칭	사회복지	고용	고용평등증진	일가정양립지원	직장어린이집지원

2)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N	Y	N	N	N	N

3)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Y	N	N	Y	N	100	-

4) 기능별(내역사업별)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내역사업명	소관	사업시행주체
공공직장어린이집 운영지원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정책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근로복지공단
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		
직장보육교사 등 인건비 지원		
중소기업직장어린이집 운영지원		

2. 지출계획 총괄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사업명	2025년 결산액	2026년 당초계획액 (A)	2026년 수정계획액	2027년 요구액	2027년 정부안액 (B)	증감액 (B-A)	증감률 (B-A) /A×100
직장어린이집지원	107,754	103,873	103,873	98,833	98,833	△5,040	△4.9

1)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계획액 (수정)	2025년 계획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계획액 (수정)	2026년 계획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107,873	107,873	107,754	-	119	103,873	103,873	95,055	98,833
·공공직장어린이집운영지원	14,946	14,946	14,946	-	-	15,205	15,205	10,643	12,920
·직장어린이집설치지원	12,204 (11,999)	11,999	11,999	-	-	8,000	8,000	3,744	7,026
·직장보육교사등인건비지원	76,537 (77,518)	77,518	77,461	-	57	76,537	76,537	76,537	74,989
·중소기업직장어린이집운영지원	4,186 (3,410)	3,410	3,348	-	62	4,131	4,131	4,131	3,898

2) 비목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계획액 (수정)	2025년 계획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계획액 (수정)	2026년 계획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107,873	107,873	107,754	-	119	103,873	103,873	95,055	98,833
·민간경상보조(320-01)	11,424	11,424	11,424	-	-	7,450	7,450	3,194	6,480
·민간위탁사업비(320-02)	14,946	14,946	14,946	-	-	15,205	15,205	10,643	12,920
·민간이전보험금(320-04)	81,503	81,503	81,384	-	119	81,218	81,218	81,218	79,433

3. 사업 설명

1) 사업목적·내용

(1-1) 공공직장어린이집 등 운영지원

사업목적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어려운 중소기업 및 영세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해 공공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 근로자의 육아부담 해소 및 고용안정에 기여 직장어린이집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사업장에 대한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 및 운영에 대한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을 통해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확대 유도 및 운영의 내실화 도모 * 직장어린이집 설치 시 보육수요조사·시설규모 결정·설치공사 자문·인력채용 지원·지원신청 안내 및 특수보육프로그램 개발·지원, 보육교사 교육 지원 등
사업내용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영세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한 공공직장어린이집(37개소)을 운영하고, 직장보육지원센터(3개소)를 통해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에 대해 통합지원서비스 제공

(1-2) 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

사업목적	직장어린이집 시설비 및 교재교구비 등 지원을 통해 직장어린이집 확충을 도모함으로써 근로자의 육아부담 완화와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
사업내용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하는 어린이집 설치비용* 일부를 무상으로 지원 * 직장어린이집의 신규설치, 이전, 시설확충, 시설개보수, 임차비, 교재교구의 구입 및 교체비용

(1-3) 직장보육교사 등 인건비 지원

사업목적	일가정양립 지원을 위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에게 보육교사 등의 인건비를 지원하여 근로자의 육아부담 완화와 어린이집 운영의 내실화를 통한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
사업내용	사업주가 단독 또는 다른 사업주와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에 대해 보육교사 등의 인건비 일부 지원

(1-4)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사업목적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중소기업의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에게 운영비를 지원하여 어린이집 운영의 내실화를 통한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
사업내용	보육아동의 교육 및 보육활동·행사 등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비용(재료비·행사비 및 경비 등)을 분기별 지원

2) 사업개요

(2-1)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사업근거	○ 「고용보험법」 제26조(고용촉진시설에 대한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고용촉진 및 사업주의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담 시설, 어린이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용촉진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8조(고용촉진시설의 지원)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6조에 따라 사업주가 단독이나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운영비용 중 일부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우선지원대상기업의 수가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주단체를 포함하되,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해당 사업주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에서 보육하는 영유아 중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피보험자(「영유아보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보호자인 피보험자로 한정한다)의 영유아 수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지원의 수준을 높게 정할 수 있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6조에 따라 어린이집을 단독이나 공동으로 설치하려는 사업주나 사업주단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비용을 융자하거나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와 장애아동 또는 영아를 위한 어린이집을 설치하려는 사업주나 사업주단체에 대하여는 융자나 지원의 수준을 높게 정할 수 있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제2항(권한의 위임) ② 법 제1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한다. 9. 제38조제4항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비용의 지원 10. 제38조제5항에 따른 어린이집 설치비용의 융자·지원 및 융자금·지원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9조(직장어린이집의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단독으로 설치·운영하거나 다른 사업주와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영 제38조제4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운영비의 일부와 보육교사, 직장어린이집의 원장과 조리원(이하 “보육교사등”이라 한다)에 대한 인건비(위탁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의 보육교사등에 대한 인건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일부를 지원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운영비에 대한 지원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이하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 한다)의 사업주[우선지원대상기업의 수가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주 단체를 포함하되,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해당 사업주 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에서 보육하는 영유아 중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피보험자(「영유아보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보호자인 피보험자로 한정한다. 이하 제3호에서 같다)의 영유아 수가 전체 보육 영유아 수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대한

	영유아보육 및 교육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운영비에 한정하고, 직장어린이집의 원장에 대한 인건비 지원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보육영유아의 수가 20명 이상인 경우에만 한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지원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유·탁아 등 육아에 필요한 어린이집(이하 "직장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할 사업주의 범위 등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직장어린이집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지원 및 지도를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경우 근로자의 고용형태에 따라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의2(그 밖의 보육 관련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1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주 외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직장어린이집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정보 제공, 상담 및 비용의 일부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공공 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근로자를 위한 교육·육아·주택 등 공공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복지시설의 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경비보조)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는 여성의 취업촉진과 복지증진에 관련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는 제1항에 따라 보조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조금 지급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지급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1. 사업의 목적 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2. 보조금의 지급결정의 내용(그에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조건을 포함한다)을 위반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추진경위	○ 여성고용 확대 및 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94년 경제기획원, 보건사회부, 노동부 공동으로 「영유아 보육(탁아)사업 확충 대책('95~'97년)」 수립·시행 ○ '91.8월 영유아보육법 설치의무사업장 명시(상시 여성근로자 500인 이상) ○ '95.5월 설치의무사업장 범위 확대(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 '96.11월 「직장어린이집 확충대책('96.11월)」을 수립

	○ 공공직장어린이집을 사업주의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취약한 지역에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복지공단에 위탁 ○ '03년 직장어린이집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사업주에 대한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관련 서비스 제공 ○ '05.1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사업장 범위 확대(영유아보육법령 개정) -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 ○ '08.4월 직장어린이집 인건비 지원요건을 완화(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개정)하여 대기업 어린이집의 협력업체와의 공동 활용 등 인근사업장 근로자의 보육부담 완화 ○ '10년 직장어린이집 설치 상한액을 확대하고, 인건비 지원을 확대 ○ '11년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비 확대 ○ '12년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지원 확대 ○ '13.6.10.「일과 가정을 위한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방안(관계부처 합동)」수립 ○ '13.12.26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보육교사 인건비 확대 ○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 일부개정(상시) - 공동직장어린이집 지원요건 완화, 코로나19등 천재지변 등 비상상황에 대비한 긴급지원, 자녀 뿐만 아니라 보호자인 피보험자의 영유아를 모두 포함('21.1), 우선지원대상기업 인건비 지원단가 15% 상향조정('22.1) ○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 일부개정(22.8.) - 공동직장어린이집 중소기업 근로자 영유아 비율 50% 유지 의무 미준수시 설치지원금 반환 규정 삭제(제재 조치 완화 규정을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최소 의무비율(20%) 마련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23.1.1. 시행) - 공동직장어린이집 중소기업 근로자 영유아 비율이 50%에 미달할 경우에도 인건비·운영비 우대지원 ○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 일부개정('24.129.) -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임차비 지원 신설 ○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 일부개정('25.1.21.) -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긴급돌봄 인건비, 운영비 지원 신설

(2-2) 사업규모

○ 사업기간
- '00～계속(공공직장어린이집 등 운영 지원)
- '00～계속(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
- '95～계속(직장보육교사등 인건비 지원)
- '11～계속(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계획액 기준, 기금운용계획변경 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사업비	111,195	107,930	107,873	103,873	98,833

(2-3)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보조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위탁)

○ 사업 수혜자 :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근로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기관명	2027년 지원금액(백만원)	지원 비율(%)	법적근거
직장어린이집 지원	보조	근로복지공단	6,480	100	고용보험법 제1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5조

3) 기능별(내역사업별) 산출 내역

(3-1) 내역사업별 세부 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계획액(수정)(A)	2027년 정부안액(B)	증감 (B-A)
합 계	103,873	98,833	5,040
공공직장어린이집 운영지원	15,205	12,920	△2,285
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	8,000	7,026	△974
직장보육교사 등 인건비 지원	76,537	74,989	△1,548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4,131	3,898	△233

○ **공공직장어린이집 운영지원 (2026년) 15,205백만원 → (2027년) 12,920백만원, △15.0%**

- (설명) 공공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직장보육지원센터 운영비 및 인건비, 노후어린이집 급/배기 등 공사비
- (산출) 공공직장어린이집(37개소) 운영비, 센터 운영비 및 공무직 29명 인건비, 전산시스템 유지관리 비용 지원

○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2026년) 8,000백만원 → (2027년) 7,026백만원, △12.2%**

- (설명) 시설설치비, 교재교구비, 중소기업 임차비 지원
- (산출) 시설설치비 24개소, 교재교구비 36개소, 중소기업 임차비 13개소 지원

○ **보육교사 등 인건비 지원 (2026년) 76,537백만원 → (2027년) 74,989백만원, △2.0%**

- (설명) 대기업·중소기업 어린이집 인건비, 긴급돌봄 인건비 지원
- (산출) 대기업 7,749명, 중소기업 1,351명, 상생형 어린이집 87개소 지원

○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2026년) 4,131백만원 → (2027년) 3,898백만원, △5.6%**

- (설명) 중소기업 어린이집 운영비, 긴급돌봄 운영비 지원
- (산출) 중소기업 129개소, 상생형 어린이집 87개소 지원

4) 사업효과

(4-1) 최근 5년(2023년~2027년)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 **성과지표: 직장어린이집 지원 개소수**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목표	934	942	960	935	920
실적	936	929	966	893	-
달성도	100.2	98.6	100	95.5	-

- **측정산식 :** 해당 예산 (설치비, 인건비, 운영비)으로 직접 지원받는 직장어린이집 개소수의 합
- **측정방법 및 목표치 설정근거 : 예산 상 목표 지원 개소수**
- **자료수집방법/출처 : 근로복지공단(보육통계)**

(4-2) 성과지표 이외의 최근 4년(2023년~2026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연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3년	- 공공직장어린이집 37개소 및 직장보육지원센터 3개소 18,428백만원 지원 -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 69개소(시설전환 36, 교재교구비 57) 12,165백만원 지원 - 직장보육교사 등 인건비 지원 714개소 76,807백만원 지원 -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126개소 3,795백만원 지원
2024년	- 공공직장어린이집 37개소 및 직장보육지원센터 3개소 18,428백만원 지원 -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 86개소(시설전환 27, 교재교구비 22, 임차비 12) 8,000백만원 지원 - 직장보육교사 등 인건비 지원 711개소 77,158백만원 지원 -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132개소 3,514백만원 지원
2025년	- 공공직장어린이집 37개소 및 직장보육지원센터 3개소 14,926백만원 지원 -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 107개소(시설비 33, 교재교구비 62, 임차비 12) 11,999백만원 지원 - 직장보육교사 등 인건비 지원 738개소 77,461백만원 지원 -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121개소 3,348백만원 지원
2026년 7월	- 공공직장어린이집 37개소 및 직장보육지원센터 3개소 8,134백만원 지원 -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 65개소(시설비 22, 교재교구비 32, 임차비 11) 3,726백만원 지원 - 직장보육교사 등 인건비 지원 718개소 45,283백만원 지원 -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110개소 2,401백만원 지원

(4-3) 향후(2027년 이후) 기대효과

<공공직장어린이집 운영 지원>

○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공공직장어린이집(37개소) 및 직장보육센터(3개소)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을 통해 영아보육, 야간·시간 연장 보육, 휴일 보육, 방과 후 보육 등 근로자 요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형태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일반 어린이집과의 차별성 강화

○ 공공보육시설의 노후시설 개보수 및 차량 등 장비 교체를 통한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

○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주에 대한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기술 지원 역할을 강화하여 직장어린이집 설치 활성화 및 운영 내실화 도모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_73개소 지원

○ 직장어린이집 설치비용(설치비, 시설 개보수비, 교재교구비, 임차료) 지원을 통해 직장어린이집 설치 확대 유도 및 운영 지원

<직장보육교사 등 인건비 지원>_718개소 지원

○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을 통해 사업주의 운영 부담을 경감하여 직장어린이집의 지속 운영을 돕고 직장어린이집 설치 활성화 유도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_129개소 지원

○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중소기업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에게 운영비를 지원함으로써 어린이집 운영의 내실화를 통한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공공직장어린이집 등 운영 지원

공공직장어린이집 및 직장보육지원센터 사업계획 수립·보고 (근로복지공단) ➡ 공공보육시설 운영비 근로복지공단에 배정 (고용노동부) ➡ 공공보육시설 및 직장보육지원센터운영 (근로복지공단)

○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

근로복지공단에 지원신청서 제출 (사업주) ➡ 심사 후 지원 결정 통보 (근로복지공단) ➡ 지원금 지급 요청 (사업주) ➡

고용노동부에 지원금 신청 (근로복지공단) ➡ 공단에 지원금 교부 (고용노동부) ➡ 사업주에게 지원금 지급 (근로복지공단)

○ 직장보육교사 등 인건비 지원 /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공단에 지원금 배정 (고용노동부) ➡ 근로복지공단에 지원금 신청 (사업주) ➡ 신청서 접수 및 지원금 지급 (근로복지공단)

8) 최근 3년간(2024년~2026년)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8-1) 정부 사업평가

구분	연도	주요내용
보조사업 연장평가	2024년도	(평가시기: '25년) ○ 의견 :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대한 수요와 타당성 조사실시 재정추계를 하고,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보다 효과적인 사업방식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결과 : 사업방식 변경필요
	2025년도	(평가시기: '26년) ○ 의견 : 부정수급 예방 장치의 보완필요,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방식의 개선 필요, 출생률 하락에 따른 재정효율화 방안 모색필요 ○ 결과 : 사업개선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평가	2024년도	(평가시기: '25년) ○ 의견 :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확대 방안 지속적으로 강구, 직장보육교사의 고용유지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 ○ 결과 : 개선필요
	2025년도	(평가시기: '26년) ○ 의견 : 호봉상승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6개월 고용유지율 저조 등 보육인력 유지 미흡 ○ 결과 : 개선필요
통합재정사업 평가	2025년도	(평가시기: '26년) ○ 의견 : 보육아동 수 감소 및 어린이집 수요 하락에 따른 설치 어린이집 수 감소를 반영할 필요 ○ 결과 : 사업개선

(8-2) 국회 지적사항: 해당없음

(8-3) 감사원, 총리실, 기타(언론, 시민단체 등) 결과: 해당없음

4. 최근 4년간(2023년~2026년) 결산내역

1) 결산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연도	당초 계획액	수정 계획액 (A)	전년도 이월액	기금변경 증감액 등	계획 현액	집행액 (B)	집행률 (B/Ax100)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3년	111,195	111,195	-	-	111,195	111,195	100	-	-
2024년	112,130	107,930	-	△4,200	107,930	107,255	99.4	-	675
2025년	107,873	107,873	-	-	107,873	107,754	99.9	-	119
2026년 7월	103,873	103,873	-	-	103,873	95,055	86.5	-	-

2) 연도별 결산 주요사항

연도	유형	금액 (백만원)	사유
2023년	-	111,195	- 해당 없음
2024년	불용	107,930	- 불용액 675백만원(집행잔액)
2025년	불용	107,873	- 불용액 119백만원(집행잔액)

5. 기타 추가자료: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21) 모성보호육아지원(1345-358)

1. 사업 총괄 정보

1) 사업 기본 정보

(1-1) 일반 정보

소관	실·국	과·팀	기금	계정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정책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고용보험기금	-

(1-2) 코드·명칭 정보

구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080	08D	1300	1345	358
명칭	사회복지	고용	고용평등증진	일가정양립지원	모성보호육아지원

2)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N	Y	N	N	N	N

3)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Y	N	N	N	N	-	-

4) 기능별(내역사업별)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내역사업명	소관	사업시행주체
육아휴직급여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정책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직접(고용센터)
출산전후휴가급여		
유산사산휴가급여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배우자출산휴가급여		
배우자유산사산휴가급여		
난임치료휴가급여		

2. 지출계획 총괄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사업명	2025년 결산액	2026년 당초계획액 (A)	2026년 수정계획액	2027년 요구액	2027년 정부안액 (B)	증감액 (B-A)	증감률 (B-A) /A×100
모성보호육아지원	4,309,155	4,072,832	4,072,832	4,271,020	4,271,020	198,188	4.9

1)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계획액 (수정)	2025년 계획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계획액 (수정)	2026년 계획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4,022,454 (4,319,511)	4,319,511	4,309,155		10,356	4,072,832	4,072,832	2,955,054	4,271,020
· 출산전후휴가급여	352,497 (418,356)	418,356	416,299	-	2,057	379,160	379,160	300,474	451,611
· 유산사산휴가급여	1,859 (4,095)	4,095	4,031	-	64	2,666	4,766	3,163	4,768
· 육아휴직급여	3,402,970 (3,635,802)	3,635,802	3,629,169		6,633	3,393,598	3,380,798	2,437,203	3,501,663
·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233,521 (229,4323)	229,432	228,186		1,246	268,001	268,001	183,369	267,034
· 배우자출산휴가급여	24,213 (31,709)	31,709	31,355	-	354	26,944	39,744	30,697	45,084
· 배우자유산사산휴가급여	-	-	-	-	-	-	-	-	182
· 난임치료휴가급여	7,349 (117)	117	114		3	2,463	363	148	678

2) 비목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계획액 (수정)	2025년 계획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계획액 (수정)	2026년 계획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4,022,454	4,319,511	4,309,155	-	10,356	4,072,832	4,072,832	2.955.054	4,271,020
·민간이전 보험금(320-04)	4,022,454	4,319,511	4,309,155	-	10,356	4,072,832	4,072,832	2.955.054	4,271,020

3. 사업 설명

1) 사업목적·내용

(1-1) 출산전후휴가급여, 유산·사산휴가급여

사업목적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한 여성 근로자와 출산(유산·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예술인·노무제공자에게 급여를 지원하여 모성을 보호하고 고용불안을 해소하며 생활 안정을 도모
사업내용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를 부여받은 근로자에게 소속 기업 규모별 지원기간에 대해 통상임금 100%('27년 상한액 30일 기준 225만원) 지원

(1-2) 육아휴직급여

사업목적	육아휴직급여 지급을 통한 가정과 직장의 양립지원으로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도모
사업내용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의 100~80%지원(단기 육아휴직*은 30일 미만도 지원)

(1-3)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사업목적	육아기에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는 경우 급여를 지원하여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
사업내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에게 단축한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80%지원

(1-4) 배우자출산휴가급여

사업목적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사용하는 남성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원하여 남성의 육아 참여를 활성화하고 배우자의 건강보호를 도모
사업내용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통상임금 100%('27년 상한액 1,722,480원) 지원

(1-5) 배우자 유산·사산휴가급여

사업목적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한 남성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원하여 배우자의 건강과 모성 보호를 강화하고 실질적인 휴가 사용을 보장
사업내용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통상임금 100%('27년 상한액 3일분 258,360원) 지원

(1-6) 난임치료휴가급여

사업목적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원하여 난임치료로 인한 근로자의 부담을 경감
사업내용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최초 4일분에 대해 통상임금 100%('27년 상한액 4일분 344,480원) 지원

2) 사업개요

(2-1)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사업근거	○ **「고용보험법」 제70조(육아휴직 급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한다)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한다. ○ **「고용보험법」 제73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30일(「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한다) 이상 실시한 피보험자 중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한다. ○ **「고용보험법」 제75조(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피보험자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를 받은 경우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같은 법 제1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 또는 같은 법 제18조의4에 따른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이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개정 2026. 3. 17.> ○ **「고용보험법」 제77조의4(예술인의 출산전후급여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예술인인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이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산전후급여 등(이하 "출산전후급여등"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다만, 같은 자녀에 대하여 제75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및 제77조의9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 **「고용보험법」 제77조의9(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이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산전후급여등을 지급한다. 다만, 같은 자녀에 대하여 제75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또는 제77조의4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추진경위	○ **출산전후휴가 급여, 유산·사산휴가 급여** - ´94-´97, 근로여성복지기본계획에 의거 출산전후휴가기간 확대 계획 추진 - ´00.4월,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분담화 결정 - ´01.8월, 모성보호 관련 3법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01.11월부터 출산전후휴가급여 사회보험 분담 시행 - ´05.5월, 출산전후휴가급여 사회분담확대 관련 법 개정, 우선지원

	대상기업 출산전후휴가급여 사회분담 확대(30일→90일), 유산·사산휴가급여 지급 - ´07.4.27., 출산전후휴가급여 감액규정 개정(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 - ´17.1.1., 출산전후휴가급여 상한액 135→150만원으로 인상(고시 개정) - ´18.1.1., 출산전후휴가급여 상한액 150→160만원으로 인상(고시 개정) - ´19.1.1., 출산전후휴가급여 상한액 160→180만원으로 인상(고시 개정) - ´20.1.1., 출산전후휴가급여 상한액 180→200만원으로 인상(고시 개정) - ´20.12.10., 예술인 출산전후급여 지급 시행(´20.6월 「고용보험법」 개정) - ´21.7.1.,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 지급 시행(´20.12월 「고용보험법」 개정) - ´23.1.1., 출산전후휴가급여 상한액 200→210만원으로 인상(고시 개정) - ’23.7.1., 기간제·파견근로자가 유산·사산휴가기간중 계약 만료시 법정 유산·사산휴가급여를 보장 - ’25.2.23., 미숙아 출산 시 출산전후휴가 기간(90일→100일) 및 급여 지원 확대 ○ **육아휴직급여** - 근로여성복지기본계획(제1,2차)(´94-´97, ’98-’02) 및 남녀고용평등 기본계획(제3차) - ´95년 세계화추진위원회의『여성의 사회참여 10대 과제』로 선정 - 2000년 16대 총선 관련 새천년민주당 등 3당 공약사항 - ´01.8.14., 모성보호관련 3법 개정(´01.11.1부터 시행) - ´07.4월, 육아휴직급여 인상 : 40만원→50만원 - ´11.1.1.,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40%수준으로 인상 * 상한 100만원, 하한 50만원, 15%는 종료후 6개월 후 지급 - ´14.1.14.,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까지 육아휴직 사용범위 확대 * **국정과제< 63.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 3 근로자 자녀양육 여건 조성 ㅇ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자녀까지 육아휴직 사용 확대 검토·추진 - ´14.2.4., 일하는 여성을 위한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 방안(관계부처 합동) 발표 * 여성의 생애주기별(임신・출산 → 영유아→ 초・중・고)로 모성보호, 보육・돌봄, 재취업 지원 및 일.가정 양립 문화를 조성해 여성의 경력유지 및 경제활동참가를 뒷받침 * 남성의 육아휴직 이용확대를 위한 급여 상향, 비정규직 육아휴직 지원대상 확대, 대체인력 채용지원,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활성화를 위한 기간 연장 및 급여 상향 ⇨ 아빠의 달 도입·시행('14.10월) : 동일 자녀에 대하여 두 번째 육아휴직한 근로자에 대해 첫 달 육아휴직 급여로 통상임금의 100% 지원 * **국정과제< 62. 행복한 임신과 출산 >** 8 「아빠의 달」도입을 통한 아빠의 출산휴가 장려 ㅇ 제도 시행방식, 지원수준, 재원마련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도입 추진 - ´14.10.15, 여성고용 후속 보완 대책 (기재부, 여가부, 복지부 등 관계부처 합동) 발표

	* 사업주지원금 인상 및 지원요건 완화, 자동육아휴직 확산, 육아휴직 복귀율 제고에 따른 지급방식 변경 등 여성의 고용안정 유도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비율을 변경(종전 15% →25%, '15.7월 시행) - ´16.1.1, 아빠의 달 기간 확대(종전 1개월→3개월) - ´17.9.1. 공약 이행에 따라 육아휴직급여 첫 3개월 인상 * 육아휴직 첫 3개월간 육아휴직 급여 2배 인상(소득대체율 40→80%, 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 - ´18.하반기. 공약 이행에 따라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상한액 인상 추진 * (기존) 첫째자녀 150만원, 둘째부터 200만원→ (개선) 모든 자녀 200만원 - ´19.1.1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상한액 인상(200→250만원) - ´20.2.28 부부 동시 육아휴직 허용 및 육아휴직급여 지급 - ´20.3.31 비자발적 퇴사시 사후지급금 지급 및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인상 * 첫 3개월 100%(상한 250만원), 4~6개월 80%(상한 150만원), 7개월 이후 50%(상한 120만원) - ´20.12.8. 육아휴직 분할횟수 확대(1회 → 2회) - ´21.11.19. 임신중 육아휴직 허용('21.5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 ´22.1.1.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 인상(통상임금 50% → 80%, 상한액 120만원 → 150만원) - ´22.1.1. '3+3 부모육아휴직제' 시행('21.12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 100%(상한 200~300만원)로 지급 - ´24.1.1. '6+6 부모육아휴직제' 시행('23.12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 100%(상한 200~450만원)로 지급 - ´24.6.19.,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일·가정 양립 활성화 방안(관계부처 합동) 발표 * 육아휴직급여 인상, 사후지급금 폐지, 출산휴가·육아휴직 통합신청,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 시 육아휴직 기간 연장 등 - '25.1.1. 육아휴직 급여 인상 * 1~3개월 월 상한 250만원(통상임금 100%), 4~6개월 월 상한 200만원(통상임금 100%), 7개월 이후 월 상한 160만원(통상임금 80%),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 방식 폐지, 한부모 육아휴직 급여 인상(첫 3개월 250만원 상한 → 300만원 상한. 4개월 이후 일반 육아휴직 급여와 동일),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6+6) 첫달 상한액 인상(200만원 → 250만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통합신청 방식 개정 - 육아휴직 기간 연장(1년 → 1년 6개월), 육아휴직 분할 횟수 확대(2회 → 3회) *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한부모, 중증 장애아동 부모의 경우 추가 6개월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08.6.5.,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정(´08.12.6 시행) - ´08.12~´09.4,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연구(한국여성정책연구원·한국노동연구원) - ´09.5~12., 여성부·노동부 공동 기본계획(안) 수립 및 관계부처 협의 - ´09.12.23., 국무총리 소속 여성정책실무회의 개최 - ´09.12.29., 국무총리 소속 여성정책조정회의 심의·확정 - ´11.9.2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급 개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통상임금의 40% × 근로시간 단축 비율 - ´14.2.4., 일하는 여성을 위한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 방안(관계부처 합동) 발표 * 남성의 육아휴직 이용확대를 위한 급여 상향, 비정규직 육아휴직 지원대상 확대, 대체인력 채용지원,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활성화를 위한 기간 연장 및 급여상향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인상(´14.10.1)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통상임금의 60%(상한 150만원) × 근로시간 단축 비율 - ´18.1.1., 공약이행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인상(통상임금의 60%→80%) *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임금감소에 대한 지원을 확충하여 '10to4더불어 돌봄' 지원 - ´19.10.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최대 1→2년으로 확대, 日 1시간 단축급여 인상(통상임금 100%) - ´24.7.1 육아기 근로시간 통상임금 100% 지원범위 주 5시간→10시간으로 확대 - ´24.6.19.,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일·가정 양립 활성화 방안(관계부처 합동) 발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인상 등 - '25.1.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계산 기준금액(월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상향: 200만원 → 220만원 - '25.2.23., 대상자녀 연령 상향: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사용기간 확대: 최대 2년(1년 +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 최대 3년(1년 +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2), 최소 사용기간 축소: 3개월 → 1개월 - '26.1.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계산 기준금액(월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상향: 220만원 → 250만원 ○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 국정과제: 71-3-1 일·생활 균형과 육아·돌봄 지원 확대 단계별 이행목표에 '배우자출산휴가기간 확대방안 마련(´18.하)' → '배우자 출산휴가기간 단계적 확대(´19~´21)'로 명시 * **국정과제< 71. 휴식있는 삶을 위한 일·생활의 균형 실현 >** 3. 일·생활 균형과 육아·돌봄 지원 확대

	ㅇ 배우자 출산휴가기간(현행 5일(유급3일)도 단계적으로 확대, 아빠의 육아참여 촉진 - ´17.12.26. 「여성일자리대책」에서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기간 확대'를 핵심과제로 발표 ◇「**여성일자리대책(관계부처 합동)**」 2. 경력단절예방 (4) 아빠육아참여 확산 ㅇ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유급 3일에서 10일까지 확대(~'17.12월 실태조사, '22년까지 단계적 시행) - ´18.7.5.,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관계부처 합동으로 「저출산대책」에서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을 핵심과제로 발표 ◇「**저출산대책**」("일하며 아이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한 핵심과제 추진방안") 2. 아이와 함께하는 일·생활 균형 (2) 남성 육아휴가·휴직 사용 확산 ㅇ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기간 확대 및 유급 사용분 정부 지원, 사용시기 유연화 등 선택권 강화 - ´18.7.30., 김상희 의원(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관련 「남녀고용평등법」 및 「고용보험법」 개정안 발의 → ´19.8.2. 관련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19.10.1.,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 10일로 확대 및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상한 382,770원) - ´20.1.1.,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상한 382,770원 고시 - ´23.1.1.,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상한 401,910원 고시 - ´24.6.19.,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일·가정 양립 활성화 방안(관계부처 합동) 발표 * 우선지원대상기업 대상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기간 확대 - '25.2.23.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10일 → 20일), 사용 관련 기한(90일 이내 청구 → 120일 이내 사용), 분할 사용 가능 횟수(1회 → 3회)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기간(최초 5일 → 20일)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 1,607,650원 ○ **<u>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u>** - '24.10.30. 저고위 제5차 인구비상대책회의 개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추가 보완대책 마련 **<저출생 대책 추가 보완>** ㅇ 유사산을 겪은 임산부의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배우자 유사산휴가 제도 신설(유급, 3일) - '25.9.16.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 확정 발표,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제도 및 급여 지원 신설 추진 **<국정과제 95. 일, 가정, 삶이 공존하는 행복한 일터 >** ㅇ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 배우자 유·사산휴가 신설 - '26.2.12. 「남녀고용평등법」 및 「고용보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 '26.3.17. 개정법률 공포('26.9.18. 시행)

	- ’26.9.18.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5일 범위, 최초 3일 유급),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 지원(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대상 최초 3일) ○ <u>난임치료휴가 급여</u> - 국정과제: 50.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22.5월) **<국정과제 50.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 <일·가정 양립 지원> ㅇ 실태조사 등을 거쳐 난임치료휴가 기간 확대 및 사업주의 비밀유지 의무 도입 - ´23.3.,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관계부처 합동으로 「저출산대책」에서 ‘난임휴 확대방안’ 발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관계부처 합동 정책과제 발표)」** (난임지원 확대) 난임휴가 확대(연 3일[1일 유급]→6일[2일 유급]) - ’25.2.23. 근로자가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연간 6일(2일 유급) 이내의 휴가 부여,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최초 2일분 정부 급여 지원 - ’26.11.27. 난임치료휴가 유급일수 및 지원일수 상향 최초2일 → 최초4일, 불리한 처우에 대한 벌칙규정 신설

(2-2) 사업규모

○ 사업기간 : (출산전후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 ‘01년~계속, (유산사산휴가급여) ’06년~계속,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11년~계속, (배우자출산휴가급여) ’19.하~계속, (난임치료휴가급여) ‘25년 2월 ~계속, (배우자유산·사산휴가급여) ’26년 9월~계속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계획액 기준, 기금운용계획변경 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사업비	2,100,641	2,496,830	4,022,454	4,072,832	4,271,020

(2-3)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직접)

○ 사업 수혜자 :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또는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출산(유산·사산)한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3) 기능별(내역사업별) 산출 내역

(3-1) 내역사업별 세부 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계획액(수정)(A)	2027년 정부안액(B)	증감 (B-A)
합 계	4,072,832	4,271,020	198,188
출산전후휴가급여	376,160	451,611	72,451
유산사산휴가급여	2,666	4,768	2,102
육아휴직급여	3,393,598	3,501,663	108,065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268,001	267,064	△967
배우자출산휴가급여	26,944	45,084	18,140
배우자유산사산휴가급여	-	182	182
난임치료휴가급여	2,463	678	△1,785

○ 출산전후휴가급여 **(2026년) 379,160백만원 → (2027년) 451,611백만원, +19.1%**

- (설명) 수급자 및 출생아 수 증가, 상한액 인상(30일 기준 '26년 220만원 → '27년 225만원), 국정과제 '저소득층 출산전후휴가급여 추가 지급(무급기간 상한 미적용)' 신설 등 반영

- (산출) 출산전후휴가 사용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등 86,904명 지원

○ 유산·사산휴가급여 **(2026년) 2,666백만원 → (2027년) 4,768백만원, +78.8%**

- (설명) 최근 5년간('21~'25년) 지원인원 평균 증가율, 상한액 인상(30일 기준 '26년 220만원 → '27년 225만원) 등 반영

- (산출) 유산사산휴가 사용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등 3,586명 지원

○ 육아휴직급여 **(2026년) 3,393,598백만원 → (2027년) 3,501,663백만원, +3.2%**

- (설명) '26년 제도 개편사항(단기육아휴직 도입 등) 반영

- (산출) 육아휴직 사용자 182,420명 지원

○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2026년) 268,001백만원 → (2027년) 267,064백만원, △0.4%**

- (설명) 급여 수급자 증가율 및 평균 지원단가 반영

- (산출)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사용 근로자 46,980명 지원

○ 배우자출산휴가급여 **(2026년) 26,944백만원 → (2027년) 45,084백만원, +67.3%**

- (설명) 최근 출생아 수 증가율, 상한액 인상(30일 기준 '26년 220만원 → '27년 225만원) 등 반영
- (산출)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26,201명 지원

○ 배우자유산·사산휴가급여 **(2026년.下 신설) → (2027년) 182백만원, (순증)**

- (설명) 배우자출산휴가급여 지원인원 및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자 수 대비 유산·사산휴가급여 수급자 수 비율 등 적용
- (산출)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사용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707명 지원

○ 난임치료휴가급여 **(2026년) 2,463백만원 → (2027년) 678백만원, △72.5%**

- (설명) 난임치료휴가급여 지원 기간 확대(2일 → 4일'26년下~) 및 연간 지원인원 반영
- (산출) 난임치료휴가 사용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2,316명 지원

4) 사업효과

(4-1) 최근 5년(2023년~2027년)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 **성과지표: 여성고용률(30~40대)**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목표	63.8	67.0	69.0	70.8	71.0
실적	66.9	68.9	70.7	-	
달성도	104.9	102.8	102.5	-	

- **측정산식 :** 30~40대 여성 취업자수/30~40대 여성 인구) × 100
- **측정방법 및 목표치 설정근거 :** 2025년 여성고용률이 전년도보다 상승하였으나초저출산에 따른 생산인구 지속 감소 및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어 취업자 수 증가폭이 둔화 전망, 그럼에도 불구하고 25~26년 일가정양립제도 확대, 중소기업 사용여건 조성 등 정책적 노력을 고려하여 목표 상향 설정
- **자료수집방법/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4-2) 성과지표 이외의 최근 4년(2023년~2026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연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3년	- 출산전후휴가급여 73,207명에 대해 326,290백만원 지원 - 유산사산휴가급여 1,329명에게 1,647백만원 지원 - 육아휴직급여 126,008명에게 1,796,995백만원 지원 -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23,188명에게 130,324백만원 지원 - 배우자출산휴가급여 15,797명에게 6,240백만원 지원
2024년	- 출산전후휴가급여 77,718명에 대해 353,689백만원 지원 - 유산사산휴가급여 1,650명에게 2,323백만원 지원 - 육아휴직급여 132,535명에게 2,052,487백만원 지원 -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26,627명에게 157,970백만원 지원 - 배우자출산휴가급여 18,241명에게 7,311백만원 지원
2025년	- 출산전후휴가급여 52,309명에 대해 239,071백만원 지원 - 유산사산휴가급여 1,284명에게 1,944백만원 지원 - 육아휴직급여 111,304에게 2,000,765백만원 지원 -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24,748명에게 121,478백만원 지원 - 배우자출산휴가급여 12,698명에게 13,496백만원 지원 - 난임치료휴가급여 257명에게 36백만원 지원
2026년 7월	- 출산전후휴가급여 63,085명에 대해 300,611백만원 지원 - 유산사산휴가급여 2,044명에게 3,026백만원 지원 - 육아휴직급여 123,160명에게 2,437,203백만원 지원 -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28,424명에게 183,368백만원 지원 - 배우자출산휴가급여 18,831명에게 30,697백만원 지원 - 난임치료휴가급여 890명에게 147백만원 지원

(4-3) 향후(2027년 이후) 기대효과

○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자에 대한 지속적 국가의 급여지원을 통해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고용안정에 기여‘

○ 육아휴직급여 및 부모함께육아휴직제를 통해 육아휴직 기간의 소득보전 강화로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고용안정 도모 및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 배우자 출산휴가 및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 지원을 통해 남성 육아참여 활성화 및 맞돌봄 문화 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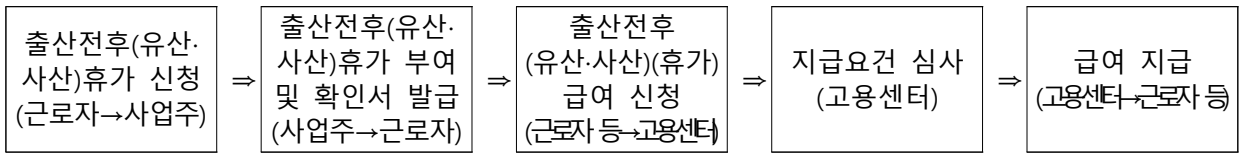
○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급을 통해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의 난임치료휴가 사용 부담 완화 및 저출산 문제 해소 기여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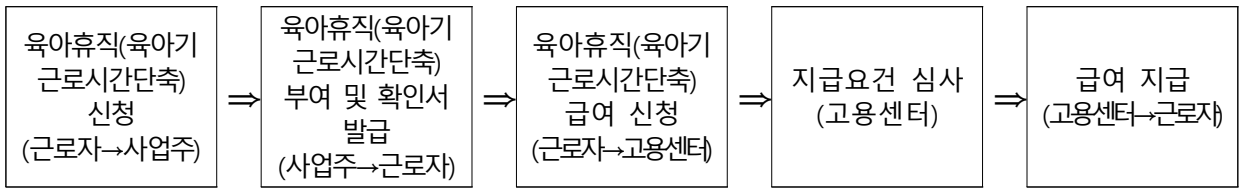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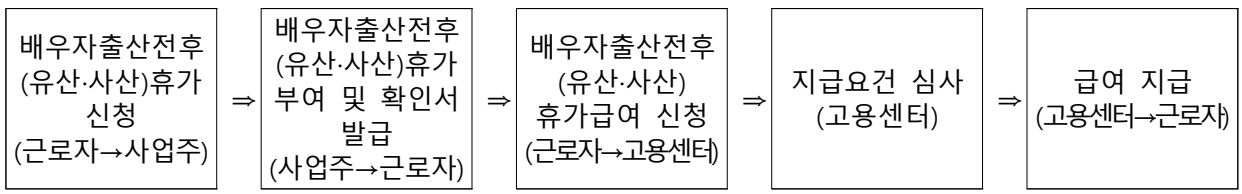
- 출산전후휴가급여 및 유산·사산휴가급여 집행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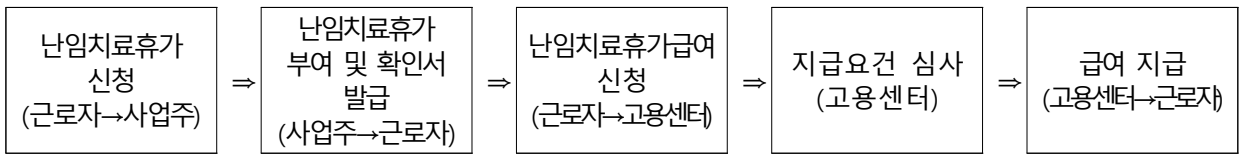
- 육아휴직급여 및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집행 절차



- 배우자출산휴가급여 및 배우자유산·사산휴가급여 집행 절차



- 난임치료휴가급여 집행 절차



8) 최근 3년간(2024년~2026년)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8-1) 정부 사업평가

구분	연도	주요내용
재정지원 일자리사업평가	2024년도	(평가시기: '25년) ○ 유산사산휴가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양호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우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평가	2025년도	(평가시기: '26년) ○ 의견 : (난임치료휴가급여) 제도 도입 취지에 비해 활용 규모가 매우 작아 제도 정착을 위해 제도 인지도와 접근성 측면의 개선 필요 ○ 결과 : 개선필요

(8-2) 국회 지적사항

구분	연도	주요내용
결산	2024년도	○ 지적사항 - 기금의 재정고갈을 막고, 저출산에 대한 국가 책임 확립을 위해 모성보호육아지원을 위한 일반회계전입금 확대 필요 ○ 조치결과 - 재정당국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일반회계 전입금 확대편성('25년 5,000억 → '26년 6,000억 편성)
결산	2025년도	○ 지적사항 - (모성보호육아지원 전입금) 사업 지출 급증에 따라 일반회계 전입금 확대 등 대책마련 필요 - (난임치료휴가급여) 예산추계 정확성 제고와 집행절차 개선 및 제도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제도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 조치결과 - (모성보호육아지원 전입금) 재정당국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모성보호육아지원 전입금 확대를 위해 노력('26년 6,000억 → '27년 정부안 9,000억 반영) - (난임치료휴가급여)의 집행현황 및 수요를 반영하여 예산 편성, 제도 개선 및 맞춤형 홍보 등을 통한 집행률 제고 노력 -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제도개선 및 홍보강화를 통해 제도 활성화 노력

(8-3) 감사원, 총리실, 기타(언론, 시민단체 등) 결과: 해당없음

4. 최근 4년간(2023년~2026년) 결산내역

1) 결산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연도	당초 계획액	수정 계획액 (A)	전년도 이월액	기금변경 증감액 등	계획 현액	집행액 (B)	집행률 (B/Ax100)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3년	2,100,641	2,268,682	-	168,041	2,268,682	2,261,495	99.7	-	7,187
2024년	2,496,830	2,573,841	-	77,011	2,573,841	2,573,780	99.9	-	61
2025년	4,022,454	4,319,511	-	297,057	4,319,511	4,309,155	99.8	-	10,356
2026년 7월	4,072,832	4,072,832	-	-	4,072,832	2,955,054	72.6	-	-

2) 연도별 결산 주요사항

연도	유형	금액 (백만원)	사유
2023년	기금 변경	2,268,682	- 고용보험기금 변경으로 168,041백만원 증액(출산전후휴가급여 24,633백만원, 유산사산휴가급여 △167백만원, 육아휴직급여 109,980백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33,453백만원,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858백만원)
2024년	기금 변경	2,573,841	- 고용보험기금 변경으로 77,011백만원 증액(출산전후휴가급여 6,688백만원, 유산사산휴가급여 473백만원, 육아휴직급여 65,642백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8,934백만원,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1,053백만원), 난임치료휴가급여 △3,673백만원
2025년	기금 변경	4,319,511	- 고용보험기금 변경으로 297,057백만원 증액(출산전후휴가급여 4,000백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5,500백만원,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1,700백만원)

5. 기타 추가자료: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22) 모성보호육아지원 사각지대 해소(고보)(1345-361)

1. 사업 총괄 정보

1) 사업 기본 정보

(1-1) 일반 정보

소관	실·국	과·팀	기금	계정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정책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고용보험기금	-

(1-2) 코드·명칭 정보

구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080	08D	1300	1345	361
명칭	사회복지	고용	고용평등증진	일·가정양립지원	모성보호육아지원 사각지대 해소(고보)

2)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Y	N	N	N	N	N

3)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Y	N	N	N	N	-	-

4) 기능별(내역사업별)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내역사업명	소관	사업시행주체
모성보호육아지원 사각지대 해소(고보)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고용노동부

2. 지출계획 총괄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사업명	2025년 결산액	2026년 당초계획액 (A)	2026년 수정계획액	2027년 요구액	2027년 정부안액 (B)	증감액 (B-A)	증감률 (B-A) /A×100
모성보호육아지원 사각지대 해소(고보)	-	-	-	-	2,275	2,275	순증

1)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계획액 (수정)	2025년 계획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계획액 (수정)	2026년 계획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	-	-	-	-	-	-	-	2,275
·모성보호육아지원 사각지대 해소(고보)	-	-	-	-	-	-	-	-	2,275

2) 비목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계획액 (수정)	2025년 계획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계획액 (수정)	2026년 계획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	-	-	-	-	-	-	-	2,275
·기타보전금(310-04)	-	-	-	-	-	-	-	-	2,275

3. 사업 설명

1) 사업목적·내용

(1-1) 모성보호육아지원 사각지대 해소(고보)

사업목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나 현행 제도상 육아휴직급여의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고용보험 당연가입 노무제공자·예술인 등에게 육아기 소득지원을 실시하여 고용보험 모성보호·육아지원의 사각지대를 완화
사업내용	고용보험가입 노무제공자·예술인 대상 육아수당 지원 (월 50만원 x 3개월분)

2) 사업개요

(2-1)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사업근거	「인구전략기본법」 제15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추진경위	○ ’24.6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 ’25.9월, 국정과제 95 「일, 가정, 삶이 공존하는 행복한 일터」에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육아수당 신설 포함

(2-2) 사업규모

○ 사업기간 : ’27년~(계속)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계획액 기준, 기금운용계획변경 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사업비	-	-	-	-	2,275

(2-3)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 지방관서

○ 사업 수혜자 : 고용보험 가입 노무제공자·예술인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 없음

3) 기능별(내역사업별) 산출 내역

(3-1) 내역사업별 세부 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계획액(수정)(A)	2027년 정부안액(B)	증감 (B-A)
합 계	-	2,275	2,275
모성보호육아지원 사각지대 해소(고보)	-	2,275	2,275

○ **모성보호육아지원 사각지대 해소(고보) (2027년) <신설> 2,275백만원, 순증**

- (설명) 고용보험가입 노무제공자·예술인 대상 육아수당 지원
- (산출) 1,516명 × 육아수당 150만원

4) 사업효과

(4-1) 최근 5년(2023년~2027년)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해당없음(신규사업)

(4-2) 성과지표 이외의 최근 4년(2023년~2026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해당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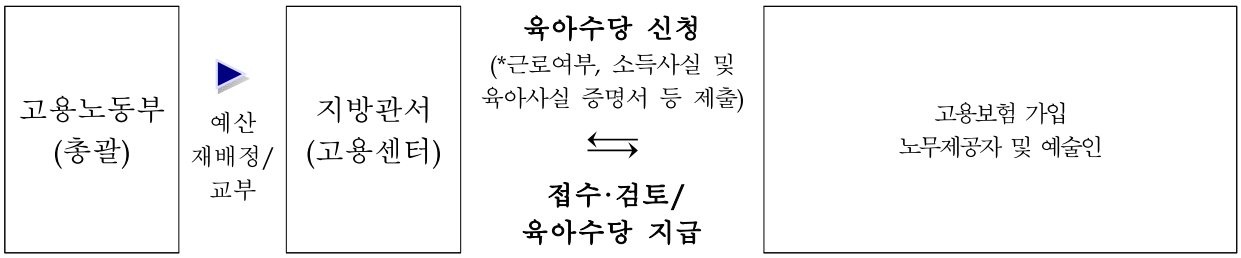
(4-3) 향후(2027년 이후) 기대효과

○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음에도 육아휴직급여를 받지 못했던 노무제공자·예술인의 육아기 소득공백을 완화하여 근로형태에 따른 모성보호·육아지원 격차를 줄이고, 고용보험의 사회안전망 기능 강화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8) 최근 3년간(2024년~2026년)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8-1) 정부 사업평가: 해당없음

(8-2) 국회 지적사항: 해당없음

(8-3) 감사원, 총리실, 기타(언론, 시민단체 등) 결과: 해당없음

4. 최근 4년간(2023년~2026년) 결산내역: 해당없음

5. 기타 추가자료: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23) 고령자고용안정지원금(1347-350)

1. 사업 총괄 정보

1) 사업 기본 정보

(1-1) 일반 정보

소관	실·국	과·팀	기금	계정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고령사회인력정책과	고보기금	-

(1-2) 코드·명칭 정보

구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080	08D	1300	1347	350
명칭	사회복지	고용	고용평등증진	고령자고용촉진지원	고령자고용안정지원금

2)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N	Y	N	N	N	N

3)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Y	N	N	N	N	100	0

4) 기능별(내역사업별)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내역사업명	소관	사업시행주체
고령자통합장려금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고령자고용지원금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임금피크제지원금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2. 지출계획 총괄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사업명	2025년 결산액	2026년 당초계획액 (A)	2026년 수정계획액	2027년 요구액	2027년 정부안액 (B)	증감액 (B-A)	증감률 (B-A) /A×100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63,128	53,560	53,560	53,666	45,566	△7,994	△14.9

1)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계획액 (수정)	2025년 계획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계획액 (수정)	2026년 계획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고령자고용안정지원금	56,730	64,811	63,128	-	1,683	53,560	53,560	30,953	45,566
·고령자통합장려금	-	-	-	-	-	10,684	10,684	4,486	24,248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35,706	21,480	20,494	-	986	22,493	22,493	8,590	-
·고령자고용지원금	21,016	43,331	42,635	-	696	20,382	20,382	17,877	21,318
·임금피크제지원금	8	-	-	-	-	1	1	-	-

2) 비목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계획액 (수정)	2025년 계획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계획액 (수정)	2026년 계획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고령자고용안정지원금	56,730	64,811	63,128	-	1,683	53,560	53,560	30,953	45,566
·보험금(320-04)	56,730	64,811	63,128	-	1,683	53,460	53,460	30,904	45,566
·연구비(260-01)	-	-	-	-	-	100	100	49	-

3. 사업 설명

1) 사업목적·내용

(1-1) 고령자통합장려금

사업목적	고령자의 고용안정과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계속고용 촉진
사업내용	정년 도래자가 주된 일자리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지방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청년 등 다른 세대의 고용을 구축하지 않도록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 중 비수도권 기업 우대(26년~)

(1-2)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사업목적	고령자의 고용안정과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계속고용 촉진
사업내용	정년 도래자가 주된 일자리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계속고용 제도(정년연장·폐지,재고용)를 도입하여 정년 퇴직자를 계속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

(1-3) 고령자고용지원금

사업목적	고령자의 주된 일자리에서의 고용연장 및 신속한 재취업 지원
사업내용	60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 확대를 위해 3년 평균 대비 60세 이상 근로자수를 초과하여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

(1-4) 임금피크제지원금

사업목적	장년 근로자 고용안정 및 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
사업내용	정년이 60세 이상인 사업장에서 10% 이상 임금이 감액된 근로자에게 삭감된 임금의 일부를 지원('26년 소멸시효 완성)

2) 사업개요

(2-1)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사업근거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제28조의4, 제28조의5
추진경위	○ 임금피크제지원금('16년 종료, '26년 소멸시효 완성) - '06.9. 신설(고령자의 고용연장, 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지원) - '08.9.「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으로 상시제도로 전환 - '10.12.「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으로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에서 '임금피크제 지원금'으로 명칭 변경, 임금피크제 유형별 (정년 연장형, 재고용형, 근로시간단축형) 특색에 맞게 지원요건 다양화 - '13.5. 정년 60세 이상 법제화(「고령자고용법」 개정) * 시행시기: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대기업('16.1.1부터), 국가·지자체 및 300인 미만 기업('17.1.1부터) - '13.12. 정년 60세 조기정착을 위해 지원대상 확대, 지원한도 상향 등 임금피크제 지원금 제도개편 - '16.12. 사업 종료(300이상 및 공공기관: '15년말, 300인미만 및 국가지자체: '16년말)

	○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 ‘20.1. 신설(계속고용제도<정년 연장·폐지, 재고용>를 도입하여 정년 이후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중소·중견 기업 사업주에게 비용 지원) - ’20.7.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소급 적용 허용으로 지원 확대 - ‘21.4. 정년 도달일 직전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1년 미만자 지원 제외 - ’21.8. 정년 도달일 3개월 이내 재고용 요건을 6개월 이내로 확대, 2년 이내 정년 도달자 지원→ 5년 이내 종전 정년 도달자로 확대, 사업주 기준 2년 지원→ 근로자 기준 2년 지원 - ‘22.1.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소급 적용 불인정, 4촌이내 혈족, 인척 지원 제외 규정 삭제 - ’22.7.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소급 최대 30일까지 인정, 고령자 비율 30% 초과 사업장 지원 제외 - ‘23.1. 월평균 보수총액 110만원 미만자 지원 제외, 산업재해 공표 사업주 지원 제외 - ‘24.1. 최대 지원기간 연장(2년→3년), 월평균 보수총액 115만원 미만자 지원 제외 - ’25.1. 재고용 기준 합리화,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후 입사자까지 지원, 계속고용 연령증가 시에도 지원, 월평균 보수총액 121만원 미만자 지원 제외 - ‘26.1. 비수도권 사업주에 대한 지원단가 인상(30만원→40만원), 월평균 보수총액 124만원 미만자 지원 제외 ○ 고령자고용지원금(’25년말 사업 종료, ’26년부터는 잔여 지원기간만 지원) - ‘22.1. 신설(60세 이상 고령자수가 3년 평균보다 증가한 중소·중견 기업 사업주에게 비용 지원) - ’22.7. 접수기간 공고를 통해 신청 기간 제한 - ‘23.1. 신규 채용자(근로계약기간 1년 초과자) 지원 규정 삭제(’23.7.1. 신규 채용자부터 적용) - ‘25. 사업장 내 고용 총량 증가는 없었다는 지적 및 구인난 업종에 대한 인센티브 신설* 필요 의견에 따라 사업 구조조정, 폐지 결정 (고령자고용지원금은 고령근로자의 고용유지에 기여했으나 신규 고용 촉진에는 제한적인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는 재정 지원일자리사업 평가 반영) * 구인난 업종의 경우 구직자의 지원이 없는데 기인하므로 사업주 지원이 아닌, 취업하는 50대 이상 중장년들에게 장기근속에 따른 인센티브 신설(26년 일손부족일자리 동행 인센티브, +18억) - ‘26.1. ’26년 1분기 고령자 고용지원금부터 기존 사업주의 잔여 지원 기간에 대해서만 지원

	○ 고령자통합장려금('26년 신설) - 법정정년과 연금수급연령 간의 소득절벽 등으로 정년연장 필요성이 사회적 이슈로 부상, 자율적으로 정년연장 등 계속고용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 확대 및 기존 지원금간 구조조정 등 개편 취지에서 장려금 신설 - 주된 일자리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지방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청년 등 다른 세대의 고용을 구축하지 않도록 계속고용기업 중 비수도권 기업 우대 요소 신설 등 지원방안 마련

(2-2) 사업규모

○ 사업기간 : 계속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계획액 기준, 기금운용계획변경 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정부안
사업비	86,942	62,102	56,730	53,560	45,566

(2-3)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사업시행주체, 사업 수혜자

구분	임금피크제지원금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고령자통합장려금	고령자고용지원금
시행방법	직접수행		
시행주체	고용노동부(고용센터)		
사업수혜자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감액된 근로자	정년퇴직자 계속고용 사업주	60세 이상 고용 증가 사업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3) 기능별(내역사업별) 산출 내역

(3-1) 내역사업별 세부 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계획액(수정)(A)	2027년 정부안액(B)	증감 (B-A)
합 계	53,560	45,566	△79.9
고령자통합장려금	10,684	24,248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22,493	0	순감
고령자고용지원금	20,382	21,318	
임금피크제지원금	1	0	순감

○ **고령자통합장려금 (2026년) 10,684 → (2027년 정부안) 24,248백만원, △126.9%**

- (설명) 유사·중복 내역사업 통합(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고령자통합장려금)
- (산출) 7,698명('26년) × 50%(수도권 비중) × 월 30만원 × 12개월 × 75%
  + 7,698명('26년) × 50%(비수도권 비중) × 월 40만원 × 12개월 × 75% = 24,248백만원
  * (산출인원) 지난 4년간 계속고용장려금 지원인원 추이('22년 7,994명 → '23년 7,888명 → '24년 7,114명 → '25년 7,698명) 평균 값을 반영하여 산정

○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2026년) 22,493 → (2027년 정부안) 0, 전액삭감**

- (설명) 위 내역사업과 통합

○ **고령자고용지원금 (2026년) 20,382 → (2027년 정부안) 21,318, 4.6%**

- (설명) '26년 계속분만 예산 반영
- (산출) 17,765명 × 30만원 × 4분기
  * '26년 집행예상액 29,596백만원(상반기 집행액 14,798백만원 × 2)에 이월 지급 감소추세 28% 반영

4) 사업효과

(4-1) 최근 5년(2023년~2027년)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 **성과지표:** 중장년 고용률(40~60대)(단위: %)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목표	신규	신규	신규	72.1	72.6
실적	72.0	72.0	72.5	-	-
달성도	-	-	-	-	-

- **측정산식** : (40~60대 취업자수)/(40~60대 인구) × 100
- **측정방법 및 목표치 설정근거** : '25년 실적(72.5%) 대비 목표 0.1%p 상향
- **자료수집방법/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4-2) 성과지표 이외의 최근 4년(2023년~2026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3년	(고용연장지원금) 91개소, 340백만원 (임금피크제지원금, 근로시간단축지원금) 102명, 239백만원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7,888명, 19,101백만원 (고령자고용지원금) 14,563개소, 71,659백만원
2024년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7,114명, 18,467백만원 (고령자고용지원금) 16,638개소, 58,787백만원
2025년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7,698명, 20,494백만원 (고령자고용지원금) 11,726개소, 42,635백만원
2026년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8,538명, 13,027백만원('26.7월말 현재) (고령자고용지원금) 6,717개소, 17,877백만원('26.7월말 현재)

(4-3) 향후(2027년 이후) 기대효과

○ 60세 이상 정년도래자를 주된 일자리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계속고용"과 비수도권 기업에 대한 우대 지원을 통해 지방균형발전에도 기여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임금피크제지원금>

임금피크제 도입 (근로자대표 동의)	⇨	취업규칙 변경 신고	⇨	지원금 신청	⇨	확인 및 검토, 지원금 지급
사업주 근로자대표		사업주 → 노동관서		근로자 → 고용센터		고용센터→ 근로자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고령자통합장려금>

계속고용제도 도입 (정년연장·폐지, 재고용)	⇨	취업규칙 변경신고	⇨	지원금 신청	⇨	확인 및 검토, 지원금 지급
사업주		사업주→ 노동관서		고용센터		고용센터→ 사업주

<고령자고용지원금>

60세이상근로자 고용	⇨	지원금 신청	⇨	지원요건 심사	⇨	확인 및 검토, 지원금 지급
사업주		사업주		고용센터		고용센터→ 사업주

8) 최근 3년간(2024년~2026년)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8-1) 정부 사업평가

구분	연도	주요내용
고용 영향평가	2024년	○ 정년제 운용 사업장(계속고용제도 미시행)의 형태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보조금 증액 및 지원요건 완화 등 필요 ○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과 고령자고용지원금은 지원요건 등의 차이로 양립 중이나, 장기적으로 목적이 동일하여 형평성 확보와 중복수혜 방지, 접근성 개선 등을 위해 보조금 통합 검토 필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평가	2026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 의견 : 개선필요 ○ 결과 : 지원대상·수준 조정 필요, 지원요건 완화, 지원유형 다양화 필요
		<고령자 고용지원금> ○ 의견 : 감액 ○ 결과 : 고용안정 효과가 담보되지 않았고,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 특정 업종에 지원이 편중 지속되어 사중손실의 우려, 제도개선 노력이 확인되지 않음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2026년	○ 의견 : 사업개선 ○ 결과 : 정책적 필요성 인정, 사업 추진방향 타당, 집행률은 전반적으로 안정적 관리(90% 중후반 수준), 다만 사업구조가 복합적임

(8-2) 국회 지적사항

구분	연도	주요내용
기노위 결산 시정요구 ('25 회계연도 결산)	2026년	○ 지적 : 연례적인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최소화할 필요 ○ 조치 : 연례적인 기금운용계획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집행 상황 등을 면밀히 고려하여 예산 편성하겠음

(8-3) 감사원, 총리실, 기타(언론, 시민단체 등) 결과: 해당없음

4. 최근 4년간(2023년~2026년) 결산내역

1) 결산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연도	당초 계획액	수정 계획액 (A)	전년도 이월액	기금변경 증감액 등	계획 현액	집행액 (B)	집행률 (B/Ax100)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3년	86,942	95,762	-	8,820	95,762	91,372	95.4	-	4,390
2024년	62,102	77,402	-	15,300	77,402	77,257	99.8	-	145
2025년	56,730	64,811	-	8,081	64,811	63,128	97.4	-	1,683
2026.7월말	53,560	53,560	-	-	53,560	30,953	57.7	해당없음	해당없음

2) 연도별 결산 주요사항

연도	유형	금액 (백만원)	사유
2023년	기금변경	8,820	- (고령자고용지원금) 신청·집행 증가
2024년	기금변경	15,300	- (고령자고용지원금) 신청·집행 증가
2025년	기금변경	8,081	- (고령자고용지원금) 신청·집행 증가
2026년	기금변경	-	- 해당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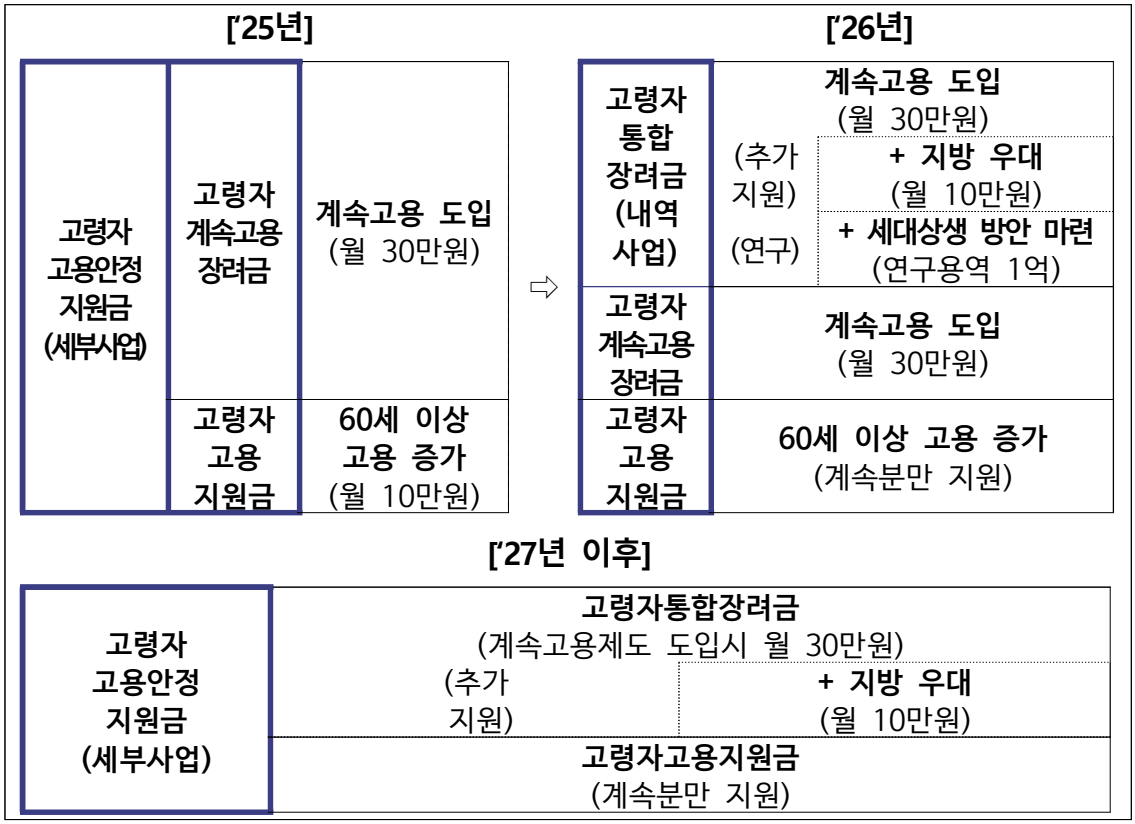
5. 기타 추가자료

(참고 1) 고령자고용안정지원금 개요

참고 **고령자고용안정지원금 개요**

1 고령자통합장려금

* 유사·중복 내역사업 통합(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고령자통합장려금)



○ (지원대상) 정년을 시행 중인 사업주가 정년을 연장·폐지하거나, 정년은 변경하지 않고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1년 이상 재고용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사회적기업

○ (지원수준) 계속고용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26년부터 비수도권은 월 40만원)을 최대 3년간 지원

2 고령자고용지원금

○ (개요) 사업주가 고용하고 있는 60세 이상인 근로자의 수가 3년 평균 대비 증가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

○ (지원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사회적기업

○ (지원수준) 초과 고령자 1인당 분기 30만원을 2년간 지원

사 업 명
(24) 고용보험적용부과 정보시스템 구축(정보화)(1083-355)

1. 사업 총괄 정보

1) 사업 기본 정보

(1-1) 일반 정보

소관	실·국	과·팀	기금	계정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고용보험기획과	고용보험기금	-

(1-2) 코드·명칭 정보

구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080	08D	1000	1083	355
명칭	사회복지	고용	고용창출	고용보험 징수관리	고용보험적용부과 정보시스템 구축 (정보화)

2)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N	Y	N	N	N	-

3)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N	N	Y	N	N	-	-

4) 기능별(내역사업별)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내역사업명	소관	사업시행주체
고용보험적용부과 정보시스템 구축 (정보화)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근로복지공단

2. 지출계획 총괄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사업명	2025년 결산액	2026년 당초계획액 (A)	2026년 수정계획액	2027년 요구액	2027년 정부안액 (B)	증감액 (B-A)	증감률 (B-A) /A×100
고용보험적용부과 정보시스템 구축(정보화)	10,873	12,662	14,164	12,662	10,867	△1,795	△14.2

1)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계획액 (수정)	2025년 계획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계획액 (수정)	2026년 계획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10,873	10,873	10,873	-	-	14,164	14,164	9,180	10,867
·전산장비 유지관리	4,359	4,359	4,359	-	-	4,428	4,428	3,210	5,238
·정보시스템 운영지원	1,587	1,587	1,587	-	-	2,034	2,034	1,475	1,961
·노후된 국가핵심기반시설 장비 교체 및 증설	2,530	2,530	2,530	-	-	-	-	-	-
·재해복구센터 사업비	2,240	2,240	2,240	-	-	6,200	6,200	4,495	3,318
·소득기반 산재·고용보험 정보시스템 구축 BPR/ISP	157	157	157	-	-	-	-	-	-
·소득기반 산재·고용보험 정보시스템 구축	-	-	-	-	-	1,502	1,502	-	350

2) 비목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계획액 (수정)	2025년 계획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계획액 (수정)	2026년 계획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10,873	10,873	10,873	-	-	14,164	14,164	9,180	10,867
·사업출연금(350-02)	10,873	10,873	10,873	-	-	14,164	14,164	9,180	10,867

3. 사업 설명

1) 사업목적·내용

(1-1) 전산장비 유지관리

사업목적	법제도 개선에 따른 정보시스템 적기 반영 및 노후 전산장비 교체를 통한 안정적인 정보화 환경 구축
사업내용	법·제도 개선 사항을 적기 반영하고 새로운 기술을 접목한 다양한 정보처리 환경을 제공하여 업무수행 비용 절감 및 안정적인 정보서비스 제공

(1-2) 정보시스템 운영지원

사업목적	고용보험 정보서비스 개선을 통한 업무 혁신과 대국민 만족 실현
사업내용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 대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부과고지 및 수요자 중심의 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시스템 운영비

(1-3) 재해복구센터 사업비

사업목적	시스템 중단 시 고용보험전산망 기능 연속성 확보
사업내용	재난 발생으로 주전산센터 정보시스템 중단 시 재해복구센터에서 국가핵심정보시스템을 신속히 가동

(1-4) 소득기반 산재·고용보험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목적	고용보험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내용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 개정('27.1.1.)되어 개정사항 선제 반영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2) 사업개요

(2-1)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사업근거	○ 법령상 근거 및 조항 **<고용보험법>** 제80조 (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 2. 실업급여의 지급 3. 육아휴직 급여 및 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 4. 보험료의 반환 5. 일시 차입금의 상환금과 이자 6. 이 법과 보험료징수법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거나 위탁받은 자에 대한 출연금 7. 그 밖에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딸린 경비 ② 제1항제6호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기준, 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추진경위	○ 추진경위 - '99.10월 99년부터 고용보험 적용·징수사업을 위탁 수행하는 근로복지공단의 전산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비용 등 지원 ※ 보험료징수법 개정('09.12.30.) 및 하위법령 개정('10.9.29.) - '23년 전국민 고용보험 적용확대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2-2) 사업규모

○ 사업기간 : 계속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계획액 기준, 기금운용계획변경 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사업비	5,678	5,657	10,873	14,164	10,867

(2-3)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 사업 수혜자 : 근로자, 사업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기관명	2027년 지원금액 (백만원)	지원 비율(%)	법적근거
-	출연	근로복지공단	10,867	100.0	고용보험법 제80조 제1항

3) 기능별(내역사업별) 산출 내역

(3-1) 내역사업별 세부 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계획액(수정)(A)	2027년 정부안액(B)	증감 (B-A)
합 계	14,164	10,867	△3,291
전산장비 유지관리	4,428	5,238	810
정보시스템 운영지원	2,034	1,961	△73
재해복구센터 사업비	6,200	3,318	△2,882
소득기반 산재·고용보험 정보시스템 구축	1,052	350	△702

○ **전산장비 유지관리 (2026년) 4,428 → (2027년) 5,238백만원, +18.3%**

- (설명)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에 필요한 시설장비 및 서버 유지관리, 상용 SW 기술지원과 노후장비 교체 및 증설, 노후 보안장비 및 보안솔루션 교체, 사무자동화기기 도입 임차료, ’26년 대비 +18.3% 증액

- (산출)
① 시스템 유지관리 2,477백만원
- 상용SW 유지관리 : 984백만원
· 장비도입비(8,949백만원) × 11%(요율)= 984백만원
- HW 유지관리 : 676백만원
· 장비도입비(9,657백만원) × 7%(요율) = 676백만원
- 기타설비 유지관리 : 82백만원
· 장비도입비(1,172백만원) × 7%(요율) = 82백만원
- 사무용SW 사용료 : 188백만원
· {오피스(262천원)+한글(101천원)} × 518본 = 188백만원
- 개발SW 유지관리 : 547백만원
· SW기술자평균임금(15,194천원) × 12개월 × 3명 = 547백만원
② 노후장비 교체 및 증설 2,761백만원
- 기존임차료 : 2,761백만원

○ **정보시스템 운영지원 (2026년) 2,034 → (2027년) 1,961백만원, △3.6%**

- (설명) 회선사용료 및 공공요금, '26년 대비 3.6% 감액

- (산출)
① 회선사용료 1,481백만원
- 공공요금 및 제세 : 1,031백만원
· 고용노동부 통합통신망(75회선) × 967천원 × 12월= 870백만원
· 인터넷 유관기관 및 통신회선(22회선) × 606천원 ×12월 = 160백만원
· 우편요금 : 1백만원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클라우드 사용료 : 450백만원
② 기타 운영지원 480백만원
- 일반수용비 : 200백만원
· 사무용품 구입 등 : 20백만원
· 바이러스 백신 사용료 : 79백만원
* PC용 라이선스 : 단가(22천원) × 수량(1,280본) = 28백만원
* 인터넷망 PC용 : 단가(28천원) × 수량(1,545본) = 43백만원
* 서버용 라이선스 : 단가(351천원) × 수량(24본) = 8백만원
· 패치관리SW 사용료 : 단가(39,600원) × 2,559본 = 101백만원
- 특근매식비 : 11백만원
· 특근자 식대(9천원) × 104회 × 12월 = 11백만원
- 일숙직비 : 2백만원
· 전산당직 수당(30천원) × 5.6명 × 12월 = 2백만원
- 기타운영비 : 11백만원
· 정보화인력 전문교육비(700천원) × 10회 = 7백만원
· 부서운영비(21천원) × 8부 × 12월 = 2백만원
· 사용자교육식대(6천원) × 42명 × 4회 = 1백만원
· 소속기관 정보화간담회(6천원) × 42명 × 4개기관= 1백만원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분담금 : 228백만원

· 4대보험연계센터 차세대정보시스템 재구축 등 운영비 공단분담금 : 456백만원×50%(고용기금분담율) = 228백만원

- 국내여비 : 14백만원

· 국내여비(90천원) × 13명 × 1회 × 12월 = 14백만원

- 업무추진비 : 14백만원

· 정보화사업 관련 업무협의(30천원) × 8명 × 2.4회 × 12월 = 7백만원

· 유관기관 간 업무협의(30천원) × 8명 × 1회 × 12월= 3백만원

· 간담회 등(30천원) × 8명 × 1.4회 × 12월 = 4백만원

○ **재해복구센터 사업비 (2026년) 6,200 → (2027년) 3,318백만원, △46.5%**

- (설명)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클라우드 재해복구 시스템 SW 도입 및 재해복구센터 운영비 , '26년 대비 46.5% 감액

- (산출)

① 재해복구센터 구축 : 1,969백만원

- SW도입비 : 3,210백만원 × 고용분담율(50%) = 1,605백만원
- 개발용역비 : 727백만원 × 고용분담율(50%) = 364백만원

② 재해복구센터 운영 : 1,349백만원

- 토탈서비스 클라우드재해복구시스템 이용료 : 79,068,000원×12월×110%×50% = 522백만원
- 통신회선료 : 105회선×12,190,000원×50% = 640백만원
- 기타운영비 : 106,000,000원×50% = 53백만원
- 자산취득비 : 267,821,000원×50% = 134백만원

○ **소득기반 산재·고용보험 정보시스템 구축 (2027년) 350백만원, 순증**

- (설명)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개정('27.1.1.)에 따른 적용부과시스템 구축

- (산출) 산출내용 기재

① 장비도입비 : 64백만원 × 고용분담율(50%) = 32백만원

② 개발용역비 : 636백만원 × 고용분담율(50%) = 318백만원

4) 사업효과

(4-1) 최근 5년(2023년~2027년)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 **성과지표:** 15~64세 고용률(%)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목표	68.0	69.0	69.5	70.0	-
실적	69.2	69.5	69.8	-	-
달성도	101.8	100.7	100.4	-	-

- **측정산식 :** (만15~64세 취업자수 / 만15~64세 인구) *100

- **측정방법 및 목표치 설정근거 :** 최근 3년간 평균실적 및 증감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

- **자료수집방법/출처 :** 국가데이터처

○ **성과지표:** 정보서비스 적기처리율(%)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목표	-	-	-	-	89.0
실적	-	-	-	-	-
달성도	-	-	-	-	-

- **측정산식 :** (개발·개선 신청대비 완료율 + 개선 신청 4일이내처리율) / 2
- **측정방법 및 목표치 설정근거 :** 정보서비스 개선·개발 요청에 대핸 처리통계 통해 산출
- **자료수집방법/출처 :** 공단 정보서비스 개발·개선 완료건수와 IT-VOC 처리건수로 산정

(4-2) 성과지표 이외의 최근 4년(2023년~2026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해당없음

(4-3) 향후(2027년 이후) 기대효과

○ 고용보험 적용, 보험료 산정 및 징수업무의 원활한 수행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예산배정 → 근로복지공단 매월 자금 교부 신청→ 자금교부 → 집행

8) 최근 3년간(2024년~2026년)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8-1) 정부 사업평가:

구분	연도	주요내용
재정사업 자율평가	2024년 (회계연도 2023년)	○ 의견 : 해당 없음 ○ 결과 : 해당 없음
재정사업 자율평가	2025년 (회계연도 2024년)	○ 의견 : 업무자동화 및 서비스 편의와 개선 노력 인정, 행안부 수준평가 등 외부 평가 결과 우수 ○ 결과 : 우수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2026년 (회계연도 2025년)	○ 의견 - **(사업내용의 적정성)** 재난 및 시스템 장애 등 비상상황에서도 고용보험시스템이 중단 없이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기능 연속성을 강화하고, 고용보험 업무 절차 전반의 접근성과 처리 효율을 개선함으로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 - **(지원규모 적정성)** 정보시스템 사용자 및 수혜자에 대한 유형분류 및 이를 통한 적정 사업규모와의 연계성과 관련된 자체 분석 노력이 필요함 ○ 결과 : 사업개선

(8-2) 국회 지적사항: 해당없음

(8-3) 감사원, 총리실, 기타(언론, 시민단체 등) 결과: 해당없음

4. 최근 4년간(2023년~2026년) 결산내역

1) 결산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연도	당초 계획액	수정 계획액 (A)	전년도 이월액	기금변경 증감액 등	계획 현액	집행액 (B)	집행률 (B/Ax100)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3년	5,678	5,678	-	-	5,678	5,678	100.0	-	-
2024년	5,657	5,657	-	-	5,657	5,657	100.0	-	-
2025년	10,873	10,873	-	-	10,873	10,873	100.0	-	-
2026년	12,662	14,164	-	1,502	14,164	9,180	64.8	-	-

2) 연도별 결산 주요사항: 해당없음

5. 기타 추가자료: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25) 근로복지공단 인건비(7076-115)

1. 사업 총괄 정보

1) 사업 기본 정보

(1-1) 일반 정보

소관	실·국	과·팀	기금	계정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고용보험기획과	고용보험기금	-

(1-2) 코드·명칭 정보

구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080	08D	7000	7076	115
명칭	사회복지	고용	고용노동행정지원	기금운영비	근로복지공단 인건비

2)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N	Y	N	N	N	N

3)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N	N	Y	N	N	-	-

4) 기능별(내역사업별)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내역사업명	소관	사업시행주체
근로복지공단 인건비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근로복지공단

2. 지출계획 총괄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사업명	2025년 결산액	2026년 당초계획액 (A)	2026년 수정계획액	2027년 요구액	2027년 정부안액 (B)	증감액 (B-A)	증감률 (B-A) /A×100
근로복지공단 인건비	76,946	79,629	79,629	85,088	85,088	5,459	6.9

1)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계획액 (수정)	2025년 계획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계획액 (수정)	2026년 계획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76,946	76,946	76,946	-	-	79,629	79,629	45,216	85,088
·근로복지공단 인건비	76,946	76,946	76,946	-	-	79,629	79,629	45,216	85,088

2) 비목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계획액 (수정)	2025년 계획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계획액 (수정)	2026년 계획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76,946	76,946	76,946	-	-	79,629	79,629	45,216	85,088
·기관운영출연금(350-01)	76,946	76,946	76,946	-	-	79,629	79,629	45,216	85,088

3. 사업 설명

1) 사업목적·내용

(1-1) 근로복지공단 인건비

사업목적	고용보험 가입 및 보험료 산정, 부과업무의 원활한 수행
사업내용	고용보험 적용대상 사업장·피보험자의 적용누락을 방지하고 고용보험료의 징수율 제고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적용·부과담당 직원에 대한 인건비 및 처우개선 지원

2) 사업개요

(2-1)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사업근거	○ 고용보험법 제80조(기금의 용도) - 제80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 2. 실업급여의 지급 3. 육아휴직 급여 및 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 4. 보험료의 반환 5. 일시 차입금의 상환금과 이자 6. 이 법과 보험료징수법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거나 위탁받은 자에 대한 출연금 7. 그 밖에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딸린 경비 ② 제1항제6호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기준, 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추진경위	○ '99년부터 고용보험 적용·부과에 대한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근로복지공단 임직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

(2-2) 사업규모

○ 사업기간 : 계속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계획액 기준, 기금운용계획변경 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사업비	72,521	74,381	76,946	79,629	85,088

(2-3)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근로복지공단

○ 사업 수혜자 : 근로복지공단 임직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기관명	2027년 지원금액 (백만원)	지원 비율(%)	법적근거
근로복지공단 인건비	출연	근로복지공단	85,088	100.0	고용보험법 제80조 1항

3) 기능별(내역사업별) 산출 내역

(3-1) 내역사업별 세부 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계획액(수정)(A)	2027년 정부안액(B)	증감 (B-A)
합 계	79,629	85,088	5,459
근로복지공단 인건비	79,629	85,088	5,459

○ 근로복지공단 인건비 **(2026년) 79,629 → (2027년) 85,088백만원, +6.9%**

- (설명) 근로복지공단 인건비 공통인상분, 증원 인건비, 추가처우개선 등을 반영, '26년 대비 6.9% 증액
- (산출) 85,088백만원 = 계속소요(79,629백만원) + '27년 공통인상분(3,118백만원) + '26년 수시증원(증원 5명) 12개월 인건비(325백만원) + '27년 정기증원(증원 53명) 6개월 인건비(1,618백만원) + 정규직 인건비 추가처우개선(398백만원)

4) 사업효과

(4-1) 최근 5년(2023년~2027년)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해당없음

(4-2) 성과지표 이외의 최근 4년(2023년~2026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해당없음

(4-3) 향후(2027년 이후) 기대효과:

○ 고용보험 가입 및 보험료 산정, 부과업무의 원활한 수행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예산 배정 → 근로복지공단 매월 고용노동부 자금 신청 → 자금 배정 → 집행

8) 최근 3년간(2024년~2026년)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8-1) 정부 사업평가: 해당없음

(8-2) 국회 지적사항: 해당없음

(8-3) 감사원, 총리실, 기타(언론, 시민단체 등) 결과: 해당없음

4. 최근 4년간(2023년~2026년) 결산내역

1) 결산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연도	당초 계획액	수정 계획액 (A)	전년도 이월액	기금변경 증감액 등	계획 현액	집행액 (B)	집행률 (B/Ax100)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3년	72,521	-	72,521	-	72,521	72,521	100.0	-	-
2024년	74,381	-	74,381	-	74,381	74,381	100.0	-	-
2025년	76,660	286	76,946	-	76,946	76,946	100.0	-	-
2026년	79,629	-	79,629	-	79,629	79,629	100.0	-	-

2) 연도별 결산 주요사항

연도	유형	금액 (백만원)	사유
2025년	계획 변경	286	(계획변경) 공단 상여금 통상임금 인정*에 따른 법정수당 차액 재원 마련 * 대법원 판결('24.12.19.) 및 노사지도 지침 변경('25.2.6.)

5. 기타 추가자료: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26) 고용보험운영 인건비(7076-119)

1. 사업 총괄 정보

1) 사업 기본 정보

(1-1) 일반 정보

소관	실·국	과·팀	기금	계정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고용보험기획과	고용보험기금	-

(1-2) 코드·명칭 정보

구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080	08D	7000	7076	119
명칭	사회복지	고용	고용노동행정지원	기금운영비	고용보험운영 인건비

2)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N	Y	N	N	N	N

3)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Y	N	N	N	N	-	-

4) 기능별(내역사업별)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내역사업명	소관	사업시행주체
상용임금	고용보험기획과	고용노동부

2. 지출계획 총괄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사업명	2025년 결산액	2026년 당초계획액 (A)	2026년 수정계획액	2027년 요구액	2027년 정부안액 (B)	증감액 (B-A)	증감률 (B-A) /A×100
고용보험운영 인건비	638	856	856	882	928	72	8.4

1)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계획액 (수정)	2025년 계획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계획액 (수정)	2026년 계획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787	787	638	-	149	856	856	359	928
·인건비	787	787	638	-	149	856	856	359	928

2) 비목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계획액 (수정)	2025년 계획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계획액 (수정)	2026년 계획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787	787	638	-	149	856	856	359	928
· 상용임금(110-03)	658	658	524	-	135	714	714	319	765
· 고용부담금(320-09)	129	129	114	-	15	142	142	40	163

3. 사업 설명

1) 사업목적·내용

(1) 고용보험운영 인건비

사업목적	고용보험사업의 효율성 제고
사업내용	고용보험통계 전문요원, 고용보험위원회 조사·연구위원,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전문위원, 자산전문위원 및 기금관리실무관 활용

2) 사업개요

(2-1)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사업근거	○「고용보험법」제80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 2. 실업급여의 지급 2의2. 제55조의2에 따른 국민연금 보험료의 지원 3.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 4. 보험료의 반환 5. 일시 차입금의 상환금과 이자 6. 이 법과 보험료징수법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거나 위탁받은 자에 대한 출연금 7. 그 밖에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딸린 경비
추진경위	○ 추진경위 기재 - 최초 사업시작년도: 1995년 - 사업추진배경: 고용보험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도모

(2-2) 사업규모

○ 사업기간 : 1995~계속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계획액 기준, 기금운용계획변경 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사업비	742	784	787	856	928

(2-3)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도웁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3) 기능별(내역사업별) 산출 내역

(3-1) 내역사업별 세부 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계획액(수정)(A)	2027년 정부안액(B)	증감 (B-A)
합 계	856	928	72
인건비	856	928	72

○ 인건비 **(2026년) 856백만원 → (2027년) 928백만원, +8.4%**

- (설명) 고용보험통계 전문요원, 고용보험위원회 조사·연구위원,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전문위원, 자산전문위원 및 기금관리실무관 인건비
- (산출) 공통처우개선, 가족수당 신설, 군경력 우대, 정액급식비 인상, 복지포인트 인상 등으로 전년대비 72백만원(8.4%) 예산 증가

4) 사업효과

(4-1) 최근 5년(2023년~2027년)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해당없음

(4-2) 성과지표 이외의 최근 4년(2023년~2026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해당없음

(4-3) 향후(2027년 이후) 기대효과: 효율적인 고용보험기금 관리 및 운영 도모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고용노동부(본부) 직접 시행

8) 최근 3년간(2024년~2026년)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8-1) 정부 사업평가: 해당없음

(8-2) 국회 지적사항: 해당없음

(8-3) 감사원, 총리실, 기타(언론, 시민단체 등) 결과: 해당없음

4. 최근 4년간(2023년~2026년) 결산내역

1) 결산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연도	당초 계획액	수정 계획액 (A)	전년도 이월액	기금변경 증감액 등	계획 현액	집행액 (B)	집행률 (B/Ax100)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3년	742	742	-	-	742	573	77.2	-	169
2024년	784	784	-	-	874	600	76.5	-	184
2025년	787	787	-	-	787	638	86.6	-	149
2026년	856	856	-	-	856	359	41.9	해당없음	해당없음

2) 연도별 결산 주요사항

연도	유형	금액 (백만원)	사유
2023년	불용	169	집행잔액
2024년	불용	184	집행잔액
2025년	불용	149	집행잔액
2026년	-	-	해당없음

5. 기타 추가자료: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27) 기금관리비 기타경비(7076-201)

1. 사업 총괄 정보

1) 사업 기본 정보

(1-1) 일반 정보

소관	실·국	과·팀	기금	계정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고용보험기획과	고용보험기금	-

(1-2) 코드·명칭 정보

구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080	08D	7000	7076	201
명칭	사회복지	고용	고용노동행정지원	기금운영비	기금관리비 기타경비

2)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N	Y	N	N	N	N

3)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Y	N	N	N	N	-	-

4) 기능별(내역사업별)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내역사업명	소관	사업시행주체
운영비	고용보험기획과	고용노동부
여비	고용보험기획과	고용노동부

2. 지출계획 총괄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사업명	2025년 결산액	2026년 당초계획액 (A)	2026년 수정계획액	2027년 요구액	2027년 정부안액 (B)	증감액 (B-A)	증감률 (B-A) /A×100
기금관리비 기타경비	47	54	54	54	51	△3	△5.6

1)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계획액 (수정)	2025년 계획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계획액 (수정)	2026년 계획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787	787	638	-	149	856	856	359	928
·운영비	787	787	638	-	149	856	856	359	928
·여비									

2) 비목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계획액 (수정)	2025년 계획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계획액 (수정)	2026년 계획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54	54	47	-	7	54	54	28	51
· 일반수용비(210-01)	9	9	4	-	5	9	9	3	6
· 복리후생비(210-12)	6	6	3	-	3	6	6	2	6
· 일반용역비(210-14)	37	37	37	-	-	37	37	20	37
· 국내여비(220-01)	3	3	2	-	1	3	3	2	3

3. 사업 설명

1) 사업목적·내용

(1) 기금관리비 기타경비

사업목적	고용보험기금의 효율적 운영
사업내용	운영경비 및 고용보험기금 결산을 위한 용역 집행

2) 사업개요

(2-1)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사업근거	○「고용보험법」제80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 2. 실업급여의 지급 2의2. 제55조의2에 따른 국민연금 보험료의 지원 3.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 4. 보험료의 반환 5. 일시 차입금의 상환금과 이자 6. 이 법과 보험료징수법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거나 위탁받은 자에 대한 출연금 7. 그 밖에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딸린 경비
추진경위	○ 추진경위 기재 - 최초 사업시작년도: 1995년 - 사업추진배경: 고용보험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도모

(2-2) 사업규모

○ 사업기간 : 1995~계속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계획액 기준, 기금운용계획변경 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사업비	54	54	54	54	51

(2-3)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3) 기능별(내역사업별) 산출 내역

(3-1) 내역사업별 세부 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계획액(수정)(A)	2027년 정부안액(B)	증감 (B-A)
합 계	54	51	△3
운영비	51	48	△3
여비	3	3	-

○ **운영비 (2026년) 51백만원 → (2027년) 48백만원, -5.6%**

- (설명) 기금관리 및 운영을 위한 기타경비
- (산출) 일반수용비 6백만원, 복리후생비 6백만원, 일반용역비 37백만원. 전년 대비 일반수용비 3백만원 감액

○ **여비 (2026년) 3백만원 → (2027년) 3백만원**

- (설명) 기금관리 및 운영을 위한 여비
- (산출) 회계업무지도 출장 2백만원, 기금예탁 및 지출 0.6백만원

4) 사업효과

(4-1) 최근 5년(2023년~2027년)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해당없음

(4-2) 성과지표 이외의 최근 4년(2023년~2026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해당없음

(4-3) 향후(2027년 이후) 기대효과: 효율적인 고용보험기금 관리 및 운영 도모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고용노동부(본부) 직접 시행

8) 최근 3년간(2024년~2026년)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8-1) 정부 사업평가: 해당없음

(8-2) 국회 지적사항: 해당없음

(8-3) 감사원, 총리실, 기타(언론, 시민단체 등) 결과: 해당없음

4. 최근 4년간(2023년~2026년) 결산내역

1) 결산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연도	당초 계획액	수정 계획액 (A)	전년도 이월액	기금변경 증감액 등	계획 현액	집행액 (B)	집행률 (B/Ax100)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3년	54	54	-	-	54	48	90.1	-	6
2024년	54	54	-	-	54	44	81.5	-	10
2025년	54	54	-	-	54	47	87	-	7
2026년	54	54	-	-	54	28	51.9	해당없음	해당없음

2) 연도별 결산 주요사항

연도	유형	금액 (백만원)	사유
2023년	불용	6	집행잔액
2024년	불용	10	집행잔액
2025년	불용	7	집행잔액
2026년	-	-	해당없음

5. 기타 추가자료: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28) 근로복지공단 기타경비(7076-210)

1. 사업 총괄 정보

1) 사업 기본 정보

(1-1) 일반 정보

소관	실·국	과·팀	기금	계정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고용보험기획과	고용보험기금	-

(1-2) 코드·명칭 정보

구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080	08D	7000	7076	210
명칭	사회복지	고용	고용노동행정지원	기금운영비	근로복지공단 기타경비

2)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N	Y	N	N	N	N

3)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N	N	Y	N	N	-	-

4) 기능별(내역사업별)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내역사업명	소관	사업시행주체
근로복지공단 기타경비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근로복지공단

2. 지출계획 총괄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사업명	2025년 결산액	2026년 당초계획액 (A)	2026년 수정계획액	2027년 요구액	2027년 정부안액 (B)	증감액 (B-A)	증감률 (B-A) /A×100
근로복지공단 기타경비	12,369	13,152	13,152	14,141	14,141	989	7.5

1)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계획액 (수정)	2025년 계획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계획액 (수정)	2026년 계획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12,369	12,369	12,369	-	-	13,152	13,152	7,672	14,141
·근로복지공단 기타경비	12,369	12,369	12,369	-	-	13,152	13,152	7,672	14,141

2) 비목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계획액 (수정)	2025년 계획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계획액 (수정)	2026년 계획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12,369	12,369	12,369	-	-	13,152	13,152	7,672	14,141
·기관운영출연금(350-01)	12,369	12,369	12,369	-	-	13,152	13,152	7,672	14,141

3. 사업 설명

1) 사업목적·내용

(1-1) 근로복지공단 인건비

사업목적	고용보험 가입 및 보험료 산정, 부과업무의 원활한 수행
사업내용	- 고용보험 적용부과사업을 위탁·수행하는 근로복지공단 본부 및 소속기관 기관 운영경비 지원 - 고용보험 적용대상 사업장·피보험자 적용누락 방지 및 고용보험료 징수율 제고를 통해 고용보험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기반 조성

2) 사업개요

(2-1)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사업근거	○ 고용보험법 제80조(기금의 용도) - 제80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 2. 실업급여의 지급 3. 육아휴직 급여 및 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 4. 보험료의 반환 5. 일시 차입금의 상환금과 이자 6. 이 법과 보험료징수법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거나 위탁받은 자에 대한 출연금 7. 그 밖에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딸린 경비 ② 제1항제6호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기준, 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추진경위	○ '99년부터 고용보험 적용·부과에 대한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소요경비 지원

(2-2) 사업규모

○ 사업기간 : 계속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계획액 기준, 기금운용계획변경 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사업비	12,787	13,270	12,369	13,152	14,141

(2-3)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근로복지공단

○ 사업 수혜자 : 근로복지공단 임직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기관명	2027년 지원금액 (백만원)	지원 비율(%)	법적근거
근로복지공단 기타경비	출연	근로복지공단	14,141	100.0	고용보험법 제80조 1항

3) 기능별(내역사업별) 산출 내역

(3-1) 내역사업별 세부 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계획액(수정)(A)	2027년 정부안액(B)	증감 (B-A)
합 계	13,152	14,141	989
근로복지공단 기타경비	13,152	14,141	989

○ 근로복지공단 기타경비 **(2026년) 13,152 → (2027년) 14,141백만원, +7.5%**

- (설명) 증원연동경비, 기관 신설(광주동남부지사) 등을 반영, '26년 대비 7.5% 증액
- (산출) 14,141백만원 = 상용임금(4,122백만원) + 일반수용비(952백만원) + 공공요금 및 제세(1,002백만원) + 급식비(1백만원) + 특근매식비(1백만원) + 임차료(1,892백만원) + 유류비(12백만원) + 시설장비유지비(3,622백만원) + 복리후생비(934백만원) + 일반용역비(452백만원) + 관리용역비(91백만원) + 기타운영비(360백만원) + 국내여비(287백만원) + 국외여비(35백만원) + 사업추진비(35백만원) + 관서업무추진비(76백만원) + 직책수행경비(171백만원) + 일반연구비(61백만원) + 자산취득비(59백만원)

4) 사업효과

(4-1) 최근 5년(2023년~2027년)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해당없음

(4-2) 성과지표 이외의 최근 4년(2023년~2026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해당없음

(4-3) 향후(2027년 이후) 기대효과:

○ 고용보험 가입 및 보험료 산정, 부과업무의 원활한 수행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예산 배정 → 근로복지공단 매월 고용노동부 자금 신청 → 자금 배정 → 집행

8) 최근 3년간(2024년~2026년)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8-1) 정부 사업평가: 해당없음

(8-2) 국회 지적사항: 해당없음

(8-3) 감사원, 총리실, 기타(언론, 시민단체 등) 결과: 해당없음

4. 최근 4년간(2023년~2026년) 결산내역

1) 결산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연도	당초 계획액	수정 계획액 (A)	전년도 이월액	기금변경 증감액 등	계획 현액	집행액 (B)	집행률 (B/Ax100)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3년	12,787	12,787	-	-	12,787	12,782	100.0	-	5
2024년	13,270	13,270	-	-	13,270	13,270	100.0	-	-
2025년	12,369	12,369	-	-	12,369	12,369	100.0	-	-
2026년	13,152	13,152	-	-	13,152	7,672	58.3	-	-

2) 연도별 결산 주요사항 : 해당사항 없음

5. 기타 추가자료: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29) 근로복지공단 청사임차보증금지원(7076-213)

1. 사업 총괄 정보

1) 사업 기본 정보

(1-1) 일반 정보

소관	실·국	과·팀	기금	계정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고용보험기획과	고용보험기금	-

(1-2) 코드·명칭 정보

구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080	08D	7000	7076	213
명칭	사회복지	고용	고용노동행정지원	기금운영비	근로복지공단 청사임차보증금지원

2)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N	Y	N	N	N	N

3)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Y	N	N	N	N	-	-

4) 기능별(내역사업별)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내역사업명	소관	사업시행주체
근로복지공단 청사임차보증금지원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근로복지공단

2. 지출계획 총괄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사업명	2025년 결산액	2026년 당초계획액 (A)	2026년 수정계획액	2027년 요구액	2027년 정부안액 (B)	증감액 (B-A)	증감률 (B-A) /A×100
근로복지공단 청사임차보증금지원	392	548	548	548	392	△156	△28.5

1)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계획액 (수정)	2025년 계획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계획액 (수정)	2026년 계획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392	392	392	-	-	548	548	413	392
·근로복지공단 청사임차보증금지원	392	392	392	-	-	548	548	413	392

2) 비목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계획액 (수정)	2025년 계획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계획액 (수정)	2026년 계획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392	392	392	-	-	548	548	413	392
·기관운영출연금(350-01)	392	392	392	-	-	548	548	413	392

3. 사업 설명

1) 사업목적·내용

(1-1) 근로복지공단 인건비

사업목적	고용보험 가입 및 보험료 산정, 부과업무의 원활한 수행
사업내용	근로복지공단 소속기관에 대한 청사 및 숙소 임차보증금 지원

2) 사업개요

(2-1)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사업근거	○ 고용보험법 제80조(기금의 용도) - 제80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 2. 실업급여의 지급 3. 육아휴직 급여 및 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 4. 보험료의 반환 5. 일시 차입금의 상환금과 이자 6. 이 법과 보험료징수법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거나 위탁받은 자에 대한 출연금 7. 그 밖에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딸린 경비 ② 제1항제6호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기준, 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추진경위	○ '99년부터 고용보험 적용·부과에 대한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근로복지공단 본부 및 소속기관 청사 임차보증금 지원

(2-2) 사업규모

○ 사업기간 : 계속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계획액 기준, 기금운용계획변경 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사업비	841	392	392	548	392

(2-3)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무형자산)

○ 사업시행주체 : 근로복지공단

○ 사업 수혜자 : 근로복지공단 임직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3) 기능별(내역사업별) 산출 내역

(3-1) 내역사업별 세부 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계획액(수정)(A)	2027년 정부안액(B)	증감 (B-A)
합 계	548	392	△156
근로복지공단 청사임차보증금지원	548	392	△156

○ 근로복지공단 청사임차보증금지원 **(2026년) 548 → (2027년) 392백만원, △28.5%**

- (설명) 기관 신설(광주동남부지사), 완료소요 등을 반영, '26년 대비 28.5% 감액
- (산출) 392백만원 = 계속소요(548백만원) + 광주동남부지사 신설(50백만원) - 기존청사 임차보증금 재계약 완료소요(206백만원)

4) 사업효과

(4-1) 최근 5년(2023년~2027년)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해당없음

(4-2) 성과지표 이외의 최근 4년(2023년~2026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해당없음

(4-3) 향후(2027년 이후) 기대효과:

○ 고용보험 가입 및 보험료 산정, 부과업무의 원활한 수행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예산 배정 → 근로복지공단 매월 고용노동부 자금 신청 → 자금 배정 → 집행

8) 최근 3년간(2024년~2026년)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8-1) 정부 사업평가: 해당없음

(8-2) 국회 지적사항: 해당없음

(8-3) 감사원, 총리실, 기타(언론, 시민단체 등) 결과: 해당없음

4. 최근 4년간(2023년~2026년) 결산내역

1) 결산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연도	당초 계획액	수정 계획액 (A)	전년도 이월액	기금변경 증감액 등	계획 현액	집행액 (B)	집행률 (B/Ax100)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3년	841	841	-	-	841	841	100.0	-	
2024년	392	392	-	-	392	392	100.0	-	-
2025년	392	392	-	-	392	392	100.0	-	-
2026년	548	548	-	-	548	413	75.4	-	-

2) 연도별 결산 주요사항 : 해당사항 없음

5. 기타 추가자료: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30) 고용안정사업운영(7076-220)

1. 사업 총괄 정보

1) 사업 기본 정보

(1-1) 일반 정보

소관	실·국	과·팀	기금	계정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	기업일자리지원과	고용보험기금	-

(1-2) 코드·명칭 정보

구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080	08D	7000	7076	220
명칭	사회복지	고용	고용노동행정지원	기금운영비	고용안정사업운영

2)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N	Y	N	N	N	N

3)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Y	N	N	N	N	100	-

4) 기능별(내역사업별)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내역사업명	소관	사업시행주체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2. 지출계획 총괄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사업명	2025년 결산액	2026년 당초계획액 (A)	2026년 수정계획액	2027년 요구액	2027년 정부안액 (B)	증감액 (B-A)	증감률 (B-A) /A×100
고용안정사업운영	393	378	378	378	333	△45	△11.9

1)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계획액 (수정)	2025년 계획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계획액 (수정)	2026년 계획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398	398	393	-	5	378	378	199	333
·고용안정사업운영	398	398	393	-	5	378	378	199	333

2) 비목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계획액 (수정)	2025년 계획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계획액 (수정)	2026년 계획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398	398	393	-	5	378	378	199	333
·일반수용비(210-01)	198	198	196	-	2	178	178	91	143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4	4	3	-	-	4	4	-	4
·특근매식비 (210-05)	60	60	58	-	2	60	60	31	60
·국내여비(220-01)	72	72	72	-	-	72	72	40	62
·사업추진비 (240-01)	44	44	43	-	-	44	44	17	44
·자치단체경상보조 (330-01)	21	21	21	-	-	21	21	21	21

3. 사업 설명

1) 사업목적·내용

(1-1) 고용안정사업운영

사업목적	고용안정사업의 효과적인 사업수행 지원
사업내용	고용보험 사업인 고용안정사업의 효율적 집행에 필요한 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최소한의 경상경비 필요

2) 사업개요

(2-1)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사업근거	○ 고용보험법 제80조(기금의 용도) 및 동법 시행령 제107조
추진경위	○ 사업 시작연도: 1995년 ○ 추진배경: 1995년 고용보험 제도 시행에 따라 고용안정 사업운영비 반영

(2-2) 사업규모

○ 사업기간 : 계속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계획액 기준, 기금운용계획변경 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사업비	442	398	398	378	333

(2-3)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고용센터)

○ 사업 수혜자 : 고용보험가입 사업주 및 노동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기관명	2027년 지원금액(백만원)	지원 비율(%)	법적근거
고용안정 사업운영	보조	지자체 보조	21백만원	10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별표1) 122호

3) 기능별(내역사업별) 산출 내역

(3-1) 내역사업별 세부 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계획액(수정)(A)	2027년 정부안액(B)	증감 (B-A)
합 계	378	333	△45
고용안정사업운영	378	333	△45

○ 고용안정사업운영

- (설명) 고용안정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 비용 등 예산 요구
- (산출) 일반수용비(143백만원), 공공요금(3.6백만원), 특근매식비(60백만원), 국내여비(62백만원), 사업추진비(44백만원), 자치단체경상보조(21백만원)

4) 사업효과

(4-1) 최근 5년(2023년~2027년)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해당없음

(4-2) 성과지표 이외의 최근 4년(2023년~2026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해당없음

(4-3) 향후(2027년 이후) 기대효과: 고용안정사업의 효과적인 사업수행 지원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해당없음

8) 최근 3년간(2024년~2026년)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8-1) 정부 사업평가: 해당없음

(8-2) 국회 지적사항: 해당없음

(8-3) 감사원, 총리실, 기타(언론, 시민단체 등) 결과: 해당없음

4. 최근 4년간(2023년~2026년) 결산내역

1) 결산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연도	당초 계획액	수정 계획액 (A)	전년도 이월액	기금변경 증감액 등	계획 현액	집행액 (B)	집행률 (B/Ax100)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3년	442	442	-	-	442	389	88.0	-	53
2024년	398	398	-	-	398	364	91.5	-	34
2025년	398	398	-	-	398	393	98.8	-	5
2026년	378	378	-	-	378	199	52.7	해당없음	해당없음

2) 연도별 결산 주요사항

연도	유형	금액 (백만원)	사유
2023년	-	-	해당없음
2024년	-	-	해당없음
2025년	-		해당없음
2026년	-	-	해당없음

5. 기타 추가자료: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31) 고용서비스선진화지원(7076-222)

1. 사업 총괄 정보

1) 사업 기본 정보

(1-1) 일반 정보

소관	실·국	과·팀	기금	계정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고용서비스정책과	고용보험기금	

(1-2) 코드·명칭 정보

구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080	08D	7000	7076	222
명칭	사회복지	고용	고용노동행정지원	기금운영비	고용서비스선진화지원

2)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N	Y	N	N	N	N

3)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Y	N	N	N	N	-	-

4) 기능별(내역사업별)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내역사업명	소관	사업시행주체
고용서비스선진화지원	고용서비스정책과	직접수행

2. 지출계획 총괄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사업명	2025년 결산액	2026년 당초계획액 (A)	2026년 수정계획액	2027년 요구액	2027년 정부안액 (B)	증감액 (B-A)	증감률 (B-A) /A×100
고용서비스선진화지원	671	500	500	500	465	△35	△7

1)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계획액 (수정)	2025년 계획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계획액 (수정)	2026년 계획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674	674	671	-	3	500	500	107	465
·고용서비스선진화지원	674	674	671	-	3	500	500	107	465

2) 비목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계획액 (수정)	2025년 계획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계획액 (수정)	2026년 계획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674	674	671	-	3	500	500	107	465
·일반수용비(210-01)	198	198	196	-	2	150	150	31	120
·일반용역비(210-14)	261	261	260	-	1	135	135	33	130
·공사비(420-03)	215	215	215	-	-	215	215	43	215

3. 사업 설명

1) 사업목적·내용

(1-1) 고용서비스선진화지원

사업목적·내용	고용복지+센터 및 중점사업(실업급여 및 취업지원 등) 인지도 제고, 국민 서비스 이용 편의 제공 등 고용센터의 이미지 개선을 통한 고용서비스 선진화 지원

2) 사업개요

(2-1)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사업근거	ㅇ **고용보험법 제25조(고용안정 및 취업 촉진)**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 등의 고용안정 및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실시하거나 이를 실시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대부할 수 있다. 1. 고용관리 진단 등 고용개선 지원 사업 2. 피보험자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사업 3. 그 밖에 피보험자 등의 고용안정 및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실시와 비용의 지원·대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ㅇ **고용보험법시행령 제35조(고용안정과 취업의 촉진)** 법 제2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피보험자 등의 고용안정과 취업의 촉진에 관한 교육사업·홍보사업 2. 피보험자 등의 취업 촉진을 위한 직업소개, 직업진로지도, 인턴채용지원 및 전직지원 서비스사업 등 취업지원사업 3. 고령자·여성·장애인인 피보험자등의 고용환경개선사업 4.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 등에 대한 지원사업
추진경위	○ 고용지원서비스 선진화 사업 평가 보고회('05.12.20)를 통하여 보다 많은 기업과 국민들이 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센터 인지도 제고 활동 강화 추진

(2-2) 사업규모

○ 사업기간 : '06년 ~ 계속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계획액 기준, 기금운용계획변경 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사업비	749	674	674	500	465

(2-3)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

○ 사업 수혜자 : 고용센터 이용 구인·구직자 등 전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3) 기능별(내역사업별) 산출 내역

(3-1) 내역사업별 세부 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계획액(수정)(A)	2027년 정부안액(B)	증감 (B-A)
합 계	500	465	35
고용서비스선진화지원	500	465	35

○ 고용서비스선진화지원 (2026년) 500 → (2027년) 465백만원, △7.0%

① 일반수용비 (2026) 150 → (2027 예산안) 120백만원(△30백만원)

- 고용센터 및 중점사업 홍보 등 120백만원

② 일반용역비 (2026) 135 → (2027 예산안) 130백만원(△5백만원)

- 고용센터 홍보 콘텐츠 제작 등 130백만원

③ 공사비 (2027 예산안) 215백만원(전년동)

- 민원인 중심 시설 설치 및 전광판 유지보수 등 215백만원

4) 사업효과

(4-1) 최근 5년(2023년~2027년)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해당없음

(4-2) 성과지표 이외의 최근 4년(2023년~2026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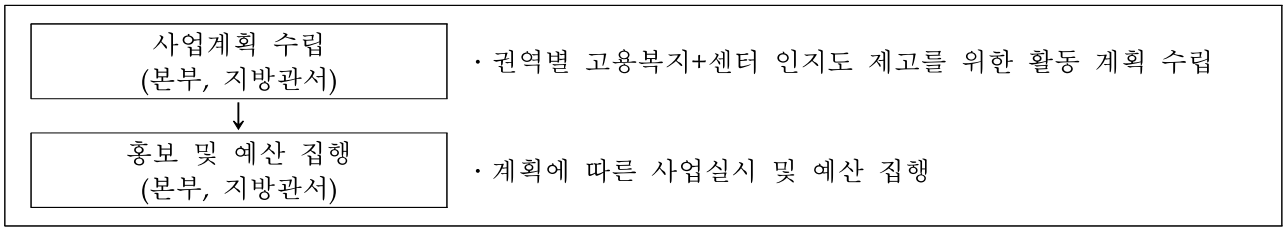
연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3년	○ 고용복지+센터 인지도 제고 및 서비스 선진화를 위한 시설개선 등
2024년	○ 고용복지+센터 인지도 제고 및 서비스 선진화를 위한 시설개선 등
2025년	○ 고용복지+센터 인지도 제고 및 서비스 선진화를 위한 시설개선 등
2026년	○ 고용복지+센터 인지도 제고 및 서비스 선진화를 위한 시설개선 등

(4-3) 향후(2027년 이후) 기대효과: 고용복지+센터 인지도 제고 및 시설개선을 통한 서비스 제공 기반 확충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8) 최근 3년간(2024년~2026년)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8-1) 정부 사업평가: 해당없음

(8-2) 국회 지적사항: 해당없음

(8-3) 감사원, 총리실, 기타(언론, 시민단체 등) 결과: 해당없음

4. 최근 4년간(2023년~2026년) 결산내역

1) 결산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연도	당초 계획액	수정 계획액 (A)	전년도 이월액	기금변경 증감액 등	계획 현액	집행액 (B)	집행률 (B/Ax100)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3년	749	749	-	-	749	740	98.8	-	9
2024년	674	674	-	-	674	673	99.9	-	1
2025년	674	674	-	-	674	671	99.6	-	3
2026년	500	500	-	-	500	107	21.4	해당없음	해당없음

2) 연도별 결산 주요사항: 해당없음

5. 기타 추가자료: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32) 실업급여운영 기타경비(7076-223)

1. 사업 총괄 정보

1) 사업 기본 정보

(1-1) 일반 정보

소관	실·국	과·팀	기금	계정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고용보험기금	-

(1-2) 코드·명칭 정보

구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080	08D	7000	7076	223
명칭	사회복지	고용	고용노동행정지원	기금운영비	실업급여운영 기타경비

2)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N	Y	N	N	N	N

3)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Y	N	N	Y	N	100.0	-

4) 기능별(내역사업별)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내역사업명	소관	사업시행주체
실업급여운영 기타경비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제주특별자치도

2. 지출계획 총괄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사업명	2025년 결산액	2026년 당초계획액 (A)	2026년 수정계획액	2027년 요구액	2027년 정부안액 (B)	증감액 (B-A)	증감률 (B-A) /A×100
실업급여운영 기타경비	1,583	1,536	-	1,536	1,424	△112	△7.3

1)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계획액 (수정)	2025년 계획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계획액 (수정)	2026년 계획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실업급여운영 기타경비	1,603	1,603	1,583	-	20	1,536	1,536	910	1,424
・운영비	1,397	1,397	1,296	-	17	1,245	1,245	757	1,218
・국내여비	85	85	81	-	3	85	85	32	73
・사업추진비	24	24	23	-	-	24	24	11	24
・자치단체경상보조	107	107	107	-	-	107	107	95	107
・자산취득비	75	75	75	-	-	75	75	15	75

2) 비목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계획액 (수정)	2025년 계획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계획액 (수정)	2026년 계획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1,603	1,603	1,583	-	20	1,536	1,536	910	1,424
・일반수용비(210-01)	503	503	503	-	0.2	527	527	340	427
・공공요금및제세(210-02)	704	704	704	-	-	613	613	385	613
・특근매식비(210-05)	63	63	62	-	1.2	63	63	28	63
・임차료(210-07)	8	8	8	-	1	8	8	0.3	8
・유류비(210-08)	19	19	5	-	14	19	19	2	19
・시설장비유지비(210-09)	14	14	14	-	0.4	14	14	2	14
・국내여비(220-01)	85	85	81	-	3	85	85	32	73
・사업추진비(240-01)	24	24	23	-	0.2	24	24	11	24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107	107	107	-	-	107	107	95	107

3. 사업 설명

1) 사업목적·내용

사업목적	○ 실업급여 지급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기본운영비 지원
사업내용	○ 사업기간 :1995년 7월 1일 ~ 계속 ○ 사업규모 : 2027년 기준 14억 지원 예정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지자체 보조(제주)

2) 사업개요

(2-1)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사업근거	○ 고용보험법 제80조 제1항 제2호 및 제7호 * **고용보험법 제80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 2. 실업급여의 지급 <후략> 7. 그밖에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딸린 경비
추진경위	○ 1992년 3월 한국노동연구원에「고용보험연구기획단」발족 ○ 1993년 4월「고용보험 실무 작업반」구성 및 1995년 시행방침 확정 ○ 1993년 12월 고용보험법 제정 및 공포 ○ 1995년 7월 고용보험사업(실업급여 등) 시행

(2-2) 사업규모

○ 사업기간 : 1995년 7월 1일 ~ 계속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계획액 기준, 기금운용계획변경 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안)
사업비	1,755	1,600	1,603	1,536	1,424

(2-3)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지자체보조

○ 사업시행주체 : 고용센터,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 수혜자 : 각 고용센터 및 구직급여 수급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기관명	2027년 지원금액 (백만원)	지원 비율 (%)	법적근거
실업급여운영 기타경비	보조	제주특별 자치도	107	100.0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02조 제4항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별표1] 제122호

3) 기능별(내역사업별) 산출 내역

(3-1) 내역사업별 세부 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계획액(수정)(A)	2027년 정부안액(B)	증감 (B-A)
합 계	**1,536**	**1,424**	**△112**
실업급여운영 기타경비	1,536	1,424	△112

○ **실업급여운영 기타경비 (2026년) 1,536 → (2027년) 1,424백만원, △7.3%**

- **(설명)** 실업급여 지급 업무의 수행을 위한 운영경비를 최근 집행실적과 사업운영 여건 등 반영하여 ’26년 대비 △7.6%(112백만원) 감액

- (산출) 1,424백만원 = 운영비 1,218백만원 + 국내여비 73백만원 + 사업추진비 24백만원 + 지자체보조 107백만원 + 자산취득비 75백만원

4) 사업효과

(4-1) 최근 5년(2023년~2027년)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

○ **성과지표: 고용보험 가입자수**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목표	15,710천명	15,993천명	16,188천명	16,449천명	16,597천명
실적	15,835천명	16,060천명	16,303천명		
달성도	100.8%	100.4%	100.7%		

- **측정산식** : 해당연도의 12월말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수 추출

- **측정방법 및 목표치 설정근거** : ’27년 성과목표는 ’26년 성과목표의 100.9% 수준으로 상향하여 설정

- **자료수집방법/출처** : 고용정보통합분석시스템(EIS)

(4-2) 성과지표 이외의 최근 4년(2023년~2026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해당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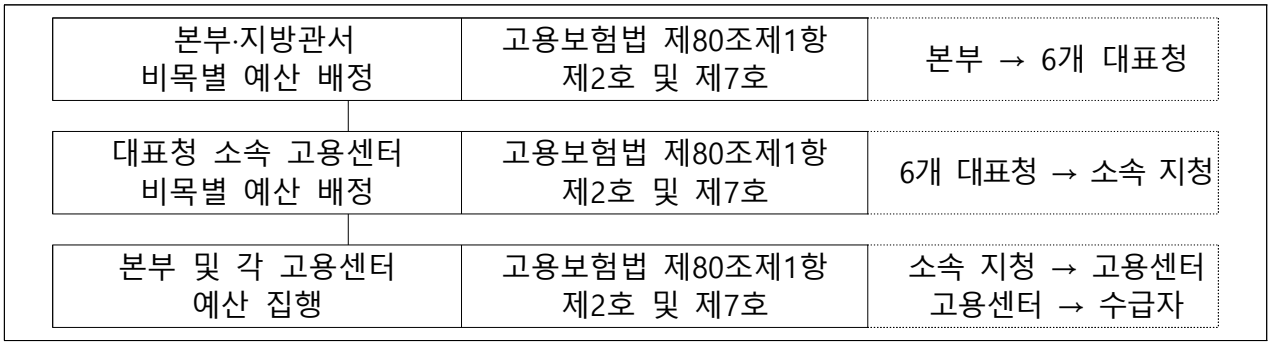
(4-3) 향후(2027년 이후) 기대효과

○ 실업급여 지급과 재취업지원 업무 수행을 위한 필수 경비를 적기에 지원하여 고용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과 실업급여 수급자의 편의 제고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8) 최근 3년간(2024년~2026년)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해당없음

4. 최근 4년간(2023년~2026년) 결산내역

1) 결산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연도	당초 계획액	수정 계획액 (A)	전년도 이월액	기금변경 증감액 등	계획 현액	집행액 (B)	집행률 (B/Ax100)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3년	1,755	1,755	-	-	1,755	1,664	94.8	-	91
2024년	1,600	1,600	-	-	1,600	1,543	96.4	-	57
2025년	1,603	1,603	-	-	1,603	1,583	98.7	-	20
2026년	1,536	1,536	-	-	1,536	908	59.1	해당없음	해당없음

2) 연도별 결산 주요사항

연도	유형	금액 (백만원)	사유
2023년	불용	91	- 집행 잔액 불용
2024년	불용	57	- 집행 잔액 불용
2025년	불용	20	- 집행 잔액 불용

5. 기타 추가자료: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33) 실업급여심사·재심사 기타경비(7076-225)

1. 사업 총괄 정보

1) 사업 기본 정보

(1-1) 일반 정보

소관	실·국	과·팀	기금	계정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고용보험기획과	고용보험기금	-

(1-2) 코드·명칭 정보

구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080	08D	7000	7076	225
명칭	사회복지	고용	고용노동행정지원	기금운영비	실업급여 심사·재심사운영 기타경비

2)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N	Y	N	N	N	N

3)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Y	N	N	N	N	-	-

4) 기능별(내역사업별)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내역사업명	소관	사업시행주체
운영비	고용보험기획과	고용노동부
여비	고용보험기획과	고용노동부
업무추진비	고용보험기획과	고용노동부
보전금	고용보험기획과	고용노동부
유형자산	고용보험기획과	고용노동부

2. 지출계획 총괄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사업명	2025년 결산액	2026년 당초계획액 (A)	2026년 수정계획액	2027년 요구액	2027년 정부안액 (B)	증감액 (B-A)	증감률 (B-A) /A×100
실업급여 심사·재심사운영 기타경비	44	50	50	50	50	-	-

1)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계획액 (수정)	2025년 계획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계획액 (수정)	2026년 계획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50	50	44	-	6	50	50	44	50
·운영비	37	37	33	-	4	37	37	33	37
·여비	5	5	4	-	1	5	5	5	5
·업무추진비	7	7	7	-	-	7	7	7	7
·보전금	0.4	0.4	-	-	0.4	0.4	0.4	-	0.4
·유형자산	0.7	0.7	0.7	-	-	0.7	0.7	-	0.7

2) 비목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계획액 (수정)	2025년 계획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계획액 (수정)	2026년 계획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50	50	44 [44]	-	6	50	50	44 [44]	50
·일반수용비(210-01)	27	27	25 [25]	-	2	27	27	24 [24]	27
·공공요금및제세(210-02)	7	7	5 [5]	-	2	7	7	7 [7]	7
·특근매식비(210-05)	2	2	2 [2]	-	-	2	2	2 [2]	2
·복리후생비(210-12)	2	2	1 [1]	-	1	2	2	1 [1]	2
·국내여비(220-01)	5	5	4 [4]	-	1	5	5	5 [5]	5
·사업추진비(240-01)	7	7	7 [7]	-	-	7	7	6 [6]	7
·손실보상금(310-01)	0.4	0.4	-	-	-	0.4	0.4	-	0.4
·자산취득비(430-01)	0.7	0.7	0.7 [0.7]	-	0.7	0.7	0.7	-	0.7

3. 사업 설명

1) 사업목적·내용

(1) 실업급여심사·재심사 기타경비

사업목적	고용보험심사·재심사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
사업내용	실업급여,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확인, 육아휴직급여·산전후휴가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에 관한 처분에 있어서 직업안정기관의 부당한 불이익 처분으로 권익을 침해받은 피보험자 등을 보호

2) 사업개요

(2-1)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사업근거	ㅇ **「고용보험법」 제87조(심사와 재심사)** ①제17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에 대한 확인, 제4장의 규정에 따른 실업급여 및 제5장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와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관한 처분[이하 "원처분(原處分)등"이라 한다]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제89조에 따른 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제99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심사의 청구는 같은 항의 확인 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의 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각각 제기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심사 및 재심사의 청구는 시효중단에 관하여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 ㅇ **「고용보험법」 제99조(고용보험심사위원회)** ①제87조에 따른 재심사를 하게 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사위원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및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각 1명 이상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제2항의 위원 중 2명은 상임위원으로 한다.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에 임명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⑥상임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심사위원회는 제87조제1항에 따라 재심사의 청구를 받으면 50일 이내에 재결(裁決)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결기간의 연장에 관하여는 제89조제2항을 준용한다. ⑧심사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⑨심사위원회 및 사무국의 조직·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ㅇ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36조(전문위원의 배치)** ① 고용노동부 장관은 법 제99조제8항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재심사 업무에 필요한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위하여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의 자격·복무와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추진경위	○ 추진경위 기재 - 최초 사업시작년도: 1995년 - 사업추진배경: 고용보험법령이 시행('95.7.1.) 되면서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확인,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급여·산전후휴가급여에 관한 처분 등에 이의가 있어 제기한 이의신청 사건의 재결을 위하여 제도화

(2-2) 사업규모

○ 사업기간 : 1995~계속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계획액 기준, 기금운용계획변경 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사업비	50	50	50	50	50

(2-3)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

○ 사업 수혜자 : 심사·재심사 청구인, 사업주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3) 기능별(내역사업별) 산출 내역

(3-1) 내역사업별 세부 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계획액(수정)(A)	2027년 정부안액(B)	증감 (B-A)
합 계	50	50	-
운영비	37	37	-
여비	5	5	-
업무추진비	7	7	-
보전금	0.4	0.4	-
유형자산	0.7	0.7	-

○ **운영비 (2026년) 37백만원 → (2027년) 37백만원**

- (설명) 실업급여심사·재심사 운영을 위한 기타경비
- (산출) 일반수용비 27백만원, 공공요금및제세 7백만원, 특근매식비 2백만원. 복리후생비 2백만원

○ **여비 (2026년) 5백만원 → (2027년) 5백만원**

- (설명) 실업급여심사·재심사 관련 여비
- (산출) 심사위원회 여비 3백만원, 심사관실 여비 2백만원

○ **업무추진비 (2026년) 7백만원 → (2027년) 7백만원**

- (설명) 실업급여심사·재심사 관련 업무추진비
- (산출) 심사위원회 업무추진비 5백만원, 심사관실 업무추진비 2백만원

○ **보전금 (2026년) 0.4백만원 → (2027년) 0.4백만원**

- (설명) 실업급여심사·재심사 관련 출석 실비보상금
- (산출) 심사위원회 보전금 0.2백만원, 심사관실 보전금 0.2백만원

○ **유형자산 (2026년) 0.7백만원 → (2027년) 0.7백만원**

- (설명) 실업급여심사·재심사 운영을 위한 기본 자산 취득비용
- (산출) 프린터 구매 비용 0.7백만원

4) 사업효과

(4-1) 최근 5년(2023년~2027년)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해당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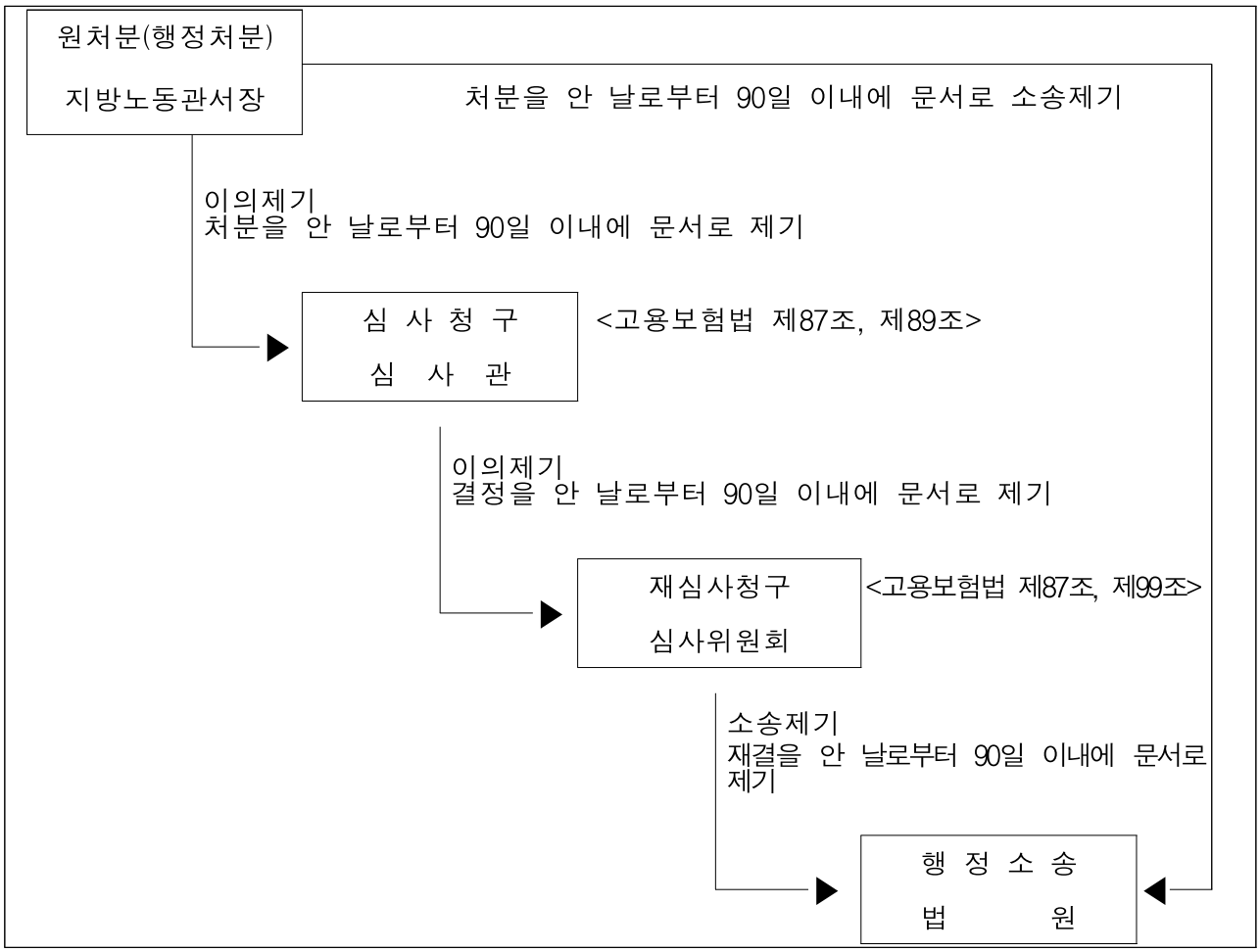
(4-2) 성과지표 이외의 최근 4년(2023년~2026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해당없음

(4-3) 향후(2027년 이후) 기대효과: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한 청구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고용보험 심사·재심사 제도의 안정적 운영에 기여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8) 최근 3년간(2024년~2026년)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8-1) 정부 사업평가: 해당없음

(8-2) 국회 지적사항: 해당없음

(8-3) 감사원, 총리실, 기타(언론, 시민단체 등) 결과: 해당없음

4. 최근 4년간(2023년~2026년) 결산내역

1) 결산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연도	당초 계획액	수정 계획액 (A)	전년도 이월액	기금변경 증감액 등	계획 현액	집행액 (B)	집행률 (B/Ax100)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3년	50	50	-	-	50	49	98.0	-	1
2024년	50	50	-	-	50	44	88.0	-	6
2025년	50	50	-	-	50	47	87	-	3
2026년	50	50	-	-	50	44	88	해당없음	해당없음

2) 연도별 결산 주요사항

연도	유형	금액 (백만원)	사유
2023년	불용	1	집행잔액
2024년	불용	6	집행잔액
2025년	불용	3	집행잔액
2026년	-	-	해당없음

5. 기타 추가자료: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34) 고용보험운영 기타경비(7076-226)

1. 사업 총괄 정보

1) 사업 기본 정보

(1-1) 일반 정보

소관	실·국	과·팀	기금	계정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고용보험기획과	고용보험기금	-

(1-2) 코드·명칭 정보

구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080	08D	7000	7076	226
명칭	사회복지	고용	고용노동행정지원	기금운영비	고용보험운영 기타경비

2)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N	Y	N	N	N	N

3)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Y	N	N	N	N	-	-

4) 기능별(내역사업별)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내역사업명	소관	사업시행주체
운영비	고용보험기획과	고용노동부
여비	고용보험기획과	고용노동부
업무추진비	고용보험기획과	고용노동부

2. 지출계획 총괄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사업명	2025년 결산액	2026년 당초계획액 (A)	2026년 수정계획액	2027년 요구액	2027년 정부안액 (B)	증감액 (B-A)	증감률 (B-A) /A×100
고용보험운영 기타경비	2,362	2,630	2,630	2,630	2,296	△334	△12.7

1)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계획액 (수정)	2025년 계획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계획액 (수정)	2026년 계획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2,730	2,730	2,362	-	368	2,630	2,630	463	2,296
·운영비	2,496	2,496	2,159	-	337	2,396	2,396	401	2,072
·여비	157	157	131	-	26	157	157	13	147
·업무추진비	77	77	72	-	5	77	77	50	77

2) 비목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계획액 (수정)	2025년 계획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계획액 (수정)	2026년 계획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2,730	2,730	2,362	-	368	2,630	2,630	463	2,296
·일반수용비(210-01)	1,420	1,420	1,225	-	195	1,539	1,539	278	1,297
·공공요금및제세(210-02)	31	31	22	-	9	21	21	15	21
·특근매식비(210-05)	13	13	13	-	-	13	13	12	13
·임차료(210-07)	27	27	17	-	10	27	27	24	27
·복리후생비(210-12)	3	3	2	-	1	3	3	2	4
·일반용역비(210-14)	850	850	727	-	121	638	638	58	638
·기타운영비(210-16)	154	154	153	-	1	154	154	13	71
·국내여비(220-01)	25	25	24	-	1	14	14	13	4
·국외업무여비(220-02)	133	133	107	-	26	143	143	-	143
·사업추진비(240-01)	77	77	72	-	5	77	77	50	77

3. 사업 설명

1) 사업목적·내용

(1) 고용보험운영 기타경비

사업목적	고용보험제도와 보험사업에 대한 적극적 안내를 통한 국민들의 이해도 제고, 보험사업의 활성화
사업내용	정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소요되는 필수경비 지출

2) 사업개요

(2-1)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사업근거	ㅇ「고용보험법」제80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 2. 실업급여의 지급 2의2. 제55조의2에 따른 국민연금 보험료의 지원 3.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 4. 보험료의 반환 5. 일시 차입금의 상환금과 이자 6. 이 법과 보험료징수법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거나 위탁받은 자에 대한 출연금 7. 그 밖에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딸린 경비
추진경위	○ 추진경위 기재 - 최초 사업시작년도: 1995년 - 사업추진배경: 고용보험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국민 이해 도모

(2-2) 사업규모

○ 사업기간 : 1995~계속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계획액 기준, 기금운용계획변경 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사업비	2,730	2,730	2,730	2,630	2,296

(2-3)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3) 기능별(내역사업별) 산출 내역

(3-1) 내역사업별 세부 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계획액(수정)(A)	2027년 정부안액(B)	증감 (B-A)
합 계	2,630	2,296	△334
운영비	2,396	2,072	△324
여비	157	147	△10
업무추진비	77	77	-

○ **운영비 (2026년) 2,396백만원 → (2027년) 2,062백만원, -13.5%**

- (설명) 고용보험운영을 위한 기타경비
- (산출) 일반수용비 1,539백만원, 공공요금및제세 21백만원, 특근매식비 13백만원, 임차료 27백만원, 복리후생비 3백만원, 일반용역비 638백만원, 기타운영비 154백만원, 전년대비 324백만원 감소

○ **여비 (2026년) 157백만원 → (2027년) 147백만원, -6.4%**

- (설명) 고용보험운영을 위한 여비
- (산출) 여비 147백만원, 전년대비 10백만원 감소

○ **업무추진비 (2026년) 77백만원 → (2027년) 77백만원**

- (설명) 고용보험운영 관련 업무추진비
- (산출) 고용보험운영 관련 간담회 개최 비용 77백만원

4) 사업효과

(4-1) 최근 5년(2023년~2027년)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해당없음

(4-2) 성과지표 이외의 최근 4년(2023년~2026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해당없음

(4-3) 향후(2027년 이후) 기대효과: 고용보험에 대한 적극적 안내를 통해 고용보험 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제고하여 정책의 성공적인 수행 지원 및 고용보험 운영을 위한 경상경비 지출을 통해 고용보험사업의 원활한 운영 도모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고용노동부(본부) 직접 시행

8) 최근 3년간(2024년~2026년)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8-1) 정부 사업평가: 해당없음

(8-2) 국회 지적사항: 해당없음

(8-3) 감사원, 총리실, 기타(언론, 시민단체 등) 결과: 해당없음

4. 최근 4년간(2023년~2026년) 결산내역

1) 결산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연도	당초 계획액	수정 계획액 (A)	전년도 이월액	기금변경 증감액 등	계획 현액	집행액 (B)	집행률 (B/Ax100)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3년	2,730	2,730	-	-	2,730	2,131	78.1	-	599
2024년	2,730	2,730	-	-	2,730	2,441	89.4	-	289
2025년	2,730	2,730	-	-	2,730	2,362	86.5	-	368
2026년	2,630	2,630	-	-	2,630	433	16.5	해당없음	해당없음

2) 연도별 결산 주요사항

연도	유형	금액 (백만원)	사유
2023년	불용	599	집행잔액
2024년	불용	289	집행잔액
2025년	불용	368	집행잔액
2026년	-	-	해당없음

5. 기타 추가자료: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35) 고용센터자체청사관리비(7076-228)

1. 사업 총괄 정보

1) 사업 기본 정보

(1-1) 일반 정보

소관	실·국	과·팀	기금	계정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고용서비스정책과	고용보험기금	-

(1-2) 코드·명칭 정보

구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080	08D	7000	7076	228
명칭	사회복지	고용	고용노동행정지원	기금운영비	고용센터자체청사관리비

2)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N	Y	N	N	N	N

3)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Y	N	N	N	N	-	-

4) 기능별(내역사업별)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내역사업명	소관	사업시행주체
고용센터자체청사관리비	고용서비스정책과	직접수행

2. 지출계획 총괄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사업명	2025년 결산액	2026년 당초계획액 (A)	2026년 수정계획액	2027년 요구액	2027년 정부안액 (B)	증감액 (B-A)	증감률 (B-A) /A×100
고용센터자체청사 관리비	16,433	16,446	16,446	17,707	17,707	1,261	7.7

1)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계획액 (수정)	2025년 계획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계획액 (수정)	2026년 계획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16,433	16,433	16,393	-	40	16,446	16,446	8,457	17,707
고용센터자체청사관리비	16,433	16,433	16,393	-	40	16,446	16,446	8,457	17,707

2) 비목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계획액 (수정)	2025년 계획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계획액 (수정)	2026년 계획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16,433	16,433	16,393	-	40	16,446	16,446	8,457	17,707
・상용임금(110-03)	3,963	3,963	3,937	-	26	4,321	4,321	2,286	5,322
・일반수용비(210-01)	83	83	82	-	1	83	83	12	53
・공공요금및제세(210-02)	3,978	3,978	3,970	-	7	3,694	3,694	1,933	3,694
・유류비(210-08)	23	23	20	-	3	23	23	9	23
・시설장비유지비(210-09)	5,787	5,787	5,787	-	-	5,920	5,920	3,411	5,920
・복리후생비(210-12)	73	73	73	-	-	73	73	47	87
・관리용역비(210-15)	404	404	402	-	2	404	404	230	404
・사업추진비(240-01)	2	2	2	-	-	2	2	-	2
・고용부담금(320-09)	775	775	775	-	-	856	856	226	1,132
・공사비(420-03)	1,203	1,203	1,203	-	1	928	928	241	928
・자산취득비(430-01)	142	142	142	-	-	142	142	62	142

3. 사업 설명

1) 사업목적·내용

(1-1) 고용센터자체청사관리비

사업목적·내용	고용센터 매입청사 운영에 필요한 시설 유지·관리(건물 보수, 관리비 등) 비용, 청사 근무 공무직(미화・보안실무・시설관리직) 근로자 인건비 지원 등

2) 사업개요

(2-1)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사업근거	**- 고용정책기본법 제11조(직업안정기관의 설치 등)** ① 국가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는 경우에 지역 근로자와 사업주가 편리하게 고용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별로 직업안정기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역의 구직자와 구인기업에 대하여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을 운영하는 경우에 그 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고용서비스 제공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고용보험법 제80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7. 그 밖에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딸린 경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7조(기금의 용도 등)** ① 법 제80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말한다. 1. 보험사업의 관리·운영에 드는 경비 2. 기금의 관리·운용에 드는 경비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08년 ~ 계속 - 센터 임차보증금 인상요구 및 이전요구 등에 따른 빈번한 이전으로 민원인 불편 및 접근성 취약, 이전비·시설비·홍보비 등 예산 낭비 문제 발생 - 이에 '03.4월『고용안정 인프라 확충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고용보험기금을 재원으로 종합고용지원센터 중심 단계적 자체청사 확보사업 추진

(2-2) 사업규모

○ 사업기간 : ’08년 ~ 계속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계획액 기준, 기금운용계획변경 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사업비	16,289	16,015	16,158	16,446	17,707

(2-3)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지방관서)

○ 사업 수혜자 : 구인·구직자 등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3) 기능별(내역사업별) 산출 내역

(3-1) 내역사업별 세부 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계획액(수정)(A)	2027년 정부안액(B)	증감 (B-A)
합 계	16,446	17,707	1,261
고용센터자체청사관리비	16,446	17,707	1,261

○ 고용센터자체청사관리비 (2026년) 16,446 → (2027년) 17,707백만원, +7.7%

① 공무직 근로자(미화원, 보안실무관, 시설관리(요)원) 인건비: (2026) 5,250 → (2027 예산안) 6,541백만원 (+1,291백만원)

- (산출) 상용임금 5,322백만원(+1,001), 복리후생비 87백만원(+14), 고용부담금 1,132백만원(+276)

② 고용센터 운영비: (2026) 3,800 → (2027 예산안) 3,770백만원(△30백만원)

- (산출) 자체청사 전기세, 도시가스 공공요금 등(53개소 × 71.1백만원)

③ 자체청사관리비 등: (2027 예산안) 6,324백만원(전년동)

- (산출) 청사 관리비 및 시설유지보수비, 보안용역비 등(53개소 × 119백만원)

④ 시설공사비: (2027 예산안) 928백만원(전년동)

- (산출) 고용센터 노후시설 개보수 등(53개소 × 17.5백만원)

⑤ 자산취득비: (2026) 142백만원(전년동)

- (산출) 사무집기, 전산장비 등 노후 자산 교체 및 구매 등(53개소 × 2.7백만원)

4) 사업효과

(4-1) 최근 5년(2023년~2027년)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해당없음

(4-2) 성과지표 이외의 최근 4년(2023년~2026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연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3년	고용센터 자체청사 53개소 운영
2024년	고용센터 자체청사 53개소 운영
2025년	고용센터 자체청사 53개소 운영
2026년	고용센터 자체청사 53개소 운영

(4-3) 향후(2027년 이후) 기대효과: 53개 고용센터 자체청사의 안정적 운영으로 고용서비스 품질 개선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본부(예산 재배정)	○ 예산 재배정 계획 및 사업 지침 마련
↓	
지방관서(예산집행)	○ 본부 시달 계획, 지침, 규정에 따라 사업 수행

8) 최근 3년간(2024년~2026년)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8-1) 정부 사업평가: 해당없음

(8-2) 국회 지적사항: 해당없음

(8-3) 감사원, 총리실, 기타(언론, 시민단체 등) 결과: 해당없음

4. 최근 4년간(2023년~2026년) 결산내역

1) 결산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연도	당초 계획액	수정 계획액 (A)	전년도 이월액	기금변경 증감액 등	계획 현액	집행액 (B)	집행률 (B/Ax100)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3년	16,289	16,289	121	-	16,410	16,334	100.3	-	76
2024년	16,015	16,015	-	-	16,015	15,978	99.8	-	37
2025년	16,158	16,433	-	275	16,433	16,393	99.8	-	40
2026년	16,446	16,446	-	-	16,446	8,457	51.4	해당없음	해당없음

2) 연도별 결산 주요사항: 해당없음

5. 기타 추가자료: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36) 지역고용 정책협의회 운영지원(7076-234)

1. 사업 총괄 정보

1) 사업 기본 정보

(1-1) 일반 정보

소관	실·국	과·팀	기금	계정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	지역산업고용정책과	고용보험기금	-

(1-2) 코드·명칭 정보

구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080	08D	7000	7076	234
명칭	사회복지	고용	고용노동행정지원	기금운영비	지역고용정책 협의회운영지원

2)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N	Y	N	N	N	N

3)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Y	N	N	N	N	-	-

4) 기능별(내역사업별)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해당없음

2. 지출계획 총괄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사업명	2025년 결산액	2026년 당초계획액 (A)	2026년 수정계획액	2027년 요구액	2027년 정부안액 (B)	증감액 (B-A)	증감률 (B-A) /A×100
지역고용 정책협의회운영지원	152	153	153	153	150	3	△2.0

1)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계획액 (수정)	2025년 계획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계획액 (수정)	2026년 계획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161	161	152	-	9	153	153	71	150
・지역고용정책협의회 운영지원	161	161	152	-	9	153	153	71	150

2) 비목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계획액 (수정)	2025년 계획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계획액 (수정)	2026년 계획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161	161	152	-	9	153	153	71	150
-일반수용비(210-01)	95	95	93	-	2	95	95	45	95
-임차료(210-07)	15	15	10	-	5	7	7	3	7
-국내여비(220-01)	2	2	2	-	0	2	2	2	2
-사업추진비(240-01)	49	49	47	-	2	49	49	21	46

3. 사업 설명

1) 사업목적·내용

○ 지역 실정에 맞는 지역고용촉진 대책의 추진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방정부와 고용노동부의 소통과 협력의 필요성이 증대되어 “지역고용정책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을 지원하는 것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 제9조 및 제9조의2

-「고용보험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② 추진경위

- 중앙정부에서 일방적으로 기획된 고용정책으로는 지역 수요에 적합한 지역고용정책 추진에 어려움 발생
- 이에, 지역고용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각 실무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협의체 구성 필요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07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3	2024	2025	2026	2027(안)
사업비	179	161	161	153	150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
- 사업 수혜자 : 해당 없음

3) 기능별(내역사업별) 산출 내역

○ 지역고용정책협의회운영지원

: **(2026년) 153백만원 → (2027년 정부안) 150백만원, △2.0%**

- (요구) 지역고용정책협의회의 원활한 운영 및 적정소요 비용 등을 반영하여 예산 요구
- (산출) 지역고용정책협의회 37백만원(18.5백만원 × 2회)
  권역별 고용정책 실무협의회 31백만원(5.2백만원 × 6개 권역)
  지역별 워크숍 82백만원(5.1백만원 × 16개 시·도)

4) 사업효과

(4-1) 최근 5년(2023년~2027년)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해당없음

(4-2) 성과지표 이외의 최근 4년(2023년~2026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연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3년	지역고용정책협의회 3회 개최
2024년	지역고용정책협의회 2회 개최
2025년	지역고용정책협의회 2회 개최
2026년	상반기 지역고용정책협의회 개최

(4-3) 향후(2027년 이후) 기대효과

○ 중앙과 지방이 소통·협력할 수 있는 지역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지역일자리 이슈 논의 및 지역 일자리 창출 제고에 기여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해당없음

8) 최근 3년간(2024년~2026년)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8-1) 정부 사업평가: 해당없음

(8-2) 국회 지적사항: 해당없음

(8-3) 감사원, 총리실, 기타(언론, 시민단체 등) 결과: 해당없음

4. 최근 4년간(2023년~2026년) 결산내역

1) 결산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연도	당초 계획액	수정 계획액 (A)	전년도 이월액	기금변경 증감액 등	계획 현액	집행액 (B)	집행률 (B/Ax100)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3년	179	179	-	179	179	164	95.0	-	15
2024년	161	161	-	161	161	146	90.6	-	15
2025년	161	161	-	161	161	152	94.3	-	9
2026년	153	153	-	153	153	71	46.4	해당없음	해당없음

2) 연도별 결산 주요사항

연도	유형	금액 (백만원)	사유
2023년	불용	15	사유 작성
2024년	불용	15	사유 작성
2025년	불용	9	사유 작성
2026년	-	-	해당없음

5. 기타 추가자료: 해당사항

사 업 명
(37) 직업능력개발사업운영(7276-240)

1. 사업 총괄 정보

1) 사업 기본 정보

(1-1) 일반 정보

소관	실·국	과·팀	기금	계정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	직업능력정책과	고용보험기금	-

(1-2) 코드·명칭 정보

구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080	08D	7000	7076	240
명칭	사회복지	고용	고용노동행정지원	기금운영비	직업능력개발사업 운영

2)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N	Y	N	N	N	N

3)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Y	N	N	N	N	값	값

4) 기능별(내역사업별)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내역사업명	소관	사업시행주체
직업능력개발사업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	직접수행

2. 지출계획 총괄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사업명	2025년 결산액	2026년 당초계획액 (A)	2026년 수정계획액	2027년 요구액	2027년 정부안액 (B)	증감액 (B-A)	증감률 (B-A) /A×100
직업능력개발사업운영	667	667	667	667	612	△55	△8.2

1)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계획액 (수정)	2025년 계획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계획액 (수정)	2026년 계획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702	702	693	-	9	667	667	387	612
· 직업능력개발사업운영	702	702	693	-	9	667	667	387	612

2) 비목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계획액 (수정)	2025년 계획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계획액 (수정)	2026년 계획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702	702	693	-	9	667	667	387	612
· 일반수용비(210-01)	407	407	404	-	3	372	372	184	327
· 공공요금및제세(210-02)	31	31	31	-	-	31	31	16	31
· 특근매식비(210-05)	23	23	22	-	1	23	23	14	23
· 임차료(210-07)	15	15	12	-	3	15	15	6	15
· 국내여비(220-01)	151	151	150	-	1	151	151	111	141
· 국외업무여비(220-01)	19	19	18	-	1	19	19	19	19

3. 사업 설명

1) 사업목적·내용

- 직업능력개발사업운영

사업목적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기본운영비 등 지원

2) 사업개요

(2-1)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사업근거	고용보험법 제80조(기금의 용도), 같은 법 시행령 제107조(기금의 용도 등)
추진경위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업무추진비, 여비, 관서운영비 등 필요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사업수행 지원

(2-2) 사업규모

○ 사업기간 : '95년 이후 계속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계획액 기준, 기금운용계획변경 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사업비	766	780	702	667	612

(2-3)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보조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

○ 사업 수혜자 : 직업능력정책국, 직업능력정책 관련 지방관서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기관명	2027년 지원금액 (백만원)	지원 비율(%)	법적근거
직업능력개발사업운영	보조	지자체 보조	7	100.0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5조의2

3) 기능별(내역사업별) 산출 내역

(3-1) 내역사업별 세부 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계획액(수정)(A)	2027년 정부안액(B)	증감 (B-A)
합 계	667	612	△55
일반수용비	372	327	△45
공공요금 및 제세	31	31	-
특근매식비	23	23	-
임차료	15	15	-
국내여비	151	141	△10
국외업무여비	19	19	-
사업추진비	49	49	-
자치단체경상보조	7	7	-

4) 사업효과

(4-1) 최근 5년(2023년~2027년)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해당없음

(4-2) 성과지표 이외의 최근 4년(2023년~2026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해당없음

(4-3) 향후(2027년 이후) 기대효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원활한 운영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분기별 예산배정계획 수립 ⇒ 분기별 예산재배정 ⇒ 예산집행

8) 최근 3년간(2024년~2026년)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8-1) 정부 사업평가: 해당없음

(8-2) 국회 지적사항: 해당없음

(8-3) 감사원, 총리실, 기타(언론, 시민단체 등) 결과: 해당없음

4. 최근 4년간(2023년~2026년) 결산내역

1) 결산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연도	당초 계획액	수정 계획액 (A)	전년도 이월액	기금변경 증감액 등	계획 현액	집행액 (B)	집행률 (B/Ax100)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3년	780	780	-	-	780	748	95.9	-	32
2024년	702	702	-	-	702	653	93.0	-	9
2025년	702	702	-	-	702	691	98.4	-	10
2026년	667	667	-	-	667	391	58.6	해당없음	해당없음

2) 연도별 결산 주요사항

2023	- 집행잔액에 따른 불용 발생
2024	- 집행잔액에 따른 불용 발생
2025	- 집행잔액에 따른 불용 발생
2026	- 집행잔액에 따른 불용 발생 예상

5. 기타 추가자료: 해당없음

사 업 명
(38) 근로자능력개발사업운영(7076-241)

1. 사업 총괄 정보

1) 사업 기본 정보

(1-1) 일반 정보

소관	실·국	과·팀	기금	계정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	인적자원개발과	고용보험기금	-

(1-2) 코드·명칭 정보

구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080	08D	7000	7076	241
명칭	사회복지	고용	고용노동행정지원	기금운영비	근로자능력개발사업운영

2)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N	Y	N	N	N	N

3)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Y	N	N	N	N	-	-

4) 기능별(내역사업별)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내역사업명	소관	사업시행주체
근로자능력개발사업운영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 인적자원개발과	근로복지공단, 산업인력공단

2. 지출계획 총괄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사업명	2025년 결산액	2026년 당초계획액 (A)	2026년 수정계획액	2027년 요구액	2027년 정부안액 (B)	증감액 (B-A)	증감률 (B-A) /A×100
근로자능력개발사업운영	112	112	112	112	112	-	-

1)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계획액 (수정)	2025년 계획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계획액 (수정)	2026년 계획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112	112	112	-	-	112	112	78	112
·근로자능력개발사업운영	112	112	112	-	-	112	112	78	112

2) 비목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계획액 (수정)	2025년 계획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계획액 (수정)	2026년 계획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112	112	112	-	-	112	112	78	112
·일반용역비(210-14)	112	112	112	-	-	112	112	78	112

3. 사업 설명

1) 사업목적·내용

(1-1) 근로자직업능력개발사업운영

사업목적	근로복지공단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된 사업의 업무수행을 위해 운영비 지원하기 위함
사업내용	운영비 지원

2) 사업개요

(2-1)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사업근거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고용보험법」제115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45조 ○「고용보험법」제115조: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제145조 제2항: 법 제1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한다. 11. 제45조에 따른 능력개발비용의 대부에 관한 사항 12. 제47조의2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중 생계비 대부와 대부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고용보험법 시행령」제145조 제3항: 법 제1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8. 제48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비용 대부와 대부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9. 제49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비용 지원과 지원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지원결정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추진경위	- '95년 훈련시설장비대부 한국산업인력공단 위탁 - '09년 직업훈련생계비대부 근로복지공단 위탁

(2-2) 사업규모

○ 사업기간 : '95년 ~ 계속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계획액 기준, 기금운용계획변경 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사업비	124	112	112	112	112

(2-3)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 사업 수혜자 :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위탁사업 운영비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3) 기능별(내역사업별) 산출 내역

(3-1) 내역사업별 세부 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계획액(수정)(A)	2027년 정부안액(B)	증감 (B-A)
합 계	112	112	-
근로자능력개발사업운영	112	112	-

○ 근로자능력개발사업운영 **(2026년) 112→ (2027년) 112백만원, 전년동**

- (설명) 전년동
- (산출) 직업훈련생계비대부 + 능력개발시설장비비용대부

가.직업훈련생계비대부(107,690천원)

- 사업공고, 홍보 등 47,384천원
- 공공요금, 업무협의 등 25,846천원
- 직무교육 등 12,923천원
- 여비 등 21,537천원

나. 능력개발시설장비비용대부(4,310천원)

- 여비 등 4,310천원

4) 사업효과

(4-1) 최근 5년(2023년~2027년)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해당없음

(4-2) 성과지표 이외의 최근 4년(2023년~2026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해당없음

(4-3) 향후(2027년 이후) 기대효과:

○ 위탁사업의 원활한 수행으로 사업의 효과성 제고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없음

8) 최근 3년간(2024년~2026년)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8-1) 정부 사업평가: 해당없음

(8-2) 국회 지적사항: 해당없음

(8-3) 감사원, 총리실, 기타(언론, 시민단체 등) 결과: 해당없음

4. 최근 4년간(2023년~2026년) 결산내역

1) 결산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연도	당초 계획액	수정 계획액 (A)	전년도 이월액	기금변경 증감액 등	계획 현액	집행액 (B)	집행률 (B/Ax100)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3년	124		124		124	124	100.0	-	-
2024년	112		112		112	112	100.0	-	-
2025년	112		112		112	112	100.0	-	-
2026년	112		112		112	30	26.3	-	-

2) 연도별 결산 주요사항: 해당없음

5. 기타 추가자료: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39) 모성보호사업운영(7076-250)

1. 사업 총괄 정보

1) 사업 기본 정보

(1-1) 일반 정보

소관	실·국	과·팀	기금	계정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정책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고용보험기금	-

(1-2) 코드·명칭 정보

구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080	08D	7000	7076	250
명칭	사회복지	고용	고용노동행정지원	기금운영비	모성보호사업운영

2)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N	Y	N	N	N	N

3)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Y	N	N	N	N	-	-

4) 기능별(내역사업별)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내역사업명	소관	사업시행주체
모성보호사업운영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고용노동부

2. 지출계획 총괄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사업명	2025년 결산액	2026년 당초계획액 (A)	2026년 수정계획액	2027년 요구액	2027년 정부안액 (B)	증감액 (B-A)	증감률 (B-A) /A×100
모성보호사업운영	297	165	165	165	145	△20	△12.1

1)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계획액 (수정)	2025년 계획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계획액 (수정)	2026년 계획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307	307	297	-	10	165	165	118	145
·모성보호사업운영	307	307	297	-	10	165	165	118	145

2) 비목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계획액 (수정)	2025년 계획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계획액 (수정)	2026년 계획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307	307	297	-	10	165	165	118	145
·일반수용비(210-01)	174	143	140	-	3	132	112	70	111
·공공요금및제세(210-02)	14	29	27	-	2	14	34	34	14
·특근매식비(210-05)	6	12	11	-	1	6	6	3	6
·국내여비(220-01)	7	17	17	-	0	7	7	5	7
·사업추진비(240-01)	7	7	7	-	0	7	7	6	7
·연구비(260-01)	100	100	95	-	5	-	-	-	-

3. 사업 설명

1) 사업목적·내용

(1-1) 모성보호사업운영

사업목적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에 대한 교육 및 사업장 홍보 등을 통하여 일가정양립 문화 확산 도모
사업내용	모성보호제도 사업 운영에 필요한 예산 집행

2) 사업개요

(2-1)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사업근거	「고용보험법」 제80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3.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 7. 그 밖에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딸린 경비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7조(기금의 용도 등) ① 법 제80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말한다. 1. 보험사업의 관리·운영에 드는 경비 2. 기금의 관리·운용에 드는 경비 3.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33조에 따른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교부금 4. 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른 사업이나 업무의 위탁수수료 지급금
추진경위	○ '95.7.1. 고용보험법이 시행됨에 따라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로 편성 ○ '03년부터 모성보호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동 제도에 대한 교육 등을 실시하기 시작한 이후 계속 사업으로 추진

(2-2) 사업규모

○ 사업기간 : '03년~계속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계획액 기준, 기금운용계획변경 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사업비	230	307	307	165	145

(2-3)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제도 내용에 대한 교육 등을 위한 관서운영비, 업무추진비 직접 집행, 사업장 지도·감독을 위한 여비 등 지방관서 재배정 등

○ 사업시행주체 : 직접수행

○ 사업 수혜자 : 고용노동부(본부·지방관서)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3) 기능별(내역사업별) 산출 내역

(3-1) 내역사업별 세부 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계획액(수정)(A)	2027년 정부안액(B)	증감 (B-A)
합 계	165	145	△20
모성보호사업운영	165	145	△20

○ 모성보호사업운영 **(2026년) 165백만원 → (2027년) 145백만원, -12.1%**

- (산출) 145백만원 = 운영비 (131) + 여비(7) + 사업추진비(7)

* 운영비: 제도안내 책자 유인, 법령집 유인, 제도 안내 및 설명, 전문가회의 운영수당 등

4) 사업효과

(4-1) 최근 5년(2023년~2027년)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해당 없음

(4-2) 성과지표 이외의 최근 4년(2023년~2026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해당 없음

(4-3) 향후(2027년 이후) 기대효과

○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및 안내로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의 정착 및 지원확대에 기여할 것을 기대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 대국민 안내 및 지방관서 담당자 교육 등을 위한 관서운영비, 업무추진비 집행

8) 최근 3년간(2024년~2026년)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8-1) 정부 사업평가: 해당없음

(8-2) 국회 지적사항: 해당없음

(8-3) 감사원, 총리실, 기타(언론, 시민단체 등) 결과: 해당없음

4. 최근 4년간(2023년~2026년) 결산내역

1) 결산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연도	당초 계획액	수정 계획액 (A)	전년도 이월액	기금변경 증감액 등	계획 현액	집행액 (B)	집행률 (B/Ax100)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3년	230	230	-	-	230	228	97.5	-	2
2024년	307	307	-	-	307	295	96.1	-	12
2025년	307	307	-	-	307	297	96.7	-	10
2026년 7월	165	165	-	-	165	118	71.5	-	-

2) 연도별 결산 주요사항

연도	유형	금액 (백만원)	사유
2023년	불용	2	집행잔액
2024년	불용	12	집행잔액
2025년	불용	10	집행잔액

5. 기타 추가자료: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40) 고령자고용촉진캠페인(7076-252)

1. 사업 총괄 정보

1) 사업 기본 정보

(1-1) 일반 정보

소관	실·국	과·팀	기금	계정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고령사회인력정책과	고용보험기금	-

(1-2) 코드·명칭 정보

구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080	08D	7000	7076	252
명칭	사회복지	고용	고용노동행정지원	기금운영비	고령자고용촉진캠페인

2)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N	Y	N	N	N	N

3)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Y	N	N	N	N	100	-

4) 기능별(내역사업별)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내역사업명	소관	사업시행주체
고령자고용촉진캠페인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2. 지출계획 총괄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사업명	2025년 결산액	2026년 당초계획액 (A)	2026년 수정계획액	2027년 요구액	2027년 정부안액 (B)	증감액 (B-A)	증감률 (B-A) /A×100
고령자고용촉진 캠페인	419	323	323	323	303	△20	△6.2%

1)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계획액 (수정)	2025년 계획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계획액 (수정)	2026년 계획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고령자고용촉진 캠페인	423	423	419	-	4	323	323	182	303
·고령자고용촉진캠페인	423	423	419	-	4	323	323	182	303

2) 비목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계획액 (수정)	2025년 계획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계획액 (수정)	2026년 계획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423	423	419	-	4	323	323	182	303
· 일반수용비(210-01)	300	294	294	-	-	200	200	125	180
· 공공요금및제세(210-02)	1	-	-	-	-	1	1	-	1
· 임차료(210-07)	2	10	10	-	-	2	2	1	2
· 일반용역비(210-14)	107	107	103	-	4	107	107	48	107
· 기타운영비(210-16)	1	-	-	-	-	1	1	-	1
· 사업추진비(240-01)	12	12	11	-	-	12	12	8	12

3. 사업 설명

1) 사업목적·내용

(1-1) 고령자고용촉진캠페인

사업목적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촉진사업 등 인식개선 및 활용도 제고하여 고령자 고용안정 도모
사업내용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촉진사업 인식개선 캠페인 전개

2) 사업개요

(2-1)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사업근거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추진경위	○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국가실천전략('04.1월)에 Age campaign 전개 확정·발표, 고령자고용촉진기본계획('07~'11)에 포함, '06년부터 사업시작 - 명칭변경 : '06년 에이지캠페인 → '12년 고령자고용촉진캠페인

(2-2) 사업규모

○ 사업기간 : '06 ~ 계속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계획액 기준, 기금운용계획변경 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사업비	470	423	423	323	303

(2-3)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 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

○ 사업 수혜자 : 고령/준고령 근로자·근로자가 되려는 자, 사업주,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3) 기능별(내역사업별) 산출 내역

구 분	2026년 계획액(수정)(A)	2027년 정부안액(B)	증감 (B-A)
합 계	323	303	△20
고령자고용촉진캠페인	323	303	△20

○ 고령자고용촉진캠페인 **(2026년) 323 → (2027년) 303백만원, △6.2%**

- (설명) 고령자고용촉진 관련 홍보를 위한 예산
- (산출) 고령자고용촉진 관련 영상매체 제작 및 리플릿 제작 등 홍보비 180백만원, 공공요금 1백만원, 회의장 임차료 2백만원, 홍보용역비 등 119백만원 반영

4) 사업효과

(4-1) 최근 5년(2023년~2027년)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해당없음

(4-2) 성과지표 이외의 최근 4년(2023년~2026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연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3년	○ **(온라인)** 고령 근로자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제고 및 고용상 연령차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유형별 테스트 및 이모티콘 제작 추진, 고령자 고용 우수사례 확산을 위한 영상 제작 및 유튜브 홍보 추진 등 ○ **(오프라인)** '23년 중장년 고용정책 리플릿 배포
2024년	○ **(온라인)** 고령자고용활성화를 위한 영상 및 카드뉴스 제작, 고령자 계속고용홍보를 위한 영상광고 송출,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안내를 위한 오피스보드, 정류장 스크린 홍보 ○ **(오프라인)**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안내 신문지면 광고 및 리플릿 배포
2025년	○ **(온라인)** 베테랑 고령인력 고용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위한 유튜브 영상 제작 및 퀴즈 이벤트,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및 중장년 경력지원제 홍보 카드뉴스 제작 ○ **(오프라인)**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및 중장년 경력지원제 관련 KTX매거진 광고, 중장년 경력지원제 언론매체(머니투데이) 광고, 고령자 계속고용 우수사업장 사례집·계속고용장려금 사업주 가이드북·재취업지원서비스 매뉴얼 제작
2026년	○ **(온라인)** '26년 재취업지원 서비스 사업 네이버, 인사쟁이 카페 등 홍보, 중장년 경력지원제 유튜브 영상 제작 및 홍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및 중장년 경력지원제 홍보 카드뉴스 제작, 일손부족일자리 동행 인센티브 돌출 가상광고 ○ **(오프라인)**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및 중장년 경력지원제 관련 KTX매거진 광고, 계속고용장려금 사업주 가이드북·일손부족일자리 동행 인센티브 운영 매뉴얼· 팸플릿 제작

(4-3) 향후(2027년 이후) 기대효과

○ 장년고용에 관한 긍정적 인식 환기, 세대 간 일자리 갈등에 대한 부정적 인식개선 및 장년고용에 관한 정부 정책의 수용도 및 효과성 제고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캠페인계획 수립	⇒	온·오프라인 캠페인 수행	⇒	정산
고용부		홍보 매체사(한국언론진흥재단 연계)		고용부

8) 최근 3년간(2024년~2026년)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8-1) 정부 사업평가: 해당없음

(8-2) 국회 지적사항: 해당없음

(8-3) 감사원, 총리실, 기타(언론, 시민단체 등) 결과: 해당없음

4. 최근 4년간(2023년~2026년) 결산내역

1) 결산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연도	당초 계획액	수정 계획액 (A)	전년도 이월액	기금변경 증감액 등	계획 현액	집행액 (B)	집행률 (B/Ax100)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3년	470	470	-	-	470	463	98.5	-	7
2024년	423	423	-	-	423	419	99.1	-	4
2025년	423	423	-	-	423	419	98.9	-	4
2026년 7월말	323	323	-	-	323	182	56.3	해당없음	해당없음

2) 연도별 결산 주요사항

연도	유형	금액 (백만원)	사유
2023년	-	-	- 특이사항 없음
2024년	-	-	- 특이사항 없음
2025년	-	-	- 특이사항 없음
2026년	-	-	- 특이사항 없음

5. 기타 추가자료: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41) 고용보험연구용역(7077-271)

1. 사업 총괄 정보

1) 사업 기본 정보

(1-1) 일반 정보

소관	실·국	과·팀	기금	계정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	고용정책총괄과	고용보험기금	-

(1-2) 코드·명칭 정보

구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080	08D	7000	7077	271
명칭	사회복지	고용	고용노동행정지원	고용보험연구개발	고용보험연구용역

2)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N	Y	N	N	N	N

3)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Y	N	N	N	N	-	-

4) 기능별(내역사업별)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내역사업명	소관	사업시행주체
고용보험연구용역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 고용정책총괄과	-

2. 지출계획 총괄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사업명	2025년 결산액	2026년 당초계획액 (A)	2026년 수정계획액	2027년 요구액	2027년 정부안액 (B)	증감액 (B-A)	증감률 (B-A) /A×100
고용보험연구용역	1,094	554	554	554	554	-	-

* 25년도 98백만원 '26년으로 이월(이월액 포함시 '26년 예산 649백만원)

1)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계획액 (수정)	2025년 계획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계획액 (수정)	2026년 계획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1,337	1,337	1,094	95	148	554	554	158	554
·고용보험연구용역	1,337	1,337	1,094	95	148	554	554	158	554

* 25년도 98백만원 '26년으로 이월(이월액 포함시 '26년 예산 649백만원)

2) 비목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계획액 (수정)	2025년 계획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계획액 (수정)	2026년 계획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1,337	1,337	1,094	95	148	554	554	158	554
·일반연구비(260-01)	1,337	1,337	1,094	95	148	-	-	-	-
·정책연구비(260-02)	-	-	-	-	-	554	554	158	554

* 25년도 98백만원 '26년으로 이월(이월액 포함시 '26년 예산 649백만원)

3. 사업 설명

1) 사업목적·내용

(1-1) 고용보험연구용역

사업목적 및 내용	고용보험 활성화 방안, 고용보험의 법령, 재정 등 고용보험 관련 사업, 그리고 노동시장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해 고용정책의 대안을 마련하고, 대학, 연구기관 등 다양한 연구기관의 연구 참여를 통해 연구의 내실화를 도모

2) 사업개요

(2-1)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사업근거	○ 법령상 근거 및 조항 - 고용보험법 제11조(보험 관련 조사·연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시장·직업 및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연구와 보험 관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조사·연구 사업 등을 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추진경위	○ 고용보험 및 노동시장 현안에 대한 분석을 통한 정책적 대안 제시 및 다양한 연구기관 참여를 통한 연구 저변 확대와 내실화를 위해 '04년부터 시행

(2-2) 사업규모

○ 사업기간 : 계속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계획액 기준, 기금운용계획변경 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사업비	1,337	1,337	1,337	554	554

(2-3)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

○ 사업 수혜자 : 정부,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3) 기능별(내역사업별) 산출 내역

(3-1) 내역사업별 세부 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계획액(수정)(A)	2027년 정부안액(B)	증감 (B-A)
합 계	554	554	-
고용보험연구용역	554	554	-

○ 고용보험연구용역 **(2026년) 554 → (2027년 정부안) 554백만원, 전년동**

- (설명) 고용보험 연구과제 용역수행을 위한 정책연구비 편성
  (주요 사업 및 일자리 관련 현안에 대한 연구용역)
- (산출) 50백만원 × 11개과제 + 4백만원

4) 사업효과

(4-1) 최근 5년(2023년~2027년)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해당없음

(4-2) 성과지표 이외의 최근 4년(2023년~2026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연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3년	'민간 고용서비스 활성화 방안'등 22개 과제 수행
2024년	'노동시장 환경변화에 대응한 고용정책 개선전략 연구' 등 17개 과제 수행
2025년	'고용보험 DB 등을 활용한 중장년 취업지원 사업 평가 모델 개발 연구' 등 12개 과제 수행
2026년	'고용서비스 혁신 현장 실행력 제고를 위한 고용센터 인력 역량강화 방안 연구 등 11개 과제 수행

(4-3) 향후(2027년 이후) 기대효과:

○ 각종 고용보험사업 및 노동시장 현황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시의적절하고 효과성 있는 중·장기적 고용정책 대안 마련 기대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연구과제 수요조사 및 연구과제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제출 → 정책연구심의위원회 개최(연구과제 선정) → 공개경쟁입찰 → 정책연구심의소위원회 개최(연구자 선정) → 계약체결 → 연구상황 점검 → 연구결과물 평가 및 검수 → 연구결과물 제출 및 활용

8) 최근 3년간(2024년~2026년)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8-1) 정부 사업평가: 해당없음

(8-2) 국회 지적사항: 해당없음

(8-3) 감사원, 총리실, 기타(언론, 시민단체 등) 결과: 해당없음

4. 최근 4년간(2023년~2026년) 결산내역

1) 결산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연도	당초 계획액	수정 계획액 (A)	전년도 이월액	기금변경 증감액 등	계획 현액	집행액 (B)	집행률 (B/Ax100)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3년	1,337	1,337	11	-	1,348	1,113	83.2	49	186
2024년	1,337	1,337	49	-	1,386	1,370	102.5	-	16
2025년	1,337	1,337	-	-	1,337	1,094	81.8	95	148
2026년	554	554	95	-	649	253	45.7	해당없음	해당없음

2) 연도별 결산 주요사항

연도	유형	금액 (백만원)	사유
2023년	불용	186	집행잔액
2023년	이월	49	일부 연구과제 보완 등 연구기간 확보 등 사유로 차년도 이월발생
2024년	불용	16	집행잔액
2025년	불용	148	집행잔액
2025년	이월	95	일부 연구과제 보완 등 연구기간 확보 등 사유로 차년도 이월발생

5. 기타 추가자료: 해당없음

사 업 명
(42) 한국직업능력연구원조사연구지원(7077-272)

1. 사업 총괄 정보

1) 사업 기본 정보

(1-1) 일반 정보

소관	실·국	과·팀	기금	계정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	직업능력정책과	고용보험기금	-

(1-2) 코드·명칭 정보

구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080	08D	7000	7077	272
명칭	사회복지	고용	고용노동행정지원	고용보험연구개발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조사연구지원

2)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N	Y	N	N	N	N

3)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Y	N	N	N	N	-	-

4) 기능별(내역사업별)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내역사업명	소관	사업시행주체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조사연구지원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	고용노동부

2. 지출계획 총괄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사업명	2025년 결산액	2026년 당초계획액 (A)	2026년 수정계획액	2027년 요구액	2027년 정부안액 (B)	증감액 (B-A)	증감률 (B-A) /A×100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조사연구지원	500	445	445	445	445	-	-

1)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계획액 (수정)	2025년 계획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계획액 (수정)	2026년 계획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495	516	500	16	-	445	461	249	445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조사연구지원	495	516	500	16	-	445	461	249	445

2) 비목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계획액 (수정)	2025년 계획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계획액 (수정)	2026년 계획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495	516	500	16	-	445	461	249	445
· 일반용역비(210-14)	495	516	500	16	-	445	461	249	445

3. 사업 설명

1) 사업목적·내용

(1-1) 한국직업능력연구원조사연구지원

사업목적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새로운 정책수요에 대응하고 미래 수요자 중심의 실효성 있는 직업훈련정책 강화
사업내용	직업능력개발정책 조사 및 분석 수행 지원

2) 사업개요

(2-1)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사업근거	○ 고용보험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 **고용보험법 제11조(보험 관련 조사·연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시장·직업 및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연구와 보험 관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조사·연구 사업 등을 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보험 가입촉진 및 적용확대 등을 위하여 피보험자 및 피보험자가 아닌 사람의 취업상태, 소득수준 등을 조사·분석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조(업무의 대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1조 제3항에 따라 노동시장에 관한 연구와 고용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 관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조사·연구 사업을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가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보험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2. 「고용정책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고용정보원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부설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4. 그 밖에 노동시장·직업 및 직업능력개발과 보험 관련 업무에 관한 조사·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민간연구기관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조사·연구, 관리·운영 등에 드는 경비를 고용보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 지원할 수 있다.
추진경위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99)에 근거하여 국가 인적자원개발과 직업교육훈련정책 및 자격제도,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위탁사업 실시

(2-2) 사업규모

○ 사업기간 : 계속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

(단위: 백만원)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사업비	550	495	495	445	445

(2-3)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한국직업능력연구원 위탁)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3) 기능별(내역사업별) 산출 내역

(3-1) 내역사업별 세부 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계획액(수정)(A)	2027년 정부안액(B)	증감 (B-A)
합 계	**445**	**445**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조사연구지원	445	445	-

○ **한국직업능력연구원조사연구지원 (2026년) 445 → (2027년) 445백만원, 전년동**

- (설명) 직업능력개발 주요쟁점 및 현안 사항 등에 대한 용역 수행
- (산출)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위탁·대행 445백만원

4) 사업효과

(4-1) 최근 5년(2023년~2027년)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해당없음

(4-2) 성과지표 이외의 최근 4년(2023년~2026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연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3년	산업 및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직업훈련 사각지대 해소방안 외 8건 용역 수행
2024년	직업능력개발 포럼 운영 외 10건 용역 수행
2025년	국가기술자격 제도발전 포럼 외 11건 용역 수행
2026년	2025년도 RSC 성과평가 실시 및 2026년도 평가계획 지표·수립 외 7건 용역 수행 중

(4-3) 향후(2027년 이후) 기대효과

○ 직업능력개발 제도개선 및 정책 대안 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고용노동부)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용역 위탁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조사·분석 → 결과물 제출 및 활용

8) 최근 3년간(2024년~2026년)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8-1) 정부 사업평가: 해당없음

(8-2) 국회 지적사항: 해당없음

(8-3) 감사원, 총리실, 기타(언론, 시민단체 등) 결과: 해당없음

4. 최근 4년간(2023년~2026년) 결산내역

1) 결산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연도	당초 계획액	수정 계획액 (A)	전년도 이월액	기금변경 증감액 등	계획 현액	집행액 (B)	집행률 (B/Ax100)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3년	550	550	6	-	556	550	100.0	6	-
2024년	495	495	6	-	501	480	97.0	21	-
2025년	495	495	21	-	516	500	101.1	16	-
2026년	445	445	16	-	461	249	56.0	해당없음	해당없음

2) 연도별 결산 주요사항

연도	유형	금액 (백만원)	사유
2023년	이월	6	일부 용역의 연내 완수가 어려운 사정이 있어 이월 발생
2024년	이월	21	일부 용역의 연내 완수가 어려운 사정이 있어 이월 발생
2025년	이월	16	일부 용역의 연내 완수가 어려운 사정이 있어 이월 발생

5. 기타 추가자료: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43)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제도 홍보(7078-280)

1. 사업 총괄 정보

1) 사업 기본 정보

(1-1) 일반 정보

소관	실·국	과·팀	기금	계정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 고용서비스정책관	고용보험기획과	고용보험기금	-

(1-2) 코드·명칭 정보

구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080	08D	7000	7078	280
명칭	사회복지	고용	고용노동행정지원	기금운영비 (자영업자)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제도 홍보

2)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N	Y	N	N	N	N

3)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N	N	Y	N	N	-	-

4) 기능별(내역사업별)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내역사업명	소관	사업시행주체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제도 홍보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근로복지공단

2. 지출계획 총괄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사업명	2025년 결산액	2026년 당초계획액 (A)	2026년 수정계획액	2027년 요구액	2027년 정부안액 (B)	증감액 (B-A)	증감률 (B-A) /A×100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제도 홍보	376	276	276	276	176	△100	△36.2

1)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계획액 (수정)	2025년 계획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계획액 (수정)	2026년 계획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제도 홍보	376	376	376	0	0	276	276	222	176

2) 비목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계획액 (수정)	2025년 계획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계획액 (수정)	2026년 계획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376	376	376	0	0	276	276	222	176
·출연금(350-02)	376	376	376	0	0	276	276	222	176

3. 사업 설명

1) 사업목적·내용

(1-1)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제도 안내

사업목적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대상 사업주를 대상으로 고용보험 제도 안내 및 가입유도를 통한 자영업자의 고용안전망 강화
사업내용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대상 사업주를 대상으로 고용보험 제도 안내 및 사업 홍보

2) 사업개요

(2-1)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사업근거	○ 「고용보험법」 제80조제1항
추진경위	○ 2013년: 자영업자 실업급여 지급 관련 구체적 업무처리절차 마련 ○ 2014년: 가입률 제고를 위한 가입요건 등 완화 방안 검토 ※「자영업자 고용보험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14.6월~12월) ○ 2015년: 기준보수 등급 신설(총 5등급 → 7등급) ○ 2016년: 임의가입기간 확대(개업일로부터 6개월 → 1년 이내) ○ 2017년: 임의가입기간 추가 확대(개업일로부터 1년 → 5년 이내) ○ 2019년: 임의가입기간 폐지(개업일로부터 5년 → 폐지) 실업급여보장성 강화('19.10.1.시행) * 지급수준 10%p 인상(50%→60%), 지급일수 30일 확대(90~180일→120~210일) ○ 2020년: 전국민고용보험 로드맵 발표('12.23), 자영업자 가입대상 및 방식과 적용시기 단계적 확대방안 논의('21년 상반기부터) ○ 2021년: 자영업자 고용보험 확대적용 관련 경사노위 등 사회적 논의 추진 ○ 2022년: 가입대상 확대(고유번호를 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 * (고용부 고시) 가정·민간어린이집 및 노인장기요양기관 중 대표자와 기관장이 동일한 개인인 경우 ○ 2023년: 고유번호증 보유 자영업자 실업급여 지급 관련 업무처리 절차 마련 ○ 2024년: 농어업경영체 등록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및 실업급여 지급 관련 업무처리 절차 마련

(2-2) 사업규모

○ 사업기간 : 2013~계속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계획액 기준, 기금운용계획변경 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사업비	418	376	376	276	176

(2-3)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근로복지공단

○ 사업 수혜자 : 자영업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기관명	2027년 지원금액 (백만원)	지원 비율(%)	법적근거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제도 홍보	출연	근로복지공단	176	100	고용보험법 제80조제1항

3) 기능별(내역사업별) 산출 내역

(3-1) 내역사업별 세부 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계획액(수정)(A)	2027년 정부안액(B)	증감 (B-A)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제도 홍보	276	176	△100

○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제도 홍보 (2026년) 276 → (2027년) 176백만원, △36.2%**

- (설명) 유관기관과 협업 및 자영업자 맞춤형 홍보를 강화하며, 연례적 홍보비용을 감축하여 △100백만원 감액 요구
- (산출) 수용비 31백만원, 공공요금 26백만원, 홍보비 119백만원
  * 수용비 : ('26년) 78백만원 → ('27년) 31백만원
  * 공공요금 : ('26년) 140백만원 → ('27년) 26백만원
  * 홍보비 : ('26년) 59백만원 → ('27년) 119백만원

4) 사업효과

(4-1) 최근 5년(2023년~2027년)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해당없음

(4-2) 성과지표 이외의 최근 4년(2023년~2026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해당없음

(4-3) 향후(2027년 이후) 기대효과: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로 사회안전망 강화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ㅇ 근로복지공단 출연금(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 홍보를 위한 비용으로 공단에서 집행)

8) 최근 3년간(2024년~2026년)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8-1) 정부 사업평가: 해당없음

(8-2) 국회 지적사항: 해당없음

(8-3) 감사원, 총리실, 기타(언론, 시민단체 등) 결과: 해당없음

4. 최근 4년간(2023년~2026년) 결산내역

1) 결산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연도	당초 계획액	수정 계획액 (A)	전년도 이월액	기금변경 증감액 등	계획 현액	집행액 (B)	집행률 (B/Ax100)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3년	418	418	0	0	418	418	100	0	0
2024년	376	376	0	0	376	376	100	0	0
2025년	376	376	0	0	376	376	100	0	0
2026년	276	276	0	0	276	222	80.4	0	0

2) 연도별 결산 주요사항: 해당없음

5. 기타 추가자료: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44) 자영업자 고용보험지원(7078-281)

1. 사업 총괄 정보

1) 사업 기본 정보

(1-1) 일반 정보

소관	실·국	과·팀	기금	계정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 고용서비스정책관	고용보험기획과	고용보험기금	-

(1-2) 코드·명칭 정보

구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080	08D	7000	7078	281
명칭	사회복지	고용	고용노동행정지원	기금운영비 (자영업자)	자영업자 고용보험지원

2)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N	Y	N	N	N	N

3)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Y	N	N	N	N	-	-

4) 기능별(내역사업별)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내역사업명	소관	사업시행주체
자영업자 고용보험지원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고용노동부(고용센터)

2. 지출계획 총괄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사업명	2025년 결산액	2026년 당초계획액 (A)	2026년 수정계획액	2027년 요구액	2027년 정부안액 (B)	증감액 (B-A)	증감률 (B-A) /A×100
자영업자 고용보험지원	99	106	106	106	77	△29	△27.4

1)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계획액 (수정)	2025년 계획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계획액 (수정)	2026년 계획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106	106	99	0	7	106	106	39	77
·운영비	69	69	65	0	4	69	69	30	50
·여비	18	18	17	0	2	18	18	5	8
·업무추진비	19	19	18	0	1	19	19	4	19

2) 비목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계획액 (수정)	2025년 계획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계획액 (수정)	2026년 계획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106	106	99	0	7	106	106	39	77
·일반수용비(210-01)	51	51	50	0	1	51	51	25	32
·공공요금및제세(210-02)	10	10	9	0	0	10	10	2	10
·특근매식비(210-05)	6	6	4	0	2	6	6	1	6
·임차료(210-07)	3	3	1	0	2	3	3	1	3
·국내여비(220-01)	18	18	17	0	2	18	18	5	8
·사업추진비(240-01)	19	19	18	0	1	19	19	4	19

3. 사업 설명

1) 사업목적·내용

(1-1) 자영업자 고용보험지원

사업목적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촉진 및 제도운영 등에 관한 업무수행
사업내용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운영 등 업무수행을 위한 운영비

2) 사업개요

(2-1)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사업근거	○ 「고용보험법」 제80조제1항
추진경위	○ 2013년: 자영업자 실업급여 지급 관련 구체적 업무처리절차 마련 ○ 2014년: 가입률 제고를 위한 가입요건 등 완화 방안 검토 ※「자영업자 고용보험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14.6월~12월) ○ 2015년: 기준보수 등급 신설(총 5등급 → 7등급) ○ 2016년: 임의가입기간 확대(개업일로부터 6개월 → 1년 이내) ○ 2017년: 임의가입기간 추가 확대(개업일로부터 1년 → 5년 이내) ○ 2019년: 임의가입기간 폐지(개업일로부터 5년 → 폐지) 실업급여보장성 강화('19.10.1.시행) * 지급수준 10%p 인상(50%→60%), 지급일수 30일 확대(90~180일→120~210일) ○ 2020년: 전국민고용보험 로드맵 발표('12.23), 자영업자 가입대상 및 방식과 적용시기 단계적 확대방안 논의('21년 상반기부터) ○ 2021년: 자영업자 고용보험 확대적용 관련 경사노위 등 사회적 논의 추진 ○ 2022년: 가입대상 확대(고유번호를 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 * (고용부 고시) 가정·민간어린이집 및 노인장기요양기관 중 대표자와 기관장이 동일한 개인인 경우 ○ 2023년: 고유번호증 보유 자영업자 실업급여 지급 관련 업무처리 절차 마련 ○ 2024년: 농어업경영체 등록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및 실업급여 지급 관련 업무처리 절차 마련

(2-2) 사업규모

○ 사업기간 : 2013~계속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계획액 기준, 기금운용계획변경 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사업비	118	106	106	106	77

(2-3)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고용센터)

○ 사업 수혜자 : 자영업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3) 기능별(내역사업별) 산출 내역

(3-1) 내역사업별 세부 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계획액(수정)(A)	2027년 정부안액(B)	증감 (B-A)
합계	106	77	△29
일반수용비	51	32	△19
공공요금및제세	10	10	-
특근매식비	6	6	-
임차료	3	3	-
국내여비	18	8	△10
사업추진비	19	19	-

○ **자영업자 고용보험지원 (2026년) 106 → (2027년) 77백만원, △27.4%**

- (산출) 일반수용비 32백만원, 공공요금및제세 10백만원, 특근매식비 6백만원, 임차료 3백만원, 국내여비 8백만원, 사업추진비 19백만원

4) 사업효과

(4-1) 최근 5년(2023년~2027년)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해당없음

(4-2) 성과지표 이외의 최근 4년(2023년~2026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해당없음

(4-3) 향후(2027년 이후) 기대효과: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로 사회안전망 강화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직접수행

8) 최근 3년간(2024년~2026년)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8-1) 정부 사업평가: 해당없음

(8-2) 국회 지적사항: 해당없음

(8-3) 감사원, 총리실, 기타(언론, 시민단체 등) 결과: 해당없음

4. 최근 4년간(2023년~2026년) 결산내역

1) 결산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연도	당초 계획액	수정 계획액 (A)	전년도 이월액	기금변경 증감액 등	계획 현액	집행액 (B)	집행률 (B/Ax100)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3년	118	118	0	0	118	108	91.2	0	10
2024년	106	106	0	0	106	87	82.1	0	19
2025년	106	106	0	0	106	99	93.7	0	7
2026년	106	106	0	0	106	39	36.8	0	0

2) 연도별 결산 주요사항: 해당없음

5. 기타 추가자료: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45)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수이자상환(9201-840)

1. 사업 총괄 정보

1) 사업 기본 정보

(1-1) 일반 정보

소관	실·국	과·팀	기금	계정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고용보험기획과	고용보험기금	-

(1-2) 코드·명칭 정보

구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080	08D	9200	9201	840
명칭	사회복지	고용	기금간거래 (예수이자상환)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이자상환	공공자금관리기금 (총괄계정) 예수이자상환

2)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N	Y	N	N	N	N

3)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Y	N	N	N	N	-	-

4) 기능별(내역사업별)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내역사업명	소관	사업시행주체
공자기금예수이자상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고용노동부

2. 지출계획 총괄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사업명	2025년 결산액	2026년 당초계획액 (A)	2026년 수정계획액	2027년 요구액	2027년 정부안액 (B)	증감액 (B-A)	증감률 (B-A) /A×100
공공자금관리기금 (총괄계정) 예수이자상환	137,460	139,444	139,444	182,592	182,592	43,148	30.9

1)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계획액 (수정)	2025년 계획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계획액 (수정)	2026년 계획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138,632	138,632	137,460	-	1,172	139,444	139,444	63,790	182,592
·공자기금예수이자상환	138,632	138,632	137,460	-	1,172	139,444	139,444	63,790	182,592

2) 비목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계획액 (수정)	2025년 계획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계획액 (수정)	2026년 계획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예수금이자(510-05)	138,632	138,632	137,460	-	1,172	139,444	139,444	63,790	182,592

3. 사업 설명

1) 사업목적·내용

(1-1)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수이자상환

사업목적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예수한 자금의 이자 상환
사업내용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예수한 자금의 이자 상환

2) 사업개요

(2-1)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사업근거	○ 고용보험법 제86조(차입금) 기금을 지출할 때 자금 부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금융기관·다른 기금과 그 밖의 재원 등으로부터 차입을 할 수 있다.
추진경위	○ 기금재원 확충을 위해 차입한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원금에 대한 이자상환을 위해 편성('20년 추경~)

(2-2) 사업규모

○ 사업기간 : 계속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계획액 기준, 기금운용계획변경 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사업비	180,197	164,122	120,632	139,444	182,592

(2-3)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 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3) 기능별(내역사업별) 산출 내역

(3-1) 내역사업별 세부 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계획액(수정)(A)	2027년 정부안액(B)	증감 (B-A)
합 계	139,444	182,592	43,148
공자기금에수이자상환	139,444	182,592	43,148

○ **내역사업명1 (2026년) 139,444 → (2027년) 182,592백만원, +30.9%**

- (설명)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에 대한 이자 편성
- (산출) '20~'27년 예수금 110,549억원*에 대한 이자 1,826억원

  * (`20년) 46,997억원, (`21) 46,584억원, (`22) 9,468억원, (`26) 7,500억원

4) 사업효과

(4-1) 최근 5년(2023년~2027년)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해당없음

(4-2) 성과지표 이외의 최근 4년(2023년~2026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해당없음

(4-3) 향후(2027년 이후) 기대효과: 해당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매분기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이자 상환 요청 → 고용보험기금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이자 상환

8) 최근 3년간(2024년~2026년)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8-1) 정부 사업평가: 해당없음

(8-2) 국회 지적사항: 해당없음

(8-3) 감사원, 총리실, 기타(언론, 시민단체 등) 결과: 해당없음

4. 최근 4년간(2023년~2026년) 결산내역

1) 결산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연도	당초 계획액	수정 계획액 (A)	전년도 이월액	기금변경 증감액 등	계획 현액	집행액 (B)	집행률 (B/Ax100)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3년	180,197	180,197	-	-	180,197	172,003	95.5	-	8,194
2024년	164,122	164,122	-	-	164,122	161,979	98.7	-	2,143
2025년	120,632	138,632	-	18,000	138,632	137,460	99.0	-	1,172
2026년	139,444	139,444	-	-	139,444	63,790	54.3	해당없음	해당없음

2) 연도별 결산 주요사항

연도	유형	금액 (백만원)	사유
2023년	-	8,194	- 집행 잔액
2024년	-	2,143	- 집행 잔액
2025년	-	1,172	- 집행 잔액
2026년	-		- 해당없음

5. 기타 추가자료: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46)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탁(9001-840)

1. 사업 총괄 정보

1) 사업 기본 정보

(1-1) 일반 정보

소관	실·국	과·팀	기금	계정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자산운용팀	고용보험기금	-

(1-2) 코드·명칭 정보

구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080	08D	9000	9001	840
명칭	사회복지	고용	기금간거래(예탁금)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공공자금관리기금 (총괄계정) 예탁

2)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N	Y	N	N	N	N

3)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Y	N	N	N	N	-	-

4) 기능별(내역사업별)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내역사업명	소관	사업시행주체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탁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자산운용팀	고용노동부

2. 지출계획 총괄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사업명	2025년 결산액	2026년 당초계획액 (A)	2026년 수정계획액	2027년 요구액	2027년 정부안액 (B)	증감액 (B-A)	증감률 (B-A) /A×100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탁	-	2,000,000	2,000,000	2,000,000	2,000,000	-	-

1)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계획액 (수정)	2025년 계획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계획액 (수정)	2026년 계획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	-	-	-	-	2,000,000	2,000,000	-	2,000,000
·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탁	-	-	-	-	-	2,000,000	2,000,000	-	2,000,000

2) 비목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계획액 (수정)	2025년 계획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계획액 (수정)	2026년 계획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	-	-	-	-	2,000,000	2,000,000	-	2,000,000
·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탁	-	-	-	-	-	2,000,000	2,000,000	-	2,000,000

3. 사업 설명

1) 사업목적·내용

(1) 비통화금융기관예치

사업목적·내용	- 공공자금관리기본법에 의거 설치된 공공자금관리기금(기획재정부 소관)에 예탁하여 공공목적의 재원으로 사용함으로써 국가재정에 기여

2) 사업개요

(2-1)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사업근거	- 고용보험법 제79조(기금의 관리·운용) ③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운용한다. 1. 금융기관에의 예탁 2. 재정자금에의 예탁 3.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에서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4. 보험사업의 수행 또는 기금 증식을 위한 부동산의 취득 및 처분 5.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 증식 방법 -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6조(관리기금에의 예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정·예금·회계 또는 기금의 관리자는 해당 기금 등의 설치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여유자금을 관리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4. 「국가재정법」 제5조에 따른 기금
추진경위	- 2026.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2-2) 사업규모

○ 사업기간 : `26.~계속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계획액 기준, 기금운용계획변경 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사업비	-	-	-	2,000,000	2,000,000

(2-3)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직접관리(고용노동부)

○ 사업 수혜자 : 고용보험기금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3) 기능별(내역사업별) 산출 내역

(3-1) 내역사업별 세부 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계획액(수정)(A)	2027년 정부안액(B)	증감 (B-A)
합 계	2,000,000	2,000,000	-
비통화금융기관예치	2,000,000	2,000,000	-

○ 비통화금융기관예치 (2026년) 2,000,000 → (2027년) 2,000,000백만원

- (설명)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금 200,000백만원

4) 사업효과

(4-1) 최근 5년(2023년~2027년)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해당없음

(4-2) 성과지표 이외의 최근 4년(2023년~2026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해당없음

(4-3) 향후(2027년 이후) 기대효과:

○ 공공목적의 재원으로 사용함으로써 국가재정에 기여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고용보험기금의 운용 규모 및 국가재정상황에 따라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8) 최근 3년간(2024년~2026년)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8-1) 정부 사업평가: 해당없음

(8-2) 국회 지적사항: 해당없음

(8-3) 감사원, 총리실, 기타(언론, 시민단체 등) 결과: 해당없음

4. 최근 4년간(2023년~2026년) 결산내역 : 해당없음

5. 기타 추가자료: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47) 한국은행예치(9710-970)

1. 사업 총괄 정보

1) 사업 기본 정보

(1-1) 일반 정보

소관	실·국	과·팀	기금	계정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고용보험기획과	고용보험기금	-

(1-2) 코드·명칭 정보

구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080	08D	9700	9710	970
명칭	사회복지	고용	여유자금운용	여유자금운용	한국은행예치

2)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N	Y	N	N	N	N

3)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Y	N	N	N	N	N	N

4) 기능별(내역사업별)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내역사업명	소관	사업시행주체
한국은행예치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2. 지출계획 총괄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사업명	2025년 결산액	2026년 당초계획액 (A)	2026년 수정계획액	2027년 요구액	2027년 정부안액 (B)	증감액 (B-A)	증감률 (B-A) /A×100
한국은행예치	148,846	100,000	100,000	100,000	100,000	-	-

1)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계획액 (수정)	2025년 계획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계획액 (수정)	2026년 계획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100,000 (100,000)	100,000	148,846	-	-	100,000 (100,000)	100,000	-	100,000
·한국은행예치	100,000 (100,000)	100,000	148,846	-	-	100,000 (100,000)	100,000	-	100,000

2) 비목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계획액 (수정)	2025년 계획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계획액 (수정)	2026년 계획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100,000 (100,000)	100,000	148,846	-	-	100,000 (100,000)	100,000	-	100,000
·한국은행예치(470-01)	100,000 (100,000)	100,000	148,846	-	-	100,000 (100,000)	100,000	-	100,000

3. 사업 설명

1) 사업목적·내용

(1-1) 한국은행예치

사업목적	회계연도말 국고계좌에 남은 기금 관리
사업내용	회계연도말 여유자금운용 또는 기타 지출재원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한국은행 국고계좌에 남아 있는 금액

2) 사업개요

(2-1)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사업근거	○ 고용보험법 제78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고용노동부장관은 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고용보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기금은 보험료와 이 법에 따른 징수금·적립금·기금운용 수익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조성한다. ○ 고용보험법 제82조(기금계정의 설치) ①고용노동부장관은 한국은행에 고용보험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고용보험기금계정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 자영업자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자영업자의 실업급여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95.7 고용보험기금의 설치 - 추진배경: 회계연도말 부득이 지출되지 못하고 국고계좌에 남아있는 금액을 한국은행 예치금으로 봄

(2-2) 사업규모

○ 사업기간 : ’95.7월 ~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계획액 기준, 기금운용계획변경 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사업비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2-3)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3) 기능별(내역사업별) 산출 내역

(3-1) 내역사업별 세부 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계획액(수정)(A)	2027년 정부안액(B)	증감 (B-A)
합 계	100,000	100,000	-
한국은행 예치	100,000	100,000	-

○ 한국은행예치 **(2026년) 100,000백만원 → (2027년) 100,000백만원**

- (산정) 한국은행 국고잔액 평균금액 수준 반영

4) 사업효과

(4-1) 최근 5년(2023년~2027년)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해당없음

(4-2) 성과지표 이외의 최근 4년(2023년~2026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해당없음

(4-3) 향후(2027년 이후) 기대효과: 고용보험기금사업의 적정한 수행 및 여유자금의 효율적 운용 도모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회계연도 말일 한국은행 시재 파악 → 지출 자금으로 사용하거나 통화 및 비통화 금융기관에 예치 → 이후 한국은행 국고계좌에 입금되거나 시재로 미파악된 부분이 국고 잔액으로 남음

8) 최근 3년간(2024년~2026년)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해당없음

4. 최근 4년간(2023년~2026년) 결산내역

1) 결산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연도	당초 계획액	수정 계획액 (A)	전년도 이월액	기금변경 증감액 등	계획 현액	집행액 (B)	집행률 (B/Ax100)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3년	100,000	100,000	-	-	100,000	77,583	77.6	-	-
2024년	100,000	100,000	-	-	100,000	133,271	133.3	-	-
2025년	100,000	100,000	-	-	100,000	148,846	148.8	-	-
2026년	100,000	100,000	-	-	100,000	-	-	해당없음	해당없음

2) 연도별 결산 주요사항 : 해당없음

5. 기타 추가자료: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48) 비통화금융기관예치(9710-972)

1. 사업 총괄 정보

1) 사업 기본 정보

(1-1) 일반 정보

소관	실·국	과·팀	기금	계정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자산운용팀	고용보험기금	-

(1-2) 코드·명칭 정보

구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080	08D	9700	9710	972
명칭	사회복지	고용	여유자금운용	여유자금운용	비통화금융기관예치

2)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N	Y	N	N	N	N

3)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Y	N	N	N	N	-	-

4) 기능별(내역사업별)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내역사업명	소관	사업시행주체
비통화금융기관예치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자산운용팀	고용노동부

2. 지출계획 총괄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사업명	2025년 결산액	2026년 당초계획액 (A)	2026년 수정계획액	2027년 요구액	2027년 정부안액 (B)	증감액 (B-A)	증감률 (B-A) /A×100
비통화금융기관예치	2,623,958	6,893,689	6,873,628	8,355,701	8,355,701	1,462,012	21.2

1)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계획액 (수정)	2025년 계획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계획액 (수정)	2026년 계획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6,242,829	6,242,829	2,623,958	-	-	6,873,628	6,873,628	2,872,886	8,355,701
・비통화금융기관예치	6,242,829	6,242,829	2,623,958	-	-	6,873,628	6,873,628	2,872,886	8,355,701

2) 비목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계획액 (수정)	2025년 계획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계획액 (수정)	2026년 계획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6,242,829	6,242,829	2,623,958	-	-	6,873,628	6,873,628	2,872,886	8,355,701
・비통화금융기관예치 (470-03)	6,242,829	6,242,829	2,623,958	-	-	6,873,628	6,873,628	2,872,886	8,355,701

3. 사업 설명

1) 사업목적·내용

(1) 비통화금융기관예치

사업목적・내용	여유자금(기금 적립금)을 비통화금융기관(은행을 제외한 금융기관)에 수익증권(채권형, 주식형, 단기자금 등)으로 예치하여 기금 조성에 기여하고, 기금의 지출 수요에 대비

2) 사업개요

(2-1)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사업근거	○ 고용보험법 제78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고용노동부장관은 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고용보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기금은 보험료와 이 법에 따른 징수금·적립금·기금운용 수익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조성한다. ○ 고용보험법 제79조(기금의 관리·운용) ③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운용한다. 1. 금융기관에의 예탁 2. 재정자금에의 예탁 3.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에서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 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4. 보험사업의 수행 또는 기금 증식을 위한 부동산의 취득 및 처분 5.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 증식 방법
추진경위	○ 최초 사업시작년도: '95. 7. 고용보험기금의 설치 ○ 추진배경: 대량 실업의 발생이나 그 밖의 고용상태 불안에 대비한 준비금으로 당해 연도 지출소요를 초과하는 여유자금을 적립하고 있으며, 동 여유자금을 비통화금융기관(은행을 제외한 금융기관)에 일정비율 예치하여 기금운영의 안정성과 수익성, 유동성 확보

(2-2) 사업규모

○ 사업기간 : '95. 7.~계속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계획액 기준, 기금운용계획변경 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사업비	3,890,223	4,358,772	8,284,165	6,893,689	8,355,701

(2-3)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직접관리(고용노동부)

○ 사업 수혜자 : 고용보험기금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3) 기능별(내역사업별) 산출 내역

(3-1) 내역사업별 세부 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계획액(수정)(A)	2027년 정부안액(B)	증감 (B-A)
합 계	6,873,628	8,355,701	1,482,073
비통화금융기관예치	6,873,628	8,355,701	1,482,073

○ **비통화금융기관예치 (2026년) 6,873,628 → (2027년) 8,355,701백만원, +21.2%**

- (설명) '27년도 여유자금 운용 금액(당해년도 여유자금 회수액 및 수지차를 합한 금액) 8,355,701백만원을 비통화금융기관에 전부 예탁

4) 사업효과

(4-1) 최근 5년(2023년~2027년)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해당없음

(4-2) 성과지표 이외의 최근 4년(2023년~2026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해당없음

(4-3) 향후(2027년 이후) 기대효과:

○ 기금운용의 안정성과 수익성, 유동성을 확보하여 기금 조성에 기여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분기별 자산운용계획에 따른 자산군별 투자 비중내에서 채권형·주식형 등의 수익증권 운용

8) 최근 3년간(2024년~2026년)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8-1) 정부 사업평가: 해당없음

(8-2) 국회 지적사항: 해당없음

(8-3) 감사원, 총리실, 기타(언론, 시민단체 등) 결과: 해당없음

4. 최근 4년간(2023년~2026년) 결산내역

1) 결산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연도	당초 계획액	수정 계획액 (A)	전년도 이월액	기금변경 증감액 등	계획 현액	집행액 (B)	집행률 (B/Ax100)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3년	4,489,110	3,890,223	-	△598,887	3,890,223	3,776,650	97.1	-	-
2024년	5,743,688	4,358,772	-	△1,384,916	4,358,772	3,125,785	71.7	-	-
2025년	8,284,165	6,242,829	-	△1,318,385	6,242,829	2,623,958	42.0	-	-
2026년	6,893,689	6,873,628	-	△20,061	6,873,628	2,872,886	41.8	해당없음	해당없음

2) 연도별 결산 주요사항: 해당없음

5. 기타 추가자료: 해당사항 없음

Ⅱ.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사 업 명
(1) 산재보험급여(4051-350)

1. 사업 총괄 정보

1) 사업 기본 정보

(1-1) 일반 정보

소관	실·국	과·팀	기금	계정
고용노동부	산업안전 보건정책관	산재보상정책과	산업재해보상 보험및예방기금	-

(1-2) 코드·명칭 정보

구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080	08E	4000	4051	350
명칭	사회복지	노동	산재보험	산재보험급여	산재보험급여

2)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N	Y	N	N	N	N

3)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Y	N	N	N	N	-	-

4) 기능별(내역사업별)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내역사업명	소관	사업시행주체
산재보험급여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근로복지공단

2. 지출계획 총괄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사업명	2025년 결산액	2026년 당초계획액 (A)	2026년 수정계획액	2027년 요구액	2027년 정부안액 (B)	증감액 (B-A)	증감률 (B-A) /A×100
산재보험급여	8,004,324	8,146,300	8,805,877	8,853,700	8,624,637	478,337	5.9

1)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계획액 (수정)	2025년 계획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계획액 (수정)	2026년 계획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8,004,326	8,004,326	8,004,324	-	2	8,146,300	8,146,300	5,145,990	8,624,637
·산재보험급여	8,004,326	8,004,326	8,004,324	-	2	8,146,300	8,146,300	5,145,990	8,624,637

2) 비목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계획액 (수정)	2025년 계획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계획액 (수정)	2026년 계획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8,004,326	8,004,326	8,004,324	-	2	8,146,300	8,146,300	5,145,990	8,624,637
·보험금(320-04)	8,004,326	8,004,326	8,004,324	-	2	8,146,300	8,146,300	5,145,990	8,624,637

3. 사업 설명

1) 사업목적·내용

(1-1) 산재보험급여

사업목적	- 업무상 재해를 당한 노동자 및 그 유족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를 신속·공정하게 지급하여 산재노동자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 도모 - 산재 장해급여자의 직업훈련 및 직장복귀지원을 통해 사회복귀 촉진
사업내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91조의20에 따른 산재보험급여 지급

2) 사업개요

(2-1)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사업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①보험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종류는 제1호의 요양급여, 제4호의 간병급여, 제7호의 장례비, 제8호의 직업재활급여, 제91조의3에 따른 진폐보상연금 및 제91조의4에 따른 진폐유족연금으로 하고, 제91조의12에 따른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보험급여의 종류는 제1호의 요양급여, 제3호의 장해급여, 제4호의 간병급여, 제7호의 장례비, 제8호의 직업재활급여로 한다. 1. 요양급여 2. 휴업급여 3. 장해급여 4. 간병급여 5. 유족급여 6. 상병보상연금 7. 장례비 8. 직업재활급여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 '64년 ○ 추진배경 · '64년 산재노동자 및 그 유족의 보호를 위하여 산재보험제도 도입 · '05.10월부터 보상업무를 현장서비스 중심으로 혁신, 산재보험 급여지급 적정성 확보와 요양관리 합리화, 재활서비스 강화 · '06.12.13 노사정합의를 통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체계 전면 개정 시행('08.7.1) · 진폐보상체계의 연금 단일방식으로 전환 등 진폐제도 개선 시행('10.11.21)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조항이 평등권(통근버스 등이 제공되는 대규모 사업장과 영세사업장 노동자간, 출퇴근재해를 인정하는 공무원과 일반노동자간)에 위반된다는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되어, 통상의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에 포함('18.1.1.)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전속성 기준 폐지(시행일자 '23.7.1., 이중입직자는 공포일자 '22.6.10.부터 시행)

(2-2) 사업규모

○ 사업기간 : 1964년 ~ 계속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

(단위: 백만원)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사업비	7,792,317	7,876,091	8,004,326	8,146,300	8,624,637

(2-3)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위탁)

○ 사업 수혜자 : 산업보험법 적용 사업장의 업무상 재해를 당한 노동자 및 그 유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3) 기능별(내역사업별) 산출 내역

(3-1) 내역사업별 세부 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계획액(수정)(A)	2027년 정부안액(B)	증감 (B-A)
합 계	8,146,300	8,624,637	478,337
산재보험급여	8,146,300	8,624,637	478,337

○ 산재보험급여 **(2026년) 8,146,300백만원 → (2027년) 8,624,637백만원, +5.9%**

- **(설명)** 산재보험 수급자수 증가 및 선보장 제도 도입 등에 따른 추가 소요를 반영하여 '26년 예산 대비 478,337백만원(5.9%) 증액
- **(산출)**
  - (계속소요) '26년 보험급여별 수급자수 및 1인당 지급액('25년 결산 반영 추계)에 최근 2개년('23~'25년)간 평균증감률 적용하여 8,913,554백만원 산출
  - (특이소요) 제도개선 및 법개정을 통한 347,752백만원 감액, 산재보험 선보장 제도 추진 등에 따른 추가소요 58,835백만원 합산

4) 사업효과

(4-1) 최근 5년(2023년~2027년)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 **성과지표:** 산재보험 신속성(%)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목표	69.49	86.19	<변경>	<삭제>	<삭제>
실적	70.38	90.18	-	해당없음	해당없음
달성도	101.3	104.6	-	해당없음	해당없음

- **측정산식 :** (산재신청서 법정기한 내 처리건수의 합 /산재신청서 처리건수의 합) × 100
- **측정방법 및 목표치 설정근거 :** '25년 지표 변경
- **자료수집방법/출처 :** 근로복지공단 전산자료

○ **성과지표:** 산재보험 신속성(건)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목표	<신규>	<신규>	154,485	160,372	164,418
실적	<신규>	153,085	158,556	해당없음	해당없음
달성도	-	-	102.6%	해당없음	해당없음

- **측정산식 :** 당해연도 산재신청서 처리건 중 6개월 이내 처리건수의 합
  * 당해연도 1.1.~ 12.31.까지 처리된 산재신청서 중 6개월(접수일 ~ 처리일) 이내처리건수의 합(건)으로 함

- **측정방법 및 목표치 설정근거 :** 최근 3개년 처리건 중 6개월 이내 처리건의 평균건수에서 4.5% 증가를 목표 설정
  * '26년 산출된 값(가정)을 적용하여 '27년 목표치 설정('26년 실적 반영 시 '27년 목표치 변경 가능)

- **자료수집방법/출처 :** 근로복지공단 전산자료

(4-2) 성과지표 이외의 최근 4년(2023년~2026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해당없음

(4-3) 향후(2027년 이후)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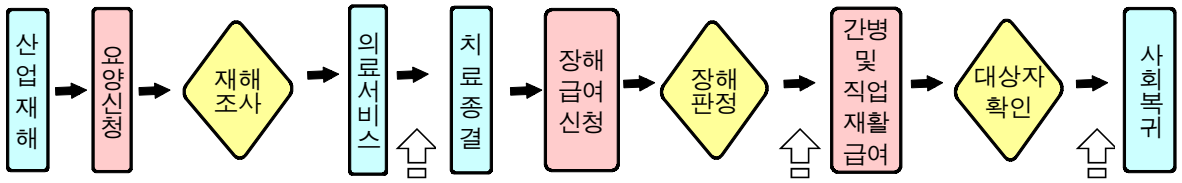
○ 산업현장에서 업무상 재해를 당한 산재노동자 및 그 유족에게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를 신속·공정하게 지급하여 생활안정 도모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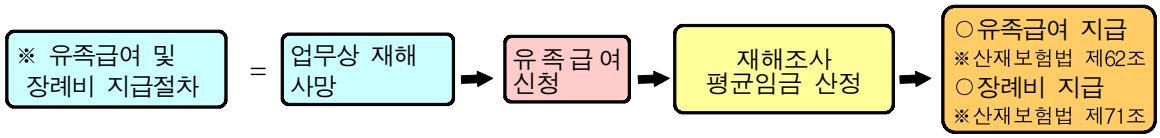
- 산업재해 → 요양신청 → 재해조사 → 의료서비스 →요양급여,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지급 → 치료종결 → 장해급여신청 → 장해판정 → 장해급여 지급 → 간병 및 직업재활급여 → 대상자확인 → 간병급여, 직업재활급여 지급→ 사회복귀
- 유족급여 및 장례비: 업무상재해사망 → 유족급여 신청 → 재해조사 평균임금 산정 → 유족급여지급, 장례비 지급



○ 요양급여지급(현물급여) ※산재보험법 제40조
○ 휴업급여지급(요양기간) ※산재보험법 제52조
○ 상병보상연금지급(중증자) ※산재보험법 제66조

○ 장해급여지급 (연금, 일시금) ※산재보험법 제57조

○ 간병급여(상시,수시) ※산재보험법 제61조
○ 직업재활급여 (직업훈련,직장복귀) ※산재보험법 제72조



8) 최근 3년간(2024년~2026년)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8-1) 정부 사업평가

구분	연도	주요내용
재정사업 자율평가	2024년	○ 의견 - 산재근로자에 대한 보상 등에 대한 사업목적 명확, 산재보험 신속성 등 성과지표는 '상당정도'로 평가 ○ 결과 - 보통

(8-2) 국회 지적사항

구분	연도	주요내용
회계결산 예결위 지적사항	2024년	○ (지적) 업무상 질병 처리기간 장기화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업무상 질병 관련 공단 패소율 증가에 따른 산재 인정기준의 합리적 개선 방안 모색 필요 ○ (조치) 근골격계 질병 다빈도 32개 직종 특별진찰 생략 및 전담팀 전 지사 확대 운영으로 신속 처리 추진, 규범적 관점 업무관련성 판단 반복 패소건에 대한 상소 제기 기준 마련

(8-3) 감사원, 총리실, 기타(언론, 시민단체 등) 결과: 해당없음

4. 최근 4년간(2023년~2026년) 결산내역

1) 결산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연도	당초 계획액	수정 계획액 (A)	전년도 이월액	기금변경 증감액 등	계획 현액	집행액 (B)	집행률 (B/Ax100)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3년	7,792,317	7,792,317	-	-	7,792,317	7,284,941	93.5	-	507,376
2024년	7,876,091	7,876,091	-	-	7,876,091	7,633,318	96.9	-	242,773
2025년	8,004,326	8,004,326	-	-	8,004,326	8,004,324	100.0	-	2
2026년	8,146,300	8,146,300	-	-	8,146,300	5,145,990	63.2	-	-

2) 연도별 결산 주요사항

연도	유형	금액 (백만원)	사유
2023년	불용	507,376	산재 승인 및 질병 승인건수 증가율 둔화 추세, 평균 진료일수, 입원일수 감소 등에 따른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집행 부진이 전체 집행률에 영향
2024년	불용	242,773	요양종결자 증가, 평균진료일수 감소 등에 따른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집행 부진이 전체 집행률에 영향
2025년	불용	2	직업재활급여 집행 잔액(2백만원)

5. 기타 추가자료: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2) 산재노동자 일터복귀 종합지원(4052-350)

1. 사업 총괄 정보

1) 사업 기본 정보

(1-1) 일반 정보

소관	실·국	과·팀	기금	계정
고용노동부	산업보건 보상정책관	산재보상정책과	산업재해보상 보험및예방기금	-

(1-2) 코드·명칭 정보

구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080	08E	4000	4052	350
명칭	사회복지	노동	산재보험	산재근로자 재활복지	산재노동자 일터복귀종합지원

2)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N	Y	N	N	N	N

3)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N	N	Y	N	N	-	-

4) 기능별(내역사업별)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내역사업명	소관	사업시행주체
산재신청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근로복지공단
요양재활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근로복지공단
직업복귀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근로복지공단
인프라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근로복지공단

2. 지출계획 총괄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사업명	2025년 결산액	2026년 당초계획액 (A)	2026년 수정계획액	2027년 요구액	2027년 정부안액 (B)	증감액 (B-A)	증감률 (B-A) /A×100
산재노동자 일터복귀종합지원	116,466	87,651	87,651	116,902	100,677	13,026	14.9

1)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계획액 (수정)	2025년 계획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계획액 (수정)	2026년 계획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116,466	116,466	116,458	-	8	87,651	87,651	63,026	100,677
·산재신청	-	-	-	-	-	-	-	-	3,900
·요양재활	104,323	104,323	104,322	-	1	74,710	74,710	55,473	79,060
·직업복귀	1,783	1,783	1,783	-	-	2,288	2,288	1,673	7,664
·인프라	9,810	9,810	9,810	-	-	10,103	10,103	5,558	10,053
·직업복귀통합지원시스템	550	550	543	-	7	550	550	322	-

2) 비목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계획액 (수정)	2025년 계획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계획액 (수정)	2026년 계획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116,466	116,466	116,458	-	8	87,651	87,651	63,026	100,677
·사업출연금(350-02)	116,466	116,466	116,458	-	8	87,651	87,651	63,026	100,677

3. 사업 설명

1) 사업목적·내용

(1-1) 산재신청

사업목적	산재신청-요양재활-직업복귀까지 산재노동자의 사회복귀를 종합 지원하는 빈틈없는 노동자 보호체계 구축
사업내용	업무상 질병 신청·입증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노동자 무료 법률 서비스 지원

(1-2) 요양재활

사업목적	산재신청-요양재활-직업복귀까지 산재노동자의 사회복귀를 종합 지원하는 빈틈없는 노동자 보호체계 구축
사업내용	산재로 인한 정서불안, 자존감 상실 등 심리·신체능력 회복 지원 및 산재노동자 고용안정성 강화

(1-3) 직업복귀

사업목적	산재신청-요양재활-직업복귀까지 산재노동자의 사회복귀를 종합 지원하는 빈틈없는 노동자 보호체계 구축
사업내용	산재보험 정보 제공, 전문 재활 및 심리 지원 연계, 원직복귀 및 재취업까지 패키지 지원을 위한 직업복귀 토탈케어 운영, 산재장해인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인센티브 제공

(1-4) 인프라

사업목적	산재신청-요양재활-직업복귀까지 산재노동자의 사회복귀를 종합 지원하는 빈틈없는 노동자 보호체계 구축
사업내용	산재노동자 및 유가족 실태조사, 직업복귀 통계조사 등 산재보험 정책지원을 위한 연구, 산재인식개선을 위한 산재근로자의 날 행사

2) 사업개요

(2-1)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사업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1조(공단의 사업)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5의2.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 등의 요양 및 재활 제75조의2(직장복귀 지원) ① 공단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장기간 요양이 필요하거나 요양 종결 후 장해가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여 그 근로자의 직장복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당시의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직장복귀에 관한 계획서(이하 이 조에서 “직장복귀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직장복귀계획서의 내용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사업주에게 이를 변경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직장복귀계획서를 작성하거나 그 내용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직장복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요양기간 중에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의뢰하여 해당 근로자의 직업능력 평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공단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직장복귀 지원을 위하여 산재보험 의료기관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의료기관을 직장복귀지원 의료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직장복귀지원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제40조제5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산정 기준 및 제50조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평가 등에서 우대할 수 있다. ⑥ 제4항에 따른 직장복귀지원 의료기관의 지정 절차,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77조(합병증 등 예방관리) ① 공단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된 자 중에서 합병증 등 재요양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자에게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그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받도록 할 수 있다. 제92조(근로복지사업)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목의 보험시설의 설치·운영 가. 요양이나 외과 후 처치에 관한 시설 나. 의료재활이나 직업재활에 관한 시설 2. 장학사업 등 재해근로자와 그 유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3.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사업 제94조(장해급여자의 고용촉진) 고용노동부장관은 보험가입자에 대하여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받은 자를 그 적성에 맞는 업무에 고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7조(직업재활 지원) ① 공단은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사람의 직업재활을 위하여 그 근로자가 요

	양을 받는 기간이나 요양종결 후에 심리상담, 직업재활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그 근로자의 직업욕구나 직업능력 등을 고려한 직업평가, 직업복귀계획 수립의 지원이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1조의2(직장복귀 지원) ① 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공단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당시의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직장복귀에 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업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2. 업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요양 종결 후 별표 6에 따른 제1급부터 제14급까지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3. 그 밖에 근로자의 원활한 직장복귀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경우로서 공단이 정하는 경우 ② 법 제75조의2제3항에서 “직업능력 평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직업능력 평가에 대한 진단 및 직업능력 평가의 실시 2. 작업능력 회복·강화를 위한 지원 3. 재활치료에 대한 진단 및 신체기능 회복·강화를 위한 지원 4. 의지(義肢) 또는 보조기의 처방, 제작·유지·보수를 위한 지원과 그 사용에 따른 적응력 향상 훈련 지원 5. 장해 상태를 고려한 작업환경 개선 및 근로자의 직무 전환을 위한 지원 6. 근로자의 심리적 안정 및 정신기능 회복과 가족, 직장동료와의 관계 회복 지원 7. 그 밖에 근로자의 직장복귀를 위해 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추진경위	- ’00. 7. 1. 후유증상진료지원제도 도입 - ’01. 1.11. 산재근로자 재활사업 5개년 계획 수립 - ’01. 3. 1. 재활스포츠지원사업 도입 - ’02. 1. 1. 산재근로자 사회적응위탁프로그램 운영 개시 - ’06. 3.24. 재활사업 제1차 중기 발전계획(’06-’08) 수립 - ’08. 7. 1. 직업재활급여(직장복귀지원금, 재활운동비, 직장적응훈련비, 직업훈련) 도입 - ’09. 4. 6. 제2차 재활사업 중기 발전계획 수립 - ’10. 4.28. 직업재활급여 및 직업훈련 지원대상 확대 - ’12. 5.31. 제3차 재활사업 중기 발전계획 수립

	- '15. 3.31. 제4차 재활사업 중기 발전계획 수립 - '16. 1. 1.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사업 도입 - '17. 7. 1. 직업훈련기관 인증제와 NCS 성과 평가체계 도입 - '17.12.13. 제5차 산재보험 재활중기계획('18.~'22.) 수립 - '18.12.21. 산재관리의사 제도 시범운영 - '19. 3. 1. 사업주 원직장복귀계획서 제출 제도 시범운영 - '20. 2. 1. 지능형 재활추천시스템 운영 개시 - '21. 4.29. 사업주 직장복귀계획서 제도 산재보험법 개정 국회 의결 (제도 시행: '22.1.1.) - '22. 2.23. 제6차('23.~27.) 재활사업 중기 발전계획 수립 - '23. 3.20. 산재근로자 직업복귀 통합지원시스템 운영 개시

(2-2) 사업규모

○ 사업기간 : 2000~계속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계획액 기준, 기금운용계획변경 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사업비	76,654	78,384	77,937	87,651	100,677

(2-3)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 사업 수혜자 : 산재노동자 및 (유)가족, 사업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기관명	2027년 지원금액 (백만원)	지원 비율(%)	법적근거
산재신청	출연	근로복지공단	3,900	100.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6조1항
요양재활	출연	근로복지공단	79,060	100.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6조1항
직업복귀	출연	근로복지공단	7,664	100.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6조1항
인프라	출연	근로복지공단	10,053	100.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6조1항

3) 기능별(내역사업별) 산출 내역

(3-1) 내역사업별 세부 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계획액(수정)(A)	2027년 정부안액(B)	증감 (B-A)
합 계	87,651	100,677	13,026
산재신청	-	3,900	3,900
요양재활	74,710	79,060	4,350
직업복귀	2,288	7,664	5,376
인프라	10,103	10,053	△50
직업복귀통합지원시스템	550	-	△550

○ **산재신청 (2026년) 0백만원 → (2027년) 3,900백만원, 순증**

- (설명) 2026년도 '산재근로자 요양관리'에서 이관
- (산출) 산재보상대리인 수당 : 대리인 수당 3,900백만원(5,500건×0.7백만원)

○ **요양재활 (2026년) 74,710백만원 → (2027년) 79,060백만원, +5.8%**

- (설명) 산재노동자 대체인력지원금 확대, 합병증 등 예방관리 수급자수, 평균진료단가 현실화 요구
- (산출)
  · 심리신체능력 회복 지원 : 2,472백만원 (심리치유프로그램 1,287백만원, 일상회복프로그램 1,185백만원)
  · 산재노동자 대체인력지원 : 1,427명 × 80만원 × 3.7월 = 4,224백만원
  · 합병증 등 예방관리 : (48,065명 × 1.25백만원) - 제도개선 1,865백만원 = 58,216백만원
  · 요양종결 후 건강보험 지원 : 74,089명 × 0.19백만원 = 14,148백만원

○ **직업복귀 (2026년) 2,288백만원 → (2027년) 7,664백만원, +234.8%**

- (설명) 요양 초기부터 산재노동자 특성에 맞는 사회복귀 서비스 지원 확대, 산재장해인 재취업 활성화를 위한 타직장복귀지원금 신설 등
- (산출)
  · 직업복귀 토탈케어 : 2,288백만원
  직업복귀가이드 : 노동자 상담 855백만원 + 사업주컨설팅 900백만원 = 1,755백만원
  사업주 원직장복귀계획 이행지원 : 제도안내 및 소속기관연계 100만원 + DM발송 등 70백만원 = 170백만원
  재취업지원 : 취업지원 150백만원 + 취업설명회 33백만원 = 183백만원
  직업복귀 및 사후관리 통계조사 : 경제활동 실태조사 3,300명 × 54,550원 × 1회 = 180백만원
  · 타직장복귀지원금 : 0.5억원(장해1~3급 5명 × 80만원 × 12월) + 8.4억원(장해4~9급 116명 × 60만원 × 12월) + 44.9억원(장해10~12급 832명 × 45만원 × 12월) = 5,376백만원

○ 인프라 **(2026년) 10,103백만원 → (2027년) 10,053백만원, 감 50백만원**

- (설명) 의학자문 지원, 전문상담 인력 양성 등 인프라 구축, 산재 신청건수 증가와 의학자문 소요증가분 등 반영

- (산출)
  · 근로복지연구 : 패널조사 490백만원
  · 산재근로자의 날 행사 : 200백만원
  · 인프라 구축지원 : 자문의수당 5,286백만원 + 산재의료전문위원 2,834백만원 + 상담역량 강화 등 1,143백만원
  · 산재희생자 추모장묘공원 연구용역 : 100백만원

○ 직업복귀통합지원시스템 운영 **(2026년) 550백만원 → (2027년) 550백만원, 사업이관**

- (설명) 산재보험정보시스템구축(정보화) 사업으로 이관

4) 사업효과

(4-1) 최근 5년(2023년~2027년)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 **성과지표:** 산재보험 신속성(%)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목표	69.49	86.19	<변경>	<삭제>	<삭제>
실적	70.38	90.18	-	해당없음	해당없음
달성도	101.3	104.6	-	해당없음	해당없음

- **측정산식 :** (산재신청서 법정기한 내 처리건수의 합 /산재신청서 처리건수의 합) × 100

- **측정방법 및 목표치 설정근거 :** '25년 지표 변경

- **자료수집방법/출처 :** 근로복지공단 전산자료

○ **성과지표:** 산재보험 신속성(건)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목표	<신규>	<신규>	154,485	160,372	164,418
실적	<신규>	153,085	158,556	해당없음	해당없음
달성도	-	-	102.6%	해당없음	해당없음

- **측정산식 :** 당해연도 산재신청서 처리건 중 6개월 이내 처리건수의 합
  * 당해연도 1.1.~ 12.31.까지 처리된 산재신청서 중 6개월(접수일 ~ 처리일) 이내처리건수의 합(건)으로 함

- **측정방법 및 목표치 설정근거 :** 최근 3개년 처리건 중 6개월 이내 처리건의 평균 건수에서 4.5% 증가를 목표 설정
  * '26년 산출된 값(가정)을 적용하여 '27년 목표치 설정('26년 실적 반영 시 '27년 목표치 변경 가능)

- **자료수집방법/출처 :** 근로복지공단 전산자료

(4-2) 성과지표 이외의 최근 4년(2023년~2026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합병증 등 예방관리

연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3년	- 합병증 수혜인원은 44,074명, 53,277백만원 집행 * 신규 이용자는 18,891명 - 요양종결 후 건강보험지원은 34,416명, 6,762백만원 집행
2024년	- 합병증 수혜인원은 43,962명, 53,276백만원 집행 * 신규 이용자는 20,777명 - 요양종결 후 건강보험지원은 36,473명, 6,875백만원 집행
2025년	- 합병증 수혜인원은 49,107명, 84,349백만원 집행 * 신규 이용자는 21,630명 - 요양종결 후 건강보험지원은 77,633명, 14,334백만원 집행
2026.7월	- 합병증 수혜인원은 41,585명, 41,371백만원 집행 * 신규 이용자는 13,319명 - 요양종결 후 건강보험지원은 41,101명, 7,777백만원 집행

□ 산재근로자 직장복귀지원

연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3년	- 직장복귀계획서 제출건수 6,505건 - 재활상담 및 서비스 수혜인원 81,334명 - 작업능력평가·강화프로그램 7,293명
2024년	- 직장복귀계획서 제출건수 9,476건 - 재활상담 및 서비스 수혜인원 43,193명 - 작업능력평가·강화프로그램 7,872명
2025년	- 직장복귀계획서 제출건수 12,150건 - 재활상담 및 서비스 수혜인원 61,596명 - 작업능력평가·강화프로그램 7,944명
2026.7월	- 직장복귀계획서 제출건수 8,926건 - 재활상담 및 서비스 수혜인원 33,297명 - 작업능력평가·강화프로그램 4,428명

□ 사회심리재활지원

연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3년	- 사회심리재활프로그램 제공(희망찾기, 사회적응) 2,301명 - 재활스포츠 지원 1,978명, 취미활동반 지원 496명 - 멘토링프로그램 2,304명
2024년	- 사회심리재활프로그램 제공(희망찾기, 사회적응) 2,602명 - 재활스포츠 지원 1,948명, 취미활동반 지원 432명 - 멘토링프로그램 1,576명
2025년	- 사회심리재활프로그램 제공(희망찾기, 사회적응) 2,485명 - 재활스포츠 지원 2,514명, 취미활동반 지원 395명 - 멘토링프로그램 2,079명
2026.7월	- 사회심리재활프로그램 제공(희망찾기, 사회적응) 1,126명 - 재활스포츠 지원 978명, 취미활동반 지원 290명 - 멘토링프로그램 1,373명

□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

연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3년	- 대체인력지원 1,478명, 대체근로자 신규 고용 1,695명
2024년	- 대체인력지원 1,453명, 대체근로자 신규 고용 1,633명
2025년	- 대체인력지원 1,485명, 대체근로자 신규 고용 1,541명
2026.7월	- 대체인력지원 821명, 대체근로자 신규 고용 922명

□ 직업복귀통합지원시스템 운영

연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3	- 일자리 및 직업훈련정보 추천제공 57,917건
2024	- 일자리 및 직업훈련정보 추천제공 48,267건
2025	- 일자리 및 직업훈련정보 추천제공 65,967건
2026.7월	- 일자리 및 직업훈련정보 추천제공 31,063건

(4-3) 향후(2027년 이후) 기대효과

○ 제6차 산재보험 재활사업 중기발전계획('23~'27년)에 따른 산재노동자 직업복귀 촉진으로 경제활동복귀율을 '27년 77.256% 수준으로 향상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산재신청

- 산재보상대리인제도: 신청접수 및 처리 → 대리인선임 → 권리구제 → 민원처리 및 보수지급

□ 요양재활

- 심리·신체능력 회복 지원: 수탁기관 선정 → 대상자모집 → 프로그램 제공 → 평가 및 비용 지급
- 산재노동자 대체인력지원: (공단) 대상 발굴 및 홍보 → (사업주) 대체인력사용 → (사업주) 산재노동자 원직장 복귀 → (사업주) 지원금 신청 → (공단) 심사 및 지급 → (공단) 사후관리
- 합병증 등 예방관리: 장해등급 판정시 대상여부 판단 → 예방관리 승인 및 전산 등록 → 의료기관(또는 약국)에서 예방관리 서비스 수혜/ 의료기관(또는 약국)의 자격 여부 확인 → 공단에서 진료비 및 약제비 지급 → 사후관리(이용실태 분석, 효과 평가)

□ 직업복귀

- 직업복귀 토탈케어
  (요양초기) 보험급여 안내, 심리안정 지원, 직업복귀경로 파악
→ (요양중) 신청서 작성지원, 사업부지원제도 안내 등 원직 사업주 컨설팅
→ (종결시점) 재취업대상자 발굴, 재취업희망자, 원직불가자 재취업안내 및 소속기관 연계
→ (재취업지원) 희망직종 파악 및 취업알선, 면접동행 및 취업교육
→ (사후관리) 고용유지여부 확인 등
- 타직장복귀지원금
  (산재노동자 상담) 대상자 홍보 및 발굴
→ (직업복귀) 재취업 성공
→ (종결시점) 고용유지 기간 및 지원금 등
→ (재취업지원) 지원금 신청, 자격심사, 지원금 지급
→ (사후관리) 고용유지여부 확인 등

8) 최근 3년간(2024년~2026년)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8-1) 정부 사업평가

구분	연도	주요내용
재정사업 자율평가	2024년	○ 의견 : 사업계획의 적성성, 집행의 효율성, 성과 달성도, 성과 우수성, 환류 및 개선노력 인정 ○ 결과 : 우수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2025년	○ 의견 : 정책성 필요성은 인정되나 사업개선이 필요함 ○ 결과 : 사업개선

(8-2) 국회 지적사항: 해당없음

(8-3) 감사원, 총리실, 기타(언론, 시민단체 등) 결과: 해당없음

4. 최근 4년간(2023년~2026년) 결산내역

1) 결산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연도	당초 계획액	수정 계획액 (A)	전년도 이월액	기금변경 증감액 등	계획 현액	집행액 (B)	집행률 (B/Ax100)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3년	76,654	76,654	-	-	76,654	76,537	99.8	-	117
2024년	78,384	78,384	-	-	78,384	78,372	100.0	-	12
2025년	77,937	116,466	-	38,529	116,466	116,458	100.0	-	8
2026년	87,651	87,651	-	-	87,651	63,026	71.9	해당없음	해당없음

2) 연도별 결산 주요사항

연도	유형	금액 (백만원)	사유
2023년	불용	117	직업훈련 급여사업 확대, 고교무상교육
2024년	불용	12	낙찰차액
2025년	불용	8	소액 집행잔액, 낙찰차액

5. 기타 추가자료: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3) 연구기관 및 케어센터 지원(4052-356)

1. 사업 총괄 정보

1) 사업 기본 정보

(1-1) 일반 정보

소관	실·국	과·팀	기금	계정
고용노동부	산업보건 보상정책관	산재보상정책과	산업재해보상 보험및예방기금	-

(1-2) 코드·명칭 정보

구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080	08E	4000	4052	356
명칭	사회복지	노동	산재보험	산재근로자 재활복지	연구기관 및 케어센터 지원

2)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N	Y	N	N	N	N

3)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N	N	Y	N	N	-	-

4) 기능별(내역사업별)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내역사업명	소관	사업시행주체
재활공학연구소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근로복지공단
직업환경연구원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근로복지공단
케어센터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근로복지공단

2. 지출계획 총괄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사업명	2025년 결산액	2026년 당초계획액 (A)	2026년 수정계획액	2027년 요구액	2027년 정부안액 (B)	증감액 (B-A)	증감률 (B-A) /A×100
연구기관 및 케어센터 지원	12,665	14,104	14,104	16,442	14,872	768	5.4

1)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계획액 (수정)	2025년 계획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계획액 (수정)	2026년 계획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12,665	12,665	12,665	-	-	14,104	14,104	8,493	14,872
·재활공학연구소	4,756	4,756	4,756	-	-	4,948	4,948	2,888	6,024
-직업환경연구원	4,580	4,580	4,580	-	-	5,677	5,677	3,571	4,160
·케어센터	3,329	3,329	3,329	-	-	3,479	3,479	2,034	4,688

2) 비목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계획액 (수정)	2025년 계획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계획액 (수정)	2026년 계획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12,665	12,665	12,665	-	-	14,104	14,104	8,493	14,872
-사업출연금(350-02)	12,665	12,665	12,665	-	-	14,104	14,104	8,493	14,872

3. 사업 설명

1) 사업목적·내용

(1-1) 재활공학연구소

사업목적	- 첨단 재활보조기구의 개발·보급을 통해 산재장해인의 직업 및 사회복귀 촉진
사업내용	- 재활보조기구 개발 및 보급, 선진 과학적 재활치료/훈련 기술 연구 및 제공, 외부 위탁연구용역 수행

(1-2) 직업환경연구원

사업목적	- 업무상 질병 판정관련 역학조사와 직업병 연구
사업내용	- 연구과제 수행, 업무관련성 역학조사, 진폐에 따른 사망여부 자문

(1-3) 케어센터

사업목적	- 중증·고령·무의탁 산재 장해인에게 전문 간병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 및 간병부담 완화
사업내용	- 중증·고령·무의탁 산재 장해인에게 전문 간병서비스를 제공

2) 사업개요

(2-1)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사업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공단의 사업)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보험가입자와 수급권자에 관한 기록의 관리·유지 2. 보험료징수법에 따른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의 징수 3. 보험급여의 결정과 지급 4. 보험급여 결정 등에 관한 심사 청구의 심리·결정 5. 산업재해보상보험 시설의 설치·운영 5의2.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 등의 요양 및 재활 5의3. 재활보조기구의 연구개발·검정 및 보급 5의4. 보험급여 결정 및 지급을 위한 업무상 질병 관련 업무 5의5. 근로자 등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건강진단 등 예방사업 6.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7. 그 밖에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제92조(근로복지사업)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 가. 요양이나 외과 후 처치에 관한 시설의 원활한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보험시설의 설치운영 나. 의료재활이나 직업재활에 관한 시설 2. 장학사업 등 재해근로자와 그 유족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3. 그 밖의 근로자의 증진을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사업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단 또는 재해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 중 고용노동부 장관의 지정을 받은 법인(이하 “지정법인”이라 한다)에 제1항의 사업을 하게 하거나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보험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지정법인의 지정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 고용노동부 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정법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추진경위	**- (재활공학연구소)** · 산재장해근로자의 재활보조기구 및 재활치료·훈련기법을 연구·개발·보급하여 사회복귀 촉진 목적으로 설립('94.8월) · 고용노동부 「산재근로자 재활사업 5개년 계획('01～'05)」 · 고용노동부『산재환자 요양과 재활치료 활성화를 위한 산재의료관리원 역할강화 방안('06～'10년)』('06.3월) · 고용노동부『산재전문병원 역할강화 세부실행계획』수립('07.10월) · 고용노동부『제5차 산재보험 재활사업 중기발전계획('18～'22)』('17.12월) **- (직업환경연구원)** · 안산산재병원 부설 '직업성폐질환연구소' 개소('06.4월) * 수도권 유일한 진폐전문기관인 여의도 성모병원이 낮은 수익성을 이유로 산재 진폐전문의료기관 반납 · 직업환경연구원 명칭 변경('19.1월) · 백혈병, 피부질환 등 호흡기 외 질환 역학조사 수행('19.5월) **- (케어센터)** ·「산재장해인 케어센터」및「진폐환자보호요양시설」건립 추진('01. 6월, 노동부) · 산재보험 케어센터 건립 타당성 및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한국노동연구원, '01. 12월) · 근로복지공단 「산재장해인 케어센터 건립 기본계획」수립('02. 11월) · '산재보험 케어센터 건립계획' 확정('02. 11월) ·「진폐환자 보호 요양시설」건립 기본계획 수립('04. 2월) · 경기케어센터 개소('07. 7월), 태백케어센터 개소('08. 4월)

(2-2) 사업규모

○ 사업기간 : 계속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계획액 기준, 기금운용계획변경 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사업비	10,275	12,747	12,665	14,104	14,872

(2-3)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위탁)

○ 사업 수혜자 : 사업주 및 근로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기관명	2027년 지원금액 (백만원)	지원 비율(%)	법적근거
재활공학연구소	출연	근로복지공단	6,024	100.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6조 제1항
직업환경연구원	출연	근로복지공단	4,160	100.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6조 제1항
케어센터	출연	근로복지공단	4,688	100.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6조 제1항

3) 기능별(내역사업별) 산출 내역

(3-1) 내역사업별 세부 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계획액(수정)(A)	2027년 정부안액(B)	증감 (B-A)
합 계	14,104	14,872	768
재활공학연구소	4,948	6,024	1,076
직업환경연구원	5,677	4,160	△1,517
케어센터	3,479	4,688	1,209

○ 재활공학연구소 **(2026년) 4,948 → (2027년) 6,024백만원, +21.7%**

- (설명) 재활공학연구소 재활보조기 재료비 원가 상승 반영, 연구장비 교체, 인건비 처우개선율 반영 등 요구
- (산출) 지출 13,105백만원 - 수입 12,950백만원 = 6,024백만원

· 지출 : 인건비 5,872백만원(84명×69.9백만원) + 운영비 3,995백만원 + 외부연구과제 2,610백만원 + 연구장비 473백만원

· 수입 : 외부연구과제 2,610백만원 + 보장구 공급 수입 4,003백만원 + 시험검사 수수료 313백만원

○ 직업환경연구원 **(2026년) 5,677 → (2027년) 4,160백만원, △26.7%**

- (설명) 직업환경연구원 인건비 처우개선율, 운영비 물가상승율 반영 등 요구
- (산출) 인건비 2,978백만원(30명×99.27백만원) + 운영비 712백만원 + 외부위탁 470백만원

○ 케어센터 **(2026년) 3,479 → (2027년) 4,688백만원, +34.8%**

- (설명) 케어센터 법정·필수 안전설비 교체, 인건비 처우개선율 반영 등 예산 요구
- (산출) 경기케어(2,545백만원) + 태백케어(2,143백만원) = 4,688백만원
  · 경기케어: 지출 3,614백만원(인건비 2,437백만원 + 운영비 719백만원+ 안전설비 458)
  - 수입 1,091백만원
  · 태백케어: 지출 2,406만원(인건비 1,380백만원 + 운영비 438백만원+ 안전설비 588)
  - 수입 263백만원

4) 사업효과

(4-1) 최근 5년(2023년~2027년)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 **성과지표:** 산재보험 신속성(%)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목표	69.49	86.19	<변경>	<삭제>	<삭제>
실적	70.38	90.18	-	해당없음	해당없음
달성도	101.3	104.6	-	해당없음	해당없음

- **측정산식 :** (산재신청서 법정기한 내 처리건수의 합 /산재신청서 처리건수의 합) × 100
- **측정방법 및 목표치 설정근거 :** '25년 지표 변경
- **자료수집방법/출처 :** 근로복지공단 전산자료

○ **성과지표:** 산재보험 신속성(건)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목표	<신규>	<신규>	154,485	160,872	164,418
실적	<신규>	153,085	158,556	해당없음	해당없음
달성도	-	-	102.6%	해당없음	해당없음

- **측정산식 :** 당해연도 산재신청서 처리건 중 6개월 이내 처리건수의 합
  * 당해연도 1.1.~ 12.31.까지 처리된 산재신청서 중 6개월(접수일 ~ 처리일) 이내처리건수의 합(건)으로 함
- **측정방법 및 목표치 설정근거 :** 최근 3개년 처리건 중 6개월 이내 처리건의 평균 건수에서 4.5% 증가를 목표 설정
  * '26년 산출된 값(가정)을 적용하여 '27년 목표치 설정('26년 실적 반영 시 '27년 목표치 변경 가능)
- **자료수집방법/출처 :** 근로복지공단 전산자료

(4-2) 성과지표 이외의 최근 4년(2023년~2026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재활공학연구소)

2023	- 보조기 공급건수 : 10,573건, 연구과제 수행실적 : 61건 - 국가공인 품질관리 시험품목 건수 : 190건
2024	- 보조기 공급건수 : 10,622건, 연구과제 수행실적 : 58건 - 국가공인 품질관리 시험품목 건수 : 188건
2025	- 보조기 공급건수 : 10,572건, 연구과제 수행실적 : 53건 - 국가공인 품질관리 시험품목 건수 : 103건
2026. 7월	- 보조기 공급건수 : 5,955건, 연구과제 수행실적 : 44건 - 국가공인 품질관리 시험품목 건수 : 15건

- (직업환경연구원)

2023	- 직업성폐질환 연구 7건, 진폐사망여부자문 97건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450건
2024	- 직업성폐질환 연구 10건, 진폐사망여부자문 94건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277건
2025	- 직업성폐질환 연구 9건, 진폐사망여부자문 67건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175건
2026. 7월	- 직업성폐질환 연구 9건, 진폐사망여부자문 58건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77건

- (케어센터)

2023	- 자립능력 향상프로그램 및 취미교실 30개 운영(경기 13개, 태백 17개)
2024	- 자립능력 향상프로그램 및 취미교실 30개 운영(경기 14개, 태백 16개)
2025	- 자립능력 향상프로그램 및 취미교실 35개 운영(경기 16개, 태백 19개)
2026. 7월	- 자립능력 향상프로그램 및 취미교실 34개 운영(경기 14개, 태백 20개)

(4-3) 향후(2027년 이후) 기대효과:

○ (재활공학연구소) 산재보험시설로서 공공성 및 연구기능 강화를 통하여 첨단 재활보조기기 제작을 위한 기술력 확보

- 원직복귀를 위한 직무지원 재활보조기구 공급을 확대하여 직업복귀율 향상 지원
- 첨단 재활의료장비 연구·개발 및 보급, 재활적응훈련 프로그램 운영

○ (직업환경연구원) 업무상질병인정 기준 개발·보급 등 합리적 산재보험 보상체계 구축
- 호흡기 관련 자문(역학조사) 및 진폐 사망 자문의 전문성 강화
- 기초연구(발병기전연구) 실험 및 임상연구 과제 수행

○ (케어센터) 중증, 고령의 산재장해인의 안정적인 삶 유지를 통한 보험사각지대 해소 및 입소자 가족의 간병문제 해결을 통한 경제활동 참여로 고용창출 효과 기대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재활공학연구소]
○ 재활보조기구 개발 및 보급
· 첨단기술 재활보조기구 연구·개발 ➡ 상용화 ➡ 품질검사/인증 ➡ 급여품목화/보급
○ 선진 과학적 재활치료/훈련 기술 연구 및 제공
· 프로토콜 연구 ➡ 임상적용 연구 ➡ 적응훈련프로그램 적용 ➡ 잔존기능 극대화
○ 외부 위탁연구용역 수행
· 연구과제 선정((자체) 공단주관, (외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 연구수행 공단직원 및 외부연구원 위촉 ➡ 의지보조기 시제품화(공단 자체생산 또는 외부업체 기술이전)

[직업환경연구원]
○ 연구과제 수행
· 연구과제 선정 ➡ 연구수행 ➡ 연구결과 도출 ➡ 임상적용
○ 업무관련성 역학조사
· 진료기록 검토 ➡ 노동자면담 ➡ 의학적 진단 ➡ 사업장 조사 및 측정 ➡ 국내·외 문헌검토 ➡ 보고서 작성 ➡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 심의 ➡ 보고서 회신
○ 진폐에 따른 사망여부 자문
· 진료기록 검토 ➡ 추가자료 요청(유족면담 등) ➡ 의학적 진단 ➡ 진폐자문 보고서 작성 ➡ 업무상질병자문 심사회의 ➡ 보고서 회신

[케어센터]
· 산재요양종결 ➡ 입소대상 심의 ➡ 입소 및 간병서비스 등 제공

8) 최근 3년간(2024년~2026년)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8-1) 정부 사업평가

구분	연도	주요내용
재정사업 자율평가	2024년	○ 의견 : 보통 ○ 결과 : 성과목표의 적정성 상당 정도 평가 및 사회적 가치 구현과의 관련성 인정
재정사업 자율평가	2025년	○ 의견 : 보통 ○ 결과 : 특허, 상용화 등 성과우수성 인정 및 국정감사 지적사항 등 개선 사항 대응 노력 인정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2026년	○ 의견 : 사업개선 ○ 결과 : 재정사업의 정책적 타당성, 재정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나, 성과지표의 설정방식이 실적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도전적인 성과 지표의 재설정이 필요함

(8-2) 국회 지적사항: 해당없음

(8-3) 감사원, 총리실, 기타(언론, 시민단체 등) 결과: 해당없음

4. 최근 4년간(2023년~2026년) 결산내역

1) 결산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연도	당초 계획액	수정 계획액 (A)	전년도 이월액	기금변경 증감액 등	계획 현액	집행액 (B)	집행률 (B/Ax100)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3년	10,446	10,446	-	-	10,446	10,446	100.0	100.0	-
2024년	12,747	12,747	-	-	12,747	12,717	99.7	99.7	30
2025년	12,665	12,665	-	-	12,665	12,665	100.0	100.0	-
2026년	14,104	14,104	-	-	14,104	8,493	60.2	해당없음	해당없음

2) 연도별 결산 주요사항

연도	유형	금액 (백만원)	사유
2023년	-	-	- 특이사항 없음
2024년	불용	30	- 직업환경연구원 역학조사 외부위탁 계약기간 조정으로 인한 자체이월(310백만원) 및 낙찰차액(30백만원) 불용
2025년	-	-	- 특이사항 없음
2026년	-	-	- 특이사항 없음

5. 기타 추가자료: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4) 산재근로자 요양관리(4053-351)

1. 사업 총괄 정보

1) 사업 기본 정보

(1-1) 일반 정보

소관	실·국	과·팀	기금	계정
고용노동부	산업보건 보상정책관	산재보상정책과	산업재해보상 보험및예방기금	-

(1-2) 코드·명칭 정보

구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080	08E	4000	4053	351
명칭	사회복지	노동	산재보험	산재근로자 요양관리	산재근로자 요양관리

2)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N	Y	N	N	N	N

3)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N	N	Y	N	N	-	-

4) 기능별(내역사업별)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내역사업명	소관	사업시행주체
산재보험 부정수급관리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의료기관평가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재해 조사판정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근로복지공단
출퇴근재해 보호지원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근로복지공단

2. 지출계획 총괄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사업명	2025년 결산액	2026년 당초계획액 (A)	2026년 수정계획액	2027년 요구액	2027년 정부안액 (B)	증감액 (B-A)	증감률 (B-A) /A×100
산재근로자 요양관리	11,526	14,146	14,146	16,316	16,143	1,997	14.1

1)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계획액 (수정)	2025년 계획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계획액 (수정)	2026년 계획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11,526	11,526	11,526	-	-	14,146	14,146	7,671	16,143
·산재보험 부정수급관리	1,165	1,165	1,165	-	-	1,165	1,165	679	1,165
·산재보험 의료기관평가	258	258	258	-	-	258	258	152	452
·업무상재해 조사판정	4,709	4,709	4,709	-	-	12,723	12,723	6,840	14,526
·출퇴근재해 보호지원	5,394	5,394	5,394	-	-	※2026회계연도부터 재해조사판정 내역사업으로 통합·이관 편성			

2) 비목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계획액 (수정)	2025년 계획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계획액 (수정)	2026년 계획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11,526	11,526	11,526	-	-	14,146	14,146	7,671	16,143
·산재보험부정수급관리	1,165	1,165	1,165	-	-	1,165	1,165	679	1,165
- 사업출연금(350-02)	1,165	1,165	1,165	-	-	1,165	1,165	679	1,165
·산재보험의료기관평가	258	258	258	-	-	258	258	152	452
- 사업출연금(350-02)	258	258	258	-	-	258	258	152	452
·업무상재해조사판정	4,709	4,709	4,709	-	-	12,723	12,723	6,840	14,526
- 사업출연금(350-02)	4,709	4,709	4,709	-	-	12,723	12,723	6,840	14,526
·출퇴근재해보호지원	5,394	5,394	5,394	-	-	※2026회계연도부터 재해조사판정 내역사업으로 통합·이관 편성			
- 사업출연금(350-02)	5,394	5,394	5,394	-	-				

3. 사업 설명

1) 사업목적·내용

(1-1) 산재보험 부정수급관리

사업목적	산재보험 기금재정 건전화 기여 및 선량한 보험가입자와 수급권자 보호
사업내용	산재보험 부정수급의 예방 및 적발을 통한 보험급여 누수 방지

(1-2) 산재보험 의료기관 평가

사업목적	산재근로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신체기능 회복과 사회복귀 촉진
사업내용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품질 평가

(1-3) 업무상재해 조사판정

사업목적	재해노동자의 입증부담 완화 및 업무상 재해 판정의 공정성 제고
사업내용	재해조사의 전문성 강화, 인프라 확충, 인정기준 개선 및 산재신청 지원

2) 사업개요

(2-1)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사업근거	**ㅇ 산재보험 부정수급 관리** 제84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제1호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이 제90조제2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청구하여 받은 금액은 징수할 금액에서 제외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2. 수급권자 또는 수급권이 있었던 사람이 제1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3. 그 밖에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 ③ 공단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이나 제46조제1항에 따른 약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진료비나 약제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진료비나 약제비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제44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나 약제비를 지급받은 경우 2. 제40조제5항 및 제91조의9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산정 기준 및 제77조제2항에 따른 조치비용 산정 기준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진료비나 약제비를 지급받은 경우 3. 그 밖에 진료비나 약제비를 잘못 지급받은 경우 제119조의2(포상금의 지급) 공단은 제8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보험급여, 진료비 또는 약제비를 부당하게 지급받은 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ㅇ 산재보험 의료기관 평가

	제50조(산재보험 의료기관 평가) ① 공단은 업무상의 재해에 대한 의료의 질 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43조제1항제3호의 산재보험 의료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 대하여 인력·시설·의료서비스나 그 밖에 요양의 질과 관련된 사항을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방법 및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평가한 결과를 고려하여 평가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우대하거나 제43조제3항제3호에 따라 지정취소 또는 진료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업무상재해 조사판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 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근로기준법」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제41조(요양급여의 신청) ① 제40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진폐에 따른 요양급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으려는 사람은 소속 사업장, 재해발생 경위, 그 재해에 대한 의학적 소견,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요양급여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양급여 신청의 절차와 방법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② 근로자를 진료한 제43조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그 근로자의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판단되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요양급여의 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
추진경위	**○ 산재보험 부정수급 관리** - '08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환경노동위원회)

	・산재보험제도 전반에 대한 허위・부정수급 방지 시스템의 마련과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 마련 필요 - 국무총리실 주관의 범정부적 보험급여 분야 부정수급 근절대책 추진 ・「보험범죄 근절대책」('09. 6.19.) ・「보험범죄 근절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10. 1.26.) ・「공정사회구현을 위한 정직한 보험질서 확립대책」('11. 1.26.) ・「정직한 보험질서 확립 추진성과의 향후 추진방안」('12.12.21.) - '09. 1. 1. : 임시조직 "보험조사팀"운영(정원 8명) - '10. 4. 28. : "부정수급조사부"로 정규직제화 (10명) - '11. 1. 1. : 정원 증원(10명 → 25명) - '12. 1. 1. : 정원 감축(25명 → 20명) - '14. 2. 1. : 부서명칭 변경(부정수급조사부 → 보험조사부) - '15. 1. 8. : 정원 증원(19명 → 22명) - '15. 2. 27. : 서울보험조사팀 설치(인원 : 8명) - '17. 1. 23. : 익산보험조사팀 설치(인원 : 4명) - '18. 1. 1. : 직제개편으로 정원 증원(22명→35명) 및 6개 지역본부 부서 신설 - '18. 12. 13.: 부정수급자 명단 공개제도 시행(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의2) - '22. 7. 1. : 직제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으로 업무 이관(산재보상국→보험급여국)
	ㅇ 산재보험 의료기관 평가 - '06. 12. 13. 산재보험 의료기관 평가제도 도입 노사정 합의 - '08. 7월. 산재보험 의료기관 평가 근거조항 신설(산재보험법 제50조) - '07~'08년 고용노동부 연구용역(제1・2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07년 6개, '08년 60개 의료기관 시범평가 실시 - '09년 연구용역 및 시범평가 ・ 100개 병·의원 대상 실시 - '10년 산재근로자 진료실적이 높은 의원 대상 시범평가 ・ 200개 의원 대상 실시 - '11년 산재근로자 진료실적이 높은 의료기관 대상 평가 ・ 487개 종합병원・병원・의원 대상 실시 - '13년 제3차 재활중기발전계획에 따라 485개소(종합병원 161개소, 병원 198개소, 의원 121개소, 요양병원 5개소) 재활중심 평가 * 재활중심 평가항목(8개항): ①재활치료 장비보유 여부 ②재활치료의 적정성 ③재수술율 ④치료경과 설명의 적정성 ⑤장해등급 일치율 ⑥산재환자 요양관리 규정여부 ⑦직장복귀정도 ⑧공단직원 만족도 - '15년 ~ '18년 진료 실적이 높은 의료기관 평가 ・('15년) 488개소→('16년) 479개소→('17년) 484개소→('18년) 482개소 - '19년 재활인증의료기관 및 진료 실적이 높은 의료기관 평가 ・현지평가 300개소(진료특성별로 재활인증병원(93개소)과 일반병원(207개소)으로 구분), 서면평가 900개소(진료실적에 따른 산재 기여도) - '20년 재활인증의료기관 및 진료 실적이 높은 의료기관 평가 ・현지평가 299개소(진료특성별로 재활인증병원(89개소)과 일반병원(210개소)으로 구분), 서면평가 614개소(진료실적에 따른 산재 기여도) - '21년 재활인증의료기관 및 진료 실적이 높은 의료기관 평가 ・현지평가 297개소(진료특성별로 재활인증병원(18개소)과 일반병원(279

	개소)으로 구분), 서면평가 540개소(진료실적에 따른 산재 기여도) - ′22년 재활인증의료기관 및 진료 실적이 높은 의료기관 평가 ・현지평가 299개소(진료특성별로 재활인증병원(53개소)과 일반병원(246개소)으로 구분), 서면평가 232개소(진료실적에 따른 산재 기여도) - ′23년 재활인증의료기관 및 진료 실적이 높은 의료기관 평가 ・현지평가 305개소(진료특성별로 재활인증병원(34개소)과 일반병원(271개소)으로 구분), 서면평가 307개소(진료실적에 따른 산재 기여도) - ′24년 요양 적정성 향상을 위한 의료기관 평가 ・현지평가 322개소(진료특성별로 종합병원(12개소), 병원(139개소), 의원(171개소)으로 구분), 서면평가 39개소(진료실적에 따른 산재 기여도) - ′25년 요양 적정성 향상을 위한 의료기관 평가 ・현지평가 334개소(진료특성별로 종합병원(64개소), 병원(246개소), 의원(24개소)으로 구분)
	ㅇ 업무상재해 조사판정 - 업무상 재해 결정에 대한 입증책임 전환 및 근로자 입증책임 부담 완화 요구 제기* * 국회 입법발의(′11.11.1, ′12.7.13. 민주당 이미경 의원, ′16.10.21.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 및 국가인권위원회 산재보험 제도개선 권고(′12.5.17.) ※ 업무상 질병의 입증책임 관련, 공단이 업무수행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도록 산재보험법 개정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독립성・공정성・전문성 강화 방안 마련 - ′11.12. 업무상질병 판정절차 개선 사항 노사정 합의(산재보험제도개선TF팀) * 근로자 입증부담 완화를 위해 현장조사 강화, 질병판정의 전문성 강화, 전문가 참여확대 등 16개 개선사항 합의・시행 - ′13.7.1. 업무상 질병인정 기준 개정・시행(유해화학물질 35종 인정기준 추가, 직업성 암 종류 21종 추가,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등 정신질병 추가 등) - ‘14.2. 업무상 질병 판정의 전문성・공정성 강화를 위한 「업무상질병 판정업무 종합개선대책」 수립・추진 * 재해조사 전문가 양성, 재해조사 업무 인프라 확충 등 20개 과제 선정・추진 - ‘17.2. 업무상질병 판정절차 개선 노사정 회의 결과에 따른 제도개선 추진 * 현장조사 미참석 신청인에게 조사영상 제공, 질병확인 소위원회 도입 등 - ‘17.12. 업무상 질병 판정의 전문성・공정성 강화를 위한 「업무상질병 판정업무 종합개선대책」수립・추진 * 현장조사 필요 대상 확대 및 현장조사 매뉴얼 마련, 직업성 암 지침 마련, 본부의 업무상질병 부서 전문성 강화 등 - ‘18.1. 뇌심혈관계 질병 인정기준 개정・시행 - ‘18.12. 직업성 암 및 임신 중인 노동자 유산・사산 또는 조산 인정기준에 포함 개정・시행 - ‘19.7. 직장 내 괴롭힘, 고객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정신질병 인정기준 추가・시행 - ‘19.8. 업무상 질병 판정 신속성 제고 및 신청인 의견진술권 강화를 위한 정신질병 분산심의 시행 - ‘20.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산재보상 업무처리방안 시행 - ‘20.8. 태아 건강손상에 대한 업무처리요령 시행

	- ‘20.11.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대상 50인 미만 제조업 및 하지정맥류 확대 - ‘21.2.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제외 질병 확대 * 업무관련성 특진 결과 업무관련성 매우 높음 질병, 전문조사기관 자문결과 업무관련성 높음 질병 등 - ‘21.3. 감염병의 업무상 질병 조사 및 판정지침 제정 - ‘21.5. 진폐판정 시 CT진단 활용방안 도입 - ‘21.6. 모(母)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태아 건강손상 업무상재해 처리요령 마련 - ‘21.11. 코로나19 백신후유증 업무상 재해 처리요령 마련 - ‘21.12. 의학자문절차 생략 확대로 재해조사 간소화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대상 질병 소속기관 의학자문 생략 - ‘22.1. 보험가입자 의견확인절차 개선 (산재신청 단계 → 재해조사 단계) - ‘22.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산재신청 세부업무처리요령 마련 * 상병 진단 및 요양기간 확인 서류 간소화, 재해조사 체크리스트 마련 - ‘22.7. 근골격계 질병 신속심의절차 도입(고용노동부고시 제2022-40호) * 상병, 직종, 근무기간, 유효기간 충족 시 현장조사를 생략하고 업무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 - ‘22.7.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운영 개선 * 통합심의 대상 구체화, 심의사건 회송기준 구체화, 특별진찰과 심의회의 소견 동일한 경우 보류 제외 - ‘22.9. 전문(역학)조사보고서 사전공개 기준 및 절차 개선 * 주요 비공개 대상 및 공개절차에 대한 기준 마련(’22.9.13.시행) - ‘22.11. 적용형태별 업무상 질병 근무이력 세부판단기준 마련 * 업무상 질병 판단 시 유해·위험요인 노출여부 및 종사기간에 대한 세부 판단 기준 마련(’22.11.2. 시행) - ‘23.1. 건강손상자녀 업무상 재해 판단 및 보험급여 지급 요령 마련 *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보험급여 특례 관련 업무상 재해 판단 및 보험급여 지급 요령 마련(’23.1.30.시행) - ‘23.10. 업무상질병 여부에 관한 자문 업무처리요령 개정 * 자문위원 Pool 확대(20명→40명), 정밀자문 도입 등 개정사항 반영(’23.10.16.시행) - ‘24.7. 근골격계 질병 재해조사 방식 간소화 방안 마련 * 직력조사 기간 간소화 및 표준작업동영상 등 활용 확대(’24.7.24.시행) - ‘24.9.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운영규정 개정 * 판정위원 의무 강화 및 판정위원 공개모집 등 위원 추천 공정성 제고 - ‘24.12. 발생빈도가 높은 근골격계 질병 조사 및 판정 지침 개정 * 신청인 및 사업주에게 현장조사 생략에 대한 의견 수렴 및 결과 안내절차 마련 - ‘25.6. 국정과제 75 “일하는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안전한 나라” 산재보상 국가책임 실현 * 법정 재해조사기간 경과 시 선지급, 업무상 재해 규범적 판단 명문화, 업무상 질병 추정대상 확대 및 기준 완화, 산재판정 자료 공시, 산재판정기구 공정성·독립성 강화 - ‘25.8. 업무상질병 처리기간 단축방안을 마련하여 추진(국정기획위원회 신속추진과제 선정) * 업무상질병 전담조직 신설, 교육 강화, 축적된 DB기반 처리절차 개선, 집중 처리기간 운영 등

(2-2) 사업규모

○ 사업기간
  · (산재보험 부정수급 관리) '10년 ~ 계속
  · (산재보험 의료기관 평가) '08년 ~ 계속
  · (업무상재해 조사판정) '15년 ~ 계속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계획액 기준, 기금운용계획변경 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사업비	9,181	10,648	11,526	14,146	16,143

(2-3)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위탁)

○ 사업 수혜자 : 사업주 및 노동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기관명	2027년 지원금액 (백만원)	지원 비율 (%)	법적근거
산재보험 부정수급 관리	출연	근로복지공단	1,165	100.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6조 제1항
산재보험 의료기관 평가	출연	근로복지공단	452	100.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6조 제1항
업무상재해 조사판정	출연	근로복지공단	14,526	100.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6조 제1항

3) 기능별(내역사업별) 산출 내역

(3-1) 내역사업별 세부 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계획액(수정)(A)	2027년 정부안액(B)	증감 (B-A)
합 계	14,146	16,143	1,997
산재보험 부정수급관리	1,165	1,165	-
산재보험 의료기관평가	258	452	194
업무상재해 조사판정	12,723	14,526	1,803

○ 산재보험 부정수급관리 (2026년) 1,165 → (2027년) 1,165백만원 (전년 동)

- (설명) 전년동 수준 예산 요구

- (산출) 조사역량 강화 87백만원 + 자문위원회 운영 등 조사업무 지원 237백만원 + 부정수급 예방홍보 활동 374백만원 +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199백만원 + 부대경비 268백만원

○ 산재보험 의료기관평가 (2026년) 258 → (2027년) 452백만원, +75.2%

- (설명) 급성기 우수 의료기관 인증제 도입에 따른 의료서비스 평가 대상 확대로 평가 전담반, 현지 평가 예산 증액 요구 및 인증서 제작, 급성기 의료기관 보수 교육 예산 신설 요구

- (산출) 평가 전담반 운영 230백만원 + 평가결과 분석 및 항목 개발 31백만원 + 평가위원회 운영 및 설명회 18백만원 + 현지평가 실시 136백만원 + 평가 및 인증패 제작 33백만원 + 급성기 의료기관 보수 교육 4백만원

○ 업무상재해 조사판정 (2026년) 12,723 → (2027년) 14,526백만원, +14.2%

- (설명) 급증하는 산재 신청에 따라 재해조사 인력 확대로 재해조사 전문가 양성 교육과정, 재해조사 업무지원, 재해조사판정 위원수당, 신속처리 디지털 업무지원, 업무상질병전담팀 운영 등 예산 증액 요구

- (산출) 재해조사 전문가 교육과정 운영 285백만원 + 재해조사판정 업무지원 5,619백만원 + 재해조사판정 위원수당 등 4,502백만원 + 소송비용 1,446백만원 + 신속처리 디지털 업무지원 210백만원 + 업무상질병전담팀운영 2,110백만원 + 산재보상 관련 정보공개 354백만원

4) 사업효과

(4-1) 최근 5년(2023년~2027년)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 **성과지표:** 산재보험 신속성(%)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목표	69.49	86.19	<변경>	<삭제>	<삭제>
실적	70.38	90.18	-	해당없음	해당없음
달성도	101.3	104.6	-	해당없음	해당없음

- **측정산식 :** (산재신청서 법정기한 내 처리건수의 합 /산재신청서 처리건수의 합) × 100

- **측정방법 및 목표치 설정근거 :** '25년 지표 변경

- **자료수집방법/출처 :** 근로복지공단 전산자료

○ **성과지표:** 산재보험 신속성(건)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목표	<신규>	<신규>	154,485	160,372	164,418
실적	<신규>	153,085	158,556	해당없음	해당없음
달성도	-	-	102.6%	해당없음	해당없음

- **측정산식 :** 당해연도 산재신청서 처리건 중 6개월 이내 처리건수의 합
  * 당해연도 1.1.~ 12.31.까지 처리된 산재신청서 중 6개월(접수일 ~ 처리일) 이내 처리건수의 합(건)으로 함

- **측정방법 및 목표치 설정근거 :** 최근 3개년 처리건 중 6개월 이내 처리건의 평균 건수에서 4.5% 증가를 목표 설정
  * '26년 산출된 값(가정)을 적용하여 '27년 목표치 설정('26년 실적 반영 시 '27년 목표치 변경 가능)

- **자료수집방법/출처 :** 근로복지공단 전산자료

(4-2) 성과지표 이외의 최근 4년(2023년~2026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산재보험 부정수급 관리)

(단위: 건)

구분	조사건수	적발건수
2023	577	259
2024	592	336
2025	722	382
2026. 7월	345	196

- (산재보험 의료기관 평가)

2023	● 의료기관 평가실시 : 현지평가 305개소, 서면평가 307개소 - 평가대상 : 현지(재활인증병원,진료 실적인 높은 의료기관), 서면(진료실적 없거나 저조한 의료기관) - 평가기준 : 현지(9개 영역, 22개 부분, 재활인증34개, · 일반의료기관271개 항목), 서면(진료실적에 따른 가여도) - 평가내용 : 현지(기반의 적정성, 기록의 충실성, 과정·요양의 적정성 등), 서면(진료비 청구실적) - 평가결과 : 현지(평균점수 83.1점), 서면(94개소 지정취소) ○ 우대의료기관: 30개소(최우수 15개소, 우수 15개소), ○ 하위의료기관: 14개소(개선명령 14개소)
2024	● 의료기관 평가실시 : 현지평가 322개소, 서면평가 39개소 - 평가대상 : 현지(요양적정성이 낮은 의료기관), 서면(진료실적이 없거나 저조한 의료기관) - 평가기준 : 현지(8개 영역, 22개 부분, 일반의료기관35개 항목), 서면(진료실적에 따른 가여도) - 평가내용 : 현지(기반의 적정성, 기록의 충실성, 과정·요양의 적정성 등), 서면(폐업여부 확인) - 평가결과 : 현지(평균점수 70.9점), 서면(39개소 지정취소) ○ 우대의료기관: 32개소(최우수 16개소, 우수 16개소), ○ 하위의료기관: 14개소(개선명령 14개소)
2025	● 의료기관 평가실시 : 현지평가 334개소 - 평가대상 : 평가결과 활용성 높은 의료기관, 평가희망 의료기관 - 평가기간 : '25. 8월 ~ 9월 - 평가기준 : 8개 영역, 23개 항목 - 평가내용 : 기반의 적정성, 기록의 충실성, 과정·요양의 적정성 등 - 평가결과: 평균점수 79.1점 ○ 우대의료기관: 34개소(최우수 17개소, 우수 17개소), ○ 하위의료기관: 15개소(개선명령 15개소)

2026.7월	● 의료기관 평가대상 : 현지평가 340개소 - 평가대상 : 급성기 의료기관, 진료비 지급 상위 의료기관, 평가희망 의료기관 등 - 평가기간 : '26. 9월 ~ 10월 - 평가기준 : 8개 영역, 23개 항목 - 평가내용 : 기반의 적정성, 기록의 충실성, 과정·요양의 적정성 등 ○ 우대의료기관: (예정) 평가 상위 10% 의료기관 ○ 하위의료기관: (예정) 5% 의료기관

- (업무상재해 조사판정)

○ 최초요양급여신청서 처리 현황

(단위: 명, %)

년도	구분	처리건수	승인	승인율	불승인	불승인율
2023	질병	31,666	18,333	57.9	13,333	42.1
	사고	119,529	115,535	96.7	3,994	3.3
	출퇴근	11,752	11,097	94.4	655	5.6
	합계	162,947	144,965	89.0	17,982	11.0
2024	질병	38,219	21,827	57.1	16,392	42.9
	사고	122,520	117,802	96.1	4,718	3.9
	출퇴근	12,864	12,124	94.2	740	5.8
	합계	173,603	151,753	87.4	21,850	12.6
2025	질병	50,946	28,877	56.7	22,069	43.3
	사고	120,071	115,288	96.0	4,783	4.0
	출퇴근	14,075	13,308	94.6	767	5.4
	합계	185,092	157,473	85.1	27,619	14.9
2026. 7월	질병	39,636	21,357	53.9	18,279	46.1
	사고	70,563	67,450	95.6	3,113	4.4
	출퇴근	8,778	8,281	94.3	497	5.7
	합계	118,977	97,088	81.6	21,889	18.4

(4-3) 향후(2027년 이후) 기대효과

- (산재보험 부정수급관리)

· 허위·부정하게 지급된 보험급여 회수를 통하여 보험재정의 건전성 향상

· 부정수급예방 및 홍보를 통하여 부정수급 차단 등 선량한 수급권자 보호

- (산재보험 의료기관평가)

· 재활중심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 확대로 산재보험 의료전달체계 개선

· 평가결과에 따른 우대 및 제재조치로 의료기관 관리 효율화

- (업무상재해 조사판정)

· 재해조사 전문교육과정 운영으로 재해조사 전문가 양성

· 현장중심의 재해조사 확대로 재해조사업무 전문성 강화 및 업무상재해 판정의 공정성 강화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산재보험 부정수급 관리>

기초조사 → 실질조사 → 결과보고 → 사후조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부당이득의 징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1조(자료제공의 요청), 제117조(사업장등에 대한 조사), 제118조(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한 조사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9조의2(포상금의 지급)
- 부정수급조사업무처리규정(근로복지공단 규정)

조사 이유	기초조사	실질조사	결과보고	사후조치
①신고인의 제보 ②기획조사 계획	- 보험급여 지급의 타당성 조사 - 조사대상 결정	- 재해자 조사 - 주변탐문조사 - 의료기록분석	-부정수급여부 판단 -부당이득징수 결정	-신고포상금 지급 -부당이득금 회수 -수사의뢰·고발
③검·경합동조사	사건협의 및 통보	수사지원	부당이득징수 결정	부당이득금 회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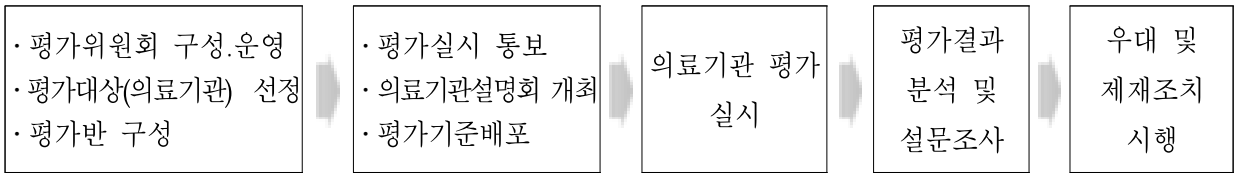
< 보험급여 지급 단계별 위험요인 분석>

단계	보험가입	요양신청	재해조사	급여청구	급여지급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업무프로세스				
위험요인	‣ 유령회사 ‣ 가짜근로	‣ 공모 ‣ 허위 진단	‣ 브로커 ‣ 자해	‣ 임금 조작 ‣ 취업 은폐	‣ 명의 도용 ‣ 동명이인
환류 (점검내용)	‣ 사업자등록 및 사업장 존재 여부 확인 ‣ 보험 적용일자 및 사업종류 확인	‣ 재해발생 사실 및 목격자 존재 여부 등 확인 ‣ 의료기관 진료기록 확인	‣ 재해경위 조작 및 기왕증 여부 확인 ‣ 근로자(노무제공자) 및 상병과 재해와의 의학적 인과관계 확인	‣ 평균임금 조작 및 취업사실 은폐 확인 ‣ 수급권 본인 여부 확인	‣ 보험급여 지급 적정성 최종 확인

부정수급 혐의점 및 이상 징후 분석을 통해 기획조사 또는 합동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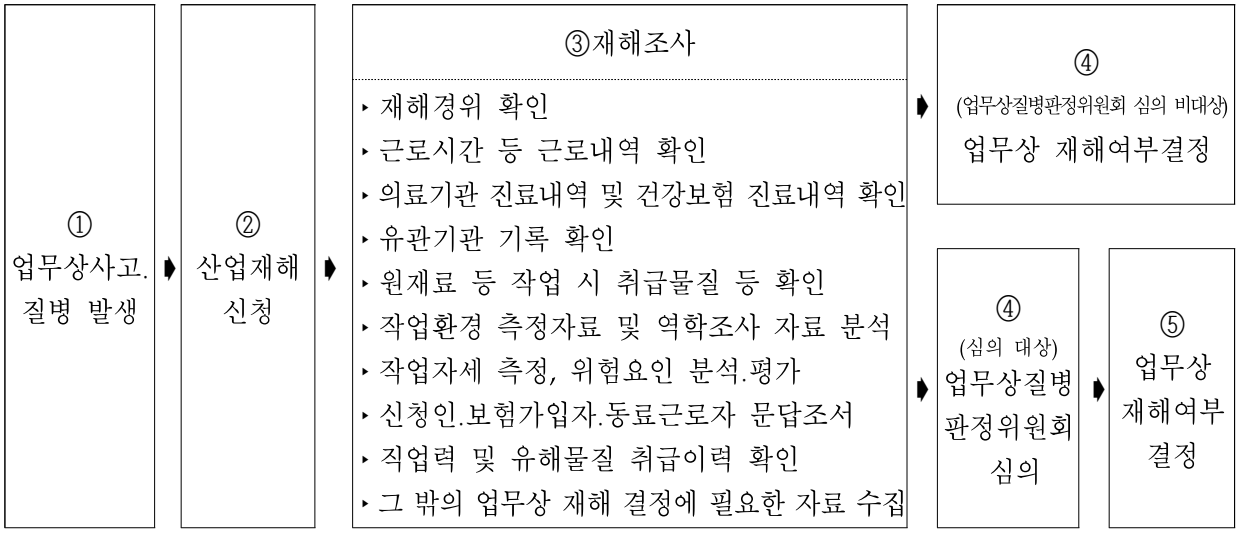
<산재보험 의료기관 평가>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평가대상(의료기관 선정), 평가반 구성 → 평가실시통보, 의료기관설명회 개최, 평가기준배포 → 의료기관 평가 실시 → 평가 결과 분석 및 설문조사 → 우대 및 제재조치 시행



<업무상 재해 조사·판정>

업무상 사고, 질병 발생 → 산업재해 신청 → 재해조사→ 업무상재해여부 결정



8) 최근 3년간(2024년~2026년)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8-1) 정부 사업평가

구분	연도	주요내용
재정사업 자율평가	2024년	○ 의견 : 지적사항 없음 ○ 결과 : 보통
재정사업 자율평가	2025년	○ 의견 : 지적사항 없음 ○ 결과 : 보통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2026년	○ 의견 : 처리기간 단축, 판정 정확도 개선 등 성과지표와의 연계성 및 양적 지표 중심의 성과관리에 대한 점검, 질적 성과지표 발굴 등을 통한 성과관리 체계 개선이 필요함. ○ 결과 : 사업개선

(8-2) 국회 지적사항

구분	연도	주요내용
23회계연도 결산 국회 시정요구	2024년	○ 지적 : 산재보험 부정수급 환수율 제고 방안 마련 ○ 조치 : 성과지표 설정을 통한 체계적 관리 및 징수결정 즉시 환수 안내 등 부서별 협업과 체납처분 강화를 위한 업무역량교육 실시, 부정수급 차단방안 마련 등 수납률 제고 노력
26회계연도 예산(안) 환노위 검토보고서	2025년	○ 지적 : 취약계층 국선대리인 선임사업 관련, ① 근거법률 개정 필요 및 ② 과다 계상된 수임료(70만원) 조정 필요 ○ 조치 : ①「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개정할 예정으로, 관련 법안 발의 중임('25.10.14.(화)발의, 이용우 의원) ② 국선대리인은 업무상질병 여부 입증을 위한 대리 행위의 범위가 넓고, 의학적·전문적인 지식을 요함에 따른 단가로 책정한 것이며, 필요시 사업 첫 해 운영 결과 고려하여 단가 조정 필요한지 검토 예정

(8-3) 감사원, 총리실, 기타(언론, 시민단체 등) 결과: 해당없음

4. 최근 4년간(2023년~2026년) 결산내역

1) 결산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연도	당초 계획액	수정 계획액 (A)	전년도 이월액	기금변경 증감액 등	계획 현액	집행액 (B)	집행률 (B/Ax100)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3년	9,181	9,181	-	-	9,181	9,181	100.0	-	-
2024년	9,757	10,648	-	891	10,648	10,648	100.0	-	-
2025년	9,757	11,526	-	1,769	11,526	11,526	100.0	-	-
2026년	14,146	14,146	-	-	14,146	7,671	54.2	해당없음	해당없음

2) 연도별 결산 주요사항

연도	유형	금액(백만원)	사유
2024년	기금운용 계획변경	891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수당 부족으로 891백만원 증액
2025년	기금운용 계획변경	1,769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수당 부족으로 1,769백만원 증액

5. 기타 추가자료: 해당 없음

사 업 명
(5) 산재병원지원(4054-350)

1. 사업 총괄 정보

1) 사업 기본 정보

(1-1) 일반 정보

소관	실·국	과·팀	기금	계정
고용노동부	산업보건보상정책관	산재보상정책과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

(1-2) 코드·명칭 정보

구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080	08E	4000	4054	350
명칭	사회복지	노동	산재보험	산재의료사업지원	산재병원지원

2)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N	Y	N	N	N	N

3)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N	N	Y	N	N	-	-

4) 기능별(내역사업별)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내역사업명	소관	사업시행주체
산재노동자 요양 및 진료환경 개선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근로복지공단
직업복귀를 위한 전문재활 운영 지원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근로복지공단
산재의료 접근성 및 치료역량 제고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근로복지공단

2. 지출계획 총괄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사업명	2025년 결산액	2026년 당초계획액 (A)	2026년 수정계획액	2027년 요구액	2027년 정부안액 (B)	증감액 (B-A)	증감률 (B-A) /A×100
산재병원지원	79,654	130,186	130,186	73,048	58,431	△71,755	△55.1

1)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계획액 (수정)	2025년 계획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계획액 (수정)	2026년 계획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79,654	79,654	79,654	-	-	130,186	130,186	65.054	58,431
· 산재노동자 요양 및 진료환경 개선	7,284	7,284	7,284	-	-	23,018	23,018	12.892	18,413
· 직업복귀를 위한 전문 재활 운영 지원	8,746	8,746	8,746	-	-	9,116	9,116	6.981	12,676
· 산재의료 접근성 및 치료역량 제고	63,624	63,624	63,624	-	-	98,052	98,052	45.181	27,342

2) 비목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계획액 (수정)	2025년 계획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계획액 (수정)	2026년 계획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79,654	79,654	79,654	-	-	130,186	130,186	65.054	58,431
· 사업출연금(210-01)	79,654	79,654	79,654	-	-	130,186	130,186	65.054	58,431

3. 사업 설명

1) 사업목적·내용

(1-1) 산재노동자 요양 및 진료환경 개선

사업목적	○ 산재노동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요양환경 제공을 위한 노후시설(장비) 개선 및 인프라 구축 지원
사업내용	○ (노후시설개선) 준공 후 3~40년 이상 경과한 산재병원 노후 시설(설비)의 안정성 확보 ○ (의료장비 현대화) 내용연수가 도과한 노후 의료·재활장비 교체를 통해 산재노동자에게 최적의 의료서비스 제공 ○ (AI 등 정밀진단장비 도입) AI 분석 솔루션을 탑재한 초정밀 진단기기 도입으로 진단 역량 및 의료서비스 수준 향상 ○ (전산장비 현대화) 의료 데이터 백업량 폭증 등에 따라, 노후 전산장비 교체로 안정적인 데이터 백업환경 구축 및 진료 안정성 확보 추진

(1-2) 직업복귀를 위한 전문재활 운영 지원

사업목적	○ 산재노동자의 조속한 직업복귀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재활전문센터·산재병원본부 운영 지원 및 의료취약지 의사 수급여건 개선
사업내용	○ (재활전문센터 운영) 민간이 기피하는 등 낮은 수익성에도 불구, 조기 직업복귀 지원 등 기능을 수행하는 7개 재활전문센터 운영비 일부 지원 ○ (산재병원본부 운영) 산재의료정책 수립·시행 및 경영활동을 총괄하는 산재병원본부(비수익기관) 운영비 일부 지원 ○ (산재의료 지역격차 해소) 의료취약지역 소재 산재병원 5개소 의사 인력 대상 지역근무수당 지원으로 계속 근무 유도 및 수급 안정화 도모

(1-3) 산재의료 접근성 및 치료역량 제고

사업목적	○ 산재노동자 대상 안정적 의료서비스 제공체계 구축을 위한 울산병원의 안정적인 초기 운영 지원
사업내용	○ (울산병원 개원초기 운영지원) 울산병원 조기정상화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해 초기 고정비 지출에 따른 경영손실 등에 대한 예산 지원

2) 사업개요

사업근거	○ 제11조(공단의 사업)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0.1.27., 2015.1.20.> 1. 보험가입자와 수급권자에 관한 기록의 관리·유지 2. 보험료징수법에 따른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의 징수 3. 보험급여의 결정과 지급 4. 보험급여 결정 등에 관한 심사 청구의 심리·결정 5. 산업재해보상보험 시설의 설치·운영 5의2.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 등의 진료·요양 및 재활 5의3. 재활보조기구의 연구개발·검정 및 보급 5의4. 보험급여 결정 및 지급을 위한 업무상 질병 관련 연구 5의5. 근로자 등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건강진단 등 예방 사업 6.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7. 그 밖에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8. 제5호·제5호의2부터 제5호의5까지·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사업에 딸린 사업 ② 공단은 제1항제5호의2부터 제5호의5까지의 사업을 위하여 의료기관, 연구기관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0.1.27., 2015.1.20.> ③ 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자문을 하기 위하여 공단에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보험급여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0.1.27.> ④ 제3항에 따른 보험급여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개정 2010.1.27.> ⑤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단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할 수 있다. <신설 2015.1.20.>

추진경위	○ ‘06. 03. 고용노동부『산재환자 요양과 재활치료 활성화를 위한 산재의료관리원 역할강화방안(’06～’10년)』 ○ ‘06. 05. 고용노동부『대구재활전문병원 건립추진계획안 ○ ‘11. 12. 고용노동부『산재병원 중장기 발전방안』 ○ ‘12. 4. 고용노동부 「제3차 산재보험 재활사업 중기발전계획(’12～’14)」 ○ ‘13. 9. 고용노동부『산재병원 중장기 발전방안』 ○ ‘15. 7. 고용노동부『산재병원 중장기 발전방안 세부실행계획』 ○ ‘06 ~ ’22 고용노동부『제1~5차 산재보험 재활사업 중기발전계획』 ○ ‘18. 4. 고용노동부『산재병원 중장기(’18～’22) 발전방안』 ○ ‘21. 11. 근로복지공단『의료사업 중장기(’22～’26년) 발전방안 수립』 ○ ‘23. 2. 고용노동부『제6차 산재보험 재활사업 중기발전계획』

(2-1)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2-2) 사업규모

○ 사업기간 : 계속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계획액 기준, 기금운용계획변경 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사업비	32,431	32,762	79,654	130,186	58,431

(2-3)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위탁)

○ 사업 수혜자 : 산재노동자 및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기관명	2027년 지원금액 (백만원)	지원 비율(%)	법적근거
산재노동자 요양 및 진료환경 개선	출연	근로복지 공단	18,413	100.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6조 제3항
직업복귀를 위한 전문재활 운영지원	출연	근로복지 공단	12,676	100.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6조 제3항
산재의료 접근성 및 치료역량 제고	출연	근로복지 공단	27,342	100.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6조 제3항

3) 기능별(내역사업별) 산출 내역

(3-1) 내역사업별 세부 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계획액(수정)(A)	2027년 정부안액(B)	증감 (B-A)
합 계	**130,186**	**58,431**	**△71,755**
산재노동자 요양 및 진료환경 개선	23,018	18,413	△4,605
직업복귀를 위한 전문재활 운영지원	9,116	12,676	3,560
산재의료 접근성 및 치료역량 제고	98,052	27,342	△70,710

○ **산재노동자 요양 및 진료환경 개선 (2026년) 23,018 → (2027년) 18,413백만원, △20.0%**

- (설명) 산재병원 노후시설 개선 및 인프라 구축 지원 요구
- (산출) 노후안전시설(동해·정선·창원) 개선 6,493백만원 + 장애인검진시설(대전·순천) 개선 1,421백만원 + 노후설비(UPS·보일러·폐수처리설비) 개선 3,533백만원 + 의료장비 현대화 1,054백만원 + AI등 정밀진단장비 도입 3,291백만원 + 전산장비 현대화 2,621백만원

○ **직업복귀를 위한 전문재활 운영 지원 (2026년) 9,116 → (2027년) 12,676백만원, +39.1%**

- (설명) 재활전문센터 및 산재병원본부 운영비 일부 지원, 의료취약지 소재 산재병원 5개소 의사 지역수당 지원
- (산출) 재활전문센터 운영 4,865백만원 + 산재병원본부 운영 5,411백만원 + 산재의료 지역격차 해소 2,400백만원

○ **산재의료 접근성 및 치료역량 제고 (2026년) 98,052 → (2027년) 27,342백만원, +39.1%**

- (설명) 울산병원 개원초기 수지차 보전 등 운영비 지원
- (산출) 수지차 지원 25,342백만원 + 응급대기시설 임차 2,000백만원

4) 사업효과

(4-1) 최근 5년(2023년~2027년)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 **성과지표:** 산재보험 신속성(%)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목표	69.49	86.19	<변경>	<삭제>	<삭제>
실적	70.38	90.18	-	해당없음	해당없음
달성도	101.3	104.6	-	해당없음	해당없음

- **측정산식 :** (산재신청서 법정기한 내 처리건수의 합 /산재신청서 처리건수의 합) × 100
- **측정방법 및 목표치 설정근거 :** '25년 지표 변경
- **자료수집방법/출처 :** 근로복지공단 전산자료

○ **성과지표:** 산재보험 신속성(건)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목표	<신규>	<신규>	154,485	160,372	164,418
실적	<신규>	153,085	158,556	해당없음	해당없음
달성도	-	-	102.6%	해당없음	해당없음

- **측정산식 :** 당해연도 산재신청서 처리건 중 6개월 이내 처리건수의 합
  * 당해연도 1.1.~ 12.31.까지 처리된 산재신청서 중 6개월(접수일 ~ 처리일) 이내처리건수의 합(건)으로 함

- **측정방법 및 목표치 설정근거 :** 최근 3개년 처리건 중 6개월 이내 처리건의 평균 건수에서 4.5% 증가를 목표 설정
  * '26년 산출된 값(가정)을 적용하여 '27년 목표치 설정('26년 실적 반영 시 '27년 목표치 변경 가능)

- **자료수집방법/출처 :** 근로복지공단 전산자료

(4-2) 성과지표 이외의 최근 4년(2023년~2026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연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3년	○ 진료실적: 입원 637,569연명, 외래 1,146,341연명 ○ 산재환자: 입원 554,142연명, 외래 668,930연명 ○ 전문재활: 집중재활 748,099건, 특수·심리재활: 104,827건, 수중재활: 31,809건
2024년	○ 진료실적: 입원 603,447연명, 외래 1,118,244연명 ○ 산재환자: 입원 488,878연명, 외래 636,181연명 ○ 전문재활: 집중재활 632,069건, 특수·심리재활: 126,544건, 수중재활: 25,398건
2025년	○ 진료실적: 입원 623,443명, 외래 1,121,070명 ○ 산재환자: 입원 488,951명, 외래 645,478명 ○ 전문재활: 집중재활 796,883건, 특수·심리재활: 153,799건, 수중재활: 26,372건
2026.7월말	○ 진료실적: 입원 374,583명, 외래 655,878명 ○ 산재환자: 입원 280,412명, 외래 381,262명 ○ 전문재활: 집중재활 497,754건, 특수·심리재활: 105,252건, 수중재활: 16,789건

(4-3) 향후(2027년 이후) 기대효과

○ 시설장비 현대화와 전문재활서비스를 통해 요양초기부터 직업복귀까지 산재근로자의 특성에 맞는 통합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산재근로자 직업복귀 촉진
- 노후 안전시설 개보수를 통해 산재근로자가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쾌적한 요양환경 구축 및 안전사고 예방
- 내구연한 경과 의료장비 교체 및 최신장비 도입으로 의료·재활서비스의 질 향상을 통한 치료효과 제고

○ 산재의료재활치료기법 및 프로그램 개발, 산재의료재활 표준화 및 민간병원 보급 확대
- 신체기능 회복 이후 직장복귀·일상생활 지원 등 재활프로그램으로 직업복귀 기여

○ 울산병원 운영 안정화로 산재의료재활 사각지대 해소 및 지역 균형 발전 도모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노후시설개선
- 총사업비 확정(기획처) → 공사 설계용역(공단) → 공사범위 확정·계약(공단) → 공사 진행률에 따른 대금지급(공단) → 공사 완료(공단)

○ 의료·재활장비 수급절차
- 장비수급계획 수립(5개년) → 예산요구 및 심의(노동부·기획처) → 예산 및 자금배정(노동부) → 공통장비 스펙 심의(공단 장비심의위원회) → 입찰·구매

○ 산재재활요양기관 역할 강화(전문재활서비스 제공)
- 산재 발생 → 수술 등 급성기 치료(공단 직영병원 또는 민간병원) → 의료재활·직업재활 등 전문재활서비스 제공(공단 직영병원)* → 종결 심사(공단) → 사회 복귀

* 조기 사회복귀를 위한 전문재활 시범수가 운영 및 효과성 분석, 재활치료프로그램 개발 및 수행

8) 최근 3년간(2024년~2026년)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8-1) 정부 사업평가:

구분	연도	주요내용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2026년	○ 의견 : 사업개선 ○ 결과 :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환류가 신규 시설 설치 중심으로 이루어져 구조적 개선 효과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아 사업 효과성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성과지표 또한 병원이용률 및 치료건수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정책의 효과성과 연계되도록 결과 중심 성과지표를 발굴·운영할 필요가 있음
재정사업 자율평가	2025년	○ 결과 : 보통(87.35점)
재정사업 자율평가	2024년	○ 결과 : 보통(88.15점)

(8-2) 국회 지적사항

구분	연도	주요내용
국정감사	2021~2025년	○ 지적 : 직영병원의 의료장비 노후화에 대한 대책 필요 ○ 조치 :「중장기 의료기기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의료장비 적기 교체를 위한 추가예산 확보에 대한 노력과 함께 의료장비 유지보수 관리 철저 도모
	2023~2025년	○ 지적 : 지역 산재의료 공백 해소 목적으로 산재전문병원 및 외래재활센터 추가 설치 요구 ○ 조치 : '24년 전북권 산재전문병원 신축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 용역(2억원) 및 '25. 4월 경북 구미시 외래재활센터(30억원) 설치
	2025년	○ 지적 : 의료사업 퇴직급여 충당금 적립 필요 ○ 조치 : 매년 퇴직급여 충당금 150억 이상 적립 및 안정적 퇴직금 지급기반 마련을 위한 기금 지원 요구 계속
환노위	2023년	○ 지적 : 울산병원 건립 사업 예산 실집행 부진으로 추가적인 사업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공정을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조치 : 시공사의 공정 계획과 이행 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철저한 공정 관리로 현재 계획에 따라 원활히 사업 추진 중('26.9월 개원 예정)

(8-3) 감사원, 총리실, 기타(언론, 시민단체 등) 결과

구분	연도	주요내용
언론 (국민일보 등)	2023~2026년	○ 지적/제기 : 산재병원 의료장비 노후화 ○ 검토/조치 : 「중장기 의료기기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의료장비 적기 교체를 위한 추가예산 확보에 대한 노력과 함께 의료장비 유지보수 관리 철저 도모

4. 최근 4년간(2023년~2026년) 결산내역

1) 결산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연도	당초 계획액	수정 계획액 (A)	전년도 이월액	기금변경 증감액 등	계획 현액	집행액 (B)	집행률 (B/Ax100)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3년	32,431	32,431	-	-	32,431	32,421	99.9	-	10
2024년	32,762	32,762	-	-	32,762	32,734	99.9	-	28
2025년	79,654	79,654	-	-	79,654	79,654	100.0	-	-
2026년	130,186	130,186	-	-	130,186	65,054	50.0	-	-

2) 연도별 결산 주요사항

연도	유형	금액 (백만원)	사유
2023년	불용	10	울산병원 정보시스템 구축 BPR/ISP 수립 용역 낙찰 차액
2024년	이월	10	외래재활센터(경북 구미시) 설치 공사 지연(공단 자체이월)
2024년	불용	28	전북권산재병원 신축 기초조사 연구용역 낙찰 차액
2025년	이월	443	순천병원 응급대기시설 개선 공사 지연(공단 자체이월)

5. 기타 추가자료: 해당없음

사 업 명
(6) 산재보험 시설건립(4055-350)

1. 사업 총괄 정보

1) 사업 기본 정보

(1-1) 일반 정보

소관	실·국	과·팀	기금	계정
고용노동부	산업보건 보상정책관	산재보상정책과	산업재해보상 보험및예방기금	-

(1-2) 코드·명칭 정보

구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080	08E	4000	4055	350
명칭	사회복지	노동	산재보험	산재보험시설	산재보험시설건립

2)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N	Y	N	N	N	N

3)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N	N	Y	N	N	-	-

4) 기능별(내역사업별)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내역사업명	소관	사업시행주체
창원지사 재건축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근로복지공단
(구)대구북부지청 리모델링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근로복지공단
스프링클러 설치공사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근로복지공단
자체청사 개보수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근로복지공단

2. 지출계획 총괄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사업명	2025년 결산액	2026년 당초계획액 (A)	2026년 수정계획액	2027년 요구액	2027년 정부안액 (B)	증감액 (B-A)	증감률 (B-A) /A×100
산재보험 시설건립	6,535	3,309	3,309	9,753	3,309	-	-

1)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계획액 (수정)	2025년 계획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계획액 (수정)	2026년 계획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7,253	7,253	6,535	-	718	3,309	3,309	1,139	3,309
·경인지역본부 건립공사	6,119	6,119	5,401	-	718	-	-	-	-
·자체청사 개보수	974	974	974	-	-	1,672	1,672	329	320
·창원지사 재건축	60	60	60	-	-	1,117	1,117	677	1,293
·사울협동청사 타당성조사	100	100	100	-	-	150	150	3	-
·특별민원실 설치	-	-	-	-	-	180	180	102	-
·(구)대구북부지청 리모델링	-	-	-	-	-	190	190	28	285
·스프링클러 설치공사	-	-	-	-	-	-	-	-	1,411

2) 비목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계획액 (수정)	2025년 계획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계획액 (수정)	2026년 계획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7,253	7,253	6,535	-	718	3,309	3,309	1,139	3,309
·사업출연금(350-02)	7,253	7,253	6,535	-	718	3,309	3,309	1,139	3,309

3. 사업 설명

1) 사업목적·내용

(1-1) 산재보험 시설건립

사업목적	산재노동자가 업무상 재해를 보상받기 위한 물리적 공간 마련 지원
사업내용	산업재해보상보험 시설을 설치하여 업무수행 사무공간 마련

(1-2) 자체청사 개보수

사업목적	시설 내 상주 임직원 및 방문객 안전을 확보하고 중대시민재해를 예방
사업내용	시설물의 보수 및 개정·강화되는 관련법령에 즉각 대응하여 정부 정책 이행

2) 사업개요

(2-1)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사업근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제1조 (목적)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96조 (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보험급여의 지급 및 반환금의 반환 2. 차입금 및 이자의 상환 3. 공단에의 출연 4.「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의3에 따른 용도 5. 재해근로자의 복지 증진 6.「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에 대한 출연 7. 보험료징수법 제4조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의 출연 8. 그 밖에 보험사업 및 기금의 관리와 운용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금지출예산 총액의 100분의 8 이상을 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용도로 계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7호에 따라 기금으로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출연하는 금액은 징수업무(고지·수납·체납 업무를 말한다)가 차지하는 비율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추진경위	○ 추진경위 - '00. 12. 고용노동부 및 산하단체 합동청사 건립계획 - '05. 01. 고용노동부 및 산하단체 합동청사 건립계획

(2-2) 사업규모

○ 사업기간 : 계속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계획액 기준, 기금운용계획변경 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사업비	17,714	7,023	7,523	3,309	3,309

(2-3)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 사업 수혜자 : 산업재해노동자, 산재보험가입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기관명	2027년 지원금액 (백만원)	지원 비율(%)	법적근거
창원지사 재건축	출연	근로복지공단	1,293	100.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6조 제1항 제3호
(구)대구북부지청 리모델링	출연	근로복지공단	285	100.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6조 제1항 제3호
스프링클러 설치공사	출연	근로복지공단	1,411	100.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6조 제1항 제3호
자체정사 개보수	출연	근로복지공단	320	100.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6조 제1항 제3호

3) 기능별(내역사업별) 산출 내역

(3-1) 내역사업별 세부 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계획액(수정)(A)	2027년 정부안액(B)	증감 (B-A)
합 계	3,309	3,309	-
창원지사 재건축	1,117	1,293	176
(구)대구북부지청 리모델링	190	285	95
자체청사 개보수	1,672	320	△1,352
서울합동청사 타당성조사	150	-	△150
특별민원실 설치	180	-	△180
스프링클러 설치공사	-	1,411	1,411

○ 창원지사 재건축 **(2026년) 1,117백만원 → (2027년) 1,293백만원, +15.8%**

- (설명) 창원지사 재건축 사업 3차년도 사업비 요구
- (산출) 공사비 1,129백만원 + 감리비 등 164백만원 = 1,293백만원

○ (구)대구북부지청 리모델링 **(2026년) 190백만원 → (2027년) 285백만원, +50.0%**

- (설명) 대구북부지청 리모델링 3차년도 사업비 요구
- (산출) 설계비 270백만원 + 시설부대비 15백만원 = 285백만원

○ 스프링클러 설치공사 **(2026년) 0백만원 → (2027년) 1,411백만원, 순증**

- (설명) 자체청사 중 자동 화재진압 부재시설에 대한 스프링클러 설치비용 요구
- (산출) 자체청사 2개소 스프링클러 설치비용 = 1,411백만원

○ 자체청사 개보수 **(2026년) 1,672백만원 → (2027년) 320백만원, △80.7%**

- (설명) '27년 자체청사 시설 개보수 공사비용 요구
- (산출) 소속기관 배터리실 방화구획 및 소방시설 설치비용 320백만원

4) 사업효과

(4-1) 최근 5년(2023년~2027년)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 **성과지표:** 산재보험 신속성(%)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목표	69.49	86.19	<변경>	<삭제>	<삭제>
실적	70.38	90.18	-	해당없음	해당없음
달성도	101.3	104.6	-	해당없음	해당없음

- **측정산식 :** (산재신청서 법정기한 내 처리건수의 합 /산재신청서 처리건수의 합) × 100
- **측정방법 및 목표치 설정근거 :** '25년 지표 변경
- **자료수집방법/출처 :** 근로복지공단 전산자료

○ **성과지표:** 산재보험 신속성(건)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목표	<신규>	<신규>	154,485	160,372	164,418
실적	<신규>	153,085	158,556	해당없음	해당없음
달성도	-	-	102.6%	해당없음	해당없음

- **측정산식 :** 당해연도 산재신청서 처리건 중 6개월 이내 처리건수의 합
  * 당해연도 1.1.~ 12.31.까지 처리된 산재신청서 중 6개월(접수일 ~ 처리일) 이내처리건수의 합(건)으로 함
- **측정방법 및 목표치 설정근거 :** 최근 3개년 처리건 중 6개월 이내 처리건의 평균 건수에서 4.5% 증가를 목표 설정
  * '26년 산출된 값(가정)을 적용하여 '27년 목표치 설정('26년 실적 반영 시 '27년 목표치 변경 가능)
- **자료수집방법/출처 :** 근로복지공단 전산자료

(4-2) 성과지표 이외의 최근 4년(2023년~2026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연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3년	- 경인지역본부 공사 계약 및 착공 - 자체청사 개·보수: 냉온수기 교체공사, 코로나 치료센터 복구 완료
2024년	- 경인지역본부 공사 진행, 지하층 골조공사 완료 및 지상 2층 골조공사 - 자체청사 개·보수: 노후 승강기 교체공사 및 오수처리시설 보수공사
2025년	- 경인지역본부 공사완료 - 자체청사 개·보수: 공단본부 노후전력시설 개선공사 및 특별민원실 설치
2026년	- 창원지사 재건축 중간설계 - 자체청사 개·보수: 스프링클러 설치공사 및 노후전력시설 개선공사

(4-3) 향후(2027년 이후) 기대효과:

○ (창원지사 재건축) 3차년도 사업으로 건축물 철거 및 토목공사 진행
○ (대구북부지청 리모델링) 2차년도 사업으로 설계완료 및 착공
○ (자체청사 개보수) 인재개발원 등 자체청사 3개소 시설 개보수 진행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부지선정) 고객접근성 및 유관기관의 업무효율성을 고려하여 적정부지 선정 - (부지매입) 감정평가에 의한 부지매입 - (설　　계) 건축기획을 반영하여 건축물의 중간·실시설계 이행 - (건축허가)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 등의 인허가 절차 이행 - (착　　공) 시공업체 선정 및 계약 후 공사 착수 - (준　　공) 공사완료 후 준공검사 실시 및 시설물 운영·관리

8) 최근 3년간(2024년~2026년)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8-1) 정부 사업평가

구분	연도	주요내용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2025년	○ 의견 : 공공성과 재정투입 필요성은 인정되나 재정투입과 성과지표간의 인계성이 부족함 ○ 결과 : 감액

(8-2) 국회 지적사항: 해당없음

(8-3) 감사원, 총리실, 기타(언론, 시민단체 등) 결과: 해당없음

4. 최근 4년간(2023년~2026년) 결산내역

1) 결산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연도	당초 계획액	수정 계획액 (A)	전년도 이월액	기금변경 증감액 등	계획 현액	집행액 (B)	집행률 (B/Ax100)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3년	7,148	7,148	-	-	7,148	7,136	99.8	-	12
2024년	17,714	17,714	-	-	17,714	17,714	100.0	-	-
2025년	7,253	7,253	-	-	7,253	6,535	90.1	-	718
2026년	3,309	3,309	-	-	3,309	1,139	34.4	해당없음	해당없음

2) 연도별 결산 주요사항

연도	유형	금액 (백만원)	사유
2023년	이월	7,309	경인지역본부 재건축 관련 낙찰차액 및 총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사업시행주체 자체이월
2024년	이월	3,000	경인지역본부 재건축 관련 공정률 순연에 따른 사업시행주체 자체이월
2025년	불용	718	경인지역본부 청사 건립공사 준공정산 잔액분 불용

5. 기타 추가자료: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7) 산재보험정보시스템 구축(정보화)(4057-350)

1. 사업 총괄 정보

1) 사업 기본 정보

(1-1) 일반 정보

소관	실·국	과·팀	기금	계정
고용노동부	산업보건 보상정책관	산재보상정책과	산업재해보상 보험및예방기금	-

(1-2) 코드·명칭 정보

구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080	08E	4000	4057	350
명칭	사회복지	노동	산재보험	산재보험 정보시스템구축(정보화)	산재보험 정보시스템구축(정보화)

2)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N	Y	N	N	N	N

3)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N	N	Y	N	N	-	-

4) 기능별(내역사업별)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내역사업명	소관	사업시행주체
전산장비 유지관리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근로복지공단
정보시스템 운영지원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근로복지공단
재해복구센터 사업비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근로복지공단
정보시스템 구축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근로복지공단

2. 지출계획 총괄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사업명	2025년 결산액	2026년 당초계획액 (A)	2026년 수정계획액	2027년 요구액	2027년 정부안액 (B)	증감액 (B-A)	증감률 (B-A) /A×100
산재보험정보시스템 구축(정보화)	19,114	23,191	24,693	33,868	21,300	△1,891	△8.2

1)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계획액 (수정)	2025년 계획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계획액 (수정)	2026년 계획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19,114	19,114	19,114	-	-	24,693	24,693	12,335	21,300
·산재마루시스템 개편 등 고도화	-	-	-	-	-	768	768	186	-
·전산장비 유지관리	9,606	9,606	9,606	-	-	9,606	9,606	4,586	9,232
·정보시스템 운영지원	1,952	1,952	1,952	-	-	2,399	2,399	1,646	2,326
·재해복구센터 사업비	2,240	2,240	2,240	-	-	6,200	6,200	982	3,318
·정보시스템 구축	5,316	5,316	5,316	-	-	4,218	4,218	4,218	6,424
·소득기반 산재·고용보험 정보시스템 구축	-	-	-	-	-	1,502	1,502	-	-

2) 비목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계획액 (수정)	2025년 계획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계획액 (수정)	2026년 계획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19,114	19,114	19,114	-	-	24,693	24,693	12,335	21,300
·일반연구비(260-01)	-	-	-	-	-	484	484	186	-
·자산취득비(430-01)	-	-	-	-	-	284	284	0	-
·사업출연금(350-02)	19,114	19,114	19,114	-	-	23,925	23,925	12,149	21,300

3. 사업 설명

1) 사업목적·내용

(1-1) 전산장비 유지관리

사업목적	법제도 개선에 따른 정보시스템 적기 반영 및 노후 전산장비 교체를 통한 안정적인 정보화 환경 구축
사업내용	법·제도 개선 사항을 적기 반영하고 새로운 기술을 접목한 다양한 정보처리 환경을 제공하여 업무수행 비용 절감 및 안정적인 정보서비스 제공

(1-2) 정보시스템 운영지원

사업목적	산재보험 정보서비스 개선을 통한 업무 혁신과 대국민 만족 실현
사업내용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에 대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부과고지 및 수요자 중심의 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시스템 운영비

(1-3) 재해복구센터 사업비

사업목적	시스템 중단 시 산재보험전산망 기능 연속성 확보
사업내용	재난 발생으로 주전산센터 정보시스템 중단 시 재해복구센터에서 국가핵심정보시스템을 신속히 가동

(1-4)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목적	산재보험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내용	산재보험 성립·소멸, 보험료의 납부·징수 등 산재보험 관련 보험사무 수행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비

2) 사업개요

(2-1)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사업근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6조 (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08. 12. 31., 2010. 1. 27.> 1. 보험급여의 지급 및 반환금의 반환 2. 차입금 및 이자의 상환 3. 공단에의 출연 4.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의3에 따른 용도 5. 재해근로자의 복지 증진 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라한다)에 대한 출연 7. 보험료징수법 제4조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의 출연 8. 그 밖에 보험사업 및 기금의 관리와 운용
추진경위	○ 추진경위 - '10년 한국산재의료원 통합에 따른 10개 소속병원 의료정보시스템 운영 - '11년 고용·산재보험 부과고지 및 근로자 고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 '13년 산재병원 의료정보시스템 재구축 - '13년 내부 업무망과 외부 인터넷 망분리 구축 - '14년 공단본부 울산이전에 따른 전산센터 지방이전 구축 - '16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중소기업사업주로 산재보험 적용 확대 - '16년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관리 업무이관 관련 정보시스템 증설 - '17년 소속병원 의료정보시스템 연차별 재구축 완료 - '18년 고용·산재보험 재구축을 위한 업무재설계(BPR) 연구용역 추진 - '18년 출퇴근재해 보상제도 도입에 따른 정보시스템 구축

	- '19년 고용·산재보험료 통합 자격관리시스템 구축 - '20년 대국민 판례정보시스템 구축 - '20년 통합인사급여시스템 고도화 구축 - '21년 과학적 행정실현을 위한 데이터분석시스템 재구축 - '23년 산재보험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확인시스템 구축 및 산재급여시스템 재구축을 위한 업무재설계(BPR) 및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 '24년 국가핵심정보시스템 재해복구센터 구축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 '25년 국가핵심정보시스템 재해복구센터 구축 (1년차) - '26년 스마트 산재보상시스템 구축

(2-2) 사업규모

○ 사업기간 : 계속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계획액 기준, 기금운용계획변경 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사업비	15,047	20,059	19,114	24,693	21,300

(2-3)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근로복지공단

○ 사업 수혜자 : 근로자, 사업주, 근로복지공단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기관명	2027년 지원금액 (백만원)	지원 비율(%)	법적근거
전산장비 유지관리	출연	근로복지공단	9,232	100.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6조
정보시스템 운영지원	출연	근로복지공단	2,326	100.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6조
재해복구센터 사업비	출연	근로복지공단	3,318	100.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6조
정보시스템 구축	출연	근로복지공단	6,424	100.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6조

3) 기능별(내역사업별) 산출 내역

(3-1) 내역사업별 세부 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계획액(수정)(A)	2027년 정부안액(B)	증감 (B-A)
합 계	24,693	21,300	△3,393
산재마루시스템 개편 등 고도화	768	-	△768
전산장비 유지관리	9,606	9,232	△374
정보시스템 운영지원	2,399	2,326	△73
재해복구센터 사업비	6,200	3,318	△2,882
정보시스템 구축	4,218	6,424	2,206
소득기반 산재·고용보험 정보시스템 구축	1,502	-	△1,502

○ **산재마루시스템 개편 등 고도화 (2026년) 768 → (2027년) 0백만원, 순감**

- (설명) 해당 없음
- (산출) 해당 없음

○ **전산장비 유지관리 (2026년) 9,606 → (2027년) 9,232백만원, △3.9%**

- (설명)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에 필요한 시설장비 및 서버 유지관리, 상용 SW 기술지원과 노후장비 교체 및 증설, 노후 보안장비 및 보안솔루션 교체, 사무자동화기기 도입 임차료, '26년 대비 3.9% 감액
- (산출)
  ① 시스템 유지관리 = 상용SW 유지관리 1,924백만원 + HW 유지관리 1,992백만원 + 기타설비 유지관리 142백만원 + 사무용 SW 사용료 781백만원 + 개발 SW 유지관리 2,004백만원 = 6,843백만원
  ② 노후장비 교체 및 증설 2,390백만원
  ③ 단수조정 △1백만원

○ **정보시스템 운영지원 (2026년) 2,399 → (2027년) 2,326백만원, △3.0%**

- (설명) 회선사용료 및 공공요금, '26년 대비 3.0% 감액
- (산출)
  ① 회선사용료 = 고용노동부 통합통신망 974백만원 + 인터넷 유관기관 통신회선 268백만원 + 우편요금 2백만원 + 산재고용보험 토탈서비스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 450백만원 = 1,694백만원
  ② 기타운영지원 = 일반수용비 245백만원 + 특근매식비 23백만원 + 일숙직비 4백만원 + 기타운영비 32백만원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분담금 228백만원 +여비 83백만원 + 관서운영비 17백만원 = 632백만원

○ **재해복구센터 사업비 (2026년) 6,200 → (2027년) 3,318백만원, △46.5%**

- (설명)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클라우드 재해복구 시스템 SW 도입 및 재해복구센터 운영비 , '26년 대비 46.5% 감액

- (산출)
  ① 토탈서비스 재해복구센터 구축 = 장비도입비 1,605백만원(산재분담율 50%) + 개발용역비 363백만원(산재분담율 50%) = 1,969백만원
  ② 재해복구센터 운영 = 토탈서비스 클라우드 재해복구시스템 이용료 522백만원 + 통신회선료 640백만원 + 기타운영비 53백만원 + 자산취득비 134백만원 = 1,349백만원

○ **정보시스템 구축 (2026년) 4,218 → (2027년) 6,424백만원, +52.3%**

- (설명) 산재보험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26년 대비 +52.3% 증액

- (산출)
  ① 소득기반 고용·산재보험 정보시스템 구축 350백만원
  ② 차세대 통합의료정보시스템(EMR) 구축 3,682백만원
  ③ (이관)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PACS) 운영 545백만원
  ④ (이관)직업복귀통합지원시스템운영 550백만원
  ⑤ AI 재해조사 어시스턴트 시스템 이용료 797백만원
  ⑥ 산재보상 국선대리인 전산개발 500백만원

○ **소득기반 산재·고용보험 정보시스템 구축 (2026년) 1,502 → (2027년) 0백만원, 순감**

- (설명)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 개정('27.1.1.)되어 개정사항 선제 반영을 위한 '26년 기금 변경, '26년 대비 순감

- (산출) 해당없음

4) 사업효과

(4-1) 최근 5년(2023년~2027년)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 **성과지표:** 산재보험 신속성(%)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목표	69.49	86.19	<변경>	<삭제>	<삭제>
실적	70.38	90.18	-	해당없음	해당없음
달성도	101.3	104.6	-	해당없음	해당없음

- **측정산식 :** (산재신청서 법정기한 내 처리건수의 합 /산재신청서 처리건수의 합) × 100

- **측정방법 및 목표치 설정근거 :** '25년 지표 변경

- **자료수집방법/출처 :** 근로복지공단 전산자료

○ **성과지표:** 산재보험 신속성(건)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목표	<신규>	<신규>	154,485	160,372	164,418
실적	<신규>	153,085	158,556	해당없음	해당없음
달성도	-	-	102.6%	해당없음	해당없음

- **측정산식 :** 당해연도 산재신청서 처리건 중 6개월 이내 처리건수의 합
  * 당해연도 1.1.~ 12.31.까지 처리된 산재신청서 중 6개월(접수일 ~ 처리일) 이내처리건수의 합(건)으로 함
- **측정방법 및 목표치 설정근거 :** 최근 3개년 처리건 중 6개월 이내 처리건의 평균 건수에서 4.5% 증가를 목표 설정
  * '26년 산출된 값(가정)을 적용하여 '27년 목표치 설정('26년 실적 반영 시 '27년 목표치 변경 가능)
- **자료수집방법/출처 :** 근로복지공단 전산자료

(4-2) 성과지표 이외의 최근 4년(2023년~2026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연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3년	-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확인시스템 구축 - 스마트산재보상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재설계(BPR) 및 정보화 전략계획(ISP) 수립
2024년	- 산재보험요율시스템 고도화 사업 추진 - 국가핵심정보시스템 재해복구센터 구축 ISP 수립
2025년	- 스마트산재보상시스템 구축<2년차> - 국가핵심정보시스템 재해복구센터 구축<1년차>
2026년	- 스마트산재보상시스템 구축<3년차>

(4-3) 향후(2027년 이후) 기대효과

○ 법·제도 개선 사항을 즉시 반영하고 새로운 기술을 접목한 다양한 정보처리 환경을 제공하여 업무수행 비용 절감 및 안정적인 정보서비스 제공
○ 근로자 삶의 질 향상 및 사회보장서비스로의 기반 강화
○ 재해근로자의 신속한 보상과 원활한 노동시장 복귀 촉진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예산 배정 → 산재보험 적용징수·보상·재활사업 수행에 필요한 정보화 업무 지원 → 매월 고용노동부에 자금 신청 → 자금 배정 → 매월 경비 등 지급

8) 최근 3년간(2024년~2026년)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8-1) 정부 사업평가

구분	연도	주요내용
재정사업 자율평가	2024년 (회계연도 2023년)	○ 의견 : 상반기 예산집행 실적 미달, 외부 평가 및 수상실적 우수 ○ 결과 : 보통
재정사업 자율평가	2025년 (회계연도 2024년)	○ 의견 : 상반기 예산집행 실적 미달, 전자통지 확대를 통한 예산절감 노력 인정, 행안부 수준평가 등 외부 평가 결과 우수 ○ 결과 : 보통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2026년 (회계연도 2025년)	○ 의견 - **(재정사업 필요성)** 근로자의 산재보험처리를 위한 기반 시스템으로 국가핵심 정보시스템에 해당되며 명확한 법적 근거에서 운영되고 있는 중요사업으로 판단됨 - **(지원규모 적정성)** 정보시스템 사용과 관련된 직접 및 간접 수혜자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이를 토대로 사업 규모 적정성을 연계하여 검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결과 : 사업개선

(8-2) 국회 지적사항: 해당없음

(8-3) 감사원, 총리실, 기타(언론, 시민단체 등) 결과: 해당없음

4. 최근 4년간(2023년~2026년) 결산내역

1) 결산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연도	당초 계획액	수정 계획액 (A)	전년도 이월액	기금변경 증감액 등	계획 현액	집행액 (B)	집행률 (B/Ax100)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3년	15,047	15,047	-	-	15,047	15,047	100.0	-	-
2024년	20,059	20,059	-	-	20,059	20,059	100.0	-	-
2025년	19,114	19,114	-	-	19,114	19,114	100.0	-	-
2026년	23,191	24,693	-	1,502	24,693	12,335	50.0	해당없음	해당없음

2) 연도별 결산 주요사항 : 해당없음

5. 기타 추가자료: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8) 산재보험 징수위탁지원(4058-350)

1. 사업 총괄 정보

1) 사업 기본 정보

(1-1) 일반 정보

소관	실·국	과·팀	기금	계정
고용노동부	산업보건보상정책관	산재보상정책과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

(1-2) 코드·명칭 정보

구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080	08E	4000	4058	350
명칭	사회복지	노동	산재보험	산재보험료 징수관리	산재보험 징수위탁지원

2)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N	Y	N	N	N	N

3)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N	N	Y	Y	N	-	-

4) 기능별(내역사업별)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내역사업명	소관	사업시행주체
산재보험징수위탁지원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국민건강보험공단

2. 지출계획 총괄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사업명	2025년 결산액	2026년 당초계획액 (A)	2026년 수정계획액	2027년 요구액	2027년 정부안액 (B)	증감액 (B-A)	증감률 (B-A) /A×100
산재보험징수위탁지원	18,844	19,348	19,348	19,095	19,095	△253	△1.3

1)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계획액 (수정)	2025년 계획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계획액 (수정)	2026년 계획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18,844	18,844	18,844	-	-	19,348	19,348	11,287	19,095
·산재보험징수위탁지원	18,844	18,844	18,844	-	-	19,348	19,348	11,287	19,095

2) 비목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계획액 (수정)	2025년 계획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계획액 (수정)	2026년 계획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18,844	18,844	18,844	-	-	19,348	19,348	11,287	19,095
·출연금(350-02)	18,844	18,844	18,844	-	-	19,348	19,348	11,287	19,095

3. 사업 설명

1) 사업목적·내용

(1-1) 산재보험징수위탁지원

사업목적	4개 사회보험통합징수업무 통합에 따른 징수업무 효율성 제고 및 국민 편익증진 기여
사업내용	산재보험료 징수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사업비, 인건비, 경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출연

2) 사업개요

(2-1)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사업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6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보험급여의 지급 및 반환금의 반환 2. 차입금 및 이자의 상환 3. 공단에의 출연 4.「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에 따른 용도 5. 재해근로자의 복지 증진 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라 한다)에 대한 출연 7. 보험료징수법 제4조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의 출연 8. 그 밖에 보험사업 및 기금의 관리와 운용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금지출예산 총액의 100분의 8 이상을 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용도로 계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7호에 따라 기금으로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출연하는 금액은 징수업무(고지·수납·체납 업무를 말한다)가 차지하는 비율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5조의 3(출연금의 용도 등) ① 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안전보건공단"이라 한다) 및 건강보험공단은 법 제96조제1항제3호·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출연금(이하 "출연금"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1. 공단: 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 2. 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제6조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 3. 건강보험공단: 보험료징수법 제4조에 따른 징수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단, 안전보건공단 및 건강보험공단(이하 "피출연자"라 한다)이 출연금을 제1항의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③ 피출연자는 출연금을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계정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손실금 보전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2. 11. 12.> ④ 피출연자는 매 분기(分期)의 다음 달 10일까지 그 분기의 출연금 집행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제4조(보험사업의 수행주체)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사업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수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징수업무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강보험공단"이라 한다)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행한다.

	1. 보험료등(제17조 및 제19조에 따른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 제26조에 따른 징수금은 제외한다)의 고지 및 수납 2. 보험료등의 체납관리
추진경위	○ 사회보험 통합징수 추진기획단 출범('08.7.17) : 보건복지부 ○ 「사회보험 징수통합준비위원회」 구성·운영('09.6.12) : 보건복지부 ○ 사회보험 징수통합관련 노・사・정 합의서 서명('09.6.4) ○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징수통합 실무추진단」 출범('09.6.1) ○ 분야별 실무협의회 구성·운영 - 노사정실무협의회 : 정부, 공단, 노조 등 관계자 - 정보화실무협의회 : 복지부 , 노동부, 공단 , 한국고용정보원 등 관계자 ○ 각 공단별 징수통합 실무준비조직 구성·운영 ○ 전환인력 건강보험공단 징수인력 배치('11.1.1) - 건강(1,512명), 연금(712명), 근복공단(317명) ○ 사회보험 통합징수 시작('11.1.1)

(2-2) 사업규모

○ 사업기간 : 2011년 ~ 계속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계획액 기준, 기금운용계획변경 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사업비	17,768	17,824	18,844	19,348	19,095

(2-3)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국민건강보험공단

○ 사업 수혜자 : 사업주 및 노동자, 노무제공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기관명	2027년 지원금액 (백만원)	지원 비율(%)	법적근거
산재보험 징수위탁지원	출연	국민건강보험공단	19,095	100.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6조(기금의 용도)

3) 기능별(내역사업별) 산출 내역

(3-1) 내역사업별 세부 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계획액(수정)(A)	2027년 정부안액(B)	증감 (B-A)
합 계	19,348	19,095	△253
산재보험징수위탁지원	19,348	19,095	△253

○ **산재보험징수업무위탁사업비 (2026년) 19,348 → (2027년) 19,095백만원, △1.3%**

- (설명) 산재보험료 징수업무 수행을 위한 인건비, 사업비, 경비

- (산출)

① 인건비: 12,730백만원

* 기본인건비 11,645백만원(168명x66,714천원×(1.039)
* 퇴직급여비 1,085백만원

② 사업비: 6,110백만원

* 고지관리 3,730백만원
  가. 고지서 발송 월9,131천건 x 430원 x 12개월 x 6.6% = 3,110백만원
  나. 고지서 제작 월 7,411천건 x 94.5원 x 12개월 x 6.6% = 555백만원
  다. 모바일고지수수료 월 741천건 x 104원 x 12개월 x 6.6% = 61백만원
  라. 여비 등 4백만원
* 수납관리 711백만원
  가. 자동이체, 환급금신청안내문 발송 월 227천건 x 430원 x 12개월 x 6.6% = 77백만원
  나. 안내문 제작·인쇄 월 354천건 x 45원 x 12개월 x 6.6% = 13백만원
  다. 수납대행수수료 월 6,868천건 x 113원 x 12개월 x 6.6% = 615백만원
  라. 여비 등 6백만원
* 체납관리 700백만원
  가. 체납 및 압류 통보서 발송 : 월 183천건 x 430원 x 12개월 x 6.6% + 월 210천건 x 2,830원 x 12개월 x 6.6% = 534백만원
  나. 통보서 제작·인쇄 : 월 2,297천건 x 45원 x 12개월 x 6.6% = 82백만원
  다. 예금전자전송수수료 : 1,384천건 x 55원 x 6.6% = 60백만원
  라. 여비 등 24백만원
* 행정지원사업 9백만원
  가. 136백만원 x 6.6%
* 정보화사업 160백만원
*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542백만원
  가. 8,208백만원 x 6.6%
* 특별관리 68백만원
* 고객센터 도급비 190백만원
  가. 월 1,979천원 x 12개월 x 8명

③ 경비: 255백만원

4) 사업효과

(4-1) 최근 5년(2023년~2027년)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해당없음

(4-2) 성과지표 이외의 최근 4년(2023년~2026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연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3년	산재보험료 징수율 99.7 (부과액 69,458억원, 징수액 69,230억원)
2024년	산재보험료 징수율 99.7%(부과액 69,509억원, 징수액 69,322억원)
2025년	산재보험료 징수율 99.7%(부과액 72,858억원, 징수액 72,631억원)
2026년	산재보험료 징수율 98.9%(부과액 41,123억원, 징수액 40,687억원) … 2026.6월말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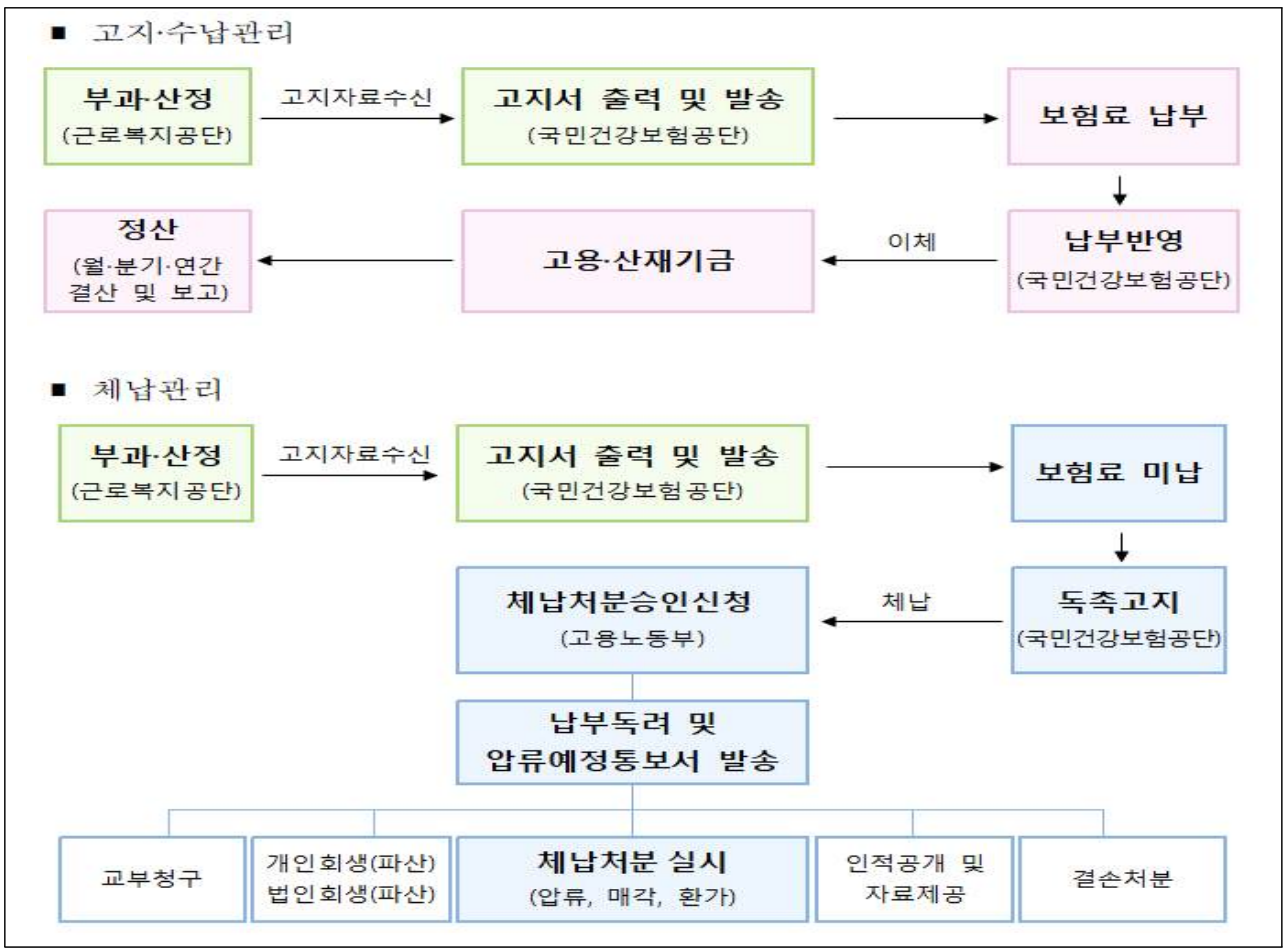
(4-3) 향후(2027년 이후) 기대효과

○ 효율적인 징수·체납업무수행을 통해 징수율 향상 및 보험재정 건전성 도모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8) 최근 3년간(2024년~2026년)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8-1) 정부 사업평가

구분	연도	주요내용
통합재정 사업성과 평가	2025년	○ 의견 : 본 사업은 4대 사회보험 통합징수 체계 운영을 위한 기반사업으로 법적 근거와 집행 안정성은 확인되었으며, 4대 보험 통합 이후 조직과 인력이 통합되어 운영되는 분담 형태의 구조를 가지고 있음 통합 전 대비 징수율은 개선되고 있으나 최근 성과 달성도가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성과 목표의 설정 등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통한 사업 운영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결과 : 사업개선

(8-2) 국회 지적사항: 해당없음

(8-3) 감사원, 총리실, 기타(언론, 시민단체 등) 결과: 해당없음

4. 최근 4년간(2023년~2026년) 결산내역

1) 결산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연도	당초 계획액	수정 계획액 (A)	전년도 이월액	기금변경 증감액 등	계획 현액	집행액 (B)	집행률 (B/Ax100)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3년	17,768	17,768	-	-	17,768	17,768	100.0	-	-
2024년	17,824	17,824	-	-	17,824	17,824	100.0	-	-
2025년	18,844	18,844	-	-	18,844	18,844	100.0	-	-
2026년	19,348	19,348	-	-	19,348	11,287	58.3	해당없음	해당없음

2) 연도별 결산 주요사항

연도	유형	금액 (백만원)	사유
2023년	-	-	해당사항 없음
2024년	-	-	해당사항 없음
2025년	-	-	해당사항 없음
2026년	-	-	해당사항 없음

5. 기타 추가자료: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9) 산재보험 적용부과지원(4058-351)

1. 사업 총괄 정보

1) 사업 기본 정보

(1-1) 일반 정보

소관	실·국	과·팀	기금	계정
고용노동부	산업보건보상정책관	산재보상정책과	산업재해보상보험 및예방기금	-

(1-2) 코드·명칭 정보

구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080	08E	4000	4058	351
명칭	사회복지	노동	산재보험	산재보험료 징수관리	산재보험 적용부과지원

2)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N	Y	N	N	N	N

3)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N	N	Y	Y	N	-	-

4) 기능별(내역사업별)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내역사업명	소관	사업시행주체
산재보험 고용정보부과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운영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근로복지공단
영세사업장보험사무지원 및 플랫폼운영자 보험사무이행지원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근로복지공단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적용확대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근로복지공단

2. 지출계획 총괄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사업명	2025년 결산액	2026년 당초계획액 (A)	2026년 수정계획액	2027년 요구액	2027년 정부안액 (B)	증감액 (B-A)	증감률 (B-A) /A×100
산재보험 적용부과지원	29,540	30,201	30,201	37,061	25,986	△4,215	△14.0

1)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계획액 (수정)	2025년 계획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계획액 (수정)	2026년 계획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32,506	32,506	29,540	-	2,966	30,201	30,201	21,846	25,986
·산재보험 고용정보부과	4,749	4,749	4,749	-	-	4,829	4,829	3,220	4,409
·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운영	7,621	7,621	7,621	-	-	7,778	7,778	5,184	7,636
·영세사업장보험사무지원 및 플랫폼운영자 보험사무 이행지원	17,386	17,386	14,420	-	2,966	15,118	15,118	12,000	12,095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적용확대	2,750	2,750	2,750	-	-	2,476	2,476	1,442	1,846

2) 비목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계획액 (수정)	2025년 계획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계획액 (수정)	2026년 계획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32,506	32,506	29,540	-	2,966	30,201	30,201	21,846	25,986
·민간경상보조(320-01)	17,386	17,386	14,420	-	2,966	15,118	15,118	12,000	12,095
·사업출연금(350-02)	15,120	15,120	15,120	-	-	15,083	15,083	9,846	13,891

3. 사업 설명

1) 사업목적·내용

(1-1) 산재보험 고용정보부과

사업목적	가입 및 보수정보를 철저히 관리하고 가입누락자 등의 방지를 통해 보험재정 건전성 도모 및 사회안전망 강화
사업내용	'11년부터 보험료 산정방식이 근로자 개인별 보수에 기초하여 매월 산정·부과되는 체계로 변경, 이에 따라 근로자 고용정보관리제도(근로자 개인별 고용 및 보수정보 관리, 보험료 부과자료 구축 등)를 도입·시행

(1-2)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운영

사업목적	민원상담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고객에게 신속·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한 국민편익 및 원활한 사업수행 지원
사업내용	산재보험 적용·부과 등에 대한 전화, 인터넷 등 민원상담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고객(고용보험 가입 또는 가입대상 사업주와 노동자)에게 신속·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한 국민편익 및 원활한 사업수행 지원

(1-3) 영세사업장보험사무지원 및 플랫폼운영자 보험사무이행지원

사업목적	행정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주의 보험사무 처리부담 경감 및 적용·징수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보험사무대행제도 운영
사업내용	보험사무대행기관을 통한 보험사무 지원 및 플랫폼운영자에 대한 보험사무 이행지원금 지원

(1-4)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적용확대

사업목적	근로자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함에도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회안전망을 강화
사업내용	적용 누락 노무제공자가 없도록 가입을 강화하며, 무급가족종사자 등 임의가입 대상에 대한 가입 촉진활동으로 사회보험으로서 산재보험제도 역할 수행

2) 사업개요

(2-1)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사업근거	○ 산재보험료 고용정보부과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10(보수총액등의 신고) ① 사업주는 전년도에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등을 매년 3월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8조의2제6항 또는 제48조의4제3항에 따른 보험료 납부자가 사업주,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보험료를 원천공제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사업주는 사업의 폐지·종료 등으로 보험관계가 소멸한 때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등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의 성명 및 주소지 등을 해당 근로자를 고용한 날 또는 해당 예술인·노무제공자의 노무제공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근로자를 새로 고용한 때 2.「고용보험법」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이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때 3.「고용보험법」제77조의6제1항에 다른 노무제공계약(이하 “노무제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때 ④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고용관계 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노무제공계약의 종료일 등을 해당 고용관계 또는 계약이 종료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1.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종료한 때 2. 예술인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종료한 때 3.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계약을 종료한 때 ⑤ 사업주는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가 휴직하거나 다른 사업장으로 전보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신고사항, 신고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사업주 또는 발주자·원수급인이「고용보험법」제15조, 제77조의2제3항, 제77조의5제1항, 제77조의10제1항에 따라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운영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6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보험급여의 지급 및 반환금의 반환 2. 차입금 및 이자의 상환 3. 공단에의 출연 4.「산업안전보건법」제12조에 따른 용도 5. 재해근로자의 복지 증진 6.「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라 한다)에 대한 출연 7. 보험료징수법 제4조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의 출연 8. 그 밖에 보험사업 및 기금의 관리와 운용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금 지출예산 총액의 100분의 8이상을 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용도로 계상하여야 한다. ○ 영세사업장보험사무지원 및 플랫폼운영자 보험사무이행지원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지원 등) 제33조(보험사무대행기관) ① 사업주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로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 「민법」 제3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공인노무사 또는 세무사(이하 “법인등”이라 한다)는 사업주로부터 위임을 받아 보험료 신고, 고용보험 피보험자에 관한 신고 등 사업주가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공단에 대하여 하여야 할 보험에 관한 사무(이하 “보험사무”라 한다)를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 사업주의 범위 및 법인등에 위임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지원 등) 공단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제33조제1항에 따라 보험사무를 대행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과 그 밖의 지원금을 교부할 수 있다. ○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적용확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노무제공자 등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무제공자”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으로서 업무상 재해로부터의 보호 필요성, 노무제공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노무제공자가 사업주로부터 직접 노무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나. 노무제공자가 사업주로부터 일하는 사람의 노무제공을 중개·알선하기 위한 전자적 정보처리시스템(이하 “온라인 플랫폼”이라 한다)을 통해 노무제공을 요청받는 경우 2. “플랫폼 종사자”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노무제공자를 말한다. 3. “플랫폼 운영자”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여 플랫폼 종사자의 노무제공을 중개 또는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4. “플랫폼 이용 사업자”란 플랫폼 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플랫폼 운영자가 플랫폼 종사자의 노무를 직접 제공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플랫폼 운영자를 플랫폼 이용 사업자로 본다.
추진경위	○ 산재보험 고용정보부과 - 사업시작년도 : ‘11년 -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과 함께 보험료 징수체계 변경 및 근로자 고용정보관리제도 도입 * 보험료징수법 개정(‘09.12.30.) 및 하위법령 개정(’10.9.29.) ○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운영 - ’11년 위탁상담에 의한 콜센터(광주) 개소(상담사 110명) - ’12년 콜센터(광주) 위탁상담원 40명 증원

	- ’15년 콜센터(인천) 개소(시간선택제 위탁상담사 92명) - ’16년 콜센터(울산) 개소(시간선택제 위탁상담사 100명) - ’19년 콜센터 상담사 350명 정규직 전환 - ‘23년 근로복지공단 직제규정 개정에 따라 고객센터로 명칭 변경 ○ 영세사업장보험사무지원 및 플랫폼운영자 보험사무이행지원 - 사업시작년도: ’71년(산재보험료 징수가 곤란했던 건설업에 대해 보험료 징수를 위탁하고 징수비용 교부) - ’84년: 소규모 사업주의 보험사무 처리부담을 덜어주고, 산재보험의 가입촉진 및 적정한 징수를 도모하기 위해 보험사무조합으로 변경 - ’05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과 함께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명칭 변경 ○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적용확대 - ’08년 보험설계사를 시작으로 현재 19개 직종의 종사자가 산재보험 적용 -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적용확대 경과 · ’08년 7월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학습지교사, 레미콘기사 · ’12년 5월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 ’16년 7월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 ’19년 1월 전체 건설기계조종사(덤프트럭, 굴삭기, 지게차 등 27개) · ’20년 7월 방문판매원, 대여제품점검원, 방문강사, 가전제품설치원, 특정 품목(시멘트, 철강재 등) 운송 화물차주 · ’21년 7월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 ’22년 7월 유통택배기사, 택배 지·간선 기사, 특정 품목(자동차·곡물 등) 운송 화물차주 · ’23년 7월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통학버스기사, 탁송기사 및 대리주차인, 전체 화물차주,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전속성 요건 폐지에 따른 기존 직종 · ’24년 1월 보험설계사(신협 등 공제모집인), 방과후강사

(2-2) 사업규모

○ 사업기간
(산재보험 고용정보·부과)'11년~계속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운영) ’11년～’14년(운영비), ’15년～(사업비)
(영세사업장보험사무지원 및 플랫폼운영자 보험사무 이행지원) ’71년～’18년(운영비), ’19년～(사업비)
(노무제공자산재보험적용확대) ’20년～계속(신규)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계획액 기준, 기금운용계획변경 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사업비	27,768	30,816	32,506	30,201	25,986

(2-3)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산재보험 고용정보부과,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운영,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적용확대
(민간경상보조) 영세사업장보험사무지원 및 플랫폼운영자 보험사무이행지원

○ 사업시행주체 : 근로복지공단

○ 사업 수혜자 : 사업주 및 근로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기관명	2027년 지원금액 (백만원)	지원 비율(%)	법적근거
산재보험 고용정보부과	출연	근로복지공단	4,409	100.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 및 제96조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운영	출연	근로복지공단	7,636	100.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6조
영세사업장보험사무지원 및 플랫폼운영자 보험사무이행지원	보조	근로복지공단	12,095	100.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7조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적용확대	출연	근로복지공단	1,846	100.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 및 제96조

3) 기능별(내역사업별) 산출 내역

(3-1) 내역사업별 세부 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계획액(수정)(A)	2027년 정부안액(B)	증감 (B-A)
합 계	30,201	25,986	△4,215
산재보험 고용정보부과	4,829	4,409	△420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운영	7,778	7.636	△142
영세사업장보험사무지원 및 플랫폼운영자 보험사무이행지원	15,118	12,095	△3,023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적용확대	2,476	1,846	△630

○ 산재보험 고용정보부과 **(2026년) 4,829 → (2027년) 4,409백만원, △8.7%**

- (산출)

▪ 근로자정보조사원 인건비 3,403백만원

- 기본임금 3,326백만원

· 기본임금 3,326백만원(3,019천원×180명×12월×51%)

- 복리후생비 77백만원

· 복지포인트 37백만원(40만원×180명×51%)

· 자생조직지원비 8백만원(80천원×180명×51%)

· 직무역량계발비 32백만원(350천원×180명×51%)

▪ 사업장안내 507백만원

- 보수총액 신고 안내 382백만원(350원×214만개소×51%)
- 사업장 부과근거 안내 28백만원(350원×16만개소×51%)
- 근로자정보미신고 사업장 신고 안내 82백만원(350원×295천개소)
- 지역별 사업주설명회 15백만원(550천원×55개소×51%)

▪ 보험료 부과자료 확보 39백만원

- 유관기관자료수집 및 자료연계협의, 사업장조사 39백만원(116천원×12월×55개소×51%)

▪ 연계정산 부과근거 안내 55백만원

- 연계정산 내역 통지 55백만원(350원×31만개소×51%)

▪ 상실자 보험료 통지 405백만원

- 상실자 보험료 결과 통지 405백만원(350원×3,786,854개소×60%×51%)

○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운영 (2026년) 7,778백만원 → (2027년) 7,636백만원, △1.8%**

- (산출)

▪ 상용임금 등 6,567백만원

- 기존임금 6,247백만원

· 전일제상담사 3,374백만원(2,960천원×95명×12월)

· 반일제상담사 1,998백만원(1,586천원×105명×12월)

· 선임상담사 678백만원(3,137천원×18명×12월)

· 책임상담사 114백만원(4,762천원×2명×12월)

- 복리후생비 313백만원

· 전일제상담사 150백만원(1,579천원×95명)

· 반일제상담사 127백만원(1,215천원×105명)

· 선임상담사 29백만원(1,611천원×18명)

· 책임상담사 3백만원(1,655천원×2명)

- 상담사 처우개선 7백만원

▪ 일반운영비 등 1,069백만원

- 일반운영비 1,069백만원

○ 영세사업장보험사무재원 및 플랫폼운영자 보험사무이행지원
(2026년) 15,118 → (2027년) 12,095백만원, △20.0%

- (설명) 집행 추이 등을 반영하여 '26년 대비 -20.0% 감액

▪ 보험사무대행지원금 : 10,269백만원

- 보험료납부지원금 : 592백만원
- 피보험자 관리 지원금 : 8,504백만원
- 사업장가입지원금 : 1,093백만원
- 산재보험관리기구지원금: 80백만원

▪ 플랫폼운영자 보험사무 이행지원금 : 1,826백만원

○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적용확대 (2026년) 2,476 → (2027년) 1,846백만원, △25.4%

- (설명) 제도성숙 등에 따른 통지비용 절감을 감안, '26년 대비 25.4% 감액
- (산출)

▪ 가입안내문: 1,015백만원(1,915,094건×530원)

▪ 신고내용통지: 831백만원(1,846,666건×450원)

4) 사업효과

(4-1) 최근 5년(2023년~2027년)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 **성과지표:** 산재보험 신속성(%)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목표	69.49	86.19	<변경>	<삭제>	<삭제>
실적	70.38	90.18	-	해당없음	해당없음
달성도	101.3	104.6	-	해당없음	해당없음

- **측정산식 :** (산재신청서 법정기한 내 처리건수의 합 /산재신청서 처리건수의 합) × 100
- **측정방법 및 목표치 설정근거 :** '25년 지표 변경
- **자료수집방법/출처 :** 근로복지공단 전산자료

○ **성과지표:** 산재보험 신속성(건)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목표	<신규>	<신규>	154,485	160,372	164,418
실적	<신규>	153,085	158,556	해당없음	해당없음
달성도	-	-	102.6%	해당없음	해당없음

- **측정산식 :** 당해연도 산재신청서 처리건 중 6개월 이내 처리건수의 합
  * 당해연도 1.1.~ 12.31.까지 처리된 산재신청서 중 6개월(접수일 ~ 처리일) 이내처리건수의 합(건)으로 함

- **측정방법 및 목표치 설정근거 :** 최근 3개년 처리건 중 6개월 이내 처리건의 평균 건수에서 4.5% 증가를 목표 설정
  * '26년 산출된 값(가정)을 적용하여 '27년 목표치 설정('26년 실적 반영 시 '27년 목표치 변경 가능)

- **자료수집방법/출처 :** 근로복지공단 전산자료

(4-2) 성과지표 이외의 최근 4년(2023년~2026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산재보험 고용정보부과)

연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3년	- 221만개 사업장에 대한 매월 보험료 부과
2024년	- 224만개 사업장에 대한 매월 보험료 부과
2025년	- 226만개 사업장에 대한 매월 보험료 부과
2026년	- 225만개 사업장에 대한 매월 보험료 부과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운영)

연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3년	- 상담응대건수 : 3,317,881건, 응대율 95.7% - 직접민원업무처리(증명원 발급 등) : 76,730건
2024년	- 상담응대건수 : 3,417,808건, 응대율 92.9% - 직접민원업무처리(증명원 발급 등) : 164,439건
2025년	- 상담응대건수 : 3,149,384건, 응대율 90.1% - 직접민원업무처리(증명원 발급 등) : 230,159건
2026년	- 상담응대건수 : 1,839,686건, 응대율 84.9% - 직접민원업무처리(증명원 발급 등) : 296,862건

(영세사업장보험사무재원 및 플랫폼운영자 보험사무이행지원)

연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3년	- 위탁사업장 수 926천개소, 위탁률 31.4%, 지원금액 12,772백만원
2024년	- 위탁 사업장수 990천개소, 위탁률 33.0%, 지원금액 15,618백만원
2025년	- 위탁 사업장수 1,059천개소, 위탁률 33.0%, 지원금액 14,420백만원
2026년	- 위탁 사업장수 1,106천개소, 위탁률 32.3%, 지원금액 9,437백만원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적용확대)

연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3년	- 노무제공자 17개 직종, 총 적용자수 1,193,801명
2024년	- 노무제공자 19개 직종, 총 적용자수 1,438,067명
2025년	- 노무제공자 19개 직종, 총 가입자수 1,463,897명
2026년	- 노무제공자 19개 직종, 총 가입자수 1,503,638명

(4-3) 향후(2027년 이후) 기대효과

○ **(산재보험 고용정보부과)**
- 근로자의 월보수, 입·퇴사 등 근로자 가입정보 관리를 통해 적용근로자 누락방지 등 사회안전망 및 보험재정 건전성 강화

○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운영)**
- 고객센터 운영 효율화 및 상담 인프라 확대를 통한 상담서비스 품질 향상 및 고객만족도 제고

○ **(영세사업장보험사무지원)**
- 보험사무 위탁률 제고를 통한 소규모 사업주의 보험사무 처리부담 경감 및 적용·징수업무의 효율성 제고

○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적용확대)
- 노무제공자 등 산업재해로부터 소외되었던 취약계층의 산재보험제도 편입 확대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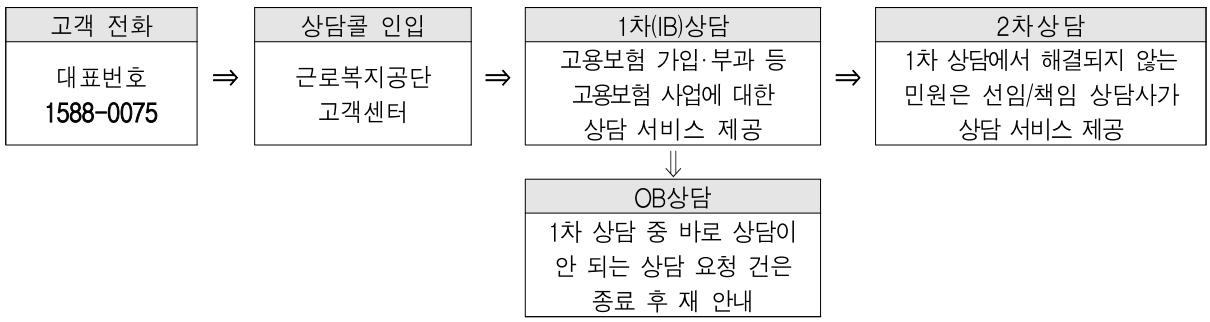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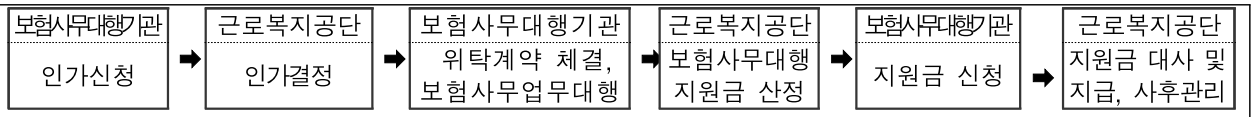
(산재보험 고용정보부과)
- 매년 3.15까지 보수총액신고서 제출(사업주)→월평균보수를 근거로 월별 보험료 산정 (근로복지공단)
- 근로자 입·퇴사 및 전근 등 고용정보와 보수신고(사업주)→근로자 고용정보 확인 및 내역 통지(근로복지공단)→월별보험료 산정(근로복지공단)

구 분		신고종류	기한	관련법령
고용정보관리	입 사	자격취득 신고서	다음달 15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10 제1항~제8항
	퇴 사	자격상실 신고서	〃	
	휴 직	휴직등신고서	14일 이내	
	전근(전보)	전보신고서	〃	
	정보 변경	정보변경신고서	〃	
	일 용 직	근로내용확인신고서	다음달 15일	
보수관리	보수총액신고	보수총액신고서	매년 3. 15	
	보수총액 착오신고	보수총액 수정신고	변경사유 발생 시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운영)



(영세사업장보험사무지원)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사업목적에 맞게 보험사무대행기관을 인가하고, 인가받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보험관계성립신고, 피보험자신고, 보수총액신고 등 보험사무 업무를 수행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을 산정 및 지급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적용확대)

보험관계 성립신고	○ 보험관계 성립신고 : 성립일(최초 종사자 채용일)로부터 14일 이내 – 근로자 종사 관리번호와 별도 성립 필요
월 보수액 신고	○ 노무제공 시 : 월 보수액 신고 ○ 휴업, 정보변경 시 : 휴업 등 신고(기준보수를 적용하는 노무제공자가 부과고지 사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한함), 내용변경신고 ○ 단기노무제공자 :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
월별보험료산정 부과·고지·납부	○ 월별보험료 산정 : 개인별 월 보수액 × 직종별 보험료율 – 건설기계조종사, 건설현장 화물차주는 기준보수 적용 ○ 고 지 :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도착 ○ 납 부 : 다음 달 10일까지

8) 최근 3년간(2024년~2026년)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8-1) 정부 사업평가

구분	연도	주요내용
보조사업 연장평가	2024년	○ 의견 : 사업방식 변경 ○ 결과 :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효과 등에 대한 점검·관리를 통해 사업 내실화 필요, 단순 편익을 위한 대행 서비스 이용 수요에 대한 경계가 필요
자율평가 등	2026년	○ 의견 : 다층 전달체계로 인해 정책부처·집행기관·민간 대행기관 간 책임 주체가 분산되어 정책성과에 대한 책임성 확보에 한계, 지정형 보조사업 방식은 수행 효율성과 비용 적정성에 대한 외부 검증을 제한할 가능성 잔존 ○ 결과 : 감액

(8-2) 국회 지적사항: 해당없음

(8-3) 감사원, 총리실, 기타(언론, 시민단체 등) 결과: 해당없음

4. 최근 4년간(2023년~2026년) 결산내역

1) 결산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연도	당초 계획액	수정 계획액 (A)	전년도 이월액	기금변경 증감액 등	계획 현액	집행액 (B)	집행률 (B/Ax100)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3년	27,768	27,768	-	-	27,768	27,768	100.0	-	-
2024년	30,816	30,816	-	-	30,816	30,816	100.0	-	-
2025년	32,506	32,506	-	-	32,506	29,540	90.9	-	2,966
2026년	30,201	30,201	-	-	30,201	21,846	72.3	해당없음	해당없음

2) 연도별 결산 주요사항

연도	유형	금액 (백만원)	사유
2025년	불용	2,966	지원대상 근로자·사업장 수 증가율 둔화, 지급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과세소득 3억원 이상 사업장 신고분 증가로 잔여 예산 2,966백만원 발생

5. 기타 추가자료: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10)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4060-350)

1. 사업 총괄 정보

1) 사업 기본 정보

(1-1) 일반 정보

소관	실·국	과·팀	기금	계정
고용노동부	산업보건 보상정책관	산재보상정책과	산업재해보상 보험및예방기금	-

(1-2) 코드·명칭 정보

구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080	08E	4000	4060	350
명칭	사회복지	노동	산재보험	산재근로자복지(융자)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2)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N	Y	N	N	N	N

3)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Y	N	N	N	Y	-	1.25

4) 기능별(내역사업별)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내역사업명	소관	사업시행주체
생활안정자금융자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융자 운영비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근로복지공단

2. 지출계획 총괄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사업명	2025년 결산액	2026년 당초계획액 (A)	2026년 수정계획액	2027년 요구액	2027년 정부안액 (B)	증감액 (B-A)	증감률 (B-A) /A×100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20,514	14,345	14,345	13,303	13,298	△1,047	△7.9

1)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계획액 (수정)	2025년 계획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계획액 (수정)	2026년 계획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20,859	20,859	20,514	-	345	14,345	14,345	11,139	13,298
·생활안정자금 융자	20,859	20,859	20,514	-	345	14,299	14,299	11,100	13,257
·생활안정자금 융자 운영비	-	-	-	-	-	46	46	39	41

2) 비목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계획액 (수정)	2025년 계획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계획액 (수정)	2026년 계획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20,859	20,859	20,514	-	345	14,345	14,345	11,139	13,298
·기타민간융자금(450-04)	20,859	20,859	20,514	-	345	14,299	14,299	11,100	13,257
·사업출연금(350-02)	-	-	-	-	-	46	46	39	41

3. 사업 설명

1) 사업목적·내용

(1-1)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목적	산재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산재근로자 및 그 가족, 산재사망근로자의 유족을 대상으로 긴급자금(의료·혼례·장례·사업자금) 및 필요자금(차량구입·주택이전)을 적기에 신속한 융자의 형태로 지원
사업내용	산재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산재근로자 및 그 가족, 산재사망근로자의 유족을 대상으로 긴급자금(의료·혼례·장례·사업자금) 및 필요자금(차량구입·주택이전)을 적기에 신속한 융자의 형태로 지원

(1-2) 생활안정자금 융자 운영비

사업목적	사업 수행 주체인 근로복지공단에 사업 운영을 위한 비용 지원
사업내용	사업 수행 주체인 근로복지공단에 사업 운영을 위한 비용 지원

2) 사업개요

(2-1)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사업근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2조(근로복지사업)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사업을 한다. 1.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원활한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보험시설의 설치·운영 가. 요양이나 외과 후 처치에 관한 시설 나. 의료재활이나 직업재활에 관한 시설 2. 장학사업 등 재해근로자와 그 유족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3.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사업
추진경위	○ **(생활안정자금 융자)** - '87년 : 산재근로자 융자를 통한 생활안정 지원 개시 - '97년 : 대학생 학자금 융자 지원 - '01년 : 융자이자율을 3%로 인하 - '02년 : 산재장해 제9급까지 대상 확대 및 대부한도 30백만원으로 확대 - '04년 : 담보대부 약정해지로 신용대부만 시행(5백만원) - '06년 : 1세대당 대부한도 상향조정(5백만원 → 10백만원) - '10년 : 대학학자금 융자대상자에 5년 이상 장기요양 중인 이황화탄소(CS2) 질병판정자를 지원 대상으로 추가 - '12년 : 1세대당 융자한도 상향조정(1,000만원 → 1,500만원) - '14년 : 1세대당 융자한도 상향조정(1,500만원 → 2,000만원), 대상확대(요양 중 저임금근로자 포함), 취업안정자금 신설 - '15년 : 이자율 인하 (3% → 2%) - '17년 : 생활안정 융자대상 소득기준(중위소득 이하) 도입 및 내수활성화를 위한 융자이율 한시 인하(2%→1.5%, 6월~12월) - '19년 : 상환조건 다양화(기존 2년거치 3년 상환→ 1년거치4년 상환, 2년거치 3년 상환, 3년거치 2년 상환 중 택1) - '20년 : 이자율 인하 (2% → 1.25%) - '24년 : 신용보증료율 인상(0.7%→1.0%), 창업점포지원사업 종료 - '25년 : 융자이율 한시 인하(1.25%→1.0%), 1세대당 융자한도 한시 상향조정(2,000만원 → 3,000만원), 융자종목 확대(자녀양육비 신설) * 융자 이율 및 한도 '25.3.~12. 기간 한시적용

(2-2) 사업규모

○ 사업기간 : 1987~계속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계획액 기준, 기금운용계획변경 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사업비	15,744	14,299	20,859	14,345	13,298

(2-3)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융자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위탁)

○ 사업 수혜자 : 산재근로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기관명	2027년 지원금액(백만원)	지원 비율(%)	법적근거
생활안정자금	융자	근로복지공단	13,257	100.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2조
생활안정자금융자 운영비	출연	근로복지공단	41	100.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2조

3) 기능별(내역사업별) 산출 내역

(3-1) 내역사업별 세부 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계획액(수정)(A)	2027년 정부안액(B)	증감 (B-A)
합 계	14,345	13,298	△1,047
생활안정자금 융자	14,299	13,257	△1,042
생활안정자금 융자 운영비	46	41	△5

○ **생활안정자금 융자 (2026년) 14,299 → (2027년) 13,257백만원, △7.3%**

- (설명)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감액 요구
- (산출)
  계속소요: 9,619백만원 × 1,263백만원 = 12,148백만원
  특이소요: 자녀양육비 5,272백만원 × 210명 = 1,109백만원

○ 생활안정자금 융자 운영비 **(2026년) 46 → (2027년) 41백만원, △10.9%**

- (설명)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운영비
- (산출) 생활안정자금 융자 운영비 41백만원

4) 사업효과

○ **성과지표:** 산재보험 신속성(%)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목표	69.49	86.19	<변경>	<삭제>	<삭제>
실적	70.38	90.18	-	해당없음	해당없음
달성도	101.3	104.6	-	해당없음	해당없음

- **측정산식 :** (산재신청서 법정기한 내 처리건수의 합 /산재신청서 처리건수의 합) × 100
- **측정방법 및 목표치 설정근거 :** '25년 지표 변경
- **자료수집방법/출처 :** 근로복지공단 전산자료

○ **성과지표:** 산재보험 신속성(건)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목표	<신규>	<신규>	154,485	160,372	164,418
실적	<신규>	153,085	158,556	해당없음	해당없음
달성도	-	-	102.6%	해당없음	해당없음

- **측정산식 :** 당해연도 산재신청서 처리건 중 6개월 이내 처리건수의 합
  * 당해연도 1.1.~ 12.31.까지 처리된 산재신청서 중 6개월(접수일 ~ 처리일) 이내처리건수의 합(건)으로 함
- **측정방법 및 목표치 설정근거 :** 최근 3개년 처리건 중 6개월 이내 처리건의 평균 건수에서 4.5% 증가를 목표 설정
  * '26년 산출된 값(가정)을 적용하여 '27년 목표치 설정('26년 실적 반영 시 '27년 목표치 변경 가능)
- **자료수집방법/출처 :** 근로복지공단 전산자료

(4-2) 성과지표 이외의 최근 4년(2023년~2026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연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3년	- 생활안정자금 융자 수혜인원 1,637명
2024년	- 생활안정자금 융자 수혜인원 1,515명
2025년	- 생활안정자금 융자 수혜인원 2,185명
2026년	- 생활안정자금 융자 수혜인원 1,033명

(4-3) 향후(2027년 이후) 기대효과

○ **약 2,000명의 산재근로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필요시기에 장기 저리로 융자하여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도모**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사업계획수립 → 자금융자신청 → 적격자 심사 → 선정결과 통보 → 근로자신용보증 연계 → 융자금 대부 → 원리금 및 이자 납부

8) 최근 3년간(2024년~2026년)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8-1) 정부 사업평가: 해당없음

구분	연도	주요내용
자율평가	2024년	○ 의견 : 보통 ○ 결과 : 보통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2025년	○ 의견 : 사업개선 ○ 결과 : 산재근로자 및 가족의 생계지원 및 경제적 부담 완화 측면에서 높은 정합성을 보이나 심리적 부담 경감과 사회복귀 효과는 파급효과로서 방향을 명확히 하는 방향 보완이 필요, 영비의 효율적 운영에 대한 점검 필요

(8-2) 국회 지적사항

구분	연도	주요내용
예결위	2024년	○ 지적 : 산재근로자의 원활한 생계유지를 목적하는 만큼 융자사유를 폭넓게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조치 : '25년 1월 '자녀양육비' 융자종류(13세 미만의 자녀의 양육에 드는 비용) 신설

(8-3) 감사원, 총리실, 기타(언론, 시민단체 등) 결과: 해당없음

4. 최근 4년간(2023년~2026년) 결산내역

1) 결산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연도	당초 계획액	수정 계획액 (A)	전년도 이월액	기금변경 증감액 등	계획 현액	집행액 (B)	집행률 (B/Ax100)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3년	15,744	15,744	-	-	15,744	15,617	99.2	-	127
2024년	14,299	14,299	-	-	14,299	14,265	99.8	-	34
2025년	14,299	20,589	-	6,560	20,859	20,514	98.3	-	345
2026년	14,345	14,345	-	-	14,345	11,139	77.7	해당없음	해당없음

2) 연도별 결산 주요사항

연도	유형	금액 (백만원)	사유
2023년	불용	127	(생활안정자금) 매월 배정받은 금액 중 융자가 불가한 소액 자금에 대한 불용처리 27벡만원 (창업점포지원) 기존지원자 이전계약 수요 없음으로 불용처리 100백만원
2024년	불용	34	매월 배정받은 금액 중 융자가 불가한 소액 자금에 대한 불용처리
2025년	불용	345	집행잔액에 대한 불용처리

5. 기타 추가자료: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11) 클린사업장조성지원(4151-350)

1. 사업 총괄 정보

1) 사업 기본 정보

(1-1) 일반 정보

소관	실·국	과·팀	기금	계정
고용노동부	산업안전 예방정책관	산업안전기준과	산재기금	-

(1-2) 코드·명칭 정보

구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080	08E	4100	4151	350
명칭	사회복지	노동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재정지원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2)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N	Y	N	N	N	N

3)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N	N	Y	N	N	40~90	-

4) 기능별(내역사업별)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내역사업명	소관	사업시행주체
안전일터조성지원	고용노동부 산업안전예방정책관 산업안전기준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감독국 건설산재예방감독과	
	고용노동부 중대재해감축로드맵이행추진단 로드맵이행총괄팀	
안전동행지원사업	고용노동부 산업안전예방정책관 산업안전기준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강일터조성지원	고용노동부 산업보건보상정책관 산업보건정책과 직업건강증진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화재·폭발사고 취약사업장 특화지원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감독국 화학사고예방조사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클린사업장 사후관리 및 사업수행경비	고용노동부 산업안전예방정책관 산업안전기준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 지출계획 총괄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사업명	2025년 결산액	2026년 당초계획액 (A)	2026년 수정계획액	2027년 요구액	2027년 정부안액 (B)	증감액 (B-A)	증감률 (B-A) /A×100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496,521	537,093	537,093	501,227	501,227	△35,866	△6.7

1)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계획액 (수정)	2025년 계획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계획액 (수정)	2026년 계획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496,792	496,792	496,521	-	271	537,093	537,093	226,429	501,227
· 안전일터조성지원	110,707	110,707	110,659	-	48	160,607	160,607	53,692	176,827
· 안전동행지원사업	332,000	332,000	331,999	-	1	332,000	332,000	142,825	231,000
· 건강일터조성지원	50,825	50,825	50,824	-	1	40,825	40,825	27,439	49,825
· 화재·폭발사고 취약사업장 특화지원	-	-	-	-	-	-	-	-	40,080
· 클린사업장 사후관리 및 사업수행경비	3,260	3,260	3,039	-	221	3,661	3,661	2,473	3,495

2) 비목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계획액 (수정)	2025년 계획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계획액 (수정)	2026년 계획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496,792	496,792	496,521	-	271	537,093	537,093	226,429	501,227
·사업출연금(350-02)	496,792	496,792	496,521	-	271	537,093	537,093	226,429	501,227

3. 사업 설명

1) 사업목적·내용

(1-1) 안전일터조성지원

사업목적	기술·재정적 능력이 취약한 중소사업장(상시 50인 미만, 중기법상 소기업, 50억원 미만 건설현장) 등의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
사업내용	중소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건설현장 산재예방 안전시설, 제조·서비스업 고위험 개선, 스마트 안전장비 보급, 소규모 특화 안전일터 조성지원 등 재정 지원

(1-2) 안전동행지원사업

사업목적	중소사업장에 대한 위험공정개선 지원을 통해 근원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원·하청간 안전관리 수준 격차 완화 등 산업안전분야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여 산재예방효과 제고
사업내용	위험성평가 결과, 위험성이 높은 제조공정을 안전하게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기계설비 도입 등 공정개선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1-3) 건강일터조성지원

사업목적	화학물질, 조리부산물 등 각종 유해물질 노출 예방과 폭염·한파로 인한 온열질환·한랭질환 예방으로 근로자 건강 보호
사업내용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예방의 기본이 되는 공학적 설비(국소배기장치) 및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 예방과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 예방을 위한 온열질환·한랭질환 예방장비 구매 등 비용 지원

(1-4) 화재·폭발사고 취약사업장 특화지원

사업목적	화재·폭발 취약 중소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위해 화재·폭발 예방 시설·장비 등을 보급하여 대형사고 예방 및 사고사망 감축
사업내용	화재·폭발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장비 등 설치·교체 관련 소요비용 지원

(1-5) 클린사업장 사후관리 및 수행경비

사업목적	지원설비의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하고 재해예방 성능 유지 여부 확인 및 기술지도를 통해 산업재해예방에 기여
사업내용	부정수급 예방활동 및 후속조치를 통한 공공재정 손실 최소화

2) 사업개요

(2-1)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사업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정부의 책무)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1. 산업 안전 및 보건 정책의 수립 및 집행 2. 산업재해 예방 지원 및 지도 3.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기준 마련, 지도 및 지원 4. 사업주의 자율적인 산업 안전 및 보건 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지원 5.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홍보·교육 등 안전문화 확산 추진 6.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술의 연구·개발 및 시설의 설치·운영 7.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관리 8. 산업 안전 및 보건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및 지도·감독 9. 그 밖에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 및 건강의 보호·증진 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그 밖의 관련 단체 및 연구기관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산업재해 예방의 재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재원(財源)은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에서 지원한다. 1. 제11조 각 호에 따른 시설의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산업재해예방 관련 사업 및 비영리법인에 위탁하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의 사업비 ○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 (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보조·지원) ① 정부는 사업주, 사업주단체, 근로자단체,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 연구기관 등이 하는 산업재해 예방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이하 "보조·지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보조·지원이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① 정부는 중대재해를 예방하여 시민과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중대재해의 종합적인 예방대책의 수립·시행과 발생원인 분석 2. 사업주, 법인 및 기관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 3. 사업주, 법인 및 기관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 지원 및 지도 4.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의 시행 ② 정부는 사업주, 법인 및 기관에 대하여 유해·위험 시설의 개선과 보호 장비의 구매, 종사자 건강진단 및 관리 등 중대재해 예방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추진경위	○ 1995～1996 상반기 : 산업재해예방 특별사업 ○ 1996 하반기～1999 : 산업안전선진화 3개년 계획(대통령 보고) ○ 2000～2004 : 제1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 계획(1999. 12월) ○ 2001. 2월 : 노동부 업무보고 ○ 2001. 3월 : 제12회 국무회의시 대책수립 지시(대통령 보고) ○ 2001. 8월 : 국무회의 시 산업재해 및 구인난 해소 대책의 일환으로 클린사업 추진계획 보고 ○ 2005～2009 : 제2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 계획(2004. 12월) ○ 2010～2014 : 제3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 계획(2010. 3월) ○ 2015～2019: 제4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 계획(2015. 1월) ○ 2020～2024: 제5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 계획(2020. 5월) ○ 2022. 11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 2025. 9월: 노동안전 종합대책

(2-2) 사업규모

○ 사업기간 : 계속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계획액 기준, 기금운용계획변경 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사업비	506,974	471,792	496,792	537,093	501,227

(2-3)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사업 수혜자 : 산재보험가입 사업주 및 근로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기관명	2027년 지원금액 (백만원)	지원 비율(%)	법적근거
안전일터 조성지원	출연	한국산업 안전보건공단	176,827	50~9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 제96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
안전동행 지원사업	출연	한국산업 안전보건공단	231,000	40~5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 제96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
건강일터 조성지원	출연	한국산업 안전보건공단	49,825	70~8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 제96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
화재·폭발사고 취약사업장 특화지원	출연	한국산업 안전보건공단	40,080	70~8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 제96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
클린사업장 사후관리 및 사업수행경비	출연	한국산업 안전보건공단	3,495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 제96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

3) 기능별(내역사업별) 산출 내역

(3-1) 내역사업별 세부 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계획액(수정)(A)	2027년 정부안액(B)	증감 (B-A)
합 계	537,093	501,227	△35,866
안전일터조성지원	160,607	176,827	16,220
안전동행지원사업	332,000	231,000	△101,000
건강일터조성지원	40,825	49,825	9,000
화재·폭발사고 취약사업장 특화지원	-	40,080	순증
클린사업장 사후관리 및 사업수행경비	3,661	3,495	△166

○ **안전일터조성지원 (2026년) 160,607 → (2027년) 176,827백만원, +10.1%**

- (설명) 신규 사업인 '종합 컨설팅 패키지 지원' 도입 및 기존 사업인 '제조·서비스업', '소규모 특화 안전일터 조성지원(떨어짐)' 물량 증가, '스마트 안전장비' 물량 감소

- (산출)
  * 건설업 : ('26년) 53,467 → ('27년) 53,467백만원(5,994개소 × 8.92백만원)(전년 동)
  * 제조·서비스업 : ('26년) 27,240 → ('27년) 30,000백만원(3,182→3,504개소× 8.56백만원) (+2,760백만원, +322개소)
  * 스마트 안전장비 : ('26년) 37,000 → ('27년) 30,000백만원(2,689개소→2,180개소 × 13.76백만원) (△7,000백만원, △509개소)
  * 소규모 특화 안전일터 조성지원 : 58,200백만원, 7,308개소(+15,300백만원, +1,715개소)
    · (떨어짐) : ('26년) 9,500 → ('27년) 24,800백만원(1,065→2,780개소 × 8.92백만원) (+15,300백만원, +1,715개소)
    · (끼임) : ('26년) 28,700 → ('27년) 28,700백만원(3,296개소×8.71백만원)(전년 동)
    · (부딪힘) : ('26년) 4,700 → ('27년) 4,700백만원(1,232개소×3.84백만원)(전년 동)
  * 종합 컨설팅 패키지 지원(신규) : ('27년) 5,160백만원(6,000개소 × 0.86백만원)(순증)

○ 안전동행지원사업 **(2026년) 332,000 → (2027년) 231,000백만원, △30.4%**

- (설명) 통합재정평가 결과 '감액' 의견 반영

- (산출)
  *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수준 격차완화 : ('26년) 300,000 → ('27년) 206,700백만원(3,660→2,520개소 × 82백만원) (△93,300백만원, △1,140개소)
  * 원하청 안전보건 상생지원 : ('26년) 32,000 → ('27년) 24,300백만원(488→370개소 × 65.5백만원) (△7,700백만원, △118개소)

○ 건강일터조성지원 **(2026년) 40,825 → (2027년) 49,825백만원, △22.0%**

- (설명) '온열질환 예방장비' 지원 물량 증가 및 '한랭질환 예방장비' 지원 신규 도입

- (산출)
  * 국소배기장치 : ('26년) 12,825 → ('27년) 12,825백만원, 293개소
    · (급성중독 화학물질) : ('26년) 11,000 → ('27년) 11,000백만원(220개소 × 50백만원)
    · (조리부산물) : ('26년) 1,825 → ('27년) 1,825백만원(73개소 × 25백만원)
  * 온열질환 예방장비 : ('26년) 28,000 → ('27년) 35,000백만원(8,960→11,120개소 × 3.15백만원)
    (+7,000백만원, +2,160개소)
  * 한랭질환 예방장비(신규) : ('27년) 2,000백만원(1,250개소 × 1.6백만원)(순증)

○ 화재·폭발사고 취약사업장 특화지원 **(2026년) - → (2027년) 40,080백만원, 순증**

- (설명) 최근 대규모 인명피해를 야기한 화재·폭발 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 신규 도입

- (산출)
  * 화재·폭발사고 취약사업장 특화지원(신규) : ('27년) 40,080백만원(2,400개소 × 16.7백만원)(순증)

○ 클린사업장 사후관리 및 사업수행경비 **(2026년) 3,661 → (2027년) 3,495백만원, △4.5%**

- (설명) 사업수행경비 감액

- (산출)
  * 안전일터조성지원 : ('26년) 1,908 → ('27년) 1,717백만원(1식)(△191백만원)
  * 안전동행지원사업 : ('26년) 1,352 → ('27년) 1,217백만원(1식)(△135백만원)
  * 소규모 특화 안전일터 조성지원 : ('26년) 401 → ('27년) 361백만원(1식)(△40백만원)
  * 화재·폭발사고 취약사업장 특화지원(신규) : ('27년) 200백만원(1식)

4) 사업효과

(4-1) 최근 5년(2023년~2027년)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 **성과지표: 클린사업장 사고재해율 감소실적(제조·서비스업 등)(세부사업 지표)**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목표	신규	신규	신규	신규	16.8
실적	-	-	-	-	해당없음
달성도	-	-	-	-	해당없음

- **측정산식 :** [(지원 전 1년간 사고재해율 - 지원 후 1년간 사고재해율) / 지원 전 1년간 사고재해율] × 100

- **측정방법 및 목표치 설정근거**
  · 측정방법 : 보조지원 사업장을 대상으로 보조지원 일자 전후 1년간 사고재해율의 차이를 비교하여 사고사망 감소성과 측정
  · 목표치 설정 근거 : 최근 5년간('22년~'26년) 실적('26년은 목표치 적용)의 평균치(16.02%)에 5%를 상향하여 '27년 목표치 설정

- **자료수집방법/출처 :** 산재보험 가입 및 요양 승인 통계

○ **성과지표: 클린사업장 사고재해율 감소실적(건설업)(세부사업 지표)**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목표	신규	신규	신규	신규	8.6
실적	-	-	-	-	해당없음
달성도	-	-	-	-	해당없음

- **측정산식 :** 미지원 사업장의 떨어짐 재해자 비율(%) - 지원사업장의 떨어짐 재해자 비율(%)

- **측정방법 및 목표치 설정근거**
  · 측정방법 : 소규모 건설현장은 공사기간이 짧아 지원 전·후 1년간 재해율 비교 등이 어려움. 따라서, 지원사업장과 동일조건의 미지원 사업장(대조군)을 추출하여 대조군의 떨어짐 재해 발생비율과 지원사업장 떨어짐 재해 발생비율 격차(저감성과)를 비교
  · 목표치 설정 근거 : 최근 5년간('22~'26년) 실적('26년은 목표치 적용)의 평균치를 상향하여 '26년 목표치 설정

- **자료수집방법/출처 :** 산재보험 가입 및 요양 승인 통계

○ **성과지표: 지원사업장 사고사망만인율(‰)(하향지표)(프로그램 지표)**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목표	0.54	0.50	0.45	0.42	삭제
실적	0.51	0.48	0.42	해당없음	-
달성도	105.9	104.0	106.7	해당없음	-

- **측정산식 :** 지원사업장의 사망사고 예방 실적(%)=(A-B)/A×100
  · A : 공단 지원사업장* 사고사망만인율(‰)
  * 재해발생사업장(중대재해조사 및 감독 대상 사업장 등) 지원 실적은 제외
  · B : 전체 사고사망만인율(‰)

- **측정방법 및 목표치 설정근거**
  · 목표치 설정 근거 :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따라 전체 사업장의 사고사망만인율 감소 목표 비율*을 준용**하여 목표치 설정
  * ('26) 0.37 → ('27) 0.35 → ('28) 0.33 → ('29) 0.31 → ('30) 0.29
  ** 종합대책 목표치의 전년대비 감소율을 성과지표 목표치에 적용

- **자료수집방법/출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성과지표: 중상해사고재해율(%)(하향지표)**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목표	0.084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실적	0.082	-	-	-	-
달성도	102.4	-	-	-	-

- **측정산식 :** 1프로그램 1성과 지표 원칙에 따른 지표 삭제

- **측정방법 및 목표치 설정근거 :** 1프로그램 1성과 지표 원칙에 따른 지표 삭제

- **자료수집방법/출처 :** 1프로그램 1성과 지표 원칙에 따른 지표 삭제

○ 성과지표: 50인 미만 사업장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연계율(%)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목표	79.8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실적	71.2	-	-	-	-
달성도	89.2	-	-	-	-

- **측정산식 :** 1프로그램 1성과 지표 원칙에 따른 지표 삭제

- **측정방법 및 목표치 설정근거 :** 1프로그램 1성과 지표 원칙에 따른 지표 삭제

- **자료수집방법/출처 :** 1프로그램 1성과 지표 원칙에 따른 지표 삭제

(4-2) 성과지표 이외의 최근 4년(2023년~2026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연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3년	- 유해위험요인시설개선 : 15,956개소 - 안전투자혁신사업 : 위험기계 1,347대, 위험공정 2,581개소 - 스마트 안전장비 보급·확산 : 1,548대(1,132개소) - 건강일터조성지원 : 국소배기장치 595개소, 휴게시설 1,139개소
2024년	- 유해위험요인시설개선 : 11,175개소 - 안전동행지원사업 : 4,029개소 - 스마트 안전장비 보급·확산 : 2,669개소 - 건강일터조성지원 : 국소배기장치 606개소
2025년	- 안전일터조성지원 : 8,350개소 - 안전동행지원사업 : 4,592개소 - 건강일터조성지원 : 국소배기장치 590개소, 온열질환 21,202개소
2026.7월	- 안전일터조성지원 : 4,439개소 - 안전동행지원사업 : 2,693개소 - 건강일터조성지원 : 국소배기장치 329개소, 온열질환 7,498개소

(4-3) 향후(2027년 이후) 기대효과

○ 기술·재정적 능력이 취약한 중소사업장(상시 50인 미만, 중기법상 소기업, 50억원 미만 건설현장 등)의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

· 10인 미만 사업장 및 50억원 미만 건설현장 등 소규모 사업장의 3대 사고사망(떨어짐·끼임·부딪힘) 예방을 위한 안전설비 등 지원으로 사고사망 감축에 기여

· 재정지원 신청 사업장 대상 안전보건 컨설팅을 통해 안전·보건 취약요소 발굴 및 사고예방을 위한 적정품목·공정개선 연계 등 산업재해 예방효과 극대화

○ 중소사업장 안전보건체계 구축에 필요한 안전보건시설투자 지속지원을 통한 근원적 안전성 확보 및 사고사망 감축 등 산업재해 예방

· 상생협약 또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참여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으로 산업안전보건분야 원·하청 이중구조 및 안전보건 격차 해소로 산업재해 예방 기여

· 원청 또는 상생협력기금 등을 통해 위험공정 개선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는 하청을 매칭 지원함으로써 원·하청 안전보건 상생지원

○ 국소배기장치 설치비용 지원으로 사업주의 비용 부담을 경감시키고 사업장의 설비 설치를 유도하여 화학물질, 조리부산물에 노출되는 노동자의 직업병 예방
○ 온열·한랭질환 예방장비 구매·임차지원으로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한파 노출 근로자의 온열질환 및 한랭질환 예방보호에 기여
○ 화재·폭발 사고 취약 중소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통해 대형사고 예방 및 사고사망 감축에 기여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o 안전일터 조성지원(공통, 신속지원 방식)

점검, 기술지도, 산재예방사업 등	확인서 발급	시설개선	개선완료 확인	개선비용 신청	지원금 지급
고용노동부, 공단 등	공단	사업주	공단	사업주	공단

o 안전일터 조성지원(제조·서비스업등 고위험 개선,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자율신청 방식)

지원금 지원신청	투자계획 확인	지원결정 및 선지급	시설개선	투자완료 확인	지원금 지급
사업주	공단	공단	사업주	공단	공단

o 안전일터 조성지원(건설업 산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지원금 지원신청	투자계획 확인	지원금 결정	시설 임대·설치	설치 확인	지원금 지급
사업주	공단	공단	사업주	공단	공단

o 안전일터조성지원(소규모 특화 안전일터 조성지원사업(떨어짐))

지원신청	투자계획 확인	지원금 결정	시설 임대·설치	설치 확인	지원금 지급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서 입력 (사업주)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접수·검토 서면확인을 통해 투자 적정성 확인 (공단)	투자계획 확인 사업장에 대해 심사위원회를 통한 보조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 결정 후 통보 (공단→사업주)	제출한 투자 계획에 근거하여 추락방지망 등 설치 후 설치확인 요청 (사업주→공단)	현장방문을 통해 추락방지망 등 적정 설치 여부 확인 (공단)	추락방지망 등 설치 적정성 확인 후 설치면적에 따른 확정금액 지급 (공단→사업주)



8) 최근 3년간(2024년~2026년)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8-1) 정부 사업평가

구분	연도	주요내용
'25 회계연도 재난안전사업	2026년	○ 결과 : 보통(68.7점)
'26년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2026년	○ 결과 : 감액

(8-2) 국회 지적사항

구분	연도	주요내용
'25년 결산 기후노동위 검토보고서	2026년	○ 지적 1 : 지원단가가 높은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대상에 스마트 안전장치 전동지게차를 계속 포함하여 지원할 것인지 검토가 필요 ○ 조치 1 : 검증단을 운영하고 연구용역을 통해 사용성 및 효과성 검증 결과를 반영하여 품목 지원 지속 여부를 재검토 ○ 지적 2 :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지원 품목 선정 시 재해예방 효과 및 현장 활용성 등 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지원된 장비의 안전기능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강화 ○ 조치 2 : 지원 품목 선정 시 제조사와 사용사업장의 실사를 거쳐 재해감소 효과성과 현장 활용성이 높은 장비를 우선 선정하고, 전문 인력을 통한 사용 점검을 의무화
'25년 결산 예결위 검토보고서	2026년	○ 지적 : 온열질환 예방장비 지원사업의 공급 업체의 냉방능력 과대 표기 등 부정수급을 방치한 관리 소홀이 지적된 만큼,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 보조금 집행 전 과정의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 ○ 조치 : 냉방능력 과대 표기한 제조사에 초과 지급된 지원금 환수, 지원사업 참여제한(최대 3년) 등 조치
'25년 결산 예정처 검토보고서	2026년	○ 지적 1 : 건설현장 추락·붕괴 예방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노력 필요 ○ 조치 1 :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품목 발굴·지원과 함께 기술·재정지원의 연계를 통해 예방 성과 제고 ○ 지적 2 :안전동행 지원사업 집행 과정에서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필요 ○ 조치 2 :제도 개선을 통해 1(폐기):1(신규) 조건을 의무화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기존설비 미폐기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존 설비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
'26년 예산(안) 기후노동위 검토보고서	2025년	○ 지적 : 안전동행지원사업의 자본보조적 특성과 관리감독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부재, 사업 추진 효과성 여부 등의 관점에서 현 지원 방식의 재검토 필요 ○ 조치 : 안전동행 지원사업이 산업재해예방 목적에 맞게 예산이 운용될 수 있도록 사전 위험성평가 의무화, 임의처분 사후 관리 등 강화
'26년 예산(안) 예정처 검토보고서	2025년	○ 지적 :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관련 대상품목 효과성 검증과 부정수급 문제 등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 조치 : 스마트 안전장비 산재예방효과 검증을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부정수급 전담조직 신설, 가격결정 방식 변경, 전자세금계산서 원본 검증 등을 통해 부정수급 예방 제도적 장치 마련

'25년 국정감사	2025년	○ 지적 : 이동식 에어컨 등 재정지원 사업으로 보조금 지급 시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강일터 조성지원사업 관리 철저 ○ 조치 : 사업장·공급업체 부정당행위(페이백 등) 예방을 위해 부정수급 모니터링 및 사용실태조사를 추진하여 재정지원 사업의 투명성 및 건전성 제고
'24년 결산 예정처 검토보고서	2025년	○ 지적 1 :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유해위험요인 시설개선 사업의 합리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재정지원의 적정성 및 형평성 확보 ○ 조치 1 : 지원품목의 설치 비용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재정지원 배율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지원비율의 명확한 기준 마련 ○ 지적 2 :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의 재정지원 효율성 및 정책 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방효과에 대한 정량적 검증 방안 마련 필요 ○ 조치 2 :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의 재정지원 효율성 및 정책 효과성 확보를 위해 '26년 정책연구용역를 실시하여 산재예방 효과에 대한 정량적 검증 방안(평가체계) 마련
'24년 결산 예결위 검토보고서	2025년	○ 지적 :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유해위험요인 시설개선 사업의 실질적인 예방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조치 : 해당 사업의 효과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예방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 *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품목 및 안전시설을 적극 발굴·지원할 계획
'24년 결산 환노위 검토보고서	2025년	○ 지적 :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사업의 사업내용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지원대상과 지원설비 선정 필요 ○ 조치 :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 취지에 맞게 산업단지 산재예방 시설 사업의 지원대상·품목을 조정*하는 등 노동자 건강보호 중심의 사업으로 개편 * 체력증진시설, 안전보건교육장 등 제외
'25년 예산(안) 환노위 검토보고서	2024년	○ 지적 1 :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관련 개별법령에 규정된 산업장비의 성능과 안전인증 관련 제도 전수조사 필요 ○ 조치 1 : 법적 안전인증 관련 제도를 연구용역을 통해 조사하여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품목의 최소성능기준에 적용할 예정('25년 연구용역 실시 후 결과를 최소성능기준에 반영) ○ 지적 2 : 한정된 재원이 보다많은 사업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조사·검토를 통한 체계적인 사업 준비 필요

		○ 조치 2 : 향후 사업설계단계에서 자원배분의 최적상태를 구현할 수 있는 대상·물량 등 설정토록 객관적인 조사·검토 등 반영 노력
'24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2024년	○ 지적 : KC 전파인증을 통과하지 못한 제품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것 ○ 조치 : 지원 제품에 대한 인증 여부를 조사하고, KC 전파인증 등 인증 관련 취득 조건을 최소성능 기준에 포함하여 명확히 하는 등 철저한 사업 관리를 할 예정('25년 공고문에 반영)
'23년 결산 환노위 검토보고서	2024년	○ 지적 : '23년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이 집행 부진 및 지연된 바, '24년 예산은 원활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일 것 ○ 조치 : '24년은 조기 사업추진 및 자율신청품목 도입 등 신청요건 완화를 통한 예산 집행률 제고 추진으로 100% 예산 집행
'23년 결산 예결위 검토보고서	2024년	○ 지적 : 유해위험요인 시설개선사업 중 건설업종의 참여저조 및 집행부진에 따라 2023년 계획 현액 1,197억원 중 113억 5,900만원 불용액 발생 ○ 조치 : 20억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지원율 인상 및 지원 현장 수 한도 확대 시행 및 시스템 동바리, 고소작업대, 낙하물 방호선반 등 추락사고 예방 시설 품목을 발굴·확대

(8-3) 감사원, 총리실, 기타(언론, 시민단체 등) 결과

구분	연도	주요내용
'25년 국무조정실 점검결과	2025년	○ 지적 : 지원품목 일부의 부적정 사용 등 산재예방 효과가 미흡하고, 보조금 부정수급 발생 및 사후관리 용역 부실 운영 등 지적 ○ 검토/조치 : 산재예방 재정지원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고용노동부 고시, 공단 내규 등을 개정하여 제도개선하고,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공단 내 전담조직 운영 등 예방활동 강화

4. 최근 4년간(2023년~2026년) 결산내역

1) 결산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연도	당초 계획액	수정 계획액 (A)	전년도 이월액	기금변경 증감액 등	계획 현액	집행액 (B)	집행률 (B/Ax100)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3년	506,974	506,974	-		506,974	458,237	90.4	-	-
2024년	471,792	471,792	-		471,792	471,652	100.0	-	-
2025년	481,792	496,792	-	15,000	496,792	496,521	99.9	-	-
2026년	537,093	537,093	-		537,093	226,429	42.2	해당없음	해당없음

2) 연도별 결산 주요사항

연도	유형	금액 (백만원)	사유
2023년	불용	48,737	건설경기 둔화에 따른 소규모 건설업 사업장 투자여건 악화, 지원결정 사업장 자진 취소분 및 신규사업 준비기간 소요에 따른 사업개시 지연 등에 따른 지원금 미집행액
2024년	불용	140	사후기술지도 용역 낙찰차액 등 사업수행경비 집행잔액
2025년	불용	271	사후기술지도 용역 실적 일부 불인정 등 사업수행경비 집행잔액
2026년	-	-	해당사항 없음

5. 기타 추가자료 : 해당없음

사 업 명
(12) 산재예방시설융자(융자)(4151-351)

1. 사업 총괄 정보

1) 사업 기본 정보

(1-1) 일반 정보

소관	실·국	과·팀	기금	계정
고용노동부	산업안전 예방정책관	산업안전정책과	산재기금	-

(1-2) 코드·명칭 정보

구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080	08E	4100	4151	351
명칭	사회복지	노동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재정지원	산재예방시설융자(융자)

2)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N	Y	N	N	N	N

3)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N	N	N	N	Y	-	100

4) 기능별(내역사업별)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내역사업명	소관	사업시행주체
산재예방시설융자(융자)	고용노동부 산업안전예방정책관 산업안전정책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 지출계획 총괄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사업명	2025년 결산액	2026년 당초계획액 (A)	2026년 수정계획액	2027년 요구액	2027년 정부안액 (B)	증감액 (B-A)	증감률 (B-A) /A×100
산재예방시설융자	449,775	538,840	538,840	508,820	508,820	△30,020	△5.6

1)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계획액 (수정)	2025년 계획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계획액 (수정)	2026년 계획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458,840**	**458,840**	**449,775**	**-**	**9,065**	**538,840**	**538,840**	**148,959**	**508,820**
·산재예방시설융자	458,840	458,840	449,775	-	9,065	538,840	538,840	148,959	508,820

2) 비목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계획액 (수정)	2025년 계획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계획액 (수정)	2026년 계획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458,840**	**458,840**	**449,775**	**-**	**9,065**	**538,840**	**538,840**	**148,959**	**508,820**
·사업출연금(350-02)	200	200	169 (169)	-	31	200	200	65	180
·기타민간융자금(450-04)	458,640	458,640	449,606	-	9,034	538,640	538,640	148,894	508,640

3. 사업 설명

1) 사업목적·내용

(1-1) 산재예방시설융자

사업목적	사업장에 안전보건시설을 설치·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주에게 장기 저리로 융자금을 지원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
사업내용	재정여력이 취약하고 작업환경이 열악한 소규모사업장(300인미만 우선지원) 대상으로 15억 한도, 연리 1.5%(3년 거치 7년 분할상환)로 융자 지원

2) 사업개요

(2-1)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사업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정부의 책무)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1. 산업 안전 및 보건 정책의 수립 및 집행 2. 산업재해 예방 지원 및 지도 3.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기준 마련, 지도 및 지원 4. 사업주의 자율적인 산업 안전 및 보건 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지원 5.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홍보·교육 등 안전문화 확산 추진 6.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술의 연구·개발 및 시설의 설치·운영 7.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관리 8. 산업 안전 및 보건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및 지도·감독 9. 그 밖에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 및 건강의 보호·증진 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그 밖의 관련 단체 및 연구기관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산업재해 예방의 재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재원(財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에서 지원한다. 1. 제11조 각 호에 따른 시설의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산업재해예방 관련 사업 및 비영리법인에 위탁하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의 사업비 ○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 (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보조·지원) ① 정부는 사업주, 사업주단체, 근로자단체,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 연구기관 등이 하는 산업재해 예방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이하 "보조·지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보조·지원이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① 정부는 중대재해를 예방하여 시민과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중대재해의 종합적인 예방대책의 수립·시행과 발생원인 분석 2. 사업주, 법인 및 기관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 3. 사업주, 법인 및 기관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 지원 및 지도 4.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의 시행

	② 정부는 사업주, 법인 및 기관에 대하여 유해·위험 시설의 개선과 보호 장비의 구매, 종사자 건강진단 및 관리 등 중대재해 예방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추진경위	○ 1995~1996 상반기 : 산업재해예방 특별사업 ○ 1996 하반기~1999 : 산업안전선진화 3개년 계획(대통령 보고) ○ 2000~2004 : 제1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 계획(1999. 12월) ○ 2001. 2월 : 노동부 업무보고 ○ 2001. 3월 : 제12회 국무회의시 대책수립 지시(대통령 보고) ○ 2001. 8월 : 국무회의 시 산업재해 및 구인난 해소 대책의 일환으로 클린사업 추진계획 보고 ○ 2005~2009 : 제2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 계획(2004. 12월) ○ 2010~2014 : 제3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 계획(2010. 3월) ○ 2015~2019: 제4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 계획(2015. 1월) ○ 2020~2024: 제5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 계획(2020. 5월) ○ 2022. 11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 2025. 9월: 노동안전 종합대책

(2-2) 사업규모

○ 사업기간 : 계속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계획액 기준, 기금운용계획변경 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사업비	356,328	458,640	458,840	538,840	508,820

(2-3)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융자

○ 사업시행주체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사업 수혜자 : 산재보험가입 사업주 및 근로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기관명	2027년 지원금액 (백만원)	지원 비율(%)	법적근거
산재예방시설융자	융자	한국산업 안전보건공단	508,640	10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 제96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
	출연	한국산업 안전보건공단	180	10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 제96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

3) 기능별(내역사업별) 산출 내역

(3-1) 내역사업별 세부 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계획액(수정)(A)	2027년 정부안액(B)	증감 (B-A)
합 계	538,840	508,820	△30,020
산재예방시설융자	538,840	508,820	△30,020

○ **산재예방시설융자 (2026년) 538,840 → (2027년) 508,820백만원, △5.6%**

- (설명) 통합재정평가결과 '감액' 의견에 따른 감액
- (산출) ('26년) 538,840 → ('27년) 508,820백만원(3,054→2,883개소 × 176.4백만원)

4) 사업효과

(4-1) 최근 5년(2023년~2027년)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 **성과지표: 융자 시설설치 공정의 재해 감소율(%) (세부사업 지표)**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목표	신규	신규	신규	신규	37.0
실적	-	-	-	-	해당없음
달성도	-	-	-	-	해당없음

- **측정산식 :** [(지원 전 1년간 재해율 - 지원 후 1년간 재해율) /지원 전 1년간 재해율] × 100

- **측정방법 및 목표치 설정근거**
  · 측정방법 : 재해율 = 융자 지원 사업장 재해자 수(설비투자 공정)/
  융자 지원 사업장 근로자수 × 100
  · 목표치 설정 근거 : 최근 5년간('22~'26년) 실적('26년은 목표치)의
  평균치(36.7%)를 5% 상향하여 '26년 목표치(37.0%) 설정

- **자료수집방법/출처 :** 산재보험 가입 및 요양 승인 통계

○ **성과지표: 지원사업장 사고사망만인율(‰)(하향지표)(프로그램 지표)**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목표	0.54	0.50	0.45	0.42	삭제
실적	0.51	0.48	0.42	해당없음	-
달성도	105.9	104.0	106.7	해당없음	-

- **측정산식 :** 지원사업장의 사망사고 예방 실적(%)=(A-B)/A×100
  · A : 공단 지원사업장* 사고사망만인율(‰)
  * 재해발생사업장(중대재해조사 및 감독 대상 사업장 등) 지원 실적은 제외
  · B : 전체 사고사망만인율(‰)

- **측정방법 및 목표치 설정근거**
  · 목표치 설정 근거 :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따라 전체 사업장의 사고사망만인율 감소 목표 비율*을 준용**하여 목표치 설정

* ('26) 0.37 → ('27) 0.35 → ('28) 0.33 → ('29) 0.31 → ('30) 0.29
** 종합대책 목표치의 전년대비 감소율을 성과지표 목표치에 적용

- **자료수집방법/출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성과지표: 중상해사고재해율(%)(하향지표)**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목표	0.084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실적	0.082	-	-	-	-
달성도	102.4	-	-	-	-

- **측정산식** : 1프로그램 1성과 지표 원칙에 따른 지표 삭제

- **측정방법 및 목표치 설정근거** : 1프로그램 1성과 지표 원칙에 따른 지표 삭제

- **자료수집방법/출처** : 1프로그램 1성과 지표 원칙에 따른 지표 삭제

○ **성과지표: 50인 미만 사업장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연계율(%)**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목표	79.8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실적	71.2	-	-	-	-
달성도	89.2	-	-	-	-

- **측정산식** : 1프로그램 1성과 지표 원칙에 따른 지표 삭제

- **측정방법 및 목표치 설정근거** : 1프로그램 1성과 지표 원칙에 따른 지표 삭제

- **자료수집방법/출처** : 1프로그램 1성과 지표 원칙에 따른 지표 삭제

(4-2) 성과지표 이외의 최근 4년(2023년~2026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연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3년	지원사업장 수: 2,540개소
2024년	지원사업장 수: 2,795개소
2025년	지원사업장 수: 3,057개소
2026년	지원사업장 수: 886개소

(4-3) 향후(2027년 이후) 기대효과

○ 사고사망 등 발생 고위험 설비의 안전성 확보 및 작업공정·환경 개선을 위한 안전시설 투자를 유도하여 산업재해 감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① **융자신청** : 홈페이지 또는 우편을 통한 신청서 접수
② **투자계획 확인** :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접수검토 후 현장방문 또는 서면확인 등을 통해 투자 적정성 확인
③ **심사 및 지원결정** : 투자계획 확인 사업장에 대해 심사위원회를 통한 융자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 후 사업주 통보
④ **시설투자** : 제출한 투자 계획에 근거한 시설개선(4개월 이내) 후 투자완료 확인 요청
⑤ **투자완료 확인** : 현장방문을 통해 시설개선 내용에 대한 이행과 적정성 여부 확인
⑥ **투자확인서 발급** : 현장확인 후 적정시 융자대여 은행 제출용 "투자확인서" 발급
⑦ **대출신청** : 사업주는 주거래 은행에 투자확인서 제출하여 대출계약 체결
⑧ **대여** : 대여약정에 따라 은행에서 사업주에게 융자금 대여

8) 최근 3년간(2024년~2026년)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8-1) 정부 사업평가

구분	연도	주요내용
'25 회계연도 재난안전사업	2026년	○ 결과 : 보통(73.7점)
'26년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2026년	○ 결과 : 감액

(8-2) 국회 지적사항

구분	연도	주요내용
'26년도 예산(안) 예결위 검토보고서	2025년	○ 지적 1 : 지게차에 대해 재해예방보다 노후장비 교체 목적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보임 ○ 조치 1 : 융자지원품목은 사고위험이 높은 노후화된 장비도 포함하며, '26년도 사업추진 시 전·후방 카메라 등 안전장치가 부착된 지게차에 한하여 지원 예정임

(8-3) 감사원, 총리실, 기타(언론, 시민단체 등) 결과: 해당없음

4. 최근 4년간(2023년~2026년) 결산내역

1) 결산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연도	당초 계획액	수정 계획액 (A)	전년도 이월액	기금변경 증감액 등	계획 현액	집행액 (B)	집행률 (B/Ax100)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3년	356,328	356,328	-	-	356,328	356,328	100.0	-	-
2024년	458,640	458,640	-	-	458,640	458,640	100.0	-	-
2025년	458,840	458,840	-	-	458,840	449,775	98.0	-	-
2026년	538,840	538,840	-	-	538,840	148,959	27.6	해당없음	해당없음

2) 연도별 결산 주요사항

연도	유형	금액 (백만원)	사유
2023년	-	-	전액 집행
2024년	-	-	전액 집행
2025년	불용	9,065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 시설투자 위축으로 인한 융자금 등 집행잔액
2026년	-	-	해당사항 없음

5. 기타 추가자료 : 해당없음

사 업 명
(13) 업종별재해예방(4152-350)

1. 사업 총괄 정보

1) 사업 기본 정보

(1-1) 일반 정보

소관	실·국	과·팀	기금	계정
고용노동부	산업안전 예방정책관	산업안전기준과	산재기금	-

(1-2) 코드·명칭 정보

구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080	08E	4100	4152	350
명칭	사회복지	노동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기술지원	업종별재해예방

2)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N	Y	N	N	N	N

3)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N	N	Y	N	N	-	-

4) 기능별(내역사업별)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내역사업명	소관	사업시행주체
사고성재해 집중관리 (공단)	고용노동부 산업안전예방정책관 산업안전기준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민간 기술지도	고용노동부 산업안전예방정책관 산업안전기준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내역사업명	소관	사업시행주체
화학사고재해 집중관리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감독국 화학사고예방조사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 지출계획 총괄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사업명	2025년 결산액	2026년 당초계획액 (A)	2026년 수정계획액	2027년 요구액	2027년 정부안액 (B)	증감액 (B-A)	증감률 (B-A) /A×100
업종별재해예방	155,812	236,062	236,062	130,421	119,720	△116,342	△49.3

1)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계획액 (수정)	2025년 계획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계획액 (수정)	2026년 계획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163,152	163,152	155,812	-	7,340	236,062	236,062	150,300	119,720
· 사고성재해 집중관리(공단)	13,386	13,386	12,528	-	858	60,234	60,234	29,318	65,827
· 민간 기술지도	52,793	52,793	52,542	-	251	51,273	51,273	36,369	51,273
· 화학사고재해 집중관리	2,620	2,620	2,535	-	85	2,620	2,620	1,511	2,620
· 자율안전관리 체계 구축	94,353	94,353	88,207	-	6,146	121,935	121,935	83,102	이관

2) 비목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계획액 (수정)	2025년 계획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계획액 (수정)	2026년 계획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163,152	163,152	155,812	-	7,340	236,062	236,062	150,300	119,720
· 사업출연금(350-02)	161,772	161,772	154,676	-	7,096	219,276	219,276	138,826	116,145
· 일반수용비(210-01)	34	34	32	-	2	134	134	52	180
· 임차료(210-07)	1,066	1,066	930	-	136	2,308	2,308	898	2,652
· 유류비(210-08)	280	280	174	-	106	344	344	157	743
· 자체단체경상보조 (330-01)	-	-	-	-	-	14,000	14,000	10,369	-

3. 사업 설명

1) 사업목적·내용

(1-1) 사고성재해 집중관리(공단)

사업목적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산업재해예방 지원
사업내용	사업장 대상 기술지도, 산재 현황 분석,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 등 실시

(1-2) 민간 기술지도

사업목적	소규모 사업장 산업재해예방 지원
사업내용	소규모 사업장에(1억원 미만 건설업, 50인 미만 제조·서비스업 등) 민간재해예방기관이 방문하여 산재 예방을 위한 기술지원 실시

(1-3) 화학사고재해 집중관리

사업목적	화재·폭발 등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기술지원
사업내용	화학공장 대형사고 예방 등을 위한 중소규모 사업장 기술지원 및 공정안전보고서 심사·확인 등 실시

2) 사업개요

(2-1)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사업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정부의 책무)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1. 산업 안전 및 보건 정책의 수립 및 집행 2. 산업재해 예방 지원 및 지도 3.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기준 마련, 지도 및 지원 4. 사업주의 자율적인 산업 안전 및 보건 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지원 5.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홍보·교육 등 안전문화 확산 추진 6.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술의 연구·개발 및 시설의 설치·운영 7.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관리 8. 산업 안전 및 보건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및 지도·감독 9. 그 밖에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 및 건강의 보호·증진 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그 밖의 관련 단체 및 연구기관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산업재해 예방의 재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재원(財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에서 지원한다. 1. 제11조 각 호에 따른 시설의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산업재해예방 관련 사업 및 비영리법인에 위탁하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의 사업비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사망,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를 결정하고, 그 위험성을 줄이기 위하여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포함하여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이행(이하 “위험성평가”라 한다)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위험성평가 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성평가에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위험성평가 시 근로자대표를 참여시켜야 한다. ④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을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 교육, 설명회, 사업장 게시,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에 대하여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상시적으로 주지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사업주는 위험성평가의 결과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⑥ 위험성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제출)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가 있는 경우 그 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 누출, 화재 및 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이하 "중대산업사고"라 한다)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이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적합하다고 통보받기 전에는 관련된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를 가동해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할 때 산업

	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공정안전보고서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공정안전보고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심사를 받은 공정안전보고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 등) ① 사업주와 근로자는 제45조제1항에 따라 심사를 받은 공정안전보고서(이 조 제3항에 따라 보완한 공정안전보고서를 포함한다)의 내용을 지켜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45조제1항에 따라 심사를 받은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실제로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45조제1항에 따라 심사를 받은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보완하여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 상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 제3항에 따른 보완 상태가 불량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는 공정안전보고서의 변경을 명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공정안전보고서를 다시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안전·보건진단)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추락·붕괴, 화재·폭발,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누출 등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제48조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이하 "안전보건진단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진단 명령을 받은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진단기관에 안전보건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③ 사업주는 안전보건진단기관이 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보건진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가 요구할 때에는 해당 안전보건진단에 근로자대표를 참여시켜야 한다. ④ 안전보건진단기관은 제2항에 따라 안전보건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안전보건진단 결과보고서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 및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안전보건진단의 종류 및 내용, 안전보건진단 결과보고서에 포함될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 명령)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종합적인 개선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장, 시설, 그 밖의 사항에 관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개선계획(이하 "안전보건개선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는 제47조에 따라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높은 사업장 2.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사업장 3의2.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 4. 제106조에 따른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을 초과한 사업장 ② 사업주는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 원인조사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원인규명 또는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을 위하여 발생 원인을 조사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누구든지 중대재해 발생 현장을 훼손하거나 제1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원인조사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④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원인조사의 내용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의2(재해조사보고서의 작성·공개) ① 공단 또는 관계전문가는 제56조제2항에 따른 원인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중대재해등의 발생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 등을 포함한 보고서(이하 이 조에서 "재해조사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동종·유사 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재해조사보고서를 해당 사건에 대한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공개한다. 다만, 수사나 재판의 대상이 아닌 경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소 제기 여부와 관계없이 공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재해조사보고서를 공개하는 경우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재해조사보고서의 작성 내용, 제2항에 따른 재해조사보고서의 공개방법·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 (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보조·지원) ① 정부는 사업주, 사업주단체, 근로자단체,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 연구기관 등이 하는 산업재해 예방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이하 "보조·지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보조·지원이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① 정부는 중대재해를 예방하여 시민과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중대재해의 종합적인 예방대책의 수립·시행과 발생원인 분석 2. 사업주, 법인 및 기관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 3. 사업주, 법인 및 기관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 지원 및 지도 4.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의 시행 ② 정부는 사업주, 법인 및 기관에 대하여 유해·위험 시설의 개선과 보호 장비의 구매, 종사자 건강진단 및 관리 등 중대재해 예방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추진경위	○ 1995～1996 상반기 : 산업재해예방 특별사업 ○ 1996 하반기～1999 : 산업안전선진화 3개년 계획(대통령 보고) ○ 2000～2004 : 제1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 계획(1999. 12월) ○ 2001. 2월 : 노동부 업무보고 ○ 2001. 3월 : 제12회 국무회의시 대책수립 지시(대통령 보고) ○ 2001. 8월 : 국무회의 시 산업재해 및 구인난 해소 대책의 일환으로 클린사업 추진계획 보고 ○ 2005～2009 : 제2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 계획(2004. 12월) ○ 2010～2014 : 제3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 계획(2010. 3월) ○ 2015～2019: 제4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 계획(2015. 1월) ○ 2020～2024: 제5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 계획(2020. 5월) ○ 2022. 11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 2025. 9월: 노동안전 종합대책

(2-2) 사업규모

○ 사업기간 : 계속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계획액 기준, 기금운용계획변경 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사업비	131,530	158,255	163,152	236,062	119,720

(2-3)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사업 수혜자 : 산재보험가입 사업주 및 근로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기관명	2027년 지원금액 (백만원)	지원 비율(%)	법적근거
사고성재해 집중관리(공단)	출연	한국산업 안전보건공단	62,252	10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 제96조
민간 기술지도	출연	한국산업 안전보건공단	51,273	10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 제96조
화학사고재해 집중관리	출연	한국산업 안전보건공단	2,620	10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 제96조

3) 기능별(내역사업별) 산출 내역

(3-1) 내역사업별 세부 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계획액(수정)(A)	2027년 정부안액(B)	증감 (B-A)
합 계	236,062	119,720	△116,342
사고성재해 집중관리(공단)	60,234	65,827	5,593
민간 기술지도	51,273	51,273	-
화학사고재해 집중관리	2,620	2,620	-
자율안전관리체계 구축	121,935	-	순감(사업 이관·분리)

○ **사고성재해 집중관리(공단) (2026년) 60,234 → (2027년) 65,827백만원, +9.3%**
- (설명) '소규모 사업장 청년 안전 패트롤' 신규 사업 도입,
'노무제공자 산재 예방' 지원금 확대,
'과학 사고조사 분석' 화재·폭발, 붕괴 등 재해조사 범위 확대,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 물량 확대 등
- (산출)

*** 사고사망 핵심 고위험요인 집중관리 : ('26년) 11,678 → ('27년) 15,538백만원**

· 기술지원 : ('26년) 5,074 → ('27년) 5,080백만원 (55,000회 × 92,255→92,364원)(+6백만원)
· 패트롤카 운영 : ('26년) 5,557 → ('27년) 6,446백만원(483→626대 × 959→858천원 × 12개월)
(+889백만원, +143대)
· 직종별 재해예방 콘텐츠 개발 : ('26년) 350 → ('27년) - 백만원(사업 이관)
* '노무제공자 산재 예방'으로 이관
· 건설현장 실시간 종합정보체계 구축 : ('26년) 367 → ('27년) - 백만원(사업 이관)
* '안전보건관리 정보시스템 운영(세부사업)'으로 이관
· 과학 사고조사 분석 : ('26년) 330 → ('27년) - 백만원(사업 이관)
* 별도 내내역 사업으로 이관
· 소규모 사업장 청년 안전 패트롤(신규) : ('27년) 4,012백만원(150명 × 2,675천원 × 10개월)(순증)

*** 종합심사낙찰제 건설안전지표 산정 : ('26년) 698 → ('27년) 698백만원(전년 동)**

· 종합심사낙찰제 건설안전 지표산정 : ('26년) 443 → ('27년) 443백만원(100,000개사×4,430원)
· 산재예방활동 실적평가 : ('26년) 255 → ('27년) 255백만원(1식×255백만원)

***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 : ('26년) 876 → ('27년) 1,229백만원(1,130→1,586개소 × 775천원) (+353백만원, +456개소)**

*** 노무제공자 산재 예방 : ('26년) 400 → ('27년) 1,880백만원(+1,480백만원)**

(舊 노무제공자 사고성재해 예방)
· 노무제공자 산재 예방 : ('26년) 400 → ('27년) 1,600백만원 (+1,200백만원)
- 지원금 : ('26년) 320 → ('27년) 1,520백만원 (19개소 × 80백만원)(+1,200백만원)
- 운영비 : ('26년) 80→ ('27년) 80백만원(1식)

· 직종별 재해예방 콘텐츠 제공(사업 이관) : ('27년) 280백만원
(舊 직종별 재해예방 플랫폼 구축·운영)

*** AI·빅데이터 활용 산재예방 지원 시스템 운영 : ('26년) 1,504 → ('27년) - 백만원**

* '안전보건관리 정보시스템 운영(세부사업)'으로 이관

*** 안전보건종합개선지원 : ('26년) 500 → ('27년) 555백만원(+55백만원)**

(舊 안전보건종합진단)
· 안전보건종합진단 : ('26년) 500 → ('27년) 500백만원(150건 × 3,333천원)(전년 동)
·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 기술지원(신규) : ('27년) 55백만원(150개소 × 368천원)(순증)

*** 안전한 일터 지킴이 : ('26년) 44,578 → ('27년) 44,578백만원(1,000명 × 44,578천원)(전년 동)**

*** 과학 사고조사 분석(사업 이관) : ('27년) 1,349백만원(순증)**
· 중대재해 원인조사 : 385백만원(1식)
· 화재·폭발 붕괴 등 재해조사(신규) : 964백만원(1식)(순증)

○ 민간 기술지도 (2026년) 51,273 → (2027년) 51,273백만원, 전년 동
- (설명) 전년 수준 요구
- (산출)

*** 민간 기술지도 : ('26년) 49,800 → ('27년) 49,800백만원(332,000회 × 150,000원)(전년 동)**

*** 사업수행경비 : ('26년) 1,473→ ('27년) 1,473백만원(1식)(전년 동)**

○ 화학사고재해 집중관리 (2026년) 2,620 → (2027년) 2,620백만원, 전년 동
- (설명) 전년 수준 요구
- (산출)

***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 ('26년) 990 → ('27년) 990백만원(전년 동)**
· 심사 및 확인 : ('26년) 594 → ('27년) 594백만원(1,600건 × 371천원)
· 화학사고 위험경보제 : : ('26년) 396 → ('27년) 396백만원(2,000회 × 198천원)

*** 중·소규모 사업장 화재폭발 사고예방 기술지도 : ('26년) 1,000 → ('27년) 1,000백만원 (4,000개소 × 250천원)(전년 동)**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 ('26년) 630 → ('27년) 630백만원(전년 동)**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 ('26년) 519 → ('27년) 519백만원(검사 3,000건 × 173천원)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진단 : ('26년) 111 → ('27년) 111백만원(268건 × 413천원)

○ 자율안전관리체계 구축 (2026년) 121,935 → (2027년) - 백만원, 사업 이관
- (설명) 사업 목적의 부합성과 효율적인 사업 관리를 위해 「업종별 재해예방」 예산의 '자율안전관리체계 구축' 예산을 폐지하고, 신규 세부사업으로 분할 및 이관 요구
- (산출) ('26년) 121,935 → ('27년) - 백만원(순감, 사업이관)

4) 사업효과

(4-1) 최근 5년(2023년~2027년)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 **성과지표: 50인 미만 지원사업장의 사고재해율 감소 실적(세부사업지표)**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목표	신규	신규	신규	신규	32.4
실적	-	-	-	-	해당없음
달성도	-	-	-	-	해당없음

- **측정산식 :** [이전 연도 50인 미만 지원사업장 사고재해율 - 당해 연도 50인 미만 지원사업장 사고재해율] / 이전 연도 50인 미만 지원사업장 사고재해율 × 100

- **측정방법 및 목표치 설정근거**
  · 목표치 설정 근거 : 최근 3년간(직년년도 제외) 50인 미만 지원사업장 사고재해율 감소율 평균×1.02 (2% 감축 목표)

- **자료수집방법/출처 :** 산재보험 가입 및 요양 승인 통계

○ **성과지표: 지원사업장 사고사망만인율(‰)(하향지표)(프로그램 지표)**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목표	0.54	0.50	0.45	0.42	삭제
실적	0.51	0.48	0.42	해당없음	-
달성도	105.9	104.0	106.7	해당없음	-

- **측정산식 :** 지원사업장의 사망사고 예방 실적(%)=(A-B)/A×100
  · A : 공단 지원사업장* 사고사망만인율(‰)
  * 재해발생사업장(중대재해조사 및 감독 대상 사업장 등) 지원 실적은 제외
  · B : 전체 사고사망만인율(‰)

- **측정방법 및 목표치 설정근거**
  · 목표치 설정 근거 :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따라 전체 사업장의 사고사망만인율 감소 목표 비율*을 준용**하여 목표치 설정
  * ('26) 0.37 → ('27) 0.35 → ('28) 0.33 → ('29) 0.31 → ('30) 0.29
  ** 종합대책 목표치의 전년대비 감소율을 성과지표 목표치에 적용

- **자료수집방법/출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성과지표: 중상해사고재해율(%)(하향지표)**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목표	0.084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실적	0.082	-	-	-	-
달성도	102.4	-	-	-	-

- **측정산식 :** 1프로그램 1성과 지표 원칙에 따른 지표 삭제

- **측정방법 및 목표치 설정근거 :** 1프로그램 1성과 지표 원칙에 따른 지표 삭제

- **자료수집방법/출처 :** 1프로그램 1성과 지표 원칙에 따른 지표 삭제

○ 성과지표: 50인 미만 사업장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연계율(%)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목표	79.8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실적	71.2	-	-	-	-
달성도	89.2	-	-	-	-

- **측정산식** : 1프로그램 1성과 지표 원칙에 따른 지표 삭제
- **측정방법 및 목표치 설정근거** : 1프로그램 1성과 지표 원칙에 따른 지표 삭제
- **자료수집방법/출처** : 1프로그램 1성과 지표 원칙에 따른 지표 삭제

(4-2) 성과지표 이외의 최근 4년(2023년~2026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연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3년	사망사고 핵심 고위험요인 집중관리 : 72,069회 종합심사낙찰제 건설안전지표 산정 : 74,158개사 사고성재해 집중관리(위탁) : 297,283회 중·소규모 사업장 화재·폭발사고예방 기술지도 : 2,013개소
2024년	사망사고 핵심 고위험요인 집중관리 : 59,794회 종합심사낙찰제 건설안전지표 산정 : 108,404개사 사고성재해 집중관리(위탁) : 298,252회 중·소규모 사업장 화재·폭발사고예방 기술지도 : 2,015개소
2025년	사망사고 핵심 고위험요인 집중관리 : 53,544회 종합심사낙찰제 건설안전지표 산정 : 110,155개사 민간 기술지도 : 373,312회 중·소규모 사업장 화재·폭발사고예방 기술지도 : 4,028개소
2026년	사망사고 핵심 고위험요인 집중관리 : 24,173회 종합심사낙찰제 건설안전지표 산정 : 112,421개사 민간 기술지도 : 189,808회 중·소규모 사업장 화재·폭발사고예방 기술지도 : 2,292개소

(4-3) 향후(2027년 이후) 기대효과

○ 업종별 특성 등을 고려한 산재 예방사업 및 사업장의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지원 등을 통해 사고 예방에 기여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사고성재해 집중관리(공단)

<사고사망 핵심 고위험요인 집중관리>

ㅇ 기술지원(패트롤 현장점검)

사전안내 및 대상 선정	→	불시방문 (안내, 사전면담)	→	패트롤 현장점검 (작업장 순회점검)	→	시정지시 (재정지원 연계)	→	감독요청 (거부, 불량, 미개선시)
공단		공단 → 사업장		공단 → 사업장		공단 → 사업장		공단 → 노동부

ㅇ 기술지원(위험성평가)

- 위험성평가 컨설팅

대상 선정 또는 신청	→	1차 컨설팅	→	2차 컨설팅	→	컨설팅 결과 송부
공단/사업주		공단		공단		공단

- 위험성평가 인정

인정신청	→	인정심사	→	심사위원회	→	사후심사	→	재인정 신청
사업주		공단		공단+외부		공단		사업주

불인정 / 인정

※ 인정사업장 중 50인 미만 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하수도업 포함)은 3년간 산재보험료율 20% 감면

ㅇ 소규모 사업장 청년 안전 패트롤

ㅇ 재정지원 사후기술지도

대상선정	→	1차 기술지도	→	종결 또는 취소/환수 후속조치	<부적정>	2차 기술지도	→	필요시 취소/환수 후속조치
공단본부		공단		공단		공단		공단

ㅇ 산업보건 분야 모니터링

채용공고 및 채용	→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 및 공단 재정지원 사업 등 기초교육	→	사업장 안전보건 기술지원 OJT	→	산업보건 재정지원 사업장 작업환경 모니터링 실시

ㅇ 안전문화 확산 청년 서포터즈 운영

안전일터조성의 날 등 안전문화 현장 확산 활동 지원	→	안전문화 우수사업장 방문 및 현장 취재	→	카드뉴스, 숏폼 등 안전보건 콘텐츠 제작	→	SNS, 블로그, 유튜브 등 디지털 매체로 확산

ㅇ 안전보건교육 지원

교육 계획 수립	교육 과정 개설 및 운영	평가 및 환류
■ 교육과정별 세부 추진계획 수립 - 교육과정별 대상(업종 계층별) 선정 - 교육 커리큘럼 구성 - 표준 교육교재 및 교안 개발·배포	■ 교육과정 준비(교육 강사 구성 및 시설·기자재 등) ■ 교육일정 등록 및 안내(교육포털) ■ 교육 신청 및 접수(교육포털) ■ 교육 운영(온·오프라인 과정) ■ 교육 이수 관리(교육포털, 결과 등록 및 이수증 발급)	■ 교육사업 성과평가 (종합만족도, 학업성취도, 현업적용도 산재예방기여도, 교육추천지수 등) ■ 평가결과 분석 및 개선 ■ 내년도 사업계획 반영

<종합심사낙찰제 건설안전지표 산정>

재해현황 파악	사고사망 만인율 통보	이의신청	사고사망 만인율 보고	사고사망 만인율 확정	사고사망 만인율 공표
공단	공단→업체	공단↔업체	공단→노동부	노동부	노동부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

평가계획 수립 및 공고	평가 설명회	평가 실시	평가결과 심의회의	평가결과 확정·공개	평가결과 적용(피드백)
공단	공단→대상기관	공단→대상기관	공단	노동부	공단

<노무제공자 산재 예방>

○ **노무제공자 산재 예방 지원**

❶ 공고	❷ 신청·접수	❸ 선정 심사	❹ 최종 계획서 제출	❺ 계약 체결	❻ 선금 지급	❼ 사업 운영	❽ 결과 보고서 제출	❾ 사업 평가	❿ 사업비 정산

○ **직종별 재해예방 콘텐츠 제공**

시스템 운영 및 콘텐츠 개발 계획 수립	**시스템 유지·보수 및 콘텐츠 제작**	**시스템 관리, 콘텐츠 제작 검토·관리, 시스템 사용 확대**	**플랫폼 재해예방 시스템(Open-API 등) 서비스 활용**
공단	전산 유지보수 및 영상 제작 용역	공단	플랫폼社, 종사자

<안전보건종합개선지원>

○ **안전보건종합진단**

진단 신청서 접수	**예비조사**	**진단계약 체결**	**현장진단**	**진단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 기술지원**

개선계획 수립·시행 명령	개선계획 수립·제출	개선계획 검토의뢰	검토결과 보고	개선계획 승인 통보	개선계획 완료 확인	최종 결과 보고
노동부 → 사업장	사업장 → 노동부	노동부 → 공단	공단 → 노동부	노동부 → 사업장	노동부, 공단	공단 → 노동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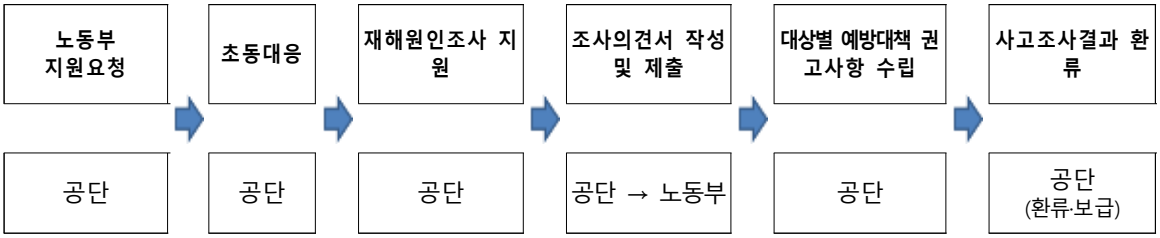
계획수립지원
공단→사업장

<안전한 일터 지킴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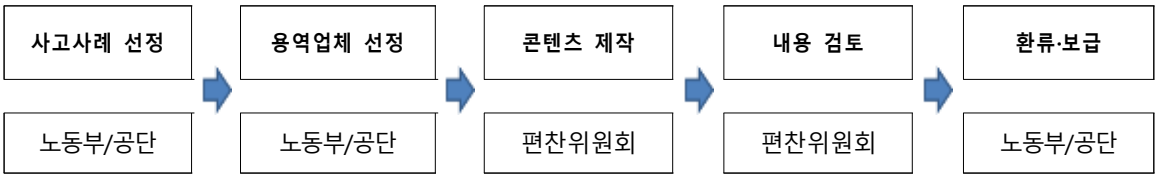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대상사업장 중 **고위험현장 선정**	**최초 방문** 시 안전관리 불량현장 개선유도 (10일 이내)	**재방문** 시 개선결과 모니터링	일부 미흡	개선요구	개선요구사항 **조치결과 확인**
				지킴이	지킴이
			매우 불량	**기술지도 요청**	**불시감독 요청**
공단	지킴이	지킴이		지킴이→공단	공단→노동부

< 과학 사고조사 분석 >

ㅇ 과학 사고조사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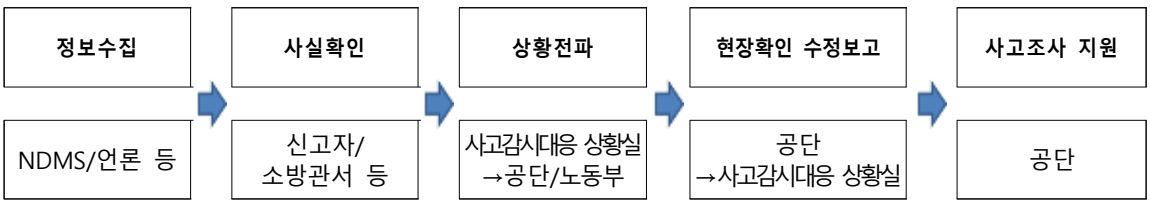
- 재해사례집 (중대재해 사고백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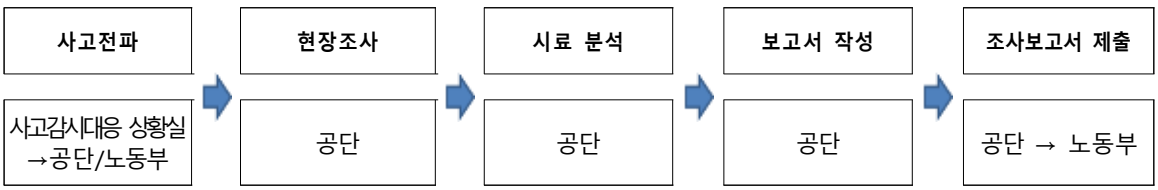
-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 사고전파



ㅇ 화재·폭발, 붕괴 등 재해조사



민간 기술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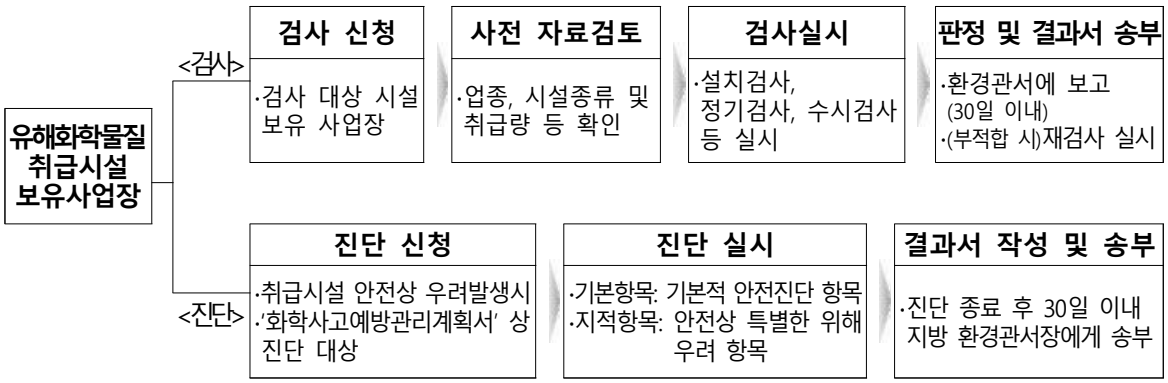


화학사고재해 집중관리

<공정안전보고서 심사·확인 및 기술지도>

공정안전 관리단계	설치·시운전 단계	정상운전 단계	정비·보수 단계
사업 (수행)	공정안전보고서 심사·확인 (공단)	이행상태 평가·점검 (고용노동부·공단)	화학사고 위험경보제 (공단)
세부내용	·(대상) 화학사고 고위험 7개 업종 및 51개 물질 규정량 이상 취급사업장 ·(내용)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기술적·관리적 사항 적정성 심사·확인	·(대상) 공정안전보고서 심사·확인 완료(PSM등급 부여) 사업장 ·(내용) 공정안전보고서상 기술적·관리적 사항의 지속적 현장 이행여부 및 적정성	·(대상) 정비·보수 등 비정형 작업 소요(정기·비정기 포함) 발생 사업장 ·(내용) 사고발생 위험징후 수집·분석을 통한 등급별 컨설팅 및 사후 기술지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8) 최근 3년간(2024년~2026년)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8-1) 정부 사업평가

구분	연도	주요내용
'25 회계연도 재난안전사업	2026년	○ 결과 : 우수(83.6점)
'26년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2026년	○ 결과 : 사업 개선

(8-2) 국회 지적사항

구분	연도	주요내용
'25년도 예정처 결산 분석보고서	2026년	○ 지적 1 : 업종별 협단체 네트워크 지원사업의 집행관리 및 사후평가를 통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안전보건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필요 ○ 조치 1 : 예산 집행부터 철저한 모니터링과 회계 전문기관을 통한 예산집행의 객관성, 투명성을 담보하고 있고, 내·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종합 사업평가

		실시 등 관리, 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 ○ 지적 2 : 민간기술지도(초소규모 건설현장) 사업 수행 과정에 있어 컨설팅의 효과가 높은 사업장에 대한 지도를 우선 수행할 필요 ○ 조치 2 : ’26년부터 사고사망 위험이 높은 지붕·외부 도장 작업에 기술지원을 집중하여 실시하고 작업별 지원 상한을 설정하여 일부 작업에 편중 현상 방지
’25년도 결산 기노위 검토 보고서	2026년	○ 지적 1 : 위험성평가 인정기준 강화 방식 외에 보험료 감면 혜택의 확대 적용 등 사업장 참여 유인을 다양화함으로써 더 많은 소규모 사업장 참여를 유도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함 ○ 조치 1 : 안전보건 컨설팅과의 연계, 산재예방요율제 확대 적용 등 소규모 사업장 참여를 유도하여 사업 실효성 제고 방안 검토 ○ 지적 2 : 소규모 건설현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산업재해예방이라는 사업목적을 실질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민간기술지도 운영방안 마련 필요 ○ 조치 2 : 1억 미만 초소규모 건설현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산업재해예방 효과를 제고하도록 사업 운영 절차 마련 예정
’26년도 예산(안) 국회 예정처 검토보고서	2025년	○ 지적 : 정부의 직접일자리 사업의 일종으로 고용영향평가 대상 사업이나, 예산 요구 시 별도의 고용영향평가를 하지 않아 사후에라도 실시 필요 ○ 조치 : 고용노동부는 동 사업의 긍정적인 취지 및 사업효과를 고려, 예산안 제출(5.31) 후 긴급 추가 편성되어 기획재정부의 작성 지침을 따를 수 없는 측면이 있었던바, 향후에는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사업에 반영할 예정임.
’26년도 예산(안) 국회 기후노동위 검토보고서	2025년	○ 지적 1 :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에 있어, 만 50세 이상 퇴직자를 대상으로 채용하나, 영세·소규모 사업장의 실질적인 안전관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대규모 인원을 동시에 지역별로 균형있게 모집·채용하기 위해서는 만 50세 이상이라는 연령 제한 요건을 재검토 필요 ○ 조치 1 : 숙련된 인력의 원활한 확보를 도모하기 위해선 기존의 채용 연령 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채용 홍보 등을 강화하여 지역 간 균형 있는 인력 확보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음 ○ 지적 2 : 기간제 지킴이와 달리 건당 사례비를 받는 위촉 지킴이가 업무량에 따른 임금 측면 등에서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는 등 재검토 필요

		○ 조치 2 : 노사단체 등이 사업장의 안전문화 정착에 적극 동참하는 것을 지원 및 현장의 안전수칙 준수 풍토 조성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직접 채용 지킴이와 병행 운영하여 사망사고에 취약한 중소사업장의 사망 감축 시너지를 제고할 필요 ○ 지적 3 : 산업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300인 미만 기업까지 공시제 대상 확대 검토 필요 ○ 조치 3 : 중대형 사업장 중심으로 우선 제도를 도입하고, 향후 효과성 분석 및 영세기업의 부담 등을 고려하여 확대 여부 검토 예정

(8-3) 감사원, 총리실, 기타(언론, 시민단체 등) 결과: 해당없음

4. 최근 4년간(2023년~2026년) 결산내역

1) 결산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연도	당초 계획액	수정 계획액 (A)	전년도 이월액	기금변경 증감액 등	계획 현액	집행액 (B)	집행률 (B/Ax100)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3년	131,530	131,530	-	-	131,530	126,104	95.9	-	-
2024년	158,255	158,255	-	-	158,255	148,410	93.8	-	-
2025년	163,152	163,152	-	-	163,152	155,812	95.5	-	-
2026년	236,062	236,062	-	-	236,062	150,278	63.7	해당없음	해당없음

2) 연도별 결산 주요사항

연도	유형	금액 (백만원)	사유
2023년	불용	5,426	대중소 상생협력사업 사업장 참여 저조로 인한 지원금 미집행액,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컨설팅 사업수행 집행잔액 등
2024년	불용	9,845	영세협단체 참여 저조로 인한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미집행액 등 사업수행경비 집행잔액
2025년	불용	7,340	영세협단체 참여 저조로 인한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미집행액 등 사업수행경비 집행잔액
2026년	-	-	해당사항 없음

5. 기타 추가자료 : 해당없음

사 업 명
(14)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4152-351)

1. 사업 총괄 정보

1) 사업 기본 정보

(1-1) 일반 정보

소관	실·국	과·팀	기금	계정
고용노동부	산업안전 예방정책관	산업안전기준과	산재기금	-

(1-2) 코드·명칭 정보

구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080	08E	4100	4152	351
명칭	사회복지	노동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기술지원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2)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N	Y	N	N	N	N

3)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N	N	Y	N	N	-	-

4) 기능별(내역사업별)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내역사업명	소관	사업시행주체
안전인증	고용노동부 산업안전예방정책관 산업안전기준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검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예방정책관 산업안전기준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 지출계획 총괄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사업명	2025년 결산액	2026년 당초계획액 (A)	2026년 수정계획액	2027년 요구액	2027년 정부안액 (B)	증감액 (B-A)	증감률 (B-A) /A×100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6,034	6,017	6,017	6,167	6,167	150	2.5

1)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계획액 (수정)	2025년 계획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계획액 (수정)	2026년 계획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6,324	6,324	6,034	-	290	6,017	6,017	3,304	6,167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3,175	3,175	3,021	-	154	-	-	-	-
·방호장치보호구 안전인증	2,170	2,170	2,094	-	76	-	-	-	-
·산업용기계기구 안전인증	239	239	211	-	28	-	-	-	-
·안전인증	-	-	-	-	-	5,277	5,277	2,828	5,427
·안전검사 (現 위험기계기구 안전검사	740	740	708	-	32	740	740	476	740

2) 비목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계획액 (수정)	2025년 계획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계획액 (수정)	2026년 계획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6,324	6,324	6,034	-	290	6,017	6,017	3,304	6,167
·사업출연금(350-02)	6,324	6,324	6,034	-	290	6,017	6,017	3,304	6,167

3. 사업 설명

1) 사업목적·내용

(1-1) 안전인증

사업목적	안전성이 확보된 제품 생산·보급되기 위한 안전성 검사·시험
사업내용	유해·위험기계등의 제조·수입·설치 단계에서 안전성을 심사하고 제조과정 조사 및 수거·성능시험

(1-2) 안전검사

사업목적	사업장에서 보유한 위험기계·기구 및 설비가 안전검사 기준에 적합한지 검사하여 위험기계·기구 및 설비의 사용상 안전성 확보
사업내용	안전검사 대상 위험기계·기구 및 설비 보유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용 기계·기구가 안전검사 기준에 맞는지 검사하고 증명서를 발급

2) 사업개요

(2-1)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사업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정부의 책무)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1. 산업 안전 및 보건 정책의 수립 및 집행 2. 산업재해 예방 지원 및 지도 3.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기준 마련, 지도 및 지원 4. 사업주의 자율적인 산업 안전 및 보건 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지원 5.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홍보·교육 등 안전문화 확산 추진 6.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술의 연구·개발 및 시설의 설치·운영 7.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관리 8. 산업 안전 및 보건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및 지도·감독 9. 그 밖에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 및 건강의 보호·증진 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그 밖의 관련 단체 및 연구기관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안전인증) ① 유해·위험기계등 중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위해(危害)를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라 한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 설치·이전하거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5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에서 같다)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안전인증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제조·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2.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 3.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위험기계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그 유해·위험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 등을 평가받으려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안전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인증기준에 따라 안전인증을 할 수 있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이하 "안전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자가 안전인증기준을 지키고 있는지를 3년 이하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주기마다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안전인증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기계 등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명·모델명·제조수량·판매수량 및 판매처 현황 등의 사항을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제조·수입 또는 판매에 관한 자료를 공단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⑦ 안전인증의 신청 방법·절차, 제4항에 따른 확인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 ①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위험기계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이라 한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기준(이하 "자율안전기준"이라 한다)에 맞는지 확인(이하 "자율안전확인"이라 한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면제할 수 있다. 1.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제조·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2. 제84조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제86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이 취소되거나 안전인증표시의 사용 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이 자율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안전검사) ①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94조, 제95조 및 제98조에서 같다)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이하 "안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을 사용하는 사업주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소유자가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안전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안전검사의 신청, 검사 주기 및 검사합격 표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검사 주기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종류, 사용연한(使用年限) 및 위험성을 고려하여 정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 (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보조·지원) ① 정부는 사업주, 사업주단체, 근로자단체,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 연구기관 등이 하는 산업재해 예방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이하 "보조·지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보조·지원이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① 정부는 중대재해를 예방하여 시민과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중대재해의 종합적인 예방대책의 수립·시행과 발생원인 분석 2. 사업주, 법인 및 기관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 3. 사업주, 법인 및 기관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 지원 및 지도 4.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의 시행 ② 정부는 사업주, 법인 및 기관에 대하여 유해·위험 시설의 개선과 보호 장비의 구매, 종사자 건강진단 및 관리 등 중대재해 예방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추진경위	○ 1995～1996 상반기 : 산업재해예방 특별사업 ○ 1996 하반기～1999 : 산업안전선진화 3개년 계획(대통령 보고) ○ 2000～2004 : 제1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 계획(1999. 12월) ○ 2001. 2월 : 노동부 업무보고 ○ 2001. 3월 : 제12회 국무회의시 대책수립 지시(대통령 보고) ○ 2001. 8월 : 국무회의 시 산업재해 및 구인난 해소 대책의 일환으로 클린사업 추진계획 보고 ○ 2005～2009 : 제2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 계획(2004. 12월) ○ 2010～2014 : 제3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 계획(2010. 3월) ○ 2015～2019: 제4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 계획(2015. 1월) ○ 2020～2024: 제5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 계획(2020. 5월) ○ 2022. 11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 2025. 9월: 노동안전 종합대책

(2-2) 사업규모

○ 사업기간 : 계속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계획액 기준, 기금운용계획변경 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사업비	7,859	6,318	6,324	6,017	6,167

(2-3)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사업 수혜자 : 사업주 및 근로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기관명	2027년 지원금액 (백만원)	지원 비율(%)	법적근거
안전인증	출연	한국산업 안전보건공단	5,427	10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 제96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
안전검사	출연	한국산업 안전보건공단	740	10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 제96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

3) 기능별(내역사업별) 산출 내역

(3-1) 내역사업별 세부 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계획액(수정)(A)	2027년 정부안액(B)	증감 (B-A)
합 계	6,017	6,167	150
안전인증	5,277	5,427	150
안전검사	740	740	-

○ **안전인증 (2026년) 6,017 → (2027년) 6,167백만원, +2.5%**

- (설명) 신기술이 반영된 스마트 안전장비 등이 다양하게 개발되어 산업현장에 상용화됨에 따라 대응을 위한 안전인증 커버리지 확대(전체 인증건수 59,975건 → 60,482건, +507건)
- (산출) 안전인증 ('26년) 5,277 → ('27년) 5,427백만원(+150백만원)
  *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 ('26년) 3,184 → ('27년) 3,218백만원(52,630건 × 60.5→61.1천원)(+34백만원)
  * 방호장치보호구 안전인증 : ('26년) 1,854 → ('27년)1,854백만원(6,295건 × 294.6천원)(전년 동)
  * 산업용기계기구 안전인증 : ('26년) 355 → ('27년)239백만원(1,050→1,557건 × 228천원) (+116백만원, +507건)

○ **안전검사 (2026년) 740 → (2027년) 740백만원, 전년 동**

- (설명) 전년 수준 요구
- (산출) 안전검사 : ('26년) 740 → ('27년) 740백만원(33,700건 × 21.97천원)(전년 동)

4) 사업효과

(4-1) 최근 5년(2023년~2027년)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 **성과지표: 안전인증·검사 위험기계사망사고감소율 (세부사업 지표)**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목표	신규	신규	신규	신규	2.0
실적	-	-	-	-	해당없음
달성도	-	-	-	-	해당없음

- **측정산식 :** [(전년도 안전인증·검사 기계에서 발생한 사망자 수 - 당해 연도 안전인증·검사 기계에서 발생한 사망자 수) / 전년도 안전인증·검사 기계에서 발생한 사망자 수] × 100
  ※ 사망자 수 산정은 기계적 원인에 의한 사망자로 한정
- **측정방법 및 목표치 설정근거**
  · 목표치 설정 근거 : 최근 3개년('23~'25) 평균 실적을 목표값으로 설정
- **자료수집방법/출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성과지표: 안전인증·검사부적합(불합격) 개선율 (세부사업 지표)**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목표	신규	신규	신규	신규	83.6
실적	-	-	-	-	해당없음
달성도	-	-	-	-	해당없음

- **측정산식 :** 안전인증·검사 재인증(검사) 건수 / 안전인증·검사 부적합(불합격) 건수 × 100

- **측정방법 및 목표치 설정근거**
  · 목표치 설정 근거 : 최근 3개년('23~'25) 평균 실적을 목표값으로 설정

- **자료수집방법/출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성과지표: 지원사업장 사고사망만인율(‰)(하향지표)(프로그램 지표)**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목표	0.54	0.50	0.45	0.42	삭제
실적	0.51	0.48	0.42	해당없음	-
달성도	105.9	104.0	106.7	해당없음	-

- **측정산식 :** 지원사업장의 사망사고 예방 실적(%)=(A-B)/A×100
  · A : 공단 지원사업장* 사고사망만인율(‰)
  * 재해발생사업장(중대재해조사 및 감독 대상 사업장 등) 지원 실적은 제외
  · B : 전체 사고사망만인율(‰)

- **측정방법 및 목표치 설정근거**
  · 목표치 설정 근거 :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따라 전체 사업장의 사고사망만인율 감소 목표 비율*을 준용**하여 목표치 설정
  * ('26) 0.37 → ('27) 0.35 → ('28) 0.33 → ('29) 0.31 → ('30) 0.29
  ** 종합대책 목표치의 전년대비 감소율을 성과지표 목표치에 적용

- **자료수집방법/출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성과지표: 중상해사고재해율(%)(하향지표)**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목표	0.084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실적	0.082	-	-	-	-
달성도	102.4	-	-	-	-

- **측정산식 :** 1프로그램 1성과 지표 원칙에 따른 지표 삭제

- **측정방법 및 목표치 설정근거 :** 1프로그램 1성과 지표 원칙에 따른 지표 삭제

- **자료수집방법/출처 :** 1프로그램 1성과 지표 원칙에 따른 지표 삭제

○ **성과지표: 50인 미만 사업장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연계율(%)**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목표	79.8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실적	71.2	-	-	-	-
달성도	89.2	-	-	-	-

- **측정산식** : 1프로그램 1성과 지표 원칙에 따른 지표 삭제

- **측정방법 및 목표치 설정근거** : 1프로그램 1성과 지표 원칙에 따른 지표 삭제

- **자료수집방법/출처** : 1프로그램 1성과 지표 원칙에 따른 지표 삭제

(4-2) 성과지표 이외의 최근 4년(2023년~2026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연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3년	-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57,723건 - 방호장치보호구 안전인증: 7,005건 - 산업용기계기구 안전인증: 1,982건 - 위험기계기구 안전검사: 37,327건
2024년	-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52,943건 - 방호장치보호구 안전인증: 6,973건 - 산업용기계기구 안전인증: 1,525건 - 위험기계기구 안전검사: 38,952건
2025년	-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50,692건 - 방호장치보호구 안전인증: 5,754건 - 산업용기계기구 안전인증: 1,828건 - 위험기계기구 안전검사: 38,447건
2026년	-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29,092건 - 방호장치보호구 안전인증: 2,922건 - 산업용기계기구 안전인증: 943건 - 위험기계기구 안전검사: 25,654건

(4-3) 향후(2027년 이후) 기대효과

○ 제품의 안전성뿐만 아니라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를 심사하는 안전인증을 통해 위험기계기구, 방호장치 및 보호구에 대한 제품의 안전성능을 확보하고 수거시험·현장조사 등 시장 감시기능 강화를 통하여 산업재해예방에 기여

○ 유해·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안전검사 대상품에 대해 인증·검사 이력 추적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대상품 사각지대 제거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안전인증> ▻ 신청주체 : 제조자 또는 수입자

【형식별제품】 * 처리기간(국내/국외)

서면심사 15일/30일	→	기술능력.생산체계심사 30일/45일	→	제품심사 30일	→	확인심사 1회/2년

【개별제품】 * 처리기간(국내/국외)

서면심사 15일/30일	→	제품심사 15일

△ 서면심사: 설계제작단계에서 주요구조부의 강도, 방호장치 등의 적정성을 도면 등을 통해 심사

△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서면심사 적합 후 제조공장 방문을 통해 품질관리체계, 공정관리 등의 적정성 심사

△ 제품심사: 장비 제작 완료 후 서면심사 도면 및 사양과의 일치여부 및 시험작동을 통한 성능 심사→ 안전인증서 발행

- 형식별: 서면심사와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결과가 적합한 경우 형식별 표본 추출 심사
- 개 별: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를 받지 않는 경우 모든 모델 대상으로 심사

△ 확인심사: 사후관리 성격으로 안전인증 후 2년에 1회 이상 제조방문을 통해 공정관리 유지여부 및 제품 샘플링 검사

<자율안전확인신고> ▻ 신청주체 : 제조자 또는 수입자

신고서 접수	→	제출서류 확인	→	자율안전확인신고증명서 교부(15일)

△ 제출서류 확인내용 : 제품설명서, 자율안전기준 충족서류, 각종 시험성적서

<제조과정조사> 신청여부와 관계없이 공단 직접 조사

조사 대상 선정 (공단)	→	제조과정 불시 조사 (공단)	→	결과보고 (공단→고용노동부)	→	수거·파기 명령 등 결과조치 (고용노동부)

△ 대상선정 : 사고다발기계, 불량제조·사용 의심사업장 등을 집중 선정

△ 불시조사 : 제조사업장 중심으로 조사하되, 불량제품 유통 의심 시 사용사업장 병행조사

△ 결과보고 : 불량제품 제조 또는 사용으로 확인된 경우 고용노동부 조치의뢰

△ 결과조치 : 불량 제품 파기 또는 개선 명령

<안전검사> ▻ 신청주체 : 사용하는 사업주 또는 소유자

검사 신청 (사업주)	→	검사 실시 (공단)	→	안전검사 합격증명서 발급 (공단)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 ▻ 신청주체 : 사용하는 사업주 또는 소유자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 사업장 자체 검사원 보유, 장비 보유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제3자에 의한 안전검사 대신 사업장 스스로 자율검사프로그램을 계획하고 공단에 승인

프로그램 작성	→	심사	→	인정서 발행(15일)	→	자체 검사	→	재인정 심사 (2년주기)
사업주		공단		공단		사업주		사업주→공단

△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신청한 사업주가 공단으로부터 부적합 통지서를 교부 받은 경우 사업주는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검사를 받아야함

8) 최근 3년간(2024년~2026년)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8-1) 정부 사업평가

구분	연도	주요내용
'25 회계연도 재난안전사업	2026년	○ 결과 : 보통(69.3점)
'26년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	2026년	○ 결과 : 사업개선

(8-2) 국회 지적사항: 해당없음

(8-3) 감사원, 총리실, 기타(언론, 시민단체 등) 결과: 해당없음

4. 최근 4년간(2023년~2026년) 결산내역

1) 결산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연도	당초 계획액	수정 계획액 (A)	전년도 이월액	기금변경 증감액 등	계획 현액	집행액 (B)	집행률 (B/Ax100)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3년	7,859	7,859	-	-	7,859	7,639	97.2	-	220
2024년	6,318	6,318	-	-	6,318	6,124	96.9	-	194
2025년	6,324	6,324	-	-	6,324	6,034	95.4	-	290
2026년	6,017	6,017	-	-	6,017	3,304	54.9	해당없음	해당없음

2) 연도별 결산 주요사항

연도	유형	금액 (백만원)	사유
2023년	불용	220	인증장비 구매 등 낙찰차액 및 수행경비 집행잔액
2024년	불용	194	인증장비 구매 등 낙찰차액 및 수행경비 집행잔액
2025년	불용	290	인증장비 구매 등 낙찰차액 및 수행경비 집행잔액
2026년	불용	-	해당사항 없음

5. 기타 추가자료 : 해당없음

사 업 명
(15) 유해작업환경개선(4152-352)

1. 사업 총괄 정보

1) 사업 기본 정보

(1-1) 일반 정보

소관	실·국	과·팀	기금	계정
고용노동부	산업보건 보상정책관	산업보건정책과	산재기금	-

(1-2) 코드·명칭 정보

구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080	08E	4100	4152	352
명칭	사회복지	노동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기술지원	유해작업환경개선

2)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N	Y	N	N	N	N

3)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N	N	Y	N	N	-	-

4) 기능별(내역사업별)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내역사업명	소관	사업시행주체
취약계층 고위험 환경 개선지원	고용노동부 산업보건보상정책관 산업보건정책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유해작업환경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고용노동부 산업보건보상정책관 산업보건정책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 지출계획 총괄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사업명	2025년 결산액	2026년 당초계획액 (A)	2026년 수정계획액	2027년 요구액	2027년 정부안액 (B)	증감액 (B-A)	증감률 (B-A) /A×100
유해작업환경개선	75,238	75,032	75,032	112,916	88,849	13,817	18.4

1)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계획액 (수정)	2025년 계획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계획액 (수정)	2026년 계획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75,526	75,526	75,238	-	288	75,032	75,032	53,142	88,849
·취약계층 고위험 환경 개선지원	71,629	71,629	71,474	-	155	71,635	71,635	51,335	85,449
·유해작업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3,897	3,897	3,764	-	133	3,397	3,397	1,807	3,400

2) 비목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계획액 (수정)	2025년 계획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계획액 (수정)	2026년 계획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75,526	75,526	75,238	-	288	75,032	75,032	53,142	88,849
·사업출연금(350-02)	75,526	75,526	75,238	-	288	75,032	75,032	53,142	88,849

3. 사업 설명

1) 사업목적·내용

(1-1) 취약계층 고위험 환경 개선지원

사업목적	소규모 사업장의 측정·특검 제도이행 비용지원 대상확대 및 현장 참여형 예방인프라 확충을 통한 정책 사각지대 근로자의 직업병 예방에 기여
사업내용	50인 미만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보유 사업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비용 지원 및 50인 미만 특수건강진단 대상유해인자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건설일용직 근로자, 건강관리카드 소지자를 대상으로 특수건강진단비용 지원

(1-2) 유해작업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사업목적	건강보호 체계가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 보건관리 지원기반 강화를 통한 양질의 근로자 건강보호 서비스 창출
사업내용	소규모 석면해체제거작업의 현장모니터링 지원, 화학물질 노출현황 상시 모니터링 체계 마련으로, 백혈병 등 직업성 암이 발생하는 전자산업에 대한 예방체계 구축 등

2) 사업개요

(2-1)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사업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정부의 책무)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1. 산업 안전 및 보건 정책의 수립 및 집행 2. 산업재해 예방 지원 및 지도 3.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기준 마련, 지도 및 지원 4. 사업주의 자율적인 산업 안전 및 보건 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지원 5.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홍보·교육 등 안전문화 확산 추진 6.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술의 연구·개발 및 시설의 설치·운영 7.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관리 8. 산업 안전 및 보건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및 지도·감독 9. 그 밖에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 및 건강의 보호·증진 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그 밖의 관련 단체 및 연구기관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1조(산업재해 예방시설의 설치·운영)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지도시설, 연구시설 및 교육시설 2. 안전보건진단 및 작업환경측정을 위한 시설 3.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시설 4.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 ○ 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산업재해 예방의 재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재원(財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에서 지원한다. 1. 제11조 각 호에 따른 시설의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산업재해예방 관련 사업 및 비영리법인에 위탁하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의 사업비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조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보건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흄(fume, 열이나 화학반응에 의하여 형성된 고체증기가 응축되어 생긴 미세입자를 말한다)·미스트(mist, 공기 중에 떠다니는 작은 액체방울을 말한다)·산소결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2. 방사선·유해광선·고온·저온·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3.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 4. 계측감시(計測監視), 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밀공작(精密工作)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5.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6. 환기·채광·조명·보온·방습·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하는 보건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 ① 화학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혼합물로서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하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라 한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자료(이하 "물질안전보건자료"라 한다)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 사항이나 작성 방법을 정할 때 「화학물질관리법」 및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제품명 2.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구성하는 화학물질 중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3. 안전 및 보건상의 취급 주의 사항 4.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5. 물리·화학적 특성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구성하는 화학물질 중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이 전부 포함된 경우 2.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수입하려는 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국외에서 제조하여 우리나라로 수출하려는 자(이하 "국외제조자"라 한다)로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힌 화학물질 외에는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

	물질이 없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서류를 받아 제출한 경우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 사항을 반영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등의 제출 방법·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16조(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된 자료의 제공)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된 자료를 근로자 및 사업주에게 제공할 수 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유해·위험물질의 제조 등 허가) ① 제1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로서 대체물질이 개발되지 아니한 물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하 "허가대상물질"이라 한다)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허가대상물질의 제조·사용설비, 작업방법, 그 밖의 허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이하 "허가대상물질제조·사용자"라 한다)는 그 제조·사용설비를 제2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그 기준에 적합한 작업방법으로 허가대상물질을 제조·사용하여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허가대상물질제조·사용자의 제조·사용설비 또는 작업방법이 제2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기준에 적합하도록 제조·사용설비를 수리·개조 또는 이전하도록 하거나 그 기준에 적합한 작업방법으로 그 물질을 제조·사용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허가대상물질제조·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3항을 위반한 경우 4. 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5. 자체검사 결과 이상을 발견하고도 즉시 보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⑥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석면조사) ①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경우에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 또는 임차인 등(이하 "건축물·설비소유주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이하 "일반석

	면조사"라 한다)한 후 그 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1.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지 여부 2.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 중 석면이 함유된 자재의 종류, 위치 및 면적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이나 설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설비소유주등은 제120조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이하 "석면조사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이하 "기관석면조사"라 한다)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석면함유 여부가 명백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기관석면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제1항 각 호의 사항 2.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함유된 석면의 종류 및 함유량 ③ 건축물·설비소유주등이 「석면안전관리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하여 석면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석면조사 또는 기관석면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건축물·설비소유주등이 일반석면조사 또는 기관석면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해당 건축물·설비소유주등에 대한 일반석면조사 또는 기관석면조사의 이행 명령 2.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는 자에 대하여 제1호에 따른 이행 명령의 결과를 보고받을 때까지의 작업중지 명령 ⑤ 기관석면조사의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작업환경측정) ① 사업주는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이 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제2항에 따른 도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27조에서 같다)는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을 제126조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이하 "작업환경측정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작업환경측정 중 시료의 분석만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사업주는 근로자대표(관계수급인의 근로자대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요구하면 작업환경측정 시 근로자대표를 참석시켜야 한다. ⑤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사업주로부터 작업환경측정을 위탁받은 작업환경측정기관이 작업환경측정을 한 후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본다. ⑥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관계수급인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 제127조 및 제175조제5항제15호에서 같다)에게 알려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설비의 설치·개선 또는 건강진단의 실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대한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라 작업환경측정을 위탁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기관에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할 수 있다. ⑧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의 방법·횟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27조(작업환경측정 신뢰성평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대하여 그 신뢰성을 평가할 수 있다. ② 사업주와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신뢰성을 평가할 때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뢰성 평가의 방법·대상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일반건강진단) ①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일반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② 사업주는 제135조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 또는 「건강검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건강검진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서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일반건강진단의 주기·항목·방법 및 비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특수건강진단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특수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이하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라 한다)에 종사하는 근로자 2. 제1호, 제3항 및 제131조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 결과 직업병 소견이 있는 근로자로 판정받아 작업 전환을 하거나 작업 장소를 변경하여 해당 판정의 원인이 된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 ②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의 배치 예정

	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배치전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따른 유해인자로 인한 것이라고 의심되는 건강장해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 중 보건관리자 등이 사업주에게 건강진단 실시를 건의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이하 "수시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35조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의 시기·주기·항목·방법 및 비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31조(임시건강진단 명령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같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들에게 유사한 질병의 증상이 발생한 경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업주에게 특정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이하 "임시건강진단"이라 한다)의 실시나 작업전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임시건강진단의 항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 (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보조·지원) ① 정부는 사업주, 사업주단체, 근로자단체,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 연구기관 등이 하는 산업재해 예방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이하 "보조·지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보조·지원이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① 정부는 중대재해를 예방하여 시민과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중대재해의 종합적인 예방대책의 수립·시행과 발생원인 분석 2. 사업주, 법인 및 기관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 3. 사업주, 법인 및 기관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 지원 및 지도 4.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의 시행 ② 정부는 사업주, 법인 및 기관에 대하여 유해·위험 시설의 개선과 보호 장비의 구매, 종사자 건강진단 및 관리 등 중대재해 예방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추진경위	○ 1995～1996 상반기 : 산업재해예방 특별사업 ○ 1996 하반기～1999 : 산업안전선진화 3개년 계획(대통령 보고) ○ 2000～2004 : 제1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 계획(1999. 12월) ○ 2001. 2월 : 노동부 업무보고

	○ 2001. 3월 : 제12회 국무회의시 대책수립 지시(대통령 보고) ○ 2001. 8월 : 국무회의 시 산업재해 및 구인난 해소 대책의 일환으로 클린사업 추진계획 보고 ○ 2005～2009 : 제2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 계획(2004. 12월) ○ 2010～2014 : 제3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 계획(2010. 3월) ○ 2015～2019: 제4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 계획(2015. 1월) ○ 2020～2024: 제5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 계획(2020. 5월) ○ 2022. 11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 2025. 9월: 노동안전 종합대책

(2-2) 사업규모

○ 사업기간 : 계속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계획액 기준, 기금운용계획변경 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사업비	82,176	81,276	75,526	75,032	88,849

(2-3)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사업 수혜자 : 사업주 및 근로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기관명	2027년 지원금액 (백만원)	지원 비율(%)	법적근거
취약계층 고위험환경 개선지원	출연	한국산업 안전보건공단	85,449	10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 제96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
유해작업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출연	한국산업 안전보건공단	3,400	10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 제96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

3) 기능별(내역사업별) 산출 내역

(3-1) 내역사업별 세부 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계획액(수정)(A)	2027년 정부안액(B)	증감 (B-A)
합 계	75,032	88,849	13,817
취약계층 고위험환경 개선지원	71,635	85,449	13,814
유해작업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3,397	3,400	3

○ 취약계층 고위험환경 개선지원 (2026년) 75,032 → (2027년) 88,849백만원, +18.4%

- (설명)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진단, 직종별 건강진단 및 근골예방 비용 지원 증가

- (산출)

*** 작업환경측정 비용지원 : ('26년) 32,124 → ('27년) 35,771백만원(+3,647백만원)**

· 비용지원: ('26년) 31,537 → ('27년) 35,241백만원(88,000→91,000개소 × 358,375→387,266원) (+3,704백만원, +3,000개소)

· 측정비용 운영 및 관리: ('26년) 587 → ('27년) 530백만원(△57백만원)

***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 ('26년) 31,972 → ('27년) 41,790백만원(+9,818백만원)**

· 비용지원: ('26년) 31,088 → ('27년) 40,989백만원(670,000→840,000명 × 46,400→48,797원) (+9,901백만원, +170,000명)

· 측정비용 운영 및 관리: ('26년) 884 → ('27년) 801백만원(△83백만원)

*** 직종별 건강진단 및 근골예방 비용지원 : ('26년) 6,824 → ('27년) 7,173백만원(+349백만원)**

· 직종별건강진단: ('26년) 2,181 → ('27년) 2,546백만원(47,000→50,000명 × 46,404→50,911원) (+365백만원, +3,000명)

· 근골예방: ('26년) 4,482 → ('27년) 4,482백만원(4,600개소 × 974천원)(전년 동)

· 측정비용 운영 및 관리: ('26년) 161 → ('27년) 145백만원(△16백만원)

*** 작업환경측정 신뢰성 평가 : ('26년) 715 → ('27년) 715백만원(650개소 × 1,100천원)(전년 동)**

○ 유해작업환경개선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2026년) 3,397 → (2027년) 3,400백만원, +0.1%

- (설명) 화학물질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비 증액

- (산출)

*** 석면해체·제거작업 안전성평가 및 모니터링 : ('26년) 1,024 → ('27년) 1,024백만원(전년 동)**

· 석면해체·제거작업 안전성 평가 : ('26년) 300 → ('27년) 300백만원(1,835개소 × 164천원)(전년 동)

· 소규모 석면해체·제거작업현장 모니터링 : ('26년) 724 →('27년) 724백만원(5,000개소 × 145천원)(전년 동)

*** 화학물질 역량강화 프로그램 : ('26년) 1,160 → ('27년) 1,163백만원(+3백만원)**

· 위탁비: ('26년) 1,000 → ('27년) 1,000백만원(500개소 × 2백만원)(전년 동)

· 운영비: ('26년) 160 → ('27년) 163백만원(+3백만원)

*** 화학물질 노출정보 알리미 : ('26년) 1,213 → ('27년) 1,213백만원(8,500건 × 142.7천원)(전년 동)**

4) 사업효과

(4-1) 최근 5년(2023년~2027년)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 '26년 성과지표 개선 연구용역을 통해 새로운 평가지표 개발 후 '세부사업 지표' 추가 적용 예정

○ **성과지표: 지원사업장 사고사망만인율(‰)(하향지표)(프로그램 지표)**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목표	0.54	0.50	0.45	0.42	삭제
실적	0.51	0.48	0.42	해당없음	-
달성도	105.9	104.0	106.7	해당없음	-

- **측정산식** : 지원사업장의 사망사고 예방 실적(%)=(A-B)/A×100
  · A : 공단 지원사업장* 사고사망만인율(‰)
  * 재해발생사업장(중대재해조사 및 감독 대상 사업장 등) 지원 실적은 제외
  · B : 전체 사고사망만인율(‰)

- **측정방법 및 목표치 설정근거**
  · 목표치 설정 근거 :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따라 전체 사업장의 사고사망만인율 감소 목표 비율*을 준용**하여 목표치 설정
  * ('26) 0.37 → ('27) 0.35 → ('28) 0.33 → ('29) 0.31 → ('30) 0.29
  ** 종합대책 목표치의 전년대비 감소율을 성과지표 목표치에 적용

- **자료수집방법/출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성과지표: 중상해사고재해율(%)(하향지표)**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목표	0.084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실적	0.082	-	-	-	-
달성도	102.4	-	-	-	-

- **측정산식** : 1프로그램 1성과 지표 원칙에 따른 지표 삭제

- **측정방법 및 목표치 설정근거** : 1프로그램 1성과 지표 원칙에 따른 지표 삭제

- **자료수집방법/출처** : 1프로그램 1성과 지표 원칙에 따른 지표 삭제

○ **성과지표: 50인 미만 사업장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연계율(%)**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목표	79.8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실적	71.2	-	-	-	-
달성도	89.2	-	-	-	-

- **측정산식** : 1프로그램 1성과 지표 원칙에 따른 지표 삭제

- **측정방법 및 목표치 설정근거** : 1프로그램 1성과 지표 원칙에 따른 지표 삭제

- **자료수집방법/출처** : 1프로그램 1성과 지표 원칙에 따른 지표 삭제

(4-2) 성과지표 이외의 최근 4년(2023년~2026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연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3년	- 작업환경측정 비용지원 : 31,615백만원(75,419개소) -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 31,873백만원(514,682명) -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검진 신뢰성 평가 : 659개소 - 직종별 건강진단 및 근골예방 비용지원 : 39,861명, 4,556개소 - 석면해체제거작업 안전성 평가 : 2,027개소 - 소규모 석면해체제거작업 모니터링(개소) : 4,917개소 - 화학물질 노출정보 알리미 : 1식(12,100건) - 소규모 사업장 보건관리체계 구축지원(위탁) : 70,843회
2024년	- 작업환경측정 비용지원 : 75,016개소 -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 501,835명 - 작업환경측정 신뢰성 평가 : 670개소 - 직종별 건강진단 및 근골예방 비용지원 : 33,118명, 4,602개소 - 석면해체제거작업 안전성 평가 : 1,971개소 - 소규모 석면해체제거작업 모니터링(개소) : 5,299개소 - 화학물질 노출정보 알리미 : 1식(12,307건) - 소규모 사업장 보건관리체계 구축지원(위탁) : 72,069회
2025년	- 작업환경측정 비용지원 : 74,651개소 -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 481,170명 - 작업환경측정 신뢰성 평가 : 658개소 - 직종별 건강진단 및 근골예방 비용지원 : 41,860명, 4,600개소 - 석면해체제거작업 안전성 평가 : 1,721개소 - 소규모 석면해체제거작업 모니터링(개소) : 4,974개소 - 화학물질 노출정보 알리미 : 1식(11,258건) - 화학물질 역량강화 프로그램 : 1식(499개소)
2026년	- 작업환경측정 비용지원 : 47,081개소 -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 411,023명 - 작업환경측정 신뢰성 평가 : 121개소 - 직종별 건강진단 및 근골예방 비용지원 : 22,402명, 1,134개소 - 석면해체제거작업 안전성 평가 : 396개소 - 소규모 석면해체제거작업 모니터링(개소) : 2,557개소 - 화학물질 노출정보 알리미 : 1식(2,282건) - 화학물질 역량강화 프로그램 : 1식(298개소)

(4-3) 향후(2027년 이후) 기대효과

○ 소규모 사업장의 측정·특검 제도이행 비용지원 대상확대 및 현장 참여형 예방인프라 확충을 통한 정책 사각지대 근로자의 직업병 예방에 기여

○ 석면해체제거업체 평가·관리 및 현장 모니터링 등을 통한 석면에 의한 암 예방 기여

○ 건강보호 체계가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 보건관리 지원기반 강화를 통한 양질의 근로자 건강보호 서비스 창출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취약계층 고위험 환경 개선지원>

○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사업 공고 → 참여 신청 → 검진 실시 (기관) → 검진결과 송부 및 비용지원 신청(기관) → 적정성 심사 (공단) → 비용지원 (공단)

○ 작업환경측정 신뢰성 평가

사업대상 선정 → 자료검토 및 측정계획 수립 → 정밀 작업환경 측정 실시 → 정밀측정결과 피드백 및 통보

○ 직종별 건강진단 및 근골예방 비용지원

사업홍보·안내 → 사업수행기관 선정 → 맞춤형 검진/ 유해요인조사 → 유증상자 건강센터 건강상담 연계

<유해작업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석면해체·제거작업 안전성평가 및 모니터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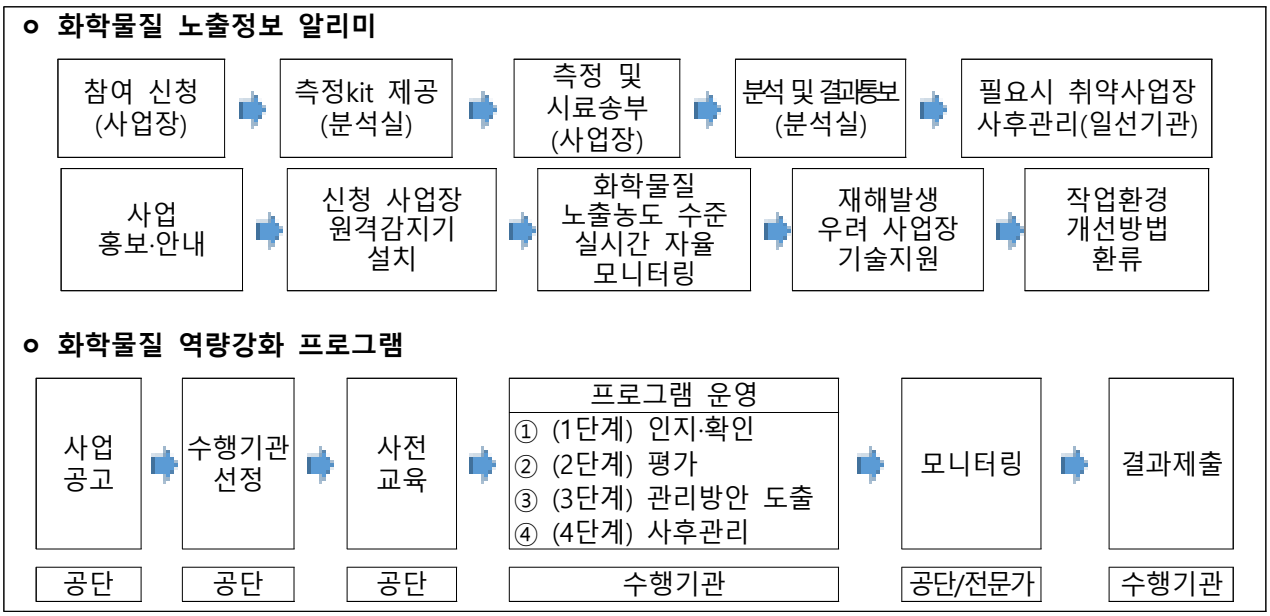
- (석면해체·제거작업 안전성평가)

평가 대상선정 → 평가계획 공고 → 평가반 구성 및 교육 → 평가 실시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 최종결과 확정 및 공개

- (석면해체·제거작업 모니터링)

사업 공모 (공단 본부) → 신청접수 및 선정심사 (공단 본부) → 위탁계약 (공단 본부 ↔위탁기관) → 현장 모니터링 지원 (위탁기관) → 수수료청구 및 검토 지급 (위탁기관 ↔공단본부) → 종합보고서 작성 및 제출 (위탁기관 ↔공단본부)

현장 모니터링 지원 (위탁기관) → 미흡 → 기술지도 (일선기관) → 미흡 → 행정조치 의뢰 (일선기관→ 관할노동지청)



8) 최근 3년간(2024년~2026년)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8-1) 정부 사업평가

구분	연도	주요내용
'25 회계연도 재난안전사업	2026년	○ 결과 : 보통(70.3점)
'26년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2026년	○ 결과 : 사업개선

(8-2) 국회 지적사항

구분	연도	주요내용
'26년 예산안 기후노동위 예비검토보고서	2025년	○ 지적 : 작업환경측정 신규사업장 발굴 필요 ○ 조치 : 재정 지원을 확대하여 신규 사업장의 제도 이행할 수 있도록 개선

(8-3) 감사원, 총리실, 기타(언론, 시민단체 등) 결과: 해당없음

4. 최근 4년간(2023년~2026년) 결산내역

1) 결산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연도	당초 계획액	수정 계획액 (A)	전년도 이월액	기금변경 증감액 등	계획 현액	집행액 (B)	집행률 (B/Ax100)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3년	82,176	82,176	-	-	82,176	80,441	97.9	-	-
2024년	81,276	81,276	-	-	81,276	80,764	99.4	-	-
2025년	75,526	75,526	-	-	75,526	75,238	99.6	-	-
2026년	75,032	75,032	-	-	75,032	53,142	70.8	해당없음	해당없음

2) 연도별 결산 주요사항

연도	유형	금액 (백만원)	사유
2023년	불용	1,735	근골예방 물품지원 조달구매 낙찰차액 및 경비 집행잔액
2024년	불용	512	근골예방 지원물품 낙찰차액 및 사업수행경비 집행잔액 등
2025년	불용	288	산업보건사업 수행장비 구매 낙찰차액 및 사업수행경비 집행잔액
2026년	불용	-	해당사항 없음

5. 기타 추가자료 : 해당없음

사 업 명
(16) 근로자건강보호(4152-353)

1. 사업 총괄 정보

1) 사업 기본 정보

(1-1) 일반 정보

소관	실·국	과·팀	기금	계정
고용노동부	산업보건 보상정책관	산업보건정책과	산재기금	-

(1-2) 코드·명칭 정보

구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080	08E	4100	4152	353
명칭	사회복지	노동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기술지원	근로자건강보호

2)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N	Y	N	N	N	N

3)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Y	N	Y	N	N	-	-

4) 기능별(내역사업별)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내역사업명	소관	사업시행주체
근로자건강센터	고용노동부 산업보건보상정책관 산업보건정책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업무상질병 핵심 고위험요인 집중관리	고용노동부 산업보건보상정책관 산업보건정책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직업성질환 역학조사및 민간기관 검사판정능력 평가 (舊 정도관리)	고용노동부 산업보건보상정책관 산업보건정책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내역사업명	소관	사업시행주체
화학물질 유해위험성 평가	고용노동부 산업보건보상정책관 산업보건정책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감독국 화학사고예방조사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MSDS 제출 및 비공개 정보심사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감독국 화학사고예방조사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뇌심혈관질환 고위험군 집중관리	고용노동부 산업보건보상정책관 산업보건정책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직업성질병감시 및 수사지원	고용노동부 산업보건보상정책관 산업보건정책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 지출계획 총괄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사업명	2025년 결산액	2026년 당초계획액 (A)	2026년 수정계획액	2027년 요구액	2027년 정부안액 (B)	증감액 (B-A)	증감률 (B-A) /A×100
근로자건강보호	44,292	49,211	49,211	65,580	52,872	3,661	7.4

1)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계획액 (수정)	2025년 계획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계획액 (수정)	2026년 계획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45,295	45,295	44,292	-	1,003	49,211	49,211	33,417	52,872
·근로자건강센터	22,963	22,963	22,705	-	258	25,023	25,023	18,689	27,229
·업무상질병 핵심 고위험요인 집중관리	3,374	3,374	3,223	-	151	4,921	4,921	2,920	5,728
·직업성질환 역학조사 및 민간기관 검사판정능력 평가 (舊 정도관리)	2,888	2,888	2,568	-	320	2,888	2,888	1,568	2,888
· 화학물질 유해위험성 평가	3,502	3,502	3,423	-	79	3,510	3,510	1,835	3,891
· MSDS 제출 및 비공개정보 심사	1,066	1,066	1,029	-	37	1,249	1,249	823	1,066
· 뇌심혈관질환 고위험군 집중관리	3,840	3,840	3,840	-	-	3,958	3,958	2,323	4,408
· 직업성 질병 감시 및 수사지원	7,662	7,662	7,504	-	158	7,662	7,662	5,259	7,662

2) 비목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계획액 (수정)	2025년 계획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계획액 (수정)	2026년 계획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45,295	45,295	44,292	-	1,003	49,211	49,211	33,417	52,872
·일반수용비(210-01)	492	492	468	-	24	492	492	253	492
·임차료(210-07)	10	10	10	-	-	10	10	5	10
·관리용역비(210-15)	50	50	48	-	2	50	50	34	50
·민간위탁사업비(320-02)	7,110	7,110	6,978	-	132	7,110	7,110	4,977	7,110
·사업출연금(350-02)	37,633	37,633	36,788	-	845	41,549	41,549	28,148	45,210

3. 사업 설명

1) 사업목적·내용

(1-1) 근로자건강센터

사업목적	사업장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근로자건강센터 및 분소를 설치·운영하여 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없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작업관리, 건강상담 등을 통한 직업병 예방
사업내용	건강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 대하여 직업병 예방 상담, 직업적 트라우마 상담 및 기초 직업건강서비스 제공

(1-2) 업무상질병 핵심 고위험요인 집중관리

사업목적	산업보건 유해·위험요인 집중관리가 필요한 취약분야 개입(대응) 및 지원을 통해 사업장의 자율 관리체계 조기 안착 유도
사업내용	질식재해 고위험 사업장 기술지원, 산업보건 종합컨설팅(OHRA)을 통한 유해·위험요인별 산업보건 종합관리 서비스 지원 및 폭염·한랭질환, 감정노동, 장시간근로 등 위험 요인에 의한 업무상질병 발생 고위험 취약계층 근로자에 대한 기술지원 및 예방물품 지원

(1-3) 직업성질환 역학조사 및 민간기관 검사판정능력 평가(舊 정도관리)

사업목적	직업병발생 또는 질병발생 우려가 있는 위험업종 근로자를 대상으로 질병에 대한 원인규명 및 예방대책 제시
사업내용	직업성질환으로 인한 동종재해 예방 등 업무상 질병 예방을 위해 직업성질환 현장조사, 발생원인 분석 등 업무 관련성을 규명

(1-4) 화학물질 유해위험성 평가

사업목적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위험성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여 근로자 건강유지·증진 및 화재·폭발 등 화학사고 예방에 기여
사업내용	MSDS 정보구축 및 제공, 화학물질 유해성 평가, 화학물질 물리적 위험성 평가 등

(1-5) MSDS 제출 및 비공개정보 심사

사업목적	국내 화학물질·제품 MSDS를 제출받고, 대체 정보에 대한 사전승인을 통하여 국가주도의 국내 유통 화학물질정보 종합관리체계 구축
사업내용	MSDS 제출 의무화 및 영업비밀과 관련된 물질정보 일부 비공개 승인제도 시행에 따른 화학물질제품 정보관리 및 심사업무 위탁수행

(1-6) 뇌심혈관질환 고위험군 집중관리

사업목적	장시간 근로, 기저질환 등으로 인한 뇌심혈관질환 예방을 위해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심층 건강진단 등 집중관리
사업내용	기존 건강진단 결과 기초질환 보유자 중 뇌심혈관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심층진단 지원 및 심층 건강진단 결과 과로사 위험 등이 매우 높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 제공

(1-7) 직업성 질병 감시 및 수사지원

사업목적	질병 업무 기인성 파악 및 사업장 환경 개선지도를 실시하는 직업병안심센터 운영
사업내용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 상시 예방 모니터링을 위해 6개 권역, 10개 종합병원을 「직업병 안심센터」로 지정·운영

2) 사업개요

(2-1)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사업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정부의 책무)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1. 산업 안전 및 보건 정책의 수립 및 집행 2. 산업재해 예방 지원 및 지도 3.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기준 마련, 지도 및 지원 4. 사업주의 자율적인 산업 안전 및 보건 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지원 5.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홍보·교육 등 안전문화 확산 추진 6.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술의 연구·개발 및 시설의 설치·운영 7.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관리 8. 산업 안전 및 보건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및 지도·감독

	9. 그 밖에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 및 건강의 보호·증진 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그 밖의 관련 단체 및 연구기관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1조(산업재해 예방시설의 설치·운영)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지도시설, 연구시설 및 교육시설 2. 안전보건진단 및 작업환경측정을 위한 시설 3.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시설 4.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 ○ 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산업재해 예방의 재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재원(財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에서 지원한다. 1. 제11조 각 호에 따른 시설의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산업재해예방 관련 사업 및 비영리법인에 위탁하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의 사업비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조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보건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흄(fume, 열이나 화학반응에 의하여 형성된 고체증기가 응축되어 생긴 미세입자를 말한다)·미스트(mist, 공기 중에 떠다니는 작은 액체방울을 말한다)·산소결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2. 방사선·유해광선·고온·저온·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3.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 4. 계측감시(計測監視), 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밀공작(精密工作)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5.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6. 환기·채광·조명·보온·방습·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하는 보건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조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보건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흄(fume, 열이나 화학반응에 의하여

	형성된 고체증기가 응축되어 생긴 미세입자를 말한다)·미스트(mist, 공기 중에 떠다니는 작은 액체방울을 말한다)·산소결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2. 방사선·유해광선·고온·저온·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3.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 4. 계측감시(計測監視), 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밀공작(精密工作)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5.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6. 환기·채광·조명·보온·방습·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하는 보건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에게 건강장해를 일으키는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 등(이하 "유해인자"라 한다)의 유해성·위험성 분류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05조(유해인자의 유해성·위험성 평가 및 관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유해인자가 근로자의 건강에 미치는 유해성·위험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보 등에 공표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성·위험성 수준별로 유해인자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유해성·위험성 평가대상 유해인자의 선정기준, 유해성·위험성 평가의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06조(유해인자의 노출기준 설정)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05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위험성 평가 결과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 ① 화학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혼합물로서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하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라 한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자료(이하 "물질안전보건자료"라 한다)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 사항이나 작성 방법을 정할 때 「화학물질관리법」 및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제품명 2.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구성하는 화학물질 중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3. 안전 및 보건상의 취급 주의 사항 4.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5. 물리·화학적 특성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구성하는 화학물질 중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이 전부 포함된 경우 2.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수입하려는 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국외에서 제조하여 우리나라로 수출하려는 자(이하 "국외제조자"라 한다)로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힌 화학물질 외에는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이 없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서류를 받아 제출한 경우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 사항을 반영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등의 제출 방법·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12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일부 비공개 승인 등) ① 제1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업비밀과 관련되어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지 아니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대체할 수 있는 명칭 및 함유량(이하 "대체자료"라 한다)으로 적을 수 있다. 다만,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의 대체 필요성, 대체자료의 적합성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승인에 관한 기준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승인의 유효기간은 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도 계속하여 대체자료로 적으려는 자가 그 유효기간의 연장승인을 신청하면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다음 날부터 5년 단위로 그 기간을 계속하여 연장승인할 수 있다. ⑥ 신청인은 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승인 또는 연장승인에 관한 결과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 또는 연장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5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승인 또는 연장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승인 또는 연장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제5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승인 또는 연장승인을 받은 경우 2. 제1항, 제5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승인 또는 연장승인을 받은 화학물질이 제1항 단서에 따른 화학물질에 해당하게 된 경우 ⑨ 제5항에 따른 연장승인과 제8항에 따른 승인 또는 연장승인의 취소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거나 직업성 질환 발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가 발생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에게 제1항에 따라 대체자료로 적힌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 제공을 요구받은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근로자를 진료하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 2. 보건관리자 및 보건관리전문기관 3. 산업보건의 4. 근로자대표 5. 제165조제2항제38호에 따라 제141조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疫學調査) 실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에 따른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 산업안전보건법 제116조(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된 자료의 제공)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된 자료를 근로자 및 사업주에게 제공할 수 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유해·위험물질의 제조 등 허가) ① 제1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로서 대체물질이 개발되지 아니한 물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하 "허가대상물질"이라 한다)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허가대상물질의 제조·사용설비, 작업방법, 그 밖의 허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이하 "허가대상물질제조·사용자"라 한다)는 그 제조·사용설비를 제2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그 기준에 적합한 작업방법으로 허가대상물질을 제조·사용하여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허가대상물질제조·사용자의 제조·사용설비

	또는 작업방법이 제2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기준에 적합하도록 제조·사용설비를 수리·개조 또는 이전하도록 하거나 그 기준에 적합한 작업방법으로 그 물질을 제조·사용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허가대상물질제조·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3항을 위반한 경우 4. 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5. 자체검사 결과 이상을 발견하고도 즉시 보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⑥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작업환경측정) ① 사업주는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이 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제2항에 따른 도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27조에서 같다)는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을 제126조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이하 "작업환경측정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작업환경측정 중 시료의 분석만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사업주는 근로자대표(관계수급인의 근로자대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요구하면 작업환경측정 시 근로자대표를 참석시켜야 한다. ⑤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사업주로부터 작업환경측정을 위탁받은 작업환경측정기관이 작업환경측정을 한 후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본다. ⑥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관계수급인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 제127조 및 제175조제5항제15호에서 같다)에게 알려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설비의 설치·개선 또는 건강진단의 실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대한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라 작업환경측정을 위탁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기관에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할 수 있다. ⑧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의 방법·횟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일반건강진단) ①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일반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② 사업주는 제135조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 또는 「건강검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건강검진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서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일반건강진단의 주기·항목·방법 및 비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특수건강진단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특수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이하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라 한다)에 종사하는 근로자 2. 제1호, 제3항 및 제131조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 결과 직업병 소견이 있는 근로자로 판정받아 작업 전환을 하거나 작업 장소를 변경하여 해당 판정의 원인이 된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 ②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의 배치 예정 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배치전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따른 유해인자로 인한 것이라고 의심되는 건강장해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 중 보건관리자 등이 사업주에게 건강진단 실시를 건의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이하 "수시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35조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의 시기·주기·항목·방법 및 비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31조(임시건강진단 명령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같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들에게 유사한 질병의 증상이 발생한 경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업주에게 특정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이하 "임시건강진단"이라 한다)의 실시나 작업전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임시건강진단의 항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 (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보조·지원) ① 정부는 사업주, 사업주단체, 근로자단체,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 연구기관 등이 하는 산업재해 예방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이하 "보조·지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보조·지원이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① 정부는 중대재해를 예방하여 시민과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중대재해의 종합적인 예방대책의 수립·시행과 발생원인 분석 2. 사업주, 법인 및 기관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 3. 사업주, 법인 및 기관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 지원 및 지도 4.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의 시행 ② 정부는 사업주, 법인 및 기관에 대하여 유해·위험 시설의 개선과 보호 장비의 구매, 종사자 건강진단 및 관리 등 중대재해 예방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추진경위	○ 1995～1996 상반기 : 산업재해예방 특별사업 ○ 1996 하반기～1999 : 산업안전선진화 3개년 계획(대통령 보고) ○ 2000～2004 : 제1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 계획(1999. 12월) ○ 2001. 2월 : 노동부 업무보고 ○ 2001. 3월 : 제12회 국무회의시 대책수립 지시(대통령 보고) ○ 2001. 8월 : 국무회의 시 산업재해 및 구인난 해소 대책의 일환으로 클린사업 추진계획 보고 ○ 2005～2009 : 제2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 계획(2004. 12월) ○ 2010～2014 : 제3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 계획(2010. 3월) ○ 2015～2019: 제4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 계획(2015. 1월) ○ 2020～2024: 제5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 계획(2020. 5월) ○ 2022. 11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 2025. 9월: 노동안전 종합대책

(2-2) 사업규모

○ 사업기간 : 계속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계획액 기준, 기금운용계획변경 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사업비	43,890	44,387	45,295	49,211	52,872

(2-3)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출연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사업 수혜자 : 산재보험가입 사업주 및 근로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기관명	2027년 지원금액 (백만원)	지원 비율(%)	법적근거
근로자건강센터	출연	한국산업 안전보건공단	27,229	10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 제96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
업무상질병 핵심 고위험요인 집중관리	출연	한국산업 안전보건공단	5,728	10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 제96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
직업성질환 역학조사 및 민간기관 검사판정 능력 평가 (舊 정도관리)	출연	한국산업 안전보건공단	2,888	10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 제96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
화학물질 유해 위험성 평가	출연	한국산업 안전보건공단	3,891	10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 제96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
MSDS 제출 및 비공개정보심사	출연	한국산업 안전보건공단	1,066	10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 제96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
뇌심혈관질환 고위험군 집중관리	출연	한국산업 안전보건공단	4,408	10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 제96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

3) 기능별(내역사업별) 산출 내역

(3-1) 내역사업별 세부 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계획액(수정)(A)	2027년 정부안액(B)	증감 (B-A)
합 계	49,211	52,872	3,661
근로자건강센터	25,023	27,229	2,206
업무상질병 핵심 고위험요인 집중관리	4,921	5,728	807
직업성질환 역학조사 및 민간기관 검사판정 능력 평가 (舊 정도관리)	2,888	2,888	-
화학물질 유해위험성 평가	3,510	3,891	381
MSDS 제출 및 비공개정보심사	1,249	1,066	△183
뇌심혈관질환 고위험군 집중관리	3,958	4,408	450
직업성질병 감시 및 수사지원	7,662	7,662	-

○ 근로자건강센터 (2026년) 25,023 → (2027년) 27,229백만원, +8.8%

- (설명) 신규 근로자건강센터 및 트라우마센터 1개소 증소, 센터 운영비 증액 등
- (산출)
  * 근로자건강센터 : ('26년) 15,768 → ('27년) 17,940백만원(24→26개소×657→690백만원)(+2,172백만원)
  * 트라우마센터 : ('26년) 2,870 → ('27년) 3,532백만원(+662백만원)
    · 운영비 3,328백만원 (24→26개소×122.2→128백만원)
    · 상담사 204백만원 (3개소×68백만원)
  * 분소 : ('26년) 4,325 → ('27년) 4,532백만원(22개소×196.6→206백만원)(+207백만원)
  * 신규 근로자건강센터 : 970백만원(970백만원×1개소)
  * 신규 트라우마센터 : 136백만원(136백만원×1개소)
  * 노후 장비교체(신규) : 119백만원(17백만원×7개소)

○ 업무상질병 핵심 고위험요인 집중관리 (2026년) 4,921 → (2027년) 5,728백만원, +16.4%

- (설명) 온열질환 취약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한 물품지원 증액
- (산출)
  * 질식재해예방 현장지원 : ('26년) 1,030 → ('27년) 1,031백만원(2,000회 × 515→515.5천원)(+1백만원)
  * 화학물질중독사고 예방 집중관리 : ('26년) 1,254 → ('27년) 1,254백만원(7,500회 × 167.2천원)(전년 동)
  * 취약근로자 건강보호 : ('26년) 2,637 → ('27년) 3,443백만원(+806백만원)
    · (기술지원) : 999백만원(6,500회 × 167.5→153.7천원) (△93백만원)
    · (물품지원) : 2,444백만원(+899백만원)
      - 물품지원 : 2,399백만원(+899백만원)

1) 쿨키트 : 308백만원 (28,000세트 × 7→11천원)(+108백만원)
2) 디지털 온·습도계 : 1,305백만원(43,500세트 × 30천원)(+5백만원)
3) 웜키트 : 586백만원(29,300세트 × 20천원)(+586백만원)
4) 얼음물 : 200백만원(200,000개 × 1천원)(순증)
- 운영경비 : 45백만원(전년 동)

○ **직업성질환 역학조사 및 민간기관 검사판정능력 평가**
(2026년) 2,888 → (2027년) 2,888백만원, 전년 동

- (설명) 집단 역학조사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가 추세 관련 사업운영 재구성

- (산출)
* 개별(직업성질환) 역학조사 : ('26년) 1,185 → ('27년) 933백만원 (69→55건 × 17.2→17.0백만원) (△252백만원, △14건)
* 집단(사전예방적) 역학조사 : ('26년) 570 → ('27년) 822백만원 (5→7건 × 114→117.4백만원) (+252백만원, +2건)
* 민간기관 검사판정능력 평가 : ('26년) 1,133 → ('27년) 1,133백만원(160개소)(전년 동)

○ **화학물질 유해위험성 평가 (2026년) 3,510 → (2027년) 3,891백만원, +10.9%**

- (설명) 노후화된 자동화 유세포분석기(FACS) 장비의 신규 구매

- (산출)
* 화학물질 유해위험성 평가 : ('26년) 932 → ('27년) 932백만원(1,050종, 117건)(전년 동)
* 만성흡입독성 시험시설 운영 : ('26년) 2,578 → ('27년) 2,959백만원(+381백만원)
· (만성흡입독성시험) : ('26년) 2,578 → ('27년) 2,589백만원(20건 × 128.9→129.4백만원)(+11백만원)
· (FACS 장비 구매) : 370백만원(1set)(순증)

○ **MSDS 제출 및 비공개 정보심사 (2026년) 1,249 → (2027년) 1,066백만원, △14.7%**

- (설명) AI기반 MSDS DB구축 전산시스템 개발 완료로 인한 완료비용 감액

- (산출)
* 수행경비 : ('26년) 1,066 → ('27년) 1,066백만원(1식)(전년 동)
* AI기반 MSDS DB구축 전산시스템 개발 : ('26년) 183 → ('27년) - 백만원(순감)

○ **뇌심혈관질환 고위험군 집중관리 (2026년) 3,958 → (2027년) 4,408백만원, +11.4%**

- (설명) 심층건강진단 및 초고위험군관리 지원자 수 증가

- (산출)
* 심층건강진단 : ('26년) 3,198 → ('27년) 3,588백만원(20,500→23,000명 × 156천원)(+390백만원, +2,500명)
* 초고위험군관리 : ('26년) 760 → ('27년) 820백만원(3,800→4,100명 × 200천원)(+60백만원, +300명)

○ **직업성 질병 감시 및 수사지원 (2026년) 7,662 → (2027년) 7,662백만원, 전년 동**

- (설명) 전년 수준 반영

- (산출) ('26년) 7,662 → ('27년) 7,662백만원(6개소 × 1,268백만원 + 전산망 유지관리 50백만원)(전년 동)

4) 사업효과

(4-1) 최근 5년(2023년~2027년)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 '26년 성과지표 개선 연구용역을 통해 새로운 평가지표 개발 후 '세부사업 지표' 추가 적용 예정

○ **성과지표: 지원사업장 사고사망만인율(‰)(하향지표)(프로그램 지표)**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목표	0.54	0.50	0.45	0.42	삭제
실적	0.51	0.48	0.42	해당없음	-
달성도	105.9	104.0	106.7	해당없음	-

- **측정산식** : 지원사업장의 사망사고 예방 실적(%)=(A-B)/A×100
  · A : 공단 지원사업장* 사고사망만인율(‰)
  * 재해발생사업장(중대재해조사 및 감독 대상 사업장 등) 지원 실적은 제외
  · B : 전체 사고사망만인율(‰)

- **측정방법 및 목표치 설정근거**
  · 목표치 설정 근거 :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따라 전체 사업장의 사고사망만인율 감소 목표 비율*을 준용**하여 목표치 설정
  * ('26) 0.37 → ('27) 0.35 → ('28) 0.33 → ('29) 0.31 → ('30) 0.29
  ** 종합대책 목표치의 전년대비 감소율을 성과지표 목표치에 적용

- **자료수집방법/출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성과지표: 중상해사고재해율(%)(하향지표)**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목표	0.084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실적	0.082	-	-	-	-
달성도	102.4	-	-	-	-

- **측정산식** : 1프로그램 1성과 지표 원칙에 따른 지표 삭제

- **측정방법 및 목표치 설정근거** : 1프로그램 1성과 지표 원칙에 따른 지표 삭제

- **자료수집방법/출처** : 1프로그램 1성과 지표 원칙에 따른 지표 삭제

○ **성과지표: 50인 미만 사업장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연계율(%)**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목표	79.8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실적	71.2	-	-	-	-
달성도	89.2	-	-	-	-

- **측정산식** : 1프로그램 1성과 지표 원칙에 따른 지표 삭제

- **측정방법 및 목표치 설정근거** : 1프로그램 1성과 지표 원칙에 따른 지표 삭제

- **자료수집방법/출처** : 1프로그램 1성과 지표 원칙에 따른 지표 삭제

(4-2) 성과지표 이외의 최근 4년(2023년~2026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연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3년	- 근로자건강센터 및 분소: 23개소/22개소(243,193명) - 산업보건이슈 감시 및 대응: 17,781개소 - 직업성질환 역학조사: 74건 - 민간기관 정도관리: 수시(7회) - 화학물질 유해위험성 평가: 1,221종/건 - 만성흡입독성시험시설 운영: 1식 - MSDS 제출 및 비공개 정보심사 : 1식 - 옥외 근로자마스크지원 : 228만개 - 감정노동근로자 건강보호 컨설팅 : 1,039개소 - 과로사 고위험군 집중관리 : 20,234명 - 직업성 질병 감시 및 수사지원 : 6개소
2024년	- 근로자건강센터 및 분소: 24개소/22개소(248,094명) - 업무상질병 핵심 고위험요인 집중관리 : 20,293개소 - 직업성질환 역학조사: 58건 - 민간기관 정도관리 : 수시 - 화학물질 유해위험성 평가: 1,228종/건 - 만성흡입독성시험시설 운영: 1식 - MSDS 제출 및 비공개 정보심사 : 1식 - 뇌심혈관질환 고위험군 집중관리: 22,215명 - 직업성 질병 감시 및 수사지원 : 6개소
2025년	- 근로자건강센터 및 분소: 24개소/22개소(253,713명) - 업무상질병 핵심 고위험요인 집중관리 : 16,460개소 - 직업성질환 역학조사: 45건 - 민간기관 정도관리 : 수시 - 화학물질 유해위험성 평가: 1,306종/건 - 만성흡입독성시험시설 운영: 1식 - MSDS 제출 및 비공개 정보심사 : 1식 - 뇌심혈관질환 고위험군 집중관리: 23,624명 - 직업성 질병 감시 및 수사지원 : 6개소
2026년	- 근로자건강센터 및 분소: 26개소/22개소(154,973명) - 업무상질병 핵심 고위험요인 집중관리 : 7,479개소 - 직업성질환 역학조사: 14건 - 민간기관 정도관리 : 수시 - 화학물질 유해위험성 평가: 714종/건 - 만성흡입독성시험시설 운영: 1식 - MSDS 제출 및 비공개 정보심사 : 1식 - 뇌심혈관질환 고위험군 집중관리: 14,251명 - 직업성 질병 감시 및 수사지원 : 6개소

(4-3) 향후(2027년 이후) 기대효과

○ 직업건강서비스 소외지역 근로자 대상 건강상담 서비스 강화를 통한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업무상질병 예방에 기여

○ 트라우마 등의 새로운 건강이슈와 직업병에 대한 적기 개입·대응 체계 구축을 통해 정책 집행 효과 및 사회적 가치 창출

○ 산업보건전문기관 질 관리 및 사전예방적 역학조사 등을 통한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

○ 산업현장 유통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자발적 공개율 향상, 화학물질정보 투명성 확대를 통한 MSDS 신뢰성 제고 및 현장 작동성 강화

○ 유통되는 화학물질 현황을 파악하여 국가차원의 화학물질 체계적·효율적 관리를 통해 화학물질로 인한 산재 발생 시 즉각적 대응을 및 사전예측을 통한 예방활동 가능

○ 장시간 근로 등으로 인한 뇌심혈관질환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하는 집중관리 프로그램을 통한 과로성 업무상질병 예방에 기여

○ 직업성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신속대응을 통해 집단발병 사례를 막고, 필요시 노동부 및 공단과 함께 현장에 방문하여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근로자건강센터(분소)>

운영기관 공모 및 선정	운영계획서 제출안내	운영계획서 작성	운영계획서 접수	운영계획서 검토
공단 본부	공단 본부	운영기관	공단 일선기관	공단 일선기관
운영계획 승인 통보	**계약체결**	**사업수행**	**운영실태평가**	**종합평가 및 운영비 정산**
공단 일선기관	공단 일선기관 ↔운영기관	운영기관	공단 본부 및 일선기관	공단 본부

<직업트라우마센터>

트라우마 발생	심리상담 의뢰	1차 상담	2차 상담 및 사후관리	사후관리 및 보고서 작성
사업장 (중대재해, 자살, 성희롱·성폭력 등)	사업장→센터	센터→사업장 (척도지 검사로 고위험군 선별)	센터→사업장 (고위험군 심리 상담)	센터→사업장 (상담 완료자 사후관리)

<업무상질병 핵심 고위험요인 집중관리>

ㅇ 질식사고 예방 현장 지원

- 질식사고 예방 기술 지원(직접지원)

대상선정	고위험 사업장 기술지원 (밀폐공간 발굴 및 인지, 밀폐공간 프로그램 수립 지원 등)	점검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
공단 일선기관	공단 일선기관	공단 일선기관

- One-Call 서비스(위탁지원)

대상 선정 (신청포함)	서비스 의뢰	종합 서비스 지원 (장비대여, 안전수칙 컨설팅, 교육 등)	장비회수
공단 일선기관	공단 일선기관 → 위탁기관	위탁기관	위탁기관

ㅇ 폭염 취약근로자 건강보호

지원 사업 안내·홍보	예방물품 구매 입찰	지원 대상 신청/선정	예방물품 구매	예방물품 지원(보급)
공단	공단	공단	공단	공단, 고용노동부

<직업성질환 역학조사>

ㅇ 개별 역학조사

역학조사 의뢰서 접수 → 조사계획서 제출 (역학조사평가위원회) → 역학조사 대상여부 결정통보 → 역학조사 수행 → 역학조사 결과심의 (역학조사평가위원회) → 역학조사 결과 통보

ㅇ 집단 역학조사

정부, 공단, 학계, 노총, 경총 등 각계 의견수렴 → 주제선정 (역학조사평가위원회) → 집단 역학조사 수행 → 역학조사 결과심의 (역학조사평가위원회) → 조사결과 분석·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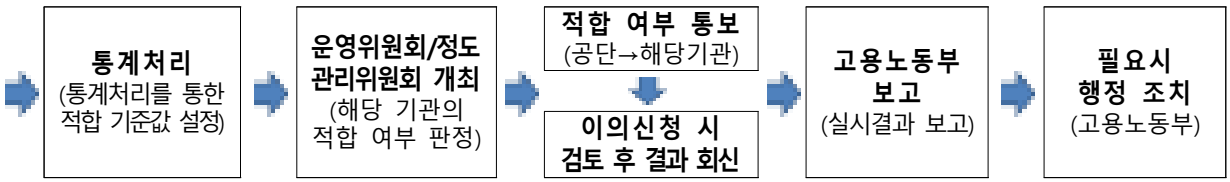
ㅇ 민간기관 정도관리

- 특수·진폐 건강진단기관

실시공고 → 신청서 접수 → 평가자료 선정 및 통보 → 평가자료 접수 → 자료평가 또는 방문평가 → 실무 위원회 심의 → 결과통보 → 이의신청 접수 → 정도관리위원회 심의 → 고용노동부 보고 (실시결과 보고) → 필요시 행정 조치 (고용노동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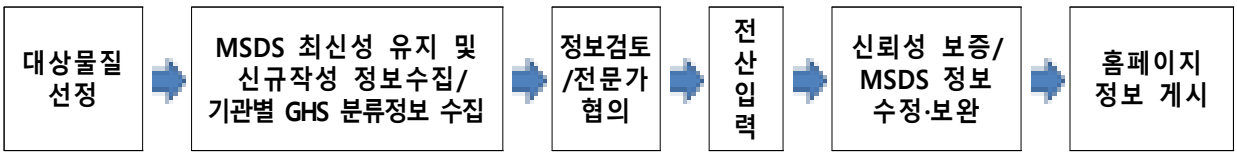
- 작업환경측정기관 및 석면조사기관, 특수건강진단(분석정도관리 限)

실시 공고 → 신청서 접수 → 기관방문 (기관 장비 및 인력 실사) → 시료발송 (조제한 시료 기관발송) → 기준 시료분석 → 분석결과 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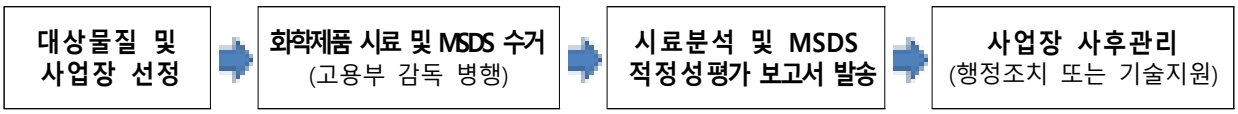


<화학물질 유해위험성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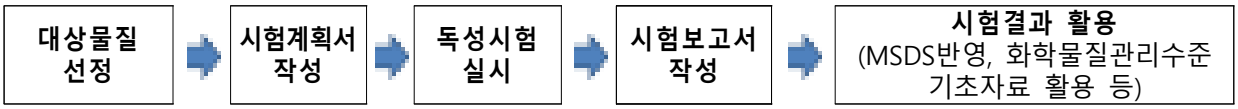
ㅇ MSDS 정보구축 및 제공



ㅇ MSDS 적정성 조사 및 시험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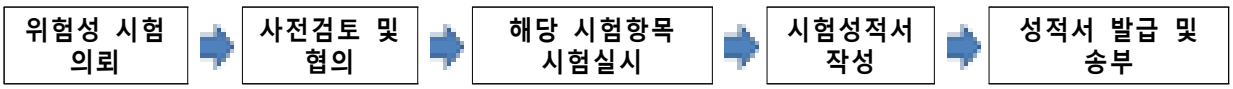
ㅇ 화학물질 유해성 시험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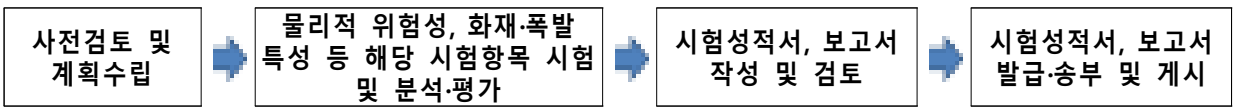
ㅇ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조사 및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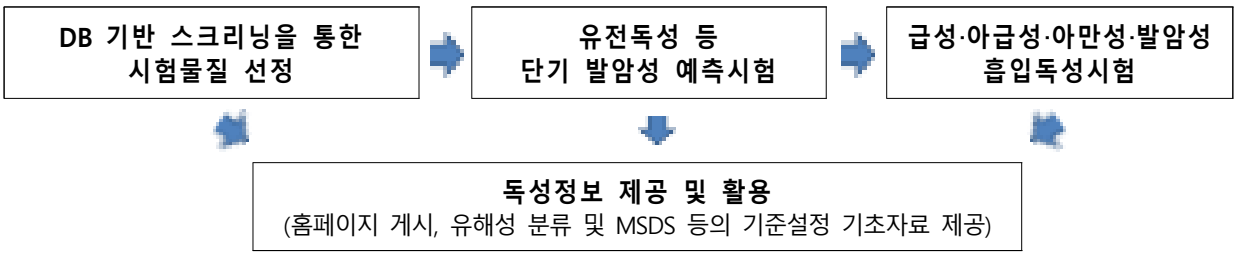
ㅇ 화학물질 물리적 위험성 및 안전성 시험



ㅇ 화학사고 예방 및 원인규명 위험성평가



ㅇ 만성흡입독성 시험시설 운영



<MSDS 제출 및 비공개 정보심사>

ㅇ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MSDS 제출	제출 정보 처리	제출 정보 관리	제출 정보 활용
· 대상 : 유해한 화학물질 제조/수입자	· 제출자료 정보처리 및 DB화(표준화 및 전산화)	· DB화된 정보의 통계처리, 모니터링	· 통계정보 생산 및 활용 등

ㅇ 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 심사

신청	접수·확인	심사	통지·관리
· 대상 : MSDS 내 성분정보를 비공개로 하려는 화학물질 제조/수입자	· 신청대상 여부 확인 · 제출서류 확인 · 수수료 등 부과	3개 분야 서류 심사 · 비공개(영업비밀) 타당성 · 대체자료의 적합성 · MSDS 적정성	· 심사결과에 따른 승인 여부 통보 · MSDS 적정성 검토 결과서 송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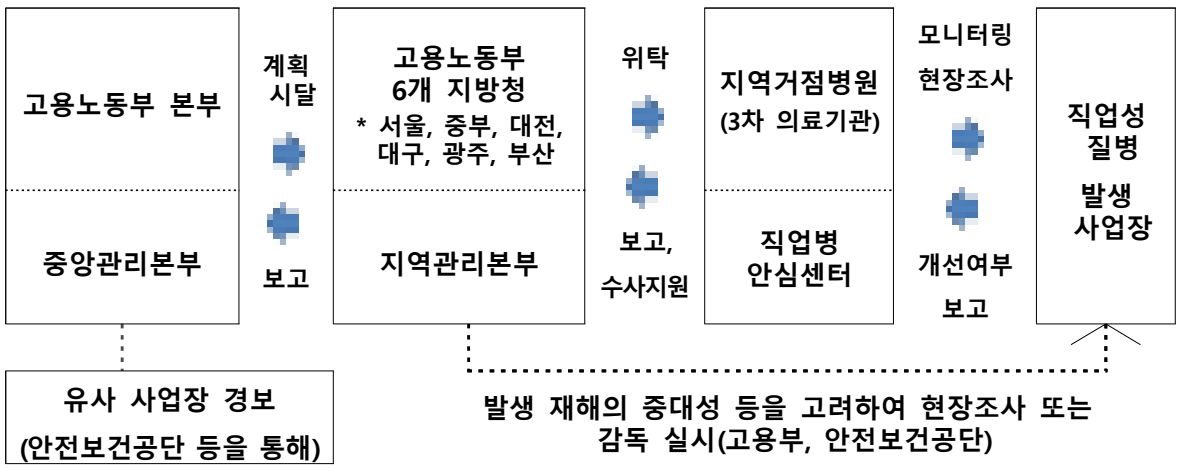
ㅇ MSDS 시스템 운영

계획 수립 <공단>	MSDS 시스템 운영관리 <공단, 전문업체>	MSDS 시스템 제공 <공단>
MSDS시스템 운영을 위한 관리항목 및 RFP 작성	시스템 오류 처리 및 지속적 유지관리 설계 → 구현·설치 → 테스트(시범운영)	공단 홈페이지에 개선된 시스템 적용, 사업장 제공

<뇌심혈관질환 고위험군 집중관리>

공단	사업장 (근로자)	공단	검진기관	검진기관	공단	공단
사업 공고	참여 신청	대상 선정	심층 건강 진단 및 건강 상담	결과 송부 및 비용 청구	적정성 심사	비용 지원

<직업성 질병 감시 및 수사 지원>



8) 최근 3년간(2024년~2026년)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8-1) 정부 사업평가

구분	연도	주요내용
'25 회계연도 재난안전사업	2026년	○ 결과 : 보통(78.9점)
'26년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	2026년	○ 결과 : 사업개선

(8-2) 국회 지적사항: 해당없음

(8-3) 감사원, 총리실, 기타(언론, 시민단체 등) 결과: 해당없음

4. 최근 4년간(2023년~2026년) 결산내역

1) 결산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연도	당초 계획액	수정 계획액 (A)	전년도 이월액	기금변경 증감액 등	계획 현액	집행액 (B)	집행률 (B/Ax100)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3년	43,890	43,890	-	-	43,890	43,043	98.1	-	-
2024년	44,387	44,387	-	-	44,387	43,145	97.2	-	-
2025년	45,295	45,295	-	-	45,295	44,292	97.8	-	-
2026년	49,211	49,211	-	-	49,211	33,417	67.9	해당없음	해당없음

2) 연도별 결산 주요사항

연도	유형	금액 (백만원)	사유
2023년	불용	757	근로자건강센터 운영경비 정산잔액 등 사업수행경비 집행잔액
2024년	불용	1,332	근로자건강센터 운영경비 정산잔액, 용역수행잔금 등 사업수행경비 집행잔액
2025년	불용	1,003	근로자건강센터 운영경비 정산잔액, 용역수행잔금 등 사업수행경비 집행잔액
2026년	-	-	해당사항 없음

5. 기타 추가자료 : 해당없음

사 업 명
(17)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4152-355)

1. 사업 총괄 정보

1) 사업 기본 정보

(1-1) 일반 정보

소관	실·국	과·팀	기금	계정
고용노동부	산업안전예방정책관	산업안전정책과	산업재해보상 보험및예방기금	-

(1-2) 코드·명칭 정보

구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080	08E	4100	4152	355
명칭	사회복지	노동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기술지원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

2)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N	Y	N	N	N	N

3)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Y	N	N	N	N	-	-

4) 기능별(내역사업별)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내역사업 없음

내역사업명	소관	사업시행주체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정책과	고용노동부

2. 예산 총괄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사업명	2025년 결산액	2026년 본예산액 (A)	2026년 추경 예산액	2027년 요구액	2027년 정부안액 (B)	증감액 (B-A)	증감률 (B-A) /A×100
기본경비(산업안전보건본부, 총액)	386	386	386	386	386	0	0

1)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예산액 (추경)	2025년 예산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예산액 (추경)	2026년 예산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386	383	383	-	3	386	386	119 (119)	386
·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	243	243	241	-	2	243	243	88 (88)	243
·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143	143	142	-	1	143	143	31 (31)	143

2) 비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예산액 (추경)	2025년 예산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예산액 (추경)	2026년 예산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386	386	383	-	3	386	386	119	386
· 일반수용비(210-01)	8	8	7	-	1	8	8	-	8
·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	-	-	-	-	-	-	-	-
· 임차료(210-07)	2	2	1	-	1	2	2	-	2
· 국내여비(220-01)	368	368	368	-	-	368	368	117	368
· 사업추진비(240-01)	8	8	7	-	1	8	8	2	8

3. 사업 설명

1) 사업목적·내용

(1-1)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

사업목적	원청의 하청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책임 강화
사업내용	원청의 재해에 하청 재해도 포함하여 산정·공표

(1-2) 공공기관 안전수준 평가

사업목적	정부 경영평가에 반영함으로써 안전한 공공일터 기반 조성 도모
사업내용	공공기관의 안전활동 수준을 평가

2) 사업개요

(2-1)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사업근거	○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정부의 책무) ① 정부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1. 산업안전·보건정책의 수립·집행·조정 및 통제 2. 재해 다발 사업장에 대한 재해 예방 지원 및 지도 3.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장치(防護裝置)·보호구(保護具) 등의 안전성 평가 및 개선 4.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및 물질 등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조치기준 작성 및 지도·감독 5. 사업의 자율적인 안전·보건 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지원 6. 안전·보건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홍보·교육 및 무재해운동 등 안전문화 추진 7. 안전·보건을 위한 기술의 연구·개발 및 시설의 설치·운영 8.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관리 9. 안전·보건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및 지도·감독 10.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의 보호·증진 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그 밖의 관련 단체 및 연구기관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의 2(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이하 "산업재해 발생건수등"이라 한다)을 공표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도급인의 사업장(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에 도급인의 산업재해발생건수등에 관계수급인의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을 포함하여 제1항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추진경위	○ 사업 시작 연도 : 2019년~계속 ○ 추진 배경 : 원청과 하청의 산업재해 통합관리 원청의 안전·보건 관리 책임 강화 및 공공기관 자율적인 안전관리체계 구축으로 안전한 공공일터 조성에 기여

(2-2) 사업규모

○ 사업기간 : 2019년~계속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 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정부안
사업비	405	386	386	386	386

(2-3)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3) 기능별(내역사업별) 산출 내역

(3-1) 내역사업별 세부 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예산액(추경)(A)	2027년 정부안액(B)	증감 (B-A)
합 계	386	386	-

○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

- (2026 본예산) 386백만원 → (2027 요구) 386백만원, 전년 동

4) 사업효과

(4-1) 최근 5년(2023년~2027년)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 **성과지표:** 지원사업장의 사고사망만인율(‰)(2023년~2026년)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목표	0.54	0.50	0.45	0.42	삭제
실적	0.51	0.48	0.42	-	
달성도	105.9	104.0	107.1	-	-

- 측정산식 : 전체 사업장의 사고사망만인율 감소 목표 비율*을 준용**하여 목표치 설정
  * '25. 0.31 → '26. 0.29(△6.5%)
  ** '25 목표치 0.45에 6.6% 감소 반영하여 0.42 산출

- 측정방법 및 목표치 설정근거 : 측정산식 : 지원사업장의 사고사망만인율(‰)
  =A/B×10,000
  A: 공단 지원사업장* 사고사망자수(명), B: 공단 지원사업장 근로자 수
  * 재해발생사업장(중대재해조사 및 감독 대상 사업장 등) 지원실적은 제외

- 자료수집방법/출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성과지표:** 지원사업장의 사고사망만인율(‰)(2027년~)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목표	신규	신규	신규	신규	5% 미만
실적					
달성도					-

- 측정산식 : (이의제기 사업장 수 / 원하청 산재 통합 공표 사업장 수) × 100

- 측정방법 및 목표치 설정근거 : 원하청 통합공표 자료의 정확성, 신뢰성 제고 및 공표 제도의 실효성 측정을 위해, 사업장 이의제기율(5%미만)을 '27년 신규 목표로 설정

- 자료수집방법/출처 : 원하청 산재 통합 공표자료 및 내부 접수 문서

(4-2) 성과지표 이외의 최근 4년(2023년~2026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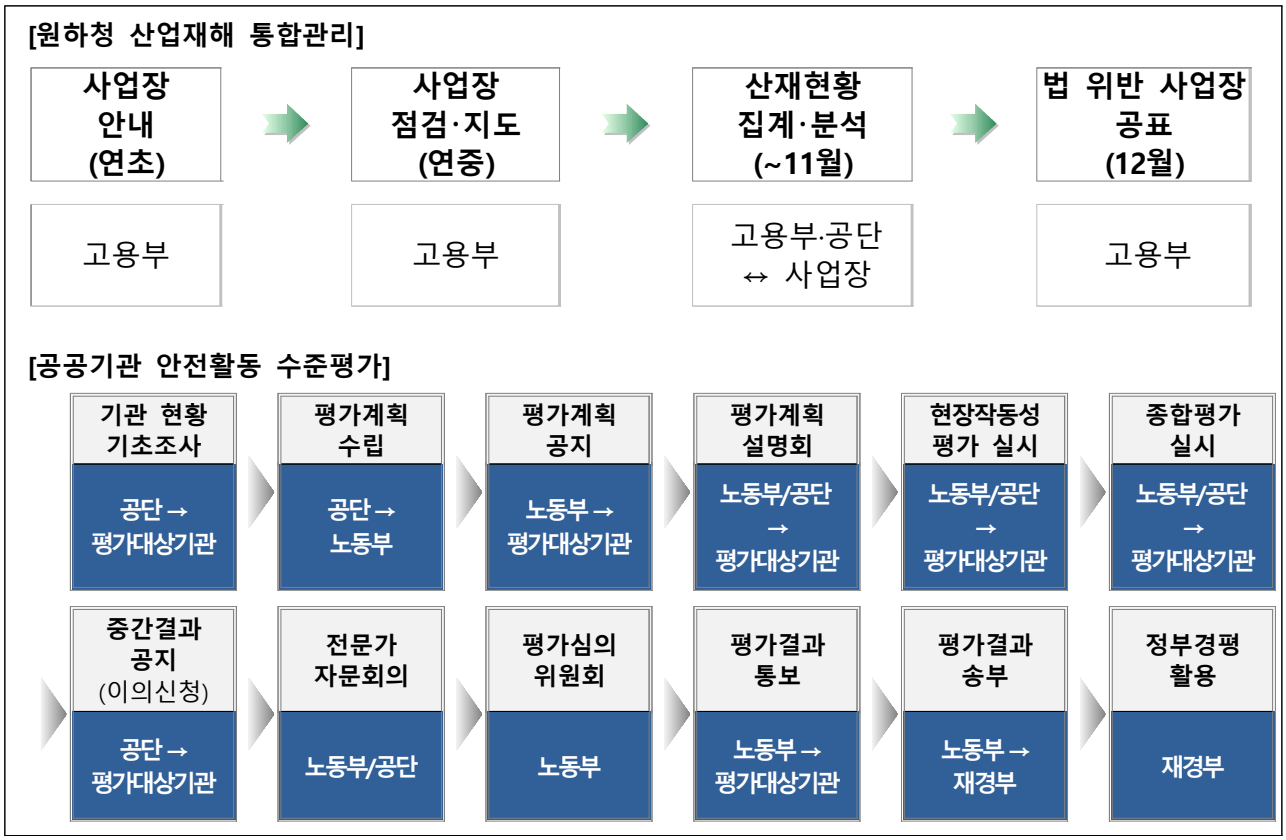
연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3년	-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 지도관리 사업장 수: 380개소 -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126개소
2024년	-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 지도관리 사업장 수: 380개소 -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108개소
2025년	-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 지도관리 사업장 수: 380개소 -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110개소
2026년	-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 지도관리 사업장 수: 380개소 -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110개소

(4-3) **향후(2027년 이후) 기대효과:** 원청과 하청의 산업재해 통합관리 원청의 안전·보건관리 책임 강화 및 공공기관 자율적인 안전관리체계 구축으로 안전한 공공일터 조성에 기여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8) 최근 3년간(2024년~2026년)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8-1) 정부 사업평가: 해당없음
(8-2) 국회 지적사항: 해당없음
(8-3) 감사원, 총리실, 기타(언론, 시민단체 등) 결과: 해당없음

4. 최근 4년간(2023년~2026년) 결산내역

1) 결산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연도	본예산액	추경 예산액(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비비액 등	예산 현액	집행액 (B)	집행률 (B/Ax100)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3년	405	405	-	-	404	99.8	92.5	-	1
2024년	386	386	-	-	381	98.7	94.6	-	5
2025년	386	386	-	-	383	99.2	112.7	-	3
2026년	386	386	-	-	119	30.8	49.0	해당없음	해당없음

2) 연도별 결산 주요사항

연도	유형	금액 (백만원)	사유
2023년	불용	1	- 집행잔액으로 인한 1백만원 불용
2024년	불용	5	- 집행잔액으로 인한 5백만원 불용
2025년	불용	3	- 집행잔액으로 인한 3백만원 불용
2026년			- 정상 추진 중

5. 기타 추가자료: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18) 자율안전관리체계 구축(4152-356)

1. 사업 총괄 정보

1) 사업 기본 정보

(1-1) 일반 정보

소관	실·국	과·팀	기금	계정
고용노동부	산업안전 예방정책관	산재예방지원과	산업재해보상 보험및예방기금	-

(1-2) 코드·명칭 정보

구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080	08E	4100	4152	356
명칭	사회복지	노동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기술지원	자율안전관리체계 구축

2)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Y	N	N	N	N	N

3)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Y	N	Y	N	N	100	-

4) 기능별(내역사업별)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내역사업명	소관	사업시행주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이행·지원	고용노동부 산업안전예방정책관 산재예방지원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지역 안전관리체계 구축	고용노동부 산업안전예방정책관 산재예방지원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 지출계획 총괄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사업명	2025년 결산액	2026년 당초계획액 (A)	2026년 수정계획액	2027년 요구액	2027년 정부안액 (B)	증감액 (B-A)	증감률 (B-A) /A×100
자율안전관리체계 구축	-	-	-	144,152	126,869	126,869	순증

1)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계획액 (수정)	2025년 계획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계획액 (수정)	2026년 계획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	-	-	-	-	-	-	-	126,869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이행·지원	-	-	-	-	-	-	-	-	105,507
·산업·지역 안전관리체계 구축	-	-	-	-	-	-	-	-	21,362

2) 비목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계획액 (수정)	2025년 계획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계획액 (수정)	2026년 계획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	-	-	-	-	-	-	-	126,869
·일반수용비(210-01)	-	-	-	-	-	-	-	-	100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	-	-	-	-	-	-	-	14,000
·사업출연금(350-02)	-	-	-	-	-	-	-	-	112,769

3. 사업 설명

1) 사업목적·내용

(1-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이행·지원

사업목적	투자 여건이 어려운 중소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중심 자율 안전보건 관리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대·중소기업간 자율적인 상생협력 문화 확산
사업내용	중소 사업장, 대기업, 공공기관 등 사업장의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지원

(1-2) 산업·지역 안전관리 체계 구축

사업목적	협·단체, 지방정부 등 사회적 거버넌스와 협업을 통한 산업재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기업·공공기관 스스로 산업재해 예방에 투자할 수 있도록 인프라 마련·지원
사업내용	협·단체, 지방정부 등 사회적 거버넌스와 협업을 통한 지원 강화와 표준제정·공시제 등 인프라 조성을 통한 체계구축 지원

2) 사업개요

(2-1)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사업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정부의 책무)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1. 산업 안전 및 보건 정책의 수립 및 집행 2. 산업재해 예방 지원 및 지도 3.「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기준 마련, 지도 및 지원 4. 사업주의 자율적인 산업 안전 및 보건 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지원 5.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홍보·교육 등 안전문화 확산 추진 6.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술의 연구·개발 및 시설의 설치·운영 7.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관리 8. 산업 안전 및 보건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및 지도·감독 9. 그 밖에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 및 건강의 보호·증진 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그 밖의 관련 단체 및 연구기관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관할 지역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 내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의2(안전보건 현황 공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와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은 다음 각 호의 안전보건 현황을 매년 공시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체제 2. 산업재해 발생 현황 3. 전년도 안전보건 활동실적, 해당 연도 안전보건 활동계획 4. 안전보건에 관한 투자 5. 산업재해 재발방지 대책과 이행계획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 현황에 관한 공시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와 관련된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을 정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같은 항에 따라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하여야 할 조치 2.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할 조치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을 정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분야별로 표준제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표준제정위원회의 구성·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유해·위험 방지 계획서의 작성·제출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유해·위험 방지에 관한 사항을 적은 계획서(이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주 중 산업재해발생률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스스로 심사하고, 그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해당 제품의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2.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또는 장소에서 사용하거나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크기, 높이 등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사업주(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사업주는 제외한다)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할 때 건설안전 분야의 자격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제44조제1항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유해·위험설비에 대해서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제출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 또는 건설공사를 중지하거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스스로 심사하거나 제4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심사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그 심사결과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⑥ 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사업주로서 제5항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및 그 심사결과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둔 사업주는 해당 건설공사의 공법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그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이행의 확인 등) ① 제42조제4항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대한 심사를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이행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이행에 관하여 스스로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건설공사 중에 근로자가 사망(교통사고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이행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른 확인 결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대로 유해·위험방지를 위한 조치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 등의 개선, 사용중지 또는 작업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시설 등의 개선, 사용중지 또는 작업중지 등의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산업재해 예방의 재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재원(財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에서 지원한다. 1. 제11조 각 호에 따른 시설의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산업재해예방 관련 사업 및 비영리법인에 위탁하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의 사업비 -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 (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보조·지원) ① 정부는 사업주, 사업주단체, 근로자단체,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 연구기관 등이 하는 산업재해 예방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이하 "보조·지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보조·지원이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① 정부는 중대재해를 예방하여 시민과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중대재해의 종합적인 예방대책의 수립·시행과 발생원인 분석 2. 사업주, 법인 및 기관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 3. 사업주, 법인 및 기관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 지원 및 지도 4.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의 시행 ② 정부는 사업주, 법인 및 기관에 대하여 유해·위험 시설의 개선과 보호 장비의 구매, 종사자 건강진단 및 관리 등 중대재해 예방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추진경위	○ 1996 하반기~1999: 산업안전선진화 3개년 계획(대통령 보고) ○ 2000. 9월: 국무총리실「안전관리종합대책」(국무회의 보고) ○ 2000~2004: 제1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 계획(1999. 12월) ○ 2005~2009: 제2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 계획(2004. 12월) ○ 2010~2014: 제3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 계획(2010. 3월) ○ 2015~2019: 제4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 계획(2015. 1월) ○ 2020~2024: 제5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 계획(2020. 5월) ○ 2022. 11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 2025. 9월: 노동안전 종합대책(국정과제)

(2-2) 사업규모

○ 사업기간 : ‘27년~계속(사업 분리 전: ’88년~계속)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계획액 기준, 기금운용계획변경 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사업비	-	-	-	-	126,,869

(2-3)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출연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사업 수혜자 : 산재보험가입 사업주 및 근로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기관명	2027년 지원금액 (백만원)	지원 비율(%)	법적근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이행지원	출연	한국산업 안전보건공단	105,507	10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 제96조
산업·지역 안전관리 체계 구축	출연	한국산업 안전보건공단	7,262	10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 제96조
지역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 지원	보조	자치단체	14,000	10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 제96조

3) 기능별(내역사업별) 산출 내역

(3-1) 내역사업별 세부 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계획액(수정)(A)	2027년 정부안액(B)	증감 (B-A)
합 계	-	126,869	126,869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이행·지원	-	105,507	105,507
산업·지역 안전관리 체계 구축	-	21,362	21,362

○ 자율안전관리체계 구축 사업 이동 편성 ※ 업종별재해예방 內 내역사업에서 분리(이관)

- (설명) '자율안전관리체계 구축'은 사업장 스스로 위험을 관리 할 수 있도록 위험관리 역량을 높이는 방식의 사업구조이므로, 사업 목적 부합성 및 관리 효율화를 위해 사업 분리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이행·지원 (2026년) - → (2027년) 105,507백만원, 순증(사업이관)

- (설명) 영세사업장 및 공공기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확대를 위한 대중소 안전보건 상생협력 및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예산 증액

- (산출)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 ('26년) 2,632 → ('27년) 2,632백만원(전년 동)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 ('26년) 2,632 → ('27년) 2,538백만원(27,000건×94천원)(△94백만원, △1,000건)
    · 사후이행확인 ('27년) 38백만원(400건×94천원)(순증)
    · 대형사고 위험현장 기술지원 ('27년) 56백만원(450회×125천원)(순증)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26년) 1,350 → ('27년) 1,350백만원(1,493개소×904천원)(전년 동)
  *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지원: (26년) 13,019 → ('27년) 17,090백만원
    · 컨설팅 ('26년) 5,156 → ('27년) 8,596백만원(1,250개소×6.877백만원)(+3,438백만원, +500개소)
    · 안전보건활동 ('26년) 4,878 → ('27년) 5,400백만원(3,100개소×1.742백만원)(+522백만원, +300개소)
    · 기술지원 ('26년) 1,332 → ('27년) 1,445백만원(255개소×5.668백만원)(+111백만원, +20개소)
    · 운영경비 ('26년) 1,651 → ('27년) 1,651백만원(전년 동)
  *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26년) 1,093 → ('27년) 2,428백만원(+1,335백만원)
    ·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26년) 573 → ('27년) 726백만원(1식×726백만원)(+153백만원)
    · 안전활동 수준평가 사후관리 ('26년) 200 → ('27년) 408백만원(204개 기관×2백만원)(+208백만원, 104개소)
    · 지방공공기관 평가 ('26년) 220 → ('27년) 1,194백만원(167개 기관×7,150천원)(+974백만원, +150개소)
    · 안전활동 수준평가 연구용역 ('27년) 100백만원(1식×100백만원)(전년 동)
  *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컨설팅: ('26년) 82,007→ ('27년) 82,007백만원(전년 동)
    · 위탁지원 ('26년) 77,300 → ('27년) 77,300백만원(전년 동)
      (건설업 2,000개소×7회×600천원, 제조업 등 23,000개소 = 제조업 특화 7,000개소×5회×700천원, 제조업 13,000개소×5회×600천원, 기타업 3,000개소×3회×600천원)

· 직접지원 ('26년) 1,937 → ('27년) 1,937백만원(전년 동)
(중상해 8,000개소×15회×138.4천원, 사후지원 2,000개소×1회×138.4천원)
· 수행경비 등 ('26년) 2,770 → ('27년) 2,770백만원(전년 동)

○ 산업·지역 안전관리 체계 구축 (2026년) - → (2027년) 21,362백만원, 순증(사업이관)

- (설명) 안전보건 기술기준 정비 및 보급 수준 향상을 위한 표준제정 운영 예산 확대, 기업 안전보건 공시제 전산시스템 구축 완료소요에 따른 감액 반영

- (산출)

* 산업안전보건표준 제정: ('26년) 564 → ('27년) 652백만원(1식×652백만원)(+88백만원)
* 협·단체 공동안전관리 지원: ('26년) 5,113 → ('27년) 5,113백만원(전년 동)
(지원금 200명×2,710천원×9.1개월, 운영비 180백만원)
* 민간단체(노사공동) 산재예방 활동지원: ('26년) 886 → ('27년) 886백만원(전년 동)
(지원금 866백만원, 운영비 20백만원)
* 기업 안전보건 공시제: ('26년) 950 → ('27년) 390백만원(1식×390백만원)(△560백만원)
* 지역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 지원 : ('26년) 14,321 → ('27년) 14,321백만원(전년 동)
(지원금 14,000백만원 = 10개소×1,400백만원, 운영비 321백만원)

4) 사업효과

(4-1) 최근 5년(2023년~2027년)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 **성과지표: 50인 미만 지원사업장의 사고재해율 감소 실적(상향지표)(세부사업지표)**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목표	신규	신규	신규	신규	6.69%
실적	-	-	-	-	해당없음
달성도	-	-	-	-	해당없음

- **측정산식 :** [이전 연도 50인 미만 지원사업장 사고재해율 - 당해 연도 50인 미만 지원사업장 사고재해율] / 이전 연도 50인 미만 지원사업장 사고재해율 × 100

- **측정방법 및 목표치 설정근거 :** 최근 3년간 (직전년도 제외) 50인 미만 지원사업장 사고재해율 감소율 평균×1.02(2% 감축 목표)

- **자료수집방법/출처 :** 산재보험 가입 및 요양 승인 통계

○ **성과지표: 지원사업장 사고사망만인율(‰)(하향지표)(프로그램 지표)**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목표	0.54‰	0.50‰	0.45‰	0.42‰	삭제
실적	0.51‰	0.48‰	0.42‰	해당없음	-
달성도	105.9%	104.0%	106.7%	해당없음	-

- **측정산식 :** 지원사업장의 사망사고 예방 실적(%)=(A-B)/A×100
  · A : 공단 지원사업장* 사고사망만인율(‰)
  * 재해발생사업장(중대재해조사 및 감독 대상 사업장 등) 지원 실적은 제외
  · B : 전체 사고사망만인율(‰)

- **측정방법 및 목표치 설정근거**
  · 목표치 설정 근거 :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따라 전체 사업장의 사고사망만인율 감소 목표 비율*을 준용**하여 목표치 설정
  * ('26) 0.37 → ('27) 0.35 → ('28) 0.33 → ('29) 0.31 → ('30) 0.29
  ** 종합대책 목표치의 전년대비 감소율을 성과지표 목표치에 적용

- **자료수집방법/출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성과지표: 중상해사고재해율(%)(하향지표)**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목표	0.084%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실적	0.082%	-	-	-	-
달성도	102.4%	-	-	-	-

- **측정산식 :** 1프로그램 1성과 지표 원칙에 따른 지표 삭제

- **측정방법 및 목표치 설정근거 :** 1프로그램 1성과 지표 원칙에 따른 지표 삭제

- **자료수집방법/출처 :** 1프로그램 1성과 지표 원칙에 따른 지표 삭제

○ **성과지표: 50인 미만 사업장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연계율(%)**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목표	79.8%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실적	71.2%	-	-	-	-
달성도	89.2%	-	-	-	-

- **측정산식 :** 1프로그램 1성과 지표 원칙에 따른 지표 삭제

- **측정방법 및 목표치 설정근거 :** 1프로그램 1성과 지표 원칙에 따른 지표 삭제

- **자료수집방법/출처 :** 1프로그램 1성과 지표 원칙에 따른 지표 삭제

(4-2) 성과지표 이외의 최근 4년(2023년~2026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해당없음('27년 신규)

(4-3) 향후(2027년 이후) 기대효과

○ 산재예방 역량이 부족한 중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지원 등을 통해 사고 예방에 기여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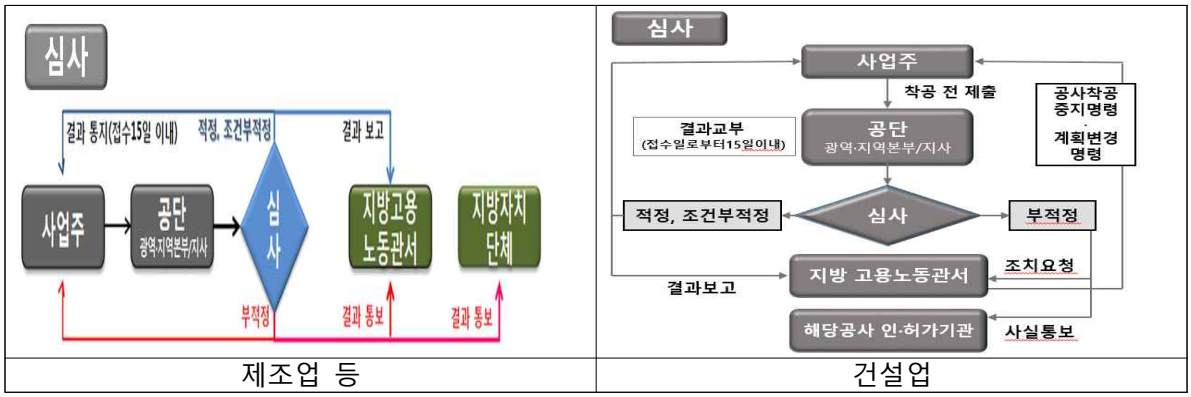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이행·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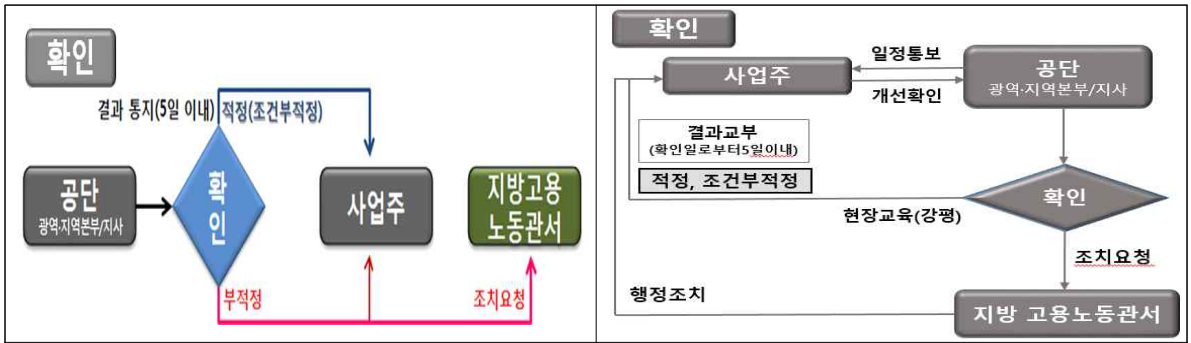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

-심사-



제조업 등	건설업

-확인-



제조업 등	건설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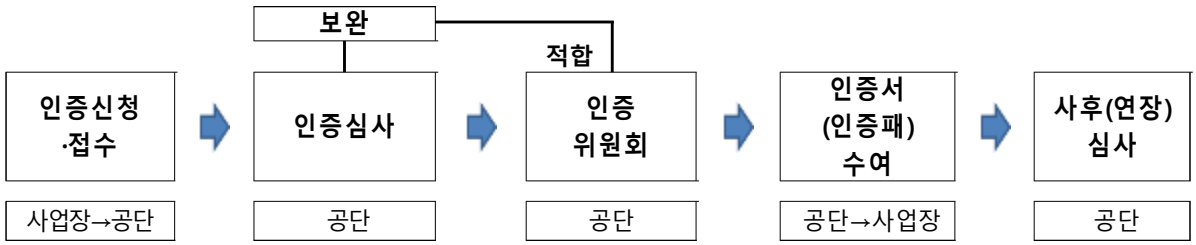
-사후이행확인

대상 사업장 선정	방문일정 협의	현장 이행점검	보고서 작성·송부	개선 확인 (필요 시)
노동부, 공단	공단 ↔ 사업장	공단	공단 → 사업장	공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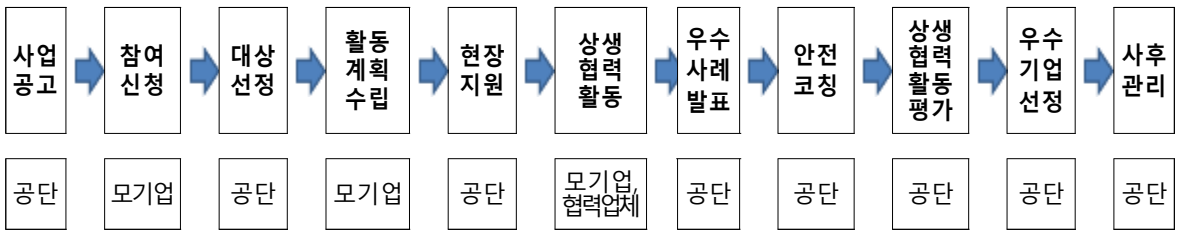
-대형사고 위험현장 기술지원

사업안내	대형사고 위험현장 발굴	작업계획서 이행 및 확인지도	개선결과 제출	미흡	노동부 감독 요청
공단	공단	공단 → 현장	현장→공단 (10일이내)		공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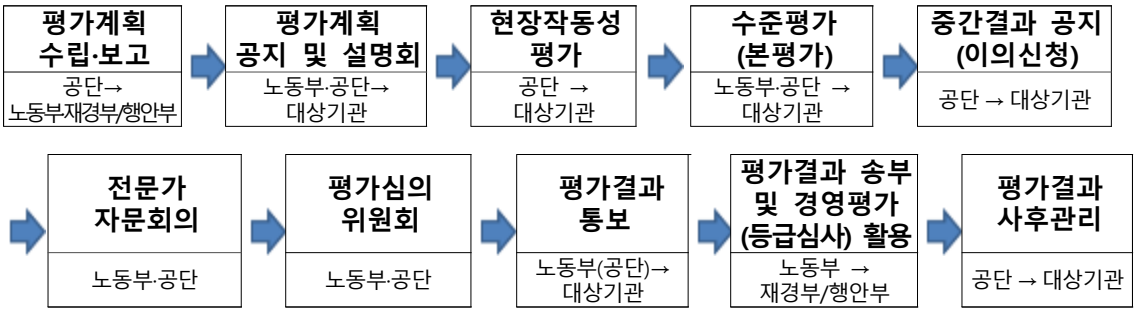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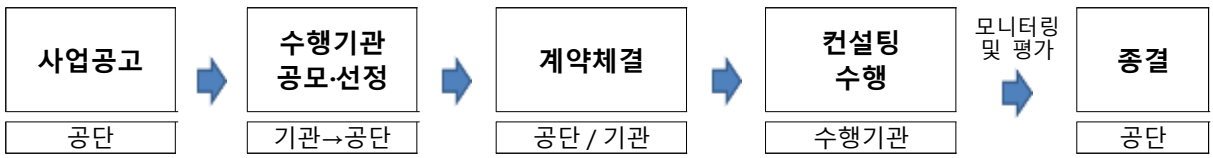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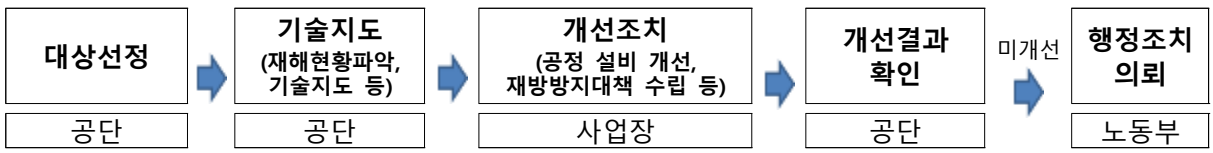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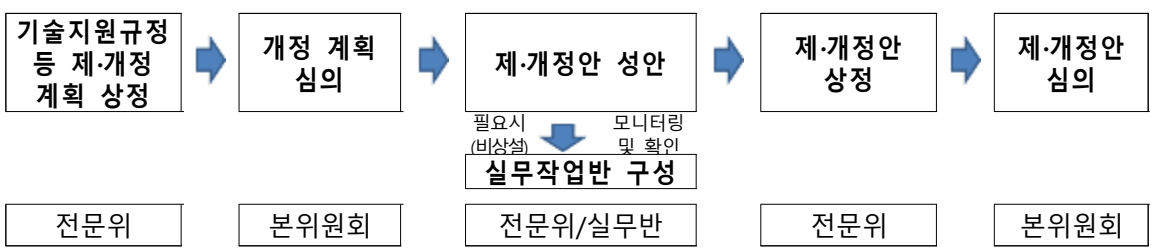


2 중상해재해 사업장 재발방지 신속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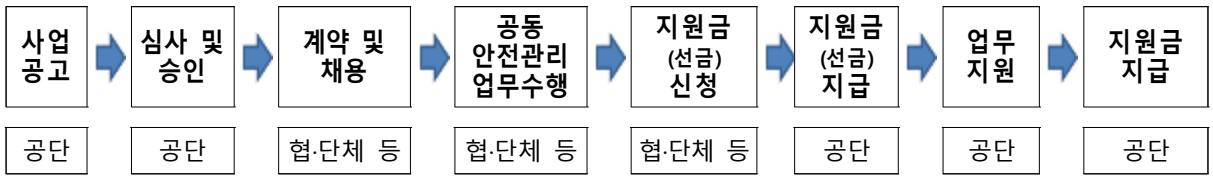


산업·지역 안전관리 체계 구축

<산업안전보건표준 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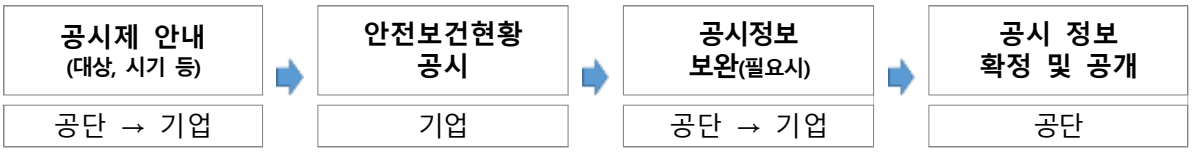
<협·단체 공동안전관리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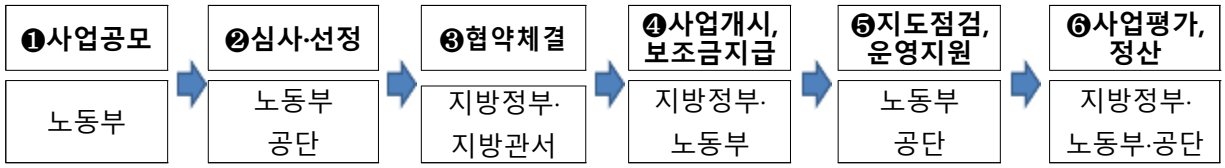
<민간단체(노사공동) 산재예방 활동 지원사업>



<기업 안전보건 공시제>



<지역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 지원사업>



8) 최근 3년간(2024년~2026년)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없음('27년 신규)

4. 최근 4년간(2023년~2026년) 결산내역: 해당없음('27년 신규)

5. 기타 추가자료 : 해당없음

사 업 명
(19) 안전보건문화정착(4154-350)

1. 사업 총괄 정보

1) 사업 기본 정보

(1-1) 일반 정보

소관	실·국	과·팀	기금	계정
고용노동부	중대재해감축 로드맵 이행 추진단	로드맵이행총괄팀	산업재해보상 보험및예방기금	-

(1-2) 코드·명칭 정보

구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080	08E	4100	4154	350
명칭	사회복지	노동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문화확산	안전보건문화정착

2)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N	Y	N	N	N	N

3)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Y	N	Y	N	N	-	-

4) 기능별(내역사업별)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내역사업명	소관	사업시행주체
안전보건교육 및 미디어개발	고용노동부 중대재해감축 로드맵이행추진단 안전문화협력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교육과정운영	고용노동부 중대재해감축 로드맵이행추진단 안전문화협력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문화 선진화	고용노동부 중대재해감축 로드맵이행추진단 안전문화협력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내역사업명	소관	사업시행주체
신규 영역 및 취약계층 특화 교육	고용노동부 중대재해감축 로드맵이행추진단 안전문화협력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 지출계획 총괄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사업명	2025년 결산액	2026년 당초계획액 (A)	2026년 수정계획액	2027년 요구액	2027년 정부안액 (B)	증감액 (B-A)	증감률 (B-A) /A×100
안전보건문화정착	35,166	36,376	36,376	40,271	33,721	△2,655	△7.3

1)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계획액 (수정)	2025년 계획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계획액 (수정)	2026년 계획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35,674	35,674	35,166	-	508	36,376	36,376	24,001	33,721
·안전보건교육 및 미디어개발	22,040	22,040	21,693	-	347	21,363	21,363	13,771	19,600
·전문교육과정운영	5,134	5,134	5,005	-	129	5,043	5,043	4,150	3,560
·안전보건문화 선진화	8,500	8,500	8,468	-	32	9,970	9,970	6,080	7,800
·신규 영역 및 취약계층 특화 교육	-	-	-	-	-	-	-	-	2,761

2) 비목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계획액 (수정)	2025년 계획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계획액 (수정)	2026년 계획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35,674	35,674	35,166	-	508	36,376	36,376	24,001	33,721
·일반수용비(210-01)	1,450	1,450	1,449	-	1	1,250	1,250	494	1,250
·임차료(210-07)	50	50	40	-	10	50	50	15	50
·사업출연금(350-02)	34,174	34,174	33,677	-	497	35,076	35,076	23,492	32,380

3. 사업 설명

1) 사업목적·내용

(1-1) 안전보건교육 및 미디어개발

사업목적	안전보건교육 및 안전보건콘텐츠 개발.보급으로 사업장 안전의식 향상을 통한 산업재해 감소 기여
사업내용	안전보건교육, 취약계층 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 비용지원, 업종·직종·대상별 안전보건콘텐츠 개발·보급

(1-2) 전문교육과정운영

사업목적	안전보건관계자 전문성 향상을 통한 안전의식 제고 및 산재예방 기여
사업내용	안전보건관리 전문기관 종사자, 안전·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등 안전보건관계자 법정 직무교육 등 실시

(1-3) 안전보건문화 선진화

사업목적	안전문화 확산·홍보 활동으로 산업현장 및 범국민 안전의식을 개선,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
사업내용	안전의식 확산을 위한 안전문화운동 전개 및 방송·언론매체 등을 통한 산재예방 알림사업 추진

(1-4) 신규 영역 및 취약계층 특화 교육

사업목적	국정과제, 노동안전 종합대책, 법제화, 대형사고 등 신규 교육 필요 영역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통한 정책 안착 지원
사업내용	안전보건교육 의무 확대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컨설팅 실시 및 외국인 대상 기초안전보건교육 등 제공

2) 사업개요

(2-1)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사업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정부의 책무)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1. 산업 안전 및 보건 정책의 수립 및 집행 2. 산업재해 예방 지원 및 지도 3.「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기준 마련, 지도 및 지원 4. 사업주의 자율적인 산업 안전 및 보건 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지원 5.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홍보·교육 등 안전문화 확산 추진 6.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술의 연구·개발 및 시설의 설치·운영 7.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관리 8. 산업 안전 및 보건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및 지도·감독 9. 그 밖에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 및 건강의 보호·증진 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그 밖의 관련 단체 및 연구기관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산업재해 예방의 재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재원(財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에서 지원한다. 1. 제11조 각 호에 따른 시설의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산업재해예방 관련 사업 및 비영리법인에 위탁하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의 사업비 -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 (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보조·지원) ① 정부는 사업주, 사업주단체, 근로자단체,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 연구기관 등이 하는 산업재해 예방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이하 "보조·지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보조·지원이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① 정부는 중대재해를 예방하여 시민과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중대재해의 종합적인 예방대책의 수립·시행과 발생원인 분석 2. 사업주, 법인 및 기관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 3. 사업주, 법인 및 기관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 지원 및 지도 4.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의 시행 ② 정부는 사업주, 법인 및 기관에 대하여 유해·위험 시설의 개선과

	보호 장비의 구매, 종사자 건강진단 및 관리 등 중대재해 예방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추진경위	○ 1996 하반기~1999: 산업안전선진화 3개년 계획(대통령 보고) ○ 2000. 9월: 국무총리실「안전관리종합대책」(국무회의 보고) ○ 2000~2004: 제1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 계획(1999. 12월) ○ 2005~2009: 제2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 계획(2004. 12월) ○ 2010~2014: 제3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 계획(2010. 3월) ○ 2015~2019: 제4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 계획(2015. 1월) ○ 2020~2024: 제5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 계획(2020. 5월) ○ 2022. 11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 2025. 9월: 노동안전 종합대책(국정과제)

(2-2) 사업규모

○ 사업기간 : '88년~계속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계획액 기준, 기금운용계획변경 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사업비	32,847	32,925	35,674	36,376	33,721

(2-3)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출연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사업 수혜자 : 산재보험가입 사업주 및 근로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기관명	2027년 지원금액 (백만원)	지원 비율(%)	법적근거
안전보건교육 및 미디어개발	출연	한국산업 안전보건공단	19,600	10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 제96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
전문교육과정운영	출연	한국산업 안전보건공단	3,560	10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 제96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
안전보건문화 선진화	출연	한국산업 안전보건공단	6,500	10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 제96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
신규 영역 및 취약계층 특화 교육	출연	한국산업 안전보건공단	2,761	10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 제96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

3) 기능별(내역사업별) 산출 내역

(3-1) 내역사업별 세부 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계획액(수정)(A)	2027년 정부안액(B)	증감 (B-A)
합 계	36,376	33,721	△2,655
안전보건교육 및 미디어개발	21,363	19,600	△1,763
전문교육과정운영	5,043	3,560	△1,483
안전보건문화 선진화	9,970	7,800	△2,170
신규 영역 및 취약계층 특화 교육	-	2,761	2,761

○ 안전보건교육 및 미디어개발 (2026년) 21,363 → (2027년) 19,600백만원, △8.3%

- (설명) 통합 재정사업 평가 감액 의견에 따라 수요 감소 사업 감액 및 콘텐츠 개발 재조정, 민간교육 중복 영역 물량 재조정

- (산출)

  * 안전보건교육: ('26년) 9,070 → ('27년) 8,351백만원(△719백만원)
    · 안전보건교육 ('26년) 8,518 → ('27년) 7,799백만원(532천명×14,660원)(△719백만원, △50천명)
    · 중대재해처벌법 경영책임자교육 ('26년) 137 → ('27년) 137백만원(12회/연×11.4백만원)(전년 동)
    · 체험교육장 운영비 ('26년) 415 → ('27년) 415백만원(전년 동)
  * 외국인 노동자 안전서포트: ('26년) 2,362 → ('27년) 1,779백만원(△583백만원)
    · 외국인 안전보건교육 ('26년) 613 → ('27년) 613백만원(42천명×14.6천원)(전년 동)
    · 콘텐츠 개발 ('26년) 1,749 → ('27년) 1,166백만원(200종×5,830천원)(△583백만원, △100종)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비용지원: ('26년) 6,411 → ('27년) 6,424백만원(+13백만원)
    · 비용지원 ('26년) 4,600 → ('27년) 4,600백만원(11.5만명×4만원)(전년 동)
    · 수행경비 ('26년) 934 → ('27년) 947백만원(+13백만원)
    · 건설업 종합지원 시스템 구축 유지보수 ('26년) 877 → ('27년) 877백만원(전년 동)
  * 안전보건미디어개발 및 보급: ('26년) 3,520 → ('27년) 3,046백만원(534종×5,705천원)(△474백만원, △83종)

○ 전문교육과정 운영 (2026년) 5,043 → (2027년) 3,560백만원, △29.4%

- (설명) 통합 재정사업 평가 감액 의견에 따라 교육 물량 및 이러닝 교육과정 운영 비용, 체험실습 교육장비 개·보수 비용 재조정

- (산출)

  * 전문교육과정 운영: ('26년) 3,455 → ('27년) 2,844백만원(10,000명×284천원)(△611백만원, △2,220명)
  * 전문교육(이러닝) 과정: ('26년) 872 → ('27년) 200백만원(41천명×4.9천원)(△672백만원)
  * 체험실습 교육장비 개·보수: ('26년) 716 → ('27년) 516백만원(△200백만원)

○ 안전보건문화 선진화 (2026년) 9,970 → (2027년) 7,800백만원, △21.8%

- (설명) 산재예방 정책 메시지 확산, 대국민 산재예방 안전의식 개선사업 등 우선순위 및 업무효율화를 고려한 감액
- (산출)
  * 안전문화사업: ('26년) 1,116 → ('27년) 1,116백만원(전년 동)
    · 안전문화사업 ('26년) 730 → ('27년) 730백만원(1식×730백만원)(전년 동)
    · 산업안전보건의 달 ('26년) 386 → ('27년) 386백만원(1식×386백만원)(전년 동)
  * 홍보사업: ('26년) 6,984 → ('27년) 6,684백만원(△300백만원)
    · 홍보사업 ('26년) 5,684 → ('27년) 5,384백만원(1식×5,384백만원)(△300백만원)
    · 안전문화 정책홍보 ('26년) 1,300 → ('27년) 1,300백만원(1식×1,300백만원)(전년 동)
  * 대국민 산재예방 안전의식 개선사업: ('26년) 1,870 → ('27년) -백만원(순감, 사업폐지)

○ 신규 영역 및 취약계층 특화 교육 (2026년) - → (2027년) 2,761백만원, 순증

- (설명) 국정과제, 노동안전 종합대책 및 법제화 등 신규 교육 필요 영역, 외국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특화 교육 제공으로 재해 예방 지원을 위한 신규 사업 추진
- (산출)
  * 안전보건교육 컨설팅: ('27년) 572백만원(6,000개소×95.3천원)(순증)
  * 외국인 기초안전보건교육: ('27년) 1,219백만원(200,000명×6,093원)(순증)
  * 외국인 노동자 특화 산재예방 지원: ('27년) 970백만원(순증)
    · 외국인 전문인력 양성교육 ('27년) 171백만원(200명×855천원)
    · 외국인 노동자 중대재해 사이렌 보급 ('27년) 299백만원(400건×17개 국어×44천원)
    · 업종별 핵심 안전용어 한국어 교재 개발·보급 ('27년) 500백만원(24.5만부×2,040원)

4) 사업효과

(4-1) 최근 5년(2023년~2027년)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 **성과지표: 교육이수 사업장 사고사망자 수 감소(하향지표)(세부사업지표)**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목표	신규	신규	신규	신규	0.515‰
실적	-	-	-	-	해당없음
달성도	-	-	-	-	해당없음

- **측정산식 :** [교육×이수사업장 사고사망자 수(명) /교육×이수사업장 근로자 수(명)]‰
  * 사업주,경영책임자 등 대상 교육,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교육
- **측정방법 및 목표치 설정근거 :** '26년 정부평가 목표(0.551‰)를 기준으로 중장기 경영목표에 따른 감소율(6.5%) 적용
- **자료수집방법/출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자료

○ **성과지표: 지원사업장 사고사망만인율(‰)(하향지표)(프로그램 지표)**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목표	0.54‰	0.50‰	0.45‰	0.42‰	삭제
실적	0.51‰	0.48‰	0.42‰	해당없음	-
달성도	105.9%	104.0%	106.7%	해당없음	-

- **측정산식** : 지원사업장의 사망사고 예방 실적(%)=(A-B)/A×100
  · A : 공단 지원사업장* 사고사망만인율(‰)
  * 재해발생사업장(중대재해조사 및 감독 대상 사업장 등) 지원 실적은 제외
  · B : 전체 사고사망만인율(‰)

- **측정방법 및 목표치 설정근거**
  · 목표치 설정 근거 :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따라 전체 사업장의 사고사망만인율 감소 목표 비율*을 준용**하여 목표치 설정
  * ('26) 0.37 → ('27) 0.35 → ('28) 0.33 → ('29) 0.31 → ('30) 0.29
  ** 종합대책 목표치의 전년대비 감소율을 성과지표 목표치에 적용

- **자료수집방법/출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성과지표: 중상해사고재해율(%)(하향지표)**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목표	0.084%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실적	0.082%	-	-	-	-
달성도	102.4%	-	-	-	-

- **측정산식** : 1프로그램 1성과 지표 원칙에 따른 지표 삭제

- **측정방법 및 목표치 설정근거** : 1프로그램 1성과 지표 원칙에 따른 지표 삭제

- **자료수집방법/출처** : 1프로그램 1성과 지표 원칙에 따른 지표 삭제

○ **성과지표: 50인 미만 사업장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연계율(%)**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목표	79.8%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실적	71.2%	-	-	-	-
달성도	89.2%	-	-	-	-

- **측정산식** : 1프로그램 1성과 지표 원칙에 따른 지표 삭제

- **측정방법 및 목표치 설정근거** : 1프로그램 1성과 지표 원칙에 따른 지표 삭제

- **자료수집방법/출처** : 1프로그램 1성과 지표 원칙에 따른 지표 삭제

(4-2) 성과지표 이외의 최근 4년(2023년~2026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연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3년	- 안전보건교육: 722,354명 - 취약계층 기초안전보건교육 지원 : 130,000명 - 안전보건미디어개발 및 보급 : 617종 - 안전보건 컨설턴트 육성 : 1,007명 - 전문교육과정운영 : 422,615명(이러닝 교육포함) - 안전문화사업: 1식 - 홍보사업: 1식 - 민간기관재해예방활동지원 : 2,276백만원(1식)
2024년	- 안전보건교육: 870,248명 - 취약계층 기초안전보건교육 지원: 115,000명 - 안전보건미디어개발 및 보급: 617종 - 전문교육과정운영: 237,672명 - 안전문화사업: 1식 - 홍보사업: 1식
2025년	- 안전보건교육: 723,502명 - 외국인 근로자 안전서포트(신규) : 56,862명 - 취약계층 기초안전보건교육 지원: 111,735명 - 안전보건미디어개발 및 보급: 617종 - 전문교육과정운영: 251,422명 - 안전문화사업: 1식 - 홍보사업: 1식
2026년	- 안전보건교육: 417,346명 - 외국인 근로자 안전서포트 : 22,181명 - 취약계층 기초안전보건교육 지원: 75,767명 - 안전보건미디어개발 및 보급: 146종 - 전문교육과정운영: 212,820명 - 안전문화사업: 1식(진행중) - 홍보사업: 1식(진행중)

(4-3) 향후(2027년 이후) 기대효과

○ 사업장의 중대법 이해 지원을 위한 안전보건교육과정 운영 및 건설업 근로자 종합 지원시스템 구축을 통한 관리 강화

○ 산재예방 소통 강화를 통한 중소사업장 안전문화 확산 지원

- 정부의 사망사고 감축 정책과 병행하는 산업안전보건 분야 특화 캠페인을 통해 정책의 현장 작동성 최대화 및 중대법 적용이 유예된 소규모 사업장 타깃 집중 추진으로 사업주 안전경영 및 근로자 안전의식 확립 유도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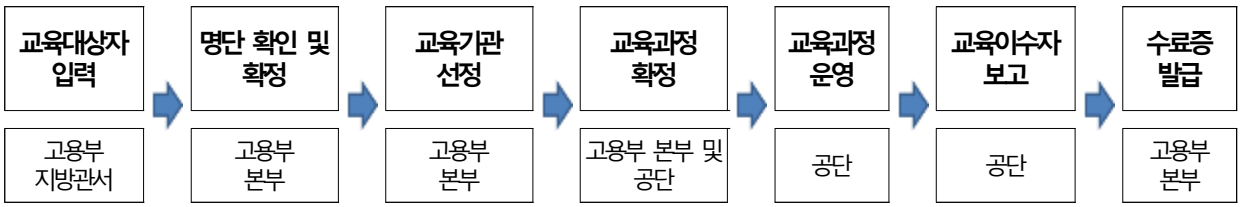
<안전보건교육 및 미디어 개발>

ㅇ 안전보건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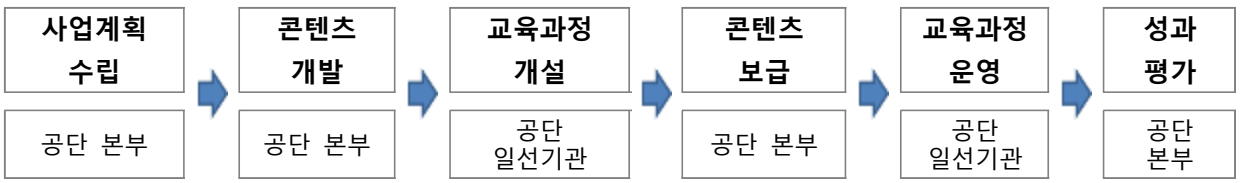
- 안전보건교육



- 중대재해처벌법 경영책임자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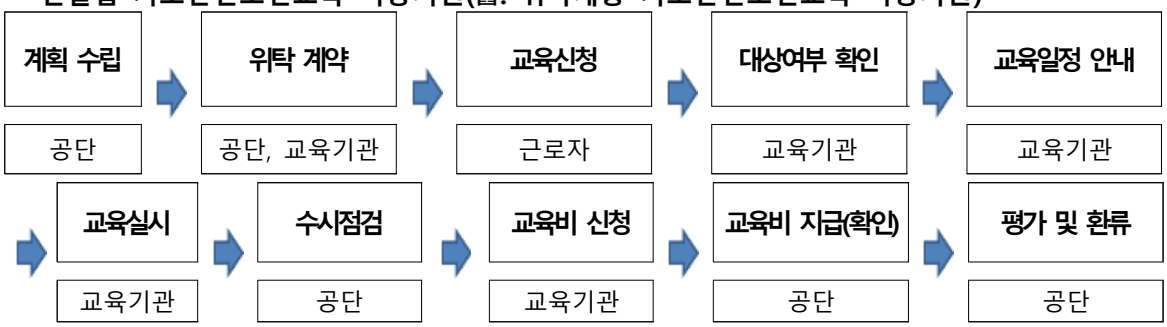


ㅇ 외국인 노동자 안전서포트 (舊. 외국인 근로자 안전서포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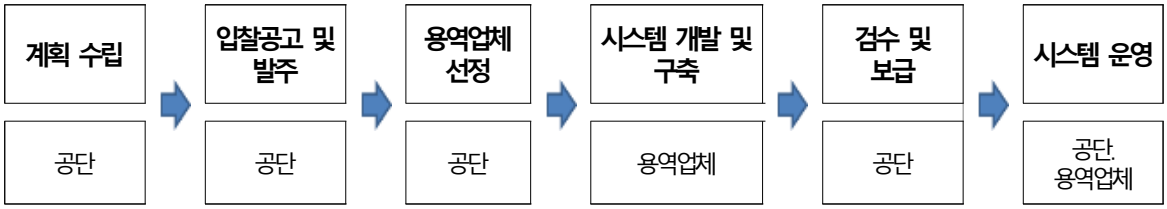


ㅇ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비용지원(舊. 취약계층 기초안전보건교육 비용지원)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비용지원(舊. 취약계층 기초안전보건교육 비용지원)



- 건설근로자 종합지원시스템 운영관리



ㅇ 안전보건미디어 개발 및 보급

사업계획 수립	콘텐츠 개발	콘텐츠 보급	
		온라인	오프라인
■ 전년 사업 피드백 ■ 사전조사 및 개발방향 결정 (의견수렴 및 콘텐츠 개발주제 선정) ■ 보급 수요량 조사 ■ 콘텐츠 개발·보급계획 수립	■ 콘텐츠 개발 용역업체 선정 ■ 원고 및 시나리오 작성 ■ 촬영(영상) 및 편집디자인(출판물) ■ 내용 검토 및 콘텐츠 최종 검수 ■ 인쇄/파일 등록	■ 보급플랫폼 게시 · 공단 홈페이지 · VR전용관 · 안전보건 앱 · 뉴스레터	■ 공단 일선기관 ■ 민간재해 예방기관 ■ 미디어 현장배송 서비스

<전문교육과정운영>

- 전문교육과정 운영

교육 계획수립 → ERP 등록 및 홈페이지공지 → 수강신청 및 결재 → 교육과정 운영 → 설문 및 결과보고 → 평가(설문조사) 및 피드백

<안전보건문화 선진화>

ㅇ 안전문화사업

- 안전일터 조성의 날

이슈분석 분석 → 지역 대표 유관기관 협업 → 현장점검, 캠페인 등 활동 전개 → 효과측정, 분석 및 개선방향 마련

- 산업안전보건의 달

준비계획수립 → 종합계획수립 → 사전확산 → 선포식 등 중앙행사 → 지역별 확산

ㅇ 홍보사업

계획수립	홍보추진	평가 및 환류
의견 수렴 ▶ 캠페인 기획 ▶ 종합계획 수립	캠페인 대행사 선정 ▶ 온·오프라인 캠페인 전개 디지털 콘텐츠 제작 ▶ 채널별 홍보추진	효과측정 및 피드백 → 분석 및 개선

<신규 영역 및 취약계층 특화 교육>

- 안전보건교육 컨설팅

컨설팅 계획 수립	컨설팅 대상 선정	현장 컨설팅 실시	컨설팅 보고서 작성	평가 및 환류
■ 기본계획 수립	■ 지원 대상 선정	■ 안전보건교육 전반에 컨설팅 제공	■ 보고서 작성 및 제공	■ 컨설팅 성과평가 ■ 내년도 사업계획 반영

- 외국인 기초안전보건교육

교육계획 수립	교육 준비	교육과정 운영	교육결과 관리
- 주제 선정 - 강의 촬영 - 교재 집필	- 공단 LMS에 영상/교재 탑재 - 수강 신청	- 교육 수강 - 평가 및 수료	- 결과 분석 - 결과 환류

- 외국인 노동자 특화 산재예방 지원

<외국인 전문인력 양성교육>

계획 수립	홍보 및 선발	교육 운영 및 활동	평가 및 환류
■세부 추진계획 수립 - 안전리더 운영계획 - 역량강화 교육계획 - 유관기관 업무협의	■안전리더 홍보 및 선발 - 매체 홍보 및 설명회 - 대상자 모집 및 선발	■역량강화 교육 운영 - 교육 운영(온·오프라인) - 교육이수자 관리 ■안전리더 활동 전개	■활동 성과평가 ■인센티브 부여 ■내년도 사업계획 반영

<중대재해 사이렌 보급>

사업계획 수립	콘텐츠 개발	콘텐츠 보급	
		온라인	오프라인
■전년 사업 피드백 ■사전조사 및 개발방향 결정 (의견수렴 및 콘텐츠 개발주제 선정) ■보급 수요량 조사 ■콘텐츠 개발·보급계획 수립	■콘텐츠 개발 용역업체 선정 ■원고 및 시나리오 작성 ■촬영(영상물) 및 편집디자인(출판물) ■내용 검토 및 콘텐츠 최종 검수 ■인쇄/파일 등록	■보급플랫폼 게시 · 산업안전포털 · VR전용관 · 안전보건 앱 · 구독서비스	■공단 일선기관 ■민간재해예방기관 ■미디어현장배송서비스

<한국어 교재 개발>

사업계획 수립	교재 개발	교재 보급	
		온라인	오프라인
■전년 사업 피드백 ■사전조사 및 개발방향 결정 (의견수렴 및 콘텐츠 개발주제 선정) ■보급 수요량 조사 ■콘텐츠 개발·보급계획 수립	■콘텐츠 개발 용역업체 선정 ■원고 및 시나리오 작성 ■촬영(영상물) 및 편집디자인(출판물) ■내용 검토 및 콘텐츠 최종 검수 ■인쇄/파일 등록	■보급플랫폼 게시 · 산업안전포털 · 안전보건 앱 · 구독서비스	■공단 일선기관 ■민간재해예방기관 ■미디어현장배송서비스

8) 최근 3년간(2024년~2026년)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8-1) 정부 사업평가

구분	연도	주요내용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2026년	○ 결과 : 감액
24회계연도 재난안전 사업평가	2025년	○ 결과 : 우수(86.7점)

(8-2) 국회 지적사항

구분	연도	주요내용
국정감사	2025년	○ 지적 : 공단이 개발한 안전보건 앱 외국인 이용률 저조, 건설업 등 산재 다발 업종 특화 프로그램 부재 ○ 조치 : 외국인 전용 플랫폼 앱으로 리뉴얼 오픈, 교육 인프라 확대 및 체험교육 활성화 추진
2025회계연도 예산(안) 환노위 검토보고서	2024년	○ 지적 : 외국인 근로자 대상으로 실효성 있는 안전보건교육 실시 필요 ○ 조치 : 외국인 기초안전보건교육 도입
국정감사	2024년	○ 지적 : 미숙련 외국인 근로자 대상 안전보건교육 필요 ○ 조치 : VR·체험교육 등 실감형 교육 확대 및 국가별 안전보건교육 강사·통역원 양성 추진

(8-3) 감사원, 총리실, 기타(언론, 시민단체 등) 결과: 해당없음

4. 최근 4년간(2023년~2026년) 결산내역

1) 결산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연도	당초 계획액	수정 계획액 (A)	전년도 이월액	기금변경 증감액 등	계획 현액	집행액 (B)	집행률 (B/Ax100)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3년	32,847	32,847	-	-	32,847	32,358	98.5	-	489
2024년	32,925	32,925	-	-	32,925	32,366	98.3	-	559
2025년	35,674	35,674	-	-	35,674	35,166	98.6	-	508
2026년	36,376	36,376	-	-	36,376	24,001	66.0	해당없음	해당없음

2) 연도별 결산 주요사항

연도	유형	금액 (백만원)	사유
2023년	불용	489	안전보건교육 및 안전보건문화 선진화 사업 등 수행경비 일부 집행잔액
2024년	불용	559	안전보건교육 및 안전보건문화 선진화 사업수행경비 집행잔액 등
2025년	불용	508	안전보건교육 및 안전보건문화 선진화 사업수행경비 집행잔액 등

5. 기타 추가자료 : 해당없음

사 업 명
(20) 산재예방시설건립(4154-351)

1. 사업 총괄 정보

1) 사업 기본 정보

(1-1) 일반 정보

소관	실·국	과·팀	기금	계정
고용노동부	중대재해감축 로드맵 이행 추진단	로드맵이행총괄팀	산업재해보상 보험및예방기금	-

(1-2) 코드·명칭 정보

구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080	08E	4100	4154	351
명칭	사회복지	노동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문화확산	산재예방시설건립

2)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N	Y	N	N	Y	N

3)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N	N	Y	N	N	-	-

4) 기능별(내역사업별)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내역사업명	소관	사업시행주체
안전체험교육장 건립 및 시설개선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이행 추진단 로드맵이행총괄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노후청사 개·보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예방정책관 산업안전정책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 지출계획 총괄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사업명	2025년 결산액	2026년 당초계획액 (A)	2026년 수정계획액	2027년 요구액	2027년 정부안액 (B)	증감액 (B-A)	증감률 (B-A) /A×100
산재예방시설건립	4,199	11,395	11,395	25,069	4,821	△6,574	△57.7

1)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계획액 (수정)	2025년 계획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계획액 (수정)	2026년 계획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4,200	4,200	4,199	-	1	11,395	11,395	2,656	4,821
·영암 안전체험교육장 건립	-	-	-	-	-	2,413	2,413	113	-
·안전체험교육장 건립 및 시설개선	4,200	4,200	4,199	-	1	8,220	8,220	2,223	3,385
·노후청사 내진성능 검사 및 보수	-	-	-	-	-	462	462	170	-
·노후청사 개·보수	-	-	-	-	-	-	-	-	1,436
·안전체험교육장 관련 용역	-	-	-	-	-	200	200	60	-
·안전보건역량개발원 관련 검토 연구용역	-	-	-	-	-	100	100	90	-

2) 비목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계획액 (수정)	2025년 계획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계획액 (수정)	2026년 계획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4,200	4,200	4,199	-	1	11,395	11,395	2,656	4,821
·정책연구비(260-02)	-	-	-	-	-	200	200	60	-
·사업출연금(350-02)	4,200	4,200	4,199	-	1	11,195	11,195	2,596	4,821

3. 사업 설명

1) 사업목적·내용

(1-1) 안전체험교육장 건립 및 시설개선

사업목적	안전체험교육장 신규 건립 및 시설개선으로 체험교육장 사각지대 해소 및 산업재해 감소 기여
사업내용	체험교육 인프라가 전무한 지역(경북, 경남, 영암) 내 안전체험교육장 건립 및 시설개선

(1-2) 노후청사 개·보수

사업목적	노후청사 시설물 및 설비의 수선·교체로 교육생 등 이용자의 안전과 산재예방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지진 등 재난 발생 대비 사회안전망 구축·지원
사업내용	노후청사 시설물 및 설비의 내진보강공사 및 안전 강화 조치 실시

2) 사업개요

(2-1)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사업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정부의 책무)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1. 산업 안전 및 보건 정책의 수립 및 집행 2. 산업재해 예방 지원 및 지도 3.「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기준 마련, 지도 및 지원 4. 사업주의 자율적인 산업 안전 및 보건 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지원 5.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홍보·교육 등 안전문화 확산 추진 6.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술의 연구·개발 및 시설의 설치·운영 7.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관리 8. 산업 안전 및 보건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및 지도·감독 9. 그 밖에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 및 건강의 보호·증진 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그 밖의 관련 단체 및 연구기관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산업재해 예방의 재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재원(財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에서 지원한다. 1. 제11조 각 호에 따른 시설의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산업재해예방 관련 사업 및 비영리법인에 위탁하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의 사업비 -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 (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보조·지원) ① 정부는 사업주, 사업주단체, 근로자단체,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 연구기관 등이 하는 산업재해 예방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이하 "보조·지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보조·지원이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5조(기존 시설물의 내진보강기본계획 수립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 14조에 따른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 중 관련 법령이 제정되기 전에 설치된 공공시설물이나 관계 법령의 제정 이후 내진설계기준이 강화된 공공시설물의 내진성능 향상을 위하여 5년마다 기존시설물 내진보강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제9조에 따른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내진보강대책에 관한 기본방향 2. 내진성능평가에 관한 사항 3. 내진보강 중·장기계획에 관한 사항 4. 내진보강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5. 내진보강대책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개발 6. 그 밖에 내진보강대책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제5호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재난관리업무를 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나. 지방행정기관·공공기관·공공단체(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지부 등 지방조직을 포함한다) 및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의 관리기관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재난관리책임기관) ① 법제3조제5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법인을 말한다. 1. 재난관리주관기관 소속의 다음 각 목의 기관 나.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지정하는 부속기관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5(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운영)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재난유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위기관리 매뉴얼을 작성·운영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난대응활동계획과 위기관리 매뉴얼이 서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재난에 대하여 재난관리 체계와 관계 기관의 임무와 역할을 규정한 문서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의 작성 기준이 되며,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작성한다. 다만, 다수의 재난관리주관기관이 관련되는 재난에 대해서는 관계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작성할 수 있다.| 2.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서 규정하는 기능과 역할에 따라 실제 재난대응에 필요한 조치사항 및 절차를 규정한 문서로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과 관계 기관의 장이 작성한다. 이 경우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위기대응 실무매뉴얼과 제1호에 따른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3.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재난현장에서 임무를 직접 수행하는 기관의 행동조치 절차를 구체적으로 수록한 문서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작성한 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의 장이 작성하되, 시장·군수·

	구청장은 재난유형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다만,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작성 기관의 장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작성한 계획·매뉴얼 등에 재난유형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포함될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재난유형에 대해서는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이 작성된 것으로 본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① 정부는 중대재해를 예방하여 시민과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중대재해의 종합적인 예방대책의 수립·시행과 발생원인 분석 2. 사업주, 법인 및 기관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 3. 사업주, 법인 및 기관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 지원 및 지도 4.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의 시행 ② 정부는 사업주, 법인 및 기관에 대하여 유해·위험 시설의 개선과 보호 장비의 구매, 종사자 건강진단 및 관리 등 중대재해 예방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추진경위	○ 1996 하반기~1999: 산업안전선진화 3개년 계획(대통령 보고) ○ 2000. 9월: 국무총리실「안전관리종합대책」(국무회의 보고) ○ 2000~2004: 제1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 계획(1999. 12월) ○ 2005~2009: 제2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 계획(2004. 12월) ○ 2010~2014: 제3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 계획(2010. 3월) ○ 2015~2019: 제4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 계획(2015. 1월) ○ 2020~2024: 제5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 계획(2020. 5월) ○ 2022. 11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 2025. 9월: 노동안전 종합대책(국정과제)

(2-2) 사업규모

○ 사업기간 : '88년~계속

○ 총사업비 : ('26~'30) 66,145백만원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계획액 기준, 기금운용계획변경 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사업비	21,026	5,548	4,200	11,395	4,821

(2-3)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사업 수혜자 : 산재보험가입 사업주 및 근로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기관명	2027년 지원금액 (백만원)	지원 비율(%)	법적근거
안전체험교육장 건립 및 시설개선	출연	한국산업 안전보건공단	3,385	10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 제96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
노후청사 개·보수	출연	한국산업 안전보건공단	1,436	10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 제96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

3) 기능별(내역사업별) 산출 내역

(3-1) 내역사업별 세부 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계획액(수정)(A)	2027년 정부안액(B)	증감 (B-A)
합 계	11,395	4,821	△6,574
안전체험교육장 건립 및 시설개선	8,220	3,385	△4,835
영암 안전체험교육장 건립	2,413	-	△2,413
노후청사 내진성능 검사 및 보수	462	-	△462
노후청사 개·보수	-	1,436	1,436
안전보건역량개발원 관련 검토 용역	100	-	△100
안전체험교육장 관련 용역	200	-	△200

○ 안전체험교육장 건립 및 시설개선 (2026년) 8,220 → (2027년) 3,385백만원, △58.8%

- (설명) 체험교육 사각지대 해소 및 산업재해 감소 기여를 위해 체험교육 인프라가 전무한 경북·경남지역 내 노후 안전체험교육장 시설개선과 영암지역 내 신규 건립 2년차 사업 예산 반영

  * 사업 운영 효율화를 위해 기존 "노후 안전체험교육장 시설개선"과 "영암 안전체험교육장 건립" 통합

- (산출)

  * 경북 안전체험교육장 시설개선: ('26년) 2,220 → ('27년) 1,341백만원(△879백만원)
    (설계비 1,086백만원 + 건설사업관리비 255백만원)

  * 경남 안전체험교육장 시설개선: ('26년) 6,000 → ('27년) 1,341백만원(△4,659백만원)
    (설계비 1,086백만원 + 건설사업관리비 255백만원)

  * 영암 안전체험교육장 건립: ('26년) - → ('27년) 703백만원(순증, 이관)
    (설계비 552백만원 + 건설사업관리비 151백만원)

○ 영암 안전체험교육장 건립 (2026년) 2,413 → (2027년) -백만원, 순감(사업통합)

- (설명) 사업 운영 효율화를 위해 노후 안전체험교육장 시설개선과 신규 체험교육장(영암) 건립 사업을 “안전체험교육장 건립 및 시설개선”으로 ’27년 통합
- (산출) 사업 통합으로 인한 순감(△2,413백만원)

○ 노후청사 내진성능 검사 및 보수 (2026년) 462 → (2027년) -백만원, 순감(사업통합)

- (설명) 노후청사 내진성능 검사 종료 및 사업 운영 효율화를 위해 사업 통합
- (산출) 사업 통합으로 인한 순감(△462백만원)

○ 노후청사 개·보수 (2026년) - → (2027년) 1,436백만원, 순증

- (설명) 노후청사 안전성 강화를 위한 내진성능 보강공사 및 시설물 안전강화 예산 반영
- (산출) 내진성능 보강공사 1,200백만원, 시설물 안전강화 236백만원

○ 안전보건역량개발원 관련 검토 용역 (2026년) 100 → (2027년) -백만원, 순감(사업종료)

- (설명) 산재예방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역량개발원 건립 관련 검토 연구용역 수행 완료로 인한 사업 종료
- (산출) 사업 종료로 인한 순감(△100백만원)

○ 안전체험교육장 관련 용역 (2026년) 200 → (2027년) -백만원, 순감(사업종료)

- (설명) 안전체험교육 개선 및 민간 체험인프라 확충을 위한 조사 용역 완료로 인한 사업 종료
- (산출) 사업 종료로 인한 순감(△200백만원)

4) 사업효과

(4-1) 최근 5년(2023년~2027년)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 **성과지표: 체험교육장 건립 예산 집행률(상향지표)(세부사업지표)**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목표	신규	신규	신규	신규	80%
실적	-	-	-	-	해당없음
달성도	-	-	-	-	해당없음

- **측정산식 :** 체험교육장 건립 예산 실집행률/예산현액×100
- **측정방법 및 목표치 설정근거 :** 회계연도 내 사업비 집행 가능 예산*을 고려하여 설정
  * 공사 착공 및 기성금 지급 기준 약 70~80%
- **자료수집방법/출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자료

○ **성과지표: 지원사업장 사고사망만인율(‰)(하향지표)(프로그램 지표)**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목표	0.54‰	0.50‰	0.45‰	0.42‰	삭제
실적	0.51‰	0.48‰	0.42‰	해당없음	-
달성도	105.9%	104.0%	106.7%	해당없음	-

- **측정산식 :** 지원사업장의 사망사고 예방 실적(%)=(A-B)/A×100
  · A : 공단 지원사업장* 사고사망만인율(‰)
  * 재해발생사업장(중대재해조사 및 감독 대상 사업장 등) 지원 실적은 제외
  · B : 전체 사고사망만인율(‰)

- **측정방법 및 목표치 설정근거**
  · 목표치 설정 근거 :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따라 전체 사업장의 사고사망만인율 감소 목표 비율*을 준용**하여 목표치 설정
  * ('26) 0.37 → ('27) 0.35 → ('28) 0.33 → ('29) 0.31 → ('30) 0.29
  ** 종합대책 목표치의 전년대비 감소율을 성과지표 목표치에 적용

- **자료수집방법/출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성과지표: 중상해사고재해율(%)(하향지표)**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목표	0.084%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실적	0.082%	-	-	-	-
달성도	102.4%	-	-	-	-

- **측정산식 :** 1프로그램 1성과 지표 원칙에 따른 지표 삭제

- **측정방법 및 목표치 설정근거 :** 1프로그램 1성과 지표 원칙에 따른 지표 삭제

- **자료수집방법/출처 :** 1프로그램 1성과 지표 원칙에 따른 지표 삭제

○ **성과지표: 50인 미만 사업장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연계율(%)**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목표	79.8%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실적	71.2%	-	-	-	-
달성도	89.2%	-	-	-	-

- **측정산식 :** 1프로그램 1성과 지표 원칙에 따른 지표 삭제

- **측정방법 및 목표치 설정근거 :** 1프로그램 1성과 지표 원칙에 따른 지표 삭제

- **자료수집방법/출처 :** 1프로그램 1성과 지표 원칙에 따른 지표 삭제

(4-2) 성과지표 이외의 최근 4년(2023년~2026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연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3년	- 익산 구조물공사 진행 및 인천 안전체험교육장 시공사 선정
2024년	- 익산 안전체험교육장: 개관 - 인천 안전체험교육장: 옥탑층 구조물 공사 완료 - 영암 안전체험교육장 타당성조사: 완료
2025년	- 인천 안전체험교육장 개관
2026년	- 경북 안전체험교육장: 부지매입 완료 - 경남 안전체험교육장: 매입대상 부지 감정평가 완료 - 안전체험교육장 관련 용역: 경남·영암 교육장 관련 연구용역 완료 및 안전체험교육장 건립사업 중장기 방안 연구용역 진행 중 - 내진성능평가 4개소 진행 완료

(4-3) 향후(2027년 이후) 기대효과

○ 체험교육장 건립, 시설개선, 건립지원으로 근로자의 안전의식 향상 및 현장 적용

○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써 지진 등 재난에 대한 예방과 대비를 우선하고, 재난상황 시 대응과 복구를 위한 활동을 지속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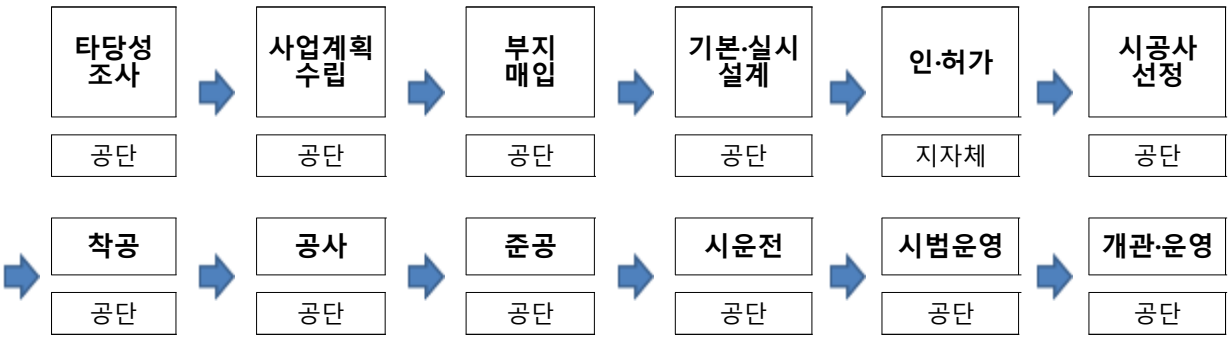
(단위: 백만원)

사업기간	2023년 까지 기투자액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이후 투자계획	합계
2026년~2030년	-	-	-	8,220	2,682	55,243	66,1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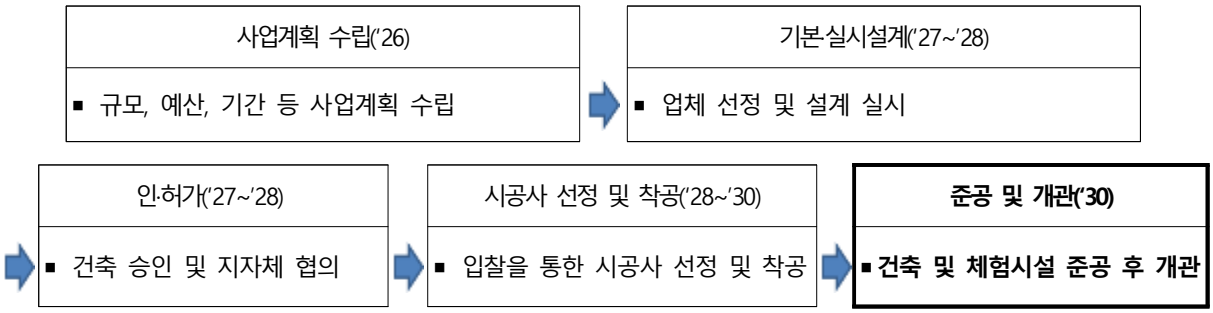
7) 사업 집행절차

<안전체험교육장 건립 및 시설개선>

ㅇ 노후 안전체험교육장 시설개선(경남, 경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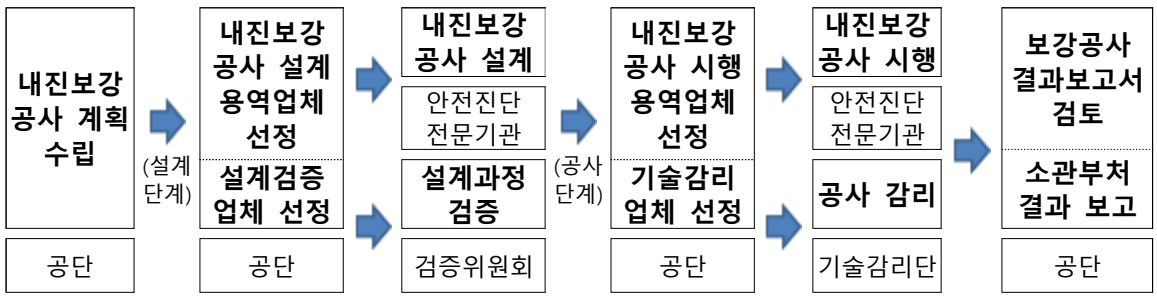


ㅇ 안전체험교육장 건립(영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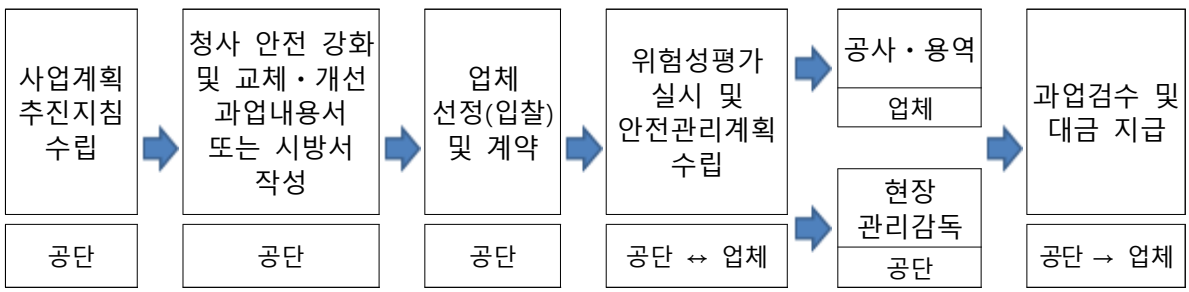


<노후청사 개·보수>

ㅇ 내진보강공사



ㅇ 시설물 안전 강화



8) 최근 3년간(2024년~2026년)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8-1) 정부 사업평가 : 해당없음

(8-2) 국회 지적사항

구분	연도	주요내용
2026회계연도 예산(안) 기노위 검토보고서	2025년	○ 지적 : 불필요한 본부동 내진성능평가 예산 감액 및 경북지역본부 내진성능평가 검증 필요 ○ 조치 : 인천 내진성능평가 대체 추진, 경북 내진성능평가 결과 보강필요에 따른 보강공사 시행
2025회계연도 예산(안) 환노위 서면질의	2024년	○ 지적 : 경북 및 경기 화성에 안전체험교육장 건립 필요 ○ 조치 : 예산 반영을 통해 경북·경남 체험교육장 시설 개선 추진 및 화성 추가 건립 추진 예정
국정감사	2024년	○ 지적 : 운영 중단 체험교육장 조속한 재개 필요 ○ 조치 : 운영 중단된 노후 교육장은 '26년 예산 확보하여 건립 중이며 충청은 예산 반영 노력 중

(8-3) 감사원, 총리실, 기타(언론, 시민단체 등) 결과: 해당없음

4. 최근 4년간(2023년~2026년) 결산내역

1) 결산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연도	당초 계획액	수정 계획액 (A)	전년도 이월액	기금변경 증감액 등	계획 현액	집행액 (B)	집행률 (B/Ax100)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3년	21,026	21,026	-	-	21,026	21,025	100.0	-	1
2024년	5,548	5,548	-	-	5,548	5,544	99.9	-	4
2025년	4,200	4,200	-	-	4,200	4,199	100.0	-	1
2026년	11,395	11,395	-	-	11,395	2,656	23.3	해당없음	해당없음

2) 연도별 결산 주요사항

연도	유형	금액 (백만원)	사유
2023년	불용	1	노후 안전체험교육장 타당성조사 용역 낙찰차액
2024년	불용	4	영암 안전체험교육장 타당성 조사 용역 낙찰차액 등
2025년	불용	1	인천 안전체험교육장 공사비·체험콘텐츠비 낙찰차액 등

5. 기타 추가자료 : 해당 없음

사 업 명
(21) 안전한 일터 신고포상금(4154-357)

1. 사업 총괄 정보

1) 사업 기본 정보

(1-1) 일반 정보

소관	실·국	과·팀	기금	계정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감독국	안전보건감독기획과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

(1-2) 코드·명칭 정보

구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080	08E	4100	4154	357
명칭	사회복지	노동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문화확산	안전한 일터 신고포상금

2)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N	Y	N	N	N	N

3)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Y	N	N	N	N	-	-

4) 기능별(내역사업별)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내역사업명	소관
안전한 일터 신고포상금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감독국 안전보건감독기획과

2. 지출계획 총괄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사업명	2025년 결산액	2026년 당초계획액 (A)	2026년 수정계획액	2027년 요구액	2027년 정부안액 (B)	증감액 (B-A)	증감률 (B-A) /A×100
안전한 일터 신고포상금	-	11,142	11,142	11,296	9,302	△1,840	△16.5

1)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계획액 (수정)	2025년 계획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계획액 (수정)	2026년 계획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	-	-	-	-	11,142	11,142	0	9,302
·안전한 일터 신고포상금	-	-	-	-	-	11,142	11,142	0	9,302

2) 비목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계획액 (수정)	2025년 계획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계획액 (수정)	2026년 계획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	-	-	-	-	11,142	11,142	0	9,302
·일반수용비(210-01)	-	-	-	-	-	22	22	0	72
·사업추진비(240-01)	-	-	-	-	-	20	20	0	20
·포상금(310-03)	-	-	-	-	-	11,100	11,100	0	9,210

3. 사업 설명

1) 사업목적·내용

(1) 안전한 일터 신고포상금

사업목적	신고를 활성화하고 일터의 위험상황 해소에 기여
사업내용	일터의 산업재해 발생위험 등을 발견하여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

2) 사업개요

(2-1)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사업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정부의 책무)**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1. 산업 안전 및 보건 정책의 수립 및 집행 2. 산업재해 예방 지원 및 지도

	3.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기준 마련, 지도 및 지원 4. 사업주의 자율적인 산업 안전 및 보건 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지원 5.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홍보·교육 등 안전문화 확산 추진 6.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술의 연구·개발 및 시설의 설치·운영 7.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관리 8. 산업 안전 및 보건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및 지도·감독 9. 그 밖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건강의 보호·증진 ○ **「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산업재해 예방의 재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재원(財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에서 지원한다. 1. 제11조 각 호에 따른 시설의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산업재해예방 관련 사업 및 비영리법인에 위탁하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의 사업비
추진경위	○ 소규모 사업장 중심으로 떨어짐, 끼임, 부딪힘 등 후진국형 산재가 지속 발생 ○ 일터의 산재 발생위험 등을 발견할 경우 간편하게 신고하고 조치하는 '안전일터 신고센터' 개설 추진('25년~), 신고에 대한 인센티브 마련 추진 ○ '25.8월 대통령 지시사항(반복적인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관리가 미비한 사업장을 신고할 경우 파격적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 검토) ○ 신고포상금 지급 근거 명확화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추진 중

(2-2) 사업규모

○ 사업기간 : 2026~계속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계획액 기준, 기금운용계획변경 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사업비	-	-	-	11,142	9,302

(2-3)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
○ 사업 수혜자 : 일반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3) 기능별(내역사업별) 산출 내역

(3-1) 내역사업별 세부 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계획액(수정)(A)	2027년 정부안액(B)	증감 (B-A)
합 계	11,142	9,302	△1,840
안전한 일터 신고 포상금	11,142	9,302	△1,840

○ 안전한 일터 신고포상금 **(2026년) 11,142 → (2027년) 9,302백만원, △16.5%**
- (설명) '27년 '안전한 일터 포상금' 제도 포상금 지급을 위해 예산 요구
- (산출) 포상금 9,210백만원 + 제도 운영비 92백만원 = 9,302백만원

4) 사업효과

(4-1) 최근 5년(2023년~2027년)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 **성과지표:** 신고접수 후 기한 내 조사·처리율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목표	-	-	-	50	60
실적	-	-	-	해당없음	해당없음
달성도	-	-	-	해당없음	해당없음

- **측정산식 :** [(기한내 조사·처리 건수 / 신고대상 건수)]*100
- **측정방법 및 목표치 설정근거 :** 제도 정착 기간 고려하여 연내 조사·처리 예상 수치
- **자료수집방법/출처 :** 고용노동포털 신고 및 노사누리 전산 자료

(4-2) 성과지표 이외의 최근 4년(2023년~2026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해당없음(사업 시행 전)

(4-3) 향후(2027년 이후) 기대효과:

○ 신고 활성화 및 위험상황 해소 기여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해당없음(고용노동부 직접수행)

8) 최근 3년간(2024년~2026년)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8-1) 정부 사업평가: 해당없음

(8-2) 국회 지적사항:

구분	연도	주요내용
예결위 검토보고서	2026년	○ 지적 :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서 신고포상금의 지급 근거 및 지급 한도를 관계법령에 명확히 규정하도록 하고 있고,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도 신고포상금은 반드시 법령에 근거를 두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포상금과는 다르게 포상금 지급의 법적 근거는 없음 • 법률안 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의 수행 가능 여부 및 시행시기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안 심사 경과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조치 : 신고포상금 지급근거 마련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논의 지원
상임위 부대의견	2026년	○ 지적 : 우수기관 포상금 1억원 중 지방고용노동관서 포상 부분은 자체 표창부상금이므로 향후 해당 예산을 이 세부사업이 아닌 기관운영기본경비로 편성하고 '26년 우수기관에 대한 포상금 예산은 자치단체에 대해서만 집행 ○ 조치 : '26년 우수기관에 대한 포상금 예산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만 집행할 계획
		○ 지적 : 신고사건에 의한 안전한 일터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때에 검찰 송치 또는 검찰 기소 단계가 아니라 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됨에 따른 행정처분 즉시 신고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할 것 ○ 조치 : 법령 위반사실이 확인되는 즉시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사업계획 마련
		○ 지적 : 안전일터 신고포상금 관련 포상금 지급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신고 남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체계적으로 설계할 것. 또한, 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를 실시하여 향후 예산 편성 과정에 반영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할 것 ○ 조치 : 지급기준 명확화 등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사업계획 마련

(8-3) 감사원, 총리실, 기타(언론, 시민단체 등) 결과: 해당없음

4. 최근 4년간(2023년~2026년) 결산내역: 해당없음

사 업 명
(22) 안전보건 연구개발 및 국제협력(4155-350)

1. 사업 총괄 정보

1) 사업 기본 정보

(1-1) 일반 정보

소관	실·국	과·팀	기금	계정
고용노동부	산업안전 예방정책관	산업안전정책과	산업재해보상 보험및예방기금	-

(1-2) 코드·명칭 정보

구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080	08E	4100	4155	350
명칭	사회복지	노동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기반조성	안전보건 연구개발 및 국제협력

2)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N	Y	N	N	N	N

3)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N	N	Y	N	N	-	-

4) 기능별(내역사업별)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내역사업명	소관	사업시행주체
안전보건연구사업	고용노동부 산업안전예방정책관 산업안전정책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국제협력사업	고용노동부 산업안전예방정책관 산업안전정책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내역사업명	소관	사업시행주체
산업재해통계	고용노동부 산업안전예방정책관 산업안전정책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재예방사업 평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예방정책관 산업안전정책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 지출계획 총괄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사업명	2025년 결산액	2026년 당초계획액 (A)	2026년 수정계획액	2027년 요구액	2027년 정부안액 (B)	증감액 (B-A)	증감률 (B-A) /A×100
안전보건연구개발 및 국제협력	7,009	7,031	7,031	8,307	6,727	△304	△4.3

1)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계획액 (수정)	2025년 계획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계획액 (수정)	2026년 계획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7,331	7,331	7,009	-	322	7,031	7,031	4,827	6,727
·안전보건연구사업	3,341	3,341	3,233	-	108	3,241	3,241	1,945	2,687
·국제협력사업	885	885	823	-	62	885	885	210	935
·산업재해통계	3,105	3,105	2,953	-	152	2,905	2,905	2,672	2,405
·산재예방사업 평가	-	-	-	-	-	-	-	-	700

2) 비목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계획액 (수정)	2025년 계획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계획액 (수정)	2026년 계획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7,331	7,331	7,009	-	322	7,031	7,031	4,827	6,727
·사업출연금(350-02)	7,331	7,331	7,009	-	322	7,031	7,031	4,827	6,727

3. 사업 설명

1) 사업목적·내용

(1-1) 안전보건연구사업

사업목적	산업안전보건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과 산업안전보건 기준 마련 등으로 산업재해 예방 기여
사업내용	정책제도연구, 산업안전연구, 산업보건연구, 산업화학연구 등 안전보건 분야별 자체·위탁연구 수행 등

(1-2) 국제협력사업

사업목적	안전보건 분야 글로벌 이슈의 주도권 선점 및 공동 대응 등으로 국내 산업재해 감소에 기여
사업내용	국외 안전보건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 구축 및 선진 안전보건정보 교류 및 보급,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신규 발굴 타당성 조사

(1-3) 산업재해통계

사업목적	산업재해를 월별로 생산 및 분석하여 산업재해예방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제공
사업내용	산재현황 및 원인을 분석하고 다양한 산재통계자료를 생산·가공·보급

(1-4) 산재예방사업 평가

사업목적	사업개선 및 정책 의사결정을 위한 객관적 근거 마련 및 효과성·효율성 및 현장 작동성 제고
사업내용	산재예방사업의 현장 작동성·효과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사업의 실효성 제고방안 마련

2) 사업개요

(2-1)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사업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정부의 책무)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1. 산업 안전 및 보건 정책의 수립 및 집행 2. 산업재해 예방 지원 및 지도 3.「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기준 마련, 지도 및 지원 4. 사업주의 자율적인 산업 안전 및 보건 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지원 5.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홍보·교육 등 안전문화 확산 추진 6.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술의 연구·개발 및 시설의 설치·운영 7.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관리 8. 산업 안전 및 보건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및 지도·감독 9. 그 밖에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 및 건강의 보호·증진 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그 밖의 관련 단체 및 연구기관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산업재해 예방의 재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재원(財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에서 지원한다. 1. 제11조 각 호에 따른 시설의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산업재해예방 관련 사업 및 비영리법인에 위탁하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의 사업비 -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 (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보조·지원) ① 정부는 사업주, 사업주단체, 근로자단체,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 연구기관 등이 하는 산업재해 예방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이하 "보조·지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보조·지원이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① 정부는 중대재해를 예방하여 시민과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중대재해의 종합적인 예방대책의 수립·시행과 발생원인 분석 2. 사업주, 법인 및 기관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 3. 사업주, 법인 및 기관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 지원 및 지도 4.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의 시행

	② 정부는 사업주, 법인 및 기관에 대하여 유해·위험 시설의 개선과 보호 장비의 구매, 종사자 건강진단 및 관리 등 중대재해 예방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추진경위	○ 1996 하반기~1999: 산업안전선진화 3개년 계획(대통령 보고) ○ 2000. 9월: 국무총리실「안전관리종합대책」(국무회의 보고) ○ 2000~2004: 제1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 계획(1999. 12월) ○ 2005~2009: 제2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 계획(2004. 12월) ○ 2010~2014: 제3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 계획(2010. 3월) ○ 2015~2019: 제4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 계획(2015. 1월) ○ 2020~2024: 제5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 계획(2020. 5월) ○ 2022. 11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 2025. 9월: 노동안전 종합대책(국정과제)

(2-2) 사업규모

○ 사업기간 : '88년~계속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계획액 기준, 기금운용계획변경 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사업비	8,843	7,984	7,331	7,031	6,727

(2-3)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사업 수혜자 : 산재보험가입 사업주 및 근로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기관명	2027년 지원금액 (백만원)	지원 비율(%)	법적근거
안전보건연구사업	출연	한국산업 안전보건공단	2,687	10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 제96조
국제협력사업	출연	한국산업 안전보건공단	935	10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 제96조
산업재해통계	출연	한국산업 안전보건공단	2,405	10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 제96조
산재예방사업 평가	출연	한국산업 안전보건공단	700	10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 제96조

3) 기능별(내역사업별) 산출 내역

(3-1) 내역사업별 세부 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계획액(수정)(A)	2027년 정부안액(B)	증감 (B-A)
합 계	7,031	6,727	△304
안전보건연구사업	3,241	2,687	△554
국제협력사업	885	935	50
산업재해통계	2,905	2,405	△500
산재예방사업 평가	-	700	700

○ 안전보건연구사업 (2026년) 3,241 → (2027년) 2,687백만원, △17.1%

- (설명) 정부의 핵심 국정목표인 사고사망 감소에 대응하고자 기존 정규연구 수행 과제 일부를 조정하고, 산업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현안 대응 정책지원 및 예방사업 효율화를 위한 평가 중심으로 사업구조 개편

- (산출) 산업안전보건연구 2,687백만원(32개 과제×83.9백만원)(△554백만원, △7개 과제)

○ 국제협력사업 (2026년) 885 → (2027년) 935백만원, +7.0%

- (설명) 안전보건 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신규 발굴을 위한 사전 타당성 조사 수행 예산 반영

- (산출)

  * 국제협력: ('26년) 713 → ('27년) 763백만원(69회×10.3백만원+ODA 50백만원)(+50백만원)
  * 해외정보관리: ('26년) 172 → ('27년) 172백만원(159회×1.1백만원)(전년 동)

○ 산업재해통계 (2026년) 2,905 → (2027년) 2,405백만원, △17.2%

- (설명) 조사방식 효율화(조사 간 중복항목 정비) 및 행정자료 연계 확대 등을 통한 조사 운영체계 조정으로 지출구조조정을 통한 효율화

- (산출)

  * 산업재해통계: ('26년) 705 → ('27년) 605백만원(10회×60.5백만원)(△100백만원)
  * 안전보건환경 실태조사: ('26년) 2,200 → ('27년) 1,800백만원(1식×1,800백만원)(△400백만원)

○ 산재예방사업 평가 (2026년) - → (2027년) 700백만원, 순증

- (설명) 산재예방사업 효과성과 재정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의 현장 작동성 검증, 예방사업 심층평가 및 평가결과의 환류·개선 등 예방사업 평가체계 구성·운영 추진

- (산출) 산재예방사업 평가 700백만원(7식×100백만원)(순증)

4) 사업효과

(4-1) 최근 5년(2023년~2027년)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 **성과지표: 학술지 논문 게재 목표 달성 노력(상향지표, 가중치 0.7)(세부사업지표)**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목표	신규	신규	신규	신규	1.0건
실적	-	-	-	-	해당없음
달성도	-	-	-	-	해당없음

- **측정산식** : 연구직 1인당 학술지 논문 게재 건수* 측정
  * 학술지 평균 논문 게재 건수 = 학술지 논문 게재 건수 합계(논문 등급별 가중치 부여) / 연구직 직원 수

- **측정방법 및 목표치 설정근거** : 정부출연기관 연구기관 평가 편람에 따른 「국내·외 학술지 논문게재 실적」 기준(1.0)과 동일한 지표를 사용함으로써 지표 자체의 공정성 확보

- **자료수집방법/출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자료

○ **성과지표: 국제 기술교류 및 지원 건수(상향지표, 가중치 0.3)(세부사업지표)**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목표	신규	신규	신규	신규	53건
실적	-	-	-	-	해당없음
달성도	-	-	-	-	해당없음

- **측정산식** : 개발도상국 기술교류 결과 문서상의 실적 건수 측정

- **측정방법 및 목표치 설정근거** :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 편람에 따른 목표 부여 편차 방식(과거 3년)을 적용, 산출된 최고 목표 값을 목표로 설정

- **자료수집방법/출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자료

○ **성과지표: 지원사업장 사고사망만인율(‰)(하향지표)(프로그램 지표)**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목표	0.54‰	0.50‰	0.45‰	0.42‰	삭제
실적	0.51‰	0.48‰	0.42‰	해당없음	-
달성도	105.9%	104.0%	106.7%	해당없음	-

- **측정산식** : 지원사업장의 사망사고 예방 실적(%)=(A-B)/A×100
  · A : 공단 지원사업장* 사고사망만인율(‰)
  * 재해발생사업장(중대재해조사 및 감독 대상 사업장 등) 지원 실적은 제외
  · B : 전체 사고사망만인율(‰)

- **측정방법 및 목표치 설정근거**
  · 목표치 설정 근거 :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따라 전체 사업장의 사고사망만인율 감소 목표 비율*을 준용**하여 목표치 설정
  * ('26) 0.37 → ('27) 0.35 → ('28) 0.33 → ('29) 0.31 → ('30) 0.29
  ** 종합대책 목표치의 전년대비 감소율을 성과지표 목표치에 적용

- **자료수집방법/출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성과지표: 중상해사고재해율(%)(하향지표)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목표	0.084%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실적	0.082%	-	-	-	-
달성도	102.4%	-	-	-	-

- **측정산식** : 1프로그램 1성과 지표 원칙에 따른 지표 삭제
- **측정방법 및 목표치 설정근거** : 1프로그램 1성과 지표 원칙에 따른 지표 삭제
- **자료수집방법/출처** : 1프로그램 1성과 지표 원칙에 따른 지표 삭제

○ 성과지표: 50인 미만 사업장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연계율(%)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목표	79.8%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실적	71.2%	-	-	-	-
달성도	89.2%	-	-	-	-

- **측정산식** : 1프로그램 1성과 지표 원칙에 따른 지표 삭제
- **측정방법 및 목표치 설정근거** : 1프로그램 1성과 지표 원칙에 따른 지표 삭제
- **자료수집방법/출처** : 1프로그램 1성과 지표 원칙에 따른 지표 삭제

(4-2) 성과지표 이외의 최근 4년(2023년~2026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연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3년	- 안전경영정책연구: 19건 - 산업안전연구: 11건 - 직업건강연구: 16건 - 직업환경연구: 6건 - 화학물질연구: 9건 - 산업안전분야 국제학술지 발간: 1식 - 국제협력사업: 285회 - 산업재해통계: 10회·종 / 근로환경조사 1식
2024년	- 안전경영정책연구: 19건 - 산업안전연구: 9건 - 직업건강연구: 16건 - 직업환경연구: 5건 - 화학물질 연구: 9건 - 산업안전분야 국제학술지 발간: 1식 - 국제협력사업: 301회 - 산업재해통계: 10회/종 / 안전보건환경 실태조사 1식
2025년	- 안전경영정책연구: 13건 - 산업안전연구: 8건 - 직업건강연구: 10건 - 직업환경연구: 6건 - 화학물질 연구: 13건 - 산업안전분야 국제학술지 발간: 1식 - 국제협력사업: 330회 - 산업재해통계: 10회/종 / 안전보건환경 실태조사 1식

연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6년	- 안전보건연구 사업: 46건(진행중) - 산업안전분야 국제학술지 발간: 1식(진행중) - 국제협력사업: 11회(진행중) - 산업재해통계: 6회/종(진행중) / 안전보건환경 실태조사 1식(진행중)

(4-3) 향후(2027년 이후) 기대효과

○ 산업·노동환경 변화에 따른 신규·복합 유해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과학적 연구를 통해 산재예방 정책 및 사업의 근거 제공

○ 현장 문제해결형 연구와 예방기술·기준 개발을 통해 산업현장의 위험요인 개선 및 산재예방 실효성 제고

○ 연구성과의 법·제도 개선, 산재예방사업 및 산업현장 적용을 통해 연구의 정책·현장 활용성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산재예방 성과 창출

○ 국제 정보교류 및 협력사업 등 산업안전보건 국내·외 인프라 구축

○ 안전보건환경 실태조사를 통한 근로환경, 화학적·기계적 유해·위험요인과 이에 대한 관리 실태 파악 등 종합적인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 확보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산업안전보건연구>

o 자체연구

① 익년도 연구과제 공모	② 연구과제 심의· 선정	③ 연구사업계획 수립·시행
다음연도에 추진하고자 하는 연구 대주제를 선정 대주제별 연구과제 세부주제에 대한 공모 추진 (대상 : 국민)	공모된 연구과제 중 심의위원회를 통한 연구과제 선정 (중요도, 추진가능성 등 반영)	선정된 연구과제를 연구사업계획에 수립 및 시행

④ 연구사업 중간 및 최종평가	⑤ 연구결과 수정 보완	⑥ 연구종료 및 활용(발표·배포)
연구사업 진도분석 및 연구방향성 점검 연구결과 최종평가 실시	최종평가 의견을 바탕으로 연구결과를 수정·보완하여 최종보고서 작성	최종 발간된 연구과제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 관련 학계 및 유관기관 배포 학술지 논문 투고 및 학술대회 발표 등을 통해 연구성과 확산

○ 위탁연구

① 익년도 연구과제 공모	② 연구과제 심의·선정	③ 연구사업계획 수립·시행	④ 위탁연구자 공고 및 심의·선정
다음연도에 추진하고자 하는 연구 대주제를 선정	공모된 연구과제 중 심의위원회를 통한 연구과제 선정 (중요도, 추진가능성 등 반영)	선정된 연구과제를 연구사업계획에 수립 및 시행	조달청을 통한 공개경쟁입찰 추진
대주제별 연구과제 세부주제에 대한 공모 추진 (대상 : 국민)			입찰참가업체 평가를 통해 1순위 업체 선정 및 계약 추진
			계약 체결 후 연구 착수

⑤ 연구사업 중간 및 최종평가	⑥ 연구결과 수정 보완	⑦ 연구종료 및 활용(발표·배포)
연구사업 진도분석 및 연구방향성 점검	최종평가 의견을 바탕으로 연구결과를 수정·보완하여 최종보고서 작성	최종 발간된 연구과제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
연구결과 최종평가 실시		관련 학계 및 유관기관 배포
		학술지 논문 투고 및 학술대회 발표 등을 통해 연구성과 확산

<국제협력사업>

○ 국외 안전보건정보 제공 및 교류 활성화

- 해외정보관리-지식·정보 제공

수요조사서 활용	내부기준에 의한 심의	대상자료 선정 결과 통보	지식,정보 생산	지식,정보 제공	수요자 의견수렴	수요자의견 차년도 사업반영
수요조사	심의	자료선정	생산	제공	보급·평가	사후관리

- 해외정보관리-안전보건 활동 전파

협력기관 활용	발간매체별 주제 선정	자료생산, 검토	우편·이메일· 웹사이트 보급	수요자 의견 수렴	차년도 사업반영
자료수집	기획회의	생산, 검토	자료보급	평가	사후관리

<산업재해통계>

○ 산업재해통계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보상자료		재해자 및 사업장 분석코드 부여	재해자 및 사업장 분석코드 부여			
고용노동부 산업재해조사표	발생형태 기인물 분류	재해 중복여부 검토	재해 중복여부 검토			
원천 데이터 수집/확보 (공단)	재해사례 분류 (공단)	잠정 데이터셋 구축(익월) (공단)	확정 데이터셋 구축(익익월) (공단)	통계보고서 검토/보고 (고용노동부)	통계 발표 (분기, 매년) (고용노동부)	
	분류 검증 (매월)	보고서 작성 (매월)	보고서 작성 (매월)	고용노동부, 공단	산업재해 연보 발표 (대국민)	

○ 안전보건환경 실태조사

① 조사설계 (표본설계, TAPI* 개발 등)	② 조사업체 선정 (외부 용역)	③ 조사계획 수립 (표본추출, 조사원 교육, TAPI 적용 등)
표본설계, 설문지 개선, 문항 오류 로직 및 문항 간 관계 등 검토 * 태블릿PC를 활용한 면접조사	조사를 실시할 전문조사기관(용역업체) 선정	표본추출·대체표본 선정 조사원 지침서 개발 및 교육 실시 TAPI 시스템 탑재 및 시범조사를 통한 오류 검토 등

④ 조사실시	⑤ 조사결과발표 및 분석
조사원 방문 조사 실시	1차 분석보고서 및 자료정제 후 결과 발표 2차 분석보고서 등 심층분석 및 연구 결과 발표

<산재예방사업 평가>

○ 사업성과 모니터링

- 현장 작동성 평가

평가계획 수립	위원회 심의·의결	평가수행 및 결과보고서 작성 (현장조사 용역 활용)	과제수행 결과 평가	사업개선 반영(환류)

- 성과달성 모니터링

모니터링 계획 수립	성과 모니터링(분석) 수행 및 리포트 작성 (분기 1회)	모니터링결과 기획조정실 통보 (전략사업부)	사업반영 (상시)

○ 예방사업 심층평가

평가계획 수립	위원회 심의·의결	평가수행 및 환류(안) 작성 (조사, 분석 등 용역 활용)	위원회 심의·의결	평가 결과 사업 반영 (환류)

○ 사업평가 기반강화

기반강화 과제선정	위원회 심의·의결	기반강화 과제수행	과제수행 결과 평가	결과 활용 및 배포

8) 최근 3년간(2024년~2026년)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8-1) 정부 사업평가

구분	연도	주요내용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2026년	○ 결과 : 감액
24회계연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2025년	○ 결과 : 우수(90.35점)

(8-2) 국회 지적사항

구분	연도	주요내용
2026회계연도 예산(안) 기노위 검토보고서	2025년	○ 지적 : 국외출장 사업의 목적과 내용에 맞지 않는 국제협력사업 지양 필요 ○ 조치 : 국외출장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내부 규정 개정 완료('26.3.4.)

(8-3) 감사원, 총리실, 기타(언론, 시민단체 등) 결과: 해당없음

4. 최근 4년간(2023년~2026년) 결산내역

1) 결산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연도	당초 계획액	수정 계획액 (A)	전년도 이월액	기금변경 증감액 등	계획 현액	집행액 (B)	집행률 (B/Ax100)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3년	8,843	8,843	-	-	8,843	8,653	97.9	-	190
2024년	7,984	7,984	-	-	7,984	7,749	97.1	-	235
2025년	7,331	7,331	-	-	7,331	7,009	95.6	-	322
2026년	7,031	7,031	-	-	7,031	4,827	68.7	해당없음	해당없음

2) 연도별 결산 주요사항

연도	유형	금액 (백만원)	사유
2023년	불용	190	산업안전보건연구 연구용역비 낙찰차액 등 수행경비 집행잔액
2024년	불용	235	산업안전보건연구 연구용역비 낙찰차액 및 국제협력사업 수행경비 집행잔액 등
2025년	불용	322	산업안전보건연구 연구용역비 낙찰차액 및 국제협력사업 수행경비 집행잔액 등

5. 기타 추가자료 : 해당없음

사 업 명
(23) 안전보건관리정보시스템 운영(정보화)(4155-351)

1. 사업 총괄 정보

1) 사업 기본 정보

(1-1) 일반 정보

소관	실·국	과·팀	기금	계정
고용노동부	산업안전 예방정책관	산업안전정책과	산업재해보상 보험및예방기금	-

(1-2) 코드·명칭 정보

구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080	08E	4100	4155	351
명칭	사회복지	노동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기반조성	안전보건관리정보 시스템 운영(정보화)

2)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N	Y	N	N	N	N

3)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N	N	Y	N	N	-	-

4) 기능별(내역사업별)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내역사업명	소관	사업시행주체
안전보건관리 정보시스템 운영(정보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예방정책관 산업안전정책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AI·빅데이터 활용 산재예방 지원시스템	고용노동부 산업안전예방정책관 안전보건격차개선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 지출계획 총괄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사업명	2025년 결산액	2026년 당초계획액 (A)	2026년 수정계획액	2027년 요구액	2027년 정부안액 (B)	증감액 (B-A)	증감률 (B-A) /A×100
안전보건관리정보 시스템 운영(정보화)	14,636	9,441	9,441	19,069	12,446	3,005	33.3

1)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계획액 (수정)	2025년 계획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계획액 (수정)	2026년 계획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14,636	14,636	14,635	-	1	9,441	9,441	5,193	12,446
·안전보건관리 정보시스템 운영	14,636	14,636	14,635	-	1	9,441	9,441	5,193	7,967
·AI·빅데이터 활용 산재예방 지원시스템	-	-	-	-	-	-	-	-	4,479

2) 비목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계획액 (수정)	2025년 계획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계획액 (수정)	2026년 계획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14,636	14,636	14,635	-	1	9,441	9,441	5,193	12,446
·사업출연금(350-02)	14,636	14,636	14,635	-	1	9,441	9,441	5,193	12,446

3. 사업 설명

1) 사업목적·내용

(1-1) 안전보건관리정보시스템 운영

사업목적	산업현장의 산재감소를 위한 통합정보망 및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 제고
사업내용	산재예방사업 수행을 위한 전산시스템 유지·운영, 산업안전포털 구축, 민간 재해예방기관 정보연계 및 대국민 정보서비스 제공

(1-2) AI·빅데이터 활용 산재예방 지원시스템

사업목적	AI를 활용한 사업장 맞춤형 정보 제공으로 사업장 자율안전활동을 지원
사업내용	AI·빅데이터를 활용한 고위험사업장 예측·선별하는 모델을 운영하여 과학적·선제적 산재예방사업 체계구축 지원

2) 사업개요

(2-1)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사업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정부의 책무)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1. 산업 안전 및 보건 정책의 수립 및 집행 2. 산업재해 예방 지원 및 지도 3.「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기준 마련, 지도 및 지원 4. 사업주의 자율적인 산업 안전 및 보건 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지원 5.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홍보·교육 등 안전문화 확산 추진 6.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술의 연구·개발 및 시설의 설치·운영 7.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관리 8. 산업 안전 및 보건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및 지도·감독 9. 그 밖에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 및 건강의 보호·증진 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그 밖의 관련 단체 및 연구기관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산업재해 예방의 재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재원(財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에서 지원한다. 1. 제11조 각 호에 따른 시설의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산업재해예방 관련 사업 및 비영리법인에 위탁하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의 사업비 -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 (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보조·지원) ① 정부는 사업주, 사업주단체, 근로자단체,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 연구기관 등이 하는 산업재해 예방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이하 "보조·지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보조·지원이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
추진경위	○ 1996 하반기~1999: 산업안전선진화 3개년 계획(대통령 보고) ○ 2000. 9월: 국무총리실「안전관리종합대책」(국무회의 보고) ○ 2000~2004: 제1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 계획(1999. 12월) ○ 2005~2009: 제2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 계획(2004. 12월)

	○ 2010～2014: 제3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 계획(2010. 3월) ○ 2015～2019: 제4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 계획(2015. 1월) ○ 2020～2024: 제5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 계획(2020. 5월) ○ 2022. 11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 2025. 9월: 노동안전 종합대책(국정과제)

(2-2) 사업규모

○ 사업기간 : '88년~계속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계획액 기준, 기금운용계획변경 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사업비	6,820	18,033	14,636	9,441	12,446

(2-3)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사업 수혜자 : 산재보험가입 사업주 및 근로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기관명	2027년 지원금액 (백만원)	지원 비율(%)	법적근거
안전보건관리 정보시스템운영	출연	한국산업 안전보건공단	7,967	10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 제96조
AI·빅데이터 활용 산재예방 지원시스템	출연	한국산업 안전보건공단	4,479	10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 제96조

3) 기능별(내역사업별) 산출 내역

(3-1) 내역사업별 세부 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계획액(수정)(A)	2027년 정부안액(B)	증감 (B-A)
합 계	9,441	12,446	3,005
안전보건관리 정보시스템 운영	9,441	7,967	△1,474
AI·빅데이터 활용 산재예방 지원시스템(이관)	-	4,479	4,479

○ 안전보건관리정보시스템 운영 (2026년) 9,441 → (2027년) 7,967백만원, △15.6%

- (설명) 산업안전포털 구축 완료에 따른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유지·운영 용역 예산 반영 등에 따라 전년 대비 15.6% 감액

- (산출)

  * 정보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 ('26년) 3,285 → ('27년) 2,418백만원(△867백만원)
  * 정보시스템 운영: ('26년) 5,414 → ('27년) 4,807백만원(△607백만원)
  *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26년) 742 → ('27년) 742백만원(전년 동)

○ AI·빅데이터 활용 산재예방 지원시스템 (2026년) - → (2027년) 4,479백만원, 순증(이관)

- (설명) 공단이 보유한 산재예방 데이터와 AI 사업 경험을 기반으로 공단 직원과 사업장이 필요한 안전보건 정보를 한 곳에서 활용할 수 있는「산업안전 AI 어시스턴트」신규 구축

※ 정보화 사업 개편에 따라 업종별재해예방(4152-350) 內 내내역사업에서 이동 편성(이관)

- (산출)

  * AI·빅데이터 활용 산재예방 지원시스템: ('26년) - → ('27년) 664백만원(1식×664백만원)(순증, 이관)
  * 산업안전 AI 어시스턴트 구축: ('26년) - → ('27년) 3,815백만원(1식×3,815백만원)(순증)

4) 사업효과

(4-1) 최근 5년(2023년~2027년)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 **성과지표: 산재예방정보시스템 장애발생시간(하향지표)(세부사업지표)**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목표	신규	신규	신규	신규	14.66시간
실적	-	-	-	-	해당없음
달성도	-	-	-	-	해당없음

- **측정산식** : 산재예방정보시스템 총 장애발생시간의 합계 = ∑(1.0×A · B급 장애 발생 시간+0.5×C급 장애 발생 시간)
- **측정방법 및 목표치 설정근거** : 중단 없는 시스템 운영을 위해 작년 실적치인 15.43에 5% 감소율을 적용하여 목표 설정
- **자료수집방법/출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자료

○ **성과지표: 지원사업장 사고사망만인율(‰)(하향지표)(프로그램 지표)**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목표	0.54‰	0.50‰	0.45‰	0.42‰	삭제
실적	0.51‰	0.48‰	0.42‰	해당없음	-
달성도	105.9%	104.0%	106.7%	해당없음	-

- **측정산식** : 지원사업장의 사망사고 예방 실적(%)=(A-B)/A×100
  · A : 공단 지원사업장* 사고사망만인율(‰)
  * 재해발생사업장(중대재해조사 및 감독 대상 사업장 등) 지원 실적은 제외
  · B : 전체 사고사망만인율(‰)
- **측정방법 및 목표치 설정근거**
  · 목표치 설정 근거 :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따라 전체 사업장의 사고사망만인율 감소 목표 비율*을 준용**하여 목표치 설정
  * ('26) 0.37 → ('27) 0.35 → ('28) 0.33 → ('29) 0.31 → ('30) 0.29
  ** 종합대책 목표치의 전년대비 감소율을 성과지표 목표치에 적용
- **자료수집방법/출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성과지표: 중상해사고재해율(%)(하향지표)**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목표	0.084%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실적	0.082%	-	-	-	-
달성도	102.4%	-	-	-	-

- **측정산식** : 1프로그램 1성과 지표 원칙에 따른 지표 삭제
- **측정방법 및 목표치 설정근거** : 1프로그램 1성과 지표 원칙에 따른 지표 삭제
- **자료수집방법/출처** : 1프로그램 1성과 지표 원칙에 따른 지표 삭제

○ 성과지표: 50인 미만 사업장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연계율(%)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목표	79.8%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실적	71.2%	-	-	-	-
달성도	89.2%	-	-	-	-

- **측정산식** : 1프로그램 1성과 지표 원칙에 따른 지표 삭제
- **측정방법 및 목표치 설정근거** : 1프로그램 1성과 지표 원칙에 따른 지표 삭제
- **자료수집방법/출처** : 1프로그램 1성과 지표 원칙에 따른 지표 삭제

(4-2) 성과지표 이외의 최근 4년(2023년~2026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연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3년	안전보건관리정보시스템운영 12식
2024년	안전보건관리정보시스템운영 12식
2025년	안전보건관리정보시스템운영 12식
2026년	안전보건관리정보시스템운영 12식(진행중)

(4-3) 향후(2027년 이후)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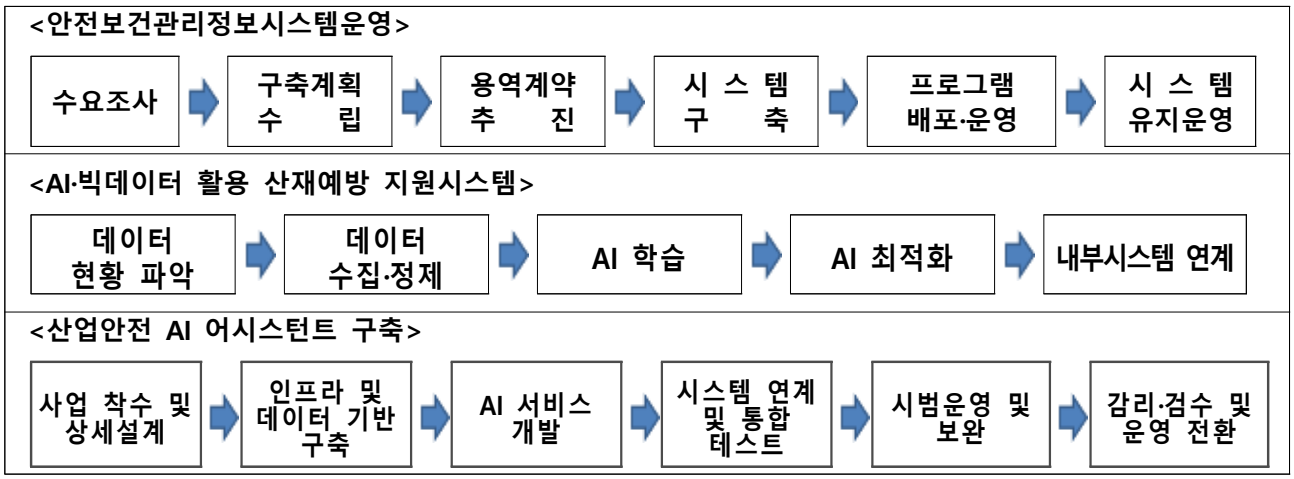
○ 산재예방사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최신 안전보건 정보를 사업장 및 안전보건관계자 등에게 제공하여 산재예방업무 지원

○ 예방사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업장의 위험요인을 분석하는 산업안전 데이터 및 AI 기술 기반 지능형 업무 환경 구현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8) 최근 3년간(2024년~2026년)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8-1) 정부 사업평가

구분	연도	주요내용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2026년	○ 결과 : 감액
24회계연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2025년	○ 결과 : 우수(91.9점)

(8-2) 국회 지적사항: 해당없음

(8-3) 감사원, 총리실, 기타(언론, 시민단체 등) 결과: 해당없음

4. 최근 4년간(2023년~2026년) 결산내역

1) 결산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연도	당초 계획액	수정 계획액 (A)	전년도 이월액	기금변경 증감액 등	계획 현액	집행액 (B)	집행률 (B/Ax100)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3년	6,820	6,820	-	-	6,820	6,817	100.0	-	3
2024년	18,033	18,033	-	-	18,033	18,015	99.9	-	18
2025년	14,636	14,636	-	-	14,636	14,635	100.0	-	1
2026년	9,441	9,441	-	-	9,441	5,193	55.0	해당없음	해당없음

2) 연도별 결산 주요사항

연도	유형	금액 (백만원)	사유
2023년	불용	3	정보시스템 고도화 용역 낙찰차액 등 사업수행경비 집행잔액
2024년	불용	18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낙찰차액 등 사업수행경비 집행잔액
2025년	불용	1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낙찰차액 등 사업수행경비 집행잔액

5. 기타 추가자료 : 해당없음

사 업 명
(24) 미래환경변화대응 산업안전보건 연구개발(R&D)(4155-361)

1. 사업 총괄 정보

1) 사업 기본 정보

(1-1) 일반 정보

소관	실·국	과·팀	기금	계정
고용노동부	산업안전 예방정책관	산업안전정책과	산업재해보상 보험및예방기금	-

(1-2) 코드·명칭 정보

구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080	08E	4100	4155	361
명칭	사회복지	노동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기반조성	미래환경변화대응 산업안전보건 연구개발(R&D)

2)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N	Y	N	N	N	N

3)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N	N	Y	N	N	-	-

4) 기능별(내역사업별)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내역사업명	소관	사업시행주체
데이터 관리·운영체계 고도화 및 통합 플랫폼 구축	고용노동부 산업안전예방정책관 산업안전정책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 지출계획 총괄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사업명	2025년 결산액	2026년 당초계획액 (A)	2026년 수정계획액	2027년 요구액	2027년 정부안액 (B)	증감액 (B-A)	증감률 (B-A) /A×100
미래환경변화대응 산업안전보건 연구개발(R&D)	-	1,554	1,554	2,072	2,072	518	33.3

1)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계획액 (수정)	2025년 계획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계획액 (수정)	2026년 계획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	-	-	-	-	1,554	1,554	1,535	2,072
·데이터 관리·운영체계 고도화 및 통합 플랫폼 구축	-	-	-	-	-	1,554	1,554	1,535	2,072

2) 비목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계획액 (수정)	2025년 계획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계획액 (수정)	2026년 계획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	-	-	-	-	1,554	1,554	1,535	2,072
·연구개발연구활동비등 (360-05)	-	-	-	-	-	1,500	1,500	1,500	2,000
·연구개발기획평가관리비 (360-06)	-	-	-	-	-	54	54	35	72

3. 사업 설명

1) 사업목적·내용

(1-1) 데이터 관리·운영체계 고도화 및 통합 플랫폼 구축

사업목적	산업안전보건 데이터의 산업적, 기술적, 정책적 활용도를 높이고, 산재예방 기술·제품 개발의 활성화 유도 및 산재 예방 활동의 과학적 근거 강화
사업내용	산업안전보건 데이터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데이터 관리·운영체계를 고도화하고, 오픈 플랫폼을 통해 주요 산업안전보건 데이터 제공

2) 사업개요

(2-1)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사업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정부의 책무)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1. 산업 안전 및 보건 정책의 수립 및 집행 2. 산업재해 예방 지원 및 지도 3.「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기준 마련, 지도 및 지원 4. 사업주의 자율적인 산업 안전 및 보건 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지원 5.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홍보·교육 등 안전문화 확산 추진 6.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술의 연구·개발 및 시설의 설치·운영 7.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관리 8. 산업 안전 및 보건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및 지도·감독 9. 그 밖에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 및 건강의 보호·증진 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그 밖의 관련 단체 및 연구기관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조(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책 마련)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지원 및 지도를 위하여 산업재해 예방기법의 연구 및 보급, 안전·보건 기술의 지원 및 교육에 관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① 정부는 중대재해를 예방하여 시민과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중대재해의 종합적인 예방대책의 수립·시행과 발생원인 분석 2. 사업주, 법인 및 기관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 3. 사업주, 법인 및 기관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 지원 및 지도 4.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의 시행 ② 정부는 사업주, 법인 및 기관에 대하여 유해·위험 시설의 개선과 보호 장비의 구매, 종사자 건강진단 및 관리 등 중대재해 예방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추진경위	○ 2025. 9월: 노동안전 종합대책(국정과제)

(2-2) 사업규모

○ 사업기간 : ‘26년~계속

○ 총사업비 : (’26~‘29) 7,770백만원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계획액 기준, 기금운용계획변경 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사업비	-	-	-	1,554	2,072

(2-3)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사업 수혜자 : 산재보험가입 사업주 및 근로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기관명	2027년 지원금액 (백만원)	지원 비율(%)	법적근거
데이터 관리·운영체계 고도화 및 통합 플랫폼 구축	출연	한국산업 안전보건공단	2,072	10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 제96조

3) 기능별(내역사업별) 산출 내역

(3-1) 내역사업별 세부 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계획액(수정)(A)	2027년 정부안액(B)	증감 (B-A)
합 계	1,554	2,072	518
데이터 관리·운영체계 고도화 및 통합 플랫폼 구축	1,554	2,072	518

○ 데이터 관리·운영체계 고도화 및 통합 플랫폼 구축 **(2026년) 1,554 → (2027년) 2,072백만원, +33.3%**

- (설명) 데이터 기반의 산재예방 과학화 및 미래 환경변화에 따른 산재 취약 근로자 보호를 위한 산재예방 체계 구축과 기술개발 연구를 통해 안전보건 수준을 향상을 위한 2차년도 과제 수행

- (산출) 연구개발비 2,000백만원(1식×2,000백만원)(+500백만원)
  기획평가관리비 72백만원(1식×72백만원)(+18백만원)

4) 사업효과

(4-1) 최근 5년(2023년~2027년)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 성과지표: 산업안전보건 통합 데이터셋 구축(상향지표)(세부사업지표)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목표	신규	신규	신규	신규	15종
실적	-	-	-	-	해당없음
달성도	-	-	-	-	해당없음

- **측정산식 :** (구축 완료 종수 ÷ 목표 종수) × 100 * 연차별 누적실적으로 평가
- **측정방법 및 목표치 설정근거 :** 제안요구사항(AI 학습용 데이터셋 50종 이상 구축)에 근거하여, 연차별 단계 상향 원칙에 따라 1단계 목표를 누적 15종 이상으로 설정함
- **자료수집방법/출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자료

(4-2) 성과지표 이외의 최근 4년(2023년~2026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연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3년	해당없음
2024년	해당없음
2025년	해당없음
2026년	데이터 관리·운영체계 고도화 및 통합 플랫폼 구축 : 1식(진행중)

(4-3) 향후(2027년 이후) 기대효과

○ 고유데이터 인프라 구축과 첨단기술을 통한 자동화 시스템 개발을 통해 산재예방 정책 및 제도 추진의 과학적 근거를 제공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단위: 백만원)

사업기간	2023년 까지 기투자액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이후 투자계획	합계
2026년~2029년	-	-	-	1,554	2,072	4,144	7,770

7) 사업 집행절차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연구개발사업 추진 계획 예고	고용노동부	· 연구개발 사업 추진 계획 공고
⇩		
② 사업공고	전담기관 (안전보건공단)	· 전략 및 세부 과제별 요구사항 공지
⇩		
③ 과제 신청·접수	전담기관 (안전보건공단)	· 부처 및 공단 매체를 통해 과제 홍보·접수
⇩		
④ 연구과제선정	선정위원회	· 부처 및 공단 포함
⇩		
⑤ 협약체결 및 연구 개발비 지원	전담기관 (안전보건공단)	· 전담기관과 참여기관 협약체결 및 연구개발 선금 지급
⇩		
⑥ 사업수행·관리	참여기관	· 연구수행에 따른 보안준수 여부 및 연구윤리 이행 실태 수시 관리
⇩		
⑦ 진도점검 및 보고 (중간평가)	평가위원회	· 과제추진 적정성 검토 등 월별 추적관리
⇩		
⑧ 최종점검·최종평가	평가위원회	· 관련 학계·산업군 등 전문가로 구성하여 현장적용성 및 활용성 평가
⇩		
⑨ 사업비 정산	전담기관 (안전보건공단)	· 추진내용 적정성 판단에 따라 연구개발 사업비 지급
⇩		
⑩ 성과활용 및 사후관리	전담기관 (안전보건공단)	· 공단 재정지원사업을 통한 연계 검토 및 연구개발 결과 홍보, 특허 등 추적관리

8) 최근 3년간(2024년~2026년)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8-1) 정부 사업평가: 해당없음

(8-2) 국회 지적사항

구분	연도	주요내용
국정감사	2025년	○ 지적 : 현장 사고 데이터를 통합관리하고 기술 지침을 만드는 컨트롤타워 설립 및 산업안전 R&D 구축 필요 ○ 조치 : '26년도 연구개발(R&D) 예산 1,554백만원 확보
2024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	2025년	○ 지적 :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 효과성 분석을 통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필요 ○ 조치 : 산재예방 R&D 추진을 통해 제도개선 방안 마련 예정
국정감사	2024년	○ 지적 :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 안전 관련 국가 R&D 필요 ○ 조치 : 과기부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기획 승인을 위해 동 예산안 제출

(8-3) 감사원, 총리실, 기타(언론, 시민단체 등) 결과: 해당없음

4. 최근 4년간(2023년~2026년) 결산내역

1) 결산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연도	당초 계획액	수정 계획액 (A)	전년도 이월액	기금변경 증감액 등	계획 현액	집행액 (B)	집행률 (B/Ax100)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3년	-	-	-	-	-	-	-	-	-
2024년	-	-	-	-	-	-	-	-	-
2025년	-	-	-	-	-	-	-	-	-
2026년	1,554	1,554	-	-	1,554	1,535	98.8	해당없음	해당없음

2) 연도별 결산 주요사항: 해당사항 없음('26년 신규사업)

5. 기타 추가자료 : 해당없음

사 업 명
(25) 근로자 보호 기술개발 및 사업장 안전 실증(R&D)(4155-362)

1. 사업 총괄 정보

1) 사업 기본 정보

(1-1) 일반 정보

소관	실·국	과·팀	기금	계정
고용노동부	산업안전 예방정책관	산업안전정책과	산업재해보상 보험및예방기금	-

(1-2) 코드·명칭 정보

구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080	08E	4100	4155	362
명칭	사회복지	노동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기반조성	근로자 보호 기술개발 및 사업장 안전 실증(R&D)

2)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Y	N	N	N	N	N

3)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N	N	Y	N	N	-	-

4) 기능별(내역사업별)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내역사업명	소관	사업시행주체
지능형 로봇 안전인증 기준 개발 및 실증	고용노동부 산업안전예방정책관 산업안전정책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 지출계획 총괄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사업명	2025년 결산액	2026년 당초계획액 (A)	2026년 수정계획액	2027년 요구액	2027년 정부안액 (B)	증감액 (B-A)	증감률 (B-A) /A×100
근로자 보호 기술개발 및 사업장 안전실증(R&D)	-	-	-	2,000	2,000	2,000	순증

1)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계획액 (수정)	2025년 계획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계획액 (수정)	2026년 계획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	-	-	-	-	-	-	-	2,000
·지능형 로봇 안전인증 기준 개발 및 실증	-	-	-	-	-	-	-	-	2,000

2) 비목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계획액 (수정)	2025년 계획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계획액 (수정)	2026년 계획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	-	-	-	-	-	-	-	2,000
·연구개발연구활동비등 (360-05)	-	-	-	-	-	-	-	-	2,000

3. 사업 설명

1) 사업목적·내용

(1-1) 지능형 로봇 안전인증 기준 개발 및 실증

사업목적	신기술 도입에 따른 새로운 위험을 예방하고 근로자 안전에 대한 신뢰성 확보
사업내용	지능형 로봇 등 AI 기반 생산설비의 도입을 대비하여 국내 사업장 특성을 고려한 안전인증(KCs) 기준의 개발·실증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여 현장 중심 안전관리 강화

2) 사업개요

(2-1)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사업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정부의 책무)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1. 산업 안전 및 보건 정책의 수립 및 집행 2. 산업재해 예방 지원 및 지도 3.「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기준 마련, 지도 및 지원 4. 사업주의 자율적인 산업 안전 및 보건 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지원 5.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홍보·교육 등 안전문화 확산 추진 6.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술의 연구·개발 및 시설의 설치·운영 7.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관리 8. 산업 안전 및 보건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및 지도·감독 9. 그 밖에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 및 건강의 보호·증진 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그 밖의 관련 단체 및 연구기관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조(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책 마련)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지원 및 지도를 위하여 산업재해 예방기법의 연구 및 보급, 안전·보건 기술의 지원 및 교육에 관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추진경위	○ 2025. 9월: 노동안전 종합대책(국정과제)

(2-2) 사업규모

○ 사업기간 : ‘27년~계속

○ 총사업비 : (’27~‘30년) 8,216백만원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계획액 기준, 기금운용계획변경 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사업비	-	-	-	-	2,000

(2-3)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사업 수혜자 : 산재보험가입 사업주 및 근로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기관명	2027년 지원금액 (백만원)	지원 비율(%)	법적근거
지능형 로봇 안전인증 기준 개발 및 실증	출연	한국산업 안전보건공단	2,000	10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 제96조

3) 기능별(내역사업별) 산출 내역

(3-1) 내역사업별 세부 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계획액(수정)(A)	2027년 정부안액(B)	증감 (B-A)
합 계	-	2,000	2,000
지능형 로봇 안전인증 기준 개발 및 실증	-	2,000	2,000

○ 지능형 로봇 안전인증 기준 개발 및 실증 **(2026년) - → (2027년) 2,000백만원, 순증**

- (설명) 국가 중점전략과제인 피지컬 AI·지능형 로봇 등 AI 기반 생산설비의 사업장 도입을 대비하여 신기술에 대한 안전보건 기준을 개발 및 법제화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신규 R&D 사업 추진
- (산출) 연구개발비 2,000백만원(1식×2,000백만원)(순증)

4) 사업효과

(4-1) 최근 5년(2023년~2027년)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해당없음

(4-2) 성과지표 이외의 최근 4년(2023년~2026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해당없음

(4-3) 향후(2027년 이후) 기대효과

○ AI 등 지능형 생산설비에 대한 안전인증 기준 마련 및 안전실증을 통해 신기술의 현장 도입에서 발생가능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신기술 도입에 따른 근로자 안전에 대한 신뢰성 확보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단위: 백만원)

사업기간	2023년까지 기투자액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이후 투자계획	합계
2027년~2030년	-	-	-	-	2,000	6,216	8,216

7) 사업 집행절차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연구개발사업 추진 계획 예고	고용노동부	· 연구개발 사업 추진 계획 공고
⇩		
② 사업공고	전담기관 (안전보건공단)	· 전략 및 세부 과제별 요구사항 공지
⇩		
③ 과제 신청·접수	전담기관 (안전보건공단)	· 부처 및 공단 매체를 통해 과제 홍보·접수
⇩		
④ 연구과제선정	선정위원회	· 부처 및 공단 포함
⇩		
⑤ 협약체결 및 연구 개발비 지원	전담기관 (안전보건공단)	· 전담기관과 참여기관 협약체결 및 연구개발 선금 지급
⇩		
⑥ 사업수행·관리	참여기관	· 연구수행에 따른 보안준수 여부 및 연구윤리 이행 실태 수시 관리
⇩		
⑦ 진도점검 및 보고 (중간평가)	평가위원회	· 과제추진 적정성 검토 등 월별 추적관리
⇩		
⑧ 최종점검·최종평가	평가위원회	· 관련 학계·산업군 등 전문가로 구성하여 현장적용성 및 활용성 평가
⇩		
⑨ 사업비 정산	전담기관 (안전보건공단)	· 추진내용 적정성 판단에 따라 연구개발 사업비 지급
⇩		
⑩ 성과활용 및 사후관리	전담기관 (안전보건공단)	· 공단 재정지원사업을 통한 연계 검토 및 연구개발 결과 홍보, 특허 등 추적관리

8) 최근 3년간(2024년~2026년)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해당없음

4. 최근 4년간(2023년~2026년) 결산내역 : 해당없음('27년 신규사업)

5. 기타 추가자료 : 해당없음

사 업 명
(26) 기금관리비 인건비(7084-101)

1. 사업 총괄 정보

1) 사업 기본 정보

(1-1) 일반 정보

소관	실·국	과·팀	기금	계정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산재보상정책과	산업재해보상 보험및예방기금	-

(1-2) 코드·명칭 정보

구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080	08E	7000	7084	101
명칭	사회복지	노동	고용노동행정지원	산재보험예방 기금운영비	기금관리비 인건비

2)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N	Y	N	N	N	N

3)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Y	N	N	N	N	-	-

4) 기능별(내역사업별)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내역사업명	소관	사업시행주체
기금관리비 인건비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고용노동부

2. 지출계획 총괄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사업명	2025년 결산액	2026년 당초계획액 (A)	2026년 수정계획액	2027년 요구액	2027년 정부안액 (B)	증감액 (B-A)	증감률 (B-A) /A×100
기금관리비 인건비	136	159	159	173	173	14	8.8

1)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계획액 (수정)	2025년 계획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계획액 (수정)	2026년 계획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144	144	136	-	8	159	159	79	173
기금관리비 인건비	144	144	136	-	8	159	159	79	173

2) 비목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계획액 (수정)	2025년 계획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계획액 (수정)	2026년 계획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144	144	136	-	8	159	159	79	173
·상용임금(110-03)	121	121	121	-	-	133	133	70	143
·고용부담금(320-09)	23	23	15	-	8	26	26	9	30

3. 사업 설명

1) 사업목적·내용

(1-1) 근로복지공단 인건비

사업목적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의 기금관리 보조업무 지원
사업내용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의 기금관리 보조업무 지원

2) 사업개요

(2-1)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사업근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69조(기금관리 보조요원)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기금의 회계기관을 보조하는 기금관리요원을 둘 수 있다.
추진경위	○ 사업시작연도 : ’95년 ○ 추진 배경 : 기금관리원 채용하여 기금의 효율적·전문적 관리 지원

(2-2) 사업규모

○ 사업기간 : 계속‘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계획액 기준, 기금운용계획변경 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사업비	136	144	144	159	173

(2-3)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3) 기능별(내역사업별) 산출 내역

(3-1) 내역사업별 세부 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계획액(수정)(A)	2027년 정부안액(B)	증감 (B-A)
합 계	159	173	14
기금관리비 인건비	159	173	14

○ 기금관리비 인건비

- (2026년) 159 → (2027년) 173백만원(증 14백만원, +8.8%)
- 인건비 143백만원 및 고용부담금 30백만원

4) 사업효과

(4-1) 최근 5년(2023년~2027년)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해당없음

(4-2) 성과지표 이외의 최근 4년(2023년~2026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해당없음

(4-3) 향후(2027년 이후) 기대효과:

○ 산재기금의 적정한 집행과 관리의 효율화 도모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기금관리원 고용 계속 → 근로제공 → 예산 및 자금 배정 → 임금 등 지급

8) 최근 3년간(2024년~2026년)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8-1) 정부 사업평가: 해당없음

(8-2) 국회 지적사항: 해당없음

(8-3) 감사원, 총리실, 기타(언론, 시민단체 등) 결과: 해당없음

4. 최근 4년간(2023년~2026년) 결산내역

1) 결산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연도	당초 계획액	수정 계획액 (A)	전년도 이월액	기금변경 증감액 등	계획 현액	집행액 (B)	집행률 (B/Ax100)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3년	136	136	-	-	136	125	91.9	-	-
2024년	144	144	-	-	144	128	88.9	-	-
2025년	144	144	-	-	144	136	94.4	-	-
2026년	159	159	-	-	159	79	49.7	-	-

2) 연도별 결산 주요사항: 해당없음

5. 기타 추가자료: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27) 산재보험운영 인건비(7084-102)

1. 사업 총괄 정보

1) 사업 기본 정보

(1-1) 일반 정보

소관	실·국	과·팀	기금	계정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	사무국	산업재해보상 보험및예방기금	-

(1-2) 코드·명칭 정보

구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080	08E	7000	7084	102
명칭	사회복지	노동	고용노동행정지원	산재보험예방 기금운영비	산재보험운영 인건비

2)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N	Y	N	N	N	N

3)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Y	N	N	N	N	-	-

4) 기능별(내역사업별)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내역사업명	소관	사업시행주체
산재보험운영 인건비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고용노동부

2. 지출계획 총괄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사업명	2025년 결산액	2026년 당초계획액 (A)	2026년 수정계획액	2027년 요구액	2027년 정부안액 (B)	증감액 (B-A)	증감률 (B-A) /A×100
기금관리비 인건비	181	197	197	855	222	25	12.6

1)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계획액 (수정)	2025년 계획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계획액 (수정)	2026년 계획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181	181	181	-	-	197	197	112	222
산재보험운영 인건비	181	181	181	-	-	197	197	112	111

2) 비목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계획액 (수정)	2025년 계획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계획액 (수정)	2026년 계획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181	181	181	-	-	197	197	112	222
·상용임금(110-03)	151	146	146	-	-	164	164	93	183
·고용부담금(320-09)	30	35	35	-	-	32	32	19	38

3. 사업 설명

1) 사업목적·내용

(1-1) 근로복지공단 인건비

사업목적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재결서 정리 등 업무를 보조하는 사무원의 인건비 지급
사업내용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재결서 정리 등 업무를 보조하는 사무원의 인건비 지급

2) 사업개요

(2-1)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사업근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6조 제1항 제8호
추진경위	○ 사업시작연도 : '95년 ○ 추진 배경 :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타직 채용 등

(2-2) 사업규모

○ 사업기간 : 계속'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계획액 기준, 기금운용계획변경 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사업비	762	181	181	197	222

(2-3)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3) 기능별(내역사업별) 산출 내역

(3-1) 내역사업별 세부 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계획액(수정)(A)	2027년 정부안액(B)	증감 (B-A)
합 계	197	222	25
기금관리비 인건비	197	222	25

○ 기금관리비 인건비

- (2026년) 197 → (2027년) 222백만원(증 25백만원, +12.6%)
- 인건비 183백만원 및 고용부담금 38백만원

4) 사업효과

(4-1) 최근 5년(2023년~2027년)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해당없음

(4-2) 성과지표 이외의 최근 4년(2023년~2026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해당없음

(4-3) 향후(2027년 이후) 기대효과:

○ 산재근로자의 재심사건의 효율화 도모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재결서 및 결정서 정리요원 및 조사연구원 고용 계속 → 근로제공 → 예산 및 자금배정 → 임금 등 지급

8) 최근 3년간(2024년~2026년)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8-1) 정부 사업평가: 해당없음

(8-2) 국회 지적사항: 해당없음

(8-3) 감사원, 총리실, 기타(언론, 시민단체 등) 결과: 해당없음

4. 최근 4년간(2023년~2026년) 결산내역

1) 결산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연도	당초 계획액	수정 계획액 (A)	전년도 이월액	기금변경 증감액 등	계획 현액	집행액 (B)	집행률 (B/Ax100)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3년	762	762	-	-	762	509	66.8	-	253
2024년	181	181	-	-	181	141	77.9	-	40
2025년	181	181	-	-	181	181	100	-	-
2026년	197	197	-	-	197	112	56.8	-	-

2) 연도별 결산 주요사항:

2023	- 불용 사유 : 기간제(심사지원관) 채용일정 지연 및 심사지원관, 조사연구원 중도퇴직
2024	- 불용 사유 : 집행 잔액

5. 기타 추가자료: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28) 산재예방운영 인건비(7084-103)

1. 사업 총괄 정보

1) 사업 기본 정보

(1-1) 일반 정보

소관	실·국	과·팀	기금	계정
고용노동부	산업안전예방정책관	산업안전정책과	산업재해보상보험 및예방기금	-

(1-2) 코드·명칭 정보

구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080	08E	7000	7084	103
명칭	사회복지	노동	고용노동행정지원	산재보험및예방기금운영비	산재예방운영 인건비

2)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N	Y	N	N	N	N

3)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Y	N	N	N	N	-	-

4) 기능별(내역사업별)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내역사업 없음

내역사업명	소관	사업시행주체
산재예방운영 인건비	고용노동부, 산업안전정책과	고용노동부

2. 예산 총괄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사업명	2025년 결산액	2026년 본예산액 (A)	2026년 추경 예산액	2027년 요구액	2027년 정부안액 (B)	증감액 (B-A)	증감률 (B-A) /A×100
산재예방운영 인건비	2,306	2,686	2,686	3,191	3,191	505	18.8

1)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예산액 (추경)	2025년 예산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예산액 (추경)	2026년 예산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2,467 (2,467)	2,467	2,306 (2,306)	-	161	2,686	2,686	1,337 (1,337)	3,191
・산재예방운영 인건비	2,467 (2,467)	2,467	2,306 (2,306)	-	161	2,686	2,686	1,337 (1,337)	3,191

2) 비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예산액 (추경)	2025년 예산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예산액 (추경)	2026년 예산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2,467 (2,467)	2,467	2,306 (2,306)	-	161	2,686	2,686	1,337 (1,337)	3,191
・상용임금(110-03)	2,064 (2,054)	2,054	1,893 (1,893)	-	160	2,242	2,242	1,204 (1,204)	2,632
・고용부담금(320-09)	403 (403)	413	413 (413)	-	1	444	444	133 (133)	559

3. 사업 설명

1) 사업목적·내용

(1-1) 기본경비(산업안전보건본부, 총액)

사업목적	본부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 전문위원(조사・연구위원 11명)과 지방관서 사무원(48명)의 보수(법정수당), 사회 보험료, 퇴직금 등 지급
사업내용	본부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 전문위원(조사・연구위원 11명)과 지방관서 사무원(48명)의 보수(법정수당), 사회 보험료, 퇴직금 등 지급

2) 사업개요

(2-1)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사업근거	○ 법령상 근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6조(기금의 용도)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산업재해 예방의 재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6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보험급여의 지급 및 반환금의 반환 2. 차입금 및 이자의 상환 3. 공단에의 출연 4.「산업안전보건법」제12조에 따른 용도 5. 재해근로자의 복지 증진 6.「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대한 출연 7. 보험료징수법 제4조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의 출연 8. 그 밖에 보험사업 및 기금의 관리와 운용 - 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산업재해 예방의 재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재원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95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에서 지원한다. 1. 제11조 각 호에 따른 시설의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산업재해 예방 관련 사업 및 비영리법인에 위탁하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의 사업비
추진경위	○ 사업 시작 연도 : 1995년 ○ 추진 배경 : 산업재해예방 업무 지원을 위한 본부 전문위원(조사·연구위원) 및 지방관서 사무원의 인건비 지원

(2-2) 사업규모

○ 사업기간 : 1995년 ~ 계속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 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정부안
사업비	2,325	2,457	2,467	2,686	3,191

(2-3)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3) 기능별(내역사업별) 산출 내역

(3-1) 내역사업별 세부 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예산액(추경)(A)	2027년 정부안액(B)	증감 (B-A)
합 계	2,686	3,191	505

○ 산재예방운영 인건비

- ('26계획) 2,686백만원 → ('27계획안) 3,191백만원(증 505백만원, 18.8%)

① 인건비 ('26계획) 2,243 → ('27계획안) 2,632백만원(증 389백만원, 17.3%)

② 민간이전 ('26계획) 443 → ('26계획안) 559백만원(증 116백만원, 26.2%)

4) 사업효과

(4-1) 최근 5년(2023년~2027년)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해당없음

(4-2) 성과지표 이외의 최근 4년(2023년~2026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해당없음

(4-3) 향후(2027년 이후) 기대효과: 산업재해예방 사업의 원활한 운영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예산배정	⇨	산업재해예방 사업 수행	⇨	자금배정	⇨	집행

8) 최근 3년간(2024년~2026년)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8-1) 정부 사업평가: 해당없음

(8-2) 국회 지적사항: 해당없음

(8-3) 감사원, 총리실, 기타(언론, 시민단체 등) 결과: 해당없음

4. 최근 4년간(2023년~2026년) 결산내역

1) 결산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연도	본예산액	추경 예산액(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비비액 등	예산 현액	집행액 (B)	집행률 (B/Ax100)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3년	2,325	2,325		-	2,325	2,089	89.8	-	236
2024년	2,457	2,457		-	2,457	2,100	85.5	-	357
2025년	2,467	2,467		-	2,467	2,306	93.5	-	161
2026년	2,686	2,686		-	2,686	1,337	49.8	해당없음	해당없음

2) 연도별 결산 주요사항

연도	유형	금액 (백만원)	사유
2023년	불용	236	- 불용 사유 : 중도 퇴사, 육아휴직 및 시간선택제 근무 등에 따른 상용임금 및 고용부담금 집행 잔액 발생
2024년	불용	357	- 불용 사유 : 장애직 채용 공백, 중도 퇴사, 육아휴직 및 시간선택제 근무 등에 따른 상용임금 및 고용부담금 집행 잔액 발생
2025년	불용	161	- 불용 사유 : 전문위원(장애직) 미응시로 인한 채용공백, 전문위원 및 사무원의 중도 퇴사, 육아휴직 및 시간선택제 근무 등에 따른 상용임금 및 고용부담금 집행 잔액 발생
2026년			- 정상 추진 중

5. 기타 추가자료: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29) 근로복지공단 인건비(7084-104)

1. 사업 총괄 정보

1) 사업 기본 정보

(1-1) 일반 정보

소관	실·국	과·팀	기금	계정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산재보상정책과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

(1-2) 코드·명칭 정보

구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080	08E	7000	7084	104
명칭	사회복지	노동	고용노동행정지원	산재보험예방기금운영비	근로복지공단 인건비

2)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N	Y	N	N	N	N

3)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N	N	Y	N	N	-	-

4) 기능별(내역사업별)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내역사업명	소관	사업시행주체
근로복지공단 인건비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근로복지공단

2. 지출계획 총괄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사업명	2025년 결산액	2026년 당초계획액 (A)	2026년 수정계획액	2027년 요구액	2027년 정부안액 (B)	증감액 (B-A)	증감률 (B-A) /A×100
근로복지공단 인건비	218,708	227,223	227,223	245,466	245,466	18,243	8.0

1)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계획액 (수정)	2025년 계획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계획액 (수정)	2026년 계획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218,708	218,708	218,708	-	-	227,223	227,223	127,659	245,466
·근로복지공단 인건비	218,708	218,708	218,708	-	-	227,223	227,223	127,659	245,466

2) 비목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계획액 (수정)	2025년 계획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계획액 (수정)	2026년 계획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218,708	218,708	218,708	-	-	227,223	227,223	127,659	245,466
·기관운영출연금(350-01)	218,708	218,708	218,708	-	-	227,223	227,223	127,659	245,466

3. 사업 설명

1) 사업목적·내용

(1-1) 근로복지공단 인건비

사업목적	산재보험 가입 및 보험료 산정, 부과업무의 원활한 수행
사업내용	산재보험법에 의한 산재보험 적용·부과 및 보상, 재활사업을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함에 따른 공단 직원 인건비 지원

2) 사업개요

(2-1)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사업근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6조(기금의 용도) - 제96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보험급여의 지급 및 반환금의 반환 2. 차입금 및 이자의 상환 3. 공단에의 출연 4. 「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의3에 따른 용도 5. 재해근로자의 복지 증진 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라한다)에 대한 출연 7. 보험료징수법 제4조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의 출연 8. 그 밖에 보험사업 및 기금의 관리와 운용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금지출예산 총액의 100분의 8 이상을 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용도로 계상하여야 한다.
추진경위	○ 사업시작연도 : '95년

(2-2) 사업규모

○ 사업기간 : 계속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계획액 기준, 기금운용계획변경 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사업비	204,371	211,083	217,951	227,223	245,466

(2-3)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근로복지공단

○ 사업 수혜자 : 근로복지공단 임직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기관명	2027년 지원금액 (백만원)	지원 비율(%)	법적근거
근로복지공단 인건비	출연	근로복지공단	245,466	100.0	고용보험법 제80조 1항

3) 기능별(내역사업별) 산출 내역

(3-1) 내역사업별 세부 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계획액(수정)(A)	2027년 정부안액(B)	증감 (B-A)
합 계	227,223	245,466	18,243
근로복지공단 인건비	227,223	245,466	18,243

○ 근로복지공단 인건비 **(2026년) 227,223 → (2027년) 245,466백만원, +8.0%**

- (설명) 근로복지공단 인건비 공통인상분, 증원 인건비, 추가처우개선 등을 반영, '26년 대비 8.0% 증액
- (산출) 85,088백만원 = 계속소요(227,223백만원) +
'27년 공통인상분(9,098백만원) +
'26년 정기증원(증원 169명) 잔여 6개월 인건비(325백만원) +
'26년 수시증원(증원 5명) 12개월 인건비(325백만원) +
'27년 정기증원(증원 61명) 6개월 인건비(1,937백만원)
정규직 인건비 추가처우개선(1,151백만원)

4) 사업효과

(4-1) 최근 5년(2023년~2027년)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해당없음

(4-2) 성과지표 이외의 최근 4년(2023년~2026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해당없음

(4-3) 향후(2027년 이후) 기대효과:

○ 고용보험 가입 및 보험료 산정, 부과업무의 원활한 수행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예산 배정 → 근로복지공단 매월 고용노동부 자금 신청 → 자금 배정 → 집행

8) 최근 3년간(2024년~2026년)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8-1) 정부 사업평가: 해당없음

(8-2) 국회 지적사항: 해당없음

(8-3) 감사원, 총리실, 기타(언론, 시민단체 등) 결과: 해당없음

4. 최근 4년간(2023년~2026년) 결산내역

1) 결산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연도	당초 계획액	수정 계획액 (A)	전년도 이월액	기금변경 증감액 등	계획 현액	집행액 (B)	집행률 (B/Ax100)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3년	204,371	204,371	-	-	204,371	204,371	100.0	-	-
2024년	211,083	211,083	-	-	211,083	211,083	100.0	-	-
2025년	217,951	218,708	-	757	218,708	218,708	100.0	-	-
2026년	227,223	227,223	-	-	227,223	127,659	56.2	해당없음	해당없음

2) 연도별 결산 주요사항: 해당없음

5. 기타 추가자료: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30)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건비(7084-105)

1. 사업 총괄 정보

1) 사업 기본 정보

(1-1) 일반 정보

소관	실·국	과·팀	기금	계정
고용노동부	산업안전 예방정책관	산업안전정책과	산업재해보상 보험및예방기금	-

(1-2) 코드·명칭 정보

구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080	08E	7000	7084	105
명칭	사회복지	노동	고용노동행정지원	산재보험 및 예방기금운영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건비

2)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N	Y	N	N	N	N

3)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N	N	Y	N	N	-	-

4) 기능별(내역사업별)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내역사업명	소관	사업시행주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건비	고용노동부 산업안전예방정책관 산업안전정책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 지출계획 총괄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사업명	2025년 결산액	2026년 당초계획액 (A)	2026년 수정계획액	2027년 요구액	2027년 정부안액 (B)	증감액 (B-A)	증감률 (B-A) /A×100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건비	166,609	164,624	164,624	175,525	175,525	10,901	6.6

1)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계획액 (수정)	2025년 계획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계획액 (수정)	2026년 계획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166,651	166,651	166,609	-	42	164,624	164,624	101,118	175,525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건비	166,651	166,651	166,609	-	42	164,624	164,624	101,118	175,525

2) 비목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계획액 (수정)	2025년 계획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계획액 (수정)	2026년 계획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166,651	166,651	166,609	-	42	164,624	164,624	101,118	175,525
·기관운영출연금(350-01)	166,651	166,651	166,609	-	42	164,624	164,624	101,118	175,525

3. 사업 설명

1) 사업목적·내용

(1-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건비

사업목적	산재예방사업의 원활한 수행 지원
사업내용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임·직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

2) 사업개요

(2-1)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사업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정부의 책무)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1. 산업 안전 및 보건 정책의 수립 및 집행 2. 산업재해 예방 지원 및 지도

	3.「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기준 마련, 지도 및 지원 4. 사업주의 자율적인 산업 안전 및 보건 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지원 5.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홍보·교육 등 안전문화 확산 추진 6.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술의 연구·개발 및 시설의 설치·운영 7.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관리 8. 산업 안전 및 보건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및 지도·감독 9. 그 밖에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 및 건강의 보호·증진 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그 밖의 관련 단체 및 연구기관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산업재해 예방의 재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재원(財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에서 지원한다. 1. 제11조 각 호에 따른 시설의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산업재해예방 관련 사업 및 비영리법인에 위탁하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의 사업비 -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 (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보조·지원) ① 정부는 사업주, 사업주단체, 근로자단체,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 연구기관 등이 하는 산업재해 예방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이하 "보조·지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보조·지원이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① 정부는 중대재해를 예방하여 시민과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중대재해의 종합적인 예방대책의 수립·시행과 발생원인 분석 2. 사업주, 법인 및 기관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 3. 사업주, 법인 및 기관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 지원 및 지도 4.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의 시행 ② 정부는 사업주, 법인 및 기관에 대하여 유해·위험 시설의 개선과

	보호 장비의 구매, 종사자 건강진단 및 관리 등 중대재해 예방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추진경위	○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공단 설립 이후 현재까지 지속 추진

(2-2) 사업규모

○ 사업기간 : '88년~계속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계획액 기준, 기금운용계획변경 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사업비	147,232	151,107	166,651	164,624	175,525

(2-3)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사업 수혜자 : 산재보험가입 사업주 및 근로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기관명	2027년 지원금액 (백만원)	지원 비율(%)	법적근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건비	출연	한국산업 안전보건공단	175,525	10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 제96조

3) 기능별(내역사업별) 산출 내역

(3-1) 내역사업별 세부 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계획액(수정)(A)	2027년 정부안액(B)	증감 (B-A)
합 계	164,624	175,525	10,90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건비	164,624	175,525	10,901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건비 **(2026년) 164,624 → (2027년) 175,525백만원, +6.6%**

- (설명) 증원 연동소요, 임직원 처우개선 등에 따라 전년 대비 6.6% 증액
- (산출) 계속소요 164,624백만원, 추가소요 3,108백만원, 공통인상분 6,542백만원, 특이소요 1,251백만원
  * '26년 수시·정기증원 인건비
  ** '27년 정기증원 인건비, 통상임금 기준 변경에 따른 법정수당 증가분

4) 사업효과

(4-1) 최근 5년(2023년~2027년)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해당없음

(4-2) 성과지표 이외의 최근 4년(2023년~2026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연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3년	공단 본부 및 산하기관 운영경비 지원(147,232백만원 집행)
2024년	공단 본부 및 산하기관 운영경비 지원(151,107백만원 집행)
2025년	공단 본부 및 산하기관 운영경비 지원(166,609백만원 집행)
2026년	공단 본부 및 산하기관 운영경비 지원(101,118백만원 집행, 7월말 기준)

(4-3) 향후(2027년 이후) 기대효과

○ 산재예방사업의 원활한 수행 지원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예산배정	⇨	산업재해 예방사업 수행	⇨	자금교부 신청 및 교부	⇨	기관운영경비 지급

8) 최근 3년간(2024년~2026년)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8-1) 정부 사업평가: 해당없음

(8-2) 국회 지적사항: 해당없음

(8-3) 감사원, 총리실, 기타(언론, 시민단체 등) 결과: 해당없음

4. 최근 4년간(2023년~2026년) 결산내역

1) 결산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연도	당초 계획액	수정 계획액 (A)	전년도 이월액	기금변경 증감액 등	계획 현액	집행액 (B)	집행률 (B/Ax100)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3년	15,418	15,418	-	-	15,418	15,418	100.0	-	-
2024년	15,905	15,905	-	-	15,905	15,905	100.0	-	-
2025년	15,053	15,053	-	-	15,053	15,053	100.0	-	-
2026년	15,378	15,378	-	-	15,378	9,374	61.0	해당없음	해당없음

2) 연도별 결산 주요사항 : 해당없음

5. 기타 추가자료: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31) 기금운영관리(7084-106)

1. 사업 총괄 정보

1) 사업 기본 정보

(1-1) 일반 정보

소관	실·국	과·팀	기금	계정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산재보상정책과	산업재해보상보험 및예방기금	-

(1-2) 코드·명칭 정보

구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080	08E	7000	7084	106
명칭	사회복지	노동	고용노동행정지원	산재보험및예방기금운영비	기금운영관리

2)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N	Y	N	N	N	N

3)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N	N	Y	N	N	-	-

4) 기능별(내역사업별)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내역사업명	소관	사업시행주체
기금운영관리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근로복지공단

2. 지출계획 총괄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사업명	2025년 결산액	2026년 당초계획액 (A)	2026년 수정계획액	2027년 요구액	2027년 정부안액 (B)	증감액 (B-A)	증감률 (B-A) /A×100
기금운영관리	2,941	3,044	3,044	3,163	3,163	119	3.9

1)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계획액 (수정)	2025년 계획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계획액 (수정)	2026년 계획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2,941	2,941	2,941	-	-	3,044	3,044	1,729	3,163
·기금운영관리	2,941	2,941	2,941	-	-	3,044	3,044	1,729	3,163

2) 비목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계획액 (수정)	2025년 계획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계획액 (수정)	2026년 계획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2,941	2,941	2,941	-	-	3,044	3,044	1,729	3,163
·기관운영출연금(350-01)	2,941	2,941	2,941	-	-	3,044	3,044	1,729	3,163

3. 사업 설명

1) 사업목적·내용

(1-1) 기금운영관리

사업목적	산재보험사업을 위탁수행하는 근로복지공단 임직원의 인건비 지원
사업내용	산재보험사업을 위탁수행하는 근로복지공단 임직원의 인건비 지원

2) 사업개요

(2-1)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사업근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제96조 (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08. 12. 31., 2010. 1. 27.> 1. 보험급여의 지급 및 반환금의 반환 2. 차입금 및 이자의 상환 3. 공단에의 출연 4.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의3에 따른 용도 5. 재해근로자의 복지 증진 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라한다)에 대한 출연 7. 보험료징수법 제4조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의 출연 8. 그 밖에 보험사업 및 기금의 관리와 운용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금지출예산 총액의 100분의8 이상을 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용도로 계상하여야 한다.
추진경위	○ 근로복지공단 인건비 지원

(2-2) 사업규모

○ 사업기간 : 2021~계속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계획액 기준, 기금운용계획변경 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사업비	2,785	2,855	2,941	3,044	3,163

(2-3)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근로복지공단

○ 사업 수혜자 : 근로복지공단 임직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기관명	2027년 지원금액 (백만원)	지원 비율(%)	법적근거
기금운영관리	출연	근로복지공단	3,163	100.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6조

3) 기능별(내역사업별) 산출 내역

(3-1) 내역사업별 세부 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계획액(수정)(A)	2027년 정부안액(B)	증감 (B-A)
합 계	3,044	3,163	119
기금운영관리	3,044	3,163	119

○ 기금운영관리 (2026년) 3,044 → (2027년) 3,163백만원, +3.9%

- (설명) 공통인상률 반영 요구
- (산출) 계속소요 3,044백만원 + 공통인상분 119백만원

4) 사업효과

(4-1) 최근 5년(2023년~2027년)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해당없음

(4-2) 성과지표 이외의 최근 4년(2023년~2026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해당없음

(4-3) 향후(2027년 이후) 기대효과

○ 산재보험 가입 및 보험료 산정, 부과업무의 원활한 수행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예산 배정 → 근로복지공단 매월 고용노동부 자금 신청 → 자금 배정 → 집행

8) 최근 3년간(2024년~2026년)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8-1) 정부 사업평가: 해당없음

(8-2) 국회 지적사항: 해당없음

(8-3) 감사원, 총리실, 기타(언론, 시민단체 등) 결과: 해당없음

4. 최근 4년간(2023년~2026년) 결산내역

1) 결산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연도	당초 계획액	수정 계획액 (A)	전년도 이월액	기금변경 증감액 등	계획 현액	집행액 (B)	집행률 (B/Ax100)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3년	2,785	2,785	-	-	2,785	2,785	100.0	-	-
2024년	2,855	2,855	-	-	2,855	2,855	100.0	-	-
2025년	2,941	2,941	-	-	2,941	2,941	100.0	-	-
2026년	3,044	3,044	-	-	3,044	1,729	56.8	해당없음	해당없음

2) 연도별 결산 주요사항: 해당없음

5. 기타 추가자료: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32) 기금관리비 기타경비(7084-201)

1. 사업 총괄 정보

1) 사업 기본 정보

(1-1) 일반 정보

소관	실·국	과·팀	기금	계정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산재보상정책과	산업재해보상 보험및예방기금	-

(1-2) 코드·명칭 정보

구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080	08E	7000	7084	201
명칭	사회복지	노동	고용노동행정지원	산재보험예방 기금운영비	기금관리비 기타경비

2)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N	Y	N	N	N	N

3)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Y	N	N	N	N	-	-

4) 기능별(내역사업별)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내역사업명	소관	사업시행주체
기금관리비 기타경비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고용노동부

2. 지출계획 총괄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사업명	2025년 결산액	2026년 당초계획액 (A)	2026년 수정계획액	2027년 요구액	2027년 정부안액 (B)	증감액 (B-A)	증감률 (B-A) /A×100
기금관리비 기타경비	278	345	345	345	243	△102	△29.6

1)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계획액 (수정)	2025년 계획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계획액 (수정)	2026년 계획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363	333	278	-	55	345	345	133	243
·기금관리비 기타경비	363	333	278	-	55	345	345	133	243

2) 비목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계획액 (수정)	2025년 계획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계획액 (수정)	2026년 계획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363	333	278	-	55	345	345	133	243
·일반수용비(210-01)	257	227	215	-	12	256	256	116	158
·공공요금및제세(210-02)	6	6	4	-	2	6	6	1	6
·특근매식비(210-05)	6	6	3	-	3	6	6	1	6
·시설장비유지비(210-09)	28	28	19	-	9	20	20	2	20
·복리후생비(210-12)	3	3	2	-	1	3	3	2	3
·국내여비(202-01)	10	10	10	-	-	10	10	7	7
·사업추진비(240-01)	4	4	4	-	-	4	4	4	3
·공사비(420-03)	49	49	21	-	28	40	40	-	40

3. 사업 설명

1) 사업목적·내용

(1-1) 기금관리비 기타경비

사업목적	산재기금의 적정한 집행과 관리의 효율화 도모
사업내용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지원을 위한 관서 운영경비 지원

2) 사업개요

(2-1)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사업근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6조(기금의 용도) - 제96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보험급여의 지급 및 반환금의 반환 2. 차입금 및 이자의 상환 3. 공단에의 출연 4.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의3에 따른 용도 5. 재해근로자의 복지 증진 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라한다)에 대한 출연 7. 보험료징수법 제4조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의 출연 8. 그 밖에 보험사업 및 기금의 관리와 운용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금지출예산 총액의 100분의 8 이상을 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용도로 계상하여야 한다.
추진경위	○ 사업시작연도 : '95년

(2-2) 사업규모

○ 사업기간 : 계속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계획액 기준, 기금운용계획변경 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사업비	351	363	363	345	243

(2-3)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직접관리(고용노동부)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3) 기능별(내역사업별) 산출 내역

(3-1) 내역사업별 세부 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계획액(수정)(A)	2027년 정부안액(B)	증감 (B-A)
합 계	345	243	△102
기금관리비 기타경비	345	243	△102

○ 기금관리비 기타경비 **(2026년) 345 → (2027년) 243백만원, △29.6%**

- (설명)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비목 감액 반영
- (산출) 243백만원 = 운영비(193백만원) + 여비(7백만원) + 업무추진비(3백만원) + 공사비(40백만원)

4) 사업효과

(4-1) 최근 5년(2023년~2027년)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해당없음

(4-2) 성과지표 이외의 최근 4년(2023년~2026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해당없음

(4-3) 향후(2027년 이후) 기대효과:

○ 산재기금의 적정한 집행과 관리의 효율화 도모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기금운용계획 수립, 배정, 지출, 결산, 평가 등 업무수행(근무지내 출장, 초과근무에 따른 특근매식비, 심의위원회 등 회의 개최, 관련 책자 유인 등) → 관련 비용 지출
- 지방노동관서 시설비 수요 파악 → 우선순위 선정(시급성 및 필요성) → 자금배정 → 지방노동관서 용역 계약 체결 → 공사시행 →지출

8) 최근 3년간(2024년~2026년)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8-1) 정부 사업평가: 해당없음

(8-2) 국회 지적사항: 해당없음

(8-3) 감사원, 총리실, 기타(언론, 시민단체 등) 결과: 해당없음

4. 최근 4년간(2023년~2026년) 결산내역

1) 결산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연도	당초 계획액	수정 계획액 (A)	전년도 이월액	기금변경 증감액 등	계획 현액	집행액 (B)	집행률 (B/Ax100)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3년	381	351	-	-	351	265	69.6	-	86
2024년	363	313	-	-	313	303	96.8	-	10
2025년	363	333	-	-	333	278	83.5	-	55
2026년	345	345	-	-	345	133	38.6	-	-

2) 연도별 결산 주요사항: 해당사항 없음

5. 기타 추가자료: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33) 산재보험운영 기타경비(7084-202)

1. 사업 총괄 정보

1) 사업 기본 정보

(1-1) 일반 정보

소관	실·국	과·팀	기금	계정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산재보상정책과	산업재해보상 보험및예방기금	-

(1-2) 코드·명칭 정보

구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080	08E	7000	7084	202
명칭	사회복지	노동	고용노동행정지원	산재보험예방 기금운영비	산재보험운영 기타경비

2)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N	Y	N	N	N	N

3)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Y	N	N	N	N	-	-

4) 기능별(내역사업별)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내역사업명	소관	사업시행주체
산재보험운영 기타경비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고용노동부

2. 지출계획 총괄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사업명	2025년 결산액	2026년 당초계획액 (A)	2026년 수정계획액	2027년 요구액	2027년 정부안액 (B)	증감액 (B-A)	증감률 (B-A) /A×100
산재보험운영 기타경비	741	855	855	855	654	△201	△23.5

1)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계획액 (수정)	2025년 계획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계획액 (수정)	2026년 계획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899	821	741	-	80	855	855	448	654
·산재보험운영 기타경비	899	821	741	-	80	855	855	448	654

2) 비목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계획액 (수정)	2025년 계획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계획액 (수정)	2026년 계획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899	821	741	-	80	855	855	448	654
·일반수용비(210-01)	680	594	577	-	17	632	632	338	475
·공공요금및제세(210-02)	40	38	31	-	7	22	22	21	22
·특근매식비(210-05)	16	16	11	-	5	16	16	6	16
·임차료(210-07)	32	32	17	-	15	32	32	21	32
·복리후생비(210-12)	3	3	2	-	1	3	3	2	3
·관리용역비(210-15)	10	10	-	-	10	10	10	-	10
·국내여비(202-01)	17	31	30	-	1	47	47	26	17
·국외업무여비(220-02)	13	9	-	-	9	13	13	-	1
·사업추진비(240-01)	63	63	58	-	5	63	63	35	61
·자산취득비(430-01)	25	25	15	-	10	18	18	-	18

3. 사업 설명

1) 사업목적·내용

(1-1) 산재보험운영 기타경비

사업목적	산재기금의 주요사업인 산재보험사업을 주관하는 부서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업무지원을 위한 운영비 지원
사업내용	-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의 운영비 지원 - 보험급여 등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에 대한 재심사 사건을 심리 재결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운영비 지원

2) 사업개요

(2-1)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사업근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6조(기금의 용도) - 제96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보험급여의 지급 및 반환금의 반환 2. 차입금 및 이자의 상환 3. 공단에의 출연 4.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의3에 따른 용도 5. 재해근로자의 복지 증진 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라한다)에 대한 출연 7. 보험료징수법 제4조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의 출연 8. 그 밖에 보험사업 및 기금의 관리와 운용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금지출예산 총액의 100분의 8 이상을 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용도로 계상하여야 한다.
추진경위	○ 사업시작연도 : '95년

(2-2) 사업규모

○ 사업기간 : 계속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계획액 기준, 기금운용계획변경 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사업비	1,042	899	899	855	654

(2-3)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직접관리(고용노동부)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3) 기능별(내역사업별) 산출 내역

(3-1) 내역사업별 세부 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계획액(수정)(A)	2027년 정부안액(B)	증감 (B-A)
합 계	855	654	△201
기금관리비 기타경비	855	654	△201

○ 기금관리비 기타경비 (2026년) 855 → (2027년) 654백만원, △23.5%

- (설명) 운영비, 여비 비목 감액 반영
- (산출) 654백만원 = 운영비(557백만원) + 여비(18백만원) + 업무추진비(61백만원) +자산취득비(18백만원)

4) 사업효과

(4-1) 최근 5년(2023년~2027년)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해당없음

(4-2) 성과지표 이외의 최근 4년(2023년~2026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해당없음

(4-3) 향후(2027년 이후) 기대효과:

○ 산재기금의 적정한 집행과 관리의 효율화 도모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기금운용계획 수립, 배정, 지출, 결산, 평가 등 업무수행(근무지내 출장, 초과근무에 따른 특근매식비, 심의위원회 등 회의 개최, 관련 책자 유인 등) → 관련 비용 지출

-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업무수행(근무지내 출장, 초과근무에 따른 특근매식비, 심의위원회 등 회의 개최, 관련 책자 유인 등) → 관련 비용 지출

8) 최근 3년간(2024년~2026년)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8-1) 정부 사업평가: 해당없음

(8-2) 국회 지적사항: 해당없음

(8-3) 감사원, 총리실, 기타(언론, 시민단체 등) 결과: 해당없음

4. 최근 4년간(2023년~2026년) 결산내역

1) 결산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연도	당초 계획액	수정 계획액 (A)	전년도 이월액	기금변경 증감액 등	계획 현액	집행액 (B)	집행률 (B/Ax100)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3년	1,042	1,042	8	-	1,050	950	91.2	-	100
2024년	899	949	-	-	949	884	93.2	-	65
2025년	899	821	-	-	821	741	90.3	-	80
2026년	855	855	-	-	855	448	52.4	-	-

2) 연도별 결산 주요사항: 해당사항 없음

5. 기타 추가자료: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34) 산재예방운영 기타경비(7084-203)

1. 사업 총괄 정보

1) 사업 기본 정보

(1-1) 일반 정보

소관	실·국	과·팀	기금	계정
고용노동부	산업안전예방정책관	산업안전정책과	산업재해보상보험 및예방기금	-

(1-2) 코드·명칭 정보

구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080	08E	7000	7084	203
명칭	사회복지	노동	고용노동 행정지원	산재보험및예방기금운영비	산재예방운영 기타경비

2)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N	Y	N	N	N	N

3)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Y	N	N	N	N	-	-

4) 기능별(내역사업별)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내역사업 없음

내역사업명	소관	사업시행주체
산재예방운영 기타경비	고용노동부, 산업안전정책과	고용노동부

2. 예산 총괄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사업명	2025년 결산액	2026년 본예산액 (A)	2026년 추경 예산액	2027년 요구액	2027년 정부안액 (B)	증감액 (B-A)	증감률 (B-A) /A×100
산재예방운영 기타경비	2,458	2,431	2,431	2,431	2,158	△273	△11.2

1)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예산액 (추경)	2025년 예산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예산액 (추경)	2026년 예산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 액
○ 합계	2,417	2,517	2,458	0	59	2,431	2,431	1,011	2,158
・산재예방운영 기타 경비	2,417	2,517	2,458	0	59	2,431	2,431	1,011	2,158

2) 비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예산액 (추경)	2025년 예산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예산액 (추경)	2026년 예산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 액
○ 합계	2,417	2,517	2,458	0	59	2,431	2,431	1,011	2,158
・일반수용비 (210-01)	800	595	593	0	2	743	743	370	491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184	184	179	0	5	146	146	74	146
・특근매식비 (210-05)	7	7	7	0	-	4	4	-	4
・임차료 (210-07)	6	10	9	0	1	5	5	5	5
・복리후생비 (210-12)	47	47	36	0	12	47	47	30	54
・기타운영비 (210-16)	1	1	0	0	1	1	1	-	1
・국내여비 (220-01)	1,203	1,504	1,476	0	28	1,203	1,203	495	1,178
・국외업무여비 (220-02)	43	43	35	0	8	43	43	5	42
・사업추진비 (240-01)	64	64	62	0	1	64	64	32	62
・포상금 (310-03)	6	6	5	0	1	138	138	-	138
・자산취득비 (430-01)	56	56	56	0	-	37	37	-	37

3. 사업 설명

1) 사업목적·내용

(1-1) 기본경비(산업안전보건본부, 총액)

사업목적	산업안전보건본부 및 지방관서 산업안전·보건 업무 담당 부서 운영경비 지원
사업내용	산업안전보건본부 및 지방관서 산업안전·보건 업무 담당 부서 운영경비 지원

2) 사업개요

(2-1)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사업근거	○ 해당 없음
추진경위	○ 사업 시작 연도 : 1995년 ○ 추진 배경 : 본부 및 지방관서의 산업재해예방 업무 수행에 필요한 운영경비 지원

(2-2) 사업규모

○ 사업기간 : 1995년~계속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 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정부안
사업비	2,862	2,652	2,417	2,299	2,158

(2-3)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3) 기능별(내역사업별) 산출 내역

(3-1) 내역사업별 세부 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예산액(추경)(A)	2027년 정부안액(B)	증감 (B-A)
합 계	2,431	2,158	△273

○ 산재예방운영기타경비:

('26계획) 2,299백만원 → ('27계획안) 2,158백만원(감 273백만원, 11.2%)

① 운영비 : ('26년) 946 → ('27년) 701백만원(감 245백만원)
② 여비 : ('26년) 1,246 → ('27년) 1,220백만원(감 26백만원)
③ 업무추진비 : ('26년) 64 → ('27년) 6백만원(감 2백만원)
④ 보전금 : ('26년) 138 → ('27년) 138백만원(전년 동)
⑤ 자산취득비 : ('26년) 37 → ('27년) 37백만원(감 19백만원)

4) 사업효과

(4-1) 최근 5년(2023년~2027년)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해당없음

(4-2) 성과지표 이외의 최근 4년(2023년~2026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해당없음

(4-3) 향후(2027년 이후) 기대효과: 산업재해예방 사업의 원활한 운영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예산배정	⇨	산업재해예방 사업 수행	⇨	자금배정	⇨	집행

8) 최근 3년간(2024년~2026년)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8-1) 정부 사업평가: 해당없음
(8-2) 국회 지적사항: 해당없음
(8-3) 감사원, 총리실, 기타(언론, 시민단체 등) 결과: 해당없음

4. 최근 4년간(2023년~2026년) 결산내역

1) 결산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연도	본예산액	추경 예산액(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비비액 등	예산 현액	집행액 (B)	집행률 (B/Ax100)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3년	2,849	2,849		-	2,849	2,812	98.3	-	50
2024년	2,652	2,652		-	2,652	2,572	97.0	-	79
2025년	2,417	2,417		-	2,417	2,458	97.7	-	59
2026년	2,431	2,431		-	2,431	1,011	41.6	해당없음	해당없음

2) 연도별 결산 주요사항

연도	유형	금액 (백만원)	사유
2023년	불용	50	- 집행 잔액
2024년	불용	79	- 집행 잔액
2025년	불용	59	- 집행 잔액
2026년	-	-	- 정상 추진 중

5. 기타 추가자료: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35) 근로복지공단 기관운영경비(7084-204)

1. 사업 총괄 정보

1) 사업 기본 정보

(1-1) 일반 정보

소관	실·국	과·팀	기금	계정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산재보상정책과	산업재해보상보험 및예방기금	-

(1-2) 코드·명칭 정보

구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080	08E	7000	7084	204
명칭	사회복지	노동	고용노동행정지원	산재보험및예방기금운영비	근로복지공단 기관운영경비

2)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N	Y	N	N	N	N

3)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N	N	Y	N	N	-	-

4) 기능별(내역사업별)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내역사업명	소관	사업시행주체
근로복지공단 기관운영경비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근로복지공단

2. 지출계획 총괄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사업명	2025년 결산액	2026년 당초계획액 (A)	2026년 수정계획액	2027년 요구액	2027년 정부안액 (B)	증감액 (B-A)	증감률 (B-A) /A×100
근로복지공단 기관운영경비	36,747	39,702	39,702	39,702	38,472	△1,230	△3.1

1)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계획액 (수정)	2025년 계획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계획액 (수정)	2026년 계획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36,747	36,747	36,747	-	-	39,702	39,702	31,768	38,472
·근로복지공단 기관운영경비	36,747	36,747	36,747	-	-	39,702	39,702	31,768	38,472

2) 비목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계획액 (수정)	2025년 계획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계획액 (수정)	2026년 계획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36,747	36,747	36,747	-	-	39,702	39,702	31,768	38,472
·기관운영출연금(350-01)	36,747	36,747	36,747	-	-	39,702	39,702	31,768	38,472

3. 사업 설명

1) 사업목적·내용

(1-1) 근로복지공단 기관운영경비

사업목적	근로복지공단 소속기관에 대한 기관운영에 필요한 소요 지원
사업내용	근로복지공단 소속기관에 대한 기관운영에 필요한 소요 지원

2) 사업개요

(2-1)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사업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6조 (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08. 12. 31., 2010. 1. 27.> 1. 보험급여의 지급 및 반환금의 반환 2. 차입금 및 이자의 상환 3. 공단에의 출연 4.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의3에 따른 용도 5. 재해근로자의 복지 증진 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라 한다)에 대한 출연 7. 보험료징수법 제4조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의 출연 8. 그 밖에 보험사업 및 기금의 관리와 운용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금 지출예산 총액의 100분의 8 이상을 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용도로 계상하여야 한다.
추진경위	○ ’95년부터 산재보험 적용·징수 및 보상, 재활사업을 위탁수행하는 근로복지공단 본부 및 소속기관 사업수행 및 기관운영 비용 지원

(2-2) 사업규모

○ 사업기간 : 1995~ 계속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계획액 기준, 기금운용계획변경 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사업비	35,501	37,381	36,747	39,702	38,472

(2-3)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근로복지공단

○ 사업 수혜자 : 근로복지공단 임직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기관명	2027년 지원금액(백만원)	지원 비율(%)	법적근거
근로복지공단 기관운영경비	출연	근로복지공단	38,472	10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6조 제1항

3) 기능별(내역사업별) 산출 내역

(3-1) 내역사업별 세부 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계획액(수정)(A)	2027년 정부안액(B)	증감 (B-A)
합 계	39,702	38,472	△1,230
근로복지공단 기관운영경비	39,702	38,472	△1,230

○ 근로복지공단 기관운영경비 **(2026년) 39,702 → (2027년) 38,472백만원, △3.1%**

- (설명) 근로복지공단 기관운영에 필요한 경비 요구
- (산출) 계속소요 39,702백만원 + 특이소요 4,392백만원 + 추가소요 85백만원 = 완료소요 4,146백만원 - 공통절감 1,561백만원

4) 사업효과

(4-1) 최근 5년(2023년~2027년)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해당없음

(4-2) 성과지표 이외의 최근 4년(2023년~2026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해당없음

(4-3) 향후(2027년 이후) 기대효과

○ 산재보험 가입 및 보험료 산정, 부과업무의 원활한 수행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예산 배정 → 근로복지공단 매월 고용노동부 자금 신청 → 자금 배정 → 집행

8) 최근 3년간(2024년~2026년)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8-1) 정부 사업평가: 해당없음

(8-2) 국회 지적사항: 해당없음

(8-3) 감사원, 총리실, 기타(언론, 시민단체 등) 결과: 해당없음

4. 최근 4년간(2023년~2026년) 결산내역

1) 결산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연도	당초 계획액	수정 계획액 (A)	전년도 이월액	기금변경 증감액 등	계획 현액	집행액 (B)	집행률 (B/Ax100)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3년	35,501	35,501	-	-	35,501	35,501	100.0	-	-
2024년	37,381	37,381	-	-	37,381	37,381	100.0	-	-
2025년	36,747	36,747	-	-	36,747	36,747	100.0	-	-
2026년	39,702	39,702	-	-	39,702	31,768	80.0	해당없음	해당없음

2) 연도별 결산 주요사항: 해당없음

5. 기타 추가자료: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3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기관운영경비(7084-205)

1. 사업 총괄 정보

1) 사업 기본 정보

(1-1) 일반 정보

소관	실·국	과·팀	기금	계정
고용노동부	산업안전 예방정책관	산업안전정책과	산업재해보상 보험및예방기금	-

(1-2) 코드·명칭 정보

구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080	08E	7000	7084	205
명칭	사회복지	노동	고용노동행정지원	산재보험 및 예방기금운영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기관운영경비

2)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N	Y	N	N	N	N

3)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N	N	Y	N	N	-	-

4) 기능별(내역사업별)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내역사업명	소관	사업시행주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기관운영경비	고용노동부 산업안전예방정책관 산업안전정책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 지출계획 총괄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사업명	2025년 결산액	2026년 당초계획액 (A)	2026년 수정계획액	2027년 요구액	2027년 정부안액 (B)	증감액 (B-A)	증감률 (B-A) /A×100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기관운영경비	15,053	15,378	15,378	16,531	16,531	1,153	7.5

1)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계획액 (수정)	2025년 계획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계획액 (수정)	2026년 계획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15,053	15,053	15,053	-	-	15,378	15,378	9,374	16,53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기관운영경비	15,053	15,053	15,053	-	-	15,378	15,378	9,374	16,531

2) 비목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계획액 (수정)	2025년 계획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계획액 (수정)	2026년 계획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15,053	15,053	15,053	-	-	15,378	15,378	9,374	16,531
·기관운영출연금(350-01)	15,053	15,053	15,053	-	-	15,378	15,378	9,374	16,531

3. 사업 설명

1) 사업목적·내용

(1-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기관운영경비

사업목적	산재예방사업의 원활한 수행 지원
사업내용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기관운영 업무수행을 위한 경상운영비 지원

2) 사업개요

(2-1)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사업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정부의 책무)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1. 산업 안전 및 보건 정책의 수립 및 집행 2. 산업재해 예방 지원 및 지도

	3.「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기준 마련, 지도 및 지원 4. 사업주의 자율적인 산업 안전 및 보건 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지원 5.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홍보·교육 등 안전문화 확산 추진 6.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술의 연구·개발 및 시설의 설치·운영 7.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관리 8. 산업 안전 및 보건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및 지도·감독 9. 그 밖에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 및 건강의 보호·증진 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그 밖의 관련 단체 및 연구기관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산업재해 예방의 재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재원(財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에서 지원한다. 1. 제11조 각 호에 따른 시설의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산업재해예방 관련 사업 및 비영리법인에 위탁하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의 사업비 -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 (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보조·지원) ① 정부는 사업주, 사업주단체, 근로자단체,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 연구기관 등이 하는 산업재해 예방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이하 "보조·지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보조·지원이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① 정부는 중대재해를 예방하여 시민과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중대재해의 종합적인 예방대책의 수립·시행과 발생원인 분석 2. 사업주, 법인 및 기관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 3. 사업주, 법인 및 기관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 지원 및 지도 4.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의 시행 ② 정부는 사업주, 법인 및 기관에 대하여 유해·위험 시설의 개선과

	보호 장비의 구매, 종사자 건강진단 및 관리 등 중대재해 예방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추진경위	○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공단 설립 이후 현재까지 지속 추진

(2-2) 사업규모

○ 사업기간 : '88년~계속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계획액 기준, 기금운용계획변경 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사업비	15,418	15,905	15,053	15,378	16,531

(2-3)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사업 수혜자 : 산재보험가입 사업주 및 근로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기관명	2027년 지원금액 (백만원)	지원 비율(%)	법적근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기관운영경비	출연	한국산업 안전보건공단	16,531	10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 제96조

3) 기능별(내역사업별) 산출 내역

(3-1) 내역사업별 세부 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계획액(수정)(A)	2027년 정부안액(B)	증감 (B-A)
합 계	15,378	16,531	1,153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기관운영경비	15,378	16,531	1,153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기관운영경비 **(2026년) 15,378 → (2027년) 16,531백만원, +7.5%**

- (설명) '26년 증원 연동소요, 무기직 처우개선, 안전설비 교체 등 전년 대비 7.5% 증액

- (산출) 계속소요 15,378백만원, 추가소요 88백만원*, 공통기준 177백만원**, 특이소요 1,442백만원***, 완료소요 △72백만원, 공통절감 △482백만원
  * '26년 수시·정기증원 인건비 및 선택적 복리비
  ** 무기직 처우개선(126백만원), 기간제근로자 처우개선(51백만원)
  *** 임직원 직무스트레스 관리 및 건강증진(77백만원), 안전설비 교체(250백만원) 등

4) 사업효과

(4-1) 최근 5년(2023년~2027년)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해당없음

(4-2) 성과지표 이외의 최근 4년(2023년~2026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연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3년	공단 본부 및 산하기관 운영경비 지원(15,418백만원 집행)
2024년	공단 본부 및 산하기관 운영경비 지원(15,905백만원 집행)
2025년	공단 본부 및 산하기관 운영경비 지원(15,035백만원 집행)
2026년	공단 본부 및 산하기관 운영경비 지원(9,374백만원 집행, 7월말 기준)

(4-3) 향후(2027년 이후)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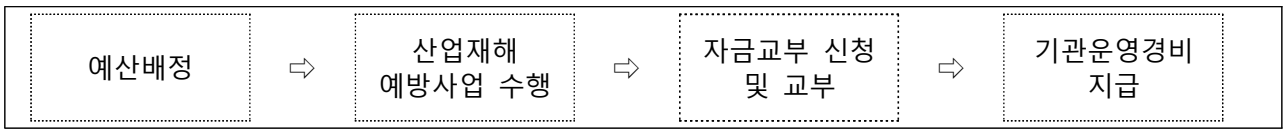
○ 산재예방사업의 원활한 수행 지원

○ 화학물질 안전보건인프라 구축 및 화학물질 관리,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입안에 기여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8) 최근 3년간(2024년~2026년)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해당없음

4. 최근 4년간(2023년~2026년) 결산내역

1) 결산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연도	당초 계획액	수정 계획액 (A)	전년도 이월액	기금변경 증감액 등	계획 현액	집행액 (B)	집행률 (B/Ax100)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3년	15,418	15,418	-	-	15,418	15,418	100.0	-	-
2024년	15,905	15,905	-	-	15,905	15,905	100.0	-	-
2025년	15,053	15,053	-	-	15,053	15,053	100.0	-	-
2026년	15,378	15,378	-	-	15,378	9,374	61.0	해당없음	해당없음

2) 연도별 결산 주요사항 : 해당없음

5. 기타 추가자료: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37) 근로복지공단 청사임차(7084-206)

1. 사업 총괄 정보

1) 사업 기본 정보

(1-1) 일반 정보

소관	실·국	과·팀	기금	계정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산재보상정책과	산업재해보상보험 및예방기금	-

(1-2) 코드·명칭 정보

구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080	08E	7000	7084	206
명칭	사회복지	노동	고용노동행정지원	산재보험및예방기금운영비	근로복지공단 청사임차

2)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N	Y	N	N	N	N

3)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N	N	Y	N	N	-	-

4) 기능별(내역사업별)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내역사업명	소관	사업시행주체
근로복지공단 청사임차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근로복지공단

2. 지출계획 총괄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사업명	2025년 결산액	2026년 당초계획액 (A)	2026년 수정계획액	2027년 요구액	2027년 정부안액 (B)	증감액 (B-A)	증감률 (B-A) /A×100
근로복지공단 청사임차	1,304	2,877	2,877	2,877	1,154	△1,723	△59.9

1)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계획액 (수정)	2025년 계획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계획액 (수정)	2026년 계획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1,304	1,304	1,304	-	-	2,877	2,877	1,678	1,154
·근로복지공단 청사임차	1,304	1,304	1,304	-	-	2,877	2,877	1,678	1,154

2) 비목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계획액 (수정)	2025년 계획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계획액 (수정)	2026년 계획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1,304	1,304	1,304	-	-	2,877	2,877	1,678	1,154
·무형자산(440-00)	1,304	1,304	1,304	-	-	2,877	2,877	1,678	1,154

3. 사업 설명

1) 사업목적·내용

(1-1) 근로복지공단 청사임차

사업목적	근로복지공단 소속기관에 대한 청사 및 숙소 임차보증금 지원
사업내용	근로복지공단 소속기관에 대한 청사 및 숙소 임차보증금 지원

2) 사업개요

(2-1)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사업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6조 (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08. 12. 31., 2010. 1. 27.> 1. 보험급여의 지급 및 반환금의 반환 2. 차입금 및 이자의 상환 3. 공단에의 출연 4.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의3에 따른 용도 5. 재해근로자의 복지 증진 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라한다)에 대한 출연 7. 보험료징수법 제4조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의 출연 8. 그 밖에 보험사업 및 기금의 관리와 운용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금 지출예산 총액의 100분의 8 이상을 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용도로 계상하여야 한다.
추진경위	○ '95년부터 산재보험 적용·징수 및 보상, 재활사업을 위탁수행하는 근로복지공단 본부 및 소속기관 청사 임차보증금 지원

(2-2) 사업규모

○ 사업기간 : 1995~계속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계획액 기준, 기금운용계획변경 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사업비	1,752	1,304	1,304	2,877	1,154

(2-3)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근로복지공단

○ 사업 수혜자 : 근로복지공단 임직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3) 기능별(내역사업별) 산출 내역

(3-1) 내역사업별 세부 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계획액(수정)(A)	2027년 정부안액(B)	증감 (B-A)
합 계	2,877	1,154	△1,723
근로복지공단 청사임차	2,877	1,154	△1,723

○ 근로복지공단 청사임차 (2026년) 2,877 → (2027년) 1,154백만원, △59.9%

- (설명) 근로복지공단 소속기관에 대한 청사 및 숙소 임차보증금 지원
- (산출) 계속소요 2,877백만원 - 기존 임차청사 재계약 인상분 773백만원 - 근로복지연구원 임차보증금 1,200백만원 - 신설지사 신설보증금 250백만원

4) 사업효과

(4-1) 최근 5년(2023년~2027년)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해당없음

(4-2) 성과지표 이외의 최근 4년(2023년~2026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해당없음

(4-3) 향후(2027년 이후) 기대효과:

○ 산재보험 가입 및 보험료 산정, 부과업무의 원활한 수행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예산 배정 → 근로복지공단 임차보증금 소요발생시 고용노동부 자금 신청 → 자금 배정 → 집행

8) 최근 3년간(2024년~2026년)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8-1) 정부 사업평가: 해당없음

(8-2) 국회 지적사항: 해당없음

(8-3) 감사원, 총리실, 기타(언론, 시민단체 등) 결과: 해당없음

4. 최근 4년간(2023년~2026년) 결산내역

1) 결산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연도	당초 계획액	수정 계획액 (A)	전년도 이월액	기금변경 증감액 등	계획 현액	집행액 (B)	집행률 (B/Ax100)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3년	1,752	1,752	-	-	1,752	1,752	100.0	-	-
2024년	1,304	1,304	-	-	1,304	1,304	100.0	-	-
2025년	1,304	1,304	-	--	1,304	1,304	100.0	-	-
2026년	2,877	2,877	-	-	2,877	1,678	58.3	해당없음	해당없음

2) 연도별 결산 주요사항: 해당없음

5. 기타 추가자료: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38)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청사임차(7084-207)

1. 사업 총괄 정보

1) 사업 기본 정보

(1-1) 일반 정보

소관	실·국	과·팀	기금	계정
고용노동부	산업안전 예방정책관	산업안전정책과	산업재해보상 보험및예방기금	-

(1-2) 코드·명칭 정보

구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080	08E	7000	7084	207
명칭	사회복지	노동	고용노동행정지원	산재보험 및 예방기금운영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청사임차

2)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N	Y	N	N	N	N

3)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Y	N	N	N	N	-	-

4) 기능별(내역사업별)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내역사업명	소관	사업시행주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청사임차	고용노동부 산업안전예방정책관 산업안전정책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 지출계획 총괄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사업명	2025년 결산액	2026년 당초계획액 (A)	2026년 수정계획액	2027년 요구액	2027년 정부안액 (B)	증감액 (B-A)	증감률 (B-A) /A×100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청사임차	867	304	304	304	227	△77	△25.3

1)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계획액 (수정)	2025년 계획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계획액 (수정)	2026년 계획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867	867	867	-	-	304	304	0	227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청사임차	867	867	867	-	-	304	304	0	227

2) 비목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계획액 (수정)	2025년 계획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계획액 (수정)	2026년 계획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867	867	867	-	-	304	304	0	227
·무형자산(440-00)	867	867	867	-	-	304	304	0	227

3. 사업 설명

1) 사업목적·내용

(1-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청사임차

사업목적	산재예방사업의 원활한 수행 지원
사업내용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청사임차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 지원

2) 사업개요

(2-1)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사업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정부의 책무)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1. 산업 안전 및 보건 정책의 수립 및 집행 2. 산업재해 예방 지원 및 지도

	3.「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기준 마련, 지도 및 지원 4. 사업주의 자율적인 산업 안전 및 보건 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지원 5.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홍보·교육 등 안전문화 확산 추진 6.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술의 연구·개발 및 시설의 설치·운영 7.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관리 8. 산업 안전 및 보건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및 지도·감독 9. 그 밖에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 및 건강의 보호·증진 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그 밖의 관련 단체 및 연구기관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산업재해 예방의 재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재원(財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에서 지원한다. 1. 제11조 각 호에 따른 시설의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산업재해예방 관련 사업 및 비영리법인에 위탁하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의 사업비 -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 (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보조·지원) ① 정부는 사업주, 사업주단체, 근로자단체,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 연구기관 등이 하는 산업재해 예방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이하 "보조·지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보조·지원이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① 정부는 중대재해를 예방하여 시민과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중대재해의 종합적인 예방대책의 수립·시행과 발생원인 분석 2. 사업주, 법인 및 기관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 3. 사업주, 법인 및 기관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 지원 및 지도 4.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의 시행 ② 정부는 사업주, 법인 및 기관에 대하여 유해·위험 시설의 개선과

	보호 장비의 구매, 종사자 건강진단 및 관리 등 중대재해 예방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추진경위	○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공단 설립 이후 현재까지 지속 추진

(2-2) 사업규모

○ 사업기간 : '88년~계속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계획액 기준, 기금운용계획변경 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사업비	647	867	867	304	227

(2-3)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사업(무형자산)

○ 사업시행주체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사업 수혜자 : 산재보험가입 사업주 및 근로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3) 기능별(내역사업별) 산출 내역

(3-1) 내역사업별 세부 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계획액(수정)(A)	2027년 정부안액(B)	증감 (B-A)
합 계	304	227	△77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청사임차	304	227	△77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청사임차 **(2026년) 304 → (2027년) 227백만원, △25.3%**

- (설명) 기존청사 재계약 인상분 완료소요(77백만원)에 따른 감액
- (산출) 계속소요 304백만원, 특이소요 △77백만원(기존청사 재계약 인상분)

4) 사업효과

(4-1) 최근 5년(2023년~2027년)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해당없음

(4-2) 성과지표 이외의 최근 4년(2023년~2026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연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3년	공단 산하기관 임차청사 등 임차보증금 지원(647백만원)
2024년	공단 산하기관 임차청사 등 임차보증금 지원(867백만원)
2025년	공단 산하기관 임차청사 등 임차보증금 지원(867백만원)
2026년	해당사항 없음

(4-3) 향후(2027년 이후) 기대효과

○ 산재예방사업의 원활한 수행 지원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예산배정 ⇨ 청사 임차보증금 자금신청 및 교부 ⇨ 임차보증금 등 지급

8) 최근 3년간(2024년~2026년)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해당없음

4. 최근 4년간(2023년~2026년) 결산내역

1) 결산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연도	당초 계획액	수정 계획액 (A)	전년도 이월액	기금변경 증감액 등	계획 현액	집행액 (B)	집행률 (B/Ax100)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3년	647	647	-	-	647	647	100.0	-	-
2024년	867	867	-	-	867	867	100.0	-	-
2025년	867	867	-	-	867	867	100.0	-	-
2026년	304	304	-	-	304	0	0.0	해당없음	해당없음

2) 연도별 결산 주요사항 : 해당없음

5. 기타 추가자료: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39) 산재보험 적용징수보상(7084-208)

1. 사업 총괄 정보

1) 사업 기본 정보

(1-1) 일반 정보

소관	실·국	과·팀	기금	계정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산재보상정책과	산업재해보상보험 및예방기금	-

(1-2) 코드·명칭 정보

구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080	08E	7000	7084	208
명칭	사회복지	노동	고용노동행정지원	산재보험및예방기금운영비	산재보험 적용징수보상

2)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N	Y	N	N	N	N

3)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N	N	Y	N	N	-	-

4) 기능별(내역사업별)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내역사업명	소관	사업시행주체
산재보험 적용징수보상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근로복지공단

2. 지출계획 총괄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사업명	2025년 결산액	2026년 당초계획액 (A)	2026년 수정계획액	2027년 요구액	2027년 정부안액 (B)	증감액 (B-A)	증감률 (B-A) /A×100
산재보험 적용징수보상	9,168	9,244	9,244	9,244	8,841	△403	△4.4

1)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계획액 (수정)	2025년 계획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계획액 (수정)	2026년 계획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9,168	9,168	9,168	-	-	9,244	9,244	5,393	8,841
·산재보험 적용징수보상	9,168	9,168	9,168	-	-	9,244	9,244	5,393	8,841

2) 비목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계획액 (수정)	2025년 계획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계획액 (수정)	2026년 계획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9,168	9,168	9,168	-	-	9,244	9,244	5,393	8,841
·기관운영출연금(350-01)	9,168	9,168	9,168	-	-	9,244	9,244	5,393	8,841

3. 사업 설명

1) 사업목적·내용

(1-1) 산재보험 적용징수보상

사업목적	산업재해 가입대상 사업주에 대한 보험관계 성립, 보험료 징수 및 근로자의 업무상재해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업무 등에 소요되는 수행경비 지원
사업내용	산업재해 가입대상 사업주에 대한 보험관계 성립, 보험료 징수 및 근로자의 업무상재해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업무 등에 소요되는 수행경비 지원

2) 사업개요

(2-1)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사업근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제96조 (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08. 12. 31., 2010. 1. 27.> 1. 보험급여의 지급 및 반환금의 반환 2. 차입금 및 이자의 상환 3. 공단에의 출연 4.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의3에 따른 용도 5. 재해근로자의 복지 증진 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라한다)에 대한 출연 7. 보험료징수법 제4조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의 출연 8. 그 밖에 보험사업 및 기금의 관리와 운용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금지출예산 총액의 100분의8 이상을 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용도로 계상하여야 한다.
추진경위	○ 산재보험 적용징수보상·재활업무를 위탁 수행하는 근로복지공단 본부 및 소속기관에 대한 경상운영비 지원

(2-2) 사업규모

○ 사업기간 : 1995~계속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계획액 기준, 기금운용계획변경 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사업비	11,000	9,168	9,168	9,244	8,841

(2-3)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근로복지공단

○ 사업 수혜자 : 근로복지공단 임직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기관명	2027년 지원금액 (백만원)	지원 비율(%)	법적근거
산재보험 적용징수보상	출연	근로복지공단	8,841	100.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6조

3) 기능별(내역사업별) 산출 내역

(3-1) 내역사업별 세부 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계획액(수정)(A)	2027년 정부안액(B)	증감 (B-A)
합 계	9,244	8,841	△403
산재보험 적용징수보상	9,244	8,841	△403

○ 산재보험 적용징수보상 (2026년) 9,244 → (2027년) 8,841백만원, △4.4%

- (설명) 산업재해 가입대상 사업주에 대한 보험관계성립, 보험료 징수 및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업무 등에 소요되는 수행경비 지원
- (산출) 계속소요 9,244백만원 + 특이소요 214백만원 - 공통감액 617백만원

4) 사업효과

(4-1) 최근 5년(2023년~2027년)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해당없음

(4-2) 성과지표 이외의 최근 4년(2023년~2026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해당없음

(4-3) 향후(2027년 이후) 기대효과

○ 원할한 산재보험 부과, 보상, 재활업무 수행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예산 배정 → 근로복지공단 매월 고용노동부 자금 신청 → 자금 배정 → 집행

8) 최근 3년간(2024년~2026년)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8-1) 정부 사업평가: 해당없음

(8-2) 국회 지적사항: 해당없음

(8-3) 감사원, 총리실, 기타(언론, 시민단체 등) 결과: 해당없음

4. 최근 4년간(2023년~2026년) 결산내역

1) 결산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연도	당초 계획액	수정 계획액 (A)	전년도 이월액	기금변경 증감액 등	계획 현액	집행액 (B)	집행률 (B/Ax100)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3년	11,000	776	-	-	11,776	11,776	100.0	-	-
2024년	9,168	-	-	-	9,168	9,168	9,168	-	-
2025년	9,168	-	-	-	9,168	9,168	9,168	-	-
2026년	9,244	-	-	-	9,244	5,393	58.3	해당없음	해당없음

2) 연도별 결산 주요사항: 해당없음

5. 기타 추가자료: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40) 산재보험 및 예방 연구개발(7085-200)

1. 사업 총괄 정보

1) 사업 기본 정보

(1-1) 일반 정보

소관	실·국	과·팀	기금	계정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산재보상정책과	산업재해보상보험 및예방기금	-

(1-2) 코드·명칭 정보

구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080	08E	7000	7085	200
명칭	사회복지	노동	고용노동행정지원	산재보험및예방연구개발	산재보험및예방연구개발

2)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N	Y	N	N	N	N

3)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Y	N	N	N	N	-	-

4) 기능별(내역사업별)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내역사업명	소관	사업시행주체
산재보험및예방연구개발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고용노동부

2. 지출계획 총괄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사업명	2025년 결산액	2026년 당초계획액 (A)	2026년 수정계획액	2027년 요구액	2027년 정부안액 (B)	증감액 (B-A)	증감률 (B-A) /A×100
산재보험 및 예방연구개발	427	527	527	527	464	△63	△12.0

1)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계획액 (수정)	2025년 계획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계획액 (수정)	2026년 계획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578	578	427	172	2	527	527		464
·산재보험 및 예방연구개발	578	578	427	172	2	527	527		464

2) 비목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계획액 (수정)	2025년 계획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계획액 (수정)	2026년 계획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578	578	427	172	2	527	527	164	464
·연구개발비(260-01)	578	578	427	172	2	527	527	164	464

3. 사업 설명

1) 사업목적·내용

(1-1) 산재보험 및 예방연구개발

사업목적	산재보험제도 및 산재예방 관련 주요 쟁점 및 제도개선사항에 대하여 연구 용역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정책수립 시 반영
사업내용	산재보험제도 및 산재예방 관련 주요 쟁점 및 제도개선사항에 대하여 연구 용역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정책수립 시 반영

2) 사업개요

(2-1)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사업근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보험사업 관련 조사・연구)
추진경위	○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연구를 통하여 산재보험 및 예방사업의 평가 결과 및 개선안을 마련 정책 및 예산에 반영

(2-2) 사업규모

○ 사업기간 : 1998~계속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계획액 기준, 기금운용계획변경 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사업비	600	570	570	527	464

(2-3)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직접관리(고용노동부)

○ 사업 수혜자 : 연구용역 수혜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3) 기능별(내역사업별) 산출 내역

(3-1) 내역사업별 세부 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계획액(수정)(A)	2027년 정부안액(B)	증감 (B-A)
합 계	527	464	△63
산재보험 및 예방 연구개발	527	464	△63

○ **산재보험 및 예방 연구개발 (2026년) 527 → (2027년) 464백만원, △12.0%**

- (설명) 산재보험제도 및 산재예방 관련 주요 쟁점 및 제도개선사항에 대하여 연구용역 실시
- (산출) 산재보험정책분야 연구용역 357백만원 + 산재예방정책분야 연구용역 107백만원

4) 사업효과

(4-1) 최근 5년(2023년~2027년)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해당없음

(4-2) 성과지표 이외의 최근 4년(2023년~2026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해당없음

(4-3) 향후(2027년 이후) 기대효과

○ 산재보험 및 예방분야에 대한 연구결과를 제도개선 또는 정책수립에 반영함으로써 산재보험 및 예방사업의 효과성 제고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연구용역 추진 과제 선정(고용노동부연구용역심의위원회)→ 연구용역 수행자(기관) 선정(경쟁계약 또는 수의계약) → 연구용역 계약 및 시행→ 연구결과물 제출 → 정책수립 및 평가 등 반영

8) 최근 3년간(2024년~2026년)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8-1) 정부 사업평가: 해당없음

(8-2) 국회 지적사항: 해당없음

(8-3) 감사원, 총리실, 기타(언론, 시민단체 등) 결과: 해당없음

4. 최근 4년간(2023년~2026년) 결산내역

1) 결산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연도	당초 계획액	수정 계획액 (A)	전년도 이월액	기금변경 증감액 등	계획 현액	집행액 (B)	집행률 (B/Ax100)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3년	600	617	8	17	625	613	99.4	12	-
2024년	570	570	12	-	582	407	70.0	24	151
2025년	570	578	24	8	602	427	73.9	172	2
2026년	527	527	172	-	699	164	23.5	해당없음	해당없음

2) 연도별 결산 주요사항: 해당없음

5. 기타 추가자료: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41)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탁(9005-840)

1. 사업 총괄 정보

1) 사업 기본 정보

(1-1) 일반 정보

소관	실·국	과·팀	회계	계정
고용노동부	산업보건보상 정책관	산재보상정책과	산업재해보상 보험및예방기금	-

(1-2) 코드·명칭 정보

구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080	08E	8400	9005	840
명칭	사회복지	노동	기금간거래(예탁금)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공공자금관리기금 (총괄계정) 예탁

2)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N	Y	N	N	N	N

3)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Y	N	N	N	N	-	-

4) 기능별(내역사업별)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내역사업명	소관	사업시행주체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탁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고용노동부

2. 예산 총괄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사업명	2025년 결산액	2026년 당초계획액 (A)	2026년 수정계획액	2027년 요구액	2027년 정부안액 (B)	증감액 (B-A)	증감률 (B-A) /A×100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탁	4,850,000	5,050,000	5,050,000	5,050,000	5,050,000	-	-

1)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계획액 (수정)	2025년 계획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계획액 (수정)	2026년 계획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4,850,000	4,850,000	4,850,000	0	0	5,050,000	5,050,000	700,000	5,050,000
·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탁	4,850,000	4,850,000	4,850,000	0	0	5,050,000	5,050,000	700,000	5,050,000

2) 비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계획액 (수정)	2025년 계획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계획액 (수정)	2026년 계획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4,850,000	4,850,000	4,850,000	0	0	5,050,000	5,050,000	700,000	5,050,000
· 기금예탁금(480-03)	4,850,000	4,850,000	4,850,000	0	0	5,050,000	5,050,000	700,000	5,050,000

3. 사업 설명

1) 사업목적·내용

(1-1)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전출(산재보험운영)

사업목적·사업내용	공공자금관리기본법에 의거 설치된 공공자금관리기금(기획재정부 소관)에 예탁하여 공공목적의 재원으로 사용함으로써 국가재정에 기여

2) 사업개요

(2-1)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사업근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7조(기금의 관리·운용) ②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1.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의 예입 및 금전신탁 2. 재정자금에의 예탁 3. 투자신탁 등의 수익증권 매입 4.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5. 그 밖에 기금 증식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6조(관리기금에의 예탁)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정·예금·회계 또는 기금의 관리자는 해당 기금 등의 설치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여유자금을 관리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추진경위	○ 사업 시작 연도 : 1998년 ○ 추진 배경 : 여유자금(기금 적립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하여 국가재정 안정화에 기여

(2-2) 사업규모

○ 사업기간 : 1998년~계속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 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정부안
사업비	1,550,090	3,300,000	4,850,000	5,050,000	5,050,000

(2-3)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
○ 사업 수혜자 : 공공자금관리기금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3) 기능별(내역사업별) 산출 내역

(3-1) 내역사업별 세부 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계획액(수정)(A)	2027년 정부안액(B)	증감 (B-A)
합 계	5,050,000	5,050,000	-

○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탁 **(2026년) 5,050,000 → (2027년) 5,050,000백만원**
-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금 5,050,000백만원

4) 사업효과

(4-1) 최근 5년(2023년~2027년)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해당없음

(4-2) 성과지표 이외의 최근 4년(2023년~2026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해당없음

(4-3) 향후(2027년 이후) 기대효과: 공공목적의 재원으로 사용함으로써 국가재정에 기여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공공자금관리기금 집행 계획 수립 →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8) 최근 3년간(2024년~2026년)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8-1) 정부 사업평가: 해당없음
(8-2) 국회 지적사항: 해당없음
(8-3) 감사원, 총리실, 기타(언론, 시민단체 등) 결과: 해당없음

4. 최근 4년간(2023년~2026년) 결산내역

1) 결산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연도	당초 계획액	수정 계획액 (A)	전년도 이월액	기금변경 증감액 등	계획 현액	집행액 (B)	집행률 (B/Ax100)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3년	1,550,090	1,550,090	0	0	1,550,090	1,550,090	100	0	0
2024년	3,300,000	3,300,000	0	0	3,300,000	3,300,000	100	0	0
2025년	4,850,000	4,850,000	0	0	4,850,000	4,850,000	100	0	0
2026년	5,050,000	5,050,000	0	0	5,050,000	700,000	13.9	0	0

2) 연도별 결산 주요사항: 해당없음

5. 기타 추가자료: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42) 비통화금융기관예치(9705-972)

1. 사업 총괄 정보

1) 사업 기본 정보

(1-1) 일반 정보

소관	실·국	과·팀	회계	계정
고용노동부	산업보건보상 정책관	산재보상정책과	산업재해보상 보험및예방기금	-

(1-2) 코드·명칭 정보

구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080	08E	9700	9705	972
명칭	사회복지	노동	여유자금운용	여유자금운용 (산재기금)	비통화금융기관 예치

2)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N	Y	N	N	N	N

3)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Y	N	N	N	N	-	-

4) 기능별(내역사업별)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내역사업명	소관	사업시행주체
비통화금융기관예치	고용노동부, 자산운용팀	고용노동부

2. 예산 총괄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사업명	2025년 결산액	2026년 당초계획액 (A)	2026년 수정계획액	2027년 요구액	2027년 정부안액 (B)	증감액 (B-A)	증감률 (B-A) /A×100
비통화금융기관예치	3,943,528	5,378,216	5,376,714	7,030,289	7,030,289	1,652,073	30.7

1)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계획액 (수정)	2025년 계획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계획액 (수정)	2026년 계획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8,550,527	8,478,269	3,943,528	0	0	5,378,216	5,376,714	4,282,987	7,030,289
· 비통화금융기관예치	8,550,527	8,478,269	3,943,528	0	0	5,378,216	5,376,714	4,282,987	7,030,289

2) 비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계획액 (수정)	2025년 계획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계획액 (수정)	2026년 계획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8,550,527	8,478,269	3,943,528	0	0	5,378,216	5,376,714	4,282,987	7,030,289
·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 (470-03)	8,550,527	8,478,269	3,943,528	0	0	5,378,216	5,376,714	4,282,987	7,030,289

3. 사업 설명

1) 사업목적·내용

(1-1)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전출(산재보험운영)

사업목적·사업내용	여유자금(기금 적립금)을 비통화금융기관(은행을 제외한 금융기관)에 수익증권(채권형, 주식형, 단기자금 등)으로 예치하여 기금 조성에 기여하고, 기금의 지출 수요에 대비

2) 사업개요

(2-1)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사업근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②기금은 보험료, 기금운용 수익금, 적립금,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정부 또는 정부 아닌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 차입금, 그 밖의 수입금을 재원으로 하여 조성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7조(기금의 관리·운용) ②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1.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의 예입 및 금전신탁 2. 재정자금에의 예탁 3. 투자신탁 등의 수익증권 매입 4.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 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5. 그 밖에 기금 증식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추진경위	○ 사업 시작 연도 : 1995년 ○ 추진 배경 : 여유자금(기금 적립금)을 비통화금융기관(은행을 제외한 금융기관)에 일정비율 예치하여 기금운영의 안정성과 수익성, 유동성 확보

(2-2) 사업규모

○ 사업기간 : 1995년~계속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 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정부안
사업비	7,865,534	7,172,771	8,550,527	5,378,216	7,030,289

(2-3)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

○ 사업 수혜자 :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3) 기능별(내역사업별) 산출 내역

(3-1) 내역사업별 세부 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계획액(수정)(A)	2027년 정부안액(B)	증감 (B-A)
합 계	5,376,714	7,030,289	1,652,073

○ 비통화금융기관예치 **(2026년) 5,378,216 → (2027년안) 7,030,289만원, +30.7%**

- 비통화금융기관예치 7,030,289백만원

4) 사업효과

(4-1) 최근 5년(2023년~2027년)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해당없음

(4-2) 성과지표 이외의 최근 4년(2023년~2026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해당없음

(4-3) 향후(2027년 이후) 기대효과: 기금운용의 안정성과 수익성, 유동성을 확보하여 기금 조성에 기여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공공자금관리기금 집행 계획 수립 →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8) 최근 3년간(2024년~2026년)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8-1) 정부 사업평가: 해당없음
(8-2) 국회 지적사항: 해당없음
(8-3) 감사원, 총리실, 기타(언론, 시민단체 등) 결과: 해당없음

4. 최근 4년간(2023년~2026년) 결산내역: 해당없음

5. 기타 추가자료: 해당사항 없음

Ⅲ.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사 업 명
(1) 장애인고용장려금(1452-303)

1. 사업 총괄 정보

1) 사업 기본 정보

(1-1) 일반 정보

소관	실·국	과·팀	기금	계정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장애인고용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

(1-2) 코드·명칭 정보

구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080	08D	1400	1452	303
명칭	사회복지	고용	장애인고용증진	장애인고용지원	장애인고용장려금

2)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N	Y	N	N	N	N

3)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Y	N	Y	N	N	100.0	-

4) 기능별(내역사업별)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내역사업명	소관	사업시행주체
장애인고용장려금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 지출계획 총괄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사업명	2025년 결산액	2026년 당초계획액 (A)	2026년 수정계획액	2027년 요구액	2027년 정부안액 (B)	증감액 (B-A)	증감률 (B-A) /A×100
장애인고용장려금	377,377	403,220	403,220	381,438	381,438	△21,782	△5.4

1)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계획액 (수정)	2025년 계획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계획액 (수정)	2026년 계획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377,377	377,377	377,377	-	-	403,220	403,220	274,243	381,438
장애인고용장려금	370,954	370,954	370,954	-	-	401,370	401,370	274,013	379,788
장애인신규고용장려금	6,423	6,423	6,423	-	-	-	-	-	-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	-	-	-	-	1,850	1,850	230	1,650

2) 비목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계획액 (수정)	2025년 계획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계획액 (수정)	2026년 계획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377,377	377,377	377,377	-	-	403,220	403,220	274,243	381,438
·기타보전금(310-04)	377,167	377,167	377,167	-	-	402,760	402,760	273,821	381,028
·사업출연금(350-02)	210	210	210	-	-	460	460	422	410

3. 사업 설명

1) 사업목적·내용

(1-1) 장애인고용장려금

사업목적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사업내용	장애인 의무고용률(민간 3.3%, 공공 3.8%)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장려금을 지원

(1-2)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사업목적	점진적 고용의무 이행 유도 및 중증장애인 고용 촉진
사업내용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체에서 중증장애인 고용을 늘린 경우 지원금을 지원

2) 사업개요

(2-1)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사업근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조, 제21조, 제30조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주·장애인,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한 지원과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고,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중요시하여야 한다. **제21조(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에 드는 다음 각 호의 비용 또는 기기 등을 융자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를 우대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을 고용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의 구입·설치·수리 등에 드는 비용 2. 장애인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 보조 공학기기 또는 장비 등 3. 장애인의 적정한 고용관리를 위하여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 작업 지도원, 한국수어 통역사 또는 낭독자 등을 배치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서 장애인의 고용에 필요한 비용 또는 기기 **제30조(장애인 고용장려금의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 안정을 위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제28조제1항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사업주를 포함한다)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 국정과제 - '79. 장애인 삶의 질 향상과 기본적 권리 보장' 內 '기업 대상 고용개선장려금 신설'
추진경위	○ '91. 장려금등제도 신설: 손실비용 보전제도로 장려금·지원금 지원 * 고용의무 적용업체(300인 이상) 지원금(부담기초액 50%, 2~3년) 지원 / 의무고용 미적용업체(300인 미만) 장려금(지원금의 50%, 1년) 지원 ○ '95. 장려금·지원금 지급금액 부담기초액의 80%로 통일 ○ '96. 장려금·지원금 지급기준 부담기초액의 100%로 상향 ○ '00.7월 법 개정을 통해 장려금·지원금을 '장려금'으로 통합하고, 지급단가를 장애의 경중에 따라 최저임금에 연계(100~175%, 1년) ○ '02.9월 장려금 지급단가를 최저임금과 관계없이 정액화 ○ '03.12월 지급단가 조정: 월30만원~60만원 ○ '10.1월 의무고용률 상향조정: ('10) 2.3%, ('12) 2.5%, ('14) 2.7% ○ '10.4월 지급단가 조정: 월15만원~50만원(경증장애인 근속기간에 따라 차등 지원) * 6급 장애인 입사일로부터 만 4년까지 지원('11.1.1부터 시행) ○ '15.1월 의무고용률 상향조정: ('17) 2.9%, ('19) 3.1% ○ '16.1월 지급단가 조정: 월15만원~60만원(중증여성 단가 10만원 인상) ○ '18.1월 지급단가 조정: 월30만원~60만원(중증남성 단가 10만원 인상) * 6급 장애인 4년 한시지원 및 경증장애인 근속기간별 감액제도 폐지

	○ ’20.1월 지급단가 조정: 월30만원~80만원(경증여성 5만원, 중증남성 10만원, 중증여성 20만원 단가 인상) ○ ‘21.3월 제19차 일자리 위원회(소규모 사업장이 장애인을 신규고용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 마련) ○ ‘22.1월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시행 ○ ‘23.1월 지급단가 조정: 월35만원~90만원(경증 5만원, 중증 10만원 단가 인상) ○ ‘25.5월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한시사업(3년) 종료 ○ ‘25.8월 ’기업 대상 고용개선장려금 신설‘ 국정과제 선정(79.장애인 삶의 질 향상과 기본적 권리 보장) ○ ‘26.1월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시행

(2-2) 사업규모

○ 사업기간
- (장애인고용장려금) 1991년~계속
-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2026년~계속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

(단위: 백만원)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사업비	324,747	353,371	377,377	403,220	381,438

(2-3)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공단위탁) 및 출연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사업 수혜자
- (장애인고용장려금) 장애인 의무고용률(민간 3.3%, 공공 3.8%)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중증장애인 고용을 늘린 50인 이상 100인 미만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기관명	2027년 지원금액(백만원)	지원비율(%)	법적근거
장애인고용장려금	출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410	100.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 및 제71조

3) 기능별(내역사업별) 산출 내역

(3-1) 내역사업별 세부 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계획액(수정)(A)	2027년 정부안액(B)	증감 (B-A)
합 계	403,220	381,438	△21,782
장애인고용장려금	401,370	379,788	△21,582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1,850	1,650	△200

○ **장애인고용장려금 (2026년) 401,370 → (2027년) 379,788백만원, △5.4%**

- (설명) 의무고용률 상향에 따른 지급연인원 감소 및 지급률 변동 등을 감안, '26년 대비 5.4% 감액
- (산출) ①(지급연인원) 774,830명 × ②(지급단가) 35~90만원 × ③(지급률) 78.47% + ④(운영비) 410백만원 = 379,788백만원
  * 지급연인원 : ('26) 6.21% → ('27) 의무고용률 상향, 지급연인원 증가 등을 감안하여 4.43% 축소
  * 지급률 : ('26) 80.76% → ('27) 78.47% (△2.29%p)
  * 운영비 : 210백만원(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경상경비 9,130천원 × 23개 지역본부 및 지사) + 200백만원('25.6월 고시 개정에 따른 월단위 지급 시스템 구축비)

○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2026년) 1,850 → (2027년) 1,650백만원, △10.8%**

- (설명) 지원금 전년동, 시스템 구축 완료에 따른 운영비 감소로 '26년 대비 10.8% 감액
- (산출) ①(지급연인원) 4,272명 × ②(지급단가) 386천원 = 1,650백만원
  * 지급연인원(4,272명) : 786명('24년도 50인 이상 ~ 100인 미만 사업체 중증장애인 신규채용인원 × 68.0%('24년 50인 이상 ~ 100인 미만 사업체 고용의무 미이행률) × 8개월('26.5월 고용률 확정 이후 기간)
  * 지급단가(386천원) : 평균지급단가[(중증남성 350천원×64.0%)+(중증여성 450천원×36.0%)]
    ※ 24년도 장애인고용장려금 중증 지급연인원 중 남성 비율 64.0%, 여성비율 36.0%

4) 사업효과

(4-1) 최근 5년(2023년~2027년)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 **성과지표: 장애인고용률**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목표	-	(신규)	49.1%	48.9%	48.3%
실적	-	-	48.3%	-	-
달성도	-	-	98.4%	-	-

- **측정산식 :** (장애인 취업자 수 / 만 15세 이상 64세 이하 장애인 인구) × 100
- **측정방법 및 목표치 설정근거 :** 최근 2개년 실적('24년 48.4%, '25년 48.3%)과 '26년 실적 추정치(48.1%)의 평균
- **자료수집방법/출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장애인 경제활동실태조사

(4-2) 성과지표 이외의 최근 4년(2023년~2026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연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3년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연인원 665,816명(순인원: 82,982명)
2024년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연인원 709,945명(순인원: 88,270명)
2025년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연인원 762,886명(순인원: 94,429명)
2026.7월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연인원 568,679명(순인원: 89,380명)

(4-3) 향후(2027년 이후) 기대효과

○ **(장애인고용장려금)**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촉진을 장려하고, 장애인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창출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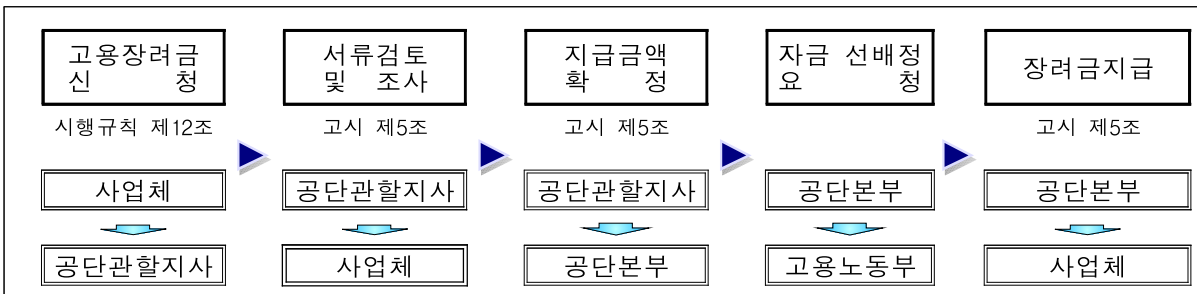
○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의 점진적 고용의무 이행 유도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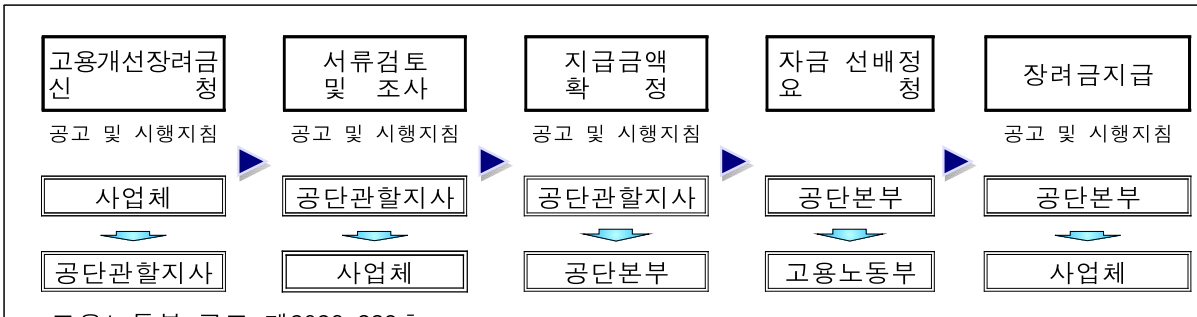
7) 사업 집행절차

- (장애인고용장려금)



* 고시 :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5-32호)

-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339호

8) 최근 3년간(2024년~2026년)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8-1) 정부 사업평가:

구분	연도	주요내용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2026년	○ 의견 : 장애인고용확대를 위한 핵심 인센티브 정책에 해당, 정책설계가 적절하고 정책 목표와 정합성이 높음, 재정효율성 강화 필요 ○ 결과 : 사업개선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2026년	○ 의견 : 연인원 66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등 많은 수요가 확인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용기회 제공과 사회통합에 기여 ○ 결과 : 양호
재정사업자율 평가	2025년	○ 의견 : 사업내용이 적정하고, 추진방식이 효율적 ○ 결과 : 보통

(8-2) 국회 지적사항: 해당없음

(8-3) 감사원, 총리실, 기타(언론, 시민단체 등) 결과: 해당없음

4. 최근 4년간(2023년~2026년) 결산내역

1) 결산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연도	당초 계획액	수정 계획액 (A)	전년도 이월액	기금변경 증감액 등	계획 현액	집행액 (B)	집행률 (B/Ax100)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3년	297,747	324,747	-	27,000	324,747	324,272	99.9	-	475
2024년	323,371	353,371	-	30,000	353,371	353,371	100.0	-	-
2025년	377,377	377,377	-	-	377,377	377,377	100.0	-	-
2026.7월	403,220	403,220	-	-	403,220	274,243	68.0	-	-

2) 연도별 결산 주요사항

연도	유형	금액 (백만원)	사유
2023년	전용	27,000	- 장애인고용장려금 사업 활성화에 따른 지급예산 부족으로 27,000백만원 증액 변경(기금운용계획변경) - 신규고용장려금 집행부진에 따른 집행잔액 475백만원 불용
2024년	전용	30,000	- 장애인고용장려금 사업 활성화에 따른 지급예산 부족으로 30,000백만원 증액 변경(기금운용계획변경)

5. 기타 추가자료: 참고자료 별첨

참고 1 장애인고용장려금 사업 개요

□ 사업 개요

○ (목적)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여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을 도모

□ 사업 내용

○ (대상)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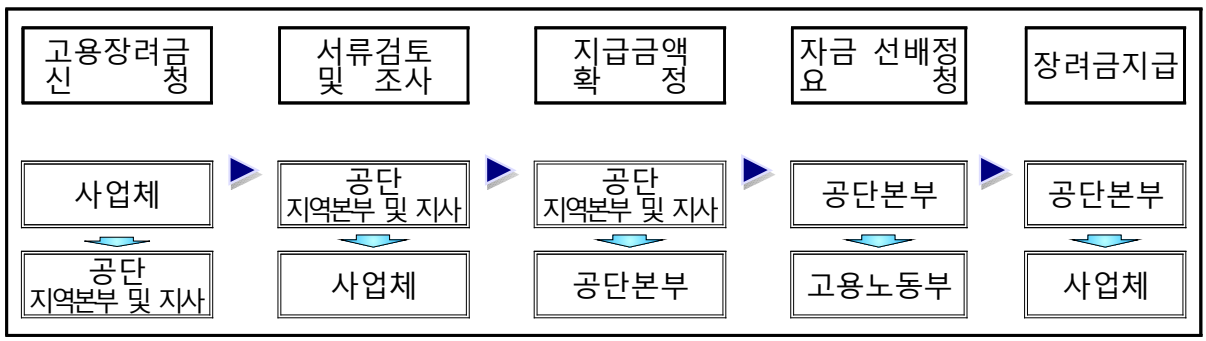
○ (지원수준) 장애정도, 성별에 따라 1인당 월 35~90만원 지원

○ (지원방식) 지급요건을 갖춘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월단위 지급

□ 그간 실적

구분(백만원)		'22년도	'23년도	'24년도	'25년도
예산 (계획)	예 산	264,451	308,635	341,872	370,744
	물 량	584,360	611,300	633,382	755,920
집행 (실적)	결 산	264,451	308,635	341,872	370,744
	물 량	608,302	665,816	709,945	762,886

□ 추진절차



□ 기대효과

○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 장애인 고용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촉진을 유도하며, 특히 취약계층(중증, 여성)의 고용활성화 기대

참고 2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개요 및 추계

□ 추진 배경

○ 부담금 징수 위주의 규제 일변도 의무고용제도에서 벗어나 **기업의 고용의무 이행** 등 **점진적 고용 개선을 지원**하고,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장려금 신설

* 민간기업 고용의무 이행률: ('22) 42.0%→('23) 42.0%→('24) 41.4%→('25) 42.1%

** 전체인구(15세~) 고용률: 63.5%/장애인구 고용률: 33.8%/중증 장애 고용률 23.3%

- 국정과제 '79. 장애인 삶의 질 향상과 기본적 권리 보장'에 '기업 대상 고용개선장려금 신설' 명시('25.8월)

□ 사업 내용

○ **(대상) 상시 50인 이상 ~ 100인 미만**의 **사업체**

○ **(요건) 중증장애인 고용이 증가한 경우**

* 직접고용만 인정, 인건비 지원 사업(재정지원일자리 등) 및 공공부문 제외

○ **(지원수준) 최대 1년간** 기존 **장려금의 50%* 지원**

* 중증 남성 350천원, 중증 여성 450천원

□ 기대 효과

○ **중소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단계적·점진적 **고용의무 이행을 유도하고 중증장애인 고용 확대**

사 업 명
(2) 장애인고용관리지원(1452-306)

1. 사업 총괄 정보

1) 사업 기본 정보

(1-1) 일반 정보

소관	실·국	과·팀	기금	계정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장애인고용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

(1-2) 코드·명칭 정보

구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080	08D	1400	1452	306
명칭	사회복지	고용	장애인고용증진	장애인고용지원	장애인고용관리지원

2)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N	Y	N	N	N	N

3)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N	N	Y	N	N	100.0	-

4) 기능별(내역사업별)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내역사업명	소관	사업시행주체
근로지원인 지원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고용시설장비지원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 지출계획 총괄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사업명	2025년 결산액	2026년 당초계획액 (A)	2026년 수정계획액	2027년 요구액	2027년 정부안액 (B)	증감액 (B-A)	증감률 (B-A) /A×100
장애인고용관리지원	260,792	275,296	275,296	350,908	350,908	75,612	27.5

1)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계획액 (수정)	2025년 계획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계획액 (수정)	2026년 계획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260,792	260,792	260,792	-	-	275,296	275,296	204,671	350,908
·근로지원인 지원	255,669	255,669	255,669	-	-	270,456	270,456	201,057	346,048
·장애인고용시설장비지원	3,450	3,450	3,450	-	-	3,150	3,150	2,346	3,150
·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	1,673	1,673	1,673	-	-	1,690	1,690	1,268	1,710

2) 비목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계획액 (수정)	2025년 계획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계획액 (수정)	2026년 계획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260,792	260,792	260,792	-	-	275,296	275,296	204,671	350,908
·사업출연금(350-02)	260,792	260,792	260,792	-	-	275,296	275,296	204,671	350,908

3. 사업 설명

1) 사업목적·내용

(1-1) 근로지원인 지원

사업목적	중증장애인에게 핵심적 업무수행 외에 기타 부수적 업무를 도와주는 근로지원인을 배치하여 안정적·지속적인 직업생활 지원
사업내용	장애특성 및 근로환경에 따라 주 40시간(1일 8시간) 한도 내에서 맞춤형 서비스 제공

(1-2) 장애인고용시설장비지원

사업목적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에게 장애인 편의시설·통근용승합차 등의 구입·설치비용을 지원하여 근로환경 개선
사업내용	장애인근로자 1인당 1천만원(중증 1천5백만원) 이내, 사업주당 3억원 한도에서 장애인근로자 2년 고용조건으로 지원

(1-3) 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

사업목적	장애인근로자에게 전문고충상담을 지원하여 직업생활유지 제고
사업내용	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를 통해 인권침해·부당해고·임금체불 등에 대한 권리구제 지원을 위한 전문상담 등 제공

2) 사업개요

(2-1)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사업근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9조의2, 제21조, 제21조의2 **제19조의2(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제공)**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중증장애인의 직업생활을 지원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근로지원인"이라 한다)을 보내 중증장애인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자의 선정 및 취소, 서비스의 제공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에 드는 다음 각 호의 비용 또는 기기 등을 융자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를 우대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을 고용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의 구입·설치·수리 등에 드는 비용 3. 장애인의 적정한 고용관리를 위하여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 작업 지도원 또는 수화 통역사 등을 배치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 **제21조의2(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1. 중증장애인 공무원: 제19조의2에 따른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제공
추진경위	**○ 근로지원인 지원** - (2007~2008) '장애인 근로지원인 사업' 사회적 일자리 사업으로 시범 실시 - (2010) 근로지원인 지원 사업 시행 - (2011.03.) 근로지원인 지원 사업 법률 근거 마련 - (2013.03.) 장애인 본인부담금 인하(시간당 500원(수화통역 700원)→시간당 300원) - (2013.06.) 근로지원인 지원 시간 확대(월 100시간→법정근로시간 주 40시간, 일 8시간) - (2022.01.) 지원 유형 구분(업무보조형, 의사소통형, 적응지도형) - (2022.01.) 장애인공무원까지 지원 대상 확대 - (2025.01.) 근로지원비용(舊. 고용관리비용) 통합 **○ 장애인고용시설장비지원** - (1995) 융자사업을 보완하여 담보능력이 없는 사업주에게 무상지원 - (2007)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해 고용보험기금 사업으로 전환 - (201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사업으로 전환 **○ 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 - (2020) 최초 사업시작(서울·부산·광주지역 3개소 운영) - (2021) 전국 권역별 사업운영(서울·부산·광주·대구·대전·경기 6개소 운영)

(2-2) 사업규모

○ 사업기간 : 1995년~계속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

(단위: 백만원)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사업비	232,998	248,006	260,792	275,296	350,908

(2-3)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사업 수혜자 : 장애인고용사업주, 장애인근로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기관명	2027년 지원금액 (백만원)	지원 비율(%)	법적근거
근로지원인 지원	출연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346,048	100.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 제71조
장애인고용시설 장비지원	출연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3,150	100.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 제71조
장애인근로자지원 센터	출연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1,710	100.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 제71조

3) 기능별(내역사업별) 산출 내역

(3-1) 내역사업별 세부 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계획액(수정)(A)	2027년 정부안액(B)	증감 (B-A)
합 계	275,296	350,908	75,612
근로지원인 지원	270,456	346,048	75,592
장애인고용시설장비지원	3,150	3,150	-
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	1,690	1,710	20

○ **근로지원인 지원 (2026년) 270,456 → (2027년) 346,048백만원, +27.9%**

- (설명) 근로지원인 양적 확대*와 처우개선** 및 전문근로지원인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증액 요구
  * 11,700명 → 12,200명(+500명) ** 근로지원인 단가 15,571원 → 19,167원(+3,596원)
- (산출) ① 지원금 : ('26) 268,911백만원 → ('27) 344,277백만원 (증 75,366백만원)
  ② 근로지원비용(내부배치형) : ('26) 24백만원 → ('27) 0원 (순감)
  * 근로지원인 사업과 지원 대상·내용 유사하여 폐지
  ③ 교육비 : ('26) 968백만원 → ('27) 1,218백만원 (증 250백만원)
  *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전문근로지원인 교육 확대(발달특화과정 신설)
  ④ 사업운영비(484백만원), 시스템 유지보수비(69백만원) 전년동

○ **장애인고용시설장비지원 (2026년) 3,150 → (2027년) 3,150백만원, 전년동**

- (설명) 편의시설 및 통근용승합자동차 설치·구입비용 전년 수준으로 요구
- (산출) ① 편의시설 지원 : ('26) 2,040백만원 → ('27) 2,040백만원 (전년동)
  ② 통근용승합자동차 지원 : ('26) 1,110백만원 → ('27) 1,110백만원 (전년동)

○ **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 (2026년) 1,690 → (2027년) 1,710백만원, +1.2%**

- (설명) 상담원의 장기근속 유도 등을 위해 생활임금 수준으로 상담원 인건비 증액 요구
- (산출) 근로자지원센터: ('26) 1,690백만원 → ('27) 1,710백만원 (증 20백만원)

4) 사업효과

(4-1) 최근 5년(2023년~2027년)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 **성과지표: 장애인고용률**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목표	-	(신규)	49.1%	48.9%	48.3%
실적	-	-	48.3%	-	-
달성도	-	-	98.4%	-	-

- **측정산식 :** (장애인 취업자 수 / 만 15세 이상 64세 이하 장애인 인구) × 100
- **측정방법 및 목표치 설정근거 :** 최근 2개년 실적('24년 48.4%, '25년 48.3%)과 '26년 실적 추정치(48.1%)의 평균
- **자료수집방법/출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장애인 경제활동실태조사

(4-2) 성과지표 이외의 최근 4년(2023년~2026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연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3년	· 근로지원인 13,571명(이용 장애인근로자 16,400명) 지원 · 시설장비 192개소 지원 · 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 6개소 운영, 고충상담 등 5,901건
2024년	· 근로지원인 13,573명(이용 장애인근로자 18,195명) 지원 · 시설장비 208개소 지원 · 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 6개소 운영, 고충상담 등 5,724건
2025년	· 근로지원인 13,377명(이용 장애인근로자 19,324명) 지원 · 시설장비 210개소 지원 · 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 6개소 운영, 고충상담 등 6,265건
2026.7월	· 근로지원인 12,316명(이용 장애인근로자 19,288명) 지원 · 시설장비 114개소 지원 · 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 6개소 운영, 고충상담 등 4,453건

(4-3) 향후(2027년 이후) 기대효과

○ 근로지원인 지원을 통해 장애인근로자의 직장적응력 제고, 중증장애인 고용사업주 고용관리 부담완화

○ 장애인 편의시설·통근용승합차 등의 구입·설치비용을 지원하여 근로환경 개선

○ 장애인근로자에게 전문고충상담을 지원하여 직업생활 유지 제고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근로지원인 지원: 지원신청 → 서류검토 및 지원평가 → 결과 통보 → 수행기관 통보 → 서비스 제공
- 장애인고용시설장비지원: 신청서 제출 → 신청서 및 구비서류 검토 → 투자의 타당성 검토 → 무상지원 결정 및 통지 → 투자완료 및 무상지원금 지급신청 → 투자확인 및 무상지원금 지급 → 사후관리
- 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 상담신청 → 기본상담 → 법률자문·분쟁조정 → 심층 심리상담 → 노동·법률교육 → 사후관리

8) 최근 3년간(2024년~2026년)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8-1) 정부 사업평가

구분	연도	주요내용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2026년	○ 의견 : 사업간 기능 경계가 불명확해 재정효율성 제고 방안 강구 필요, 성과 대비 재정투입 효율성 분석과 성과기반 집행관리 체계 구축 필요 ○ 결과 : 사업개선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2026년	○ 의견 : 중증장애인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 강화 및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기여, 근로지원인 자격 완화 및 전문인력 다양화 노력 필요, 행정절차 간소화 및 전산시스템 고도화로 업무 효율성 제고 필요 ○ 결과 : 양호
재정사업자율 평가	2024년	○ 의견 : 사업 목적 및 내용이 문제 상황과 연계되어 재정지원 필요성 존재, 내부 의견 수렴을 통한 제도 개선 노력 인정, 고용기반 확대, 고용유지 강화 등 사업 성과 우수 ○ 결과 : 보통

(8-2) 국회 지적사항

구분	연도	주요내용
결산 시정요구 ('24회계연도 결산)	2025년	○ 지적 : 근로지원인 지원체계를 보완하기 위한 적정 예산 확보, 동시지원 합리적 기준 마련, 근로지원인 처우 개선 및 안정적 인력 수급 방안 강구 필요 ○ 조치 : 근로지원인 단계적 물량 확대 추진, 동시지원 기준 명확화 및 내규에 반영, 안정적 근로지원인 인력운영을 위한 근로지원인 상시 양성기관 도입 및 보수교육 확대 실시

(8-3) 감사원, 총리실, 기타(언론, 시민단체 등) 결과: 해당없음

4. 최근 4년간(2023년~2026년) 결산내역

1) 결산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연도	당초 계획액	수정 계획액 (A)	전년도 이월액	기금변경 증감액 등	계획 현액	집행액 (B)	집행률 (B/Ax100)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3년	232,998	232,998	-	-	232,998	232,998	100.0	-	-
2024년	248,006	248,006	-	-	248,006	248,006	100.0	-	-
2025년	252,114	260,792	-	8,678	260,792	260,792	100.0	-	-
2026.7월	275,296	275,296	-	-	275,296	204,671	74.3	-	-

2) 연도별 결산 주요사항

연도	유형	금액 (백만원)	사유
2025년	전용	8,678	(기금운용계획변경) 근로지원인 지원 확대를 위해 8,678백만원 증액

5. 기타 추가자료: 참고자료 별첨

참고 장애인고용관리지원 사업 개요

1 근로지원인 지원

○ **(근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9조의2 및 제21조의2

○ **(대상)** 중증장애인 근로자 및 공무원 (사업주 동의 필수)

○ **(지원내용)** 중증장애인에게 근로지원인 배치하여 부수적 업무수행 지원 (1일 8시간, 주 40시간 한도 내, 장애인근로자 본인부담금 300원)

○ **(지원기간)** 매 회계연도 기준 1년 이내 (계속 지원 희망시 재신청 가능)

○ **(서비스절차)** 지원신청 → 서류검토 및 지원평가 → 결과 통보 → 수행기관 통보 → 서비스 제공

○ **(사업추진실적)**

(단위: 명)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7월
근로지원인 수	13,800	13,571	13,573	13,377	12,316
이용 장애인 수	15,015	16,400	18,195	19,324	19,288

○ **(주요 장애유형별 지원 현황)**

(단위: 명, %)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7월
합계	**15,015**	**16,400**	**18,195**	**19,324**	**19,288**
지적·자폐	8,873(59.1)	9,984(60.9)	11,326(62.2)	12,364(64.0)	12,564(65.1)
시각	2,005(13.4)	2,061(12.6)	2,162(11.9)	2,157(11.2)	2,106(10.9)
지체	1,732(11.5)	1,818(11.1)	1,994(11.0)	2,019(10.5)	1,915(9.9)
청각·언어	873(5.8)	902(5.5)	948(5.2)	951(4.9)	920(4.8)
뇌병변	694(4.6)	781(4.8)	849(4.7)	857(4.4)	841(4.4)
정신	706(4.7)	732(4.5)	781(4.3)	835(4.3)	798(4.1)
기타	132(0.9)	122(0.7)	135(0.7)	141(0.7)	144(0.8)

2 장애인고용시설장비지원

□ 사업개요

○ (목적)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에 필요한 편의시설·통근용 승합자동차 구입 비용을 지원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생산성 향상 및 고용안정 도모

○ (대상)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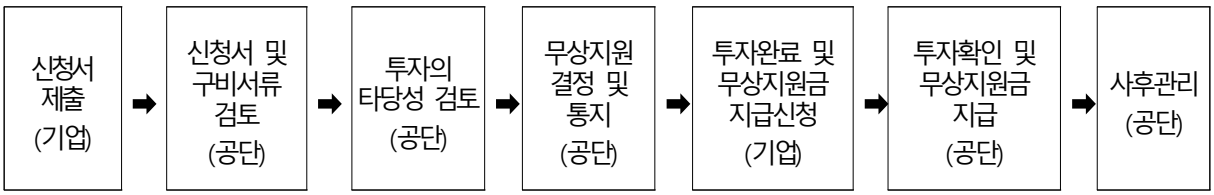
○ (사업기간) '95년 ~ 계속

○ (내용)

▪ 지원조건: 장애인고용시설장비 지원 후 2년간 장애인고용의무 이행

▪ 지원내용: 장애인근로자 1인당 1천만원(중증 1천5백만원) 이내, 사업주당 3억 원 한도로 지원, 장애인근로자 2년 고용조건

○ (지원절차)



□ 사업실적

(단위: 백만원, 명)

연도	사업체 수	지원 금액	지원에 따른 고용유지인원
'26년(7월)	114	1,771	620
'25년	210	3,430	1,116
'24년	208	3,450	1,211
'23년	192	3,449	1,182

3 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

□ 사업개요

○ (목적) 장애인근로자에게 전문고충상담을 지원하여 직업생활 유지 제고

○ (대상) 고용시장에서 인권침해·노사분쟁·장애차별·부당해고등 취업 후 고용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장애인

○ (사업기간) ’20년~계속

○ (내용) 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를 통해 인권침해·부당해고·임금체불등에 대한 권리구제 지원을 위한 전문상담등 제공

구 분	내 용
상담프로그램	장애인근로자의 취업생활 중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예방 및 해소
교육프로그램	장애인근로자 법률 및 노무 교육프로그램 지원

* (’20) 서울·부산·광주지역에 3개소 운영, (’21) 대구·대전·경기지역에 3개소 추가

□ 상담실적

(단위: 건)

구 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7월)
계	고충상담	3,954	4,128	4,316	4,584	3,299
	노무·법률교육	2,327	1,773	1,408	1,681	1,154

사 업 명
(3) 장애인취업지원(1452-311)

1. 사업 총괄 정보

1) 사업 기본 정보

(1-1) 일반 정보

소관	실·국	과·팀	기금	계정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장애인고용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

(1-2) 코드·명칭 정보

구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080	08D	1400	1452	311
명칭	사회복지	고용	장애인고용증진	장애인고용지원	장애인취업지원

2)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N	Y	N	N	N	N

3)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N	N	Y	N	N	100.0	-

4) 기능별(내역사업별)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내역사업명	소관	사업시행주체
고용의무이행지도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취업알선지원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업능력평가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중증장애인지원고용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학생취업지원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 지출계획 총괄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사업명	2025년 결산액	2026년 당초계획액 (A)	2026년 수정계획액	2027년 요구액	2027년 정부안액 (B)	증감액 (B-A)	증감률 (B-A) /A×100
장애인취업지원	33,411	36,849	36,849	37,853	31,278	△5,571	△15.1

1)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계획액 (수정)	2025년 계획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계획액 (수정)	2026년 계획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33,411	33,411	33,411	-	-	36,849	36,849	27,392	31,278
·고용의무이행지도	1,553	1,553	1,553	-	-	1,983	1,983	1,493	2,867
·장애인취업알선지원	1,268	1,268	1,268	-	-	1,054	1,054	783	1,054
·직업능력평가	5,674	5,674	5,674	-	-	5,458	5,458	4,088	5,458
·중증장애인지원고용	15,097	15,097	15,097	-	-	18,535	18,535	13,732	18,638
·장애인인턴제	6,558	6,558	6,558	-	-	6,558	6,558	4,873	-
·장애학생취업지원	3,261	3,261	3,261	-	-	3,261	3,261	2,423	3,261

2) 비목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계획액 (수정)	2025년 계획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계획액 (수정)	2026년 계획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33,411	33,411	33,411	-	-	36,849	36,849	27,392	31,278
·사업출연금(350-02)	33,411	33,411	33,411	-	-	36,849	36,849	27,392	31,278

3. 사업 설명

1) 사업목적·내용

(1-1) 고용의무이행지도

사업목적	사업주에게 일정 비율의 장애인 고용의무를 부과하여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유도
사업내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의무사업체 등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를 적극 창출하여 효과적인 고용의무 이행 지원

(1-2) 장애인취업알선지원

사업목적	장애 유형, 개별 특성과 능력에 맞는 취업가능 직무를 제시하고 취업 알선을 통한 장애인 고용촉진 활동 전개
사업내용	구인·구직·알선, 취업상담 및 지원, 취업장애인 적응지도

(1-3) 직업능력평가

사업목적	구직장애인에 대한 직업능력평가를 통해 안정적 직업생활 지도
사업내용	장애인의 직업적 가능성을 탐색하여 고용서비스 계획 수립 및 적합한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직업능력평가 실시

(1-4) 중증장애인지원고용

사업목적	중증장애인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현장 기술과 직장 적응을 위해 현장훈련을 실시하여 취업 연계 및 안정적인 직업생활 지원
사업내용	중증장애인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현장훈련과 직장 적응을 직무지도원을 통해 사업장 현장에서 先 배치 後 고용 지원

(1-5) 장애학생취업지원

사업목적	장애학생의 욕구와 능력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한 사회진출 지원
사업내용	장애학생이 졸업 후 노동시장으로 원활히 진입할 수 있도록 고용중심의 통합서비스 전달체계를 마련하여 장애학생의 욕구와 능력에 맞는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2) 사업개요

(2-1)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사업근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0조, 제13조, 제15조, 제16조, 제19조, 제24조, 제28조, 제29조 **제10조(직업지도)** ① 고용노동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인에 대한 직업상담, 직업적성 검사 및 직업능력 평가 등을 실시하고, 고용정보를 제공하는 등 직업지도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지원고용)** ① 고용노동부장관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중증장애인 중 사업주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는 직무수행이 어려운 장애인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고용을 실시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5조(취업알선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정보를 바탕으로 장애인의 희망·적성·능력과 직종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업을 알선하여야 한다. **제16조(취업알선기관 간의 연계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취업알선 업무를 수행하는 재활실시기관 간에 구인·구직 정보의 교류와 장애인 근로자 관리 등의 효율적인 연계를 꾀하고,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이를 종합적으로 집중 관리할 수 있도록 취업알선전산망 구축 등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9조(취업 후 적응지도)** ① 고용노동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의 직업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장에 고

	용되어 있는 장애인에게 작업환경 적응에 필요한 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4조(장애인 고용우수사업주에 대한 우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의 고용에 모범이 되는 사업주를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로 선정하여 사업을 지원하는 등의 조치(이하 “우대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제28조(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의무)** ①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공사 실적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업주)는 그 근로자의 총수(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실적액을 근로자의 총수로 환산한다)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의무고용률"이라 한다) 이상에 해당(그 수에서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한다. **제29조(사업주의 장애인 고용계획 수립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의 고용에 관한 계획과 그 실시 상황 기록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8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 고용계획의 수립 의무 또는 장애인 고용 의무를 현저히 불이행하면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추진경위	○ 1991. 최초 사업 시작 ○ 1999. 장애인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서 접수 업무 수탁 ○ 2005.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관련 작업능력평가 시행 ○ 2012.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수탁 수행 ○ 2014. 중증장애인지원고용 훈련수당 상향 조정(일 12천원→일 17천원) ○ 2015. 중증장애인 인턴제 사업 시행 ○ 2016. 중증장애인 인턴제 참여 장애유형 확대(11개 유형) ○ 2018. 중증장애인 인턴제 참여 장애유형 변경(10개 유형) ○ 2019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민간위탁 일원화(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시행 ○ 2020. 장애인인턴제 지원대상 확대(중증장애인→경증 장년장애인 포함) ○ 2021. 고용지원 필요도 결정(직업적 장애) 신규 시행(20개 판정평가팀 설치) ○ 2022. 중증장애인지원고용 훈련수당 상향 조정(일 17천원→일 18천원) ○ 2023. 장애인인턴제 지원대상 확대(특정유형의 중증·장년 장애인→발달장애인 포함) ○ 2025. 중증장애인지원고용 훈련수당 상향 조정(일 18천원→일 35천원)

(2-2) 사업규모

○ 사업기간 : 1991년~계속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

(단위: 백만원)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사업비	33,488	34,211	33,411	36,849	31,278

(2-3)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사업 수혜자 : 구직장애인, 구인사업주, 장애학생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기관명	2027년 지원금액 (백만원)	지원 비율(%)	법적근거
고용의무이행지도	출연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2,867	100.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 및 제71조
장애인취업알선지원	출연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1,054	100.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 및 제71조
직업능력평가	출연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5,458	100.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 및 제71조
중증장애인지원고용	출연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18,638	100.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 및 제71조
장애학생취업지원	출연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3,261	100.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 및 제71조

3) 기능별(내역사업별) 산출 내역

(3-1) 내역사업별 세부 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계획액(수정)(A)	2027년 정부안액(B)	증감 (B-A)
합 계	36,849	31,278	△5,571
고용의무이행지도	1,983	2,867	884
장애인취업알선지원	1,054	1,054	-
직업능력평가	5,458	5,458	-
중증장애인지원고용	18,535	18,638	103
장애인인턴제	6,558	-	△6,558
장애학생취업지원	3,261	3,261	-

○ **고용의무이행지도 (2026년) 1,983 → (2027년) 2,867백만원, +44.6%**

- (설명)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에 따라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서 접수 기간제 노동자 예산 증액, 의무고용제도의 강화 대응을 위한 민간기업 장애인 고용컨설팅 확대 등에 따라, '26년 대비 +44.6% 증액

- (산출) 2,867백만원
  * 사업체고용의무이행지도 : ('26년) 461백만원 → ('27년) 548백만원(+87백만원)
  *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 ('26년) 12백만원 → ('27년) 12백만원(전년 동)

* 장애인고용촉진대회 : ('26년) 100백만원 → ('27년) 100백만원(전년 동)
*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컨설팅 : ('26년) 307백만원 → ('27년) 307백만원(전년 동)
* 민간기업 장애인 고용컨설팅 : ('26년) 816백만원 → ('27년) 1,216백만원(+400백만원)
* 직무개발사업 운영 : ('26년) 214백만원 → ('27년) 428백만원(+214백만원)
* 장애인 고용업무시스템 : ('26년) 73백만원 → ('27년) 73백만원(전년 동)
* 중증장애인 알기쉬운 자료 제작·검증 : ('26년) 0 → ('27년) 183백만원(순증)

○ **장애인취업알선지원 (2026년) 1,054 → (2027년) 1,054백만원, 전년 동**

- (설명) 전년과 동일한 1,054백만원

- (산출) 1,054백만원
  * 취업알선사업 운영 : ('26년) 650백만원 → ('27년) 650백만원(전년 동)
  * 취업알선지원금 : ('26년) 25백만원 → ('27년) 25백만원(전년 동)
  * 고용업무시스템 운영 : ('26년) 157백만원 → ('27년) 157백만원(전년 동)
  * 범부처 장애인취업지원 운영 : ('26년) 114백만원 → ('27년) 114백만원(전년 동)
  * 범부처 시스템 유지관리 : ('26년) 108백만원 → ('27년) 108백만원(전년 동)

○ **직업능력평가 (2026년) 5,458 → (2027년) 5,458백만원, 전년 동**

- (설명) 전년과 동일한 5,458백만원

- (산출) 5,458백만원
  * 직업적 장애판정 및 현장평가 등 : ('26년) 3,428백만원 → ('27년) 3,428백만원(전년 동)
  * 직업능력평가센터 및 판정팀 운영 : ('26년) 2,030백만원 → ('27년) 2,030백만원(전년 동)

○ **중증장애인지원고용 (2026년) 18,535 → (2027년) 18,638백만원, +0.6%**

- (설명) 2027년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외부 직무지도원 수당에 반영함으로써, '26년 대비 +0.6% 증액

- (산출) 18,638백만원
  * 훈련운영비 : ('26년) 1,226백만원 → ('27년) 1,226백만원(전년 동)
  * 훈련수당 : ('26년) 7,571백만원 → ('27년) 7,571백만원(전년 동)
  * 숙박비 : ('26년) 193백만원 → ('27년) 193백만원(전년 동)
  * 사업체보조금 : ('26년) 4,183백만원 → ('27년) 4,183백만원(전년 동)
  * 직무지도원 수당 : ('26년) 5,362백만원 → ('27년) 5,465백만원(+103백만원)

○ **장애인인턴제 (2026년) 6,558 → (2027년) 0, 순감, 이관**

- (설명) 지출구조조정 및 재투자 요구에 따라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지원(1452-315)으로 이관 및 재조정

○ **장애학생취업지원 (2026년) 3,261 → (2027년) 3,261백만원, 전년 동**

- (설명) 전년과 동일한 3,261백만원

- (산출) 3,261백만원
  * 진로설계 : ('26년) 1,573백만원 → ('27년) 1,573백만원(전년 동)
  * 사회성훈련 : ('26년) 1,216백만원 → ('27년) 1,216백만원(전년 동)
  * 부모교육 : ('26년) 472백만원 → ('27년) 472백만원(전년 동)

4) 사업효과

(4-1) 최근 5년(2023년~2027년)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 성과지표: 장애인고용률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목표	-	(신규)	49.1%	48.9%	48.3%
실적	-	-	48.3%	-	-
달성도	-	-	98.4%	-	-

- **측정산식 :** (장애인 취업자 수 / 만 15세 이상 64세 이하 장애인 인구) × 100
- **측정방법 및 목표치 설정근거 :** 최근 2개년 실적('24년 48.4%, '25년 48.3%)과 '26년 실적 추정치(48.1%)의 평균
- **자료수집방법/출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장애인 경제활동실태조사

(4-2) 성과지표 이외의 최근 4년(2023년~2026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연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3년	▪ 취업실적: 49,934명(중증 29,598명, 59.3%) ▪ 직업능력평가: 30,170명 ▪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6,598명 ▪ 장애인 인턴제: 846명 ▪ 장애학생 취업지원: 7,297명
2024년	▪ 취업실적: 56,665명(중증 31,997명, 56.5%) ▪ 직업능력평가: 33,464명 ▪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6,707명 ▪ 장애인 인턴제: 1,161명 ▪ 장애학생 취업지원: 7,135명
2025년	▪ 취업실적: 67,478명(중증 36,969명, 54.8%) ▪ 직업능력평가: 34,441명 ▪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6,518명 ▪ 장애인 인턴제: 1,160명 ▪ 장애학생 취업지원: 7,223명
2026.7월	▪ 취업실적: 56,558명(중증 30,864명, 54.6%) ▪ 직업능력평가: 22,311명 ▪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3,377명 ▪ 장애인 인턴제: 583명 ▪ 장애학생 취업지원: 3,875명

(4-3) 향후(2027년 이후) 기대효과

○ 공공 및 민간부문에 대한 효율적인 장애인고용 의무이행지도를 통해 장애인 의무고용률(공공 3.8%, 민간 3.3%) 달성 추진
○ 장애인의 개별 역량에 맞는 단계별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구직 욕구 및 취업기술 향상을 통해 성공적인 알선취업과 경제적 자립 유도
○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6,000명 등 현장중심의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업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안정적 노동시장 진입에 기여
○ 전달체계 재정비 및 운영 효율화를 통해 18,000명의 장애인에게 취업과 고용유지에 필요한 기능 정도와 작업환경 요구에 따른 개인별 맞춤 고용서비스 지속 확대
○ 부처(교육・고용・복지) 간 연계 강화로 장애학생 7,000명에게 상담, 직업능력평가, 개별진로계획 수립, 사회성 훈련 등 서비스를 제공하여 졸업 후 사회 진입기회 확대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고용의무이행지도)**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 → 고용의무 이행지도 실시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과·고용의무 불이행 명단공표·장애인 고용컨설팅 제공) → 장애인 고용서비스 제공(구인서비스, 채용 지원 등)
- **(장애인취업알선지원)** 장애인 및 사업주의 구직·구인 등록 → 취업상담·알선 및 직업능력평가 → 취업 확정 → 취업 후 적응지도
- **(직업능력평가)** 장애인의 평가 신청 또는 의뢰 → 직업능력평가 실시 → 평가결과 통보 → 평가결과에 따른 취업지원서비스 안내 및 제공
- **(중증장애인지원고용)** 대상자 및 사업체 발굴, 구직·구인 상담 및 직업평가 → 대상자 및 사업체 선정, 직무 배치 → 사전훈련(6일 이내) 및 현장훈련(3~7주, 최대 6개월) → 취업 협의
- **(장애학생취업지원)** 서비스 신청 및 대상자 선정 → 초기상담·직업능력평가·개별진로계획 수립 등 진로설계 → 취업코칭·직무체험·일배움프로그램 등 사회성 훈련 → 취업연계 프로그램 및 취업알선

8) 최근 3년간(2024년~2026년)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8-1) 정부 사업평가:

구분	연도	주요내용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2026년	○ 의견 : 장애인 고용지원 체계 내 중복 가능성 존재, 사업 간 역할 재정립 및 통합 성과관리 체계 구축 필요, 성과 책임 구조가 분산되어 사업별 효과 측정이 제한됨 ○ 결과 : 사업개선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2026년	○ 의견 : 본 사업이 장애인고용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임을 고려할 때 지원고용 외부위탁에 따른 서비스의 질적 관리, 청년장애인 인턴지원 부족과 정규일자리로의 연계, 장애대학생 취업지원 미흡 부분 개선 필요 ○ 결과 : (장애인취업알선지원) 양호, (중증장애인지원고용, 장애인인턴제, 장애학생 취업지원) 개선필요
재정사업자율 평가	2025년	○ 의견 : 법적 근거와 국정과제, 범부처 계획 등 사업의 중요성, 목적의 명확성, 사업목적과 내용 간 연계성 및 사업추진방식의 효율성이 높고 예산 집행률이 우수함. 또한, 자체평가 및 국정감사 지적사항 등에 대해 시정을 완료하는 등 개선노력이 인정됨 ○ 결과 : 보통

(8-2) 국회 지적사항:

구분	연도	주요내용
결산 시정요구 ('23회계연도 결산)	2024년	○ 지적 :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및 장애인인턴제 사업의 취업연계율 및 고용유지율이 2019년도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고 있음 ○ 조치 -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장애인 인턴제 참여자의 사업장 취업 후 사후관리 강화 차원의 현장점검 강화 · (지원고용) 훈련 중 1회 이상 방문·유선점검, 취업 후 1개월 1회 적응지도 → 방문·유선 등 적응지도 추가 실시 · (인턴제) 취업 후 1개월 내 1회 방문 → ('25년~) 정규직 전환 후 1개월 내 1회 방문 추가 - 사업장에 정규직 전환 후 지급하는 장애인인턴제 정규직 전환지원금의 고용유지기간 도입 · 정규직 전환 후 매월 지급 → ('25년~) 정규직 전환 후 3개월 고용유지 시 지급

(8-3) 감사원, 총리실, 기타(언론, 시민단체 등) 결과: 해당없음

4. 최근 4년간(2023년~2026년) 결산내역

1) 결산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연도	당초 계획액	수정 계획액 (A)	전년도 이월액	기금변경 증감액 등	계획 현액	집행액 (B)	집행률 (B/Ax100)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3년	33,488	33,488	-	-	33,488	32,859	98.1	-	629
2024년	34,011	34,211	-	200	34,211	34,211	100.0	-	-
2025년	33,411	33,411	-	-	33,411	33,411	100.0	-	-
2026.7월	36,849	36,849	-	-	36,849	27,392	74.3	-	

2) 연도별 결산 주요사항

연도	유형	금액 (백만원)	사유
2023년	불용	629	출연금 미교부액 629백만원 불용
2024년	전용	200	(기금운용계획변경) 고용부담금 분할납부 시스템 구축을 위해 증액

5. 기타 추가자료: 참고자료 별첨

참고 장애인취업지원 사업 개요

내역사업	사업 개요
고용의무 이행지도	ㅇ (목적) 장애인고용의무 사업체에 대해 장애인고용계획 및 실시상황을 조사하고 고용의무 이행을 유도하여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 창출 ㅇ (대상) 월평균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체 ㅇ 내용 - 장애인고용계획 및 실시상황조사 실시 - 고용의무사업체 중 의무고용률 미달사업체 이행지원, 고용독려, 고용컨설팅 제공 등 ㅇ 추진체계 - (고용계획실시상황조사) 고용계획 제출명령 →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서 접수 → 변경계획 제출명령 → 변경계획 접수 → 장애인고용통계 확정 - (저조기업 이행지원) 장애인고용현황조사 → 저조기업 명단공표 사전예고 → 이행지원 및 확인 → 미이행기업 명단공표 → 후속이행점검
취업알선 지원	ㅇ (목적) 고용시장의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직업지도상담, 취업알선을 통해 고용을 촉진하여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유도 ㅇ (대상) 구직장애인 및 구인사업주 ㅇ 내용 - 구직장애인에게 구직상담, 적합사업체 알선실시(동행면접, 일자리정보 제공 등) - 구인사업장 발굴, 구인상담 및 현장방문을 통한 직무분석 등 기업의 원하는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적합한 구직장애인 알선 실시 - 취업한 장애인이 안정적으로 직업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취업후 적응지도 실시 ㅇ 추진체계 - 장애인구인·구직신청 → 구인구직상담 → 취업알선 → 취업확정 → 취업후 적응지도
직업능력 평가	ㅇ (목적) 구직장애인 및 장애인근로자에 대한 직업수준, 작업능력 등을 측정, 평가하여 장애인 고용서비스 지원 등에 활용 ㅇ (대상) 구직장애인, 장애인근로자, 장애학생 등 ㅇ 내용 - 구직장애인의 직업적 가능성을 탐색하여 적합한 직업 및 취업지원 서비스를 추천 및 보조공학기기, 근로지원인 지원 등 지원여부 및 범위를 결정하기 위한 평가 실시 -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실제 근로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작업능력을 측정하는 평가 실시 ㅇ 추진체계 - 평가신청 → 직업능력평가 실시 → 결과통보 →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내역사업	사업 개요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ㅇ (목적)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위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직장적응 지도 ㅇ (대상) 구직 장애인(지적, 자폐성장애 등 발달장애 및 정신적 장애위주) ㅇ 내용 - 사전훈련(6일 이내) 후, 직무지도원을 배치하여 현장훈련(3~7주, 필요시 최대 6개월) 실시 - 취업 후 적응지도가 필요한 경우, 최대 12개월까지 직무지도원 배치 * 훈련생수당 : 35,000원/1일 * 사업체보조금 : 19,340원/1인, 1일, 직무지도원수당 : 내부 25천원, 외부 최저임금 ㅇ 추진체계: 모집 및 선정 → 사전훈련 및 직무배치 → 현장훈련 → 취업 연계
장애학생 취업지원	ㅇ (목적) 장애학생이 졸업 후 노동시장으로 원활히 진입할 수 있도록 개인별 욕구와 능력에 맞는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ㅇ (대상) 고등학교, 전공과, 대학 과정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 ㅇ 내용 - (진로설계) 상담, 직업능력평가를 통해 개인별 맞춤형 진로계획 수립 지원 - (사회성훈련) 현장견학 · 직업훈련체험 · 일배움프로그램 등 제공 - (부모교육) 현장견학, 진로지도 교육 등 서비스 제공 ㅇ 추진체계 - (장애학생) 대상 선정→진로설계→취업준비프로그램→취업알선 서비스 제공 - (부모교육) 사업체 현장견학 및 장애학생 진로지도 교육 실시

사 업 명
(4)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지원(1452-315)

1. 사업 총괄 정보

1) 사업 기본 정보

(1-1) 일반 정보

소관	실·국	과·팀	기금	계정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장애인고용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

(1-2) 코드·명칭 정보

구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080	08D	1400	1452	315
명칭	사회복지	고용	장애인고용증진	장애인고용지원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지원

2)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N	Y	N	N	N	N

3)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N	N	Y	N	N	100.0	-

4) 기능별(내역사업별)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내역사업명	소관	사업시행주체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지원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 지출계획 총괄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사업명	2025년 결산액	2026년 당초계획액 (A)	2026년 수정계획액	2027년 요구액	2027년 정부안액 (B)	증감액 (B-A)	증감률 (B-A) /A×100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지원	26,452	27,480	27,480	36,504	34,478	6,998	25.5

1)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계획액 (수정)	2025년 계획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계획액 (수정)	2026년 계획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26,452	26,452	26,452	-	-	27,480	27,480	20,610	34,478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지원	26,452	26,452	26,452	-	-	27,480	27,480	20,610	34,478

2) 비목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계획액 (수정)	2025년 계획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계획액 (수정)	2026년 계획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26,452	26,452	26,452	-	-	27,480	27,480	20,610	34,478
·사업출연금(350-02)	26,452	26,452	26,452	-	-	27,480	27,480	20,610	34,478

3. 사업 설명

1) 사업목적·내용

(1-1)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지원

사업목적	장애인의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성공적인 취업을 지원
사업내용	'상담·취업계획 수립→직업능력향상→집중 취업알선'에 이르는 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집중 제공하여 노동시장 진입 촉진

2) 사업개요

(2-1)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사업근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0조, 제15조, 제19조 **제10조(직업지도)** ① 고용노동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인에 대한 직업상담, 직업적성 검사 및 직업능력 평가 등을 실시하고, 고용정보를 제공하는 등 직업지도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취업알선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정보를 바탕으로 장애인의 희망·적성·능력과 직종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업을 알선하여야 한다. **제19조(취업 후 적응지도)** ① 고용노동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의 직업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는 장애인에게 작업환경 적응에 필요한 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추진경위	○ 2012.~2015. 취업성공패키지Ⅰ의 장애인 유형에 해당하는 물량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 * 물량 : ('12년) 3,500명→('13년) 3,500명→('14년) 1,500명→('15년) 1,000명 ○ 2017. 일반회계로 운영되던 취업성공패키지Ⅰ의 취약계층(장애인 유형)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을 활용하여 공단에서 출연사업으로 직접 수행 ○ 2020. 저소득층 장애인 대상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Ⅱ유형 신설 * 물량 : ('20년) 9,000명(저소득층 유형 1,000명 포함) ○ 2021. 저소득층 참여자 확대(1,000명 → 3,000명) * 물량 : ('21년) 11,000명(저소득층 유형 3,000명 포함) ○ 2024. 기존 Ⅰ,Ⅱ유형 통합 운영 * 물량 : ('24년) 13,000명(저소득층 3,000명 포함) ○ 2026. 구직촉진수당 단가 인상 * 월 50만원 → 60만원(10만원 인상)

(2-2) 사업규모

○ 사업기간 : 2017년~계속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

(단위: 백만원)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사업비	21,018	24,701	26,452	27,480	34,478

(2-3)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사업 수혜자 : 18세 이상 구직장애인 및 저소득층(중위소득 60% 이하)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기관명	2027년 지원금액 (백만원)	지원 비율(%)	법적근거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출연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34,478	100.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 및 제71조

3) 기능별(내역사업별) 산출 내역

(3-1) 내역사업별 세부 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계획액(수정)(A)	2027년 정부안액(B)	증감 (B-A)
합 계	27,480	34,478	6,998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지원	27,480	34,478	6,998

○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지원 (2026년) 27,480 → (2027년) 34,478백만원, +25.5%**

- (설명) 장애인 인턴제 통합 및 이에 따른 참여인원 확대(14,000명→15,000명), 구직촉진수당 지급인원 현실화 및 조기취업성공수당 폐지 등

- (산출)

① 참여수당: ('26) 9,407백만원 → ('27안) 10,129백만원(증 722백만원)

· ('26) 1단계 참여수당 : 14,000명×0.15백만원×90%

2단계 참여수당 : (12,600명×1.704백만원×30.84%)+(12,600명×0.1백만원×60%)+(1,400명×0.1백만원)

· ('27) 1단계 참여수당 : 15,000명×0.15백만원×90%

2단계 참여수당 : (13,500명×1.704백만원×30.84%)+(13,500명×0.1백만원×60%)+(2,000명×0.1백만원)

② 구직촉진수당: ('26) 4,834백만원 → ('27안) 2,970백만원(감 1,864백만원)

· ('26) 구직촉진수당 : 3,000명×3.6백만원×41.25%

조기취업성공수당 : (252명×1백만원)+(110명×0.75백만원)+(68명×0.5백만원)+(40명×0.25백만원)

· ('27) 구직촉진수당 : 2,000명×3.6백만원×41.25%

③ 취업성공수당: ('26) 3,485백만원 → ('27안) 4,992백만원(증 1,506백만원)

· ('26) 12,600명×.1.5백만원×18.44%

· ('27) 13,500명×1.5백만원×24.65%

④ 장애인 인턴제: ('26) 0원 → ('27년안) 6,912백만원 (순증)

* 사업 전달체계 통합에 따라 장애인취업지원 내역사업에서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로 이관

· ('26) 장애인취업지원 사업에서 이관

· ('27) 인턴지원금 : 1.05백만원×1,000명×6개월×75%

정규직전환지원금 : 0.85백만원×1,000명×6개월×64%×67%

⑤ 사업운영비: ('26) 3,337백만원 → ('27안) 2,453백만원(감 884백만원)

· ('26) 29개소×115,071백만원 → ('27) 29개소×84,586백만원

⑥ 전문인력 인건비: ('26) 6,417백만원 → ('27안) 7,022백만원(증 605백만원)

· ('26) 172명×3,026천원×12개월 → ('27) 172명×3,215백만원×12개월+12명×3,215백만원×10개월

* 최저임금 연동소요로 인한 인건비 증액

4) 사업효과

(4-1) 최근 5년(2023년~2027년)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 성과지표: 장애인고용률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목표	-	(신규)	49.1%	48.9%	48.3%
실적	-	-	48.3%	-	-
달성도	-	-	98.4%	-	-

- **측정산식** : (장애인 취업자 수 / 만 15세 이상 64세 이하 장애인 인구) × 100

- **측정방법 및 목표치 설정근거** : 최근 2개년 실적('24년 48.4%, '25년 48.3%)과 '26년 실적 추정치(48.1%)의 평균

- **자료수집방법/출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장애인 경제활동실태조사

(4-2) 성과지표 이외의 최근 4년(2023년~2026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연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3년	10,917명 참여(중증 6,564명, 60.1%) * 2유형(저소득층) 2,914명 참여(중증 71.3%)
2024년	12,377명 참여(중증 7,465명, 60.3%) * 저소득층(중위소득 60%이하) 3,272명 참여(중증 73.2%)
2025년	13,020명 참여(중증 8,057명, 61.9%) * 저소득층(중위소득 60%이하) 3,530명 참여(중증 73.3%)
2026.7월	9,075명 참여(중증 5,464명, 60.2%) * 저소득층(중위소득 60%이하) 2,574명 참여(중증 73.5%)

(4-3) 향후(2027년 이후) 기대효과

○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 대한 단계별 통합적인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을 통해 취업 확대 및 안정적인 직업적응을 지원하여 경제적 자립 유도(15,000명)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8) 최근 3년간(2024년~2026년)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8-1) 정부 사업평가:

구분	연도	주요내용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2026년	○ 의견 : 참여수당 및 구직촉진수당에 대한 소득효과 검증 필요, 세부 프로그램 및 연계사업 성과지표 고도화 및 정책효과 분석체계를 체계적으로 보완, 장기고용 유지 및 질적 고용 성과에 대한 성과관리 강화 필요 ○ 결과 : 사업개선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2026년	○ 의견 : 타 사업과의 연계부족, 상담사 미충원 및 기간제 중심 운영으로 사례관리 품질이 저하되고 있고, 단기간·계약직 중심의 고용과 취업률 단일 지표 성과관리, 온라인 서비스 부재 등으로 인해 질적 개선이 필요 ○ 결과 : 개선필요

(8-2) 국회 지적사항:

구분	연도	주요내용
결산 시정요구 ('24회계연도 결산)	2025년	○ 지적 : 내실 있는 개인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 확대 추세에 맞춰 상담인력의 전문성 강화,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등 프로그램의 질 제고방안 마련 필요 ○ 조치: 사업의 품질제고를 위해 상담인력에 대한 경력별·수준별 차등화된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업무역량을 강화하고, AI잡케어*를 활용한 심층상담 도입과 취업코칭프로그램 개편을 통한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의 내실화를 추진하는 한편, 취업 후 3개월간 집중 사후관리를 추진(월 1회)하는 등 취업자의 직장적응 및 장기근속 지원도 강화하였음 * AI잡케어: AI빅데이터 분석기반 지능형 생애 경력개발 지원 서비스

(8-3) 감사원, 총리실, 기타(언론, 시민단체 등) 결과: 해당없음

4. 최근 4년간(2023년~2026년) 결산내역

1) 결산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연도	당초 계획액	수정 계획액 (A)	전년도 이월액	기금변경 증감액 등	계획 현액	집행액 (B)	집행률 (B/Ax100)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3년	21,018	21,018	-	-	21,018	20,600	98.0	-	418
2024년	24,701	24,701	-		24,701	24,701	100.0	-	-
2025년	26,452	26,452	-	-	26,452	26,452	100.0	-	-
2026.7월	27,480	27,480	-	-	27,480	20,610	75.0	-	

2) 연도별 결산 주요사항

연도	유형	금액 (백만원)	사유
2023년	불용	418	출연금 미교부액 418백만원 불용

5. 기타 추가자료: 참고자료 별첨

참고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사업 개요

□ 사업내용

○ **(사업목적)** 장애인 구직자의 취업역량을 강화 및 성공적인 취업 지원을 위해 '상담·취업계획수립→ 직업능력개발향상→ 집중 취업알선'에 이르는 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집중 제공

○ **(지원대상)** 만 18세이상 구직 장애인(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층 포함)

○ **(지원내용)** 단계별 취업지원 프로그램 및 수당 지원

1단계 상담 및 취업계획 (최대 1개월)	2단계 취업역량강화 (최대 24개월)	3단계 고용유지 (최대 12개월)
<참여수당> 15만원 · 초기상담 및 직업평가 등에 따라 개별취업활동계획(IAP) 수립	**<참여수당>** · 훈련수당(최대 28만4천원) · 커리어플러스 프로그램(최대 10만원) ① 기본형: 나의이해, 구직기술, 직업의 이해 등 ② 심화형: 스마트폰 활용교육, 로설계 등 ③ 기타: AI모의면접, 심리안정지원, 온라인 등 · 구직촉진수당 월 60만원, 6개월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층 대상)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 · 3개월 30만원 6개월 40만원, 12개월 80만원 **<장애인 인턴>** 최대 1,140만원 · 인턴지원금 105만원(최대 6개월) · 정규직전환지원금 85만원(최대 6개월) ※ 참여자가 인턴십을 통해 취업하는 경우 참여자를 고용한 사업주에 지급 (장년, 발달, 중증, 경력보유여성 대상)

□ 추진절차

취성패 참여 신청 (장애인) → 참여자 선정 (공단 소속기관) → 단계별 서비스 제공 (공단 소속기관) → 사후관리 (공단 소속기관)

□ 사업추진 실적

(단위:명)

구분	목표인원	참여인원	취업인원	취업률
'26년 7월	14,000	9,075	4,367	66.3
'25년	14,000	13,020	7,373	59.3
'24년	13,000	12,377	6,651	59.2
'23년	11,000	10,917	6,119	59.1

사 업 명
(5) 최저임금 적용제외 근로장애인 전환지원(1452-317)

1. 사업 총괄 정보

1) 사업 기본 정보

(1-1) 일반 정보

소관	실·국	과·팀	기금	계정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장애인고용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

(1-2) 코드·명칭 정보

구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080	08D	1400	1452	317
명칭	사회복지	고용	장애인고용증진	장애인고용지원	최저임금 적용제외 근로장애인 전환지원

2)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N	Y	N	N	N	N

3)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N	N	Y	N	N	100.0	-

4) 기능별(내역사업별)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내역사업명	소관	사업시행주체
최저임금 적용제외 근로장애인 전환지원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 지출계획 총괄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사업명	2025년 결산액	2026년 당초계획액 (A)	2026년 수정계획액	2027년 요구액	2027년 정부안액 (B)	증감액 (B-A)	증감률 (B-A) /A×100
최저임금 적용제외 근로장애인 전환지원	3,712	3,760	3,760	4,900	4,230	470	12.5

1)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계획액 (수정)	2025년 계획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계획액 (수정)	2026년 계획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3,712	3,712	3,712	-	-	3,760	3,760	2,761	4,230
· 최저임금 적용제외 근로장애인 전환지원	3,712	3,712	3,712	-	-	3,760	3,760	2,761	4,230

2) 비목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계획액 (수정)	2025년 계획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계획액 (수정)	2026년 계획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3,712	3,712	3,712	-	-	3,760	3,760	2,761	4,230
· 사업출연금(350-02)	3,712	3,712	3,712	-	-	3,760	3,760	2,761	4,230

3. 사업 설명

1) 사업목적·내용

(1-1) 최저임금 적용제외 근로장애인 전환지원

사업목적	직업재활시설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에게 직업재활과 훈련기회를 제공하여 최저임금 이상 양질의 일자리로 전환 지원
사업내용	참여자의 역량강화 및 취업연계를 위하여 「전환준비 ➔ 전환지원 ➔ 고용안정」3단계로 지원

2) 사업개요

(2-1)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사업근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0조 및 제15조 **제10조(직업지도)** ① 고용노동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인에 대한 직업상담, 직업적성 검사 및 직업능력 평가 등을 실시하고, 고용정보를 제공하는 등 직업지도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취업알선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정보를 바탕으로 장애인의 희망·적성·능력과 직종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업을 알선하여야 한다.
추진경위	○ ('19년) 최저임금 적용제외 제도 폐지 및 저임금 근로장애인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민관합동 TF' 운영('18.2월~'19.3월), 「직업재활시설 저임금 장애인 노동자 지원방안」 발표(관계부처 합동, '19.12월) ○ ('20년) '최저임금적용제외 근로장애인 전환지원사업' 시행

(2-2) 사업규모

○ 사업기간 : 2020년~계속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

(단위: 백만원)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사업비	3,744	3,712	3,712	3,760	4,230

(2-3)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사업 수혜자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소속 최저임금 적용제외 근로자 중 일반노동시장으로 전환을 희망하는 장애인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기관명	2027년 지원금액(백만원)	지원비율(%)	법적근거
최저임금적용제외 근로장애인 전환지원	출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4,230	100.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 및 제71조

3) 기능별(내역사업별) 산출 내역

(3-1) 내역사업별 세부 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계획액(수정)(A)	2027년 정부안액(B)	증감 (B-A)
최저임금적용제외 근로장애인전환지원	3,760	4,230	470

○ **최저임금 적용제외 근로장애인 전환지원**

: (2026) 3,760백만원 → (2027) 4,230백만원, 470백만원, +12.5%

- (설명) 최저임금 적용제외 제도 개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증가하는 적용제외 인가자 및 전환지원 수요를 반영하여 참여인원 확대 요구(800명→900명)

- (산출)

① 참여수당: ('26) 2,960백만원 → ('27안) 3,330백만원(+370백만원)

- 고용전환촉진수당: ('26) 2,880백만원 → ('27) 3,240백만원(+360백만원)
  · 900명×0.3백만원×12개월=3,240백만원
- 전환성공수당: ('26) 80백만원 → ('27안) 90백만원(+10백만원)
  · 900명×1백만원×10%(전환성공률)=90백만원

② 지원금: ('26) 480백만원 → ('27안) 540백만원(+60백만원)

- 채용사업주 지원금: ('26) 432백만원 → ('27안) 486백만원(+54백만원)
  · 900명×0.9백만원×12개월×10%(전환성공률)×50%(누적근속률)=486백만원
- 전환성공 지원금: ('26) 48백만원 → ('27안) 54백만원(+6백만원)
  · 900명×0.6백만원×10%(전환성공률)=54백만원

③ 운영비: ('26) 320백만원 → ('27안) 360백만원(+40백만원)

· 900명×0.4백만원=360백만원

4) 사업효과

(4-1) 최근 5년(2023년~2027년)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 **성과지표: 장애인고용률**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목표	-	(신규)	49.1%	48.9%	48.3%
실적	-	-	48.3%	-	-
달성도	-	-	98.4%	-	-

- **측정산식** : (장애인 취업자 수 / 만 15세 이상 64세 이하 장애인 인구) × 100
- **측정방법 및 목표치 설정근거** : 최근 2개년 실적('24년 48.4%, '25년 48.3%)과 '26년 실적 추정치(48.1%)의 평균
- **자료수집방법/출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장애인 경제활동실태조사

(4-2) 성과지표 이외의 최근 4년(2023년~2026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연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3년	참여인원 877명
2024년	참여인원 884명
2025년	참여인원 884명
2026.7월	참여인원 748명

(4-3) 향후(2027년 이후) 기대효과

○ 직업재활시설 최저임금 적용제외 근로장애인 900명에게 직업재활과 훈련기회를 제공하여 일반노동시장 최저임금 이상 양질의 일자리로 전환 제고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수행 주체	단계별 프로그램	
직업재활시설 및 공단	**1단계 : 전환준비단계 (직업재활시설)**	
	(전환준비계획) 상담, 직업능력평가, 개별취업계획 수립 **(전환준비훈련)** 직무능력향상 훈련, 직업준비교육, 직무체험 **(전환결정단계)** 향상도 평가, 위원회 등 통해 지원 방향 결정	
	경제적지원	고용전환촉진수당(장애인) : 월 30만원, 최대 2년
공단	**2단계 : 전환지원단계 (일반노동시장)**	
	(취업지원프로그램) 지원고용, 인턴제, 맞춤훈련 등 지원 **(취업알선)** 구인사업체 발굴 및 취업 연계	
공단	**3단계 : 고용안정단계 (일반노동시장)**	
	(고용유지지원) 적응지도, 근로지원인, 보조공학기기 등 지원 **(인식개선교육)**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	
	경제적지원	전환성공수당(장애인) : 3개월간 최대 100만원 사업주지원금(사업주) : 최대 90만원, 3년간 전환성공 지원금(시설) : 최대 60만원

8) 최근 3년간(2024년~2026년)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8-1) 정부 사업평가

구분	연도	주요내용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2026년	○ 의견 : 보호고용에서 일반고용으로 이행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사회적 가치와 필요성은 높음. 인가자 수 증가에 비해 수혜자 수는 정체 상황으로 예산 확대 필요성이 있으며, 전환을 통해 복지지출 감소와 경제활동 참여 확대 등 중장기적 재정효과가 기대됨 ○ 결과 : 사업개선
재정사업자율 평가	2025년	○ 의견 : 저임금 근로자의 최저임금 이상 일자리 전환을 통해 노동권의 보장, 근로조건 향상, 사회통합에 기여한 성과 인정 ○ 결과 : 우수

(8-2) 국회 지적사항: 해당없음

(8-3) 감사원, 총리실, 기타(언론, 시민단체 등) 결과: 해당없음

4. 최근 4년간(2023년~2026년) 결산내역

1) 결산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연도	당초 계획액	수정 계획액 (A)	전년도 이월액	기금변경 증감액 등	계획 현액	집행액 (B)	집행률 (B/Ax100)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3년	3,744	3,744	-	-	3,744	3,744	100.0	-	-
2024년	3,712	3,712	-	-	3,712	3,712	100.0	-	-
2025년	3,712	3,712	-	-	3,712	3,712	100.0	-	-
2026.7	3,760	3,760	-	-	3,760	2,761	73.4	-	-

2) 연도별 결산 주요사항: 해당없음

5. 기타 추가자료: 참고자료 별첨

참고 최저임금 적용제외 근로장애인 전환지원

□ 개요

○ 직업재활시설 최저임금 적용제외 근로장애인에게 직업재활과 훈련기회를 제공하여 최저임금 이상 양질의 일자리로 전환 지원('20년 신설)

○ (지원근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0조 및 제15조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최저임금 적용제외 근로장애인

○ (지원체계) 참여자의 역량강화 및 취업연계를 위하여 「전환준비 ➔ 전환지원 ➔ 고용안정」 3단계로 지원

지원단계	기간	주요 서비스
전환준비	12개월 (+연장 12개월)	직무능력향상훈련, 직업준비교육, 직무체험
전환지원	최대 12개월	지원고용, 맞춤훈련, 인턴제, 취업알선 등
고용안정	(계속)	취업 후 적응지도, 근로지원인 지원 등

○ 지원내용

대상	구분	지원금액	지원조건
근로장애인	고용전환 촉진수당	월 30만원	전환준비단계 참여기간동안 지급 (최대 24개월 참여)
	전환 성공수당	최대 100만원	6개월 이상 근로계약, 최저임금이상, 고용유지 (1개월) 20만원, (2개월) 30만원, (3개월) 50만원
채용사업주	사업주 지원금	월 최대 90만원	6개월 이상 근로계약, 최저임금이상, 고용유지 월지급액의 75% (월 90만원 한도) *최대 3년간 지원
직업재활시설	전환성공 지원금	최대 60만원	일반사업체 최저임금이상 고용유지 (1개월) 10만원, (2개월) 20만원, (3개월) 30만원

□ 사업실적

구분	참여시설	참여인원	전환성공인원(전환율)
'23년	186개소	877명	85명(9.7%)
'24년	191개소	884명	85명(9.6%)
'25년	199개소	884명	91명(10.3%)

사 업 명
(6) 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비용 지원(1452-318)

1. 사업 총괄 정보

1) 사업 기본 정보

(1-1) 일반 정보

소관	실·국	과·팀	기금	계정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장애인고용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

(1-2) 코드·명칭 정보

구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080	08D	1400	1452	318
명칭	사회복지	고용	장애인고용증진	장애인고용지원	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비용 지원

2)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N	Y	N	N	N	N

3)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N	N	Y	N	N	100.0	-

4) 기능별(내역사업별)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내역사업명	소관	사업시행주체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비용 지원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 지출계획 총괄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사업명	2025년 결산액	2026년 당초계획액 (A)	2026년 수정계획액	2027년 요구액	2027년 정부안액 (B)	증감액 (B-A)	증감률 (B-A) /A×100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비용 지원	8,039	8,518	8,518	9,704	9,651	1,133	13.3

1)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계획액 (수정)	2025년 계획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계획액 (수정)	2026년 계획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8,039	8,039	8,039	-	-	8,518	8,518	6,388	9,651
·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비용 지원	8,039	8,039	8,039	-	-	8,518	8,518	6,388	9,651

2) 비목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계획액 (수정)	2025년 계획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계획액 (수정)	2026년 계획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8,039	8,039	8,039	-	-	8,518	8,518	6,388	9,651
·사업출연금(350-02)	8,039	8,039	8,039	-	-	8,518	8,518	6,388	9,651

3. 사업 설명

1) 사업목적·내용

사업목적	저소득·저임금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출퇴근비용을 지원하여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안정적인 직업생활 유지 도모
사업내용	장애인근로자 1인당 매월 7만원 한도 내에서 출·퇴근시 소요되는 교통비 실비 지원

2) 사업개요

(2-1)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사업근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조, 제18조 **제7조(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전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 2.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 3. 제68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을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장애인 근로자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직업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거나 다음 각 호의 비용 또는 기기·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중증장애인의 출퇴근에 소요되는 교통비
추진경위	○ 2018. 04. 「제5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2018~2022)」 반영 ○ 2019. 11.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 지원 방안 연구(고려대학교) ○ 2020. 07. 사회보장사업 신설 협의 완료(보건복지부) ○ 2021. 04. 시범사업 시작 ※ 지원대상: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자 중 중위소득 100% 미만인 중증장애인 근로자 ○ 2022. 01. 지원대상 확대(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자) ○ 2022. 07. 장애인근로자 출퇴근 등에 소요되는 교통비 지원 법적 근거 마련('22.7.12. 시행) ○ 2023. 01. 지원 대상 확대(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 ○ 2024. 01. 지원단가 인상(월 5→7만원)

(2-2) 사업규모

○ 사업기간 : 2021년~계속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

(단위: 백만원)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사업비	6,948	8,027	8,039	8,518	9,651

(2-3)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사업 수혜자 :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를 받았거나,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 근로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기관명	2027년 지원금액 (백만원)	지원 비율(%)	법적근거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비용 지원	출연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9,651	100.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 및 제71조

3) 기능별(내역사업별) 산출 내역

(3-1) 내역사업별 세부 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계획액(수정)(A)	2027년 정부안액(B)	증감 (B-A)
합 계	8,518	9,651	1,133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비용 지원	8,518	9,651	1,133

○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비용 지원 **(2026년) 8,518백만원 → (2027년) 9,651백만원, +13.3%**

- (설명) 중증장애인 근로자 1인당 지급률 상승분 반영하여 지원금 1,133백만원 증액

- (산출)

① 출·퇴근 비용지원 : ('26) 8,195백만원 → ('27안) 9,328백만원(증 1,133백만원)

- ('26) 14,670명×70천원×12개월×66.5%(지급률)=8,195백만원

→ ('27) 14,670명×70천원×12개월×75.7%(지급률)=9,328백만원

② 사업운영비 : ('26) 300백만원 → ('27안) 300백만원(전년동)

- 23개기관×13백만원 = 300백만원

③ 시스템 유지보수비 : ('26) 23백만원 → ('27안) 23백만원(전년동)

- 1식×23백만원 = 23백만원

4) 사업효과

(4-1) 최근 5년(2023년~2027년)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 성과지표: 장애인고용률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목표	-	(신규)	49.1%	48.9%	48.3%
실적	-	-	48.3%	-	-
달성도	-	-	98.4%	-	-

- **측정산식** : (장애인 취업자 수 / 만 15세 이상 64세 이하 장애인 인구) × 100

- **측정방법 및 목표치 설정근거** : 최근 2개년 실적('24년 48.4%, '25년 48.3%)과 '26년 실적 추정치(48.1%)의 평균

- **자료수집방법/출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장애인 경제활동실태조사

(4-2) 성과지표 이외의 최근 4년(2023년~2026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연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3년	출퇴근비용 지급인원 14,093명
2024년	출퇴근비용 지급인원 14,670명
2025년	출퇴근비용 지급인원 14,220명
2026.7월	출퇴근비용 지급인원 14,101명

(4-3) 향후(2027년 이후) 기대효과

○ 소득수준이 낮고 근로에 따른 추가비용이 발생하여 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저소득·저임금 중증장애인 근로자(14,670명)의 안정적인 근속유지 지원

○ 저소득·저임금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제고하여 경제적 자립 지원 및 사회적 비용 감소 유도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①지원신청(장애인근로자) ⇨ ②지원접수(공단 관할 지역본부・지사) ⇨ ③지원결정(공단 관할 지역본부・지사) ⇨ ④전용카드발급(중증장애인근로자) ⇨⑤지원금지급(공단 관할 지역본부・지사, 월1회 카드 사용내역 확인 후 한도내 실비 지급)

8) 최근 3년간(2024년~2026년)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8-1) 정부 사업평가

구분	연도	주요내용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2026년	○ 의견 : 반복적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 예산집행계획을 보다 정교화할 필요가 있음 ○ 결과 : 사업개선
재정사업자율 평가	2025년	○ 의견 : 법적근거와 국정과제, 범부처 계획 등 사업의 중요성이 인정되며, 사업내용이 적절하고 추진방식이 효율적임. 재정지원 필요성이 높으며 우정사업본부와의 협약으로 예산절감 실적이 있음 ○ 결과 : 보통

(8-2) 국회 지적사항: 해당없음

(8-3) 감사원, 총리실, 기타(언론, 시민단체 등) 결과: 해당없음

4. 최근 4년간(2023년~2026년) 결산내역

1) 결산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연도	당초 계획액	수정 계획액 (A)	전년도 이월액	기금변경 증감액 등	계획 현액	집행액 (B)	집행률 (B/Ax100)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3년	6,948	6,948	-	-	6,948	5,216	75.1	-	1,732
2024년	6,597	8,027	-	1,430	8,027	8,027	100.0	-	-
2025년	6,597	8,039	-	1,442	8,039	8,039	100.0	-	-
2026.7월	8,518	8,518	-	-	8,518	6,388	75.0	-	-

2) 연도별 결산 주요사항

연도	유형	금액 (백만원)	사유
2023년	불용	1,732	출연금 미교부액 불용
2024년	전용	1,430	(기금운용계획변경)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비용 지원 확대
2025년	전용	1,442	(기금운용계획변경)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비용 지원 확대

5. 기타 추가자료: 참고자료 별첨

참고 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비용 지원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저소득·저임금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출·퇴근 시 소요되는 교통비를 지원하여 근로의욕 고취 및 안정적 직업생활 유지

□ 지원내용

○ **(지원내용)** 저소득·저임금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월 7만원 한도 내 교통비 실비 지원

○ **(지원대상)** 중증장애인 근로자 중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자*이거나,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자

*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자: 정신 및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에 대하여 인가 후, 최저임금 적용 제외(최저임금법 제7조)

○ **(지원금 용도)** 버스, 택시(장애인콜택시 포함), 기차, 자가용 주유비 용도 등

□ 사업추진체계

지원 신청	⇨	지원 접수	⇨	지원 결정 및 통보	⇨	전용카드 신청	⇨	전용카드 발급	⇨	지원금 지급
중증장애인 근로자		공단 관할 지사		공단 관할 지사		중증장애인 근로자		카드사		공단 관할 지사

사 업 명
(7)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1453-304)

1. 사업 총괄 정보

1) 사업 기본 정보

(1-1) 일반 정보

소관	실·국	과·팀	기금	계정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장애인고용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

(1-2) 코드·명칭 정보

구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080	08D	1400	1453	304
명칭	사회복지	고용	장애인고용증진	장애인고용인프라지원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2)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N	Y	N	N	N	N

3)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N	N	Y	N	N	100.0	-

4) 기능별(내역사업별)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내역사업명	소관	사업시행주체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 지출계획 총괄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사업명	2025년 결산액	2026년 당초계획액 (A)	2026년 수정계획액	2027년 요구액	2027년 정부안액 (B)	증감액 (B-A)	증감률 (B-A) /A×100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52,856	60,243	60,243	65,398	65,398	5,155	8.6

1)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계획액 (수정)	2025년 계획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계획액 (수정)	2026년 계획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52,856	52,856	52,856	-	-	60,243	60,243	53,360	65,398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52,856	52,856	52,856	-	-	60,243	60,243	53,360	65,398

2) 비목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계획액 (수정)	2025년 계획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계획액 (수정)	2026년 계획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52,856	52,856	52,856	-	-	60,243	60,243	53,360	65,398
·사업출연금(350-02)	52,856	52,856	52,856	-	-	60,243	60,243	53,360	65,398

3. 사업 설명

1) 사업목적·내용

- 취업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 특히 중증장애인에게 안전하고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을 지원

2) 사업개요

(2-1)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사업근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 **제22조(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운영하거나 설립하려는 사업주에게 그 설립·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융자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장애인 표준사업장 소속 장애인의 근로의욕 증진, 직업생활의 질 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융자 또는 지원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업주를 우대하여야 한다. 1.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2.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거나 비영리 법인 또는 다른 민간 기업으로부터 출자를 받는 등 지역 사회의 적극적 참여를 통하여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운영하거나 설립하려는 사업주
추진경위	○ 2003. 2. 19. 제2차 장애인고용촉진 5개년 계획에 포함 ○ 2007. 4. 4. 「수요자 관점의 장애인정책」대통령 업무보고 시 새로운 중증장애인고용모델 방안으로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제도 도입 제시 ○ 2007. 7. 13.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제도 도입(2008. 1. 14. 시행) ○ 2010. 1. 18. 2010년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정책 자료(고용정책협의회) ○ 2011. 2. 18.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공동출자 설립 가능 제도 도입을 위한 법 개정(2011. 3. 9. 시행) ○ 2013. 5. 28. 18대 국정과제(50-⑨) 장애인표준사업장 등 확대 ○ 2018.12. 31. 사회적 경제기업형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근거 및 지원 절차 마련 ○ 2018. 4. 19. 제5차 장애인고용촉진 5개년 계획에 장애인 표준사업장 활성화 방안 포함 ○ 2019. 12. 31. 컨소시엄형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근거 및 지원 절차 마련 ○ 2023. 5. 14. 제6차 장애인고용촉진 5개년 계획에 기업의 장애인 고용기여 방안으로써 장애인표준사업장 제시 ○ 2023. 11. 16.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수의계약 조항 국가계약법(시행령) 명시 ○ 2024. 2. 17.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수의계약 조항 지방계약법(시행령) 명시 ○ 2025. 11. 11. 지주회사 내 계열회사 간 공동출자를 통한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을 허용하도록 법 개정(2025. 11. 11. 시행)

(2-2) 사업규모

○ 사업기간 : 2002년~계속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

(단위: 백만원)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사업비	44,883	52,883	52,856	60,243	65,398

(2-3)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사업 수혜자 :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하거나 운영하려는 사업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기관명	2027년 지원금액 (백만원)	지원 비율(%)	법적근거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출연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65,398	100.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2조, 제43조 및 제71조

3) 기능별(내역사업별) 산출 내역

(3-1) 내역사업별 세부 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계획액(수정)(A)	2027년 정부안액(B)	증감 (B-A)
합 계	60,243	65,398	5,155
장애인표준사업장지원	60,243	65,398	5,155

○ **표준사업장 설립지원 (2026년) 59,060 → (2027년) 60,560백만원, +2.5%**

- (설명) 제6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 등에 따른 기업을 위한 실질적 장애인 채용 방안으로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분절된 제도유형을 통합하고 '비수도권'에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추가 설립을 지원하여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 지역균형 창출을 도모하고자, '26년 대비 +2.5% 증액 요구

- (산출) 사업장 통합 관리 효율화 및 평균 지원 규모를 상향 조정하고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의 지역균형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1,500백만원 증액

· 일반 및 자회사형 등 58,560백만원(192개소 × 305백만원)

* ('26년) 202개소×2.92억원 → ('27년) 192개소×3.05억원(감 500백만원)
유형별 표준 사업장 통합 관리 효율화 및 평균 지원 규모를 상향 조정

· 지역균형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2,000백만원(2개소 × 1,000백만원)

○ **사업운영 및 판매활동지원: (2026년) 1,183 → (2027년) 4,838백만원, +309.0%**

- (설명) 국가·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6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 등에 따른 표준사업장 수의계약 대행 업무 도입, 경영 안정 지원 다각화 수요를 감안, 3,655백만원 증액

- (산출) 사업운영 및 직접생산확인 업무 수행, 표준사업장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 수의계약 대행 업무 도입 등을 고려하여 3,655백만원 증액

· 사업운영 및 판매지원: 330백만원(330백만원 × 1식)

· 온라인 판매지원시스템: 278백만원(278백만원 × 1식)

· 우선구매 활성화지원(위탁): 200백만원(200백만원 × 1식)

· 생산품 직접생산 확인 업무: 181백만원(증 6백만원)

* 27년 직접생산확인 예정 품목수 증가(465개, +15개) 및 소요경비 단가 반영

· 표준사업장 맞춤 컨설팅(마케팅·재무) : 400백만원

* 생산품디자인 개선 홍보·마케팅비 지원: 200백만원(20백만원 × 10개소)
소규모·영세 사업체 경영 컨설팅: 200백만원 (8백만원 x 25개소)

· 표준사업장 수의계약 대행: 640백만원(640백만원 x 1식)

· 장애맞춤형 안심일터조성: 2,809백만원(기간제150명 x 18,727천원)

4) 사업효과

(4-1) 최근 5년(2023년~2027년)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 **성과지표: 장애인고용률**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목표	-	(신규)	49.1%	48.9%	48.3%
실적	-	-	48.3%	-	-
달성도	-	-	98.4%	-	-

- **측정산식 :** (장애인 취업자 수 / 만 15세 이상 64세 이하 장애인 인구) × 100

- **측정방법 및 목표치 설정근거 :** 최근 2개년 실적('24년 48.4%, '25년 48.3%)과 '26년 실적 추정치(48.1%)의 평균

- **자료수집방법/출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장애인 경제활동실태조사

(4-2) 성과지표 이외의 최근 4년(2023년~2026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연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3년	○ 표준사업장 및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선정·지원 - 표준사업장: ㈜유환 등 85개소 설립지원(창업자금 20개소 제외) -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희망별숲 등 64개소 설립지원 - 컨소시엄형 표준사업장: 지원 없음
2024년	○ 표준사업장 및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선정·지원 - 표준사업장: ㈜오보틀 등 142개소 설립지원(창업자금 10개소 제외) -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위드센 등 42개소 설립지원 - 컨소시엄형 표준사업장: 지원 없음
2025년	○ 표준사업장 및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선정·지원 - 표준사업장: 투인산업㈜ 등 168개소 설립지원(창업자금 10개소 제외) - 도약지원형 표준사업장 : ㈜희망별숲 등 11개소 지원
2026.7월	○ 표준사업장 및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선정·지원 - 표준사업장: ㈜엔티코리아 등 165개소 설립지원(창업자금 10개소 제외) - 도약지원형 표준사업장 : ㈜행복모아 등 21개소 지원

(4-3) 향후(2027년 이후)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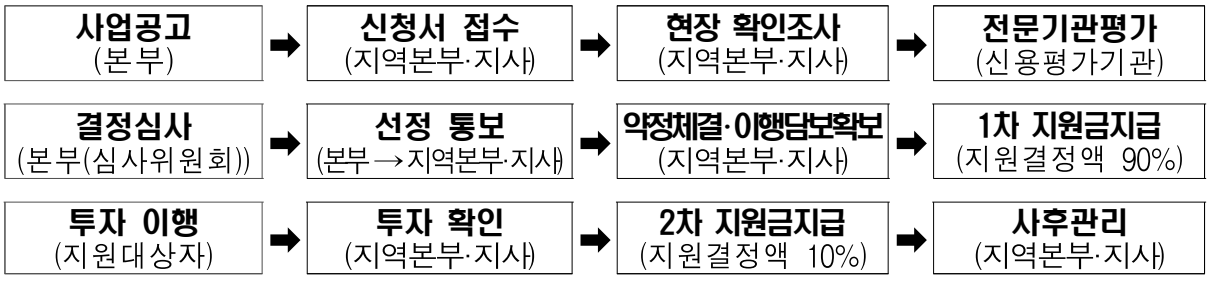
○ 장애인 표준사업장 확대 통한 중증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유지
○ 표준사업장 192개소 설립 지원(일반·자회사형 등) 및 수도권에 편중된 대기업의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2개소 지역 균형 창출을 지원
○ 표준사업장 생산품 직접생산 확인, 수의계약 대행 업무 도입, 맞춤형 컨설팅지원 등으로 판로 확대 및 자생력 제고
○ 장애맞춤형 안심일터 조성을 위한 전담팀(150명) 운영으로 양질의 고용환경 조성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절차도



8) 최근 3년간(2024년~2026년)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8-1) 정부 사업평가: 해당없음

구분	연도	주요내용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2026년	○ 의견 : 장애인 고용 확대 및 사회적 가치 창출 측면에서 높은 정책적 타당성과 성과를 가진 핵심 사업으로 지속 지원이 필요 ○ 결과 : 정상추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2026년	○ 의견 : 전년도 권고사항에 대한 구체적 후속조치와 함께, 양적 성과 및 집행 성과도 안정적 유지 ○ 결과 : 양호

(8-2) 국회 지적사항:

구분	연도	주요내용
국정감사	2024년	○ 지적 :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근로조건에 대한 관리가 미비하므로, 대한 관리 개선 계획 마련 ○ 조치 : 표준사업장 사후관리를 통해 장애인근로자 근로조건 확인, 업무담당자 교육 실시

(8-3) 감사원, 총리실, 기타(언론, 시민단체 등) 결과: 해당없음

4. 최근 4년간(2023년~2026년) 결산내역

1) 결산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연도	당초 계획액	수정 계획액 (A)	전년도 이월액	기금변경 증감액 등	계획 현액	집행액 (B)	집행률 (B/Ax100)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3년	44,883	44,883	-	-	44,883	41,583	92.6		3,300
2024년	52,883	52,883	-	-	52,883	52,883	100.0		-
2025년	52,856	52,856	-	-	52,856	52,856	100.0		-
2026.7월	60,243	60,243	-	-	60,243	53,360	88.6		-

2) 연도별 결산 주요사항

연도	유형	금액 (백만원)	사유
2023년	불용	3,300	출연금 미교부액 불용 - 투자 예정 품목의 가격 등 내역 변동사항 발생, 사업주의 이행보험증권 가입 가능금액 부족에 따른 투자금액 축소 - 하반기 투자 포기 및 지원대상자 선정 취소 발생으로 추가 선정 진행 시 회계연도 내 충분한 투자기한 부여 불가

5. 기타 추가자료: 해당없음

사 업 명
(8) 보조공학기기지원(1453-305)

1. 사업 총괄 정보

1) 사업 기본 정보

(1-1) 일반 정보

소관	실·국	과·팀	기금	계정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장애인고용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

(1-2) 코드·명칭 정보

구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080	08D	1400	1453	305
명칭	사회복지	고용	장애인고용증진	장애인고용 인프라지원	보조공학기기지원

2)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N	Y	N	N	N	N

3)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N	N	Y	N	N	100.0	-

4) 기능별(내역사업별)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내역사업명	소관	사업시행주체
보조공학기기지원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 지출계획 총괄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사업명	2025년 결산액	2026년 당초계획액 (A)	2026년 수정계획액	2027년 요구액	2027년 정부안액 (B)	증감액 (B-A)	증감률 (B-A) /A×100
보조공학기기지원	19,793	19,950	19,950	25,294	20,772	822	4.1

1)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계획액 (수정)	2025년 계획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계획액 (수정)	2026년 계획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19,793	19,793	19,793	-	-	19,950	19,950	14,962	20,772
·보조공학기기지원	19,793	19,793	19,793	-	-	19,950	19,950	14,962	20,772

2) 비목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계획액 (수정)	2025년 계획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계획액 (수정)	2026년 계획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19,793	19,793	19,793	-	-	19,950	19,950	14,962	20,772
·사업출연금(350-02)	19,793	19,793	19,793	-	-	19,950	19,950	14,962	20,772

3. 사업 설명

1) 사업목적·내용

사업목적	장애로 인한 기능저하 또는 상실로 직업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근로자에게 체계적으로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함으로써 고용안정 도모
사업내용	장애인근로자 1인당 1천5백만원(중증 2천만원) 한도 내에서 상용 또는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구입·대여 비용 지원

2) 사업개요

(2-1)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사업근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8조, 제21조, 제21조의2 **제18조(장애인 근로자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직업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거나 다음 각 호의 비용 또는 기기·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중증장애인의 출퇴근에 소요되는 교통비 2. 장애인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 보조 공학기기·장비 또는 그 공학기기·장비의 구입·대여에 드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융자 또는 지원의 대상, 기준,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에 드는 다음 각 호의 비용 또는 기기 등을 융자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를 우대하여야 한다. 2. 장애인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 보조 공학기기 또는 장비 등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인 사업주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 자신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 보조 공학기기 또는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의2(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1. 중증장애인 공무원: 제19조의2에 따른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제공 2. 장애인 공무원: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작업 보조 공학기기·장비 또는 그 공학기기·장비의 구입·대여에 드는 비용의 제공
추진경위	○ ’04. 2월 : 복권위원회에 보조공학센터 설립 신규 사업 제안 ○ ’04.12월 :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 개시 ○ ‘06. 7월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로 상용기기 전달체계 확대 ○ ‘14. 1월 : 복권기금에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으로 재원 변경 ○ ‘14. 3월 : 출퇴근용 차량개조 및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지원까지 확대 ○ ‘22. 1월 : 보조공학기기 지원 대상 장애인공무원으로 확대 ○ ‘22. 7월 : 장애인근로자 직접신청 근거마련 및 임대방식(기기지원)에서 비용지원으로 지원방식 변경 ○ ’24. 1월 : 보조공학기기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의 최대 10% 본인부담금 시행

(2-2) 사업규모

○ 사업기간 : 2004년~계속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

(단위: 백만원)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사업비	19,248	19,603	19,793	19,950	20,772

(2-3)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사업 수혜자 : 장애인근로자(공무원), 장애인고용 사업주, 장애인 사업주(4인 이하 규모)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기관명	2027년 지원금액 (백만원)	지원 비율(%)	법적근거
보조공학기기지원	출연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20,772	100.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 및 제71조

3) 기능별(내역사업별) 산출 내역

(3-1) 내역사업별 세부 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계획액(수정)(A)	2027년 정부안액(B)	증감 (B-A)
합 계	19,950	20,772	822
보조공학기기지원	19,950	20,772	822

○ 보조공학기기지원 **(2026년) 19,950백만원 → (2027년) 20,772백만원, +4.1%**

- (설명) 고기능 보조공학기기 지원금 추가 등에 따른 '26년 대비 822백만원 증액
- (산출)

① 일반보조공학기기지원금: ('26) 16,772→ ('27) 14,536백만원(감 2,236백만원)

- ('26) (15,000점×1.2백만원)-본인부담금1,228백만원
  → ('27) (1,3000점×1.2백만원)-본인부담금1,064백만원

* 일반기기 조정하여 고기능(AI·로봇 등 최신기술 기반) 보조공학기기 지원 확대

② 고기능보조공학기기지원금: ('26) 0→ ('27) 3,187백만원(순증)

- ('26) 0원 → ('27) 900점×3.8백만원-본인부담금233백만원

③ 보조공학기기개발: ('26) 1,250→ ('27) 1,250백만원 (전년동)
- 기기개발 2종×100백만원 + 국산화 10종×105백만원

④ 보조공학기기지원사업 운영비: ('26) 629→ ('27) 630백만원(증 1백만원)
- ('26) 박람회·이동전시 211백만원+사업운영비 318백만원+시스템유지보수비 100백만원
→ ('27) 박람회·이동전시 211백만원+사업운영비 319백만원+시스템유지보수비 100백만원

⑤ 맞춤형보조공학센터 운영: ('26) 1,149→ ('27) 1,169백만원(증 20백만원)
- ('26) 맞춤보조공학센터 1개소×1,149백만원 → ('27) 1개소×1,169백만원

⑥ 업무시스템 개선: ('26) 150백만원→ ('27) 0원 (순감)

4) 사업효과

(4-1) 최근 5년(2023년~2027년)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 성과지표: 장애인고용률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목표	-	(신규)	49.1%	48.9%	48.3%
실적	-	-	48.3%	-	-
달성도	-	-	98.4%	-	-

- **측정산식** : (장애인 취업자 수 / 만 15세 이상 64세 이하 장애인 인구) × 100

- **측정방법 및 목표치 설정근거** : 최근 2개년 실적('24년 48.4%, '25년 48.3%)과 '26년 실적 추정치(48.1%)의 평균

- **자료수집방법/출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장애인 경제활동실태조사

(4-2) 성과지표 이외의 최근 4년(2023년~2026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연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3년	보조공학기기 지원 인원 5,867명(8,139점)
2024년	보조공학기기 지원 인원 7,540명(11,311점)
2025년	보조공학기기 지원 인원 8,079명(12,509점)
2026.7월	보조공학기기 지원 인원 5,087명(8,239점)

(4-3) 향후(2027년 이후) 기대효과

○ 장애유형과 직무환경에 맞는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확대하여 장애로 인한 기능 저하 및 상실로 직업생활 유지가 어려운 장애인 근로자 지원

○ 첨단 보조공학기기 개발, 고가의 외산기기 국산화를 위한 연구·보급 추진

○ 체계적이고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해 안전한 보조공학기기 지원체계 마련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①지원신청(장애인근로자, 장애인공무원, 장애인고용 사업주, 장애인 사업주) ⇨ ②지원접수(공단 관할 지역본부・지사) ⇨ ③지원결정(공단 관할 지역본부・지사, 보조공학센터) ⇨ ④본인부담금 납부 및 지급보증보험제출(보조공학기기 전용몰, 서울보증보험) ⇨ ⑤사후관리(공단관할 지역본부, 지사)

8) 최근 3년간(2024년~2026년)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8-1) 정부 사업평가

구분	연도	주요내용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2026년	○ 의견 : 인공지능과 로봇이 결합된 첨단 보조공학기기 개발 보급 및 관련 예산의 증액 필요 ○ 결과 : 양호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2026년	○ 의견 : 발달장애인 대상 맞춤형 기기 개발 및 지원 확대를 통한 포용성 강화 노력 필요 ○ 결과 : 사업개선

(8-2) 국회 지적사항

구분	연도	주요내용
예결위 검토보고서 ('25년도 예산안)	2024년	○ 지적 : 여성장애인 고용 사업주 우대 개선방안 마련 ○ 조치 : 여성장애인 고용 사업주 우대 선정 고시 개정('24.12.))

(8-3) 감사원, 총리실, 기타(언론, 시민단체 등) 결과: 해당없음

4. 최근 4년간(2023년~2026년) 결산내역

1) 결산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연도	당초 계획액	수정 계획액 (A)	전년도 이월액	기금변경 증감액 등	계획 현액	집행액 (B)	집행률 (B/Ax100)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3년	19,248	19,248	-	-	19,248	19,248	100.0	-	-
2024년	19,603	19,603	-	-	19,603	19,603	100.0	-	-
2025년	19,793	19,793	-	-	19,793	19,793	100.0	-	-
2026.7월	19,950	19,950	-	-	19,950	14,962	75.0	-	-

2) 연도별 결산 주요사항 : 해당없음

5. 기타 추가자료: 참고자료 별첨

참고 보조공학기기 지원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장애로 인한 기능저하 또는 상실로 직업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에게 보조공학기기를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고용안정 도모

□ 지원내용

○ **(대상)** 장애인근로자(공무원 포함),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장애인 사업주(4인 이하 규모)

○ **(범위)** 지원대상자 1인당 1천5백만원(중증 2천만원) 한도

※ 본인부담금(기기금액의 최대 10%) 및 한도초과금액은 신청인이 부담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금 면제

○ **(방법)** 보조공학기기 구입·대여 비용 지원 및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지원

※ 보조공학기기 지원결정일로부터 2년간 고용(또는 근속) 유지

□ 사업추진체계

지원 신청	⇨	지원 접수	⇨	지원결정	⇨	본인부담금 납부 및 지급보증보험제출	⇨	사후관리
장애인근로자, 장애인공무원, 장애인고용 사업주, 장애인 사업주		공단 관할 지역본부·지사		공단 관할 지역본부·지사, 보조공학센터		보조공학기기 전용몰, 서울보증보험		공단 관할 지역본부, 지사

□ 사업실적

(단위: 명, 개소, 물품수)

구 분	지원인원	지원사업체	지원물품수
'26년 7월	5,087	3,145	8,239
'25년	8,079	4,523	12,509
'24년	7,540	4,515	11,311
'23년	5,867	3,840	8,139

사 업 명
(9) 장애인직업능력개발(1457-314)

1. 사업 총괄 정보

1) 사업 기본 정보

(1-1) 일반 정보

소관	실·국	과·팀	기금	계정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장애인고용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

(1-2) 코드·명칭 정보

구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080	08D	1400	1457	314
명칭	사회복지	고용	장애인고용촉진	장애인직업능력제고	장애인직업능력개발

2)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N	Y	N	N	Y	N

3)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N	N	Y	N	N	100.0	-

4) 기능별(내역사업별)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내역사업명	소관	사업시행주체
장애인직업능력개발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 지출계획 총괄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사업명	2025년 결산액	2026년 당초계획액 (A)	2026년 수정계획액	2027년 요구액	2027년 정부안액 (B)	증감액 (B-A)	증감률 (B-A) /A×100
장애인직업능력개발	60,611	69,448	69,448	72,586	68,159	△1,289	△1.9

1)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계획액 (수정)	2025년 계획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계획액 (수정)	2026년 계획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60,611	60,611	60,611	-	-	69,448	69,448	52,086	68,159
·장애인직업능력개발	60,611	60,611	60,611	-	-	69,448	69,448	52,086	68,159

2) 비목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계획액 (수정)	2025년 계획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계획액 (수정)	2026년 계획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60,611	60,611	60,611	-	-	69,448	69,448	52,086	68,159
· 사업출연금(350-02)	60,611	60,611	60,611	-	-	69,448	69,448	52,086	68,159

3. 사업 설명

1) 사업목적·내용

(1-1) 장애인직업능력개발

사업목적	장애인이 희망·적성·능력에 맞는 일자리 취업을 위해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직업재활 서비스를 제공하여 일자리 취업을 지원
사업내용	(직업훈련) 장애인이 희망·적성·능력에 맞는 일자리 취업을 위해 전용 훈련시설(직업능력개발원, 디지털훈련센터 및 발달장애인훈련센터)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직업재활 서비스를 제공하여 일자리 취업을 지원 (위탁훈련) 공공 및 민간훈련기관 등의 훈련비 지원을 통해 장애인 훈련 접근성 확대 및 다양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2) 사업개요

(2-1)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사업근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2조 **제12조(직업능력개발훈련)**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이 그 희망·적성·능력 등에 맞는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인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의 직업능력 개발·향상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또는 훈련 과정을 설치·운영하거나 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훈련비를 포함한다)을 융자·지원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장애인에게 훈련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융자·지원 기준 및 훈련수당의 지급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추진경위	○ 장애인직업능력개발원 및 훈련센터 운영 - 1992. 일산직업전문학교 인수·운영 * '00.3. 대전, '00.9. 부산, '02.9. 전남, 대구 직업전문학교 개원 - 1997. 제1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98~'02)에 5개 권역별 공공장애인 직업훈련기관 확충 계획 발표(12월) - 2005. 장애유형별 특화훈련 실시 - 2008. 장애유형별 특성화훈련 확대(전 센터 2개 유형 실시) - 2010. '직업능력개발원'으로 명칭 변경 - 2014. 서울맞춤훈련센터 설립 - 2016. 청각장애인훈련센터 및 서울, 인천발달장애인훈련센터 설립 - 2017. 천안·아산, 창원 맞춤훈련센터 및 광주, 대구발달장애인훈련센터 설립 - 2018. 인천, 전주, 제주 맞춤훈련센터 및 대전, 경기, 전북발달장애인훈련센터 설립 - 2019. 경기 맞춤훈련센터 및 부산, 울산, 강원, 충북, 경북, 경남발달장애인훈련센터 설립 - 2020. 서울남부, 세종, 경기북부, 충남, 전남, 제주발달장애인훈련센터 설립 - 2021. 경기맞춤훈련센터를 판교디지털훈련센터로 전환 - 2021. 구로디지털훈련센터 설립 - 2022. 광주디지털훈련센터 설립 - 2023. 인천, 천안·아산맞춤훈련센터를 인천, 천안·아산디지털훈련센터로 전환 대구디지털훈련센터 부설 설치(대구직업능력개발원 내) - 2024. 창원, 전주맞춤훈련센터를 창원, 전주디지털훈련센터로 전환 대전디지털훈련센터 부설 설치(대전직업능력개발원 내) - 2024. 부산디지털훈련센터 설립 - 2025 경기남부직업능력개발원 개원, 일산디지털훈련센터 부설 설치(일산직업능력개발원 내) ○ 장애인훈련기관(공공·민간 위탁 훈련기관) 지원 - 1995. 장애인직업훈련 및 지원에 대한 규정 마련하여 지원 시작 ※ 공공훈련기관(폴리텍 22개소), 특수학교 전공과(8개교), 민간

	훈련기관(15개소) - 2007. 학교법인 기능대학과 장애인 훈련 확대를 위한 MOU 체결 여성 및 중증장애인 우대 명문화(고시 개정) - 2017. 민간훈련, 개별적 훈련 지원을 고용보험 실업자 계좌적합 훈련으로 통합재원 이관(장고기금 → 고용보험기금) - 2018. 민간훈련기관 지원 사업 재원 이관(고용보험기금 → 장고기금) - 2019. 보건복지부 직업재활시설 등의 훈련과정 이관·지원 (21개 기관, 435명)

(2-2) 사업규모

○ 사업기간 : 1992년~계속

○ 총사업비 : 28,470백만원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

(단위: 백만원)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사업비	81,916	89,603	60,611	69,448	68,159

(2-3)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사업 수혜자 : 만 15세 이상 장애인 중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희망 또는 필요로 하는 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기관명	2027년 지원금액 (백만원)	지원 비율(%)	법적근거
장애인직업능력개발	출연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68,159	10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 제71조

3) 기능별(내역사업별) 산출 내역

(3-1) 내역사업별 세부 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계획액(수정)(A)	2027년 정부안액(B)	증감 (B-A)
합 계	69,448	68,159	△1,289
장애인직업능력개발	69,448	68,159	△1,289

○ 장애인직업능력개발 **(2026년) 69,448 → (2027년) 68,159백만원, △1.9%**

- (설명) 시각장애인전용 훈련시설 건립, 농생명특화 장애인직업능력개발 방안 연구 등 예산 완료소요 등을 감안, '26년 대비 1.6% 감액

- (산출)

① 직업능력개발원 운영 : ('26) 21,671백만원 → ('27안) 20,209백만원(감 1,462백만원)

· 교육훈련비: 6개소×1,332.3백만원=7,994백만원(감 556백만원)
· 시설관리비: 6개소×1,438.8백만원=8,633백만원(감 75백만원)
· 훈련장비: 6개소×277.2백만원=1,663백만원(증 822백만원)
· 안전한 환경환경 조성(노후시설 개보수): 6개소×291.5백만원=1,749백만원(증 105백만원)
· 디지털능력개발원: 85백만원×2종=170백만원(전년동)
· 시각장애인전용 훈련시설 건립: 1,658백만원×1식=1,658백만원(순감)
· 농생명특화 장애인직업능력개발 방안 연구: 100백만원×1식=100백만원(순감)

② 디지털훈련센터 운영 : ('26) 17,221백만원 → ('27안) 17,021백만원(감 200백만원)

· 디지털훈련센터 교육훈련비: 14개소×1,215.8백만원=17,021백만원(감 200백만원)

③ 발달장애인훈련센터 운영 : ('26) 21,552백만원 → ('27안) 22,165백만원(증 613백만원)

· 발달훈련센터 교육훈련비: 19개소×895.6백만원=17,016백만원(증 143백만원)
· 직업훈련준비과정: 19개소×102.6백만원=1,949백만원(전년동)
· 통학버스 지원: 19개소×23.9백만원=455백만원(감 400백만원)
· 가상훈련시스템 구축: 5개소×53백만원=265백만원(순감)
· 발달센터 훈련인프라 개선: 19개소×45백만원=855백만원(순증)
· 발달장애인 자기주도 재직자훈련: 14개소×135백만원=1,890백만원(증 280백만원)

④ 장애인 훈련기관 지원 : ('26) 5,789백만원 → ('27안) 5,789백만원(전년동)

· 공공훈련지원: 40명×3.21백만원=128백만원(전년동)
· 민간훈련지원: 790명×7,166백만원=5,661백만원(전년동)

⑤ 장애인 AI 활용 강화 프로그램 : ('26) 3,215백만원 → ('27안) 2,975백만원(감 240백만원)

· AI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25개소×72.4백만원=1,810백만원(전년동)
· AI 민간훈련 지원: 100명×10.7백만원=1,065백만원(감 40백만원)
· AI 훈련과정 연구용역: 100백만원×1식=100만원(감 200백만원)

4) 사업효과

(4-1) 최근 5년(2023년~2027년)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 성과지표: 장애인고용률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목표	-	(신규)	49.1%	48.9%	48.3%
실적	-	-	48.3%	-	-
달성도	-	-	98.4%	-	-

- **측정산식 :** (장애인 취업자 수 / 만 15세 이상 64세 이하 장애인 인구) × 100

- **측정방법 및 목표치 설정근거 :** 최근 2개년 실적('24년 48.4%, '25년 48.3%)과 '26년 실적 추정치(48.1%)의 평균

- **자료수집방법/출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장애인 경제활동실태조사

(4-2) 성과지표 이외의 최근 4년(2023년~2026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연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3년	○ 직업능력개발원 및 훈련센터 양성훈련 - 수료인원 3,178명, 취업인원 2,559명(취업률 80.5%) ○ 장애인훈련기관 지원(공공·민간) - 수료인원 708명, 취업인원 547명(취업률 77.3%)
2024년	○ 직업능력개발원 및 훈련센터 양성훈련 - 수료인원 3,145명, 취업인원 2,582명(취업률 82.1%) ○ 장애인훈련기관 지원(공공·민간) - 수료인원 646명, 취업인원 442명(취업률 68.4%)
2025년	○ 직업능력개발원 및 훈련센터 양성훈련 - 수료인원 3,375명, 취업인원 2,781명(취업률 82.4%) ○ 장애인훈련기관 지원(공공·민간) - 수료인원 584명, 취업인원 109명(취업률 18.7%)
2026.7월	○ 직업능력개발원 및 훈련센터 양성훈련 - 수료인원 2,540명, 취업인원 1,902명(취업률 74.9%) ○ 장애인훈련기관 지원(공공·민간) - 수료인원 52명, 취업인원 20명(취업률 38.5%)

(4-3) 향후(2027년 이후) 기대효과

○ 훈련 수요 대비 부족한 장애인 훈련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직업훈련 참여기회 확대, AI 시대에 대응하는 직업훈련과정 운영으로 장애인의 직업능력개발 강화

· (디지털훈련센터) 기업에서 요구하는 현장 인력 양성·공급하는 맞춤훈련 확대 및 4차 산업형 IT 일자리 증가 대응 및 장애인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한 훈련과정 운영

· (발달장애인훈련센터) 교육청과 연계하여 '교육(학령기) - 훈련(청년기)'의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발달장애인훈련센터를 전국 17개 시·도(19개소) 운영 및 훈련

참여 어려운 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직업훈련준비과정' 운영으로 중증장애인 훈련 서비스 강화

· (공공·민간 위탁훈련) 공공(폴리텍대학) 및 민간훈련기관 지원을 통해 가사, 이동 불편으로 직업훈련 참여가 어려운 여성, 장년 장애인 등의 훈련 접근성 제고

· (발달장애인 재직자훈련) 발달장애인 재직근로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직무 및 기초소양 훈련 제공을 통해 안정적인 장기근속을 유도

· (AI활용강화 프로그램) 장애인 AI 활용과 관련한 공단 직접훈련 및 민간위탁훈련 실시로 AI에 대한 이해 강화 및 양질의 일자리로 취업 연계 기대

○ 직업능력개발원 노후된 시설 개보수 및 장비 교체를 통해 안전한 직업훈련시설 구축

· (대전직능원 노후버스 교체) 사용연한이 도과된 노후버스를 교체하여 교육생에게 안전한 훈련환경 제공

· (일산직능원 노후승강기 교체) 노후 승강기를 교체하여 교육생에게 안전한 훈련환경 제공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단위: 백만원)

사업기간	2023년까지 기투자액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이후 투자계획	합계
2026년~2029년	-	-	-	1,658	-	26,812	28,470

7) 사업 집행절차

<장애인직업능력개발원 및 훈련센터 운영>

○ 정규훈련(융복합·특화훈련)
- 훈련생 모집: 연중 수시
- 훈련실시: 1개월 ~ 2년
- 수료: 연중 수시
- 집중취업알선: 수료 후 3월간
- 사후지원: 수료 후 1년간
  * '17년부터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연계, 1단계 집중상담・진로설계 후 훈련실시

○ 맞춤훈련
- 약정체결: 공단 ↔ 사업체
- 훈련생 모집·선발: 공단, 사업체
- 훈련실시: 공단
- 수료 및 취업: 공단 → 사업체

<장애인훈련기관 지원>

○ 공공훈련기관 훈련수당 지급
- 훈련수당 신청: 훈련기관 → 공단 지역본부(지사)
- 서류검토 및 확인: 공단 지역본부(지사)
- 훈련수당 지급: 공단 지역본부(지사) → 훈련생

○ 민간훈련기관 선정(공모)
- 훈련기관 공모: 공단본부
-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신청서 제출: 훈련기관 → 공단본부
-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공단본부 및 지역본부(지사)
- 훈련지원협의회 심의·의결: 공단본부
- 훈련기관 선정 및 발표: 공단본부 → 훈련기관
○ 민간훈련기관 선정(공모)
- 훈련기관 공모: 공단본부
-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신청서 제출: 훈련기관 → 공단본부
-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공단본부 및 지역본부(지사)
- 훈련지원협의회 심의·의결: 공단본부
- 훈련기관 선정 및 발표: 공단본부 → 훈련기관
○ 민간훈련기관 훈련참여수당 지급
-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 수료: 공단 지역본부(지사)
- 취업성공패키지 2단계 훈련실시: 훈련기관
- 훈련참여수당 신청: 훈련기관 → 공단 지역본부(지사)
- 서류검토 및 확인: 공단 지역본부(지사)
- 훈련참여수당 지급: 공단 지역본부(지사) → 훈련생

8) 최근 3년간(2024년~2026년)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8-1) 정부 사업평가

구분	연도	주요내용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2026년	○ 의견 : 정책적 필수성이 높으며 양적 운영성과와 집행성과가 우수하며, 향후 수요맞춤형 훈련체계로의 개편과 성과평가체계를 질적 중심으로 고도화 필요 ○ 결과 : 양호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2026년	○ 의견 : 타 사업과의 연계강화 및 운영 효율화를 통한 개선과 AI 활용강화 프로그램의 차별적 운영을 위한 검토 필요 ○ 결과 : 사업개선

(8-2) 국회 지적사항

구분	연도	주요내용
예결위 검토보고서 ('23회계연도 결산)	2024년	○ 지적 : 직업능력개발원 및 훈련센터 양성훈련의 경우,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정신장애 유형의 훈련 중도 탈락률이 높고 고용유지율이 저조한 측면이 있으므로, 정신장애 유형의 직업훈련 성과 제고 방안 강구 필요 ○ 조치 : 직업훈련에 접근이 어려운 장애유형(정신장애)에 대한 훈련기법을 개발하여 사전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정신장애 특화훈련 직종도 확대함

(8-3) 감사원, 총리실, 기타(언론, 시민단체 등) 결과: 해당없음

4. 최근 4년간(2023년~2026년) 결산내역

1) 결산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연도	당초 계획액	수정 계획액 (A)	전년도 이월액	기금변경 증감액 등	계획 현액	집행액 (B)	집행률 (B/Ax100)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3년	81,906	81,916	-	10	81,916	80,686	98.5	-	1,230
2024년	88,585	89,603	-	1,018	89,603	87,428	97.6	-	2,175
2025년	60,611	60,611	-	-	60,611	60,611	100.0	-	-
2026.7월	69,448	69,448	-	-	69,448	52,086	75.0	-	-

2) 연도별 결산 주요사항

연도	유형	금액 (백만원)	사유
2023년	전용	10	(기금변경)경기남부직업능력개발원 용지보상비 10백만원 증액 변경
2023년	불용	1,230	출연금 미교부액 1,230백만원 불용
2024년	전용	1,018	(기금변경)일산직업능력개발원 생활관 증축 추가소요 공사비 1,018백만원 증액 변경
2024년	불용	2,175	출연금 미교부액 2,175백만원 불용

5. 기타 추가자료: 참고자료 별첨

참고 장애인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별 훈련기능

□ 전국 39개 훈련인프라에서 직접훈련 및 사이버훈련(digital.kead.or.kr) 실시, 위탁훈련으로 공공(폴리텍) 및 민간훈련 실시

○ 예산: 68,159백만원('27년)

○ 훈련인원: 4,990명('27년 목표)

○ **공단 직접훈련** - ('27년 예산) 62,200백만원 ('27년 목표) 4,060명	직업능력 개발원 (6개소)	- 일산, 부산, 대구, 대전, 전남(함평), 경기남부(동탄) - 국내 유일의 기숙형 장애인 전용 공공훈련기관으로 모든 장애유형을 대상으로 산업수요에 맞는 복합적인 직업능력 개발훈련 서비스 제공
	디지털훈련 센터 (14개소)	- 서울, 구로, 판교, 광주, 부산, 대전, 대구, 인천, 제주, 천안아산, 전주, 창원, 일산, 부산동부 - 4차 산업혁명 대비 장애인 디지털 역량개발을 통한 IT분야 인력 양성 및 기업이 요구하는 맞춤훈련 실시
	발달장애인 훈련센터 (19개소)	- 서울, 서울남부,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경기북부,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기업과 연계하여 현장감 있게 구성한 직업체험관에서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업체험 제공 및 발달장애인 개인별 특성에 맞는 직업훈련과정 운영
○ **공단 지원훈련** - ('27년 예산) 5,789백만원 ('27년 목표) 930명	공공훈련지원 (22개소)	- 한국폴리텍대학 - 폴리텍대학 재학 중인 장애인 훈련생 및 담당 교수 지원
	민간훈련지원 (1유형, 23개소)	- 민간훈련기관에서 장애인 전용과정을 운영할 경우 훈련기관의 훈련비용 및 훈련생의 훈련수당 지원
	민간훈련지원 (2유형, 19개소)	- 장애인전문기관*에서 운영하는 훈련과정에 대해 훈련기관의 훈련비용 및 훈련생의 훈련수당 지급 * 장애인복지관, 안마수련원, 장애인단체 등
○ **사이버 훈련** - ('27년 예산) 170백만원	디지털능력 개발원	- 공무원, 공공기관, 교원임용대비 준비과정 - 직업생활 및 인문사회계열(취업전략, 인권교육, 산업안전 등), 기능계열(정보기술, 전자 등 해당 분야의 기초직무능력)에 대한 사이버훈련

사 업 명
(10) 장애인기능경기대회(1457-319)

1. 사업 총괄 정보

1) 사업 기본 정보

(1-1) 일반 정보

소관	실·국	과·팀	기금	계정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장애인고용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

(1-2) 코드·명칭 정보

구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080	08D	1400	1457	319
명칭	사회복지	고용	장애인고용증진	장애인직업능력제고	장애인기능경기대회

2)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N	Y	N	N	N	N

3)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N	N	Y	N	N	100.0	-

4) 기능별(내역사업별)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내역사업명	소관	사업시행주체
장애인기능경기대회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 지출계획 총괄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사업명	2025년 결산액	2026년 당초계획액 (A)	2026년 수정계획액	2027년 요구액	2027년 정부안액 (B)	증감액 (B-A)	증감률 (B-A) /A×100
장애인기능경기대회	4,520	5,571	5,571	8,952	8,560	2,989	53.7

1)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계획액 (수정)	2025년 계획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계획액 (수정)	2026년 계획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4,520	4,520	4,520	-	-	5,571	5,571	5,142	8,560
·장애인기능경기대회	4,520	4,520	4,520	-	-	5,571	5,571	5,142	8,560

2) 비목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계획액 (수정)	2025년 계획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계획액 (수정)	2026년 계획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4,520	4,520	4,520	-	-	5,571	5,571	5,142	8,560
·사업출연금(350-02)	4,520	4,520	4,520	-	-	5,571	5,571	5,142	8,560

3. 사업 설명

1) 사업목적·내용

(1-1) 장애인기능경기대회

사업목적	장애인 직업기능 개발 및 향상 촉진, 장애인고용 인식 개선 도모
사업내용	지방, 발달 및 전국 장애인기능경기대회 개최,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참여

2) 사업개요

(2-1)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사업근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6조의2, 제26조의 3 **제26조의2(장애인 기능경기 대회 개최)** ① 고용노동부장관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사회와 기업의 장애인고용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장애인의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의 개최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의3(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개최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의 국제교류를 통하여 기능 수준을 향상시키고 사회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에 선수단을 파견하거나 국내에서 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추진경위	○ 지방장애인기능경기대회 - 1996. 7개 시·도를 시작으로 최초 실시 - 1999. 16개 시·도 확대 개최, 민간 위탁 실시 ○ 발달장애인기능경기대회 - 1999. 최초 개최(인천) - 2002. 4개 권역별 개최 - 2008. 민간위탁 개최, 전국대회 연계(기본직종 입상자 전국대회 출전) ○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 1981.~1991. 공단 설립 전 한국장애인재활협회 등이 주관하여 개최 - 1992. 제9회 대회부터 공단이 주관하여 개최 - 2005. 서울광장 개회식 개최 등 최초로 공단 외부시설에서 대회 실시 - 2006. 지방자치단체와 공동 주최 실시 ○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 1981. 제1회 대회 참가(공단 설립 전으로 민간에서 주관) - 1995. 제4회 대회부터 공단 주관으로 참가 - 1996. 입상자 기능장려금 지급 시작 - 2011. 제8회 대회 서울 개최, 종합우승 5연패 달성 - 2016. 제9회 대회(프랑스 보르도) 참가, 종합우승 6연패 달성 - 2023. 제10회 대회(프랑스 메스) 참가, 종합우승 7연패 달성

(2-2) 사업규모

○ 사업기간 : 1992년~계속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

(단위: 백만원)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사업비	7,705	4,510	4,520	5,571	8,560

(2-3)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사업 수혜자 : 장애인, 장애인 관련기관 및 단체, 장애인고용 및 직업재활 종사자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기관명	2027년 지원금액 (백만원)	지원 비율(%)	법적근거
장애인기능경기대회	출연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8,560	100.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 제71조

3) 기능별(내역사업별) 산출 내역

(3-1) 내역사업별 세부 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계획액(수정)(A)	2027년 정부안액(B)	증감 (B-A)
합 계	5,571	8,560	2,989
장애인기능경기대회	5,571	8,560	2,989

○ 장애인기능경기대회 **(2026년) 5,571 → (2027년) 8,560백만원, +53.6%**

- (설명) 지방대회 및 전국대회 수어통역수당 인상과 국제대회 참가를 감안, '26년 대비 +53.6% 증액
- (산출) · 지방대회 104.5백만원×17개소,
  · 발달대회 68.3백만원×4개소, 전국대회 1,461백만원×1회,
  · 국제대회 5,049백만원(국제회의 36백만원, 국제대회 참가 4,023백만원, ·
  · 기능장려금 990백만원)

* 지방·전국대회 수어통역수당 인상 : ('26년) 일 10만원 → ('27년) 일 15만원

* 발달대회 운영비 인상 : ('26년) 46.1백만원×4개소 → ('27년) 46.8백만원×4개소

* '27년 국제대회 참가 : 소속 및 합동훈련 748백만, 대회참가 경비 1,406백만원, 상금 1,637백만원, 생계지원금 232백만원)

* 기능장려금 대상자 연차 증가: ('26년) 985백만원 → ('27년) 990백만원

4) 사업효과

(4-1) 최근 5년(2023년~2027년)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 성과지표: 장애인고용률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목표	-	(신규)	49.1%	48.9%	48.3%
실적	-	-	48.3%	-	-
달성도	-	-	98.4%	-	-

- **측정산식 :** (장애인 취업자 수 / 만 15세 이상 64세 이하 장애인 인구) × 100

- **측정방법 및 목표치 설정근거 :** 최근 2개년 실적('24년 48.4%, '25년 48.3%)과 '26년 실적 추정치(48.1%)의 평균

- **자료수집방법/출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장애인 경제활동실태조사

(4-2) 성과지표 이외의 최근 4년(2023년~2026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연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3년	지방대회: 17개 시·도 개최, 26직종, 2,162명 참가 발달대회: 4개 권역별 개최, 6직종, 604명 참가 전국대회: 경상북도 경주에서 개최, 39직종, 383명 참가 국제대회: 기능장려금 지급(99명), 제10회 대회 참가(종합우승 7연패)
2024년	지방대회: 17개 시·도 개최, 26직종, 2,325명 참가 발달대회: 4개 권역별 개최, 6직종, 667명 참가 전국대회: 충청북도 청주에서 개최, 40직종, 388명 참가 국제대회: 기능장려금 지급(101명)
2025년	지방대회: 17개 시·도 개최, 25직종, 2,300명 참가 발달대회: 4개 권역별 개최, 6직종, 635명 참가 전국대회: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개최, 40직종, 423명 참가 국제대회: 기능장려금 지급(101명)
2026.7월	지방대회: 17개 시·도 개최, 25직종, 2,280명 참가 발달대회: 4개 권역별 개최, 6직종, 626명 참가 전국대회: 부산광역시에서 개최 예정(9월) 국제대회: 기능장려금 지급(101명)

(4-3) 향후(2027년 이후) 기대효과

○ 기능경기대회를 통해 장애인 기능 개발·향상 및 고용촉진과 대국민 인식개선
○ '27년 국제대회 참가, 종합우승 8연패 달성을 통한 기능 강국의 위상 제고
○ 기능장려금 지급을 통한 우수 기능인의 사기진작 및 우대 풍토 조성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국내대회(지방, 발달, 전국): 대회계획 수립 → 위탁약정 체결(지방·발달대회) → 대회공고 → 원서접수 → 지방·발달대회 개최(5~6월) → 전국대회 개최(9~10월) → 대회 결과보고 → 위탁사업 결산(지방·발달대회) → 입상자 사후관리 - 국제대회: 국가대표 선발전 공고 → 원서접수 → 선발전 개최 → 국가대표 선발 → 국가대표 훈련 → 국제대회 참가 → 입상자 상금 및 기능장려금 지급 → 입상자 사후관리

8) 최근 3년간(2024년~2026년)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8-1) 정부 사업평가

구분	연도	주요내용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2026년	○ 의견 : 국제대회 준비비 증가에 대한 성과기반 평가체계 도입하여 성과관리 강화 필요, 위탁기관 성과평가 통해 사업성과 향상 및 재정 효율화 제고 노력 강화 필요, 대회 입상자 취업연계기능 강화 및 관련 지표 관리 필요 ○ 결과 : 사업개선
재정사업자율 평가	2025년	○ 의견 : 사업의 필요성과 추진체계가 효율적, 예산 집행실적 및 환류 개선노력 상대적 미흡 ○ 결과 : 보통

(8-2) 국회 지적사항: 해당없음

(8-3) 감사원, 총리실, 기타(언론, 시민단체 등) 결과: 해당없음

4. 최근 4년간(2023년~2026년) 결산내역

1) 결산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연도	당초 계획액	수정 계획액 (A)	전년도 이월액	기금변경 증감액 등	계획 현액	집행액 (B)	집행률 (B/Ax100)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3년	7,705	7,705	-	-	7,705	7,705	100.0	-	-
2024년	4,510	4,510	-	-	4,510	4,510	100.0	-	-
2025년	4,520	4,520	-	-	4,520	4,520	100.0	-	-
2026.7월	5,571	5,571	-	-	5,571	5,142	92.2	-	-

2) 연도별 결산 주요사항: 해당없음

5. 기타 추가자료: 참고자료 별첨

참고 1 장애인기능경기대회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지방·발달(예선), 전국(본선) 장애인기능경기대회 개최 및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 참가를 통해 장애인 기능 촉진 및 사회인식 개선

□ 사업규모

- 지방장애인기능경기대회: 6월 중 3일간 16개 시·도 개최, 29직종 2,900명 참가
- 발달장애인기능경기대회: 6월 중 1~2일간 4개 권역 개최, 6직종 600명 참가
-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9월 중 4일간 개최(매년 지자체 순회), 42직종 420명 참가
-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참가 및 입상자 기능장려금 지급: 4년마다 개최

□ 사업내용

대회명	지원대상	지원수준
지방대회	15세 이상 장애인	<입상자 상금> 금 50만원, 은 30만원, 동 20만원, 참가선수 참가장려금: 5만원
발달대회	15세 이상 지적·자폐성 장애인	<입상자 상금> 금 50만원, 은 30만원, 동 20만원, 참가선수 참가장려금: 5만원
전국대회	지방·발달대회 입상자 등	<입상자 상금> 금 1,200만원, 은 800만원, 동 400만원, 참가선수 참가장려금 : 10만원
국제대회	국제대회 입상자	<입상자 상금> 금 6,720만원, 은 5,600만원, 동 3,920만원 <기능장려금> 입상 차기년도부터 20년간 연 1회 지급 * 금 1년차 950만원~10년차 1,200만원

□ 지원절차

○ 국내대회 개최

대회계획 수립 ➡ 위탁약정체결 (지방·발달대회) ➡ 대회 공고 ➡ 원서접수 ➡

대회개최 ➡ 대회결과보고 ➡ 위탁사업 결산 (지방·발달대회) ➡ 입상자 사후관리

○ 국제대회 참가

국가대표선수 선발 공고 ➡ 원서 접수 ➡ 선발전 준비 ➡ 선발전 개최 ➡

국가대표선수 선발 ➡ 국가대표선수 훈련 ➡ 국제대회 참가 ➡ 입상자 상금지급

○ 국제대회 입상자 기능장려금 지급

기능장려금 지급 안내 ➡ 신청서 접수 ➡ 지급대상자 적정 여부 확인 ➡ 기능장려금 지급

참고 2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설명 및 성과

□ 현황

○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는 장애인 기능 향상 및 개발 촉진을 위해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 연합(IAF)' 주최로 4년마다 개최

- 그간 한국은 '81년 일본 도쿄 대회(제1회) 출전을 시작으로 총 10차례 모두 참가하여 종합우승 7연패라는 우수한 성적을 달성

○ **'27년 5월 제11회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핀란드) 개최** 예정으로, 대회 참가를 위해 '26년 하반기 **국가대표 선발전 개최하여 국가대표 확정 및 대회 준비를 위한 국가대표 훈련 등 실시**

* 국제대회 선발전 개최('26년 9월) → 소속 훈련('26년 10월~12월) → 합동훈련('27년 1월~4월)→ 대회 참가('27년 5월)

<역대 대회 참가 현황 및 성과>

대회(년도)	개최지	개최직종	한국 선수단		성적
			참가 직종	인원(선수)	
10회('23)	프랑스 메스	44개	34개 직종	99명(34명)	1위(금18,은4,동9)
9회('16)	프랑스 보르도	48개	39개 직종	102명(39명)	1위(금14,은8,동2)
8회('11)	한국 서울	40개	40개 직종	140명(79명)	1위(금15,은11,동12)
7회('07)	일본 시즈오카	30개	25개 직종	76명(25명)	1위(금8,은3,동2)
6회('03)	인도 뉴델리	32개	25개 직종	70명(30명)	1위(금13,은5,동2)
5회('00)	체코 프라하	35개	20개 직종	53명(20명)	1위(금9,은4,동2)
4회('95)	호주 퍼스	37개	21개 직종	50명(21명)	1위(금15,은3,동1)
3회('91)	홍콩	37개	12개 직종	33명(12명)	3위(금6,은4)
2회('85)	콜롬비아 보고타	12개	12개 직종	27명(12명)	1위(금3,은4,동2)
1회('81)	일본 도쿄	17개	17개 직종	34명(17명)	2위(금1,은4,동5)

사 업 명
(11) 장애인고용연구(1459-324)

1. 사업 총괄 정보

1) 사업 기본 정보

(1-1) 일반 정보

소관	실·국	과·팀	기금	계정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장애인고용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

(1-2) 코드·명칭 정보

구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080	08D	1400	1459	324
명칭	사회복지	고용	장애인고용증진	장애인고용연구 및인식개선	장애인고용연구

2)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N	Y	N	N	Y	N

3)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N	N	Y	N	N	100.0	-

4) 기능별(내역사업별)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내역사업명	소관	사업시행주체
장애인고용연구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 지출계획 총괄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사업명	2025년 결산액	2026년 당초계획액 (A)	2026년 수정계획액	2027년 요구액	2027년 정부안액 (B)	증감액 (B-A)	증감률 (B-A) /A×100
장애인고용연구	3,518	3,737	3,737	3,177	3,167	△570	△15.3

1)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계획액 (수정)	2025년 계획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계획액 (수정)	2026년 계획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3,518	3,518	3,518	-	-	3,737	3,737	3,356	3,167
·장애인고용연구	3,518	3,518	3,518	-	-	3,737	3,737	3,356	3,167

2) 비목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계획액 (수정)	2025년 계획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계획액 (수정)	2026년 계획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3,518	3,518	3,518	-	-	3,737	3,737	3,356	3,167
·사업출연금(350-02)	3,518	3,518	3,518	-	-	3,737	3,737	3,356	3,167

3. 사업 설명

1) 사업목적·내용

(1-1) 장애인고용연구

사업목적	- 장애인고용 관련 연구개발을 통한 장애인 고용정책 수립·집행 지원 - 국가승인통계조사 4종을 실시하여 장애인 관련 전문 통계데이터 생성·보급을 통한 합리적 정책 입안 기반 조성 - 장애인 직업 및 고용정보 개발을 통해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도모 - 교육연수 사업을 통해 장애인 고용 실무자의 전문성 강화
사업내용	- 장애인고용연구과제(정책연구, 실용연구) 수행 - 국가승인통계조사(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장애인고용패널조사, 기업체장애인고용실태조사, 발달장애인 일과 삶 실태조사) 수행 - 장애인고용 교육연수원 건립

2) 사업개요

(2-1)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사업근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 제26조 **제43조(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설립)** 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제공 및 조사·연구 4.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 등 전문요원의 양성·연수 **제26조(장애인 실태조사)**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장애인의 취업직종·근로형태·근속기간·임금수준 등 고용현황 및 장애인근로자의 산업재해 현황에 대하여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추진경위	○ 1991. 최초 사업시작 ○ 1994. 직업영역개발사업 실시 ○ 2000. 연구개발 전담조직 고용개발원 개원 ○ 2003. 사이버 교육 과정 도입 ○ 2004. 직업훈련업무 이관(직업능력개발원) 및 보조공학센터 개소 ○ 2005. 정부부문 직업영역개발사업 실시 및 대기업고용 중심의 장애인고용 및 맞춤훈련 지원 연구보고서 발간·보급 ○ 2008. 제1차 장애인고용패널조사 및 기업체 장애인고용 실태조사 실시, EDI 행동 프로그램* 개발 * 미국 윈드밀즈 프로그램(Windmills Program) 기반 장애인 인식개선 프로그램 ○ 2009. 「장애와 고용」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선정 및 보조공학 업무 이관(본부) ○ 2010.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실시 ○ 2012.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 집중 양성 지원(1,691명) ○ 2015. 「장애인 고용 종합대책」('15년) 중점 추진과제 이행 정책 지원 연구보고서 발간·보급 ○ 2017. 2017 국제장애고용포럼(IDEF) 개최 「5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수행 ○ 2018. 2018 국제장애고용포럼(IDEF) 개최 「제5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5개년 기본계획」 시행과 관련 장애인 일자리 확대 및 고용안정 등 주요쟁점 논의를 통한 전략과 대한 공유 ○ 2019. 장애인 근로능력 판정도구 개발 기존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사회경제적 환경, 장애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판정도구 개발 ○ 2020. 발달장애인 일과 삶 실태조사 실시 구직·입직 연령대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발달장애인의 교육, 취업준비, 알선, 고용유지 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와 욕구를 파악 ○ 2021. 장애인정 신규질환 총 10종 관련 고용서비스 요구사항 파악 등 정책지원 연구보고서 발간 ○ 2022. 2022 국제장애고용포럼(IDEF) 개최,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연 2회 실시(시행주기 단축), 장애인고용 교육연수원 부지 위치 확정(전북 전주시), 직업영역개발사업 본부 이관 ○ 2023. 제6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 시행에 따른 표준사업장 활성화 방안, 훈련기여 인정제도 도입 방안 연구 등을 통한 장애인 고용 여건 개선 및 취업지원서비스 강화, 발달장애인 알기 쉬운 자료 보급

(2-2) 사업규모

○ 사업기간 : 1991년~계속

○ 총사업비 : 28,483백만원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

(단위: 백만원)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사업비	4,544	3,844	3,518	3,737	3,167

(2-3)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사업 수혜자 : 고용노동부 등 정부 및 지자체, 국회 등 입법기관의 장애인 고용정책 입안자 및 사업담당자, 장애인, 장애인고용 사업주, 장애인관련 기관 및 단체, 연구기관 및 연구자, 장애인고용 및 직업재활 종사자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기관명	2027년 지원금액 (백만원)	지원 비율(%)	법적근거
장애인고용연구	출연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3,167	100.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 및 제26조

3) 기능별(내역사업별) 산출 내역

(3-1) 내역사업별 세부 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계획액(수정)(A)	2027년 정부안액(B)	증감 (B-A)
합 계	3,737	3,167	△570
장애인고용연구	3,737	3,167	△570

○ 장애인고용연구 **(2026년) 3,737 → (2027년) 3,167백만원, △15.3%**

- (설명)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실시 횟수 조정(2회→1회)을 반영하여 감액 반영
- (산출)

① 고용연구과제 수행 : 505백만원

* 고용연구과제 수행 : ('26년) 172백만원 → ('27년) 172백만원
* 보급과제 제작 : ('26년) 12백만원 → ('27년) 12백만원
* 장애인 고용정책 동향지 발간 : ('26년) 21백만원 → ('27년) 21백만원
* 발달장애인 알기 쉬운 자료 개발 : ('26년) 300백만원 → ('27년) 300백만원

② 통계조사 수행 : 2,371백만원
* 장애인고용패널조사 : ('26년) 758백만원 → ('27년) 758백만원
*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 ('26년) 1,180백만원 → ('27년) 610백만원
* 기업체장애인고용실태조사 : ('26년) 687백만원 → ('27년) 687백만원
* 발달장애인 일과 삶 실태조사 : ('26년) 316백만원 → ('27년) 316백만원
③ 교육연수과정 운영 : 175백만원
* 연수과정 운영 : ('26년) 62백만원 → ('27년) 62백만원
* 사이버콘텐츠 및 시스템 유지 : ('26년) 113백만원 → ('27년) 113백만원
④ 정보자료실 운영 : 50백만원
* 자료 구축 및 운영 : ('26년) 50백만원 → ('27년) 50백만원
⑤ EDI사이버연수원 유지관리 : 66백만원
* EDI사이버연수원 시스템 유지·관리 : ('26년) 66백만원 → ('27년) 66백만원

4) 사업효과

(4-1) 최근 5년(2023년~2027년)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 **성과지표: 장애인고용률**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목표	-	(신규)	49.1%	48.9%	48.3%
실적	-	-	48.3%	-	-
달성도	-	-	98.4%	-	-

- **측정산식 :** (장애인 취업자 수 / 만 15세 이상 64세 이하 장애인 인구) × 100
- **측정방법 및 목표치 설정근거 :** 최근 2개년 실적('24년 48.4%, '25년 48.3%)과 '26년 실적 추정치(48.1%)의 평균
- **자료수집방법/출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장애인 경제활동실태조사

(4-2) 성과지표 이외의 최근 4년(2023년~2026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연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3년	▪ 20개 연구과제 수행(고용연구 14과제, 현안연구 4과제, 위탁연구 2과제) ▪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2회), 장애인고용패널조사, 기업체장애인 고용실태조사, 발달장애인 일과 삶 실태조사 실시 ▪ 전문인력양성교육 3,430명 및 사이버연수원교육 29,058명
2024년	▪ 20개 연구과제 수행(고용연구 13과제, 현안연구 7과제) ▪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2회), 장애인고용패널조사, 기업체장애인 고용실태조사, 발달장애인 일과 삶 실태조사 실시 ▪ 전문인력양성교육 3,601명 및 사이버연수원교육 23,833명
2025년	▪ 16개 연구과제 수행(고용연구 11과제, 현안연구 5과제) ▪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2회), 장애인고용패널조사, 기업체장애인 고용실태조사, 발달장애인 일과 삶 실태조사 실시 ▪ 전문인력양성교육 3,991명 및 사이버연수원교육 27,752명
2026.7월	▪ 16개 연구과제 수행 중(고용연구 14과제, 현안연구 2과제) ▪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2회), 장애인고용패널조사, 기업체장애인 고용실태조사, 발달장애인 일과 삶 실태조사 실시 ▪ 전문인력양성교육 1,459명 및 사이버연수원교육 20,039명('26.7월 기준)

(4-3) 향후(2027년 이후) 기대효과

○ 고용연구

- 국정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과제 추진으로 단기적·장기적 대응방안을 검토하여 장애인 고용정책 방향 제시
  · 제6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23～'27) 수립 및 수행에 필요한 사업개편 및 신규 사업 실시에 따른 효과성 분석
- 실용연구를 통해 사업의 현안 대응 및 시의성 있는 시사점을 제시하고, 발달장애인을 위한 쉬운자료 개발 및 중증장애인 직업영역개발로 장애인의 정보접근성 향상과 고용기회 확대에 기여
  · 현장 수요에 기반한 실용연구를 통해 장애인 고용 사업의 정책적·실무적 근거 강화
  · 발달장애인의 취업 및 고용유지에 필요한 고용 관련 정책 등을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는 자료 2종을 개발하여 연간 390개소 이상 보급으로 정보접근성 향상에 기여
  · 장애인 당사자의 제작·검증 등 실증연구 참여를 통한 '27년 공단에 중증장애인을 채용하여 '알기 쉬운 자료 제작·검증'사업 운영(비발달장애인 제작가 2명, 발달장애인 검증가 6명) 및 맞춤형 강사 'AI·디지털 튜터' 직무 개발로 훈련커리큘럼 표준화와 매뉴얼화

○ 조사통계

- 장애인 노동시장의 기초통계자료(국가승인 통계 4종)를 구축함으로써 합리적인 장애인 고용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수요자 맞춤형 통계서비스 및 정보 공유를 통해 장애인 고용 저변 확대 및 국민 신뢰 제고
- 주요 정책대상으로 부상하고 있는 발달장애인(보호자 및 당사자)의 실태와 욕구를 매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효과적인 정책수립을 지원
  · 4종 조사결과 보고서 및 마이크로데이터를 생성하며, KOSIS 및 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한 통계자료 제공으로 연간 4,000여건 이상의 조사데이터 활용 실적 및 40건 이상의 정책정보 분석결과 창출

○ 교육연수

- 장애인고용 교육연수원 설립을 통한 장애인고용 전문인력 양성 확대, 장애인 직무역량 강화교육 등 실시('27년 목표: 전문인력양성교육 3,522명 및 사이버연수원교육 33,580명)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단위: 백만원)

사업기간	2023년까지 기투자액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이후 투자계획	합계
2021년~2027년	1,489	-	-	-	-	26,994	28,483

7) 사업 집행절차

<고용연구> ①연구수요조사(고용부,본부) 및 기본과제 선정 → ②연구계획 수립 및 계획서 심의 → ③자체연구 진행 → 연구 자문회의,중간·최종보고회 개최 → ④연구과제 평가 및 보고서 발간
<조사통계> ①통계조사 실시·관리 계획 수립 → ②공개입찰 및 계약을 통한 업체 선정 → ③조사 준비(조사표 설계,모집단 확보,표본 추출) → ④조사 실시 및 관리(시계열·원표본 유지 최대화) → ⑤데이터 검증 및 결과 분석 → ⑥보고서 작성 및 결과 공표
<교육 연수> ①교육과정 안내 → ②교육 신청 → ③교육대상자 확정 및 통보 → ④교육 수강 → ⑤수료

8) 최근 3년간(2024년~2026년)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8-1) 정부 사업평가

구분	연도	주요내용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2026년	○ 의견 : 재정 효율성 관점의 세부사업간 지출 조정이 요구됨 ○ 결과 : 감액
재정사업자율평가	2025년	○ 의견 : 국정과제와 범부처 계획에 포함되는 등 사업 내용이 적정함 ○ 결과 : 보통

(8-2) 국회 지적사항

구분	연도	주요내용
결산 시정요구('24회계연도 결산)	2025년	○ 지적 : 장애인고용 교육연수원 건립 사업 지연 관련하여 지자체와 협업체계를 강화하여 추가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 필요 ○ 조치 : 지자체 행정절차 완료됨에 따라 설계 용역 계약 체결 후 사업 정상 추진 중

(8-3) 감사원, 총리실, 기타(언론, 시민단체 등) 결과: 해당없음

4. 최근 4년간(2023년~2026년) 결산내역

1) 결산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연도	당초 계획액	수정 계획액 (A)	전년도 이월액	기금변경 증감액 등	계획 현액	집행액 (B)	집행률 (B/Ax100)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3년	4,544	4,544	-	-	4,544	4,493	98.9	-	51
2024년	3,844	3,844	-	-	3,844	3,844	100.0	-	-
2025년	3,518	3,518	-	-	3,518	3,518	100.0	-	-
2026년	3,737	3,737	-	-	3,737	3,356	89.8	-	-

2) 연도별 결산 주요사항

연도	유형	금액 (백만원)	사유
2023년	불용	51	출연금 미교부액 51백만원 불용

5. 기타 추가자료: 참고자료 별첨

참고 1 장애인고용연구 세부사업 개요

□ 사업 개요

사업명	목적
고용연구개발 (정책연구, 실용연구)	- 장애인 고용 관련 연구개발을 통한 장애인 고용정책 수립·집행 지원 - 현장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실용과제 수행을 통해 장애인 고용 관련 사업 및 정책 수행·확대 지원 - 발달장애인의 직업영량 및 고용안정에 도움을 주는 고용정보서(알기 쉬운 자료) 개발·보급
조사통계	- 장애인 관련 전문 통계 데이터 생성·보급을 통한 합리적 정책 입안 기반 조성
교육연수	- 장애인고용 실무자의 전문성과 핵심역량을 강화

□ 사업 내용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 수준
고용연구개발 (정책연구, 실용연구)	고용노동부 등 정부 및 지자체, 국회 등 입법기관의 장애인 고용정책 입안자 및 사업담당자, 장애인, 장애인고용 사업주, 장애인관련 기관 및 단체, 연구기관 및 연구자, 장애인고용 및 직업재활 종사자 등	수요자 대상 연구개발과제 제공
조사통계	고용노동부 등 정부 및 지자체, 국회 등 입법기관의 장애인 고용정책 입안자 및 사업담당자, 장애인, 장애인고용 사업주, 장애인관련 기관 및 단체, 연구기관 및 연구자, 장애인고용 및 직업재활 종사자 등	수요자 대상 기초통계데이터 및 분석정보 제공
교육연수	장애인, 장애인고용 사업주, 장애인고용 사업체 인사담당자, 장애인관련 기관 및 단체 종사자, 장애인고용 및 직업재활 종사자 등	수요자 대상 교육 제공

□ 연도별 추진 실적

구 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고용연구개발	기본	기본연구과제	17개	17개	14개	13개	11개
	수시	현안연구과제	5개	2개	6개	7개	5개
	알기 쉬운 자료 개발(21년도 이후 개발)		3종	3종	3종	3종	3종
조사통계	장애인 고용 통계조사 (4종)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1회	2회	2회	2회	2회
		장애인고용패널조사	1회	1회	1회	1회	1회
		기업체장애인고용실태조사	1회	1회	1회	1회	1회
		발달장애인의 일과 삶 실태조사	1회	1회	1회	1회	1회
교육연수	전문인력양성교육		2,830명	2,950명	3,430명	3,601명	3,991명
	사이버연수원		30,631명	41,213명	28,178명	23,833명	27,752명
기타 연구성과 확산	학술지 발간		4회	4회	4회	4회	4회
	동향지 발간		6회	6회	6회	6회	6회
	학술대회 개최		1회	1회	1회	1회	1회
	정책토론회 개최		2회	3회	3회	3회	2회
	국제장애고용포럼 개최		-	1회	-	-	1회

참고 2 장애인고용 통계조사 4종 현황

구 분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장애인고용패널조사 (3차 코호트 1차조사)	기업체장애인고용 실태조사	발달장애인 일과 삶 실태조사
조사주체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조사목적	장애인 경제활동 규모 파악	노동시장에서의 이동 과정 및 장애인 고용서비스 이용 실태와 성과 등 파악	기업의 고용실태 및 정책수요 파악	발달장애인의 일과 삶 실태와 서비스 욕구 파악
모집단	(상반기)매년 5월 15일 (하반기)매년 10월 15일 기준 우리나라 만 15세 이상 등록장애인	장애인 확장* 경제활동인구 *일할 의사가 없는 비경제활동인구 제외	2023년 12월 말 기준 상시근로자 1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우리나라 전체 기업체	매년 6월 15일 기준 우리나라 만 15세 이상 발달장애인
표집틀	전년 말, 6월 말 기준 보건복지부 등록장애인 명부	전년 말 기준 보건복지부 등록장애인 명부	2023년 12월 기준 통계청 기업통계등록부	전년 말 기준 보건복지부 등록장애인 명부
조사표본	만 15세 이상 등록 장애인 11,000명	만 15세 이상 등록장애인 4,500명 내외	상시 1인 이상 기업체 표본조사 (기본조사: 30,000여개, 심층조사: 6,000여개)	조사 참여 가능 발달장애인 1천5백명 이상 및 보호자 3천명
조사방법	TAPI를 활용한 면접 타계식 조사	TAPI를 활용한 면접 타계식 조사	기본조사: 전화조사 심층조사: TAPI를 활용한 면접 타계식 조사	TAPI를 활용한 면접 타계식 조사
조사연혁	·2010년: 1회 시범실시 ·2013년~2021년: 연 1회 ·2022년~: 연 2회	·2008~2015년: 1차 코호트 ·2016~2023년: 2차 코호트 ·2024년: 3차 코호트 구축 예비조사 ·2025년~: 3차 코호트	·2008년 이후: 격년 실시 ·2019년 이후: 매년 실시	·2020년 이후: 매년
조사주기	반기 (최근: 2025년 하반기)	1년(최근: 2025년)	1년(최근조사: 2025년)	1년(최근: 2025년)
조사기간	상반기: 5~7월 하반기: 10~12월	6~9월	6~9월	6~9월
주요 조사내용	인적사항, 장애정보, 경제활동상태 판별, 취업자/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특성, 고용서비스 욕구, 가구정보 등	인적사항, 장애정보, 경제활동상태별 특성, 고용서비스 이용현황 및 결과/욕구, 직업적 능력, 일상생활 등	(기본) 규모, 산업별 등 장애인 고용기업체 수, 장애인 근로자 수 (심층) 기업체 고용현황, 모집과 채용, 업무특성, 노무관리, 업무환경, 교육훈련, 장애인고용 만족도, 고용서비스 이용 및 욕구, 장애인 고용 인식, 장애인 채용 경험과 미채용, 채용계획, 재무정보	(당사자용) 취업과 일자리, 건강 및 행복, 사회생활, 경제생활, 학교생활 등 (보호자용) 인적사항 및 장애특성, 교육, 취업자 특성, 미취업자 특성, 직업적 능력과 고용서비스 이용, 일상생활, 자립 및 미래계획, 가구 및 보호자 등
결과활용	고용률, 실업률 등의 경제활동지표 산출, 정책대상 규모 파악	장애인 고용정책 수립, 모니터링, 평가 및 관련 학술연구 수행에 활용	기업체의 장애인고용 규모 추정, 고용실태 및 고용요인 도출	발달장애인 맞춤형 지원정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

사 업 명
(12) 장애인인식개선지원(1459-327)

1. 사업 총괄 정보

1) 사업 기본 정보

(1-1) 일반 정보

소관	실·국	과·팀	기금	계정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장애인고용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

(1-2) 코드·명칭 정보

구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080	08D	1400	1459	327
명칭	사회복지	고용	장애인고용증진	장애인고용연구 및 인식개선	장애인인식개선

2)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N	Y	N	N	N	N

3)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Y	N	Y	N	N	100.0%	-

4) 기능별(내역사업별)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내역사업명	소관	사업시행주체
장애인인식개선지원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 지출계획 총괄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사업명	2025년 결산액	2026년 당초계획액 (A)	2026년 수정계획액	2027년 요구액	2027년 정부안액 (B)	증감액 (B-A)	증감률 (B-A) /A×100
장애인인식개선지원	5,064	4,808	4,808	4,088	4,088	△720	△15.0

1)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계획액 (수정)	2025년 계획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계획액 (수정)	2026년 계획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5,064	5,064	5,064	-	-	4,808	4,808	4,017	4,088
·장애인인식개선지원	5,064	5,064	5,064	-	-	4,808	4,808	4,017	4,088

2) 비목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계획액 (수정)	2025년 계획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계획액 (수정)	2026년 계획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5,064	5,064	5,064	-	-	4,808	4,808	4,017	4,088
·일반수용비(210-01)	19	19	19	-	-	100	100	9	100
·임차료(210-07)	20	20	20	-	-	-	-	-	-
·일반용역비(210-14)	61	61	61	-	-	-	-	-	-
·사업출연금(350-02)	4,964	4,964	4,964	-	-	4,708	4,708	4,008	3,988

3. 사업 설명

1) 사업목적·내용

(1-1) 장애인인식개선지원

사업목적	직장 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 유지 및 신규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내용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화('18.5.29.)에 따라 사업주 및 근로자의 교육 의무 이행지원을 위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인프라 구축 및 지원

2) 사업개요

(2-1)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사업근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제5조의3**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①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사업주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 실시 관련 자료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의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보존할 수 있다. ④ 사업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강사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이 실시하여야 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다.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점검을 위하여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주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교육교재 등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⑧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내용·방법 및 횟수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3(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위탁 등)** ① 사업주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의 장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주 및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고 사업주나 피교육자가 원하는 경우 그 자료를 내주어야 한다. ③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강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강사를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두지 아니한 경우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추진경위	○ 2000.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추진 ○ 2007. 사업주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의무 등 법 조항 신설 ○ 2008. 사업주, 인사담당자 등에 대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 2015. 장애인고용 저조기업 명단공표 해소 필수요건으로 인식개선 교육 의무 실시 ○ 2017. 출연사업으로 전환(고용노동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지원 교육 의무 법률 근거 마련(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 ○ 2018.05.29.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화 시행 *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는 연 1회, 1시간 이상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2019. 사업주 부담 감경과 장애인 강사 활성화를 위해「교육 강사 지원 사업」시작 ○ 2020.06.09.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자격을 갖춘 자가 실시하도록 법률 근거 마련 ○ 2021.06.29. 사업주의 교육 실시 결과 제출 의무 및 교육 증빙자료 보관 의무 명확히 규정하는 법률 근거 마련

(2-2) 사업규모

○ 사업기간 : 2000년～계속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

(단위: 백만원)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사업비	4,815	5,764	5,064	4,808	4,088

(2-3)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출연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사업 수혜자 : 사업주 및 근로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기관명	2027년 지원금액(백만원)	지원 비율(%)	법적근거
장애인인식개선지원	출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3,988	100.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 제71조

3) 기능별(내역사업별) 산출 내역

(3-1) 내역사업별 세부 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계획액(수정)(A)	2027년 정부안액(B)	증감 (B-A)
합 계	4,808	4,088	△720
장애인인식개선지원	4,808	4,088	△720

○ 장애인인식개선지원 **(2026년) 4,808 → (2027년) 4,088백만원, △15.0%**

- (설명) 제도개선 및 비용 절감 반영하여 4,088백만원 요구, 26년 대비 15.0% 감액(△720백만원)
- (산출)

① 장애인인식개선지원(민간위탁): ('26) 2,162→ ('27안) 1,802백만원(감 360백만원)

- ('26) 13개소×166.3백만원 → ('27) 10개소×180.2백만원

* (제도개선) 민간위탁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우수 교육기관 중점 지원

② 교육강사지원: ('26) 1,000→ ('27안) 700백만원(감 300백만원)

- ('26) 10,000개소×지원금 10만원 → ('27) 7,000개소×지원금 10만원

* 제도개선: 사업체 규모별 적정 지원 기준(교육 횟수) 설정

③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26) 1,646백만원 → ('27안) 1,586백만원(감 60백만원)

- (인식개선교육 강사양성) 254백만원 = 전문강사 양성 10회×12백만원 + 보수교육 10회×5백만원 + 역량강화교육 4회×21백만원(전년동)
- (인식개선 사업운영비) 110백만원 (전년동)
- (교육 콘텐츠 개발) 227백만원 (전년동)
- (교육포털 유지 관리) 123백만원 (전년동)
- (비대면 시스템 운영) 78백만원 (전년동)
- (교육의무이행 홍보) 406백만원 (감 60백만원)

* AI를 활용한 비용 절감(리플릿 등 디자인 비용, SNS 및 광고 콘텐츠 개발 비용 등)

- (장애인 체육팀 운영비) 388백만원(인건비 293백만원+운영비 95백만원) (전년동)

4) 사업효과

(4-1) 최근 5년(2023년~2027년)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 **성과지표: 장애인고용률**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목표	-	(신규)	49.1%	48.9%	48.3%
실적	-	-	48.3%	-	-
달성도	-	-	98.4%	-	-

- **측정산식** : (장애인 취업자 수 / 만 15세 이상 64세 이하 장애인 인구) × 100
- **측정방법 및 목표치 설정근거** : 최근 2개년 실적('24년 48.4%, '25년 48.3%)과 '26년 실적 추정치(48.1%)의 평균
- **자료수집방법/출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장애인 경제활동실태조사

(4-2) 성과지표 이외의 최근 4년(2023년~2026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연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3년	○ 인식개선 민간위탁 지원(문화체험 교육) : 8개소, 199회 ○ 인식개선 교육 강사(전문강사 및 사내강사) 양성 : 696명(장애인 95명) ○ 강사 자격유지를 위한 보수교육 수료 : 886명(장애인 203명) ○ 강사양성 교육기관 지정 : 49개소 ○ 사업장에 대한 무료 강사 지원 : 11,988개소 ○ 콘텐츠 개발 : 10종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이러닝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16,201명 수료
2024년	○ 인식개선 민간위탁 지원(문화체험 교육) : 11개소, 257회 ○ 인식개선 교육 강사(전문강사 및 사내강사) 양성 : 547명(장애인 68명) ○ 강사 자격유지를 위한 보수교육 수료 : 1,024명(장애인 257명) ○ 강사양성 교육기관 지정 : 54개소 ○ 사업장에 대한 무료 강사 지원 : 12,000개소 ○ 콘텐츠 개발 : 17종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이러닝 시스템 운영 : 29,311명 이용
2025년	○ 인식개선 민간위탁 지원(문화체험 교육) : 13개소, 272회 ○ 인식개선 교육 강사(전문강사 및 사내강사) 양성 : 540명(장애인 57명) ○ 강사 자격유지를 위한 보수교육 수료 : 1,230명(장애인 309명) ○ 강사양성 교육기관 지정 : 39개소 ○ 사업장에 대한 무료 강사 지원 : 9,995개소 ○ 콘텐츠 개발 : 20종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이러닝 시스템 운영 : 38,039명 이용
2026.7월	○ 인식개선 민간위탁 지원(문화체험 교육) : 11개소, 124회 ○ 인식개선 교육 강사(전문강사 및 사내강사) 양성 : 193명(장애인 19명) ○ 강사 자격유지를 위한 보수교육 수료 : 714명(장애인 168명) ○ 강사양성 교육기관 지정 : 17개소 ○ 사업장에 대한 무료 강사 지원 : 4,700개소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이러닝 시스템 운영 : 21,803명 이용

(4-3) 향후(2027년 이후)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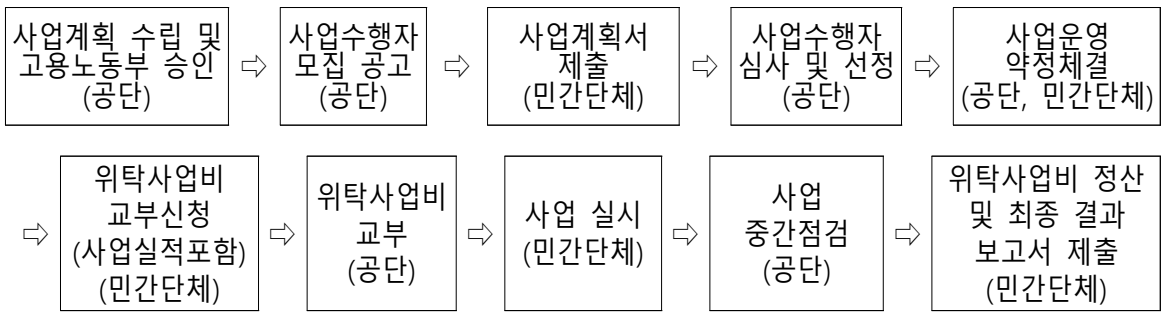
○ 교육의무 이행 홍보, 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교육 강사 지원 및 교육 이행지도 등을 통해 효과적인 직장 내 인식개선 교육 실시로 직장 내 장애친화적 환경조성 및 장애인 고용률 향상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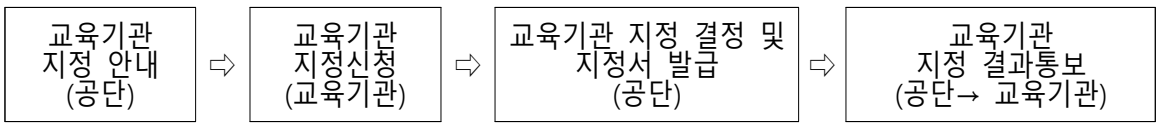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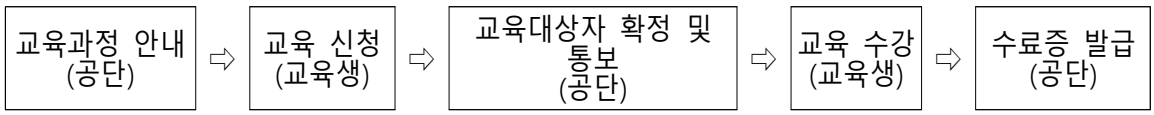
① 장애인인식개선지원(민간위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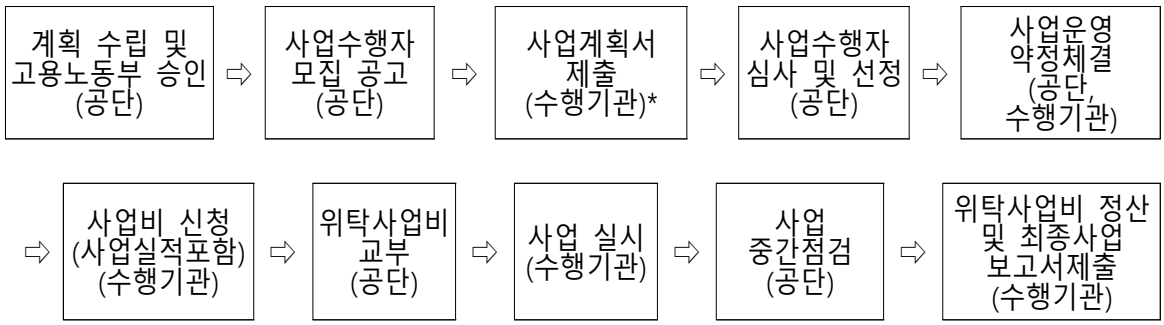
② 교육기관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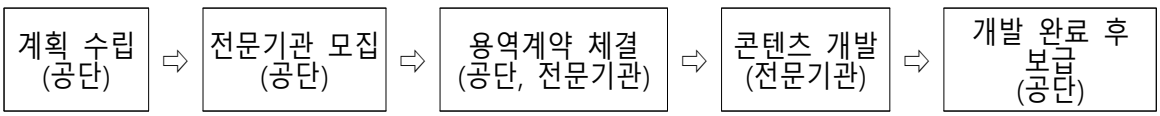
③ 강사양성·운영



④ 교육 강사 지원



⑤ 교육·홍보 콘텐츠 개발·보급



8) 최근 3년간(2024년~2026년)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8-1) 정부 사업평가

구분	연도	주요내용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2026년	○ 의견 : 직장 내 인식개선 교육과 직접 고용 성과에 대한 검증 노력 필요 ○ 결과 : 감액
재정사업자율평가	2025년	○ 의견 : 사업 콘텐츠 다양화로 대면교육을 개선하고, 이러닝 교육 콘텐츠를 개편하는 등 체계적인 성과 확산 노력 ○ 결과 : 우수

(8-2) 국회 지적사항: 해당없음

(8-3) 감사원, 총리실, 기타(언론, 시민단체 등) 결과: 해당없음

4. 최근 4년간(2023년~2026년) 결산내역

1) 결산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연도	당초 계획액	수정 계획액 (A)	전년도 이월액	기금변경 증감액 등	계획 현액	집행액 (B)	집행률 (B/Ax100)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3년	4,815	4,815	-	-	4,815	4,782	99.3	-	33
2024년	5,764	5,764	-	-	5,764	5,756	99.8	-	8
2025년	5,064	5,064	-	-	5,064	5,064	100.0	-	-
2026.7월	4,808	4,808	-	-	4,808	4,017	83.5	-	-

2) 연도별 결산 주요사항

연도	유형	금액 (백만원)	사유
2023년	불용	33	출연금 미교부액 33백만원 불용
2024년	불용	8	집행잔액 8백만원 불용

5. 기타 추가자료: 참고자료 별첨

참고 장애인인식개선지원 개요 및 실적

□ 주요 사업별 개요

사업명	사업 개요
교육 지원 (민간 위탁)	○ 교육 효과 제고를 위해 장애 감수성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 인프라를 활용한 문화·체험형 교육 실시
교육기관 지정·관리	○ 교육 접점을 확대하기 위해 지역단위 장애 전문성을 갖춘 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의 품질 제고를 위한 교육평가 등 교육기관 관리 강화
강사 양성·운영	○ 전문지식과 다양한 스킬 및 태도, 강의 역량을 갖춘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 ①전문강사 양성, ②사내강사 양성 과정, ③보수교육 운영
교육 강사 지원	○ 사업주에게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강사를 무료 지원하여 교육의무 이행 지원
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고용촉진 목적에 맞는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교육 홍보	○ 법정의무교육인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 홍보
이러닝 시스템 운영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비대면 교육 수요 대응을 위한 이러닝 시스템 운영

□ 주요 사업 추진 실적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장애인인식개선지원(민간위탁)		8개소, 199회	11개소, 257회	13개소, 272회
교육기관 신규 지정(누적유효 기관)		49(676)개소	54(696)개소	39(658)개소
강사 양성 및 관리	전문 강사 양성	239명	173명	141명
	사내 강사 양성	457명	374명	399명
	보수교육 운영	886명	1,024명	1,230명
교육 강사 지원		11,988개소	12,000개소	9,995개소
교육 콘텐츠 개발		10종	17종	20종
교육(공단 자체 이러닝) 수료자		16,201명	29,311명	38,039명

사 업 명
(13) 지역주도권리중심중증장애인참여공공서비스개선사업(1459-328)

1. 사업 총괄 정보

1) 사업 기본 정보

(1-1) 일반 정보

소관	실·국	과·팀	기금	계정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장애인고용과	장애인고용촉진 및직업재활기금	-

(1-2) 코드·명칭 정보

구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080	08D	1400	1459	328
명칭	사회복지	노동	장애인고용증진	장애인고요연구 및인식개선	지역주도권리중심 중증장애인참여공 공서비스개선

2)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Y	N	N	N	N	N

3)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Y	N	N	N	N	-	-

4) 기능별(내역사업별)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내역사업명	소관	사업시행주체
장애인을위한 일자리 모델설계 연구용역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2. 지출계획 총괄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사업명	2025년 결산액	2026년 당초계획액 (A)	2026년 수정계획액	2027년 요구액	2027년 정부안액 (B)	증감액 (B-A)	증감률 (B-A) /A×100
지역주도권리중심 중증장애인참여공 공서비스개선	-	-	-	1,990	200	순증	순증

1)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계획액 (수정)	2025년 계획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계획액 (수정)	2026년 계획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	-	-	-	-	-	-	-	200
·연구용역	-	-	-	-	-	-	-	-	200

2) 비목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계획액 (수정)	2025년 계획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계획액 (수정)	2026년 계획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	-	-	-	-	-	-	-	200
·일반연구비(260-01)	-	-	-	-	-	-	-	-	200

3. 사업 설명

1) 사업목적·내용

(1-1)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모델설계 연구용역

사업목적	장애인인식개선, 문화예술 기반 참여, 장애인 권익 증진 활동지원
사업내용	장애인 일자리 모델설계 연구용역 실시

2) 사업개요

(2-1)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사업근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조
추진경위	○ UN장애인권리위원회 등의 국·내외 단체들은 지속적으로 국가 및 자치단체의 주도적인 인식개선 노력을 권고

(2-2) 사업규모

○ 사업기간 : 2027년~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계획액 기준, 기금운용계획변경 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사업비	-	-	-	-	200

(2-3)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

○ 사업 수혜자 : 중증장애인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3) 기능별(내역사업별) 산출 내역

(3-1) 내역사업별 세부 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계획액(수정)(A)	2027년 정부안액(B)	증감 (B-A)
합 계	-	200	200
장애인을위한 일자리 모델설계 연구용역	-	200	200

○ 장애인을위한 일자리 모델 설계 연구용역 **(2026년) - → (2027년) 200백만원, 순증**

- (설명) 장애인 일자리 관련 연구용역
- (산출) 200백만원

4) 사업효과

(4-1) 최근 5년(2023년~2027년)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해당없음

(4-2) 성과지표 이외의 최근 4년(2023년~2026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해당없음

(4-3) 향후(2027년 이후) 기대효과

○ 연구를 통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등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8) 최근 3년간(2024년~2026년)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8-1) 정부 사업평가: 해당없음

(8-2) 국회 지적사항: 해당없음

(8-3) 감사원, 총리실, 기타(언론, 시민단체 등) 결과: 해당없음

4. 최근 4년간(2023년~2026년) 결산내역

1) 결산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연도	당초 계획액	수정 계획액 (A)	전년도 이월액	기금변경 증감액 등	계획 현액	집행액 (B)	집행률 (B/Ax100)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3년	해당없음								
2024년	해당없음								
2025년	해당없음								
2026년	해당없음								

2) 연도별 결산 주요사항

연도	유형	금액 (백만원)	사유
2023년	이용		해당없음
2024년	전용		해당없음
2025년	이월		해당없음
2026년	불용		해당없음

5. 기타 추가자료: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14) 장애인고용증진융자(1462-330)

1. 사업 총괄 정보

1) 사업 기본 정보

(1-1) 일반 정보

소관	실·국	과·팀	기금	계정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장애인고용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

(1-2) 코드·명칭 정보

구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080	08D	1400	1462	330
명칭	사회복지	고용	장애인고용증진	장애인고용증진 융자(융자)	장애인고용증진 융자(융자)

2)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N	Y	N	N	N	N

3)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Y	N	N	N	Y	-	-

4) 기능별(내역사업별)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내역사업명	소관	사업시행주체
장애인고용증진융자(융자)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 지출계획 총괄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사업명	2025년 결산액	2026년 당초계획액 (A)	2026년 수정계획액	2027년 요구액	2027년 정부안액 (B)	증감액 (B-A)	증감률 (B-A) /A×100
장애인고용증진융자(융자)	977	1,232	1,232	1,354	1,354	122	9.9

1)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계획액 (수정)	2025년 계획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계획액 (수정)	2026년 계획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1,072	1,072	977	-	95	1,232	1,232	599	1,354
·장애인고용증진융자(융자)	1,072	1,072	977	-	95	1,232	1,232	599	1,354

2) 비목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계획액 (수정)	2025년 계획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계획액 (수정)	2026년 계획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1,072	1,072	977	-	95	1,232	1,232	599	1,354
·이차보전금(320-05)	1,072	1,072	977	-	95	1,232	1,232	599	1,354

3. 사업 설명

1) 사업목적·내용

(1-1) 장애인고용증진융자(융자)

사업목적	장애인고용에 필요한 시설·장비 구입·설치·수리비용 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 지원을 통해 장애인 고용에 따른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고용환경 개선 도모
사업내용	장애인 화장실 등 편의시설 설치, 통근용승합자동차 구입 비용 등을 이차보전 방식으로 지원(사업주당 15억원 이내, 장애인 1명당 1억원 한도)

2) 사업개요

(2-1)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사업근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조 **제21조(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에 드는 다음 각 호의 비용 또는 기기 등을 융자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를 우대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을 고용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의 구입·설치·수리 등에 드는 비용
추진경위	○ 1992. 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한 환경개선사업 일환으로 사업 실시 ○ 2014. 융자방식을 대하방식에서 이차보전방식으로 변경 * 최대 4% 이차보전,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 2017. 융자방식을 이차보전방식에서 대하방식으로 변경 * 최대 4% 이차보전,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 2019. 고용보험기금에서 장애인기금으로 재원 이관 ○ 2023. 융자방식을 대하방식에서 이차보전방식으로 변경 * 최대 5% 이차보전,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2-2) 사업규모

○ 사업기간 : 1992년~계속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

(단위: 백만원)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사업비	304	630	1,072	1,232	1,354

(2-3)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융자

○ 사업시행주체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사업 수혜자 :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할 계획이 있는 사업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기관명	2027년 지원금액 (백만원)	지원 비율(%)	법적근거
장애인고용증진융자(융자)	융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354	100.0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1조

3) 기능별(내역사업별) 산출 내역

(3-1) 내역사업별 세부 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계획액(수정)(A)	2027년 정부안액(B)	증감 (B-A)
합 계	1,232	1,354	122
장애인고용증진융자(융자)	1,232	1,354	122

○ **장애인고용증진융자(융자) (2026년) 1,232백만원 → (2027년) 1,354백만원, +9.9%**

- (설명) '23~'26년도 기지원분 및 '27년도 신규지원에 대한 이차보전금
- (산출) '23~25년 기지원 융자금 이차보전금(1,196백만원) + '27년도 신규융자금 이차보전금(158백만원)
  * '23~'26년 기지원: 23,915백만원(융자잔액) x 5%(이차보전금리) = 1,196백만원
  * '27년 신규지원: 9,025백만원(예상융자총액) x 5%(이차보전금리) x 35%(연평균융자실행률) = 158백만원

4) 사업효과

(4-1) 최근 5년(2023년~2027년)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 **성과지표: 장애인고용률**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목표	-	(신규)	49.1%	48.9%	48.3%
실적	-	-	48.3%	-	-
달성도	-	-	98.4%	-	-

- **측정산식 :** (장애인 취업자 수 / 만 15세 이상 64세 이하 장애인 인구) × 100
- **측정방법 및 목표치 설정근거 :** 최근 2개년 실적('24년 48.4%, '25년 48.3%)과 '26년 실적 추정치(48.1%)의 평균
- **자료수집방법/출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장애인 경제활동실태조사

(4-2) 성과지표 이외의 최근 4년(2023년~2026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연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3년	38개소 지원
2024년	42개소 지원
2025년	43개소 지원
2026.7월	24개소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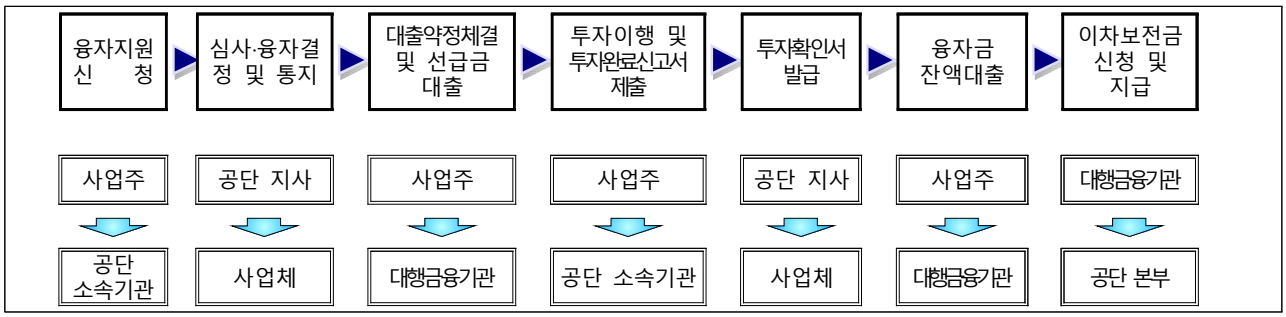
(4-3) 향후(2027년 이후) 기대효과

○ 장애인고용 사업주에 정부지원과 동시에 장애인 채용 및 고용유지 의무 부여로 장애인 일자리 확대 및 장기근속 효과 기대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8) 최근 3년간(2024년~2026년)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8-1) 정부 사업평가

구분	연도	주요내용
중소기업 지원사업 평가	2026년	○ 의견 : 장애인고용 환경 개선이라는 정책 필요성이 명확하며 정부 지원에 따른 장애인 근로자 증가율, 고용유지율 등 성과 우수 ○ 결과 : 우수

(8-2) 국회 지적사항: 해당없음

(8-3) 감사원, 총리실, 기타(언론, 시민단체 등) 결과: 해당없음

4. 최근 4년간(2023년~2026년) 결산내역

1) 결산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연도	당초 계획액	수정 계획액 (A)	전년도 이월액	기금변경 증감액 등	계획 현액	집행액 (B)	집행률 (B/Ax100)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3년	304	304	-	-	304	142	46.7	-	162
2024년	630	630	-	-	630	630	100.0	-	-
2025년	1,072	1,072	-	-	1,072	977	91.1	-	95
2026.7월	1,232	1,232	-	-	1,232	599	48.6	-	-

2) 연도별 결산 주요사항

연도	유형	금액 (백만원)	사유
2023년	불용	162	직접대하에서 이차보전방식으로 전환된 첫해로 사업개시 지연
2025년	불용	95	융자 조기상환 및 이율 하락

5. 기타 추가자료: 참고자료 별첨

참고 장애인고용증진융자 개요

□ 목적

○ 사업주가 장애인을 고용하는데 필요한 작업시설 편의시설의 설치·수리 등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이차보전 방식으로 지원하여 장애인고용 촉진

□ 지원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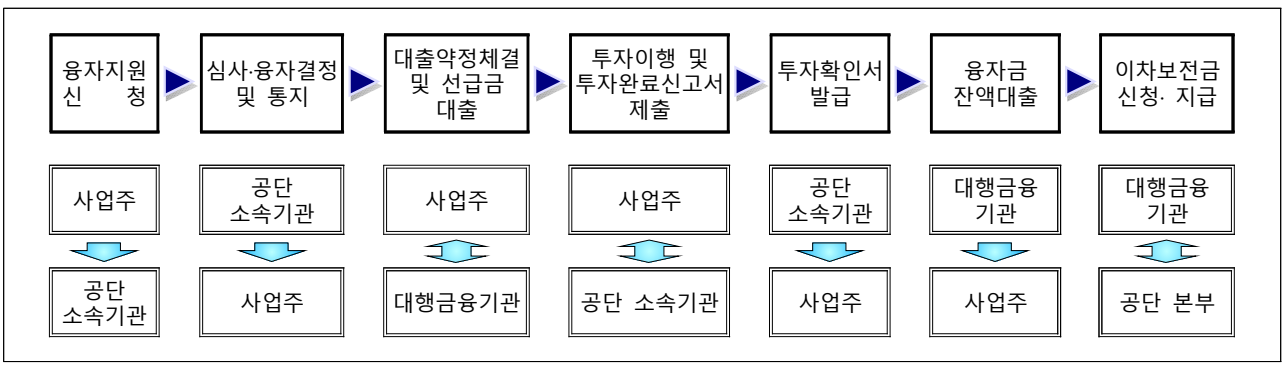
○ **(대상)**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 예정인 사업주

○ **(내용)** 작업시설, 편의시설 등의 구입·설치·수리비용을 최대 15억원(장애인근로자 1명당 1억 원)까지 이차보전 방식으로 지원

*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 5% 이차보전

○ **(지원조건)** 융자금 1억 원당 장애인 1명을 5년간 고용유지(25%이상 중증)

□ 추진 체계



□ 추진 실적

(단위: 백만원, 개소, 명, %)

연 도	본예산	집행액	집행률	사업체수	고용의무 장애인 수
2023년	304	142	46.8%	38	122
2024년	630	630	100.0%	42	121
2025년	1,072	977	91.1%	43	107

사 업 명
(15) 장애인고용정보화(정보화)(1466-240)

1. 사업 총괄 정보

1) 사업 기본 정보

(1-1) 일반 정보

소관	실·국	과·팀	기금	계정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장애인고용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

(1-2) 코드·명칭 정보

구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080	08D	1400	1466	240
명칭	사회복지	고용	장애인고용증진	장애인고용정보화	장애인고용정보화(정보화)

2)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N	Y	N	N	N	N

3)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N	N	Y	N	N	100.0	-

4) 기능별(내역사업별)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내역사업명	소관	사업시행주체
장애인고용정보화(정보화)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 지출계획 총괄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사업명	2025년 결산액	2026년 당초계획액 (A)	2026년 수정계획액	2027년 요구액	2027년 정부안액 (B)	증감액 (B-A)	증감률 (B-A) /A×100
장애인고용정보화	4,153	4,530	4,530	3,851	3,851	△679	△15.0%

1)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계획액 (수정)	2025년 계획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계획액 (수정)	2026년 계획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4,153	4,153	4,153	-	-	4,530	4,530	3,655	3,851
·장애인고용정보화(정보화)	4,153	4,153	4,153	-	-	4,530	4,530	3,655	3,851

2) 비목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계획액 (수정)	2025년 계획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계획액 (수정)	2026년 계획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4,153	4,153	4,153	-	-	4,530	4,530	3,655	3,851
·사업출연금(350-02)	4,153	4,153	4,153	-	-	4,530	4,530	3,655	3,851

3. 사업 설명

1) 사업목적·내용

(1-1) 장애인고용정보화(정보화)

사업목적	장애인고용정보화를 안정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장애인고용행정서비스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장애인 및 사업주 등 대국민의 업무편의 증진
사업내용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생활 안정을 위해 장애인고용업무시스템, 전자신고(청) 등 정보시스템 운영, 보건복지부 등 22개 기관 70종 정보를 연계하여 장애인 고용촉진 업무 지원

2) 사업개요

(2-1)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사업근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6조, 제43조 **제16조(취업알선기관 간의 연계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취업알선 업무를 수행하는 재활실시기관 간에 구인·구직 정보의 교류와 장애인 근로자 관리 등의 효율적인 연계를 꾀하고,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이를 종합적으로 집중 관리할 수 있도록 취업알선전산망 구축 등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취업알선전산망 구축 등의 조치를 강구할 때에는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3조(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설립)** ①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제공 및 조사·연구 8.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한 취업알선 기관 사이의 취업알선전산망 구축·관리, 홍보·교육 및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 등 관련 사업 9.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공공기관 및 민간 기관 사이의 업무 연계 및 지원
추진경위	○ 1993. 취업알선관리시스템(text) 구축·운영 ○ 1998. 인터넷홈페이지 구축·운영, 정보전략계획(ISP) 수립 ○ 1999. 전산실 개선(신규전산장비 도입 및 LAN구축) 운영 ○ 2000. 취업알선(C/S), 기금관리시스템(Web)구축·운영 ○ 2001. 학사관리시스템(Web), 그룹웨어 구축·운영 ○ 2002. 장애인고용정보시스템 등 4종 시스템 Web 구축・운영 ○ 2003. 보안시스템 구축·운영 및 정보전략계획(ISP) 수립 ○ 2004. 장애인 고용정보시스템 등 8종 전산시스템 운영 ○ 2005. 장애인 고용정보시스템 189개 유관기관과 정보연계 ○ 2006. 장애인고용정보시스템 등 8종 전산시스템 운영 ○ 2007. 원스톱 업무통합시스템(EP) 운영 ○ 2011. 장애인고용 통합업무시스템 구축·운영 ○ 2012. 재무예산시스템 Web 구축 및 개인정보보호체계 강화·구축 ○ 2013. 정보보호 강화(APT 공격대응), 정보전략계획(ISP) 수립 ○ 2014. 전산인프라 개선사업(DB서버 교체 등) ○ 2015. 정보보안 강화사업(본부·고용개발원 망 분리) ○ 2016. 전사포털 구축 및 보안장비 고도화 사업 ○ 2017. 정보보안 인프라 개선, 노후 서버 교체 및 백업시스템 개선 ○ 2018. 전산장비 교체 및 정보보안 강화 사업 ○ 2019. 정보보안 강화 및 운영환경 개선 사업 ○ 2020. 정보보호시스템 및 백업인프라 개선 사업 ○ 2021. 정보시스템 인프라 개선 사업

	○ 2022. 네트워크 망 분리 1차 ○ 2023. 정보보안 및 전산장비 강화사업(망 분리 2차) ○ 2024. 노후 전산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강화 사업(망 분리 3차) ○ 2025. 정보인프라 고도화 사업 ○ 2026. 장애인고용통합서비스 구축 BPR/ISP 수립, 정보시스템 운영환경 고도화

(2-2) 사업규모

○ 사업기간 : 1991년~계속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

(단위: 백만원)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사업비	4,815	5,053	4,153	4,530	3,851

(2-3)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사업 수혜자 : 장애인, 사업주, 공단 및 유관기관 직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기관명	2027년 지원금액 (백만원)	지원 비율(%)	법적근거
장애인고용정보화 (정보화)	출연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3,851	100.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6조, 제43조

3) 기능별(내역사업별) 산출 내역

(3-1) 내역사업별 세부 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계획액(수정)(A)	2027년 정부안액(B)	증감 (B-A)
합 계	4,530	3,851	△679
장애인고용정보화(정보화)	4,530	3,851	△679

○ **장애인고용정보화(정보화) (2026년) 4,530 → (2027년) 3,851백만원, △15.0%**

- (설명) 사업주 전자신고(청), 장애인고용업무시스템 등 정보시스템 및 전산시설장비 유지보수 비용, 본부-소속기관 간 통신회선 비용 등 장애인고용정보화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소요되는 운영 예산 요구, '26년 대비 △15.0% 감액

- (산출)
  · 회선사용료 : ('26) 1,055백만원 → ('27) 1,055백만원(전년동)
  · 시스템 유지보수 : ('26) 1,242백만원 → ('27) 1,173백만원(감 69백만원)
  · 전산관리 상용직 보수 : ('26) 240백만원 → ('27) 240백만원(전년동)
  · 전산장비 임차료 : ('26) 593백만원 → ('27) 593백만원(전년동)
  · 정보시스템 기능 개선 : ('26) 20백만원 → ('27) 14백만원(감 6백만원)
  · 장애인통합서비스 디지털플랫폼 구축 BPR/ISP 수립 : ('26) 311백만원 → ('27) 0원(순감)
  · 노후 시스템 교체 : ('26) 722백만원 → ('27) 429백만원(감 293백만원)
  · 사무용 전산장비 교체 : ('26) 131백만원 → ('27) 131백만원(전년동)
  · 상용SW 이용료 : ('26) 216백만원 → ('27) 216백만원(전년동)

4) 사업효과

(4-1) 최근 5년(2023년~2027년)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 **성과지표: 장애인고용률**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목표	-	(신규)	49.1%	48.9%	48.3%
실적	-	-	48.3%	-	-
달성도	-	-	98.4%	-	-

- **측정산식 :** (장애인 취업자 수 / 만 15세 이상 64세 이하 장애인 인구) × 100

- **측정방법 및 목표치 설정근거 :** 최근 2개년 실적('24년 48.4%, '25년 48.3%)과 '26년 실적 추정치(48.1%)의 평균

- **자료수집방법/출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장애인 경제활동실태조사

(4-2) 성과지표 이외의 최근 4년(2023년~2026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연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3년	▪ 본부, 고용개발원, 5개 직업능력개발원, 22개 지역본부·지사, 1개 보조공학센터 등 본부-소속기관 간 장애인고용전산망 운영 ▪ 전자신고 신고(청) 시스템 운영
2024년	▪ 본부, 고용개발원, 6개 직업능력개발원, 23개 지역본부·지사, 1개 보조공학센터 등 본부-소속기관 간 장애인고용전산망 운영 ▪ 전자신고 신고(청) 시스템 운영
2025년	▪ 본부, 고용개발원, 6개 직업능력개발원, 23개 지역본부·지사, 1개 보조공학센터 등 본부-소속기관 간 장애인고용전산망 운영 ▪ 전자신고 신고(청) 시스템 운영
2026.7월	▪ 본부, 고용개발원, 6개 직업능력개발원, 23개 지역본부·지사, 1개 보조공학센터 등 본부-소속기관 간 장애인고용전산망 운영 ▪ 전자신고 신고(청) 시스템 운영

(4-3) 향후(2027년 이후) 기대효과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생활 안정을 위해 장애인고용업무시스템 등 47종의 정보시스템 운영, 보건복지부 등 22개 기관 70종의 연계 정보를 제공하여 공단↔유관기관 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업무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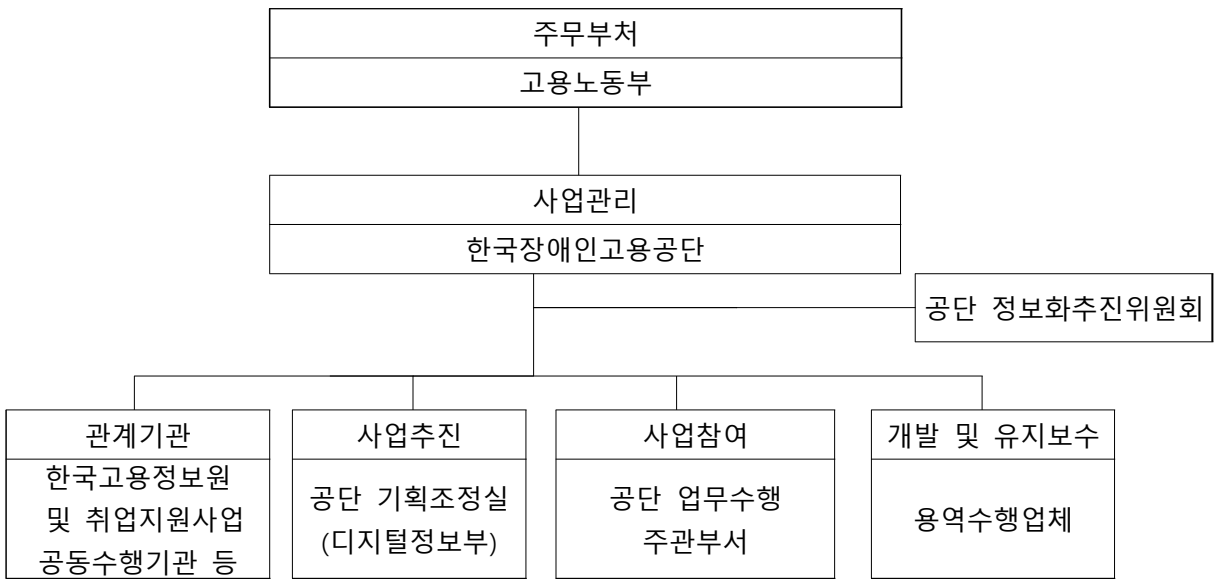
○ 장애인 고용 사업체에게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자신청(고) 환경 조성으로 기업의 장애인고용 활성화 기대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1. 정보시스템 구축
 - 사업 절차: 사업계획 수립 → 사업관리 → 사업완료 → 시스템 운영
  · 사업계획 수립: 정보화추진위원회 개최, 보안성 검토 및 사전협의 실시 등
  · 사업관리: 업무분석·설계·구현·시험 관리, 개발 착수 및 감리 실시
  · 사업완료: 시스템 검수 및 완료보고
  · 시스템 운영: 관리자·사용자 교육 및 시스템 운영
2. 정보시스템 개선
 - 제도변경·기능개선 검토 및 개선 요청 → 환경 분석 → 기능 적용 → 시스템 운영
  · 사업부서에서 제도 변경이나 업무상 필요한 기능개선 사항을 검토한 후 개선을 요청하고, 정보시스템 환경 및 적용 가능성을 분석하여 시스템에 반영·운영
3. 사업관리 체계도



8) 최근 3년간(2024년~2026년)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8-1) 정부 사업평가:

구분	연도	주요내용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2026년	○ 의견 : 성과지표 중 정보시스템 고객만족도의 경우, 매년 소폭으로 미달성을 보이고 있음에도 근본적인 원인 및 해결책 마련이 제시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개선이 필요 ○ 결과 : 감액
재정사업자율 평가	2025년	○ 의견 : 성과지표 목표치의 변화가 적으며 성과지표 실적이 향상이 다소 미흡 ○ 결과 : 보통

(8-2) 국회 지적사항: 해당없음

(8-3) 감사원, 총리실, 기타(언론, 시민단체 등) 결과: 해당없음

4. 최근 4년간(2023년~2026년) 결산내역

1) 결산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연도	당초 계획액	수정 계획액 (A)	전년도 이월액	기금변경 증감액 등	계획 현액	집행액 (B)	집행률 (B/Ax100)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3년	4,815	4,815	-	-	4,815	4,669	97.0	-	146
2024년	5,053	5,053	-	-	5,053	5,053	100	-	-
2025년	4,153	4,153	-	-	4,153	4,153	100	-	-
2026.7월	4,530	4,530	-	-	4,530	3,655	80.7	-	-

2) 연도별 결산 주요사항

연도	유형	금액 (백만원)	사유
2023년	불용	146	출연금 미교부액 146백만원 불용

5. 기타 추가자료: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16) 기금관리비(인건비)(7079-110)

1. 사업 총괄 정보

1) 사업 기본 정보

(1-1) 일반 정보

소관	실·국	과·팀	기금	계정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장애인고용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

(1-2) 코드·명칭 정보

구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080	08D	7000	7079	110
명칭	사회복지	고용	고용노동행정지원	장애인고용촉진 기금운영비	기금관리비(인건비)

2)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N	Y	N	N	N	N

3)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Y	N	N	N	N	100.0	-

4) 기능별(내역사업별)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내역사업명	소관	사업시행주체
기금관리비(인건비)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2. 지출계획 총괄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사업명	2025년 결산액	2026년 당초계획액 (A)	2026년 수정계획액	2027년 요구액	2027년 정부안액 (B)	증감액 (B-A)	증감률 (B-A) /A×100
기금관리비(인건비)	85	107	107	116	116	9	8.4

1)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계획액 (수정)	2025년 계획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계획액 (수정)	2026년 계획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98	98	85	-	13	107	107	52	116
·기금관리비(인건비)	98	98	85	-	13	107	107	52	116

2) 비목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계획액 (수정)	2025년 계획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계획액 (수정)	2026년 계획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98	98	85	-	13	107	107	52	116
·상용임금(110-03)	82	82	72	-	10	89	89	43	97
·고용부담금(320-09)	16	16	13	-	3	18	18	8	19

3. 사업 설명

1) 사업목적·내용

(1-1) 기금관리비(인건비)

사업목적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의 원활한 운용
사업내용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관리원 인건비 지급

2) 사업개요

(2-1)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사업근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1조 **제71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비용의 지급에 사용한다. 14.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과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업 수행에 따르는 경비
추진경위	○ 199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의 수입·지출 관리원이 필요하여 운영

(2-2) 사업규모

○ 사업기간 : 1991년~계속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

(단위: 백만원)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사업비	132	97	98	107	116

(2-3)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

○ 사업 수혜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관리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3) 기능별(내역사업별) 산출 내역

(3-1) 내역사업별 세부 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계획액(수정)(A)	2027년 정부안액(B)	증감 (B-A)
합 계	107	116	9
기금관리비(인건비)	107	116	9

○ **기금관리비(인건비) (2026년) 107백만원 → (2027년) 116백만원, +8.4%**

- (설명)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의 원활한 운용을 위한 기금관리원 인건비(2명) 요구
- (산출) 기금관리원 인건비 97백만원 + 기금관리원 고용부담금 19백만원

4) 사업효과

(4-1) 최근 5년(2023년~2027년)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해당없음

(4-2) 성과지표 이외의 최근 4년(2023년~2026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연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3년	기금관리원(2명) 인건비 124백만원 지급
2024년	기금관리원(2명) 인건비 83백만원 지급
2025년	기금관리원(2명) 인건비 85백만원 지급
2026.7월	기금관리원(2명) 인건비 52백만원 지급

(4-3) 향후(2027년 이후) 기대효과: 해당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매월 급여 지급일에 급여 및 초과수당 등 법정수당 지급

8) 최근 3년간(2024년~2026년)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8-1) 정부 사업평가: 해당없음

(8-2) 국회 지적사항: 해당없음

(8-3) 감사원, 총리실, 기타(언론, 시민단체 등) 결과: 해당없음

4. 최근 4년간(2023년~2026년) 결산내역

1) 결산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연도	당초 계획액	수정 계획액 (A)	전년도 이월액	기금변경 증감액 등	계획 현액	집행액 (B)	집행률 (B/Ax100)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3년	132	132	-	-	132	124	93.9	-	8
2024년	97	97	-	-	97	83	85.6	-	14
2025년	98	98	-	-	98	85	86.7	-	13
2026.7월	107	107	-	-	107	52	48.6	-	-

2) 연도별 결산 주요사항

연도	유형	금액 (백만원)	사유
2023년	불용	8	집행 잔액 불용
2024년	불용	14	집행 잔액 불용
2025년	불용	13	집행 잔액 불용

5. 기타 추가자료: 해당없음

사 업 명
(17) 장애인고용공단 인건비(7079-120)

1. 사업 총괄 정보

1) 사업 기본 정보

(1-1) 일반 정보

소관	실·국	과·팀	기금	계정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장애인고용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

(1-2) 코드·명칭 정보

구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080	08D	7000	7079	120
명칭	사회복지	고용	고용노동행정지원	장애인고용촉진 기금운영비	장애인고용공단 인건비

2)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N	Y	N	N	N	N

3)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N	N	Y	N	N	100.0	-

4) 기능별(내역사업별)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내역사업명	소관	사업시행주체
장애인고용공단 인건비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 지출계획 총괄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사업명	2025년 결산액	2026년 당초계획액 (A)	2026년 수정계획액	2027년 요구액	2027년 정부안액 (B)	증감액 (B-A)	증감률 (B-A) /A×100
장애인고용공단 인건비	74,526	77,926	77,926	81,658	81,658	3,732	4.8

1)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계획액 (수정)	2025년 계획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계획액 (수정)	2026년 계획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74,526	74,526	74,526	-	-	77,926	77,926	61,192	81,658
·장애인고용공단 인건비	74,526	74,526	74,526	-	-	77,926	77,926	61,192	81,658

2) 비목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계획액 (수정)	2025년 계획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계획액 (수정)	2026년 계획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74,526	74,526	74,526	-	-	77,926	77,926	61,192	81,658
·기관운영출연금(350-01)	74,526	74,526	74,526	-	-	77,926	77,926	61,192	81,658

3. 사업 설명

1) 사업목적·내용

(1-1) 장애인고용공단 인건비

사업목적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운영
사업내용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임직원 인건비 지급

2) 사업개요

(2-1)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사업근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 제71조 **제43조(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설립)** ①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제71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비용의 지급에 사용한다. 14.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과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업 수행에 따르는 경비
추진경위	○ 1990.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

(2-2) 사업규모

○ 사업기간 : 1990년~계속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

(단위: 백만원)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사업비	69,795	72,058	74,526	77,926	81,658

(2-3)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사업 수혜자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임직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기관명	2027년 지원금액 (백만원)	지원 비율(%)	법적근거
장애인고용공단 인건비	출연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81,658	100.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 및 제71조

3) 기능별(내역사업별) 산출 내역

(3-1) 내역사업별 세부 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계획액(수정)(A)	2027년 정부안액(B)	증감 (B-A)
합 계	77,926	81,658	3,732
장애인고용공단 인건비	77,926	81,658	3,732

○ **장애인고용공단 인건비 (2026년) 77,926 → (2027년) 81,658백만원, +4.8%**

- (설명)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운영을 위한 임직원(1,105명) 인건비 예산 요구
- (산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임직원 인건비 81,658백만원
  * 계속소요: 77,926백만원(정원 1,105명)
  * '27년 공통처우개선: +3,065백만원(증 3.9%)
  * 증원인력 인건비: +667백만원('26년 정기증원 23명 자연증가분)

4) 사업효과

(4-1) 최근 5년(2023년~2027년)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해당없음

(4-2) 성과지표 이외의 최근 4년(2023년~2026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연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3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임직원 인건비 69,795백만원 지급
2024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임직원 인건비 72,058백만원 지급
2025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임직원 인건비 74,526백만원 지급
2026.7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임직원 인건비 61,192백만원 지급

(4-3) 향후(2027년 이후) 기대효과: 해당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매월 출연금 교부신청(공단) → 출연금 지급(고용노동부) → 인건비 지급(공단)

8) 최근 3년간(2024년~2026년)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8-1) 정부 사업평가: 해당없음

(8-2) 국회 지적사항: 해당없음

(8-3) 감사원, 총리실, 기타(언론, 시민단체 등) 결과: 해당없음

4. 최근 4년간(2023년~2026년) 결산내역

1) 결산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연도	당초 계획액	수정 계획액 (A)	전년도 이월액	기금변경 증감액 등	계획 현액	집행액 (B)	집행률 (B/Ax100)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3년	69,795	69,795	-	-	69,795	69,795	100.0	-	-
2024년	72,058	72,058	-	-	72,058	72,058	100.0	-	-
2025년	74,526	74,526	-	-	74,526	74,526	100.0	-	-
2026.7월	77,926	77,926	-	-	77,926	61,192	78.5	-	-

2) 연도별 결산 주요사항: 해당없음

5. 기타 추가자료: 해당없음

사 업 명
(18) 기금관리비(기타경비)(7079-210)

1. 사업 총괄 정보

1) 사업 기본 정보

(1-1) 일반 정보

소관	실·국	과·팀	기금	계정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장애인고용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

(1-2) 코드·명칭 정보

구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080	08D	7000	7079	210
명칭	사회복지	고용	고용노동행정지원	장애인고용촉진 기금운영비	기금관리비 (기타경비)

2)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N	Y	N	N	N	N

3)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Y	N	N	N	N	100.0	-

4) 기능별(내역사업별)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내역사업명	소관	사업시행주체
기금관리비(기타경비)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2. 지출계획 총괄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사업명	2025년 결산액	2026년 당초계획액 (A)	2026년 수정계획액	2027년 요구액	2027년 정부안액 (B)	증감액 (B-A)	증감률 (B-A) /A×100
기금관리비(기타경비)	167	171	171	211	211	40	23.4

1)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계획액 (수정)	2025년 계획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계획액 (수정)	2026년 계획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171	171	167	-	4	171	171	96	211
·기금관리비(기타경비)	171	171	167	-	4	171	171	96	211

2) 비목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계획액 (수정)	2025년 계획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계획액 (수정)	2026년 계획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171	171	167	-	4	171	171	96	211
·일반수용비(210-01)	86	86	86	-	-	95	89	39	135
·특근매식비(210-05)	6	6	6	-	-	6	3	2	6
·임차료(210-07)	6	6	4	-	2	6	6	2	6
·복리후생비(210-12)	1	1	1	-	-	1	1	1	2
·국내여비(220-01)	14	14	14	-	-	5	14	14	5
·사업추진비(240-01)	8	8	8	-	-	8	8	4	8
·일반연구비(260-01)	50	50	48	-	2	50	50	34	50

3. 사업 설명

1) 사업목적·내용

(1-1) 기금관리비(기타경비)

사업목적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의 원활한 운용
사업내용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의 운용을 위한 경상경비 지원

2) 사업개요

(2-1)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사업근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1조 **제71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비용의 지급에 사용한다. 14.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과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업 수행에 따르는 경비
추진경위	○ 199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의 원활한 운용을 위한 경상경비 지원

(2-2) 사업규모

○ 사업기간 : 1991년~계속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

(단위: 백만원)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사업비	179	171	171	171	211

(2-3)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3) 기능별(내역사업별) 산출 내역

(3-1) 내역사업별 세부 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계획액(수정)(A)	2027년 정부안액(B)	증감 (B-A)
합 계	171	211	40
기금관리비(기타경비)	171	211	40

○ **기금관리비(기타경비) (2026년) 171백만원 → (2027년) 211백만원, +23.4%**

- (설명)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의 원활한 운용을 위한 경상경비 요구
- (산출) 기금관리비 기타경비 211백만원

4) 사업효과

(4-1) 최근 5년(2023년~2027년)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해당없음

(4-2) 성과지표 이외의 최근 4년(2023년~2026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연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3년	기금관리비(기타경비) 174백만원 집행
2024년	기금관리비(기타경비) 170백만원 집행
2025년	기금관리비(기타경비) 167백만원 집행
2026.7월	기금관리비(기타경비) 96백만원 집행

(4-3) 향후(2027년 이후) 기대효과: 해당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 추진을 위한 운영비 지출

8) 최근 3년간(2024년~2026년)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8-1) 정부 사업평가: 해당없음

(8-2) 국회 지적사항: 해당없음

(8-3) 감사원, 총리실, 기타(언론, 시민단체 등) 결과: 해당없음

4. 최근 4년간(2023년~2026년) 결산내역

1) 결산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연도	당초 계획액	수정 계획액 (A)	전년도 이월액	기금변경 증감액 등	계획 현액	집행액 (B)	집행률 (B/Ax100)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3년	179	179	-	-	179	174	97.2	-	5
2024년	171	171	-	-	171	170	99.4	-	1
2025년	171	171	-	-	171	167	97.6	-	4
2026.7월	171	171	-	-	171	96	56.1	-	-

2) 연도별 결산 주요사항

연도	유형	금액 (백만원)	사유
2023년	불용	5	집행 잔액 불용
2024년	불용	1	집행 잔액 불용
2025년	불용	4	집행 잔액 불용

5. 기타 추가자료: 해당없음

사 업 명
(19) 장애인고용공단 사업운영비(7079-220)

1. 사업 총괄 정보

1) 사업 기본 정보

(1-1) 일반 정보

소관	실·국	과·팀	기금	계정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장애인고용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

(1-2) 코드·명칭 정보

구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080	08D	7000	7079	220
명칭	사회복지	고용	고용노동행정지원	장애인고용촉진 기금운영비	장애인고용공단 사업운영비

2)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N	Y	N	N	N	N

3)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N	N	Y	N	N	100.0	-

4) 기능별(내역사업별)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내역사업명	소관	사업시행주체
장애인고용공단 사업운영비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 지출계획 총괄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사업명	2025년 결산액	2026년 당초계획액 (A)	2026년 수정계획액	2027년 요구액	2027년 정부안액 (B)	증감액 (B-A)	증감률 (B-A) /A×100
장애인고용공단 사업운영비	9,538	9,616	9,616	10,107	10,107	491	51.1

1)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계획액 (수정)	2025년 계획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계획액 (수정)	2026년 계획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9,538	9,538	9,538	-	-	9,616	9,616	8,193	10,107
·장애인고용공단 사업운영비	9,538	9,538	9,538	-	-	9,616	9,616	8,193	10,107

2) 비목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계획액 (수정)	2025년 계획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계획액 (수정)	2026년 계획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9,538	9,538	9,538	-	-	9,616	9,616	8,193	10,107
·기관운영출연금(350-01)	9,538	9,538	9,538	-	-	9,616	9,616	8,193	10,107

3. 사업 설명

1) 사업목적·내용

(1-1) 장애인고용공단 사업운영비

사업목적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의 원활한 추진
사업내용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운영

2) 사업개요

(2-1)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사업근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 제71조 **제43조(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설립)** ①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제71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비용의 지급에 사용한다. 14.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과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업 수행에 따르는 경비
추진경위	○ 1990. 9.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설립 ○ 1992~2002. 직업능력개발원 5개소 설치 ○ 1993~2012. 지사 18개소 설치 ○ 2000. 1. 고용개발원 설치 ○ 2001. 1. 장애인고용부담금 징수 및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 업무 수탁 ○ 2010. 1.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 기관명 변경 ○ 2015~2017. 훈련센터 8개소(맞춤훈련센터(3) 및 발달장애인훈련센터(4), 청각센터(1)) 설치 ○ 2018. 지사 2개소(서울동부, 경기동부지사) 설치 및 훈련센터 6개소(인천, 전주, 제주 맞춤, 대전, 경기, 전북 발달) 설치 ○ 2019. 지역본부제 도입(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경기) 및 훈련센터 7개소(경기 맞춤, 부산, 울산, 강원, 충북, 경북, 경남 발달) 설치 ○ 2020. 훈련센터 6개소(서울남부, 세종, 경기북부, 충남, 전남, 제주 발달) 설치 ○ 2021. IT맞춤훈련센터 1개소(서울) 설치 ○ 2022. 수도권 지사 2개소(서울북부, 경기서부) 설치 ○ 2024. 지사 1개소(경남서부지사) 설치

(2-2) 사업규모

○ 사업기간 : 1990년~계속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

(단위: 백만원)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사업비	9,720	10,139	9,538	9,616	10,107

(2-3)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사업 수혜자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임직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기관명	2027년 지원금액 (백만원)	지원 비율(%)	법적근거
장애인고용공단 사업운영비	출연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10,107	100.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 및 제71조

3) 기능별(내역사업별) 산출 내역

(3-1) 내역사업별 세부 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계획액(수정)(A)	2027년 정부안액(B)	증감 (B-A)
합 계	9,616	10,107	491
장애인고용공단 사업운영비	9,616	10,107	491

○ **장애인고용공단 사업운영비 (2026년) 9,616 → (2027년) 10,107백만원, +5.1%**

- (설명)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운영을 위한 사업운영비 예산
- (산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사업운영비 10,107백만원
  * 기금운영비 제로베이스 감액 및 '26년 완료소요 감액: △502백만원
  * 무기계약직 처우개선, 증원인력 선택적 복리비 등 반영: +47백만원
  * 청사 임차료·관리비, 노후시설 개·보수, 신규직원 채용 대행 용역 등 반영: +946백만원

4) 사업효과

(4-1) 최근 5년(2023년~2027년)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해당없음

(4-2) 성과지표 이외의 최근 4년(2023년~2026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연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3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사업운영비 9,720백만원 지급
2024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사업운영비 10,139백만원 지급
2025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사업운영비 9,538백만원 지급
2026.7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사업운영비 8,193백만원 지급

(4-3) 향후(2027년 이후) 기대효과: 해당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매월 출연금 교부신청(공단) → 출연금 지급(고용노동부) → 사업운영비 지급(공단)

8) 최근 3년간(2024년~2026년)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8-1) 정부 사업평가: 해당없음

(8-2) 국회 지적사항: 해당없음

(8-3) 감사원, 총리실, 기타(언론, 시민단체 등) 결과: 해당없음

4. 최근 4년간(2023년~2026년) 결산내역

1) 결산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연도	당초 계획액	수정 계획액 (A)	전년도 이월액	기금변경 증감액 등	계획 현액	집행액 (B)	집행률 (B/Ax100)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3년	9,720	9,720	-	-	9,720	9,720	100.0	-	-
2024년	10,139	10,139	-	-	10,139	10,139	100.0	-	-
2025년	9,538	9,538	-	-	9,538	9,538	100.0	-	-
2026.7월	9,616	9,616	-	-	9,616	8,196	85.2	-	-

2) 연도별 결산 주요사항: 해당없음

5. 기타 추가자료: 해당없음

사 업 명
(20) 장애인고용공단 청사임차보증금(7079-230)

1. 사업 총괄 정보

1) 사업 기본 정보

(1-1) 일반 정보

소관	실·국	과·팀	기금	계정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장애인고용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

(1-2) 코드·명칭 정보

구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080	08D	7000	7079	230
명칭	사회복지	고용	고용노동행정지원	장애인고용촉진 기금운영비	장애인고용공단 청사임차보증금

2)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N	Y	N	N	N	N

3)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N	N	N	N	Y	-	-

4) 기능별(내역사업별)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내역사업명	소관	사업시행주체
장애인고용공단 청사임차보증금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 지출계획 총괄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사업명	2025년 결산액	2026년 당초계획액 (A)	2026년 수정계획액	2027년 요구액	2027년 정부안액 (B)	증감액 (B-A)	증감률 (B-A) /A×100
장애인고용공단 청사임차보증금	660	340	340	340	340	-	-

1)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계획액 (수정)	2025년 계획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계획액 (수정)	2026년 계획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660	660	660	-	-	340	340	340	340
·장애인고용공단 청사임차보증금	660	660	660	-	-	340	340	340	340

2) 비목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계획액 (수정)	2025년 계획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계획액 (수정)	2026년 계획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660	660	660	-	-	340	340	340	340
·무형자산(440-00)	660	660	660	-	-	340	340	340	340

3. 사업 설명

1) 사업목적·내용

(1-1) 장애인고용공단 청사임차보증금

사업목적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의 원활한 추진
사업내용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청사 및 무연고 직원 사택 임차보증금 지급

2) 사업개요

(2-1)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사업근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 제71조 **제43조(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설립)** ①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제71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비용의 지급에 사용한다. 14.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과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업 수행에 따르는 경비
추진경위	○ 1990.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청사 및 무연고 직원 사택 임차

(2-2) 사업규모

○ 사업기간 : 1990년~계속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

(단위: 백만원)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사업비	500	660	660	340	340

(2-3)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융자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기관명	2027년 지원금액 (백만원)	지원 비율(%)	법적근거
장애인고용공단 청사임차보증금	융자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340	100.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 및 제71조

3) 기능별(내역사업별) 산출 내역

(3-1) 내역사업별 세부 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계획액(수정)(A)	2027년 정부안액(B)	증감 (B-A)
합 계	340	340	-
장애인고용공단 청사임차보증금	340	340	-

○ 장애인고용공단 청사임차보증금 (2026년) 340백만원 → (2027년) 340백만원, 전년동

- (설명)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청사 및 무연고 직원 사택 임차를 위한 청사임차보증금 예산
- (산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청사임차보증금 340백만원

4) 사업효과

(4-1) 최근 5년(2023년~2027년)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해당없음

(4-2) 성과지표 이외의 최근 4년(2023년~2026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연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3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청사임차보증금 500백만원 지급
2024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청사임차보증금 660백만원 지급
2025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청사임차보증금 660백만원 지급
2026.7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청사임차보증금 340백만원 지급

(4-3) 향후(2027년 이후) 기대효과: 해당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장애인고용공단 청사 및 사택 임차보증금 신청 → 집행

8) 최근 3년간(2024년~2026년)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8-1) 정부 사업평가: 해당없음

(8-2) 국회 지적사항: 해당없음

(8-3) 감사원, 총리실, 기타(언론, 시민단체 등) 결과: 해당없음

4. 최근 4년간(2023년~2026년) 결산내역

1) 결산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연도	당초 계획액	수정 계획액 (A)	전년도 이월액	기금변경 증감액 등	계획 현액	집행액 (B)	집행률 (B/Ax100)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3년	500	500	-	-	500	500	100.0	-	-
2024년	660	660	-	-	660	660	100.0	-	-
2025년	660	660	-	-	660	660	100.0	-	-
2026년	340	340	-	-	340	340	100.0	-	-

2) 연도별 결산 주요사항: 해당없음

5. 기타 추가자료: 해당없음

사 업 명
(21) 장애인고용공단 대외협력(7079-250)

1. 사업 총괄 정보

1) 사업 기본 정보

(1-1) 일반 정보

소관	실·국	과·팀	기금	계정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장애인고용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

(1-2) 코드·명칭 정보

구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080	08D	7000	7079	250
명칭	사회복지	고용	고용노동행정지원	장애인고용촉진 기금운영비	장애인고용공단 대외협력

2)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N	Y	N	N	N	N

3)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N	N	Y	N	N	-	-

4) 기능별(내역사업별)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내역사업명	소관	사업시행주체
장애인고용공단 대외협력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 지출계획 총괄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사업명	2025년 결산액	2026년 당초계획액 (A)	2026년 수정계획액	2027년 요구액	2027년 정부안액 (B)	증감액 (B-A)	증감률 (B-A) /A×100
장애인고용공단 대외협력	953	903	903	903	903	-	-

1)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계획액 (수정)	2025년 계획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계획액 (수정)	2026년 계획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953	953	953	-	-	903	903	784	903
·장애인고용공단 대외협력	953	953	953	-	-	903	903	784	903

2) 비목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계획액 (수정)	2025년 계획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계획액 (수정)	2026년 계획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953	953	953	-	-	903	903	784	903
·기관운영출연금(350-01)	953	953	953	-	-	903	903	784	903

3. 사업 설명

1) 사업목적·내용

(1-1) 장애인고용공단 대외협력

사업목적	장애인 고용에 대한 범국민적 인식 개선 및 고용 촉진 활성화
사업내용	관련 정부 정책 및 국제기구 정책과의 균형 유지를 위한 사업 추진

2) 사업개요

(2-1)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사업근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 **제43조(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설립)** ①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추진경위	○ 대내협력 - 1990. 장애인고용 인식개선을 위한 TV·라디오 광고, 물품 제작 등 추진 - 1991. 장애인고용촉진대회 개최 - 1992. 장애인 고용 인식개선을 위한 작품현상공모전 개최 - 1995. 월간 '장애인과 일터' 발간 - 2011. 공단 SNS 채널 개설 및 운영 - 2020. 공단 30년사 편찬 ○ 국제협력 - 1991.~2005. 전문가양성 및 장애유형별 교육을 위한 해외연수 실시 - 1994.~1999. UNDP 사업수행 - 1995. SRH(하이델베르그재활재단)과 자매결연 협약 - 1998. RI(세계재활협회) 가입 - 2005.~2008. 한/ILO 협력사업 초청연수 실시 - 2007.~2010. 한/ILO 협력사업 후속조치의 자매결연 추진 - 2011. 외부재원(한국국제협력단)을 활용한 자매결연 기관 지원 확대 노력, RI 총회 등 국제회의 참가, 개발도상국 직업능력개발기법 전수 지원 - 2020. 국제협력팀(대외협력팀) 신설

(2-2) 사업규모

○ 사업기간 : 1990년~계속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

(단위: 백만원)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사업비	993	953	953	903	903

(2-3)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사업 수혜자 : 장애인, 장애인 고용 사업주 등 대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기관명	2027년 지원금액 (백만원)	지원 비율(%)	법적근거
장애인고용공단 대외협력	출연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903	100.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

3) 기능별(내역사업별) 산출 내역

(3-1) 내역사업별 세부 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계획액(수정)(A)	2027년 정부안액(B)	증감 (B-A)
합 계	903	903	-
장애인고용공단 대외협력	903	903	-

○ **장애인고용공단 대외협력 (2026년) 903 → (2027년) 903백만원, 전년동**

- (설명) 장애인고용에 대한 범국민적 인식개선 및 고용촉진 활성화를 위한 장애인고용공단 대외협력 예산
- (산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외협력 903백만원

4) 사업효과

(4-1) 최근 5년(2023년~2027년)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해당없음

(4-2) 성과지표 이외의 최근 4년(2023년~2026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연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3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외협력 993백만원 지급
2024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외협력 953백만원 지급
2025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외협력 953백만원 지급
2026.7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외협력 784백만원 지급

(4-3) 향후(2027년 이후) 기대효과: 해당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공익광고: 홍보효과 조사 → 매체전략 수립 → 광고 제작 → 매체 계약 → 광고 송출
- 언론보도: 사례 발굴 → 보도자료 배포 취재 지원 → 결과 평과(오보·왜곡보도 대응) → 사후관리
- 국제회의 참가: 정례회의 참가 의무, 회의주최기관 참가 요청 → 참가계획 수립 → 회의 참가 → 결과보고 및 후속조치

8) 최근 3년간(2024년~2026년)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8-1) 정부 사업평가: 해당없음

(8-2) 국회 지적사항: 해당없음

(8-3) 감사원, 총리실, 기타(언론, 시민단체 등) 결과: 해당없음

4. 최근 4년간(2023년~2026년) 결산내역

1) 결산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연도	당초 계획액	수정 계획액 (A)	전년도 이월액	기금변경 증감액 등	계획 현액	집행액 (B)	집행률 (B/Ax100)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3년	993	993	-	-	993	993	100.0	-	-
2024년	953	953	-	-	953	953	100.0	-	-
2025년	953	953	-	-	953	953	100.0	-	-
2026년	903	903	-	-	903	784	86.8	-	-

2) 연도별 결산 주요사항: 해당없음

5. 기타 추가자료: 해당없음

사 업 명
(22)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탁(9006-840)

1. 사업 총괄 정보

1) 사업 기본 정보

(1-1) 일반 정보

소관	실·국	과·팀	기금	계정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장애인고용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

(1-2) 코드·명칭 정보

구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080	08D	9000	9006	840
명칭	사회복지	고용	기금간거래(예탁금)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공공자금관리기금 (총괄계정) 예탁

2)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N	Y	N	N	N	N

3)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Y	N	N	N	N	-	-

4) 기능별(내역사업별)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내역사업명	소관	사업시행주체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탁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2. 지출계획 총괄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사업명	2025년 결산액	2026년 당초계획액 (A)	2026년 수정계획액	2027년 요구액	2027년 정부안액 (B)	증감액 (B-A)	증감률 (B-A) /A×100
공공자금관리기금 (총괄계정) 예탁	700,000	800,000	800,000	800,000	800,000	-	-

1)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계획액 (수정)	2025년 계획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계획액 (수정)	2026년 계획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700,000	700,000	700,000	-	-	800,000	800,000	600,000	800,000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탁	700,000	700,000	700,000	-	-	800,000	800,000	600,000	800,000

2) 비목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계획액 (수정)	2025년 계획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계획액 (수정)	2026년 계획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700,000	700,000	700,000	-	-	800,000	800,000	600,000	800,000
·기금예탁금(480-03)	700,000	700,000	700,000	-	-	800,000	800,000	600,000	800,000

3. 사업 설명

1) 사업목적·내용

(1-1)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탁

사업목적	공공목적의 재원으로 사용함으로써 국가재정에 기여
사업내용	공공자금관리기본법에 의거 설치된 공공자금관리기금(재정경제부 소관)에 예탁

2) 사업개요

(2-1)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사업근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2조,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6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2조(기금의운용·관리)** ③ 기금을 운용할 때에는 그 수익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4.「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의 예탁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6조(관리기금에의 예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정·예금·회계 또는 기금의 관리자는 해당 기금 등의 설치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여유자금을 관리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4. 「국가재정법」 제5조에 따른 기금
추진경위	○ 2017.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2-2) 사업규모

○ 사업기간 : 2017년~계속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

(단위: 백만원)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사업비	600,000	600,000	700,000	800,000	800,000

(2-3)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3) 기능별(내역사업별) 산출 내역

(3-1) 내역사업별 세부 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계획액(수정)(A)	2027년 정부안액(B)	증감 (B-A)
합 계	800,000	800,000	-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탁	800,000	800,000	-

○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탁 (2026년) 800,000백만원 → (2027년) 800,000백만원, 전년동**

- (설명) '26년 수준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규모 요구
- (산출)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금 800,000백만원

4) 사업효과

(4-1) 최근 5년(2023년~2027년)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해당없음

(4-2) 성과지표 이외의 최근 4년(2023년~2026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연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3년	공자기금으로 600,000백만원 예탁
2024년	공자기금으로 600,000백만원 예탁
2025년	공자기금으로 700,000백만원 예탁
2026.7월	공자기금으로 600,000백만원 예탁

(4-3) 향후(2027년 이후) 기대효과

○ 공공목적의 재원으로 사용함으로써 국가재정에 기여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의 운용 규모 및 국가재정상황에 따라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8) 최근 3년간(2024년~2026년)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8-1) 정부 사업평가: 해당없음

(8-2) 국회 지적사항: 해당없음

(8-3) 감사원, 총리실, 기타(언론, 시민단체 등) 결과: 해당없음

4. 최근 4년간(2023년~2026년) 결산내역

1) 결산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연도	당초 계획액	수정 계획액 (A)	전년도 이월액	기금변경 증감액 등	계획 현액	집행액 (B)	집행률 (B/Ax100)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3년	600,000	600,000	-	-	600,000	600,000	100.0	-	-
2024년	600,000	600,000	-	-	600,000	600,000	100.0	-	-
2025년	700,000	700,000	-	-	700,000	700,000	100.0	-	-
2026.7월	800,000	800,000	-	-	800,000	600,000	75.0	-	-

2) 연도별 결산 주요사항: 해당없음

5. 기타 추가자료: 해당없음

사 업 명
(23) 한국은행예치(9702-971)

1. 사업 총괄 정보

1) 사업 기본 정보

(1-1) 일반 정보

소관	실·국	과·팀	기금	계정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장애인고용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

(1-2) 코드·명칭 정보

구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080	08D	9000	9702	971
명칭	사회복지	고용	기금간거래(예탁금)	여유자금운용	한국은행예치

2)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N	Y	N	N	N	N

3)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Y	N	N	N	N	-	-

4) 기능별(내역사업별)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내역사업명	소관	사업시행주체
한국은행예치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2. 지출계획 총괄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사업명	2025년 결산액	2026년 당초계획액 (A)	2026년 수정계획액	2027년 요구액	2027년 정부안액 (B)	증감액 (B-A)	증감률 (B-A) /A×100
한국은행예치	1,761	889	889	1,082	1,000	111	12.5

1)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계획액 (수정)	2025년 계획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계획액 (수정)	2026년 계획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936	936	1,761	-	-	889	889	14,327	1,000
·한국은행예치	936	936	1,761	-	-	889	889	14,327	1,000

2) 비목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계획액 (수정)	2025년 계획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계획액 (수정)	2026년 계획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936	936	1,761	-	-	889	889	14,327	1,000
·한국은행예치금(470-01)	936	936	1,761	-	-	889	889	14,327	1,000

3. 사업 설명

1) 사업목적·내용

(1-1)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탁

사업목적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의 안정적 운용
사업내용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의 국고 계좌 운용

2) 사업개요

(2-1)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사업근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69조, 제72조 **제69조(기금의 재원)**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2. 제33조와 제35조에 따른 부담금·가산금 및 연체금 3. 기금의 운용에 따라 생기는 수익금과 그 밖의 공단 수입금 4. 제57조에 따른 차입금 5. 제70조에 따른 차입금 ②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제1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제72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 ②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③ 기금을 운용할 때에는 그 수익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1.「은행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의 예탁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채권의 매입 3.「은행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그 지급을 보증하는 채권의 매입 4.「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의 예탁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추진경위	○ 199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설치

(2-2) 사업규모

○ 사업기간 : 1991년~계속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

(단위: 백만원)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사업비	300	300	936	889	1,000

(2-3)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3) 기능별(내역사업별) 산출 내역

(3-1) 내역사업별 세부 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계획액(수정)(A)	2027년 정부안액(B)	증감 (B-A)
합 계	889	1,000	111
한국은행예치	889	1,000	111

○ 한국은행예치 (2026년) 889백만원 → (2027년) 1,000백만원, +12.5%

- (설명) 최근 5년('21~'25년) 연평균 증감률 반영
- (산출) 한국은행예치금 1,000백만원

4) 사업효과

(4-1) 최근 5년(2023년~2027년)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해당없음

(4-2) 성과지표 이외의 최근 4년(2023년~2026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연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3년	한국은행 1,192백만원 예치
2024년	한국은행 781백만원 예치
2025년	한국은행 1,761백만원 예치
2026.7월	한국은행 14,327백만원 예치

(4-3) 향후(2027년 이후) 기대효과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의 안정적 운용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한국은행 예치

8) 최근 3년간(2024년~2026년)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8-1) 정부 사업평가: 해당없음

(8-2) 국회 지적사항: 해당없음

(8-3) 감사원, 총리실, 기타(언론, 시민단체 등) 결과: 해당없음

4. 최근 4년간(2023년~2026년) 결산내역

1) 결산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연도	당초 계획액	수정 계획액 (A)	전년도 이월액	기금변경 증감액 등	계획 현액	집행액 (B)	집행률 (B/Ax100)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3년	300	300	-	-	300	1,192	397.3	-	-
2024년	300	300	-	-	300	781	260.3	-	-
2025년	936	936	-	-	936	1,761	188.2	-	-
2026.7월	889	889	-	-	889	14,327	1,611.6	-	-

2) 연도별 결산 주요사항: 해당없음

5. 기타 추가자료: 해당없음

사 업 명
(24) 비통화금융기관예치(9702-973)

1. 사업 총괄 정보

1) 사업 기본 정보

(1-1) 일반 정보

소관	실·국	과·팀	기금	계정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장애인고용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

(1-2) 코드·명칭 정보

구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080	08D	9000	9702	973
명칭	사회복지	고용	기금간거래(예탁금)	여유자금운용	비통화금융기관예치

2)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N	Y	N	N	N	N

3)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Y	N	N	N	N	-	-

4) 기능별(내역사업별)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내역사업명	소관	사업시행주체
비통화금융기관예치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2. 지출계획 총괄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사업명	2025년 결산액	2026년 당초계획액 (A)	2026년 수정계획액	2027년 요구액	2027년 정부안액 (B)	증감액 (B-A)	증감률 (B-A) /A×100
비통화금융기관예치	717,394	697,460	697,460	811,197	811,197	113,737	16.3

1)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계획액 (수정)	2025년 계획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계획액 (수정)	2026년 계획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534,684	534,684	717,394	-	-	697,460	697,460	710,779	811,197
·비통화금융기관예치	534,684	534,684	717,394	-	-	697,460	697,460	710,779	811,197

2) 비목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계획액 (수정)	2025년 계획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계획액 (수정)	2026년 계획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534,684	534,684	717,394	-	-	697,460	697,460	710,779	811,197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4001)	534,684	534,684	717,394	-	-	697,460	697,460	710,779	811,197

3. 사업 설명

1) 사업목적·내용

(1-1)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탁

사업목적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의 안정적 운용
사업내용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의 여유자금을 비통화금융기관에 예치

2) 사업개요

(2-1)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사업근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69조, 제72조 **제69조(기금의 재원)**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2. 제33조와 제35조에 따른 부담금·가산금 및 연체금 3. 기금의 운용에 따라 생기는 수익금과 그 밖의 공단 수입금 4. 제57조에 따른 차입금 5. 제70조에 따른 차입금 ②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제1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제72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 ②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③ 기금을 운용할 때에는 그 수익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1.「은행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의 예탁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채권의 매입 3.「은행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그 지급을 보증하는 채권의 매입 4.「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의 예탁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추진경위	○ 199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설치

(2-2) 사업규모

○ 사업기간 : 1991년~계속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

(단위: 백만원)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사업비	425,381	466,461	534,684	697,460	811,197

(2-3)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3) 기능별(내역사업별) 산출 내역

(3-1) 내역사업별 세부 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계획액(수정)(A)	2027년 정부안액(B)	증감 (B-A)
합 계	697,460	811,197	113,737
비통화금융기관예치	697,460	811,197	113,737

○ **비통화금융기관예치 (2026년) 697,460백만원 → (2027년) 811,197백만원, +16.3%**

- (설명) '27년 여유자금 규모 고려하여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 요구
- (산출) 비통화금융기관 예치금 811,197백만원

4) 사업효과

(4-1) 최근 5년(2023년~2027년)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해당없음

(4-2) 성과지표 이외의 최근 4년(2023년~2026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연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3년	비통화금융기관 628,840백만원 예치
2024년	비통화금융기관 767,800백만원 예치
2025년	비통화금융기관 717,394백만원 예치
2026.7월	비통화금융기관 710,779백만원 예치

(4-3) 향후(2027년 이후) 기대효과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의 안정적 운용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연간 자산운용계획 및 분기별 자산운용계획에 따라 장기 수익증권 및 단기자금의 예탁규모 결정하여 전문기관(연기금투자풀) 등 위탁 운용

8) 최근 3년간(2024년~2026년)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8-1) 정부 사업평가: 해당없음

(8-2) 국회 지적사항: 해당없음

(8-3) 감사원, 총리실, 기타(언론, 시민단체 등) 결과: 해당없음

4. 최근 4년간(2023년~2026년) 결산내역

1) 결산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연도	당초 계획액	수정 계획액 (A)	전년도 이월액	기금변경 증감액 등	계획 현액	집행액 (B)	집행률 (B/Ax100)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3년	452,391	425,381	-	△27,010	425,381	628,840	147.8	-	-
2024년	499,109	466,461	-	△32,648	466,461	767,800	164.6	-	-
2025년	544,804	534,684	-	△10,120	534,684	717,394	134.2	-	-
2026.7월	697,460	697,460	-	-	697,460	710,779	101.9	-	-

2) 연도별 결산 주요사항

연도	유형	금액 (백만원)	사유
2023년	전용	△27,010	- (기금운용계획변경) 장애인고용장려금 지원 확대 및 장애인직업능력개발 경기남부직업능력개발원 용지보상비 증액을 위해 27,010백만원 감액
2024년	전용	△32,648	- (기금운용계획변경) 장애인고용장려금 수요 증가에 따른 지원 확대 등을 위해 32,648백만원 감액
2025년	전용	△10,120	- (기금운용계획변경) 근로지원인 및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비용 수요 증가에 따른 지원 확대 등을 위해 10,120백만원 감액

5. 기타 추가자료: 해당없음

Ⅳ. 임금채권보장기금

사 업 명
(1) 대지급금 지급(3051-300)

1. 사업 총괄 정보

1) 사업 기본 정보

(1-1) 일반 정보

소관	실·국	과·팀	기금	계정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근로기준정책관	퇴직연금복지과	임금채권보장기금	-

(1-2) 코드·명칭 정보

구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080	08E	3000	3051	300
명칭	사회복지	노동	근로조건보호및 복지증진	대지급금 지급	대지급금 지급

2)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N	Y	N	N	N	N

3)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Y	N	Y	N	N	-	-

4) 기능별(내역사업별)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내역사업명	소관	사업시행주체
대지급금지급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고용노동부
채권관리비용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근로복지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상습체불사업주회수관리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근로복지공단

2. 지출계획 총괄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사업명	2025년 결산액	2026년 당초계획액 (A)	2026년 수정계획액	2027년 요구액	2027년 정부안액 (B)	증감액 (B-A)	증감률 (B-A) /A×100
대지급금지급	688,519	746,068	746,068	776,581	776,581	30,513	4.1

1)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계획액 (수정)	2025년 계획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계획액 (수정)	2026년 계획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719,092	719,092	688,519	0	30,573	746,068	746,068	369,670	776,581
·대지급금 지급	715,016	715,016	684,511	0	30,505	742,077	742,077	367,099	766,084
·채권관리비용	4,076	4,076	4,008	0	68	3,289	3,289	2,109	10,172
·상습체불사업주회수관리	0	0	0	0	0	702	702	462	325

2) 비목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계획액 (수정)	2025년 계획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계획액 (수정)	2026년 계획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719,092	719,092	688,519	0	30,573	746,068	746,068	369,670	776,581
·일반수용비(210-01)	0	0	0	0	0	0	0	0	58
·기타보전금(310-04)	715,016	715,016	684,511	0	30,505	742,077	742,077	367,099	766,026
·사업출연금(350-02)	4,076	4,076	4,008	0	68	3,991	3,991	2,571	10,497

3. 사업 설명

1) 사업목적·내용

(1-1) 대지급금지급

사업목적	**(대지급금지급)**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대지급금)함으로써 체불근로자 생활안정 도모 **(대지급금조력지원)** 체불근로자가 도산대지급금을 신청·수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공인노무사에게 지원업무의 내용, 도산대지급금 지급 근로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300만원 한도(사업장별)로 지원
사업내용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

(1-2) 채권관리비용

사업목적	체불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고, 사업주변제금 회수율 제고로 기금 재정 안정에 기여
사업내용	체불사업주를 대상으로 대위권 행사 과정에 드는 소송 비용

(1-3) 상습체불 사업주 회수관리

사업목적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상습체불사업주 경제제재 신규 도입('25.10.23.)에 따라 '26년부터 상습체불사업주 선정 대상자에 대한 소명 기회 부여를 통한 변제금 납부 독려로 변제금 회수율 제고
사업내용	상습체불사업주의 변제금 회수업무에 소요되는 비용

2) 사업개요

(2-1)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사업근거	ㅇ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3. 고용노동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 가. 「민사집행법」 제24조에 따른 확정된 종국판결 나. 「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 다. 「민사집행법」 제56조제5호에 따른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認諾)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라. 「민사조정법」 제28조에 따라 성립된 조정 마. 「민사조정법」 제30조에 따른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바.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제1항에 따른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5.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제12조에 따라 체불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하여 사업주의 미지급임금등이 확인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이하 "대지급금"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지급금의 상한액과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대지급금의 상한액은 근로자의 퇴직 당시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으며 대지급금이 적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2.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한다) 3. 「근로기준법」 제74조제4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한다)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근무기간, 휴업기간 또는 출산전후휴가기간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여 지급하는 대지급금의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할 것 2.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여 지급하는 대지급금의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할 것 3.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대지급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같은 항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대지급금을 지급할 것 4.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여 대지급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지급금을 지급할 것 ④ 대지급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퇴직한 근로자와 사업주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사업장 규모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퇴직한 근로자가 제1항에 따라 대지급금을 청구하는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공인노무사로부터 대지급금 청구서 작성, 사실확인 등에 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퇴직한 근로자가 제5항에 따라 공인노무사로부터 지원을 받은 경우 그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금액 및 구체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 여부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주(대지급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로 한정한다) 및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⑧ 그 밖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7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업주와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아니한 근로자(이하 "재직 근로자"라 한다)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대지급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급하는 대지급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직 근로자가 체불 임금에 대하여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을 위한 소송 등을 제기하거나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진정·청원·탄원·고소 또는 고발 등을 제기한 날을 기준으로 맨 나중의 임금 체불이 발생한 날부터 소급하여 3개월 동안에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받지 못한 임금 2. 제1호와 같은 기간 동안에 지급되어야 할 휴업수당 중 지급받지 못한 휴업수당 3. 제1호와 같은 기간 동안에 지급되어야 할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에서 지급받지 못한 급여 ③ 대지급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재직 근로자와 사업주의 기준 및 대지급금의 상한액은 해당 근로자의 임금이나 소득 수준 및 그 밖의 생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은 해당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만 지급한다. ⑤ 제1항에 따라 대지급금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퇴직 후 같은 근무기간, 같은 휴업기간 또는 같은 출산전후휴가기간에 대하여 제7조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 그 지급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대지급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급받은 대지급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할 것 2. 제7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여 대지급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것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 여부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주(대지급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로 한정한다) 및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과 잘못 납부한 금액 등의 반환 2. 제7조제6항에 따른 공인노무사 지원 비용의 지급

	3. 제7조의3에 따른 체불 임금등 및 생계비 지급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융자 **4. 제27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한 출연** 5. 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 6. 임금등 체불 예방과 청산 지원 등 임금채권보장제도 관련 연구 7. 「법률구조법」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대한 출연. 다만, 임금등이 체불된 근로자에 대한 법률구조사업 지원에 한정한다. 8. 그 밖에 임금채권보장사업과 기금의 관리·운용
추진경위	○ 근로기준법(제38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12조)는 일정범위의 임금채권(특히 최종 3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재해보상금 최우선변제)이 여타 채권(담보채권, 조세·공과금)에 비해 우선적으로 변제되도록 하는『임금채권 우선변제제도』를 두고 있음 - 그러나 사업주의 변제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임금채권을 확보할 수 없으며, 우선변제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법원의 경매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적기에 임금채권 확보가 곤란 ○ 이에 1980년부터 임금채권보장제도의 도입이 검토되어 오다가 '98.1.15. 발족한 노사정위원회의『경제위기 극복과 재도약을 위한 노사정 공동선언문』채택 및『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계약』을 제정하면서 구체적인 도입 방안이 논의되었음 - 특히, IMF 외환위기 이후 기업 구조조정으로 도산한 기업이 급증하면서 근로자들의 임금채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98.2.20. 법률을 제정하여, '98.7.1.부터 시행

(2-2) 사업규모

○ 사업기간 : 1998년~계속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계획액 기준, 기금운용계획변경 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사업비	686,928	727,203	719,092	746,068	776,581

(2-3)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대지급금 지급, 대지급금조력지원) 직접수행,
(채권관리비, 상습체불 사업주 회수관리) 출연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 사업 수혜자 : 임금등이 체불된 근로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기관명	2027년 지원금액 (백만원)	지원 비율(%)	법적근거
채권관리비	출연	근로복지공단	9,823	96.6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 제4호
		한국자산관리공사	349	3.4	
상습체불 사업주회수관리	출연	근로복지공단	325	100.0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 제4호

3) 기능별(내역사업별) 산출 내역

(3-1) 내역사업별 세부 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계획액(수정)(A)	2027년 정부안액(B)	증감 (B-A)
합 계	**746,068**	**776,581**	**30,513**
대지급금지급	742,077	766,084	24,007
채권관리비용	3,289	10,172	6,883
상습체불사업주회수관리	702	325	-377

○ 대지급금 지급 : (2026) 742,077백만원 → (2027) 766,084백만원, +3.2%

<도산대지급금> (2026) 137,254백만원 → (2027) 122,064백만원, 15,190백만원 감액

- (설명) 도산대지급금 '임금등' 지급범위가 최종 3개월분→최종 6개월분으로 확대('26.8.20. 시행)됨에 따라, '25년 지원실적을 기준으로, 제도 확대로 인한 증가 수치를 반영하여 '27년 지원 물량 및 단가 추계
- (신청인원) '25년 지원인원(9,826명)에 최근 4년(22~25년) 도산대지급금 지원인원 증가율(21.9%) 반영

  * 14,601명 = 9,826명 × 1.219 × 1.219

- (지원단가) '25년 지원실적(임금 최종 3개월분)을 기준으로 '25년 지급예상액*을 산정(임금 최종 6개월분 반영) → '25년 변경단가(7,829천원) 산정 후 보수상승률(3.35%) 반영하여 '27년 단가** 산정

  * '25년 도산대지급금 지급자의 '임금' 체불액 중 최종 3개월분 대비 최종 6개월분의 증가 배수(1.3배↑)를 '25년 도산대지급금 '임금' 지급액(265억원)에 반영하여 제도 확대시 '25년 지급예상액(769억원) 산정
    ↳ '25년 도산대지급금 ①임금 예상액(6개월분) 349억원 + ②퇴직급여 지급액 420억원 = 769억원

  ** 8,360천원 = 7,829천원 × 1.0335 × 1.0335

- (산출) 14,601명 × 8,360천원

<간이대지급금> (2026) 604,823백만원 → (2027) 643,962백만원, 39,139백만원 증액

- (설명) 최근 3년간 사업실적 반영
- (신청인원) '25년 지원인원수(105,548명)에 최근 3년 체불근로자수 연평균 증감률(-2.41%) 반영하여 '27년 전체 예상 물량(100,522명) 산정
- (지원단가) 최근 3년('23~'25년) 간이대지급금 평균 지급액(643,962백만원)에 '27년 예상 물량(100,522명)을 나눈값을 반영하여 '27년 예상단가(6.046천원) 산정
- (산출) 100,522명 × 6,406천원

<대지급금조력지원> (2026 당초 계획) 0백만원 → (2027 계획안) 58백만원, 순증

- (설명) 최근 도산등사실인정 신청 건수 및 도산대지급금 신청인원 증가로 '대지급금 조력지원'집행액이 큰 폭 증가, 특히, 국정과제 추진(도산대지급금 지급범위 확대)에 따른 사업수요 증가가 예상되어 안정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사업비 반영 필요
- (신청인원) 최근 1년('24년 4월~'25년 3월) 실적을 감안하여 산정
- (산출) 58백만원
  ▲도산등사실인정 : 53개소×900,000원=48백만원
  ▲도산등사실불인정 : 1개소×450,000원=0.45백만원
  ▲도산대지급금 확인신청 : 165명×60,000원=10백만원

○ 채권관리비용 : (2026) 3,289백만원 → (2027) 10,172백만원, +209.3%

- (설명) '25년 실제 납부고지 대상 등 반영, 대규모 임금체불 발생 등에 대응하여 '변제금 회수강화 추진단'을 통한 대지급금 변제금 회수 강화 및 체불청산지원 융자 신속 지원

· 대지급금*의 변제금 회수율은 30% 미만으로, 체불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고 체불 피해 근로자를 안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변제금 회수 제고 필요

* 체불근로자 생계안정을 위해 국가가 사업주 대신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변제금을 회수하여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사업 재원으로 활용

· 청년층을 변제금 회수강화 지원단으로 선발하여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 지급·회수 행정 업무 경험의 기회 제공

- (산출) 10,172백만원

(1)고지・독촉비용: 833백만원
- (고지) 424백만원(3,153원×134,484건)
- (독촉) 404백만원(3,010원×134,349건)
- (AI보이스봇) 5백만원(385천원×12개월)

(2) 압류비용: 1,420백만원
- (압류예고) 195백만원(3,043원×64,006건)
- (압류촉탁) 1,225백만원

* 부동산 55백만원, 자동차 133백만원, 기타 45백만원, 예금채권 992백만원

(3) 강제집행 공매수수료: 3,080백만원

* 2,000건×1,540,000원

(4) 기타 소송비용: 265백만원

* 변호사 소송수임료 97백만원, 자문변호사료 48백만원, 채권관리교육 116백만원, 판례검색 서비스 5백만원

(5) 채권관리담당자 신원보증보험 보험료: 25백만원

* 296,760원 × 84명(채권관리 담당자)

(6) 미회수채권 위탁 수수료: 349백만원

* 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탁수수료: 87,189천원(분기별 예상 위탁수수료)×4회

(7) 변제금 회수강화 지원단: 4,200백만원

* 인건비: 150명×19,200,000원=2,880백만원
  경상비: 1,320백만원

○ 상습체불 사업주 회수관리 : (2026) 702백만원 → (2027) 325백만원, △53.7%

- (설명) 상습체불사업주 선정 대상 증가 등을 반영하고, 상습체불사업주 선정 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용은 임금채권정보화 사업으로 요구(이관)

- (산출) 325백만원

* 일반수용비: 15백만원
  - 사전통지서 발송:(DM), 사무용품 구입비, 사무자동화소모품지, 교육훈련비 등
* 공공요금 및 제세: 79백만원
  - 전화요금, 팩스, 사전통지서 우편요금 등
* 현장조사 및 교부송달(여비): 200백만원
* 업무지원 경비: 18백만원
  - 특근매식비, 부서운영비, 사업추진비 등 업무수행경비
* 임차료: 5백만원
  - 복합기 등 사무기기 임차: 5백만원(421,000원×12개월)
* 자산취득비: 8백만원
  - 사무집기, 일반사무기기, 전산사무기기 등 신설 부서 배치

4) 사업효과

(4-1) 최근 5년(2023년~2027년)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 성과지표: 임금체불 피해근로자 권리구제율(%)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목표	78.5	81.5	84.3	85.3	85.4
실적	83.9	85.0	85.7	해당없음	해당없음
달성도	106.9	104.3	101.7	해당없음	해당없음

- **측정산식 :** (지도해결근로자수+대지급금지급근로자수+체불사업주융자지원근로자수)/체불근로자수*100

- **측정방법 및 목표치 설정근거 :** 외부환경 및 사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난 3개년 평균실적 대비 상향

- **자료수집방법/출처 :** 고용노동부 노사누리시스템, 근로복지공단 노동포털시스템

(4-2) 성과지표 이외의 최근 4년(2023년~2026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단위 : 개소, 명, 백만원)

구분	계			도산대지급금			간이대지급금		
	사업장수	지급인원	금액	사업장수	지급인원	금액	사업장수	지급인원	금액
2026.7	15,287	62,206	367,089	988	5,813	38,829	14,299	56,393	328,260
2025	23,706	115,374	684,511	1,316	9,826	69,274	22,390	105,548	615,237
2024	24,327	128,638	724,207	1,073	7,826	54,828	23,254	120,812	669,379
2023	24,183	132,079	686,905	825	5,881	39,635	23,358	126,198	647,271

(4-3) 향후(2027년 이후) 기대효과

○ 일정범위의 체불임금등에 대해 대지급금을 지급함으로써 체불근로자 생활안정 지원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도산대지급금

<사실상 도산의 경우>

근로자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지방관서)
⬇
지방관서
도산등사실인정 통지(근로자)

<재판상 도산의 경우>

사업주
재판상도산(파산, 회생절차개시) 신청(법원)
⬇
법원
재판상도산(파산, 회생절차개시) 인정(사업주)

⬇
근로자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 및 확인신청(지방관서)
⬇
지방관서
요건 충족 시 지급청구서 및 확인통지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송부
⬇
근로복지공단
도산대지급금 지급

■ 간이대지급금

<확정판결로 청구하는 경우>

근로자
체불 신고(지방관서)

지방관서
체불 조사 및 체불금액 확정
자체청산 지도, 미청산 시 체불확인서 발급(소송제기용)

근로자(법률구조공단 등)
임금 청구소송 제기, 승소판결 확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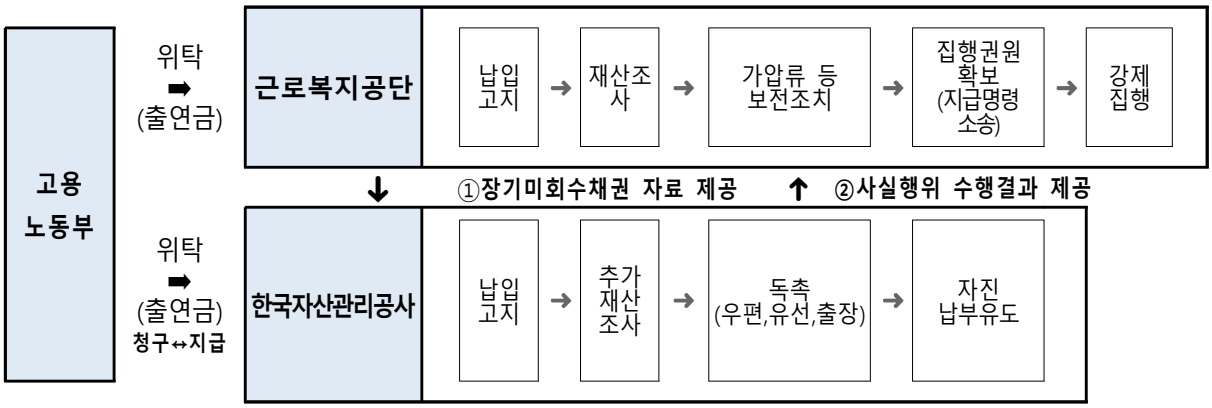
<체불확인서로 청구하는 경우>

지방관서
체불 조사 및 체불금액 확정
자체청산 지도, 미청산 시 체불확인서 발급(대지급금 청구용)

근로자
간이대지급금 청구(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지급요건 등 확인 후 간이대지급금 지급

■ 채권관리비용



*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실행위(채무자 주소·거소 확인, 재산조사, 납부 독촉, 전화·방문상담 등) 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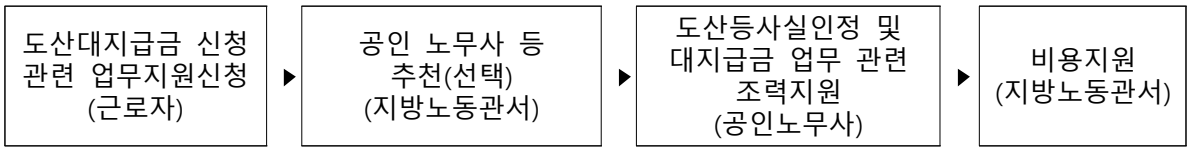
**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수행하는 사실행위 이외에 보전처분, 소송, 강제집행, 시효관리 등 법률행위 및 소멸정리 업무 등은 캠코 위탁 후에도 공단에서 계속 수행

■ 상습체불사업주 회수관리

①단계/노동부	②2단계/ **공단**	③단계/ **공단**	④단계/ 노동부	⑤단계/ 노동부
상습체불사업주 대상 선정(추출)	자료제출 안내 소명기회 부여 (3개월 이상)	상습체불사업주 '제외사유' 해당여부 확인	임금체불정보 심의위 심의·의결 (대상확정, 통보)	자료제공(신용정보원) 및 이의제기 대응

* 상습체불사업주 신용제재 예고통지서 등기우편 발송(교부, 송시송달) → 사업장 가동상태(파산, 회생, 실종 등) 확인 등 사실관계 검토 → 전액청산여부, 청산계획(체불액의 80% 이상 청산한 경우에 한함) 실행가능성 판단 등 '제외사유' 해당여부 확인 → 확인자료(증빙) 고용노동부 송부

■ **대지급금조력지원**



8) 최근 3년간(2024년~2026년)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8-1) 정부 사업평가

구분	연도	주요내용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2024년	○ 의견 : 개선필요 ○ 결과 : 공단 인력충원 및 융자 제도와의 상충점 조정 필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2025년	○ 의견 : 양호 ○ 결과 : 근로자의 기본 생계유지와 노동기본권 보호를 도모하는 사회안전망 핵심 제도로서 적정 운영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2026년	○ 의견 : 양호 ○ 결과 : 임금체불 근로자를 위한 핵심 사회안전망으로서 높은 사회적 가치를 입증하며, 신속한 지원체계 유지 및 우수한 예산집행 효율성 달성

(8-2) 국회 지적사항

구분	연도	주요내용
예결위/환노위	2022년 2023년	○ 지적 : 대지급금 회수율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 조치 - 근로복지공단의 임금채권보장업무 담당인력 보강* 및 효율적 배치 * '22년 공단 임금채권보장업무 담당인력 56명 증원 - 변제금 미납 사업주의 미납정보를 신용정보회사에 제공, 오래된 악성채권은 전문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하여 회수업무 효율화('24.8.7. 시행) - 회수 통계 분석을 토대로 회수 가능성 높은 사업장 선별, 현장방문 및 대면독촉 등을 통해 집중회수 추진
예결위/환노위	2024년	○ 지적 : 대지급금 지급 규모 확대에 따라 회수율 상향 등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할 것 ○ 조치 - 변제금을 일시납부하기 어려운 사업주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자발적 납부 유도 - 체불 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제도를 활성화하여 대지급금보다 사업주 융자를 먼저 활용하도록 유도해 변제책임 강화

		- 변제금 미납사업주 신용제재, 장기미회수채권 자산관리공사 위탁 시행('24.8.7. 시행), 고액채권 집중관리 및 신용제재 시행 전 자진납부기간 운영 통한 자발적 변제 유도, 신속한 변제금 회수를 위해 변제금 회수절차를 국세체납처분절차로 변경('26.5.12. 시행) ○ 지적 : 대지급금 계획액을 실제 수요를 반영하여 적정 수준으로 편성하고, 연례적인 과소 편성 관행을 개선할 것 ○ 조치 : 국정과제 추진사항(도산대지급금 지급범위 확대)을 반영하여 '26년 예산 적정 편성

(8-3) 감사원, 총리실, 기타(언론, 시민단체 등) 결과: 해당없음

4. 최근 4년간(2023년~2026년) 결산내역

1) 결산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연도	당초 계획액	수정 계획액 (A)	전년도 이월액	기금변경 증감액 등	계획 현액	집행액 (B)	집행률 (B/Ax100)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3년	559,155	686,928	0	127,773	686,928	686,905	100.0	0	23
2024년	474,733	727,203	0	252,470	727,203	727,198	100.0	0	5
2025년	529,346	719,092	0	189,746	719,092	688,519	95.7	0	30,573
2026년	746,068	746,068	0	0	746,068	369,670	49.5	해당없음	해당없음

2) 연도별 결산 주요사항

연도	유형	금액 (백만원)	사유
2023년	이용	127,773	금리인상의 영향과 소비심리 위축, 건설경기 둔화 등에 따른 기업 경영사정 악화로 체불신고액 증가에 따른 대지급금 지급 증가로 1,278억원 증액
2024년	이용	252,470	임금체불 증가 등에 따른 대지급지급 수요 증가로 2,525억원 증액
2025년	이용	189,746	대미 관세정책 여파 등으로 내수부진 지속,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가 예상되어 체불규모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대지급금 지급 1,508억원 증액(1차 추경), 임금체불 증가에 따른 대지급금 지급 378억원 증액, 소송제기 사건의 증가 및 적극적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에 따른 채권관리비용 11억원 증액

5. 기타 추가자료

참고 1 대지급금 지급 산출 근거

□ 도산대지급금(122,064백만원)

○ 도산대지급금 '임금등' 지급범위 확대(최종 3→6개월분) 시행을 고려하여, '25년 지원실적 기준, 제도 확대로 인한 증가수치를 반영하여 산정

* (산출내역) 14,601명×8,360천원

○ (물량) '25년 도산대지급금 지급인원(9,826명)에 최근 4년간 도산대지급금 지급인원 증가율(21.9%)을 반영

* **14,601명** = '25년 도산대지급금 지급인원(9,826명) × 최근 4년간 도산대지급금 지급인원 연평균 증가율(21.83%)[2]

<도산대지급금 지급인원 증가율>

구분	21	22	23	24	25	최근 4년 평균증감률
지급인원(명)	10,381	5,430	5,881	7,826	9,826	21.9%(1.219)

○ (단가) ①'25년 지원실적(임금 최종 3개월분)을 기준으로 '25년 지급예상액(임금 최종 6개월분)을 산정 → ②'25년 변경단가(7,829천원) 산정 후 보수상승률(3.35%) 반영하여 '27년 단가(8,360천원) 산정

① '25년 도산대지급금 지급자의 '임금 체불액' 중 최종 3개월분 대비 최종 6개월분의 증가배수(1.3배↑)를 '25년 도산대지급금 '임금 지급액'(265억원)에 반영하여 제도 확대 적용시 '25년 지급예상액(769억원)* 산정

* '25년 도산대지급금 ①임금 예상액(6개월분) 349억원 + ②퇴직급여 지급액 420억원 = 769억원

② '25년 지급예상액(769억원)을 '25년 지급인원(9,826명)으로 나누어 산정한 '25년 변경단가(7,829천원)에 최근 5년간 보수상승률(3.35%)을 반영하여 '27년 단가* 산정

* **8,360천원** = 7,829천원 × 1.0335 × 1.0335

□ 간이대지급금(643,962백만원)

○ 최근 3년 평균 간이대지급금 지급액을 기준으로 물량, 단가 산출

* (산출내역) 100,522명×6,406천원

○ (물량) '25년 간이대지급금 지급인원(105,548명)에 최근 3년간 체불근로자수 연평균 증감률 (-2.41%)을 반영

* **100,522명** = '25년 간이대지급금 지급인원(105,548명) × 최근 3년간 체불근로자수 연평균 증감률(-2.41%)[2]

○ (단가) 최근 3년 평균 간이대지급금 지급액을 '27년 물량(100,522명)으로 나누어 산정

* **6,406천원** = 최근 3년 평균 간이대지급금 지급액(643,962백만원) ÷ '27년 물량(100,522명)

<간이대지급금 증가율>

구분	21	22	23	24	25	최근 3년 평균지급액
지급액(백만원)	467,210	500,288	647,271	669,379	615,237	**643,962**

<체불 근로자수 증감률>

구분	21	22	23	24	25	최근 3년 평균증감률
체불근로자(명)	247,005	237,501	275,432	283,212	262,304	**-2.41%(0.9759)**

참고 2-1 **채권관리비용 세부산출 내역**

1. 개요

○ 국세체납처분절차 프로세스

①단계	➡	②단계	➡	③단계	➡	④단계	➡	⑤단계	➡	⑥단계
납입고지		독촉		체납처분 승인 재산조사		압류 교부청구		경공매 채권추심		결손처분

○ 체납처분(강제징수) 경비

- 고지·독촉 비용: 1차 송달 후 반송 시 2차 송달 필요

  * 체납처분은 선행 고지.독촉이 적법하게 도달됨을 전제로 하므로, 고지.독촉의 송달이 필수

- 압류예고 및 촉탁 비용: 압류예고 통지 후 압류촉탁서 송달 필요
- 공매 및 추심 비용: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 위탁으로 수수료 발생

○ '변제금 회수강화 지원단' 운영 경비

- 청년층을 선발하여 채권회수 업무를 지원함*으로써 변제금 회수율 제고

  * 대지급금·융자 지원 보조, 변제금 미납자 연락처 현행화, 전화 납부 독촉 및 분납자 납부 현황 관리, 경매개시 사실 확인 등 재산관리 보조 등

2. '27년 채권관리비용 내역

<총 채권관리비용 예산: 10,171,778천원>

☞ **10,171,778천원** = ①**5,332,913천원**(체납처분비용) + ②**265,181**천원(기타 소송비용) + ③**24,928천원**(신원보증보험료) + ④**348,756천원**(미회수채권 위탁수수료) + ⑤**4,200,000천원**(변제금회수강화지원단 운영)

가. 체납처분절차에 따른 채권관리비용 : 5,332,913천원

□ 고지·독촉 비용: 833,039천원

1 고지 비용: 424,028천원

(단위: 원, 건)

구분	단가	수량	금액
우편요금	2,850*	134,484**	383,279,400
DM업체 용역비	303***	134,484	40,748,652

* 등기우편요금: 규격, 50g미만

** 고지대상: 51,725건('25년 납입고지 건수 기준) + 40,324건(민사절차에서 국세체납처분절차로 전환하는 건수, '25년말 현재 가압류·집행권원 확보된 건) + 42,435건(재발송 대상, '25년도 납입고지서 반송율 46.1% 적용)

*** DM발송비용: 봉투제작 50원 +통지서(3종, 고지서 및 안내문) 220원 + 투봉.DM발송 33원

2 독촉 비용: 404,390천원

(단위: 원)

구분	단가	수량	금액
우편요금	2,850	134,349*	382,894,650
DM업체 용역비	160**	134,349	21,495,840

* 독촉대상: 51,673건('25년 납입고지 51,725건 중 동 고지서로 납부한 건 52건(납입고지건수의 0.1%) 제외) + 40,284건(민사절차에서 국세체납처분절차로 전환하는 건수의 0.1%) + 42,392건(재발송 대상, '25년도 납입고지서 반송율 46.1% 적용)

** DM발송비용: 봉투제작 50원 +통지서 77원 + 투봉.DM발송 33원

3 AI보이스봇 이용료: 4,620천원

※ AI보이스봇: KT회선을 사용하여 인공지능(AI)음성기술을 통해 납부촉구 수행(매주 대지급금 일괄 납부독촉 발송 후 AI보이스봇을 통한 안내 실시 → 채무자의 인지 속도 향상 및 심리적 압박 효과)

- 4,620천원 = 385,000원(월 사용료*) × 12개월

  * 공공용 민간 SaaS 이용지원 공모산업에 선정되어 '25.4.~'26.3.까지 국비 지원되었으나, '26.4월부터 서비스비용 발생

□ 압류 비용: 1,419,874천원

1 압류예고통지비용: 194,770천원

(단위: 원)

구분	단가	수량	금액
우편요금	2,850	64,006*	182,417,100
DM업체 용역비	193**	64,006	12,353,158

* 압류예고통지대상: 23,682건('25년 대지급금 지급 사업장 수 대비 납입고지서 발송으로 납부하는 비율만큼 제외하여 산정, 23,706건-23,706건×0.1%) + 40,324건(민사절차에서 국세체납처분절차로 전환하는 건수)

  - 미납사업장 전체에 대해 압류 조치 추진(무재산인 경우에도 예금채권 또는 카드매출채권 등에 대해서는 우선 압류 촉탁 후 채권 존재 여부 확인하므로 미납사업장 전체에 대해 압류예고통지 필요)

** DM발송비용: 봉투제작 50원 +통지서 110원 + 투봉.DM발송 33원

2 압류촉탁비용: 1,225,104천원

○ 유재산 사업장 압류비용: 232,962천원

구분	우편비용				등기 수수료	합계	비고
	건수	단가	관계인 수	소계			
부동산	9,168			-	6,000	55,008,000	전자촉탁
자동차	11,646	2,850	4	132,764,400		132,764,400	
기타	3,964	2,850	4	45,189,600		45,189,600	
합계	24,778					232,962,000	

* (건수) 미납사업장(23,682개소) 및 가압류 후 국세전환 사업장(18,503개소)을 '24년말 미회수사업장 유재산 비중(26.5%) 및 재산별 비중(부동산 37%, 차량 47%, 기타 16%) 기준으로 산정

* (단가) 등기우편요금: 규격, 50g미만

* (관계인수) 채무자, 등기소, 차량등록소, 제3채무자 등(촉탁 및 해제, 각 1회)

* (등기수수료) 부동산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 전자표준양식신청 기준

○ 무재산 사업장 예금채권 압류비용: 992,142천원

- 17,406건(전체 미납사업장 중 무재산사업장 비율 적용, 23,682×73.5%) × 2,850원(등기우편비용) × 20개소(시중은행, 카드사 등 10개소, 촉탁 및 해소 각 1회)

□ 강제집행비용: 3,080,000천원

○ 부동산 강제집행 공매수수료: 3,080,000천원

- 3,080,000천원 = 2,000건*×공매비용(수수료 1,040천원, 실비 500천원)

* 2025.4분기 재산조회 기준 부동산 보유 채무자 15,425명이며, 이 중 미납액 2천만원 이상이고, 동일한 부동산 3년간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2,105건임(3년 이상 동안 타 채무자에 의해 강제집행이 되지 않은 경우는 공단이 직접 집행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재산으로 인정하고, 국세체납처분절차 도입의 취지에 따라 신속한 환가를 위해 연간 2,000건에 대해 공매를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

** 수수료=기준금액×수수료율(3.6%), 기준금액 28,875천원인 경우 1,040천원으로 산정

- 수수료율: 「국세징수법시행규칙」 별표3 공매대행 수수료율 및 최저수수료 기준(제78조제2항 관련) 참조

- 기준금액: '25년 대지급금 지급 사업장수(23,706건)에 대한 청구금액 6,845억원으로 산정

*** 실비 = 감정평가비용, 송달료, 세금, 공고료 등으로 건당 500천원으로 산정

나. 기타 소송비용: 265,181천원

※ 기타 소송비용: 중요소송 변호사 수임료(승소포상금 포함), 자문변호사료, 송무능력 향상에 필요한 교육비 등

1 변호사 소송 수임료: 96,500천원(성공보수액 포함)

- 96,500천원 = 5건*×19,300,000원(사건 수임 단가)

* 국세체납처분절차 도입에 따른 민사절차와 국세체납처분절차의 혼용으로 인한 법률적 분쟁 증가 가능성 반영('25년 1건 대비 추가예상 소요)

2 자문변호사료: 47,520천원

- 47,520천원 = 12개월×3,960천원(자문변호사 정액 및 비정액 자문료)

3 채권관리 교육비용: 116,161천원

- 채권추심전문가과정(CCS) 교육비용(45명 기준): 90,000천원

  · 90,000천원 = 45,000천원× 2회*

  * 채권추심전문가과정(CCS) 1급 및 2급 과정

- 송무교육비용(연1회): 7,881천원

- 국세체납처분절차 교육비용: 18,280천원

  * 외부강사료: 3,200천원(200천원×16시간), 교재비: 3,250천원(25천원×130부), 식대: 8,580천원(130명×11천원×6식), 다과비:1,300천원(130명×10천원), 현수막 및 비품: 350천원, 버스임차: 1,600천원(400천원×4회)

4 판례검색 이용료: 5,000천원

- 엘박스* 이용료: 연 5,000천원(법무지원부와 공동 부담, 임채 부담분)

  * 국내 최대 판례검색 서비스로 소송업무 수행과정에서 전문적인 법률 검토 및 유사판례 검색 등 통한 업무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

다. 채권관리 직원 신원보증보험 보험료: 24,928천원

※ 신원보증보험: 채권관리업무 수행 과정에서 직원의 과실 등으로 인한 공단의 금전적 손실 담보하고, 변상명령 등에 따른 채권관리 직원의 금전적 부담 감소 등 직원보호 대책의 일환으로 가입

→ (보장범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채권관리업무 담당자의 절도, 강도, 사기, 횡령 또는 배임행위에 따른 공단의 재산상 직접 손해 및 업무상 중과실 또는 선관주의 의무위반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

- 24,928천원 = 296,760원(1인당 보험료) × 84명(변제금 및 양수채권 회수담당)

라. 미회수채권 위탁 수수료: 348,756천원

- 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탁수수료: 87,189천원(분기별 예상 위탁수수료*) × 4회

  * '25년 위탁수수료 139,502천원(6개월분) 기준으로 분기별 위탁수수료(69,751천원) 산정, 채권위탁 증가율(25.0%, '25년 5,055억원→ '26년 6,320억원) 반영(69,751천원×125%=87,189천원)

마. 변제금회수강화지원단 운영 경비: 4,200,000천원

1 인건비(2,880백만원)

- 인건비 세부 산출 내역

(단위: 천원, 명)

인건비				인원 (B)	소요예산 (A×B)
①급여	②명절 상여금	③4대 보험료	합계 (A=①+②+③)		
16,772	**400**	**2,023**	**19,200**	**150**	**2,880,000**
1,677천원 ×10개월	추석	(①+②)× 11.783%			

* (급여)10,700원 x 209시간 x 75%=1,677,225원

2 경상운영비(1,320백만원)

- 공통경비: 671백만원

(단위: 천원, 명)

직 급	기타운영비							소요예산 (A×B)
	여비	사무 용품	공공 요금	부서 운영비	교육 훈련비	채용 용역비	복지 포인트	
기간제 근로자	125,400	18,000	112,500	30,000	90,750	257,250	37,500	**671,400**

* (여비)125,400천원=관내출장 48,400천원(44명x22천원x×월5회×10개월)+관외 출장 77,000천원(44명x 35천원x월5회x10개월), (사무용품)18,000천원=150명x12천원×10개월, (공공요금)112,500천원=150명x 75천원×10개월, (부서운영비)30,000천원=150명x20천원×10개월,
(교육훈련비)90,750천원=150명x605천원, (채용용역비) 257,250천원=150명x1,715천원,
(복지포인트)37,500천원=150명x250천원

- 자산취득비(개인 사무기기 등) 424백만원

(단위: 천원)

구 분	산출내역	소요예산
합 계		**424,000**
사무집기 (조달가)	- 책상 304천원, 의자 270천원 · **86,100천원=574천원×150명**	86,100
일반사무기기 (조달가)	- IP전화기(렌카드 등 설치비 포함) 200천원 · **30,000천원=200천원×150명**	30,000
전산사무기기 등 (조달가)	- PC, 모니터 등 · 307,900**천원=2,053천원×150명**	307,900

- 시설장비유지비: 225백만원

· 재배치비용: 225백만원(증원 인력당 1.5백만원 × 150명)

※ 가장 최근 재배치한 대전지역본부 재배치 견적 참조(2명 증원 3백만원 소요)

참고 2-2 〈가칭〉대지급금 변제금 회수강화 지원단 개요

□ **(사업목적)** 대규모 임금체불 발생 등에 대응하여 대지급금 변제금 회수 강화 및 체불청산지원 융자 신속 지원 필요

○ 대지급금*의 변제금 회수율은 30% 미만으로, 체불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고 체불 피해 근로자를 안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변제금 회수 제고 필요

* 체불근로자 생계안정을 위해 국가가 사업주 대신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변제금을 회수하여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사업 재원으로 활용

○ 청년층을 (가칭)변제금 회수강화 지원단으로 선발하여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 지급·회수 행정 업무 경험의 기회 제공

□ **(지원대상)** 임금체불 이슈에 관심이 있거나, 채권회수 업무 또는 행정 업무 프로세스 경험을 쌓고 싶은 청년 약 150명

* (64개 지역본부 및 지사×기본 2명) + (11개 회수거점지사×추가 2명)

□ **(지원내용)** 청년들에게 월 190만원 수준 인건비 지원

* 일 6시간(주 30시간) 근로 기준

□ **(업무범위)** ▲대지급금·융자 지원 보조 ▲변제금 미납자 연락처 현행화 ▲전화 납부 독촉 및 분납자 납부 현황 관리 ▲경매개시 사실확인 등 재산관리 보조 등

□ **(사업기간)** 10개월('27.3월~12월)

□ **(사업기간 및 추진일정)**

○ 채용계획수립 및 채용공고(공단본부, 1월) → 서류 및 면접전형(공단소속기관, 2월) → 임용(공단소속기관, 3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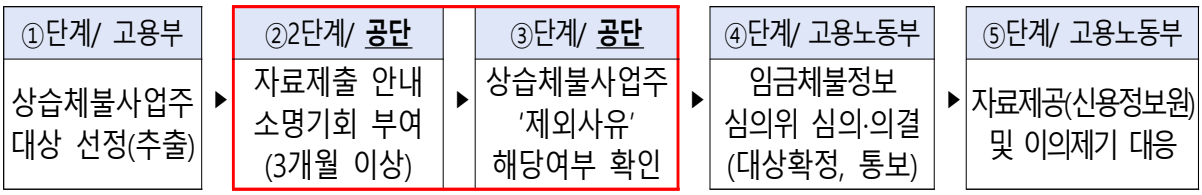
□ **(기대효과)** 청년이 대지급금 변제금 회수 등 행정 업무 일 경험을 통해 사회 적응 및 사회적 가치 실현

→ 청년 인건비 투입을 상회하는 변제금 회수 제고 성과 기대

참고 3 상습체불사업주 변제금 회수관리 비용 세부산출내역

1. 회수관리 프로세스

《 상습체불사업주 선정 및 신용제재 프로세스 》



- 고용부: ①대상선정, ④심의·의결, ⑤신용정보원 등 자료 송부

- 공단: ②소명기회* 부여 및 민원응대, ③제출자료 확인 및 결과 고용부 송부

* 상습체불사업주 신용제재 예고통지서 등기우편 발송(교부, 송시송달) → 사업장 가동상태(파산, 회생, 실종 등) 확인 등 사실관계 검토 → 전액청산여부, 청산계획(체불액의 80% 이상 청산한 경우에 한함) 실행가능성 판단 등 '제외사유' 해당여부 확인 → 확인자료(증빙) 고용노동부 송부

2. '27년 상습체불사업주 변제금 회수관리 비용 내역(총 325,000천원)

① 일반수용비: 15,992천원

- 사전안내 통지서 발송: 4,752,000원(198원*×12,000건**×2회)

  * DM발송비용: 봉투제작 50원 +통지서(양면, 3장) 110원 + 투봉·DM발송 33원

  ** 전체 대상 건수(연 12,000개소)×2회(사업장, 사업주 주소지)

  ↳ '21년 한국노동연구원 분석 결과, 상습체불(직전연도 1년간 ①퇴직금 포함 5회 이상 체불 & 체불총액 3천만원 이상 또는 ②퇴직금 제외 3개월분 임금 이상 체불) 기준에 해당하는 비중(8.3%)을 '24년도에 적용하여 산출(약 11,246명)

- 사무용품 구입비: 2,400,000원(200,000원×12개월)

- 사무자동화 소모품비: 4,600,000원

  * 프린터(10대) 토너(20,000원) 연 6회 및 드럼(100,000원) 연 1회, A4 용지(20박스) 400,000원 연 6회

- 인쇄 및 유인비: 2,800,000원

  * 실무편람 2,000,000원, 직무교재 800,000원

- 교육훈련비: 1,440,000원(9,000원×20명×4식×2회)

② 공공요금 및 제세: 78,534천원

- 전화요금: 5,184,000원(144원(180초)×3×12,000건)

  * 대상 건수 12,000건 기준 건당 3회 통화(소명자료 제출 및 보완 요청, 민원 안내 등)

- 카카오톡 사용료: 3,432,000원 (286원*×12,000건)

  * 대상 건수 12,000건 기준 2회 발송 및 열람, 건당 발송: 99원, 인증(열람): 44원

- 팩스사용료: 1,518,000원(253원(180초)×6,000건)

  * 대상 건수 12,000건 기준, 민원 요청 서류 팩스 송부

- 사전통지서 우편요금 : 68,400,000원(2,850원*×12,000건×2회)

  * 등기우편요금: 규격, 50g미만

③ 현장조사 및 교부송달(여비): 200,000천원

- 관내 출장비: 5,400,000원(45,000원×2명×60일(60일×6개소=360개소))

- 관외 출장비: 194,600,000원(175,000원×2명×556일(556일×6개소=3,336개소)

  * 연 12,000건 송달율 69.2% 기준, 연간 교부송달 3,696건(관외 비율 90%)

④ 업무지원 경비: 18,160천원

- 특근매식비: 8,640,000원(9,000원×20명×월4회×12개월)

- 부서운영비 : 4,800,000원(20,000원×20명×12개월)

- 사업추진비: 3,000,000원(300,000원×유관기관 업무협의 10회)

- 관서운영추진비: 1,720,000원(43,000원*×20명×연 2회)

  * 근로자의날 및 종무식 11,000원, 체육행사비 22,000원, 직원간담회 10,000원

⑤ 임차료: 5,052천원

- 사무기기 등 임차비: 5,052,000원(421,000원*×12월)

  * 월 사용료 : 고속스캐너(330,000원), 정수기(55,000원), 공기청정기(36,000원)

⑥ 자산취득비(사무기기 등 구입비용): 7,500천원

- 사무기기 등 구입비 : 7,500천원

  * 소프트웨어 구입(2,500천원), 복사기(5,000천원)

참고 4 대지급금 조력지원 산출 내역

□ ('27년 소요 예상액) 58백만원

○ 도산등사실인정: 48백만원

- 53개소('25.4월~'26.3월 실적)×900,000원(지원단가)

○ 도산등사실불인정 : 0.45백만원

- 1개소('25.4월~'26.3월 실적)×450,000원(지원단가)

○ 대지급금신청 : 10백만원

- 165명('25.4월~'26.3월 실적)×60,000원(지원단가)

참고 5 대지급금 지급 성과 및 일반통계

□ 지원 현황

○ 체불액 감소로 '21년~'22년 대지급금 지급이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으나, '23년 이후 경기불황 등으로 체불액이 급증하여 대지급금 지출액 또한 큰 폭 증가

○ 특히, '19.7월 간이대지급금 상한액 인상(400→1,000만원) 이후 간이대지급금 지급액이 도산대지급금 지급액을 초과하였으며, '23년 이후 6천억대 이상 지급 추세

* '25년 도산대지급금 지급액은 693억원으로 '24년 대비 +26.3%(144억원),
'25년 간이대지급금 지급액은 6,152억원으로 '24년 대비 △8.1%(△541억원)

□ 지원 현황

(단위 : 개소, 명, 백만원)

구분	계			도산대지급금			간이대지급금		
	사업장수	지급인원	금액	사업장수	지급인원	금액	사업장수	지급인원	금액
'26.7	15,287	62,206	367,089	988	5,813	38,829	14,299	56,393	328,260
'25	23,706	115,374	684,511	1,316	9,826	69,274	22,390	105,548	615,237
'24	24,327	128,638	724,207	1,073	7,826	54,828	23,254	120,812	669,379
'23	24,183	132,079	686,905	825	5,881	39,635	23,358	126,198	647,271
'22	22,271	108,284	536,864	713	5,430	36,576	21,558	102,854	500,288
'21	24,071	107,431	546,571	1,147	10,381	79,360	22,924	97,050	467,210
'20	24,975	110,610	579,690	1,463	14,032	109,975	23,512	96,578	469,715

참고 6 대지급금 지급 사업개요 및 연혁

□ 개요

○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노동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체불 노동자의 생활 안정 도모

□ 지급 사유 및 대상

○ **(도산대지급금)** 체불 사업주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 결정,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도산등사실인정** 결정

- **퇴직 근로자**만 대상

○ **(간이대지급금)** 미지급 임금 등의 지급을 명하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로 체불 임금등이 확인된 경우

- **퇴직 근로자** 또는 **저소득 재직 근로자**(최저임금 110% 미만)가 대상

□ 지급 범위

○ **(퇴직자)** <도산>**최종 6개월분**·<간이>**최종 3개월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중 체불액

○ **(재직자)** 소송·진정 등 제기일 기준 **마지막 체불 발생일로 소급하여 3개월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중 체불액

□ 상한액 ※「체불임금등 대지급금 상한액 고시」에 따라 산정

○ **(도산대지급금) 최대 3,150만원**(연령대별, 월별(또는 연별) 상한액 존재)

○ **(간이대지급금) 퇴직자 1,000만원**(임금 등 700만원, 퇴직급여 700만원 상한)
재직자 700만원

□ 제도 연혁('98.7.1.~)

○ (2001.1.1. 시행) 대지급금 범위 확대

- 최종 3월분의 미지급 휴업수당도 대지급금으로 지급 보장

○ (2001.7.1. 시행) 대지급금 지급대상 확대 및 상한액 인상

- 도산등사실인정 대상사업주 확대: 업종별 50~300인 이하 → 전 업종 300인 이하

- 대지급금 상한액 상향: 최고 720만원 → 1,020만원

○ (2005.7.1. 시행) 부정수급자 배액 징수제 신설 등 제재 강화 및 부정수급 신고포상제 도입

- 대지급금 부정수급자 배액 징수제 신설 및 연대책임 확대

- 부정수급 신고포상제 도입

- 벌칙부과 대상 확대: 허위보고 또는 증명한 자→거짓의 보고·증명 또는 서류제출을 한 자

○ (2008.1.1.) 대지급금 상한액 상향: 최고 1,020만원 → 1,560만원

○ (2015.1.1.) 대지급금 상한액 상향: 최고 1,560만원 → 1,800만원

○ (2015.7.1.) 간이대지급금 신설 및 부정수급 연대책임 부과

- 간이대지급금 제도 시행: 기업 도산 여부에 관계없이 체불금품에 대한 법원의 집행권원을 받은 경우 지급(상한액 300만원)

- 부정수급 연대책임 강화: 주도자에 대한 추가징수 연대책임 부과

○ (2017.7.1.) 간이대지급금 상한액 상향: 300만원 → 400만원

○ (2019.7.1.) 간이대지급금 상한액 상향: 400만원 → 1,000만원

○ (2020.1.1.) 도산대지급금 상한액 상향: 1,800만원 → 2,100만원

○ (2020.12.8.)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대지급금 지급 범위 포함

○ (2021.6.9.) 대지급금 중복지급 제한규정 정비 등

- 도산대지급금 지급후 차액분 간이대지급금으로 지급 가능

○ (2021.10.14.) 간이대지급금 지급절차 간소화, 재직자 대지급금 신설

* 체당금 용어 변경((체불 임금등·대지급금: 약칭 대지급금),
일반체당금 → 도산대지급금, 소액체당금 → 간이대지급금)

○ (2024.8.7.) 장기미회수채권 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탁근거 마련, 체불사업주 체불정보 종합신용기관 제공 근거 마련

○ (2026.5.12.) 변제금 회수절차에 국세체납처분절차 도입, 체불에 귀책 있는 직상수급인 또는 그 상위수급인에 대한 변제금 납부 연대책임 부여

○ (2026.8.20.) 도산대지급금 '임금등' 지급범위
최종 3개월분 → 최종 6개월분 확대

사 업 명
(2) 무료법률구조지원(3052-302)

1. 사업 총괄 정보

1) 사업 기본 정보

(1-1) 일반 정보

소관	실·국	과·팀	기금	계정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근로기준정책관	퇴직연금복지과	임금채권 보장기금	-

(1-2) 코드·명칭 정보

구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080	08E	3000	3052	302
명칭	사회복지	노동	근로조건보호및 복지증진	체불근로자 조력지원	무료법률구조지원

2)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N	Y	N	N	N	N

3)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N	N	Y	N	N	-	-

4) 기능별(내역사업별)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내역사업명	소관	사업시행주체
무료법률구조지원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대한법률구조공단

2. 지출계획 총괄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사업명	2025년 결산액	2026년 당초계획액 (A)	2026년 수정계획액	2027년 요구액	2027년 정부안액 (B)	증감액 (B-A)	증감률 (B-A) /A×100
무료법률구조지원	15,415	11,678	11,678	12,113	12,113	435	3.7

1)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계획액 (수정)	2025년 계획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계획액 (수정)	2026년 계획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15,415	15,415	15,415	0	0	11,678	11,678	7,253	12,113
무료법률구조지원	15,415	15,415	15,415	0	0	11,678	11,678	7,253	12,113

2) 비목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계획액 (수정)	2025년 계획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계획액 (수정)	2026년 계획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15,415	15,415	15,415	0	0	11,678	11,678	7,253	12,113
·사업출연금(350-02)	15,415	15,415	15,415	0	0	11,678	11,678	7,253	12,113

3. 사업 설명

1) 사업목적·내용

- 체불근로자들이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절차를 통하여 임금채권을 행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체불근로자들의 실질적 권리구제 도모

(1-1) 무료법률구조지원

사업목적	체불근로자들이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절차를 통하여 임금채권을 행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체불근로자들의 실질적 권리구제 도모
사업내용	체불근로자들이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법률구조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송비용 등을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출연

2) 사업개요

(2-1)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사업근거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과 잘못 납부한 금액 등의 반환 2. 제7조제6항에 따른 공인노무사 지원 비용의 지급 3. 제7조의3에 따른 체불 임금등 및 생계비 지급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융자 4. 제27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한 출연 5. 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 6. 임금등 체불 예방과 청산 지원 등 임금채권보장제도 관련 연구 **7. 「법률구조법」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대한 출연. 다만, 임금등이 체불된 근로자에 대한 법률구조사업 지원에 한정한다.** 8. 그 밖에 임금채권보장사업과 기금의 관리·운용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2005년 - 2004. 3. 4 대통령 업무보고시 체불행정 혁신 지시 - 2004. 12.15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거쳐 2단계 서민생활 안정 대책 마련 * 체불근로자에 대한 무료법률구조실시 포함 - 2005. 3. 2 임금채권보장법 개정 * 임금채권보장기금으로 무료법률구조사업재원 지원근거 마련 - 2005. 7. 1 체불임금피해근로자 무료법률구조 실시

(2-2) 사업규모

○ 사업기간 : 계속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계획액 기준, 기금운용계획변경 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사업비	13,293	13,907	15,415	11,678	12,113

(2-3)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대한법률구조공단

○ 사업 수혜자 : 체불근로자

* 체불당시 최종 3개월분 월평균임금 400만원 미만, 국내거주 외국인 포함)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기관명	2027년 지원금액 (백만원)	지원 비율(%)	법적근거
무료법률구조지원	출연	대한법률구조공단	12,113	100.0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제7호

3) 기능별(내역사업별) 산출 내역

(3-1) 내역사업별 세부 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계획액(수정)(A)	2027년 정부안액(B)	증감 (B-A)
합 계	11,678	12,113	435
무료법률구조지원	11,678	12,113	435

○ **무료법률구조지원 (2026년) 11,678 → (2027년) 12,113백만원, +3.7%**

- (설명) 최근 3년 평균 실적 및 평균 집행단가를 감안하여 +435백만원, '26년 당초계획 대비 3.7% 증액

- (산출) 53,075건[1]('27년 예상사건수) × 228,238원[2]('27년 예상단가) = 12,113백만원

1) ('27년 예상건수) 53,075건
= 최근 3년간 평균 지원실적 (44,813건('23년)+54,878건('24년)+59,534건('25년)) ÷ 3
2) ('27년 예상단가) 228,238원
= 최근 3년 평균 변호사 비용 단가 133,806원 + '27년 소송비용 예상단가 94,432원*
* '25년 소송비용 단가 123,906백만원 × 소송단가 연평균감소율(-12.7%[2])

(단위 : 백만원, 건)

구분	소송비용(A)	변호사비용(B)	사건수(C)	소송비용 /사건수(원) (A/D*100)	변호사비용 /사건수(원) (B/C*100)
2023	7,245	6,048	44,813	161,672	134,961
2024	6,738	7,169	54,878	122,781	130,635
2025	7,329	8,086	59,534	123,096	135,822
3년 평균					133,806
3년 증가율				-12.7	

4) 사업효과

(4-1) 최근 5년(2023년~2027년)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 성과지표: 임금체불 피해근로자 권리구제율(%)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목표	78.5	81.5	84.3	85.3	85.4
실적	83.9	85.0	85.7	해당없음	해당없음
달성도	106.9	104.3	101.7	해당없음	해당없음

- **측정산식 :** (지도해결근로자수+대지급금지급근로자수+체불사업주융자지원근로자수)/체불근로자수*100

- **측정방법 및 목표치 설정근거 :** 외부환경 및 사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난 3개년 평균실적 대비 상향

- **자료수집방법/출처 :** 고용노동부 노사누리시스템, 근로복지공단 노동포털시스템

(4-2) 성과지표 이외의 최근 4년(2023년~2026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단위 : 명, 건, 억원)

연도	집행액	지원실적		
		인원수	사건수	구조금액
2026.7	73	40,979	32,504	3,309
2025	154	77,212	59,457	6,180
2024	139	73,958	54,878	5,587
2023	133	61,394	44,813	4,738

(4-3) 향후(2027년 이후) 기대효과

○ 체불근로자들이 임금채권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체불근로자들의 실질적 권리구제에 지속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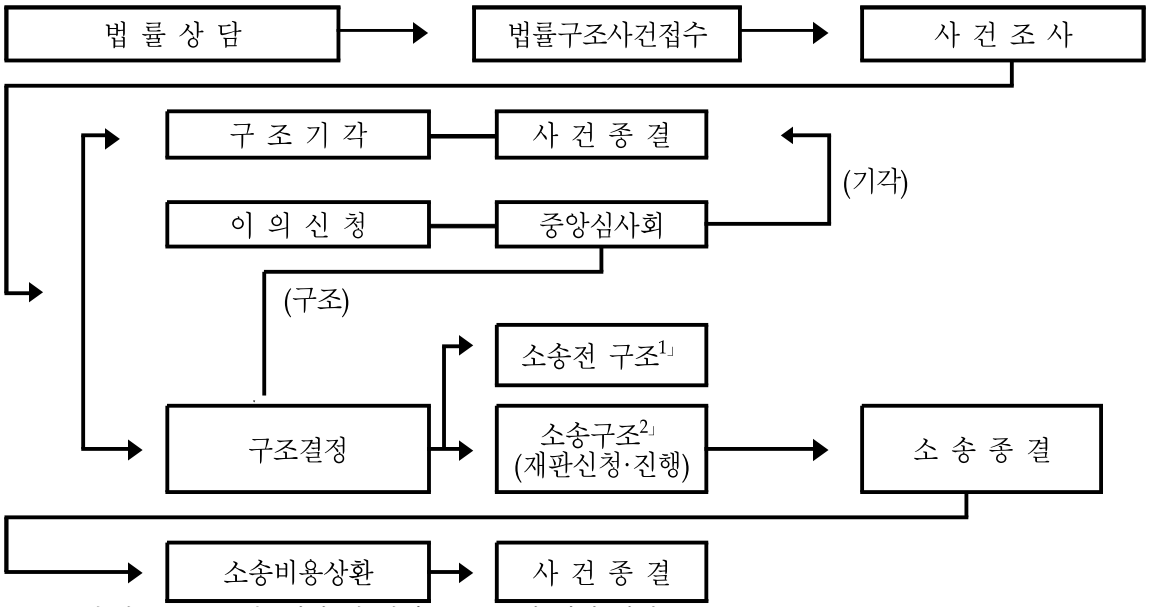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고용노동부>

○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신고사건이 접수되면 신고사건 처리절차에 따라 신속히 조사하여 체불금품을 확정→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해당 근로자가 무료법률구조서비스를 원할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신청토록 안내→해당 근로자가 직접 관할 대한법률구조공단지부에 무료법률구조지원을 요청→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서비스 실시

<대한법률구조공단>



1」 소송전 구조 : 소송 제기 전 화해 또는 조정 성립 사건
2」 소송구조 : 변호사 및 공익법무관에 의한 민사소송대리

8) 최근 3년간(2024년~2026년)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8-1) 정부 사업평가

구분	연도	주요내용
재정사업 자율평가	2024년	○ 의견 : 미흡 ○ 결과 : 성과목표 미달성
재정사업 자율평가	2025년	○ 의견 : 보통 ○ 결과 : 역대 최대 체불액 발생이라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재정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탄력적 증액을 통해 사업추진하여 체불근로자 권리구제에 기여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2026년	○ 의견 : 사업개선 ○ 결과 : 지원 자격요건이 단일기준으로 운영되어 구조개선 검토 필요

(8-2) 국회 지적사항 : 해당없음

(8-3) 감사원, 총리실, 기타(언론, 시민단체 등) 결과: 해당없음

4. 최근 4년간(2023년~2026년) 결산내역

1) 결산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연도	당초 계획액	수정 계획액 (A)	전년도 이월액	기금변경 증감액 등	계획 현액	집행액 (B)	집행률 (B/Ax100)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3년	10,386	13,293	0	2,907	13,293	13,293	100.0	0	0
2024년	11,509	13,907	0	2,398	13,907	13,907	100.0	0	0
2025년	11,509	15,415	0	3,906	15,415	15,415	100.0	0	0
2026년	11,678	11,678	0	0	11,678	7,253	62.1	해당없음	해당없음

2) 연도별 결산 주요사항

연도	유형	금액 (백만원)	사유
2023	이용	2,907	- 체불규모 증가에 따른 무료법률구조지원 수요 증가
2024	이용	2,398	- 임금체불 증가 등에 따른 무료법률구조지원 수요 증가
2025	이용	3,906	- 무료법률구조 사건 수 증가
2026	이용	-	- 해당없음

5. 기타 추가자료

참고 1 사업성과 및 일반통계

□ 사업성과

○ 근로자의 임금체불 관련 소송비용을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지원하는 사업('05.7.1.)으로, 체불문제를 가장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수단 중 하나임

- '21.10월부터 소송을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편되면서 집행 규모가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나, '24년부터 증가 추세로 전환

□ 일반 통계

【사업 지원실적】

(단위 : 명, 건, 억원)

연도	집행액	지원실적		
		인원수	사건수	구조금액
2026.7	73	40,979	32,504	3,309
2025	154	77,212	59,457	6,180
2024	139	73,958	54,878	5,587
2023	133	61,394	44,813	4,738
2022	140	61,757	43,078	4,527
2021	261	116,464	77,667	8,304
2020	282	137,637	90,174	10,099
2019	282	162,977	106,249	11,188

참고2 **임금체불피해근로자 무료법률구조사업 현황**

□ 법률구조사업 실적

(단위 : 명, 건, %, 억원)

구 분	인원수	증가율	사건수	증가율	구조금액	증가율
'18년	150,447	5.1	95,137	5.5	9,834	1.8
'19년	162,977	8.3	106,249	11.7	11,188	13.8
'20년	137,637	-15.5	90,174	-15.1	10,099	-9.7
'21년	116,465	-15.4	77,668	-13.9	8,304	-17.8
'22년	61,757	-47.0	43,078	-44.5	4,527	-45.5
'23년	61,394	-0.6	44,813	4.1	4,738	4.6
'24년	73,958	20.5	54,878	22.5	5,587	17.9
'25년	77,326	4.6	59,534	8.5	6,187	10.7

□ 사업비 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	수 입					지 출			잔액
	이월	출연금	이자	회수금	합계	소송비용	변호사보수	합계	
'18년	0	25,384	※	※	25,384	13,436	11,948	25,384	0
'19년	0	28,253	※	※	28,253	14,316	13,887	28,203	50
'20년	0	28,204	※	※	28,204	13,216	14,986	28,202	2
'21년	0	26,112	※	※	26,112	12,321	13,789	26,110	2
'22년	0	14,057	※	※	14,057	7,113	6,941	14,054	3
'23년	0	13,293	※	※	13,293	7,245	6,048	13,293	0
'24년	0	13,907	※	※	13,907	6,738	7,169	13,907	0
'25년	0	15,415	※	※	15,415	7,329	8,086	15,415	0

참고 3 무료법률구조지원 개요

□ 사업목적

○ 임금체불 근로자들이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절차를 통해 임금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체불한 근로자에 대하여 무료로 소송을 지원하는 제도

□ 사업내용

○ **(지원대상)** 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의 월평균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근로자(국내거주 외국인 포함)

○ **(지원내용)** 체불근로자들이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 등을 통해 임금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소송비용 및 변호사보수비용을 지원

□ 사업추진체계

체불사건 접수 (근로자, 지방노동관서)	▸ 체불금품 조사·확정 (지방노동관서)	▸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 (지방노동관서)	▸ 무료법률구조신청 (근로자, 대한법률구조공단)

□ 제도 연혁

○ 2005.7.1. 시행

○ 2015.1.1. 출연금 지출 감독 강화를 위해 무료법률구조사업 협약서 변경

- 출연금 교부시기를 분기별 선지급에서 매월 정산 후 사후 지급으로 변경

※ 유사사례: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무료법률구조(여가부), 제대군인에 대한 무료법률구조(보훈처)

○ 2016.1.1. 변호사 보수비용 상향 조정(대한법률구조공단 규칙 개정)

사 업 명
(3) 체불청산지원 융자(융자)(3054-304)

1. 사업 총괄 정보

1) 사업 기본 정보

(1-1) 일반 정보

소관	실·국	과·팀	기금	계정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근로기준정책관	퇴직연금복지과	임금채권보장기금	-

(1-2) 코드·명칭 정보

구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080	08E	3000	3054	304
명칭	사회복지	노동	근로조건보호및 복지증진	체불청산지원 융자	체불청산지원 융자(융자)

2)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N	Y	N	N	N	N

3)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N	N	N	N	Y	-	1.5~3.7

4) 기능별(내역사업별)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내역사업명	소관	사업시행주체
체불청산지원 융자(융자)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근로복지공단

2. 지출계획 총괄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사업명	2025년 결산액	2026년 당초계획액 (A)	2026년 수정계획액	2027년 요구액	2027년 정부안액 (B)	증감액 (B-A)	증감률 (B-A) /A×100
체불청산지원융자(융자)	85,911	70,635	160,579	87,441	87,441	16,806	23.8

1)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계획액 (수정)	2025년 계획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계획액 (수정)	2026년 계획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86,356**	**86,356**	**85,911**	**0**	**445**	**160,579**	**160,579**	**96,409**	**87,441**
·체불청산지원 융자(융자)	86,356	86,356	85,911	0	445	160,579	160,579	96,409	87,441

2) 비목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계획액 (수정)	2025년 계획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계획액 (수정)	2026년 계획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86,356**	**86,356**	**85,911**	**0**	**445**	**160,579**	**160,579**	**96,409**	**87,441**
·기타민간융자금(450-04)	86,356	86,356	85,911	0	445	160,579	160,579	96,409	87,441

3. 사업 설명

1) 사업목적·내용

(1-1) 체불청산지원 융자(융자)

사업목적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장의 경우 체불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융자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체불임금 청산을 지원 **(임금등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저금리로 생계비를 융자하여 생활안정 도모
사업내용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체불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융자하고 융자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함으로써 체불청산 지원 **(임금등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체불근로자를 대상으로 저금리 융자 지원

2) 사업개요

(2-1)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사업근거	ㅇ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3(체불 임금등 및 생계비 융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경영상 어려움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등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체불 임금등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융자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로부터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퇴직한 근로자를 포함한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생계비에 필요한 비용을 융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융자금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체불 임금등 및 생계비 비용 융자의 구체적인 기준, 금액, 기간 및 절차 등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ㅇ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과 잘못 납부한 금액 등의 반환 2. 제7조제6항에 따른 공인노무사 지원 비용의 지급 **3. 제7조의3에 따른 체불 임금등 및 생계비 지급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융자** 4. 제27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한 출연 5. 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 6. 임금등 체불 예방과 청산 지원 등 임금채권보장제도 관련 연구 7. 「법률구조법」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대한 출연. 다만, 임금등이 체불된 근로자에 대한 법률구조사업 지원에 한정한다. 8. 그 밖에 임금채권보장사업과 기금의 관리·운용
추진경위	ㅇ 가동 중인 사업장에서 임금 또는 퇴직금이 체불된 상태에서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이 없는 상황 - 경영애로 등으로 체불이 발생한 경우 체불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의 체불임금 청산을 위한 지원방안 강구 필요 - '10.12.14. 대통령 업무보고시 '선의의 체불사업주 융자제도('11년 법개정)'를 마련키로 보고 - 체불사업주 융자제도(안) 마련, 의견수렴 간담회 실시('11.4월) -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제도'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공포('12.2.1, 8.2 시행) - 특히, IMF 외환위기 이후 기업 구조조정으로 도산한 기업이 급증하면서 근로자들의 임금채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98.2.20. 법률을 제정하여, '98.7.1.부터 시행

(2-2) 사업규모

○ 사업기간 : 2012.8.2.~계속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계획액 기준, 기금운용계획변경 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사업비	83,037	77,200	86,356	160,579	87,441

(2-3)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융자

○ 사업시행주체 : 근로복지공단

○ 사업 수혜자
- (사업주 융자) 경제적 사정으로 임금 지불여력이 부족하나, 체불청산의지가 있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되, 융자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
- (근로자 융자)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기능별(내역사업별) 산출 내역

(3-1) 내역사업별 세부 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계획액(수정)(A)	2027년 정부안액(B)	증감 (B-A)
합 계	160,579	87,441	△73,138
체불청산지원 융자(융자)	160,579	87,441	△73,138

○ **체불청산지원 융자(융자) : (2026) 70,635백만원 → (2027) 87,441백만원, +23.8%**

* (2026년 계획) 70,635백만원→ (2026년 수정) 160,579백만원

<사업주 융자> (2026) 37,135백만원 → (2027) 56,314백만원, 백만원 19,179증액

* (2026년 계획) 37,135백만원→ (2026년 수정) 66,230백만원

- (설명) '25년 사업실적 및 사업주 융자 한도 인상(사업주당 1.5→2억원)에 따른 사업수요 증가분 반영

① (기존 한도) '25년 지원물량(7,556명)에 최근 3년간 체불근로자수 연평균 증감률(-2.41%)을 반영하여 '27년 예상물량(7,196명) 산정, '25년 사업실적 기준으로 단가(7,044천원) 산정

* 50,689백만원 = '27년 예상물량(7,196명) × '25년 단가(7,044천원)

<체불 근로자수 증감률>

구분	21	22	23	24	25	최근 3년 평균증감률
체불근로자(명)	247,005	237,501	275,432	283,212	262,304	-2.41%(0.9759)

② (한도인상) '27년 예상물량(7,196명)을 '23~'25년 지원 사업장당 평균 수혜자 수(9.6명)로 나누어 '27년 지원예상 사업장수(750개소)를 산정한 후, 기존 한도의 90% 이상 융자 실행 사업장 비율(15%)을 반영하여 한도인상에 따른 추가소요액 산정

* 5,625백만원 = '27년 지원예상 사업장수(750개소) × 한도 90% 이상 실행비율(15%) × 한도상향분(50백만원)

☞ 56,314백만원 = ① 50,689백만원 + ② 5,625백만원

- (산출) 7,196명 × 7.826백만원

<근로자 융자> (2026) 33,500백만원→ (2027) 31,127백만원, 2,373백만원 감액

* (2026년 계획) 33,500백만원→ (2026년 수정) 94,349백만원

- (설명) 전년도 근로자수 및 단가를 반영

- (산출) 4,092명*×7.607백만원**

* '25년도 지원인원(4,297명)×최근 3년 체불근로자수 증가율[2](-2.41%)

구 분	23	24	25	3년 평균
근로자수,증가율	275,432명	283,212명	262,304명	-2.41%

** '25년도 평균단가(32,687백만원 ÷ 4,297명)

4) 사업효과

(4-1) 최근 5년(2023년~2027년)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 성과지표: 임금체불 피해근로자 권리구제율(%)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목표	78.5	81.5	84.3	85.3	85.4
실적	83.9	85.0	85.7	해당없음	해당없음
달성도	106.9	104.3	101.7	해당없음	해당없음

- **측정산식** : (지도해결근로자수+대지급금지급근로자수+체불사업주융자지원근로자수)/체불근로자수*100

- **측정방법 및 목표치 설정근거** : 외부환경 및 사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난 3개년 평균실적 대비 상향

- **자료수집방법/출처** : 고용노동부 노사누리시스템, 근로복지공단 노동포털시스템

(4-2) 성과지표 이외의 최근 4년(2023년~2026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단위 : 개소, 명, 백만원)

구분	계		사업주 융자			근로자 융자	
	근로자	융자금액	사업장수	근로자	융자금액	근로자	융자금액
2026.7	16,019	93,511	451	5,100	37,738	10,919	55,773
2025	11,853	85,911	1,630	7,556	53,224	4,297	32,687
2024	10,910	76,918	668	5,965	39,806	4,945	37,112
2023	10,120	72,786	482	4,210	25,579	5,910	47,207

(4-3) 향후(2027년 이후) 기대효과

○ 체불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융자를 실시하여 융자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함으로써 체불근로자의 실질적 청산 지원

○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재직·퇴직근로자 대상의 융자를 지원하여 생계지원 강화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사업주 융자>

① **융자금 지급사유 확인신청 및 조사**
(체불사업주 → 지방고용노동관서)

<지방관서 수행>
- 융자금 지급사유 확인신청서접수
- **경영악화**에 따른 체불발생 사실 확인
- **사업주** 및 **근로자** 요건 확인
- 사업주 및 법인 대상 신용조사
- 체불금품 확인 및 확인통지서발급, 송부

⇓

② **융자신청서 제출 및 심사**
(체불사업주 →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수행>
- 융자신청서 접수
- 담보제공 가능 여부 조사
- 연대보증인 설정, 보증계약

⇓

④ **융자대상자 결정 및 통보**
(근로복지공단 → 금융기관 등)

<근로복지공단 수행>
- 금융기관에 융자대상자(사업주) 및 지급대상 근로자, 융자금액, 조건 등 통보
- 복지공단 → 금융기관, 사업주

⇓

⑤ **융자금 지급 및 상환**
(금융기관)

<금융기관 수행>
- 담보제공 시 담보물 평가, 관리
- 사업주와 융자계약 체결
- **근로자 계좌로 융자금 지급**
- 매분기 융자금액 상환 수령
- 수수료, 미수채권 등을 계산한 대하자금 상환

⇓

⑦ **채무불이행 시 채권 양도**
(금융기관 → 근로복지공단)

- 3개월 이상 연체된 채권 및 담보물권 등을 근로복지공단에 양도

⇓

⑧ **미수채권 회수 절차**
(근로복지공단 → 체불사업주)

- 담보물권 매각 등을 통한 채권추심 절차
- 법원 허가 받은 후 강제집행

<근로자 융자>

근로자	➡	근로복지공단	➡	근로자	➡	은행
융자 및 신용보증 신청 (근로복지공단)		융자 결정, 보증서 발행 및 은행 통보		융자계약 체결 (기업은행)		융자금 지급 (근로자)

8) 최근 3년간(2024년~2026년)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8-1) 정부 사업평가

구분	연도	주요내용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2024년	○ 의견 : 개선필요 ○ 결과 : 융자 회수율 개선 방안 강구 필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2025년	○ 의견 : 양호 ○ 결과 : 사업의 중요성, 운영 적절성, 사업 성과 등 양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2026년	○ 의견 : 양호 ○ 결과 :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 사유 요건 폐지로 사업실적 증가 등 적정 운영

(8-2) 국회 지적사항

구분	연도	주요내용
환노위	2022년	○ 지적 : 지원규모 확대로 누적미상환금액 증가, 미상환융자금 회수율 제고방안 마련 필요 ○ 조치 - 채권 회수 가능성 높은 사업장 선별(고액, 가동 중, 유재산 사업장) 후 집중관리 - 채권특성별 맞춤형 관리(3년 이내 단기채권 적극 관리, 유재산 사업장에 대한 신속한 집행권원 확보 등)

(8-3) 감사원, 총리실, 기타(언론, 시민단체 등) 결과: 해당없음

4. 최근 4년간(2023년~2026년) 결산내역

1) 결산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연도	당초 계획액	수정 계획액 (A)	전년도 이월액	기금변경 증감액 등	계획 현액	집행액 (B)	집행률 (B/Ax100)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3년	48,333	83,037	0	34,704	83,037	72,785	87.7	0	10,252
2024년	40,190	77,200	0	37,010	77,200	76,918	99.6	0	282
2025년	70,352	86,356	0	16,004	86,356	85,911	99.5	0	445
2026년	70,635	160,579	0	89,944	160,579	96,409	60.0	해당없음	해당없음

2) 연도별 결산 주요사항

연도	유형	금액 (백만원)	사유
2023년	이용	34,704	- 최근 임금체불 등의 증가로 인해 융자 수요 증가하여 347억원 증액 - 체불청산지원 사업주융자 상한액 인상 등 제도개편('23.7월)에 따른 추가소요를 예상하였으나 실적 저조, 근로자융자 한시적 한도 상향(2.22~6.30) 및 대유위니아 체불발생 등으로 347억원 증액 변경하였으나, 당초 예상보다 근로자융자 신청 감소로 103억원 불용발생
2024년	이용	37,010	- 임금체불 증가 등에 따른 체불청산지원 융자 수요 증가로 370억원 증액
2025년	이용	16,004	- 경기불황 등으로 체불규모가 증가하여 체불청산지원 융자 사업의 지급수요 증가에 대응하고자 81억원 증액(2차 추경)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선정으로 인해 융자 소요 증가 및 장기간 경기침체로 인해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지급 신청이 증가로 79억원 증액(기금변경)
2026년	이용	89,944	- 중동사태 지속에 따른 석유 산업 등의 임금체불 발생 우려 및 연초 대규모 체불 발생에 따른 집행액 부족이 예상됨에 899억원 증액(1차 추경)

5. 기타 추가자료

참고 1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개요

□ 개요

○ 임금 체불이 발생하였으나, **체불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융자를 통해 체불 노동자의 체불임금 청산 지원**

□ 지원 요건

구분	지원 요건
사업주 요건	○ 체불이 발생한 **산재보험 적용대상** 가동사업장으로서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영위 * 휴·폐업 사업장, 한국신용정보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사업주 등은 융자 제외
노동자 요건	○ **(재직자)**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있는 노동자 ○ **(퇴직자)**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사업주 융자 확인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퇴직**한 노동자

□ 융자금액 및 조건

구분	융자 조건
융자금액	○ (일반융자) 사업주당 **2억원** 한도(근로자 1인당 **2천만원** 한도) ○ (특별융자)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경우, 사업주당 **10억원** 한도(근로자 1인당 **2천만원** 한도) - ❶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간 체불액이 2억원을 초과**하고, ❷융자 신청액의 **120% 이상 가액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❸가장 최근의 특별융자 확인통지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 융자금은 체불 노동자에게 직접 계좌로 입금되며, 일반융자와 특별융자를 통틀어 상환 후 잔액과 신청액의 합산 값이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이자율	○ (담보) 연 2.2% / (신용·연대보증) 연 3.7%
상환방법	○ (일반융자) 1~2년 거치, 3~4년 분기별 원금균등 분할상환 ○ (특별융자) 2~3년 거치, 4~5년 분기별 원금균등 분할상환

□ 융자신청 절차

사업주	➡	지방관서	➡	사업주	➡	근로복지공단	➡	사업주	➡	은행
융자대상 사업주 확인신청서 제출 (지방관서)		융자요건, 체불금액 등 확인		융자신청 (근로복지공단)		융자 예정자 통보		융자계약 체결 (기업은행)		융자금 지급 (근로자)

참고 2 임금등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개요

□ 개요

○ 임금체불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저금리로 생계비를 융자**하여 체불 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

□ 지원 요건

구분	지원 요건
근로자 요건	○ **(재직자)** 체불 사업장(폐업된 경우는 제외)에서 재직 중 ○ **(퇴직자)** 체불 사업장에서 융자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퇴직 * 건설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상 근로일수가 30일 이상
체불 요건	○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 등이 체불** * 건설일용근로자는 전년도 건설업임금실태조사(개별직종노임단가) 중 하반기 보통인부 노임단가 5일분('26년 855,185원) 금액 이상이 체불

□ 융자금액 및 조건

구분	융자 조건
융자금액	○ **(재직자)** 체불액의 범위에서 해당 근로자가 신청한 금액(총 1천만원 한도) *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 1.5천만원 한도,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2천만원 한도 ○ **(퇴직자)** 최종 3개월간의 임금(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분의 퇴직급여등 중 체불액(총 1천만원 한도)
이자율	○ 연 1.5% (신용보증료 연 1% 별도)
상환방법	○ 1년 또는 2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1년~3년 거치, 3년~5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가능

□ 융자신청 절차

근로자	➡	근로복지공단	➡	근로자	➡	은행
융자 및 신용보증 신청 (근로복지공단)		융자 결정, 보증서 발행 및 은행 통보		융자계약 체결 (기업은행)		융자금 지급 (근로자)

사 업 명
(4) 임금채권정보화경비(정보화)(3055-301)

1. 사업 총괄 정보

1) 사업 기본 정보

(1-1) 일반 정보

소관	실·국	과·팀	기금	계정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근로기준정책관	퇴직연금복지과	임금채권 보장기금	-

(1-2) 코드·명칭 정보

구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080	08E	3000	3055	301
명칭	사회복지	노동	근로조건보호및 복지증진	임금채권 정보화	임금채권 정보화경비 (정보화)

2)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N	Y	N	N	N	N

3)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N	N	Y	N	N	-	-

4) 기능별(내역사업별)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내역사업명	소관	사업시행주체
임금채권정보화경비(정보화)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근로복지공단

2. 지출계획 총괄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사업명	2025년 결산액	2026년 당초계획액 (A)	2026년 수정계획액	2027년 요구액	2027년 정부안액 (B)	증감액 (B-A)	증감률 (B-A) /A×100
임금채권정보화 경비(정보화)	341	341	1,907	1,778	1,778	1,437	421.4

1)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계획액 (수정)	2025년 계획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계획액 (수정)	2026년 계획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341	341	341	0	0	1,907	1,907	1,774	1,778
·임금채권정보화경비(정보화)	341	341	341	0	0	1,907	1,907	1,774	1,778

2) 비목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계획액 (수정)	2025년 계획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계획액 (수정)	2026년 계획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341	341	341	0	0	1,907	1,907	1,774	1,778
·기관운영출연금(350-01)	341	341	341	0	0	1,907	1,907	1,774	1,778

3. 사업 설명

1) 사업목적·내용

- 대지급금 지급, 변제금 회수, 사업주부담금 징수 등 임금채권보장업무 운영을 위한 근로복지공단의 정보화경비 지원

(1-1) 임금채권정보화경비(정보화)

사업목적	대지급금 지급, 변제금 회수, 사업주 부담금 징수 등 임금채권보장업무 운영을 위한 근로복지공단 정보화경비 지원
사업내용	근로복지공단의 임금채권보장업무 수행을 위한 전산장비 유지관리, 정보시스템 운영지원 관련 비용 지원

2) 사업개요

(2-1)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사업근거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과 잘못 납부한 금액 등의 반환 2. 제7조제6항에 따른 공인노무사 지원 비용의 지급 3. 제7조의3에 따른 체불 임금등 및 생계비 지급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융자 **4. 제27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한 출연** 5. 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 6. 임금등 체불 예방과 청산 지원 등 임금채권보장제도 관련 연구 7. 「법률구조법」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대한 출연. 다만, 임금등이 체불된 근로자에 대한 법률구조사업 지원에 한정한다. 8. 그 밖에 임금채권보장사업과 기금의 관리·운용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2008년 - 대지급금 지급, 변제금회수, 사업주부담금 징수 등의 업무를 위탁수행하는 근로복지공단 정보화경비를 기금에서 지원

(2-2) 사업규모

○ 사업기간 : 계속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계획액 기준, 기금운용계획변경 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사업비	341	341	341	341	1,778

(2-3)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근로복지공단

○ 사업 수혜자 : 근로복지공단 임금채권보장업무 담당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기관명	2027년 지원금액 (백만원)	지원 비율(%)	법적근거
임금채권정보화 경비(정보화)	출연	근로복지공단	1,778	100.0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제4호

3) 기능별(내역사업별) 산출 내역

(3-1) 내역사업별 세부 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계획액(수정)(A)	2027년 정부안액(B)	증감 (B-A)
합 계	1,907	1,778	△129
임금채권정보화경비(정보화)	1,907	1,778	△129

○ **임금채권정보화경비(정보화) (2026년) 341 → (2027년) 1,778백만원, +421.4%**
* (2026년 계획) 341→ (2026년 수정) 1,907백만원

- (설명) 근로복지공단 노동보험시스템의 분리·구축으로 '27년 임금채권보장업무 단독 운영에 따른 전산장비 유지관리 비용 +1,437백만원,
상습체불사업주 회수관리('26년 대지급금 지급 내역사업) 시스템 유지관리비용 이관 등 감안, '26년 당초계획 대비 421.4% 증액

- (산출) 전산장비 유지관리 1,723백만원, 정보시스템 운영지원 55백만원
① 전산장비 유지관리 1,723백만원
· 상용SW 유지관리 406백만원, HW 유지관리 431백만원, 기타설비 유지관리 15백만원, 사무용SW 사용료 14백만원, 개발SW 유지관리(상습체불사업주회수관리 시스템 유지비용 이관 포함) 736백만원, 노후장비 교체 및 증설 122백만원

② 정보시스템 운영지원 55백만원
· 공공요금및제세 14백만원, 기타운영비 37백만원, 특근매식비 0.9백만원, 기타운영비 1백만원, 국내여비 1백만원, 관서운영비 1백만원

4) 사업효과

(4-1) 최근 5년(2023년~2027년)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해당없음
(4-2) 성과지표 이외의 최근 4년(2023년~2026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해당없음
(4-3) 향후(2027년 이후) 기대효과

○ 신속하고 정확한 대지급금 지급으로 행정서비스 질 제고, 대지급금 변제금 회수 및 부담금 징수 업무의 전문화를 통한 실적 제고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매월 근로복지공단에서 정보화경비 청구 → 고용노동부에서 출연

8) 최근 3년간(2024년~2026년)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8-1) 정부 사업평가: 해당없음

(8-2) 국회 지적사항

구분	연도	주요내용
환노위/결산/제도개선	2024년	○ 지적 : 임금채권보장시스템 분리구축 비용에 필요한 예산 편성을 위해 노력할 것 ○ 조치 : 임금채권보장시스템 분리구축 비용 마련을 위해 임금채권정보화경비 예산 증액 관련, 재정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

(8-3) 감사원, 총리실, 기타(언론, 시민단체 등) 결과: 해당없음

4. 최근 4년간(2023년~2026년) 결산내역

1) 결산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연도	당초 계획액	수정 계획액 (A)	전년도 이월액	기금변경 증감액 등	계획 현액	집행액 (B)	집행률 (B/Ax100)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3년	341	341	0	0	341	341	100.0	0	0
2024년	341	341	0	0	341	341	100.0	0	0
2025년	341	341	0	0	341	341	100.0	0	0
2026년	341	1,907	0	1,566	1,907	1,774	93.0	해당없음	해당없음

2) 연도별 결산 주요사항

연도	유형	금액 (백만원)	사유
2026년	이용	1,566	• 대지급금 변제금 회수절차에 '국세체납처분절차 준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법률 시행('26.5.12.)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전산시스템 기능 개선을 위한 정보화 예산 증액 필요 * '26년 예산 정부안 제출 이후, 임금채권보장법 개정('25.10.26. 국회 의결, '25.11.11. 공포)이 확정되어 '26년 예산에 미반영 • 변제금 회수 신규 프로세스 도입(국세체납처분절차), 기존 프로세스 수정(민사집행절차) 등 노동보험시스템 기능개선 비용 증액

5. 기타 추가자료: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5) 기금관리비(인건비)(7082-101)

1. 사업 총괄 정보

1) 사업 기본 정보

(1-1) 일반 정보

소관	실·국	과·팀	기금	계정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근로기준정책관	퇴직연금복지과	임금채권보장기금	-

(1-2) 코드·명칭 정보

구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080	08E	7000	7082	101
명칭	사회복지	노동	고용노동행정지원	임금채권보장 기금운영비	기금관리비 (인건비)

2)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N	Y	N	N	N	N

3)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Y	N	N	N	N	-	-

4) 기능별(내역사업별)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내역사업명	소관	사업시행주체
기금관리비(인건비)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고용노동부

2. 지출계획 총괄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사업명	2025년 결산액	2026년 당초계획액 (A)	2026년 수정계획액	2027년 요구액	2027년 정부안액 (B)	증감액 (B-A)	증감률 (B-A) /A×100
기금관리비(인건비)	104	116	116	126	126	10	8.6

1)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계획액 (수정)	2025년 계획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계획액 (수정)	2026년 계획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105	105	104	0	1	116	116	50	126
·기금관리비(인건비)	105	105	104	0	1	116	116	50	126

2) 비목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계획액 (수정)	2025년 계획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계획액 (수정)	2026년 계획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105	105	104	0	1	116	116	50	126
·상용임금(110-03)	72	72	71	0	1	97	97	44	104
·고용부담금(320-09)	33	33	33	0	0	19	19	6	22

3. 사업 설명

1) 사업목적·내용

(1-1) 기금관리비(인건비)

사업목적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적정한 집행과 효율적 관리 도모
사업내용	임금채권보장기금관리 보조요원의 인건비 지급

2) 사업개요

(2-1)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사업근거	○ **임금채권보장법 제11조의3 (기금관리요원)** 고용노동부장관은 임금채권보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전문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22조에 따라 준용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기금의 회계기관을 보조하는 기금관리요원을 둘 수 있다.
추진경위	○ 기금관리요원 채용하여 기금의 효율적·전문적 관리 지원

(2-2) 사업규모

○ 사업기간 : 2001년~계속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계획액 기준, 기금운용계획변경 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사업비	98	102	105	116	126

(2-3)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

○ 사업 수혜자 : 기금관리실무관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기능별(내역사업별) 산출 내역

(3-1) 내역사업별 세부 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계획액(수정)(A)	2027년 정부안액(B)	증감 (B-A)
기금관리비(인건비)	116	126	10

○ **기금관리비(인건비) : (2026) 116 → (2027) 126백만원, +8.6%**

- 공통 처우개선 4.3%, 가족수당 월 9만원, 급식비 현실화 등 처우개선 소요 반영

4) 사업효과

(4-1) 최근 5년(2023년~2027년)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4-2) 성과지표 이외의 최근 4년(2023년~2026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없음

(4-3) 향후(2027년 이후) 기대효과

○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적정한 집행과 효율적 관리 도모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매월 급여지급일에 급여, 초과근무수당 등 법정수당 지급

8) 최근 3년간(2024년~2026년)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8-1) 정부 사업평가: 해당없음

(8-2) 국회 지적사항: 해당없음

(8-3) 감사원, 총리실, 기타(언론, 시민단체 등) 결과: 해당없음

4. 최근 4년간(2023년~2026년) 결산내역

1) 결산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연도	당초 계획액	수정 계획액 (A)	전년도 이월액	기금변경 증감액 등	계획 현액	집행액 (B)	집행률 (B/Ax100)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3년	98	98	0	0	98	98	100.0	0	0
2024년	102	102	0	0	102	102	100.0	0	0
2025년	105	105	0	0	105	104	99.0	0	1
2026년	116	116	0	0	116	50	43.1	해당없음	해당없음

2) 연도별 결산 주요사항

연도	유형	금액 (백만원)	사유
2023년	전용	18	기금관리실무관 퇴직연금(DB형) 적립금 납입을 위하여 18백만원 전용
2024년	전용	18	기금관리실무관 퇴직연금(DB형) 적립금 납입을 위하여 18백만원 전용
2025년	전용	16	기금관리실무관 퇴직연금(DB형) 적립금 납입을 위하여 16백만원 전용

5. 기타 추가자료 : 해당없음

사 업 명
(6) 사업운영비(제도운영인건비)(7082-102)

1. 사업 총괄 정보

1) 사업 기본 정보

(1-1) 일반 정보

소관	실·국	과·팀	기금	계정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근로기준정책관	퇴직연금복지과	임금채권보장기금	-

(1-2) 코드·명칭 정보

구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080	08E	7000	7082	102
명칭	사회복지	노동	고용노동행정지원	임금채권보장 기금운영비	사업운영비 (제도운영인건비)

2)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N	Y	N	N	N	N

3)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Y	N	N	N	N	-	-

4) 기능별(내역사업별)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내역사업명	소관	사업시행주체
사업운영비(제도운영인건비)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고용노동부

2. 지출계획 총괄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사업명	2025년 결산액	2026년 당초계획액 (A)	2026년 수정계획액	2027년 요구액	2027년 정부안액 (B)	증감액 (B-A)	증감률 (B-A) /A×100
사업운영비 (제도운영인건비)	796	885	885	974	974	89	10.1

1)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계획액 (수정)	2025년 계획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계획액 (수정)	2026년 계획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804	804	796	0	8	885	885	403	974
·사업운영비(제도운영인건비)	804	804	796	0	8	885	885	403	974

2) 비목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계획액 (수정)	2025년 계획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계획액 (수정)	2026년 계획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804	804	796	0	8	885	885	403	974
·상용임금(110-03)	586	586	578	0	8	739	739	363	803
·고용부담금(320-09)	218	218	218	0	0	146	146	40	171

3. 사업 설명

1) 사업목적·내용

(1-1) 사업운영비(제도운영인건비)

사업목적	도산등사실인정 업무의 효율적 관리 도모
사업내용	임금채권보장제도 전담요원의 인건비 지급

2) 사업개요

(2-1)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사업근거	○ **임금채권보장법 제11조의3 (기금관리요원)** 고용노동부장관은 임금채권보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전문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22조에 따라 준용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기금의 회계기관을 보조하는 기금관리요원을 둘 수 있다.
추진경위	○ 임금채권보장업무 전담 조사요원을 채용하여 도산등사실인정 업무 효율적 관리

(2-2) 사업규모

○ 사업기간 : 2005년~계속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계획액 기준, 기금운용계획변경 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사업비	758	802	804	885	974

(2-3)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

○ 사업 수혜자 : 기금관리실무관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기능별(내역사업별) 산출 내역

(3-1) 내역사업별 세부 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계획액(수정)(A)	2027년 정부안액(B)	증감 (B-A)
사업운영비(제도운영인건비)	885	974	89

○ **사업운영비(제도운영인건비) : (2026 당초 계획) 885 → (2027요구) 974백만원, +10.1%**

- 공통 처우개선 4.3%, 가족수당 월 9만원, 급식비 현실화 등 처우개선 소요 반영

4) 사업효과

(4-1) 최근 5년(2023년~2027년)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4-2) 성과지표 이외의 최근 4년(2023년~2026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없음

(4-3) 향후(2027년 이후) 기대효과

○ 도산등사실인정 업무의 효율적 관리 도모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매월 급여지급일에 급여, 초과근무수당 등 법정수당 지급

8) 최근 3년간(2024년~2026년)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8-1) 정부 사업평가: 해당없음

(8-2) 국회 지적사항: 해당없음

(8-3) 감사원, 총리실, 기타(언론, 시민단체 등) 결과: 해당없음

4. 최근 4년간(2023년~2026년) 결산내역

1) 결산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연도	당초 계획액	수정 계획액 (A)	전년도 이월액	기금변경 증감액 등	계획 현액	집행액 (B)	집행률 (B/Ax100)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3년	758	758	0	0	758	755	99.6	0	3
2024년	802	802	0	0	802	796	99.3	0	6
2025년	804	804	0	0	804	796	99.0	0	8
2026년	885	885	0	0	885	403	45.5	해당없음	해당없음

2) 연도별 결산 주요사항

연도	유형	금액 (백만원)	사유
2023년	전용	57	기금관리실무관 퇴직연금(DB형) 적립금 납입을 위하여 57백만원 전용
2024년	전용	89	기금관리실무관 퇴직연금(DB형) 적립금 납입을 위하여 89백만원 전용
2025년	전용	87	기금관리실무관 퇴직연금(DB형) 적립금 납입을 위하여 87백만원 전용

5. 기타 추가자료 : 해당없음

사 업 명
(7) 사업운영비(공단인건비)(7082-103)

1. 사업 총괄 정보

1) 사업 기본 정보

(1-1) 일반 정보

소관	실·국	과·팀	기금	계정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근로기준정책관	퇴직연금복지과	임금채권보장기금	-

(1-2) 코드·명칭 정보

구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080	08E	7000	7082	103
명칭	사회복지	노동	고용노동행정지원	임금채권보장 기금운영비	사업운영비 (공단인건비)

2)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N	Y	N	N	N	N

3)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N	N	Y	N	N	-	-

4) 기능별(내역사업별)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내역사업명	소관	사업시행주체
사업운영비(공단인건비)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근로복지공단

2. 지출계획 총괄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사업명	2025년 결산액	2026년 당초계획액 (A)	2026년 수정계획액	2027년 요구액	2027년 정부안액 (B)	증감액 (B-A)	증감률 (B-A) /A×100
사업운영비 (공단인건비)	13,872	15,514	15,514	16,197	16,197	683	4.4

1)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계획액 (수정)	2025년 계획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계획액 (수정)	2026년 계획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13,872	13,872	13,872	0	0	15,514	15,514	8,329	16,197
·사업운영비(공단인건비)	13,872	13,872	13,872	0	0	15,514	15,514	8,329	16,197

2) 비목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계획액 (수정)	2025년 계획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계획액 (수정)	2026년 계획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13,872	13,872	13,872	0	0	15,514	15,514	8,329	16,197
·기관운영출연금(350-01)	13,872	13,872	13,872	0	0	15,514	15,514	8,329	16,197

3. 사업 설명

1) 사업목적·내용

(1-1) 사업운영비(공단인건비)

사업목적	신속하고 정확한 대지급금 지급으로 행정서비스 질 제고, 사업주 변제금 회수 및 부담금 징수 업무의 전문화를 통한 실적제고
사업내용	대지급금지급, 변제금 회수, 사업주부담금 징수 등 임금채권보장업무를 운영하기 위한 근로복지공단 임직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

2) 사업개요

(2-1)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사업근거	○ 임금채권보장법 - 제19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과 잘못 납부한 금액 등의 반환 2. 제7조제6항에 따른 공인노무사 지원 비용의 지급 3. 제7조의3에 따른 체불 임금등 및 생계비 지급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융자 **4. 제27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한 출연** 5. 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 6. 임금등 체불 예방과 청산 지원 등 임금채권보장제도 관련 연구 7. 「법률구조법」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대한 출연. 다만, 임금등이 체불된 근로자에 대한 법률구조사업 지원에 한정한다. 8. 그 밖에 임금채권보장사업과 기금의 관리·운용
추진경위	○ 대지급금 지급, 변제금회수, 사업주부담금 징수 등의 업무를 위탁 수행하는 근로복지공단 인건비를 기금에서 지원

(2-2) 사업규모

○ 사업기간 : 1998년~계속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계획액 기준, 기금운용계획변경 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사업비	12,881	13,228	13,872	15,514	16,197

(2-3)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근로복지공단

○ 사업 수혜자 : 근로복지공단직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기관명	2027년 지원금액 (백만원)	지원 비율(%)	법적근거
사업운영비 (공단인건비)	출연	근로복지 공단	16,197	100.0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 제4호

3) 기능별(내역사업별) 산출 내역

(3-1) 내역사업별 세부 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계획액(수정)(A)	2027년 정부안액(B)	증감 (B-A)
사업운영비(공단인건비)	15,514	16,197	683

○ **사업운영비(공단인건비) : (2026) 15,514백만원 → (2027) 16,197백만원, +4.4%**

- 공통 처우개선 605백만원, 추가 처우개선 78백만원 반영

4) 사업효과

(4-1) 최근 5년(2023년~2027년)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4-2) 성과지표 이외의 최근 4년(2023년~2026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없음

(4-3) 향후(2027년 이후) 기대효과

○ 신속하고 정확한 대지급금 지급으로 행정서비스 질 제고, 사업주 변제금 회수 및 부담금 징수 업무의 전문화를 통한 실적제고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매월 근로복지공단에서 인건비 청구 → 고용노동부에서 출연

8) 최근 3년간(2024년~2026년)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8-1) 정부 사업평가: 해당없음

(8-2) 국회 지적사항: 해당없음

(8-3) 감사원, 총리실, 기타(언론, 시민단체 등) 결과: 해당없음

4. 최근 4년간(2023년~2026년) 결산내역

1) 결산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연도	당초 계획액	수정 계획액 (A)	전년도 이월액	기금변경 증감액 등	계획 현액	집행액 (B)	집행률 (B/Ax100)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3년	12,881	12,881	0	0	12,881	12,881	100.0	0	0
2024년	13,228	13,228	0	0	13,228	13,228	100.0	0	0
2025년	13,818	13,872	0	54	13,872	13,872	100.0	0	0
2026년	15,514	15,514	0	0	15,514	8,329	53.7	해당없음	해당없음

2) 연도별 결산 주요사항

연도	유형	금액 (백만원)	사유
2025년	이용	54	통상임금 관련 대법원 판결 및 고용노동부 노사지도 지침 변경에 따라 근로복지공단 인건비 부족분 증액변경

5. 기타 추가자료 : 해당없음

사 업 명
(8) 기금관리비(기타경비)(7082-201)

1. 사업 총괄 정보

1) 사업 기본 정보

(1-1) 일반 정보

소관	실·국	과·팀	기금	계정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근로기준정책관	퇴직연금복지과	임금채권보장기금	-

(1-2) 코드·명칭 정보

구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080	08E	7000	7082	201
명칭	사회복지	노동	고용노동행정지원	임금채권보장 기금운영비	기금관리비 (기타경비)

2)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N	Y	N	N	N	N

3)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Y	N	N	N	N	-	-

4) 기능별(내역사업별)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내역사업명	소관	사업시행주체
기금관리비(기타경비)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고용노동부

2. 지출계획 총괄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사업명	2025년 결산액	2026년 당초계획액 (A)	2026년 수정계획액	2027년 요구액	2027년 정부안액 (B)	증감액 (B-A)	증감률 (B-A) /A×100
기금관리비 (기타경비)	14	14	14	14	14	0	0.0

1)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계획액 (수정)	2025년 계획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계획액 (수정)	2026년 계획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14	14	14	0	0	14	14	10	14
·기금관리비(기타경비)	14	14	14	0	0	14	14	10	14

2) 비목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계획액 (수정)	2025년 계획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계획액 (수정)	2026년 계획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14	14	14	0	0	14	14	10	14
·일반수용비(210-01)	12	12	12	0	0	12	12	9	12
·복리후생비(210-12)	1	1	1	0	0	1	1	1	1
·사업추진비(240-01)	1	1	1	0	0	1	1	0	1

3. 사업 설명

1) 사업목적·내용

(1-1) 기금관리비(기타경비)

사업목적	임금채권보장기금 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 도모
사업내용	임금채권보장기금 심의위원회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지급

2) 사업개요

(2-1)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사업근거	○ 임금채권보장법 - 제19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과 잘못 납부한 금액 등의 반환 2. 제7조제6항에 따른 공인노무사 지원 비용의 지급 3. 제7조의3에 따른 체불 임금등 및 생계비 지급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융자 4. 제27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한 출연 5. 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 6. 임금등 체불 예방과 청산 지원 등 임금채권보장제도 관련 연구 7. 「법률구조법」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대한 출연. 다만, 임금등이 체불된 근로자에 대한 법률구조사업 지원에 한정한다. **8. 그 밖에 임금채권보장사업과 기금의 관리·운용**
추진경위	○ 임금채권보장기금 심의위원회 운영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원

(2-2) 사업규모

○ 사업기간 : 1998년~계속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계획액 기준, 기금운용계획변경 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사업비	14	14	14	14	14

(2-3)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기능별(내역사업별) 산출 내역

(3-1) 내역사업별 세부 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계획액(수정)(A)	2027년 정부안액(B)	증감 (B-A)
기금관리비(기타경비)	14	14	0

○ 기금관리비(기타경비) : (2026) 14 → (2027) 14백만원, 전년 동

-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

4) 사업효과

(4-1) 최근 5년(2023년~2027년)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4-2) 성과지표 이외의 최근 4년(2023년~2026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없음

(4-3) 향후(2027년 이후) 기대효과

○ 임금채권보장기금 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 도모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예산 및 자금 배정 → 임채기금(위원회 개최 등) 관련 업무 수행 → 비용정산

8) 최근 3년간(2024년~2026년)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8-1) 정부 사업평가: 해당없음

(8-2) 국회 지적사항: 해당없음

(8-3) 감사원, 총리실, 기타(언론, 시민단체 등) 결과: 해당없음

4. 최근 4년간(2023년~2026년) 결산내역

1) 결산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연도	당초 계획액	수정 계획액 (A)	전년도 이월액	기금변경 증감액 등	계획 현액	집행액 (B)	집행률 (B/Ax100)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3년	14	14	0	0	14	14	100.0	0	0
2024년	14	14	0	0	14	14	100.0	0	0
2025년	14	14	0	0	14	14	100.0	0	0
2026년	14	14	0	0	14	10	71.4	해당없음	해당없음

2) 연도별 결산 주요사항 : 해당없음

5. 기타 추가자료 : 해당없음

사 업 명
(9) 사업운영비(제도운영기타경비)(7082-202)

1. 사업 총괄 정보

1) 사업 기본 정보

(1-1) 일반 정보

소관	실·국	과·팀	기금	계정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근로기준정책관	퇴직연금복지과	임금채권보장기금	-

(1-2) 코드·명칭 정보

구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080	08E	7000	7082	202
명칭	사회복지	노동	고용노동행정지원	임금채권보장 기금운영비	사업운영비 (제도운영기타경비)

2)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N	Y	N	N	N	N

3)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Y	N	N	N	N	-	-

4) 기능별(내역사업별)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내역사업명	소관	사업시행주체
사업운영비 (제도운영기타경비)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고용노동부

2. 지출계획 총괄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사업명	2025년 결산액	2026년 당초계획액 (A)	2026년 수정계획액	2027년 요구액	2027년 정부안액 (B)	증감액 (B-A)	증감률 (B-A) /A×100
사업운영비 (제도운영기타경비)	358	308	308	308	279	△29	△9.4

1)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계획액 (수정)	2025년 계획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계획액 (수정)	2026년 계획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373	373	358	0	15	308	320	139	279
·사업운영비(제도운영기타경비)	373	373	358	0	15	308	320	139	279

2) 비목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계획액 (수정)	2025년 계획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계획액 (수정)	2026년 계획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373	373	358	12	3	308	320	139	279
·일반수용비(210-01)	96	96	96	0	0	113	113	82	53
·특근매식비(210-05)	0	0	0	0	0	0	0	0	0
·임차료(210-07)	0	0	0	0	0	0	0	0	0
·복리후생비(210-12)	13	13	13	0	0	13	13	10	15
·일반용역비(210-14)	20	20	20	0	0	20	20	0	18
·국내여비(220-01)	55	55	53	0	2	16	16	1	61
·국외업무여비(220-02)	0	0	0	0	0	9	9	0	9
·사업추진비(240-01)	31	31	30	0	1	31	31	15	30
·정책연구비(260-02)	60	60	48	12	0	13	25	12	11
·포상금(310-03)	98	98	98	0	0	93	93	19	82

3. 사업 설명

1) 사업목적·내용

(1-1) 사업운영비(제도운영기타경비)

사업목적	도산등사실인정 업무의 효율적 관리 도모
사업내용	임금채권보장제도 운영을 위한 여비, 정책연구비, 포상금 등 지급

2) 사업개요

(2-1)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사업근거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과 잘못 납부한 금액 등의 반환 2. 제7조제6항에 따른 공인노무사 지원 비용의 지급 3. 제7조의3에 따른 체불 임금등 및 생계비 지급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융자 4. 제27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한 출연 5. 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 6. 임금등 체불 예방과 청산 지원 등 임금채권보장제도 관련 연구 7. 「법률구조법」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대한 출연. 다만, 임금등이 체불된 근로자에 대한 법률구조사업 지원에 한정한다. **8. 그 밖에 임금채권보장사업과 기금의 관리·운용**
추진경위	○ 임금채권보장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운영비 지원

(2-2) 사업규모

○ 사업기간 : 1998년~계속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계획액 기준, 기금운용계획변경 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사업비	344	420	373	308	279

(2-3)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기능별(내역사업별) 산출 내역

(3-1) 내역사업별 세부 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계획액(수정)(A)	2027년 정부안액(B)	증감 (B-A)
사업운영비(제도운영기타경비)	308	279	△29

○ **사업운영비(제도운영기타경비) : (2026) 308 → (2027) 279백만원, -9.4%**

- 제로베이스 감액 △38백만원 감액, 운영비 추가지원 7백만원 증액, 공무직 복리후생비 2백만원 증액 반영

4) 사업효과

(4-1) 최근 5년(2023년~2027년)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4-2) 성과지표 이외의 최근 4년(2023년~2026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없음

(4-3) 향후(2027년 이후) 기대효과

○ 도산등사실인정 업무의 효율적 관리 도모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예산 및 자금 배정 → 임채기금 관련 업무 수행 → 비용정산

8) 최근 3년간(2024년~2026년)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8-1) 정부 사업평가: 해당없음

(8-2) 국회 지적사항: 해당없음

(8-3) 감사원, 총리실, 기타(언론, 시민단체 등) 결과: 해당없음

4. 최근 4년간(2023년~2026년) 결산내역

1) 결산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연도	당초 계획액	수정 계획액 (A)	전년도 이월액	기금변경 증감액 등	계획 현액	집행액 (B)	집행률 (B/Ax100)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3년	344	344	8	0	352	350	99.4	0	2
2024년	329	420	0	91	420	415	98.8	0	5
2025년	318	373	0	55	373	358	96.0	12	3
2026년	308	308	12	0	320	139	43.4	해당없음	해당없음

2) 연도별 결산 주요사항

연도	유형	금액 (백만원)	사유
2023년	전용	22	신고포상금 신청에 따른 소요재원 마련을 위한 자체계획 변경
2023년	전용	19	고객만족도 조사를 위한 소요재원 마련을 위한 자체계획 변경
2024년	이용	91	신고포상금 신청 따른 소요재원 마련을 위한 91백만원 증액 변경
2024년	전용	20	대지급금 조력지원 세부사업 예산 미반영으로 사업운영비(제도운영기타경비)에서 대지급금 조력지원 사업비를 집행하여, 부족분 자체전용
2025년	전용	19	'25년도 대지급금 조력지원 사업비 예산 미반영으로 대지급금 조력지원 비용을 사업운영비(제도운영기타경비)에서 집행함에 따라 소요 재원 마련을 위한 자체계획 변경
2025년	이용	55	신고포상금 증가에 따른 소요재원 마련
2025년	이월	12	일반연구비 「대지급금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연구(2025.7.4.~2026.2.6)」계약기간 미도래로 12백만원 이월
2026년	전용	58	'24년도부터 대지급금 조력지원 사업비 예산 미반영으로 대지급금 조력지원 비용을 사업운영비(제도운영기타경비)에서 집행함에 따라 소요 재원 마련

5. 기타 추가자료 : 해당없음

사 업 명
(10) 사업운영비(공단기타경비)(7082-203)

1. 사업 총괄 정보

1) 사업 기본 정보

(1-1) 일반 정보

소관	실·국	과·팀	기금	계정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근로기준정책관	퇴직연금복지과	임금채권보장기금	-

(1-2) 코드·명칭 정보

구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080	08E	7000	7082	203
명칭	사회복지	노동	고용노동행정지원	임금채권보장 기금운영비	사업운영비 (공단기타경비)

2)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N	Y	N	N	N	N

3)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N	N	Y	N	N	-	-

4) 기능별(내역사업별)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내역사업명	소관	사업시행주체
사업운영비(공단기타경비)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근로복지공단

2. 지출계획 총괄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사업명	2025년 결산액	2026년 당초계획액 (A)	2026년 수정계획액	2027년 요구액	2027년 정부안액 (B)	증감액 (B-A)	증감률 (B-A) /A×100
사업운영비 (공단기타경비)	1,890	2,042	2,042	1,876	1,876	△166	△8.1

1)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계획액 (수정)	2025년 계획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계획액 (수정)	2026년 계획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1,890	1,890	1,890	0	0	2,042	2,042	1,204	1,876
·사업운영비(공단기타경비)	1,890	1,890	1,890	0	0	2,042	2,042	1,204	1,876

2) 비목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계획액 (수정)	2025년 계획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계획액 (수정)	2026년 계획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1,890	1,890	1,890	0	0	2,042	2,042	1,204	1,876
·기관운영출연금(350-01)	1,890	1,890	1,890	0	0	2,042	2,042	1,204	1,876

3. 사업 설명

1) 사업목적·내용

(1-1) 사업운영비(공단기타경비)

사업목적	신속하고 정확한 대지급금 지급으로 행정서비스 질 제고, 사업주 변제금 회수 및 부담금 징수 업무의 전문화를 통한 실적제고
사업내용	대지급금지급, 변제금 회수, 사업주부담금 징수 등 임금채권보장업무를 운영하기 위한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기타경비 지원

2) 사업개요

(2-1)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사업근거	ㅇ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과 잘못 납부한 금액 등의 반환 2. 제7조제6항에 따른 공인노무사 지원 비용의 지급 3. 제7조의3에 따른 체불 임금등 및 생계비 지급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융자 **4. 제27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한 출연** 5. 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 6. 임금등 체불 예방과 청산 지원 등 임금채권보장제도 관련 연구 7. 「법률구조법」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대한 출연. 다만, 임금등이 체불된 근로자에 대한 법률구조사업 지원에 한정한다. 8. 그 밖에 임금채권보장사업과 기금의 관리·운용
추진경위	○ 대지급금 지급, 변제금회수, 사업주부담금 징수 등의 업무를 위탁 수행하는 근로복지공단 기타경비를 기금에서 지원

(2-2) 사업규모

○ 사업기간 : 1998년~계속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계획액 기준, 기금운용계획변경 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사업비	4,838	1,885	1,890	2,042	1,876

(2-3)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근로복지공단

○ 사업 수혜자 : 근로복지공단직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기관명	2027년 지원금액 (백만원)	지원 비율(%)	법적근거
사업운영비 (공단기타경비)	출연	근로복지 공단	1,876	100.0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 제4호

3) 기능별(내역사업별) 산출 내역

(3-1) 내역사업별 세부 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계획액(수정)(A)	2027년 정부안액(B)	증감 (B-A)
사업운영비(공단기타비)	2,042	1,876	△166

○ **사업운영비(공단기타경비) : (2026) 2,042백만원 → (2027) 1,876백만원, △8.1%**

- 제로베이스 절감 △32백만원, 완료소요 △216백만원, 공공요금 부족분 1백만원, 임차청사 임차료 관리비 인상 소요 14백만원, '27년 기관경영평가 인센티브(경영평가 우수) 11백만원, 운영비 추가지원 46백만원, 공무직 공통 처우개선 8백만원, 공무직 추가 처우개선 2백만원 반영

4) 사업효과

(4-1) 최근 5년(2023년~2027년)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4-2) 성과지표 이외의 최근 4년(2023년~2026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없음

(4-3) 향후(2027년 이후) 기대효과

○ 신속하고 정확한 대지급금 지급으로 행정서비스 질 제고, 사업주 변제금 회수 및 부담금 징수 업무의 전문화를 통한 실적제고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매월 근로복지공단에서 기타경비 청구 → 고용노동부에서 출연

8) 최근 3년간(2024년~2026년)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8-1) 정부 사업평가: 해당없음

(8-2) 국회 지적사항: 해당없음

(8-3) 감사원, 총리실, 기타(언론, 시민단체 등) 결과: 해당없음

4. 최근 4년간(2023년~2026년) 결산내역

1) 결산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연도	당초 계획액	수정 계획액 (A)	전년도 이월액	기금변경 증감액 등	계획 현액	집행액 (B)	집행률 (B/Ax100)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3년	3,288	4,838	0	1,550	4,838	4,838	100.0	0	0
2024년	1,885	1,885	0	0	1,885	1,885	100.0	0	0
2025년	1,890	1,890	0	0	1,890	1,890	100.0	0	0
2026년	2,042	2,042	0	0	2,042	1,204	59.0	해당없음	해당없음

2) 연도별 결산 주요사항

연도	유형	금액 (백만원)	사유
2023년	이용	1,550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에 따른 신규 소송업무 수행에 따라 소송제기 사건 급증으로 소송비용 마련

5. 기타 추가자료 : 해당없음

사 업 명
(11)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수이자상환(9202-840)

1. 사업 총괄 정보

1) 사업 기본 정보

(1-1) 일반 정보

소관	실·국	과·팀	기금	계정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근로기준정책관	퇴직연금복지과	임금채권보장기금	-

(1-2) 코드·명칭 정보

구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080	08E	9200	9202	840
명칭	사회복지	노동	기금간거래 (예수이자상환)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이자상환	공공자금관리기금 (총괄계정) 예수이자상환

2)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N	Y	N	N	N	N

3)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Y	N	N	N	N	-	-

4) 기능별(내역사업별)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내역사업명	소관	사업시행주체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수이자상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고용노동부

2. 지출계획 총괄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사업명	2025년 결산액	2026년 당초계획액 (A)	2026년 수정계획액	2027년 요구액	2027년 정부안액 (B)	증감액 (B-A)	증감률 (B-A) /A×100
공공자금관리기금 (총괄계정) 예수이자상환	0	2,565	2,565	3,484	3,484	919	35.8

1)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계획액 (수정)	2025년 계획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계획액 (수정)	2026년 계획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969	969	0	0	969	2,565	2,565	373	3,484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수이자상환	969	969	0	0	969	2,565	2,565	373	3,484

2) 비목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계획액 (수정)	2025년 계획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계획액 (수정)	2026년 계획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969	969	0	0	969	2,565	2,565	373	3,484
·예수금이자(510-05)	969	969	0	0	969	2,565	2,565	373	3,484

3. 사업 설명

1) 사업목적·내용

(1-1)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수이자상환

사업목적	공공자금관리기금을 예수하여 임금채권보장기금 재정안정화에 기여
사업내용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에 따른 이자상환

2) 사업개요

(2-1)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사업근거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기금의 용도) - 공공자금관리기본법 제6조(총괄계정의 재원과 용도)
추진경위	○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에 따른 이자상환

(2-2) 사업규모

○ 사업기간 : 2025년~계속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계획액 기준, 기금운용계획변경 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사업비	-	-	969	2,565	3,484

(2-3)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기능별(내역사업별) 산출 내역

(3-1) 내역사업별 세부 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계획액(수정)(A)	2027년 정부안액(B)	증감 (B-A)
공공자금관리기금 (총괄계정) 예수이자상환	2,565	3,484	919

○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수이자상환 : (2026) 2,565 → (2027) 3,484백만원, +35.8%**

-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25년 및 '26년 각각 570억원 예수에 따른 이자 반영

4) 사업효과

(4-1) 최근 5년(2023년~2027년)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4-2) 성과지표 이외의 최근 4년(2023년~2026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없음

(4-3) 향후(2027년 이후) 기대효과

○ 공공자금관리기금을 예수하여 임금채권보장기금 재정안정화에 기여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매분기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이자 상환 요청 → 기금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이자 상환

8) 최근 3년간(2024년~2026년)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8-1) 정부 사업평가: 해당없음

(8-2) 국회 지적사항: 해당없음

(8-3) 감사원, 총리실, 기타(언론, 시민단체 등) 결과: 해당없음

4. 최근 4년간(2023년~2026년) 결산내역

1) 결산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연도	당초 계획액	수정 계획액 (A)	전년도 이월액	기금변경 증감액 등	계획 현액	집행액 (B)	집행률 (B/Ax100)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3년	-	-	-	-	-	-	-	-	-
2024년	-	-	-	-	-	-	-	-	-
2025년	969	969	0	0	969	0	0.0	0	969
2026년	2,565	2,565	0	0	2,565	373	14.5	해당없음	해당없음

2) 연도별 결산 주요사항 : 해당없음

5. 기타 추가자료 : 해당없음

사 업 명
(12) 한국은행예치(9704-971)

1. 사업 총괄 정보

1) 사업 기본 정보

(1-1) 일반 정보

소관	실·국	과·팀	기금	계정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근로기준정책관	퇴직연금복지과	임금채권보장기금	-

(1-2) 코드·명칭 정보

구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080	08E	9700	9704	971
명칭	사회복지	노동	여유자금운용	여유자금운용	한국은행예치

2)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N	Y	N	N	N	N

3)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Y	N	N	N	N	-	-

4) 기능별(내역사업별)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내역사업명	소관	사업시행주체
한국은행예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고용노동부

2. 지출계획 총괄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사업명	2025년 결산액	2026년 당초계획액 (A)	2026년 수정계획액	2027년 요구액	2027년 정부안액 (B)	증감액 (B-A)	증감률 (B-A) /A×100
한국은행예치	5,850	4,671	4,671	4,671	4,671	0	0.0

1)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계획액 (수정)	2025년 계획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계획액 (수정)	2026년 계획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4,671**	**4,671**	**5,850**	**0**	**0**	**4,671**	**4,671**	**546**	**4,671**
·한국은행예치	4,671	4,671	5,850	0	0	4,671	4,671	546	4,671

2) 비목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계획액 (수정)	2025년 계획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계획액 (수정)	2026년 계획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4,671**	**4,671**	**5,850**	**0**	**0**	**4,671**	**4,671**	**546**	**4,671**
·한국은행예치금(470-01)	4,671	4,671	5,850	0	0	4,671	4,671	546	4,671

3. 사업 설명

1) 사업목적·내용

(1-1) 한국은행예치

사업목적	임금채권보장 사업의 적정한 수행 및 여유자금의 효율적 운용 도모
사업내용	회계연도 말 여유자금 운용 또는 기타 지출 재원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한국은행 국고 계좌에 남아 있는 금액

2) 사업개요

(2-1)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사업근거	- **임금채권보장법 제17조(기금의 설치)**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이나 제7조의3에 따른 체불 임금등 및 생계비의 융자 등 임금채권보장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채권보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임금채권보장법 제20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의 관리·운용 등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8조부터 제100조까지 및 제10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중 "보험급여"는 "대지급금"으로, "보험료 수입"은 "부담금수입"으로 본다.
추진경위	○ 회계연도 말 부득이 지출되지 못하고 국고계좌에 남아 있는 금액을 한국은행 예치금으로 봄

(2-2) 사업규모

○ 사업기간 : 1998년~계속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계획액 기준, 기금운용계획변경 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사업비	4,671	4,671	4,671	4,671	4,671

(2-3)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기능별(내역사업별) 산출 내역

(3-1) 내역사업별 세부 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계획액(수정)(A)	2027년 정부안액(B)	증감 (B-A)
한국은행예치	4,671	4,671	0

○ 국은행예치 : (2026) 4,671 → (2027) 4,671백만원, 전년 동

- 전년대비 동일한 수준으로 반영

4) 사업효과

(4-1) 최근 5년(2023년~2027년)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4-2) 성과지표 이외의 최근 4년(2023년~2026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없음

(4-3) 향후(2027년 이후) 기대효과

○ 임금채권보장 사업의 적정한 수행 및 여유자금의 효율적 운용 도모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회계연도 말일 한국은행 시재 파악 → 지출 재원으로 사용 또는 여유재원은 통화 및 비통화금융기관에 예치 → 이후 한국은행 국고계좌로 입금되거나 시재 미파악 부분이 한국은행에 예치됨

8) 최근 3년간(2024년~2026년)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8-1) 정부 사업평가: 해당없음

(8-2) 국회 지적사항: 해당없음

(8-3) 감사원, 총리실, 기타(언론, 시민단체 등) 결과: 해당없음

4. 최근 4년간(2023년~2026년) 결산내역

1) 결산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연도	당초 계획액	수정 계획액 (A)	전년도 이월액	기금변경 증감액 등	계획 현액	집행액 (B)	집행률 (B/Ax100)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3년	4,671	4,671	0	0	4,671	3,601	77.1	0	0
2024년	4,671	4,671	0	0	4,671	4,576	98.0	0	0
2025년	4,671	4,671	0	0	4,671	5,850	125.2	0	0
2026년	4,671	4,671	0	0	4,671	546	11.7	해당없음	해당없음

2) 연도별 결산 주요사항 : 해당없음

5. 기타 추가자료 : 해당없음

사 업 명
(13) 비통화금융기관예치(9704-973)

1. 사업 총괄 정보

1) 사업 기본 정보

(1-1) 일반 정보

소관	실·국	과·팀	기금	계정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근로기준정책관	퇴직연금복지과	임금채권보장기금	-

(1-2) 코드·명칭 정보

구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080	08E	9700	9704	973
명칭	사회복지	노동	여유자금운용	여유자금운용	비통화금융 기관예치

2)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N	Y	N	N	N	N

3)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Y	N	N	N	N	-	-

4) 기능별(내역사업별)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내역사업명	소관	사업시행주체
비통화금융기관예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고용노동부

2. 지출계획 총괄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사업명	2025년 결산액	2026년 당초계획액 (A)	2026년 수정계획액	2027년 요구액	2027년 정부안액 (B)	증감액 (B-A)	증감률 (B-A) /A×100
비통화금융기관예치	143,653	42,025	159,828	535,947	535,947	493,922	1,175.3

1)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계획액 (수정)	2025년 계획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계획액 (수정)	2026년 계획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70,325**	**70,325**	**143,653**	**0**	**0**	**159,828**	**159,828**	**186,139**	**535,947**
·비통화금융기관예치	70,325	70,325	143,653	0	0	159,828	159,828	186,139	535,947

2) 비목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계획액 (수정)	2025년 계획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계획액 (수정)	2026년 계획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70,325**	**70,325**	**143,653**	**0**	**0**	**159,828**	**159,828**	**186,139**	**535,947**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470-03)	70,325	70,325	143,653	0	0	159,828	159,828	186,139	535,947

3. 사업 설명

1) 사업목적·내용

(1-1) 비통화금융기관예치

사업목적	기금운용의 안정성과 수익성, 유동성을 확보하여 기금 조성에 기여
사업내용	여유자금(기금 적립금)을 비통화금융기관(은행을 제외한 금융기관)에 수익증권(채권형, 주식형, 단기자금 등)으로 예치하여 기금 조성에 기여하고, 기금의 지출 수요에 대비

2) 사업개요

(2-1)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사업근거	- **임금채권보장법 제17조(기금의 설치)**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이나 제7조의3에 따른 체불 임금등 및 생계비의 융자 등 임금채권보장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채권보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임금채권보장법 제18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

	으로 조성한다. 1. 제8조에 따른 사업주의 변제금(辨濟金) 2. 제9조에 따른 사업주의 부담금 3. 제2항에 따른 차입금 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②고용노동부장관은 기금을 운용하는 데에 필요하면 기금의 부담으로 금융기관이나 다른 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다. - **임금채권보장법 제20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②기금의 관리·운용 등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8조부터 제100조까지 및 제10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중 "보험급여"는 "대지급금"으로, "보험료수입"은 "부담금수입"으로 본다.
추진경위	○ 여유자금(기금 적립금)을 비통화금융기관(은행을 제외한 금융기관)에 일정비율 예치하여 기금운영의 안정성과 수익성, 유동성 확보

(2-2) 사업규모

○ 사업기간 : 1998년~계속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계획액 기준, 기금운용계획변경 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사업비	9,672	33,036	70,325	159,828	493,922

(2-3)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기능별(내역사업별) 산출 내역

(3-1) 내역사업별 세부 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계획액(수정)(A)	2027년 정부안액(B)	증감 (B-A)
비통화금융기관예치	159,828	535,947	376,119

○ '27년도 여유자금 운용 금액(당해년도 여유자금 회수액 및 수지차를 합한 금액) 535,947백만원을 비통화금융기관에 전부 예탁

4) 사업효과

(4-1) 최근 5년(2023년~2027년)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4-2) 성과지표 이외의 최근 4년(2023년~2026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없음

(4-3) 향후(2027년 이후) 기대효과

○ 기금운용의 안정성과 수익성, 유동성을 확보하여 기금 조성에 기여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분기별 자산운용계획에 따른 자산군별 투자 비중내에서 채권형·주식형 등의 수익증권 운용

8) 최근 3년간(2024년~2026년)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8-1) 정부 사업평가: 해당없음
(8-2) 국회 지적사항: 해당없음
(8-3) 감사원, 총리실, 기타(언론, 시민단체 등) 결과: 해당없음

4. 최근 4년간(2023년~2026년) 결산내역

1) 결산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연도	당초 계획액	수정 계획액 (A)	전년도 이월액	기금변경 증감액 등	계획 현액	집행액 (B)	집행률 (B/Ax100)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3년	176,606	9,672	0	-166,934	9,672	79,316	820.1	0	0
2024년	325,005	33,036	0	-291,969	33,036	116,777	353.5	0	0
2025년	280,090	70,325	0	-209,765	70,325	143,653	204.3	0	0
2026년	42,025	159,828	0	117,803	159,828	186,139	116.5	해당없음	해당없음

2) 연도별 결산 주요사항

연도	유형	금액 (백만원)	사유
2023	이용	△166,934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에 따른 신규 소송업무 수행에 따라 소송 제기 사건 급증, 소송비용 및 임금체불 증가로 사업비 소요재원 마련을 위한 감액
2024	이용	△291,969	임금체불 증가로 사업비 및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소요재원 마련을 위한 감액
2025	이용	△209,765	임금체불 증가로 사업비 추가소요 발생,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소요재원 마련을 위한 감액 통상임금 관련 대법원 판결 및 고용노동부 노사지도 지침 변경에 따라 근로복지공단 인건비 부족분 소용재원 마련을 위함 감액
2026	이용	117,803	체불청산지원 융자 사업비 소요재원 마련을 위한 감액 법정부담금 증액 변경에 따라 총 기금 규모가 증가하여, 비통화금융기관예치 증액

5. 기타 추가자료 : 해당없음

Ⅴ. 근로복지진흥기금

사 업 명
(1) 근로자복지지원(3061-301)

1. 사업 총괄 정보

1) 사업 기본 정보

(1-1) 일반 정보

소관	실·국	과·팀	기금	계정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퇴직연금복지과	근로복지 진흥기금	중소복지계정

(1-2) 코드·명칭 정보

구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080	08E	3000	3061	301
명칭	사회복지	노동	근로조건보호및 복지증진	근로자복지지원	근로자복지지원

2)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N	Y	N	N	N	N

3)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Y	N	N	N	N	-	-

4) 기능별(내역사업별)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내역사업명	소관	사업시행주체
문화예술제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근로복지공단
기업복지활성화지원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근로복지공단

2. 지출계획 총괄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사업명	2025년 결산액	2026년 당초계획액 (A)	2026년 수정계획액	2027년 요구액	2027년 정부안액 (B)	증감액 (B-A)	증감률 (B-A) /A×100
근로자복지지원	1,558	1,607	1,607	8,432	1,607	-	-

1)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계획액 (수정)	2025년 계획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계획액 (수정)	2026년 계획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1,558	1,558	1,558	-	-	1,607	1,607	845	1,607
·문화예술제	407	407	407	-	-	407	407	224	407
·기업복지활성화지원	1,151	1,151	1,151	-	-	1,200	1,200	621	1,200

2) 비목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계획액 (수정)	2025년 계획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계획액 (수정)	2026년 계획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1,558	1,558	1,558	-	-	1,607	1,607	845	1,607
·일반수용비(210-01)	213	213	213	-	-	213	213	55	213
·공공요금및제세(210-02)	14	14	14	-	-	14	14	-	14
·일반용역비(210-14)	1,322	1,322	1,322	-	-	1,371	1,371	788	1,371
·국내여비(220-01)	4	4	4	-	-	4	4	-	4
·사업추진비(240-01)	4	4	4	-	-	4	4	1	4

3. 사업 설명

1) 사업목적·내용

(1-1) 문화예술제

사업목적	노동자의 문화 예술 활동 다양화 및 건전하고 생산적인 노동문화 저변 확대에 기여
사업내용	노동자 등이 참여할 수 있는 가요·미술·문학·댄스 등 4가지 분야의 문화예술제를 개최

(1-2) 기업복지활성화지원

사업목적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을 제공하여 취약근로계층 삶의 질 및 생산성 향상 도모
사업내용	직무스트레스, 조직내 소통, 직장내 괴롭힘, 자살 등 15개 분야 전문 상담서비스 제공

2) 사업개요

(2-1)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사업근거	제83조(근로자지원프로그램) ①사업주는 근로자의 업무 수행 또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 개인의 고충 등 업무 저해요인의 해결을 지원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전문가 상담 등 일련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자지원프로그램을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1조(근로복지진흥기금의 용도) 근로복지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9. 근로자 정서함양을 위한 문화 · 체육활동 지원 10. 선택적 복지제도 관련 지원 11. 근로자지원프로그램 관련 지원
추진경위	○ 문화예술제 - ’80. 11. 제1회 『노동문화제』(미술분야) 개최(주최 : 노동부) - ’81. 5. 문학분야 신설, 국무총리상 신설(제2회 - ’85. 5. 음악분야 신설(제6회) - ’86. 9. 노동문화제 사업이관[노동부→근로복지공사 - ’88. 10. 연극분야 신설(제9회) - ’92. 4. 명칭변경[노동문화제→근로자문화예술제](제13회) - ’95. 1. 기금사업 편입(일반회계→근로복지진흥기금) - ’96. 6. 대통령상 신설 - ‘24. 1. 미술제 웹툰 분야 신설 - ‘25. 제46회 근로자문화예술제 개최 - ‘26. K-POP댄스챌린지 시범사업 ○ 기업복지활성화지원 - ’08. 5. ‘09. 2월 고용노동부장관 업무보고 * 근로자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퇴직연금 확산, 우리사주제 등 선진기업복지제도 활성화 주력 - ’09. 3.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의 중산층 키우기 휴먼뉴딜정책 추진방향 보고 *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진근로복지 추진 - ’09. 11.「근로자복지기본법」 전부 개정 시 선택적복지·근로자지원프로그램 관련 규정 신설 - ’10년 중소기업 선진복지제도 도입지원 사업 시행 * 기업복지컨설팅,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제공 - ’15. 2.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컨설팅 신설 - ’16. 사업명칭 변경(중소기업 선진복지제도 도입 지원 → 기업복지활성화지원) - ’20. 기업복지활성화지원 개편(EAP, 퇴직연금, 선택적 복지, 사내공동기금 → 공동근로복지기금 도입 컨설팅에 집중) - ’23. 1. 중소기업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지원 확대로 지출구조 조정(공동근로복지기금 도입 컨설팅 ’22년 사업종료)

(2-2) 사업규모

○ 사업기간 : 계속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계획액 기준, 기금운용계획변경 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사업비	1,564	3,812	1,558	1,607	1,607

(2-3)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근로복지공단

○ 사업 수혜자 : 재직근로자, 300인 미만 중소기업 근로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3) 기능별(내역사업별) 산출 내역

(3-1) 내역사업별 세부 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계획액(수정)(A)	2027년 정부안액(B)	증감 (B-A)
합 계	1,607	1,607	-
문화예술제	407	407	-
기업복지활성화지원	1,200	1,200	-

○ 문화예술제 **(2026년) 407 → (2027년) 407백만원, 전년 동**

- (설명) 행사 개최를 위해 전년 수준의 예산 요구
- (산출) 음악, 댄스, 미술 및 문학 등 4개 분야 입선 수상자에 대한 시상금 90백만원, 위탁관리비 291백만원, 사업운영비 26백만원

○ 기업복지활성화지원 **(2026년) 1,200 → (2027년) 1,200백만원, 전년 동**

- (설명)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지원 사업비 1,200백만 원 요구
- (산출)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1,080백만 원
  * (개인 상담) 16,262건×6만 원 + (온라인 상담) 2,450건×2만 원+ (집단상담) 210회 ×20만 원 + 특화프로그램 13회×100만 원
  * 사업 지원 관련 운영비 120백만 원

4) 사업효과

(4-1) 최근 5년(2023년~2027년)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해당없음

(4-2) 성과지표 이외의 최근 4년(2023년~2026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문화예술제

연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3년	- 참가인원 목표: 5,552명/실적 5,245명, 94.5% 달성 - 근로자영상제 시범 실시
2024년	- 참가인원 목표: 6,056명/실적 5,774명, 95.3% 달성 - 근로자미술제 웹툰 분야 신설
2025년	- 참가인원 목표: 5,699명/실적 5,476명, 96.1% 달성 - 근로자가요제 신설 40주년 기념 왕중왕전 실시
2026년	- 참가인원 목표: 5,663명/실적 5,532명, 97.72% 달성 - K-POP 댄스챌린지 시범 실시

○ 기업복지활성화지원

연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3년	- 기업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다양화(조직문화 분석, 변화/힐링 프로그램 제안 등) - EAP 14,510건 제공
2024년	- 기업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다양화(조직문화 분석, 변화/힐링 프로그램 제안 등) - EAP 14,949건 제공
2025년	- 기업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다양화(조직문화 분석, 변화/힐링 프로그램 제안 등) - EAP 15,210건 제공
2026년	- 기업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다양화(조직문화 분석, 변화/힐링 프로그램 제안 등) - EAP 10,735건 제공(2026년 7월 현재)

(4-3) 향후(2027년 이후) 기대효과

○ **문화예술제**

- 근로자의 창작 및 여가·문화 생활 욕구 충족, 예술 활동 참여를 통해 근로자의 문화 예술 활동 다양화 및 건전하고 생산적인 노동문화 저변 확대에 기여

* 참가자 목표 5,807명(직전 3개년 평균치 대비 증 3%)

○ **기업복지활성화지원**

- 근로자의 업무 수행 또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 개인 고충 등 업무 저해 요인 해결을 지원해 근로자를 보호하고 생산성 향상 도모 등 중소기업 근로자 삶의 질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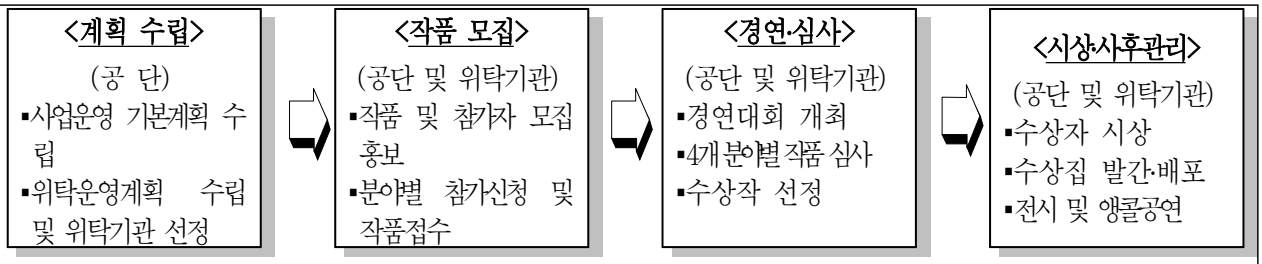
* 취약계층 참여율 확대 : 41.0%(직전 3개년 평균실적 대비 증 3%)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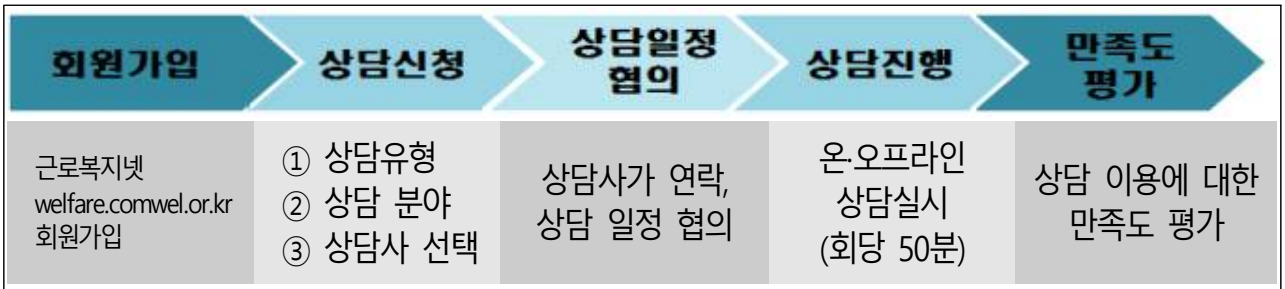
7) 사업 집행절차

○ 문화예술제



(계획수립) 공단이 사업운영 기본계획 수립 및 위탁운영계획 수립, 위탁기관 선정 → **(작품 모집)** 공단 및 위탁기간이 작품 및 참가자 모집 홍보, 분야별 참가신청 및 작품접수 → **(경연・심사)** 공단 및 위탁기간이 경연대회 개최, 4개 분야별 작품 심사, 수상작 선정

○ 기업복지활성화지원



(회원가입) 내담자가 근로복지넷을 통해 회원가입 → **(상담신청)** 내담자가 상담유형, 분야, 상담사를 선택 → **(상담일정 협의)** 상담사가 내담자에게 연락 및 일정 협의 → **(상담진행)** 상담사가 온·오프라인 경로로 내담자 상담실시 → (만족도 평가) 공단은 상담을 이용한 내담자에게 만족도 평가

8) 최근 3년간(2024년~2026년)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8-1) 정부 사업평가: 해당없음

(8-2) 국회 지적사항: 해당없음

(8-3) 감사원, 총리실, 기타(언론, 시민단체 등) 결과: 해당없음

4. 최근 4년간(2023년~2026년) 결산내역

1) 결산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연도	당초 계획액	수정 계획액 (A)	전년도 이월액	기금변경 증감액 등	계획 현액	집행액 (B)	집행률 (B/Ax100)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3년	1,564	1,564	-	-	1,564	1,564	100.0	-	-
2024년	1,893	1,893	-	1,191	3,812	3,750	98.4	-	62
2025년	1,558	1,558	-	-	1,558	1,558	100.0	-	-
2026년	1,607	1,607	-	-	1,607	845	52.6	해당없음	해당없음

2) 연도별 결산 주요사항

연도	유형	금액 (백만원)	사유
2024년	불용	62	- 계획 변경 사유: 직장여성아파트 토양오염 손해배상청구소송 화해권고 결정에 따른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에 따른 기금운용계획 변경 - 이월 사유 및 불용 사유: 완충녹지 조성공사비용 정산 차액

5. 기타 추가자료

참고 1 문화예술제 사업 개요

□ 문화예술제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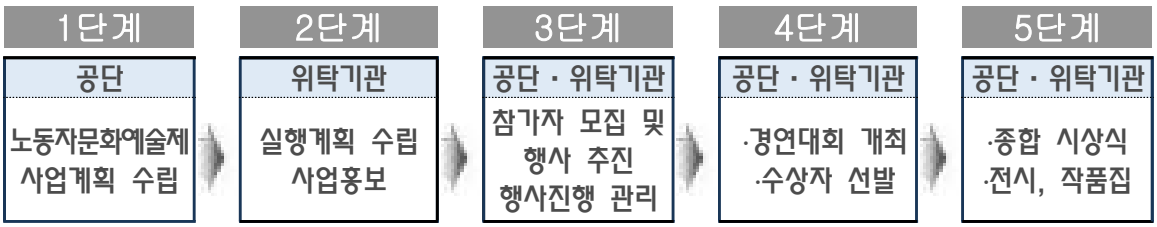
○ 사업목적

- 다양한 문화 예술 활동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노동자의 정서 함양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사업내용

- **참가자격**: 재직근로자(해외파견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근로자) 및 실직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자, 플랫폼근로자, 산재보험 가입 중소기업 사업주, 고용보험 가입 자영업자
- **참가 분야**
  - 가요: 독창, 중창
  - 미술: 회화, 서예(캘리그라피 포함), 공예, 사진(스마트폰 사진 등)
  - 문학: 시, 소설(단편소설, 단편동화), 극작, 수필
  - 댄스: 스트릿댄스 및 방송댄스

○ 추진절차



○ 기대효과

- 노동자문화예술제에 참여한 근로자들이 소속 사업장 내 문화·예술 동아리 활동 전개로 건전하고 생산적인 노동 문화 확대에 기여

□ 시상 계획(안)

○ 2027년 시상계획

(단위: 명/팀, 만원)

구 분	수상인원					시상금				
	계	가요	미술	문학	댄스	계	가요	미술	문학	댄스
합 계	74	11	26	26	11	9,100	1,350	2,900	3,100	1,750
대통령상	1	-	-	1	-	700	-	-	700	-
국무총리상	1	-	1	-	-	500	-	500	-	-
대 상	4	1	1	1	1	1,600	400	400	400	400
금 상	11	2	4	4	1	2,300	400	800	800	300
은 상	15	3	4	4	4	1,700	300	400	400	600
동 상	40	4	16	16	4	2,200	200	800	800	400
특별상	2	1	-	-	1	100	50	-	-	50

*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4년 주기로 분야별 순환 시상「가요→ 미술→ 문학→ 댄스」

□ 연도별 참가현황

(단위: 명, 팀)

구 분	계		미술	문학	가요		연극	
	참가자(팀)		참가자	참가자	참가자(팀)		참가자(팀)	
'17년	4,491	(1,006)	1,074	1,562	1,049	(950)	806	(56)
'18년	3,812	(1,053)	1,146	1,019	991	(847)	656	(53)
'19년	4,260	(897)	1,278	1,252	1,052	(841)	657	(56)
'20년	3,777	(659)	1,261	1,197	718	(606)	601	(53)
'21년	6,813	(1,362)	3,132	1,864	1,463	(1,331)	354	(31)
'22년	5,580	(1,840)	1,933	1,367	1,936	(1,780)	344	(60)
'23년	5,245	(1,448)	1,867	1,390	1,617	(1,403)	339 32(영상)	(31) (14)
'24년	5,774	(1,695)	1,942	1,617	1,845	(1,673)	370	(22)
'25년	5,476	(149)	2,226	2,902	159	(127)	189	(22)
'26년	5,532	(953)	1,650	2,384	1,134	(953)	364 (댄스)	(103)

참고 2 기업복지활성화지원 사업 개요

□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 **(목적)** 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 등 업무저해요인 해결을 지원하여 근로자 삶의 질 및 생산성 향상 도모

○ **(사업대상)** 상시근로자 수 300인 미만 사업주 및 소속 근로자

○ **(지원내용)** 15개 상담분야에 대하여 전문상담사를 통한 온·오프라인 상담서비스 무상 제공

상담분야	상담종류		제공방법
① 직무스트레스 ② 조직내소통 ③ 업무역량강화 ④ 불만고객응대 ⑤ 일·가정양립 ⑥ 직장 내 괴롭힘 ⑦ 성격진단 ⑧ 스트레스 관리 ⑨ 정서문제 ⑩ 건강관리 ⑪ 대인관계 ⑫ 자살 ⑬ 부부갈등 ⑭ 자녀양육 ⑮ 기타	온라인	게시판상담	근로복지넷 게시판 이용
		단문상담	근로복지넷 희망드림톡 이용
		전화상담	유무선전화 이용
		화상상담	화상상담 앱 이용
	오프라인	1:1 개인상담	공단 및 위탁수행기관 지사(센터), 해당 기업 등에서 대면상담
		집단교육(특강)	해당 기업 또는 협의된 장소에서 집단 교육 또는 특강
		특화프로그램	진단, 교육, (집단)상담, 체험 등 상담주제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협의된 장소에서 진행

○ 상담실적

(단위: 건)

구 분	계	온 라 인					오프라인			
		소계	게시판	채팅/단문	전화/화상	기업/집단	소계	근로자	가 족	기업/집단
합 계	175,641	29,360	7,847	2,572	18,885	56	146,282	128,790	571	16,921
'09~14년	26,438	7,208	4,306	444	2,458	0	19,230	15,074	571	3,585
'15년	9,497	1,568	57	373	1,138	0	7,929	6,966	-	963
'16년	11,707	1,533	55	150	1,328	0	10,174	7,424	-	2,750
'17년	12,073	1,443	124	136	1,183	0	10,630	8,766	-	1,864
'18년	11,060	929	103	125	701	0	10,131	7,498	-	2,633
'19년	13,976	1,040	271	140	629	0	12,936	10,375	-	2,561
'20년	11,261	2,268	473	363	1,432	0	8,993	8,723	-	270
'21년	11,382	2,329	408	237	1,653	31	9,053	8,759	-	294
'22년	12,639	2,491	255	176	2,042	18	10,148	9,734	-	414
'23년	14,510	2,095	271	175	1,642	7	12,415	11,715	-	700
'24년	14,949	2,305	375	79	1,851	0	12,644	12,287	-	357
'25년	15,210	2,069	316	92	1,661	0	13,141	12,816	-	325
26년7월	10,939	2,082	833	82	1,167	0	8,858	8,653	-	205

사 업 명
(2) 퇴직연금사업운영(3061-318)

1. 사업 총괄 정보

1) 사업 기본 정보

(1-1) 일반 정보

소관	실·국	과·팀	기금	계정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퇴직연금복지과	근로복지 진흥기금	중소복지계정

(1-2) 코드·명칭 정보

구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080	08E	3000	3061	318
명칭	사회복지	노동	근로조건보호및 복지증진	근로자복지지원	퇴직연금 사업운영

2)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N	Y	N	N	N	N

3)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Y	N	N	N	N	-	-

4) 기능별(내역사업별)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내역사업명	소관	사업시행주체
계약형 퇴직연금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근로복지공단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연구센터 운영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근로복지공단
경영자금 융자지원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근로복지공단

2. 지출계획 총괄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사업명	2025년 결산액	2026년 당초계획액 (A)	2026년 수정계획액	2027년 요구액	2027년 정부안액 (B)	증감액 (B-A)	증감률 (B-A) /A×100
퇴직연금사업운영	27,551	24,801	24,801	29,489	28,664	3,863	15.6

1)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계획액 (수정)	2025년 계획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계획액 (수정)	2026년 계획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27,551	27,551	27,551	-	-	24,801	24,801	11,556	28,664
·계약형 퇴직연금	1,829	1,829	1,829	-	-	1,844	1,844	998	1,854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25,405	25,405	25,405	-	-	22,570	22,570	10,424	20,208
·퇴직연금연구센터 운영	317	317	317	-	-	387	387	134	395
·경영자금 융자지원	-	-	-	-	-	-	-	-	6,207

2) 비목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계획액 (수정)	2025년 계획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계획액 (수정)	2026년 계획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27,551	27,551	27,551	-	-	24,801	24,801	11,556	28,664
·상용임금(110-03)	1,161	1,161	1,161	-	-	1,231	1,231	661	1,295
·일반수용비(210-01)	1,163	1,163	1,163	-	-	1,242	1,183	696	1,188
·공공요금및제세(210-02)	579	579	579	-	-	582	524	241	582
·특근매식비(210-05)	5	5	5	-	-	27	27	1	27
·임차료(210-07)	64	64	64	-	-	63	57	10	63
·유류비(210-08)	4	4	4	-	-	10	10	2	10
·시설장비유지비(210-09)	54	54	54	-	-	30	50	35	30
·복리후생비(210-12)	14	14	14	-	-	14	14	14	14
·일반용역비(210-14)	-	-	-	-	-	-	59	39	-
·기타운영비(210-16)	23	23	23	-	-	23	62	57	23
·국내여비(220-01)	49	49	49	-	-	47	47	35	47
·사업추진비(240-01)	10	10	10	-	-	11	11	7	11
·일반연구비(260-01)	204	204	204	-	-	205	211	60	205
·기타보전금(310-04)	23,901	23,901	23,901	-	-	21,036	21,036	9,589	18,674
·이차보전금(320-05)	-	-	-	-	-	-	-	-	6,207
·고용부담금(320-09)	226	226	226	-	-	240	240	68	248
·자산취득비(430-01)	41	41	41	-	-	41	41	39	41

3. 사업 설명

1) 사업목적·내용

(1-1) 계약형 퇴직연금

사업목적	중소기업(30명 이하) 사용자·근로자에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의 운영관리업무 서비스 제공
사업내용	30인 이하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가입 지원, 가입자·부담금 관리 등 퇴직연금 제도 운영

(1-2)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사업목적	중소기업(現 50인 미만, '27.1.1.~ 100인 미만) 사용자·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운영하고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
사업내용	중소기업 사업주와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기금을 조성·운용하고, 가입자 관리, 부담금 수납, 적립금 운용 및 퇴직급여 지급 등 기금제도 운영

(1-3) 퇴직연금연구센터 운영

사업목적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통해 장·단기 정책수립에 기여하고 퇴직연금사업에 대한 평가 수행으로 근로자의 사업자 선택권 보장 및 서비스 질 향상
사업내용	퇴직연금 관련 정책·제도 및 시장 동향 조사·연구, 통계·자료분석, 정책과제 수행 및 퇴직연금사업자 평가 업무 수행

(1-4) 경영자금 융자지원

사업목적	퇴직연금을 새로 도입한 50인 미만 중소기업이 초기 운영 과정에서 겪는 자금 부담을 줄여 퇴직연금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
사업내용	퇴직연금을 신규 도입한 50인 미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협약보증 경영자금 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 지원

2) 사업개요

(2-1)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사업근거	○ 법령상 근거 조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3조의2, 제23조의 14, 제26조 및 제34조, 「근로복지기본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추진경위	○ **(계약형 퇴직연금사업)** '10.12. 4인 이하(→30인 이하 확대: '12.7.26) 대상으로 시행 - 중소영세 사업장에 대한 민간사업자의 기피현상과 생계형 영세사업주의 퇴직연금에 대한 인식부족*에 따른 가입 저조로 노동자 퇴직급여 체불가능성 내재 및 안정적인 노후 생활 저해 * 중소기업 퇴직연금 도입 기피 이유 중 관심.인식부족이 30.5% 차지('10.03 서울경제 게재) - 따라서, 중소·영세사업장에 대해 퇴직연금 공적서비스 제공을 통한 가입 촉진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인식에 따라 고용·산재보험 사업장 인프라가 구축된 근로복지공단에서 수행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30인 이하 사업장 대상으로 시행('22.4.14.) - 정부합동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14.8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22.4월 시행) - 대·중소기업간 퇴직연금 도입률 격차 심화에 따른 양극화 해소 및 수익률 제고를 통한 안정적인 노후자산 확보를 위해 기금제도 도입 - 가입 대상 확대('26.3.17,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 * 30인 이하 → ('26.7.1) 50인 미만 → ('27.1.1.) 100인 미만 ** 자영업자, 특고, 플랫폼 등 근로자성 유무와 관계없이 가입자부담금계정 가입 대상 확대('26.7.1) ○ **(퇴직연금연구센터운영)** - ('15~'22) 고용노동부 퇴직연금연구센터 운영사업 용역 입찰을 통한 용역사업 수행 - ('23) 지속적인 연구사업 수행을 위해 근로복지진흥기금 內 세부사업으로 이관 - ('24) 퇴직연금사업운영 內 내역사업으로 이관 ○ **(경영자금 융자지원, 신규)** - ('27) 퇴직연금제도를 신규 도입한 50인 미만 중소기업 사용자의 재정부담을 경감하고자, 경영자금 융자비용을 지원(이차보전)하는 (내역)사업 신설

(2-2) 사업규모

○ 사업기간 : 계속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계획액 기준, 기금운용계획변경 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사업비	15,855	22,324	27,551	24,801	28,664

(2-3)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근로복지공단

○ 사업 수혜자 : 중소기업 사업장 및 소속 근로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3) 기능별(내역사업별) 산출 내역

(3-1) 내역사업별 세부 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계획액(수정)(A)	2027년 정부안액(B)	증감 (B-A)
합 계	24,801	28,664	3,863
계약형 퇴직연금	1,844	1,854	10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22,570	20,208	△2,362
퇴직연금연구센터 운영	387	395	8
경영자금 융자지원	-	6,207	6,207

○ 계약형 퇴직연금 **(2026년) 1,844 → (2027년) 1,854백만원, +0.5%**

- (설명) 계약형 퇴직연금사업의 기금제도 전환을 감안 일반수용비 감액, 그 외 공무직 인건비 처우개선비 등 요구
- (산출) 상용임금 1,148백만원(57백만원 증액), 고용부담금 216백만원(7백만원 증액), 일반수용비 (148백만원, 54백만원 감액), 그 외 전년 동일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2026년) 22,570 → (2027년) 20,208백만원, △10.5%**

- (설명) 제도 안정화에 따른 재정지원 규모 조정
- (산출) 기타보전금 (18,674백만원, 2,362백만원 감액), 그 외 전년 동일

○ 퇴직연금연구센터 운영 **(2026년) 387 → (2027년) 395백만원, +2.1%**

- (설명) 공무직 인건비 처우개선비 등 요구
- (산출) 상용임금 147백만원(7백만원 증액), 고용부담금 32백만원(1백만원 증액), 그 외 전년 동일

○ 경영자금 융자지원 **(2026년) 0 → (2027년) 6,207백만원, 순증**

- (설명) 협약보증 융자총액의 2% 이차보전
- (산출) 6,207백만원(1,034개소 × 3억원 × 2%p)

4) 사업효과

(4-1) 최근 5년(2023년~2027년)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해당없음

(4-2) 성과지표 이외의 최근 4년(2023년~2026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연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3년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활성화 추진 · 목표 달성을 위해 기업의 제도 도입 부담을 낮추고, 현장홍보 강화 노력 * 운영수수료 5년간 면제('23.4월), 근로자지원 등 재정지원 확대, 전국 순회 설명회, MOU체결(20개소) 등 찾아가는 홍보 전개 - (계약형퇴직연금) 사업장 75,668개소, 가입자 398,248명 적립금 43,456억원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사업장 13,691개소, 가입자 64,681명 적립금 4,734억원
2024년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활성화 추진 · 공단 내·외부 자원과 협업을 통한 효율적 제도 확산 추진 · 종합홍보(카카오뱅크, 네이버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홍보, 유튜버 등을 통한 저비용 고효율 홍보 등) · 제도개선(가입자지원금 신설, 지원기간 연장 등 재정지원 확대) - (계약형퇴직연금) 사업장 69,858개소, 가입자 367,418명 적립금 45,371억원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사업장 23,233개소, 가입자 108,515명 적립금 8,601억원
2025년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활성화 추진 · 가입 확산을 위한 홍보·마케팅 실시로 사업 활성화 노력 * 타깃 업종 집중공략, 거리캠페인과 현장 설명회 개최 등 효율적 가입확산 추진 · 제도개선(제도 가입대상 확대 등 추진) - (계약형퇴직연금) 사업장 66,113개소, 가입자 331,465명, 적립금 45,943억원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사업장 35,634개소, 가입자 163,899명, 적립금 14,907억원

2026년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활성화 추진 · 가입 확산을 위한 홍보·마케팅 실시로 사업 활성화 노력 · 가입 대상 확대('26.3.17,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 * 30인 이하 기업 → ('26.7.1) 50인 미만 → ('27.1.1.) 100인 미만 ** 자영업자, 특고, 플랫폼 등 근로자성 유무와 관계없이 가입자 부담금계정 가입 허용('26.7.1) - (계약형퇴직연금) 사업장 63,119개소, 가입자 302,784명 적립금 43,519억원('26년 7월)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사업장 43,554개소, 가입자 197,589명 적립금 18,418억원('26년 7월)

(4-3) 향후(2027년 이후) 기대효과

○ 안정적인 운영관리 서비스 제공을 통한 중소·영세기업 퇴직연금의 운영 안정성 제고 및 퇴직급여 수급권 보호 강화

○ 가입대상 확대와 기금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퇴직연금 가입 사각지대를 완화하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

○ 정책연구 및 사업자 평가의 내실화를 통한 정책 대응력 강화와 건전한 퇴직연금 시장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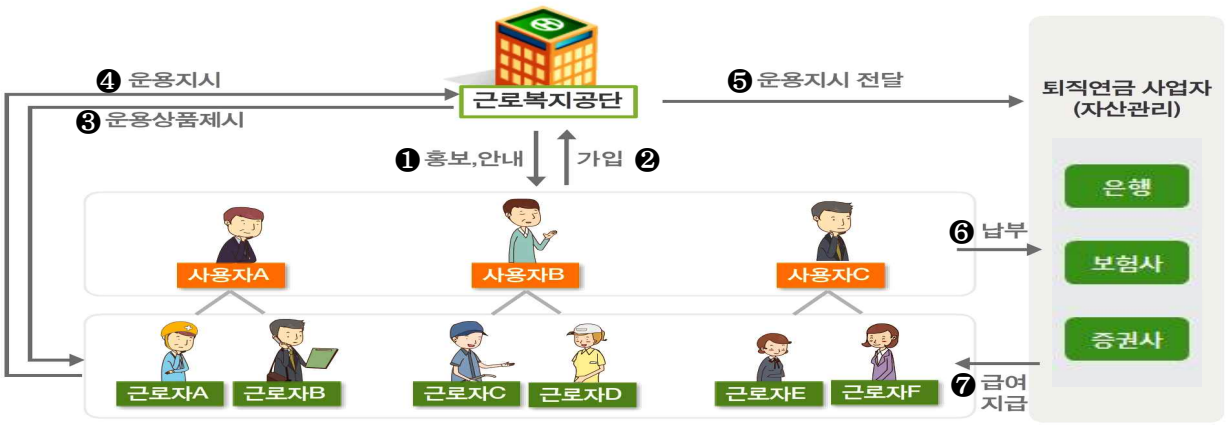
○ 퇴직연금을 새로 도입한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여 퇴직연금 도입·확산 촉진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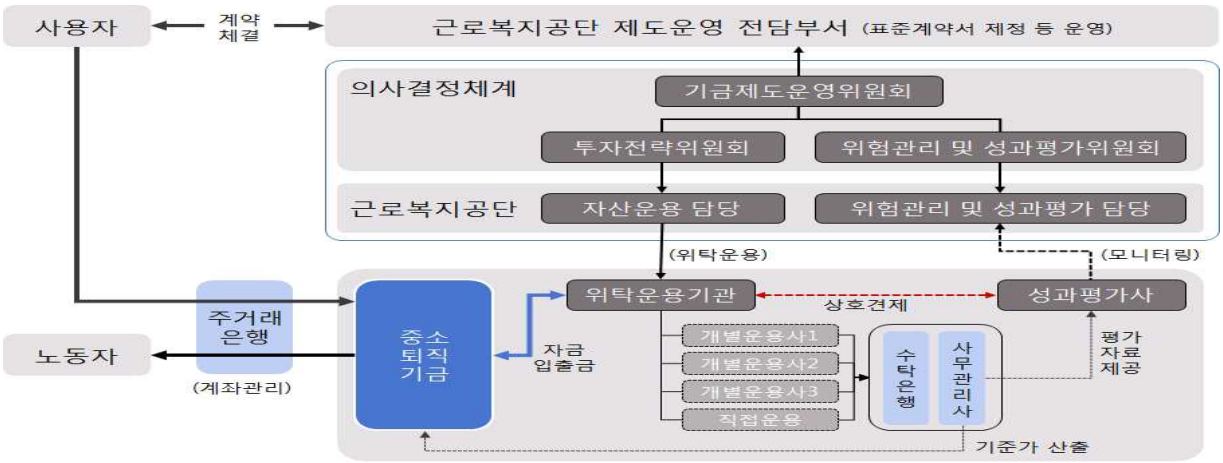
7) 사업 집행절차

▪ 계약형퇴직연금제도



○ DC형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근로자의 운용지시에 따라 운용·관리한 후 퇴직 등 지급 사유가 발생 시 퇴직급여 지급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 사업장과 근로자가 적립하는 부담금(기금)을 자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 그 결과를 가입자별 적립금에 반영, 퇴직 등 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퇴직급여 지급하고, 재정지원 신청 시 지급요건을 검토하여 지급

■ 퇴직연금연구센터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운영계획 수립	근로복지공단	연간 운영계획 수립 보고
⇩		
② 운영계획 협의	고용노동부	운영계획 검토 - 정책연구과제 / 포럼 주제 등
⇩		
③ 추진 및 보고	근로복지공단	포럼·세미나·정책과제 연구 등 사업 추진 및 연구센터 운영결과 보고 (최종보고서 인쇄)

○ 연간 사업계획과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한 후 퇴직연금 관련 정책연구와 사업자 평가 등을 수행 후 결과 보고

■ 퇴직연금 도입 중소기업 협약보증 융자지원

○ 퇴직연금을 새로 도입한 중소기업이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의 심사를 거쳐 협약은행(경남은행 등 9개소)에서 경영자금을 융자받은 경우 지원요건을 확인하여 융자이자 일부 지원

① (신보)보증신청 및 상담→자료제출→신용조사·보증심사→보증서 발급

② (은행)대출 실행

③ (노동부)이차 보전 지원

8) 최근 3년간(2024년~2026년)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8-1) 정부 사업평가: 해당없음

(8-2) 국회 지적사항

구분	연도	주요내용
예정처 결산 검토보고서	2023년	○ 지적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사업운영 사업의 목표 미달성 및 집행 부진을 해소하기 위하여, 홍보 다각화뿐만 아니라 홍보 수단별로 효과성을 측정하고, 개선 사항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인식도를 재고하는 등 사업 실적을 제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 필요 ○ 조치 : 효과적인 홍보 및 제도 인지도 제고, 공단 DC 가입사업장의 기금제도 전환과 소속 근로자의 가입 독려 등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활성화 방안 수립
예결위 예산 검토보고서	2023년	○ 지적 : 2023년도 기금 계획액이 원활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신규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가입 추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적극 실시하며 기존 계약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사업장을 신속하게 중소퇴직기금으로 이관하는 등 중소퇴직기금 가입 확대를 위한 면밀한 대책 수립 추진 필요 ○ 조치 : 2023년 기금 제도 홍보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TV, 라디오 등 홍보로 기금제도 인지도 제고, 직능단체 등과 협업하여 제도 확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기존 계약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사업장을 중소퇴직기금으로 이관하는 등 기금제도 가입 확대 노력 지속
환노위 결산 검토보고서	2023년	○ 지적 : 퇴직연금 운영 지원 대상 사업장을 중심으로 중퇴기금제도 편입을 유도하는 방안 및 중소사업장 근로자가 중퇴기금제도에 가입할 의향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가입 독려 방안 마련 필요 ○ 조치 : 제도 활성화를 위해 수수료 면제, 재정지원 확대(24년~) 등 제도개선 시행 및 공단 가입 계약형 사업장의 제도전환 활성화 추진
예결위 결산 검토보고서	2024년	○ 지적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적립금 중도인출 규모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안정적으로 적립금이 운영되어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조치 : 적립금 중도인출 규모를 모니터링하고,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가입대상 확대하였음(30인 이하 → 100인 미만 기업, 노무제공자 등까지 가입 대상 확대, '26.3.17.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

(8-3) 감사원, 총리실, 기타(언론, 시민단체 등) 결과: 해당없음

4. 최근 4년간(2023년~2026년) 결산내역

1) 결산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연도	당초 계획액	수정 계획액 (A)	전년도 이월액	기금변경 증감액 등	계획 현액	집행액 (B)	집행률 (B/Ax100)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3년	15,855	15,855	-	-	15,855	8,897	56.1	-	6,958
2024년	22,324	22,324	-	-	22,324	17,857	80.0	-	4,467
2025년	24,001	27,551	-	3,550	27,551	27,551	100	-	
2026년	24,801	24,801	-	-	24,801	11,556	46.6		

2) 연도별 결산 주요사항

연도	유형	금액 (백만원)	사유
2023년	불용	6,958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재정지원금 집행부진에 따라 재정지원금 6,937백만원 미집행, 기타 집행잔액 21백만원
2024년	불용	4,467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재정지원금 집행부진에 따라 재정지원금 4,460백만원 및 예정된 연구용역 계획 변경에 따른 연구용역비 7백만원 미집행
2025년			해당 없음
2026년			해당 없음

5. 기타 추가자료 :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3) 근로복지기금지원(3061-322)

1. 사업 총괄 정보

1) 사업 기본 정보

(1-1) 일반 정보

소관	실·국	과·팀	기금	계정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노무제공자지원과	근로복지 진흥기금	중소복지계정

(1-2) 코드·명칭 정보

구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080	08E	3000	3061	322
명칭	사회복지	노동	근로조건보호및 복지증진	근로자복지지원	근로복지기금지원

2)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N	Y	N	N	N	N

3)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Y	N	N	N	N	-	-

4) 기능별(내역사업별)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내역사업명	소관	사업시행주체
근로복지기금지원	고용노동부,노무제공자지원과	근로복지공단

2. 지출계획 총괄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사업명	2025년 결산액	2026년 당초계획액 (A)	2026년 수정계획액	2027년 요구액	2027년 정부안액 (B)	증감액 (B-A)	증감률 (B-A) /A×100
근로복지기금지원	23,464	19,204	19,204	15,484	15,484	△3,720	△19.4

1)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계획액 (수정)	2025년 계획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계획액 (수정)	2026년 계획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29,896	29,896	23,464	-	6,432	19,204	19,204	15,150	15,484
·근로복지기금지원	29,896	29,896	23,464	-	6,432	19,204	19,204	15,150	15,484

2) 비목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계획액 (수정)	2025년 계획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계획액 (수정)	2026년 계획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29,896	29,896	23,464	-	6,432	19,204	19,204	15,150	15,484
·일반수용비(210-01)	60	60	60	-	-	60	60	35	60
·일반용역비(210-14)	82	82	78	-	4	82	82	-	82
·기타보전금(310-04)	29,754	29,754	23,325	-	6,429	19,062	19,062	15,114	15,342

3. 사업 설명

1) 사업목적·내용

(1-1) 근로복지기금지원

사업목적	대기업의 중소 협력업체 근로자 복지지원을 촉진하여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지원
사업내용	대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협력업체 지원과 중소기업 포함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저소득 근로자 복지사업 수행 등에 대한 재정 지원

2) 사업개요

(2-1)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사업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제86조의2, 제86조의5, 제91조 - 제62조(기금법인의 사업) ① 기금법인은 그 수익금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6.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 - 제86조의2(공동근로복지기금의 조성) ① 둘 이상의 사업주는 제6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이익금의 일부를 출연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이하 "공동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할 수 있다. ② 공동기금 사업주 또는 사업주 이외의 자는 제1항에 따른 출연 외에 유가증권, 현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 제86조의5(공동기금제도의 촉진) 공동기금법인이 제6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진흥기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1조(근로복지진흥기금의 용도) 근로복지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7.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및 공동기금 제도 관련 지원
추진경위	○ 중소기업 노동자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추진 - ’15. 3.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시행 - ‘15. 7. 근로복지기본법 개정(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16.1.21.시행) - ‘15. 9.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에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을 통한 복지사업 활성화 반영 - ’16. 3.「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운영규정」(고시) 제정 - ’19. 9.「공동근로복지기금 활성화 대책」 발표 - ’20. 1.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및 고시 개정(공동기금 재정지원 확대) - ’20. 12. 근로복지기본법 개정(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촉진, ‘21.6.9. 시행) - ’22. 2.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상생형 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중견기업 지원 관련) - ’22. 5. 공동기금 지원 우선순위 개선 및 지원대상 선정 합리화 - ’23. 5.「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운영규정」(고시) 개정 (상생협약 체결 공동기금에 대한 지원 확대로 노동시장 격차 개선) - ’25. 2. 소규모기업으로 구성된 공동기금 지원 강화 (공단규정 개정) - ’26. 3.「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운영규정」(고시) 개정 (대기업(원청) 출연 확대에 따른 특례 조항 신설)

(2-2) 사업규모

○ 사업기간 : 계속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계획액 기준, 기금운용계획변경 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사업비	19,209	23,278	29,896	19,204	15,484

(2-3)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근로복지공단

○ 사업 수혜자 : 중소기업 노동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3) 기능별(내역사업별) 산출 내역

(3-1) 내역사업별 세부 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계획액(수정)(A)	2027년 정부안액(B)	증감 (B-A)
합 계	19,204	15,484	△3,720
근로복지기금지원	19,204	15,484	△3,720

○ **근로복지기금지원 ('26년) 19,204백만원 → ('27년) 15,484백만원**

- 대기업(원청) 등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협력업체 지원 및 둘 이상의 기업이 조성한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원

4) 사업효과

(4-1) 최근 5년(2023년~2027년)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해당없음

(4-2) 성과지표 이외의 최근 4년(2023년~2026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연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3년	- 중소기업 근로자 204,687명 지원 - 근로복지기금 지원 심사위원회 2회 개최
2024년	- 중소기업 근로자 230,325명 지원 - 근로복지기금 지원 심사위원회 2회 개최
2025년	- 중소기업 노동자 278,249명 지원 - 근로복지기금지원 심사위원회 2회 개최

(4-3) 향후(2027년 이후) 기대효과

○ **(사내근로복지기금지원)** 대기업(도급업체)의 중소 협력(파견)업체 노동자에 대한 복지지원을 유도하고 중소기업 저소득 노동자의 복지 증진

○ **(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 중소기업의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 활성화 유도, 공동기금을 통한 중소기업 저소득 노동자 복지 증진, 대·중소기업간 복지격차 완화 기대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1단계) 기금법인: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 (2단계) 공단: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심사·결정
- (3단계) 기금법인: 출연 약정 이행 및 지원금 지급 신청서 제출
- (4단계) 공단: 출연 확인 후 지원금 지급
- (5단계) 공단: 집행 점검

8) 최근 3년간(2024년~2026년)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8-1) 정부 사업평가: 해당없음

(8-2) 국회 지적사항

구분	연도	주요내용
환노위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4년	○ 지적 : 공동기금에 대한 지도·점검은 지원금 지급 법인 중 일부에 대하여만 실시하고 있는바, 공동기금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수행과 재정 집행의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지원금 집행 실태 점검 비율을 확대할 필요 있음 ○ 조치 : 공동기금 지원금 집행점검 확대 추진

(8-3) 감사원, 총리실, 기타(언론, 시민단체 등) 결과: 해당없음

4. 최근 4년간(2023년~2026년) 결산내역

1) 결산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연도	당초 계획액	수정 계획액 (A)	전년도 이월액	기금변경 증감액 등	계획 현액	집행액 (B)	집행률 (B/Ax100)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3년	15,459	19,209	-	3,750	19,209	19,206	100.0	-	3
2024년	23,278	23,278	-	-	23,278	21,814	93.7	-	1,464
2025년	29,896	29,896	-	-	29,896	23,464	78.5	-	6,432
2026년	19,204	19,204	-	-	19,204	15,150	78.9	해당없음	해당없음

2) 연도별 결산 주요사항

연도	유형	금액 (백만원)	사유
2025년	불용	6,432	'25년 기금 지원 신청액은 사업비 예산을 초과하였으나 「근로복지기금 지원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금액이 차등 결정되면서 불용액 발생

5. 기타 추가자료

사 업 명
(4) 근복기금(중소계정) 정보화경비(정보화)(3061-325)

1. 사업 총괄 정보

1) 사업 기본 정보

(1-1) 일반 정보

소관	실·국	과·팀	기금	계정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퇴직연금복지과	근로복지 진흥기금	중소복지계정

(1-2) 코드·명칭 정보

구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080	08E	3000	3061	325
명칭	사회복지	노동	근로조건보호및 복지증진	근로자복지지원	근복기금(중소계정) 정보화경비(정보화)

2)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N	Y	N	N	N	N

3)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Y	N	N	N	N	-	-

4) 기능별(내역사업별)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내역사업명	소관	사업시행주체
근복기금(중소계정) 정보화경비(정보화)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근로복지공단

2. 지출계획 총괄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사업명	2025년 결산액	2026년 당초계획액 (A)	2026년 수정계획액	2027년 요구액	2027년 정부안액 (B)	증감액 (B-A)	증감률 (B-A) /A×100
근복기금(중소계정) 정보화경비(정보화)	334	334	334	334	334	-	-

1)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계획액 (수정)	2025년 계획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계획액 (수정)	2026년 계획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334	334	334	-	-	334	334	162	334
·근복기금(중소계정) 정보화경비(정보화)	334	334	334	-	-	334	334	162	334

2) 비목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계획액 (수정)	2025년 계획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계획액 (수정)	2026년 계획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334	334	334	-	-	334	334	162	334
·일반수용비(210-01)	15	15	15	-	-	15	15	-	15
·공공요금및제세(210-02)	5	5	5	-	-	5	5	1	5
·특근매식비(210-05)	0	0	0	-	-	0	0	-	0
·임차료(210-07)	81	81	81	-	-	81	81	41	81
·시설장비유지비(210-09)	93	93	93	-	-	93	93	51	93
·관리용역비(210-15)	138	138	138	-	-	138	138	69	138
·기타운영비(210-16)	1	1	1	-	-	1	1	-	1
·국내여비(220-01)	1	1	1	-	-	1	1	-	1

3. 사업 설명

1) 사업목적·내용

(1-1) 근복기금(중소계정) 정보화경비(정보화)

사업목적	중소복지계정 사업의 원활한 수행
사업내용	보증·담보 여력이 낮은 취약계층의 정상 금융생활 복귀 지원 등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2) 사업개요

(2-1)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사업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14조 및 제91조 - 제14조(근로복지종합정보시스템 운영)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복지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근로복지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근로복지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근로자지원프로그램 및 선택적 복지제도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1조(근로복지진흥기금의 용도) 근로복지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4. 제14조에 따른 근로복지종합정보시스템 운영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2008년 ○ 추진 배경 - 기존 : 고용보험회계와 산재보험회계에서 50%씩 부담 - '08년부터 : 고용보험, 산재보험, 임금채권, 근로복지진흥기금에서 분담 (근로복지진흥기금 2.1% 분담. 단, 자산취득비는 4.2% 분담)

(2-2) 사업규모

○ 사업기간 : 계속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계획액 기준, 기금운용계획변경 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사업비	334	334	334	334	334

(2-3)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근로복지공단

○ 사업 수혜자 : 근로자, 근로복지공단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3) 기능별(내역사업별) 산출 내역

(3-1) 내역사업별 세부 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계획액(수정)(A)	2027년 정부안액(B)	증감 (B-A)
합 계	334	334	-
근복기금(중소계정) 정보화경비(정보화)	334	334	-

○ 근복기금(중소계정) 정보화경비(정보화) (2026년) 334 → (2027년) 334백만원, 전년 동

- (설명) 전산장비 유지관리 및 정보시스템 운영지원을 위해 전년 수준의 예산 요구
- (산출) 전산장비 유지관리 312백만 원, 정보시스템 운영지원 22백만 원

4) 사업효과

(4-1) 최근 5년(2023년~2027년)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해당없음

(4-2) 성과지표 이외의 최근 4년(2023년~2026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해당없음

(4-3) 향후(2027년 이후) 기대효과

○ 중소복지계정 사업의 원활한 수행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해당없음

8) 최근 3년간(2024년~2026년)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8-1) 정부 사업평가: 해당없음

(8-2) 국회 지적사항: 해당없음

(8-3) 감사원, 총리실, 기타(언론, 시민단체 등) 결과: 해당없음

4. 최근 4년간(2023년~2026년) 결산내역

1) 결산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연도	당초 계획액	수정 계획액 (A)	전년도 이월액	기금변경 증감액 등	계획 현액	집행액 (B)	집행률 (B/Ax100)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3년	334	334	-	-	334	334	100.0	-	-
2024년	334	334	-	-	334	334	100.0	-	-
2025년	334	334	-	-	334	334	100.0	-	-
2026년	334	334	-	-	334	162	48.5	해당없음	해당없음

2) 연도별 결산 주요사항 : 해당 없음

5. 기타 추가자료: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5) 근로복지정보시스템(정보화)(3061-500)

1. 사업 총괄 정보

1) 사업 기본 정보

(1-1) 일반 정보

소관	실·국	과·팀	기금	계정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퇴직연금복지과	근로복지 진흥기금	중소복지계정

(1-2) 코드·명칭 정보

구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080	08E	3000	3061	500
명칭	사회복지	노동	근로조건보호및 복지증진	근로자복지지원	근로복지정보시 스템(정보화)

2)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N	Y	N	N	N	N

3)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Y	N	N	N	N	-	-

4) 기능별(내역사업별)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내역사업명	소관	사업시행주체
전산장비 유지관리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근로복지공단
정보시스템 운영지원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근로복지공단
지능형생활안정지원시스템 구축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재해복구시스템 구축(3년차)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근로복지공단

2. 지출계획 총괄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사업명	2025년 결산액	2026년 당초계획액 (A)	2026년 수정계획액	2027년 요구액	2027년 정부안액 (B)	증감액 (B-A)	증감률 (B-A) /A×100
근로복지정보시스템 (정보화)	5,358	9,992	10,478	17,773	17,773	7,781	77.9

1)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계획액 (수정)	2025년 계획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계획액 (수정)	2026년 계획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5,358	5,358	5,358	-	-	9,992	10,478	2,507	17,773
·전산장비 유지관리	3,656	3,656	3,656	-	-	3,656	4,142	1,828	3,671
·정보시스템 운영지원	1,702	1,702	1,702	-	-	1,653	1,653	678	1,653
·지능형생활안정지원 시스템 구축	-	-	-	-	-	4,683	4,683	1	1,870
·근로복지공단재해복구 시스템 구축(3년차)	-	-	-	-	-	-	-	-	10,579

2) 비목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계획액 (수정)	2025년 계획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계획액 (수정)	2026년 계획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5,358	5,358	5,358	-	-	9,992	10,478	2,507	17,773
·일반수용비(210-01)	229	229	229	-	-	180	180	30	180
·공공요금및제세(210-02)	214	214	214	-	-	214	214	25	214
·임차료(210-07)	1,252	1,252	1,252	-	-	1,252	1,252	621	1,252
·시설장비유지비(210-09)	1,369	1,369	1,369	-	-	1,369	1,369	685	1,369
·관리용역비(210-15)	2,287	2,287	2,287	-	-	2,287	2,773	1,144	2,302
·국내여비(220-01)	5	5	5	-	-	5	5	1	5
·사업추진비(240-01)	2	2	2	-	-	2	2	1	2
·일반연구비(260-01)	-	-	-	-	-	4,463	4,463	1	1,790
·자산취득비(430-01)	-	-	-	-	-	220	220	-	10,659

3. 사업 설명

1) 사업목적·내용

(1-1) 전산장비 유지관리

사업목적	시설장비 및 서버 유지관리, 상용 SW 기술지원 등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사업내용	근로복지종합시스템 및 퇴직연금정보시스템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정보인프라 유지·관리

(1-2) 정보시스템 운영지원

사업목적	근로복지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근로복지정보시스템 및 퇴직연금시스템 구축·운영
사업내용	중소기업 및 저소득(취약계층) 근로자 선택적 복지지원 프로그램 및 퇴직연금제도의 운영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1-3) 지능형생활안정지원시스템 구축

사업목적	신뢰성 있는 업무 추진 및 부처 간 정보공유로 대국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근로복지 정책 수립 기여
사업내용	이원화된 근로복지시스템을 통합하여 대국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근로복지통합서비스 고도화 구축

(1-4) 근로복지공단 재해복구시스템 구축(3년차)

사업목적	시스템 중단 시 퇴직연금시스템 및 근로복지시스템 기능 연속성 확보
사업내용	행정안전부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2등급 퇴직연금시스템 및 근로복지시스템에 대한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2) 사업개요

(2-1)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사업근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26조(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 -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근로복지공단의 퇴직연금사업 대상은 상시 30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한한다) ○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요건 등) - ① 법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재무건전성 및 인적・물적 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3.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운용관리업무 또는 자산

	관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산설비와 사무실을 갖출 것. 이 경우 그 전산설비는 정전·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완설비를 갖추고, 제도 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산 시스템을 미리 구축하여야 한다. ○ 금융위원회 고시 - 제20조(정보처리시스템 구축 및 전자금융거래 관련 사업 추진)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정보처리시스템 및 전자금융거래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내부직무전결기준에 따라 부서장 전결 금액 이상의 사업 추진 시에는 사전에 충분한 타당성 검토를 실시할 것 2. 정보처리시스템의 신규 사업 및 통합·전환·재개발 등과 같은 주요 추진사업에 대하여 비용 대비 효과분석을 실시할 것 3. 타당성 검토와 비용 대비 효과분석 결과는 전산운영위원회 등 독립적인 조직의 승인을 받을 것 4. 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분석·설계 단계부터 보안대책을 강구할 것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 '08년 ~ 계속 - 근로복지정보시스템 구축·운영 · 근로자복지증진 기본계획 수립 (1차: '02~06년, 2차: '07~'11년) · '09년 근로복지포털(희망드림 근로복지넷) 구축 · '10년 자산운용, 지원 전산시스템 구축 · '11년 모바일 웹 서비스 개시 · '14년 중소기업청과 시스템 연계 · '16년 근로복지넷 홈페이지 디자인 리뉴얼 · '16년 홈페이지 웹 접근성 인증마크 획득 · '18년 근로복지정보시스템 재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 '21년 근로복지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및 인프라 고도화 · '22년 근로복지넷과 근로복지서비스 통합 추진 · '23년 근로복지통합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업무 재설계 및 정보화 전략계획(BPR/ISP) 수립 - 퇴직연금정보시스템 구축·운영 · '10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 공포(9월) · '10년 4인 이하 사업장 퇴직연금사업 개시(12월) · '12년 30인 이하 사업장까지 사업대상 확대 · '15년 자체 정보시스템 (1단계) 구축 완료 및 시스템 적용 · '16년 자체 정보시스템 (2단계) 구축(통계) · '17년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대상자 확대 적용 · '18년 퇴직연금 현장업무지원용 모바일 서비스 개시

	· ’20년 퇴직연금정보시스템(계약형) 노후장비 교체 및 인프라 고도화 · ’21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 시행 ’22.4월)에 따른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 ’22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통합플랫폼 구축 · ’23년 퇴직연금 사전지정 운영제도 도입을 위한 응용 프로그램 개발 · ’24년 금융감독원 혁신방안 및 감독규정 개정사항 응용 프로그램 개발

(2-2) 사업규모

○ 사업기간 : 계속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계획액 기준, 기금운용계획변경 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사업비	5,552	5,854	5,358	10,478	17,773

(2-3)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근로복지공단

○ 사업 수혜자 : 영세 중소기업 및 근로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3) 기능별(내역사업별) 산출 내역

(3-1) 내역사업별 세부 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계획액(수정)(A)	2027년 정부안액(B)	증감 (B-A)
합 계	10,478	17,773	7,781
전산장비 유지관리	4,142	3,671	△471
정보시스템 운영지원	1,653	1,653	-
지능형생활안정지원시스템 구축	4,683	1,870	△2,813
근로복지공단 재해복구시스템 구축(3년차)	-	10,579	순증

○ 전산장비 유지관리 **(2026년) 4,142 → (2027년) 3,671백만원, △ 11.4%**

- (설명)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에 필요한 시설장비 및 서버 유지관리, 상용 SW 기술지원과 위탁운영 등, ’26년 대비 11.4% 감액

- (산출)
  ① 시스템 유지관리 = 상용SW 유지관리 729백만원 + HW 유지관리 640백만원 + 개발 SW 유지관리 1,0354백만원 = 2,404백만원
  ② 위탁운영 = 근로복지넷 위탁운영 252백만원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통합 플랫폼 구축 위탁운영 1,015백만원 = 1,267백만원

○ 정보시스템 운영지원 **(2026년) 1,653 → (2027년) 1,653백만원, 전년동**

- (설명) 회선사용료 및 공공요금, 노후장비 교체 및 증설 임차료, 전년동

- (산출)
  ① 회선사용료 = 통신회선 214백만원
  ② 기타운영지원 = 전산 소모품, 각종 수수료 등 157백만원 + 일반수용비 23백만원 + 여비 5백만원 + 업무추진비 2백만원 = 187백만원
  ③ 노후 장비 교체 및 증설 = ’25년 노후장비 교체 임차료 544백만원 + ’26년 노후 사무자동화기기 교체 임차료 708백만원 = 1,252백만원

○ 지능형생활안정지원시스템 구축 **(2026년) 4,683 → (2027년) 1,870백만원, △ 60.1%**

- (설명) 이원화된 근로복지정보시스템(근로복지서비스, 근로복지넷)을 통합하고, 복지 지원 서비스의 정보 연계를 통해 대국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근로복지 통합서비스 고도화 구축 2년 차 비용, ’26년 대비 60.1% 감액

- (산출)
  ① 일반연구비 = 1,790백만원
  ② 자산취득비 = 80백만원

○ 근로복지공단 재해복구센터 구축(3년차) **000 → (2027년) 10,579백만원, 순증**

- (설명) 행정안전부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2등급 퇴직연금시스템 및 근로복지시스템에 대한 재해복구시스템 구축비

- (산출) (요구) 12,776백만원, (확보) 10,579백만원
  * 인프라장비(서버, 스토리지 등)의 주요 핵심 부품 가격 폭등(실시간 변동)에 따라, 요구당시 금액으로 산출
  ① 자산취득비 = 서버 3,347백만원 + 저장장치 2,014백만원 + 소프트웨어 6,249백만원 + 네트워크 275백만원 + 보안 891백만원 = 12,776백만원

4) 사업효과

(4-1) 최근 5년(2023년~2027년)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해당없음

(4-2) 성과지표 이외의 최근 4년(2023년~2026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연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3년	- 근로복지통합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BPR/ISP 수립 -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 도입을 위한 응용프로그램 개발
2024년	- 근로복지통합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BPR/ISP 수립 -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 도입을 위한 응용프로그램 개발
2025년	- 퇴직연금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를 통한 안정적 정보서비스 제공
2026년	- 지능형생활안정지원시스템 구축(1년차/2년)

(4-3) 향후(2027년 이후) 기대효과

○ 중소기업 근로자의 안정적 노후보장을 위한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지능형생활안정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모바일시스템 개선을 통한 쉽고 편리한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현
・대국민 근로복지종합포털로서의 기능 충족을 위한 다양한 컨텐츠 제공
○ 재난 발생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운영
・퇴직연금시스템 및 근로복지시스템에 대한 365일·24시간 무중단 정보서비스 제공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타당성 검토(ISP 등) → 사업계획 수립 → 사업자 선정(입찰공고 → 제안서 평가 → 기술·가격협상→사업수행 → 감리 및 검수 → 사용자 교육 → 프로그램배포 → 유지관리

8) 최근 3년간(2024년~2026년)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8-1) 정부 사업평가: 해당없음

(8-2) 국회 지적사항: 해당없음

(8-3) 감사원, 총리실, 기타(언론, 시민단체 등) 결과: 해당없음

4. 최근 4년간(2023년~2026년) 결산내역

1) 결산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연도	당초 계획액	수정 계획액 (A)	전년도 이월액	기금변경 증감액 등	계획 현액	집행액 (B)	집행률 (B/Ax100)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3년	4,792	5,552	2,296	760	7,848	7,848	100.0	-	-
2024년	5,854	5,854	-	-	5,854	5,851	100.0	-	3
2025년	5,358	5,358	-	-	5,358	5,358	100.0	-	-
2026년	9,992	10,478	-	486	10,478	2,507	23.9	해당없음	해당없음

2) 연도별 결산 주요사항

연도	유형	금액 (백만원)	사유
2024년	불용	3	정보화사업 낙찰 차액 3백만 원 불용

5. 기타 추가자료 :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6) 생활안정자금(융자)(3062-306)

1. 사업 총괄 정보

1) 사업 기본 정보

(1-1) 일반 정보

소관	실·국	과·팀	기금	계정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퇴직연금복지과	근로복지 진흥기금	중소복지계정

(1-2) 코드·명칭 정보

구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080	08E	3000	3062	306
명칭	사회복지	노동	근로조건보호및 복지증진	근로자복지지원	생활안정자금(융자)

2)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N	Y	N	N	N	N

3)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Y	N	N	N	Y	-	-

4) 기능별(내역사업별)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내역사업명	소관	사업시행주체
생활안정자금(융자)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이차보전)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근로복지공단

2. 지출계획 총괄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사업명	2025년 결산액	2026년 당초계획액 (A)	2026년 수정계획액	2027년 요구액	2027년 정부안액 (B)	증감액 (B-A)	증감률 (B-A) /A×100
생활안정자금(융자)	92,480	89,432	98,407	84,633	84,633	△4,799	△5.4

1)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계획액 (수정)	2025년 계획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계획액 (수정)	2026년 계획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106,342	106,342	92,480	-	13,862	89,432	98,407	94,617	84,633
·생활안정자금(융자)	103,342	103,342	92,438	-	10,904	85,475	94,450	94,450	84,108
·생활안정자금(이차보전)	3,000	3,000	42	-	2,958	3,957	3,957	167	525

2) 비목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계획액 (수정)	2025년 계획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계획액 (수정)	2026년 계획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106,342	106,342	92,480	-	13,862	89,432	98,407	94,617	84,633
·기타민간융자금(450-04)	103,342	103,342	92,438	-	10,904	85,475	94,450	94,450	84,108
·이차보전금(320-05)	3,000	3,000	42	-	2,958	3,957	3,957	167	525

3. 사업 설명

1) 사업목적·내용

(1-1) 생활안정자금(융자)

<table>
<tr><td>사업목적</td><td>저소득 취약계층의 혼례, 장례, 질병 등으로 소요되는 생활필수자금을 저리로 융자하여 노동자의 생활 안정에 기여</td></tr>
<tr><td>사업내용</td><td>- 융자 종목(6):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노부모부양비, 자녀양육비, 소액생계비
<table>
<tr><th>혼례비</th><th>의료비·장례비</th><th>노부모 부양비</th><th>자녀 양육비</th><th>소액생계비</th></tr>
<tr><td>1,250만 원</td><td>1,000만 원</td><td>2,000만 원
((조)부모 1인당 500)</td><td>2,000만 원
(1자녀당 500)</td><td>200만 원</td></tr>
</table>
* 1인당 2,000만 원 한도
- 이자 및 상환: 이자율 1.5%,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td></tr>
</table>

(1-2) 생활안정자금(이차보전)

<table>
<tr><td>사업목적</td><td>결혼, 자녀 양육 등으로 생활자금이 필요한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안정지원 강화를 위해 시중금리 대비 저리 융자가 가능하도록 공단이 대출 이자를 지원</td></tr>
<tr><td>사업내용</td><td>- 융자 종목(4): 혼례비, 장례비, 노부모부양비, 자녀양육비
<table>
<tr><th>혼례비</th><th>장례비</th><th>노부모부양비</th><th>자녀양육비</th></tr>
<tr><td>2,000만 원</td><td>1,000만 원</td><td>2,000만 원
((조)부모 1인당 500)</td><td>2,000만 원
(1자녀당 1,000)</td></tr>
</table>
* 1인당 2,000만 원 한도
- 이차보전율: 개인신용대출 금리에서 3%p 이내</td></tr>
</table>

2) 사업개요

(2-1)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table>
<tr><td>사업근거</td><td>○ 법령상 근거 및 조항
-「근로복지기본법」 제19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근로복지기본법>
제19조(생활안정자금의 지원)
① 국가는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자 및 그 가족의 의료비 · 혼례비 · 장례비 등의 융자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경제상황 및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이 필요한 시기 등을 고려하여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계비의 융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 · 혼례비 · 장례비 · 생계비 등의 지원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91조(근로복지진흥기금의 용도) 근로복지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2.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자금의 융자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생활안정자금의 융자)
①「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에 따른 의료비·혼례비·장례비 등의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이상 근속 중이고 그 임금 수준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근로자로 하며, 그 가족의 범위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②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생계비의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융자신청일 이전 1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이상 임금이 체불된 사업장의 근로자로서 신청 근로자의 소득(배우자의 소득을 포함한다)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근로자로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융자를 받으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융자신청을 하여야 한다.</td></tr>
</table>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융자금의 범위, 융자 조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추진경위	○ 추진경위 - '96년 중소제조업체 생산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의료비 융자 최초 시행 - '98년 혼례·장례비 융자 추가 - '99. 1. 3개월 이상 체불노동자를 대상으로 임금체불생계비대부 시작 - '99. 2. 2개월 이상 체불노동자로 사업대상 변경(체불생계비) - '02년 기업규모 및 업종 제한 폐지, 융자 대상을 저소득 노동자로 전면 확대 - '03년 노부모 요양비 추가 - '08. 1. 융자 종류 간 우선순위 부여(의료비→노부모요양비→장례비→혼례비) - '08. 9. 1개월 이상 체불노동자로 사업대상 변경(체불생계비) - '10. 1. 체불생계비대부사업과 통합운영 - '11. 9. 자녀학자금·긴급생활유지비 추가 - '13. 1. 융자 종목 명칭 변경(긴급생활유지비→임금감소생계비) - '14. 5. 소액융자제도 신설(소액임금감소생계비) - '15. 1. 신청자 1인당 융자한도 증액(1인당 1천만원 → 2천만원) 및 금리 인하(3.0% → 2.5%), 자녀학자금 자녀 수 제한 폐지, 생활안정자금 비정규직 소득요건 폐지 - '16. 1. 소득 기준 인용 근거 일원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융자 대상자 추가 * 소득 기준 인용 근거 : 5분위별 가구당 가계수지상 중위 소득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 '17. 3. 건설일용노동자 융자요건 완화(45일 이상 일용근로내역/7.5일분 이상 체불 → 30일이상 일용근로내역/5일분 이상 체불) - '17. 10. 융자 대상자 확대(부당해고 후 복직 전 노동자 융자대상자 포함) - '18. 5.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 노동자 대상 융자 요건 완화(소득요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자녀학자금: 고등학생 자녀 500만원 한도 → 고등학생 및 대학생 자녀 대상 700만원 한도, 임금체불생계비: 1,000만원 한도 → 2,000만원 한도) - '18. 7. 임금체불생계비 융자 소득요건 완화(3인가구 중위소득 → 4인가구 중위소득) - '19. 4. 거치 상환기간 다양화(1년 거치 3년 상환 → 1년 거치 3년 또는 1년 거치 4년 상환 중 선택) - '19. 9. 임금체불생계비 융자 대상자 확대(재직노동자 → 재직 및 퇴직 후 6개월 이내 노동자) - '19. 11. 융자금리 1.0%p 인하(연 2.5% → 연 1.5%)

	- ’20. 3. 소득요건 한시적(3.9~7.31.) 완화(월 259만원 → 월 388만원) - ’20. 5. 소액생계비(200만원 → 500만원) 및 임금감소생계비(1,000만원 → 2,000만원) 융자 한도 일시 확대 - ’20. 7. 1인당 융자 총한도 확대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대상 확대: (前) 2,000만원, 9개 직종 → (後) 3,000만원(7.1.~12.31.), 14개 직종 - ’20. 9. 수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노동자 융자금리 한시 인하(1.5% → 1.0%) (9.1.~12.31.) - ’20. 12. 융자 대상 확대(저소득 노동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산재보험 가입) → 저소득 노동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전체)·1인 자영업자(산재보험 가입)) - ’21. 1. 7세 미만 영·유아 자녀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지원을 위한 ‘자녀양육비’ 신설 - ’21. 6. 융자 종목 중 “임금체불생계비” 폐지 *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임금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사업‘ 시행(’21. 6. 9.) - ‘22. 2. 혼례비 융자 정비(사전 융자폐지, 융자신청 기한 혼인신고 후 1년 이내로 확대, 제출 서류 ’혼인관계증명서‘로 간소화) - ‘22. 2. 코로나 피해 고용 취약계층 한시 생계비 지원을 위한 ’생계지원비‘ 신설 - ’22. 8. 고물가·고금리로 경제적 부담이 큰 저소득 노동자 융자 금리 한시 인하(연1.5%→연 1.0%) (’22.8.29. ~ ’22.12.31.) - ’23. 8. 수해피해지역 사업장 노동자 대상 융자 요건 완화(자녀학자금 : 고등학생 자녀 1명당 500만원 한도 → 고등학생 및 대학생 자녀 1명당 700만원 한도) - ‘24. 7. 임금감소생계비를 소액생계비와 통합 및 상환 기간 완화(1년 거치 1년 상환 →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상환) - ’25. 1. 부모요양비 → 노부모부양비로 융자종목명 변경, 자녀양육비 및 노부모부양비 한도 상향(1→2천만원), 자녀학자금 폐지, 소득기준 변경(중위소득 2/3 → 1/2 이하) - ‘25. 5. 이차보전 방식의 융자 도입 - ‘25. 12. 융자대상 확대(자녀양육비 7세 → 18세 미만), 신청기한 확대(장례비 90일 → 1년, 혼례비 1년 → 3년, 자녀양육비 7세 → 18세), 이차보전 융자항목 신설(노부모부양비, 장례비), 일반 융자와 이차보전 융자 한도 분리(각각 2,000만원), 이차보전 융자 한도 증액(혼례비 2,000만원, 자녀양육비 1,000만원)

(2-2) 사업규모

○ 사업기간 : 계속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계획액 기준, 기금운용계획변경 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사업비	170,000	118,462	106,342	98,407	84,633

(2-3)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근로복지공단

○ 사업 수혜자 : 저소득 노동자·특수형태근로종자사자·산재보험 가입 1인 자영업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기관명	2027년 지원금액(백만원)	지원 비율(%)	법적근거
생활안정자금(융자)	융자	근로복지공단	84,108	100	근로복지기본법 제19조(생활안정자금의 지원 등)
생활안정자금(이차보전)	융자	근로복지공단	525	3	근로복지기본법 제19조(생활안정자금의 지원 등)

3) 기능별(내역사업별) 산출 내역

(3-1) 내역사업별 세부 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계획액(수정)(A)	2027년 정부안액(B)	증감 (B-A)
합 계	98,407	84,633	△13,774
생활안정자금(융자)	94,450	84,108	△10,342
생활안정자금(이차보전)	3,957	525	△3,432

○ **생활안정자금(융자) (2026년) 98,407 → (2027년) 84,633백만원, △10.9%**

- 저소득 취약계층 노동자 등의 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을 위한 사업비 요구

- (산출) 84,108백만원 = '25년 융자종목별 평균단가 × 15,402명
  ① 의료비 : 5,906백만원 = 4.6백만 × 1,284명
  ② 혼례비 : 20,606백만원 = 12.1백만 × 1,703명
  ③ 장례비 : 825백만원 = 8.5백만 × 97명

④ 노부모부양비 : 4,118백만원 = 4.5백만 × 915명
⑤ 자녀양육비 : 52,015백만원 = 4.7백만 × 11,067명
⑥ 소액생계비 : 638백만원 = 1.9백만 × 336명

○ **생활안정자금(이차보전) (2026년) 3,957 → (2027년) 525백만원, △86.7%**

- 저소득 노동자 등의 생활안정지원 강화를 위한 이자지원 사업비 요구

- (산출) '27년 이차보전금(162백만원) + '25~'26년 이차보전금(363백만원)
① 162백만원 = 1,137명 × 7.6백만('25년 융자 평균단가) × 이차보전율 3%p
② 363백만원 = '25~'26년 융자잔액 × 이차보전율 3%p

4) 사업효과

(4-1) 최근 5년(2023년~2027년)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 **성과지표:** 융자 지원율(단위%)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목표	93.4	-	-	-	-
실적	97.1	-	-	-	-
달성도	104.0%	-	-	-	-

- **측정산식 :** (생활안정자금 융자 실행액 / 생활안정자금 융자 예산)×100

- **측정방법 및 목표치 설정근거 : 지표삭제(2024년)**

- **자료수집방법/출처 :** 근로복지공단 내부자료

(4-2) 성과지표 이외의 최근 4년(2023년~2026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연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3년	170,000백만원의 예산으로 165,030백만원 집행(30,639명 지원)하여 계획대비 97.1% 달성. 집행잔액으로 4,970백만원 발생
2024년	118,462백만원의 예산으로 118,234백만원 집행(20,306명 지원)하여 계획 대비 99.8% 달성
2025년	106,342백만원의 예산으로 92,480백만원 집행(16,537명 지원)하여 계획 대비 87.0% 달성
2026년	98,407백만원의 예산으로 94,617백만원 실집행(18,385명 지원)하여 계획 대비 96.1% 달성

(4-3) 향후(2027년 이후)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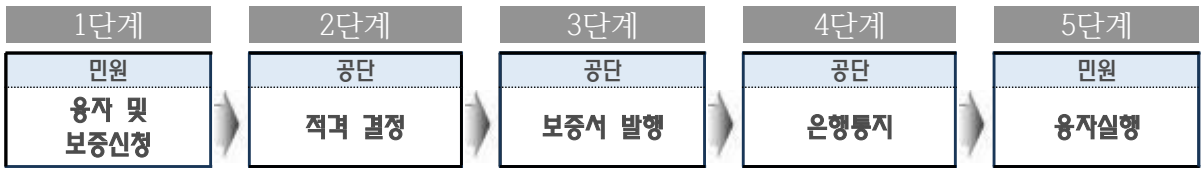
○ 금융기관 재원을 포함하여 매년 927억원 규모의 사업 유지 및 저소득 취약계층 근로자 생활필수자금 융자를 통한 생활안정 지원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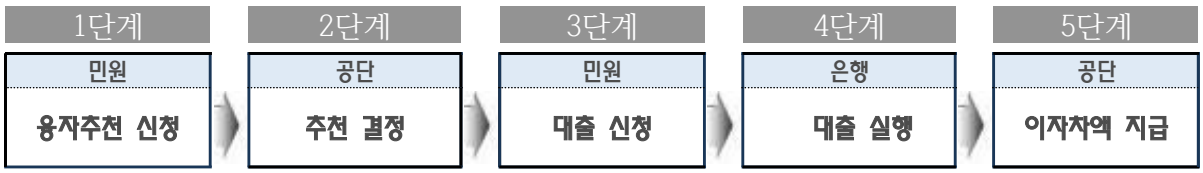
7) 사업 집행절차

○ 생활안정자금(융자)



민원인이 공단에 융자 및 보증신청서을 접수하면 공단에서는 융자 적격여부를 심사·결정하여 융자 예정자를 선정하게 됨. 이후 공단은 융자 예정자의 신용보증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융자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에 대하여 보증서를 발행하게 됨. 이후 민원인은 은행을 통해 최종 융자를 실행함

○ 생활안정자금(이차보전)



민원인이 공단에 이차보전 융자 추천신청서을 접수하면 공단에서는 융자대상 및 사유를 확인하여 추천여부를 결정함. 추천 결정을 통보받은 고객은 은행모바일뱅킹을 통해 대출을 신청하게 되며 이후 은행은 공단의 추천정보를 확인하고 고객의 소득 및 신용을 심사하여 최종 대출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 하고 대출금을 지급하게 됨. 은행은 분기별로 이자차액을 공단에 청구하고 공단은 청구에 따라 은행에 이자차액을 지급함

8) 최근 3년간(2024년~2026년)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8-1) 정부 사업평가: 해당없음

(8-2) 국회 지적사항

구분	연도	주요내용
환노위, 예정처 검토보고서	2024년	○ 지적 : 2025년 예산(안) ①융자 개편으로, 중위소득 1/2 초과 2/3이하 노동자지원 한도가 축소되는 것은 아닌지, ②생활안정자금 사업은 기존 융자 사업 및 신규 이차보전 간 면밀한 제도 설계 필요 ○ 조치 : - ①보다 취약 노동자의 지원율 집중하면서 한정된 재원 하에서 이차보전 방식을 통해 다양한 융자 수요에 대응, ②취약 노동자일수록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설계 - 중위소득 2/3 이하 노동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이차보전 중복신청 가능(융자 한도 별도 관리)

(8-3) 감사원, 총리실, 기타(언론, 시민단체 등) 결과: 해당없음

4. 최근 4년간(2023년~2026년) 결산내역

1) 결산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연도	당초 계획액	수정 계획액 (A)	전년도 이월액	기금변경 증감액 등	계획 현액	집행액 (B)	집행률 (B/Ax100)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3년	150,000	170,000	-	20,000	170,000	165,030	97.1	-	4,970
2024년	88,462	118,462	-	30,000	118,462	118,234	99.8	-	228
2025년	91,462	106,342	-	14,880	106,342	92,480	87.0	-	13,862
2026년	89,432	98,407	-	8,975	98,407	94,617	96.1	해당없음	해당없음

2) 연도별 결산 주요사항

연도	유형	금액 (백만원)	사유
2023년	불용	4,970	결혼, 가족사망, 질병 등 해당 사유 발생 시에만 융자 지원이 가능한 사업 특성 상 불가피하게 미집행액 발생
2024년	불용	228	사업비 규모 내 융자신청을 받았으나, 융자신청서 심사 시 부적격처리(자격요건 미달), 신용불량, 최종 융자 미실행 등의 사유로 불용액 발생
2025년	불용	13,862	융자 사유 발생 시 신청에 따라 지원이 가능한 사업 특성 및 이차보전 사업 수행 기간 단기, 낮은 한도액, 은행의 신용 심사 과정에서 최종 융자 미실행 등의 사유로 불용액 발생

5. 기타 추가자료

참고 1 생활안정자금(융자) 개요

구분		대상 및 조건
사업 내용		• 저소득 노동자(비정규직, 특고, 1인 자영업자 포함) 및 그 가족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하여 장기 저리의 융자
사업 기간		• '96년 ~ 계속
사업 근거		• 근로복지기본법 제19조(생활안정자금의 지원) • 근로복지사업운영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58호)
융자대상	①의료비 ②혼례비 ③장례비 ④노부모부양비 ⑤자녀양육비	•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자 * 일용직은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 45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 •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3인 가구)의 1/2('26년 268만원) 이하 * 일용직은 소득 요건 비적용
	⑥소액생계비	•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자 * 일용직은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 45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 • 휴업·휴직(경영상 이유, 개인 사정), 사업 구조상 이유(계절 사업, 공공근로)로 융자 대상 월 소득이 직전 달에 비해 30% 이상 감소 •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3인 가구)의 1/2('26년 268만원) 이하 * 일용직은 소득 요건 비적용
융자한도	①의료비 ③장례비	• 1,000만원
	②혼례비	• 1,250만원
	④노부모부양비	• 2,000만원 한도 내 (조)부모 1인당 500만원
	⑤자녀양육비	• 2,000만원 한도 내 자녀 1인당 500만원(18세 미만 자녀)
	⑥소액생계비	• 200만원
	* 1인당 총 2,000만원 한도(이차보전 한도와 별도)	
금리	• 연 1.5% (신용보증료 연 0.9% 별도)	
상환	•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참고 2 생활안정자금(이차보전) 개요

구분		대상 및 조건
사업 내용		• 결혼, 자녀 양육 등 긴급 생활자금이 부족한 노동자 등에게 생활 안정자금 융자
사업 기간		• '25년부터 ~
사업 근거		• 근로복지기본법 제19조(생활안정자금의 지원) • 근로복지사업운영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58호)
융자 대상	①혼례비 ②자녀양육비 ③노부모부양비 ④장례비	• 3개월 이상 근속 중인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임의 가입한 1인 자영업자 •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3인 가구)('26년 536만원) 이하
융자 한도	①혼례비	• 2,000만 원
	②자녀양육비	• 2,000만 원 한도 내 자녀 1인당 1,000만 원(18세 미만 자녀)
	③노부모부양비	• 2,000만 원 한도 내 (조)부모 1인당 500만 원
	④장례비	• 1,000만 원
	* 생활안정자금(융자)와 별도 한도 관리	
이차보전 지원율		• 개인 신용 대출금리에서 3.0%p 이내 보전
소요 예산		• 이차보전금 30억 원(융자 규모: 은행 재원 1,000억 원)
상환		•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참고 3 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 통계

□ 연도별 사업 예산 및 집행률

(단위: 백만원, 명, %)

연도	'21	'22	'23	'24	'25
예산액	**169,051**	**231,850**	**170,000**	**118,462**	**106,342**
집행액 (지원 인원)	143,946 (24,801)	223,170 (41,639)	165,030 (30,639)	118,234 (20,306)	92,480 (16,537)
집행률	85.1	96.3	97.1	99.8	87.0

□ 연도별 융자 종목별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명)

구분	'21		'22		'23		'24		'25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합계	24,801	**143,946**	41,639	**223,170**	30,639	**165,030**	20,306	**118,234**	16,537	**92,480**
의료비	4,571	**18,469**	4,529	**17,987**	5,966	**21,291**	3,688	**13,495**	3,566	**16,285**
혼례비	3,578	**43,236**	3,493	**42,342**	4,327	**52,772**	4,077	**49,872**	2,762	**33,326**
장례비	279	**2,570**	292	**2,621**	355	**3,220**	196	**1,751**	159	**1,344**
부모 요양비	1,892	**8,843**	1,894	**8,684**	2,393	**10,593**	1,451	**6,274**	1,513	**6,782**
자녀 학자금	4,100	**19,883**	3,915	**18,790**	4,985	**23,655**	3,359	**15,870**	-	-
자녀 양육비	6,022	**29,806**	7,233	**35,331**	9,864	**46,677**	6,129	**28,094**	7,004	**33,210**
임금감소 생계비	1,011	**8,715**	329	**1,457**	439	**2,355**	67	**294**	-	-
소액생계비	2,306	**5,242**	1,924	**3,792**	2,310	**4,467**	1,339	**2,584**	776	**1,491**
임금체불 생계비	1,042	**7,182**	-	-	-	-	-	-	-	-
생계 지원비	-	-	18,030	**92,166**	-	-	-	-	-	-
이차 보전금	-	-	-	-	-	-	-	-	757	**42**

사 업 명
(7) 근복기금(신용계정) 정보화경비(정보화)(3063-326)

1. 사업 총괄 정보

1) 사업 기본 정보

(1-1) 일반 정보

소관	실·국	과·팀	기금	계정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퇴직연금복지과	근로복지 진흥기금	신용보증사업 계정

(1-2) 코드·명칭 정보

구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080	08B	3000	3063	326
명칭	사회복지	노동	근로조건보호및 복지증진	근로자복지지원	근복기금(신용계정) 정보화경비(정보화)

2)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N	Y	N	N	N	N

3)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Y	N	N	N	N	-	-

4) 기능별(내역사업별)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내역사업명	소관	사업시행주체
근복기금(신용계정) 정보화경비(정보화)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근로복지공단

2. 지출계획 총괄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사업명	2025년 결산액	2026년 당초계획액 (A)	2026년 수정계획액	2027년 요구액	2027년 정부안액 (B)	증감액 (B-A)	증감률 (B-A) /A×100
근복기금(신용계정) 정보화경비(정보화)	148	148	148	148	148	-	-

1)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계획액 (수정)	2025년 계획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계획액 (수정)	2026년 계획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148	148	148	-	-	148	148	64	148
·근복기금(신용계정) 정보화경비(정보화)	148	148	148	-	-	148	148	64	148

2) 비목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계획액 (수정)	2025년 계획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계획액 (수정)	2026년 계획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148	148	148	-	-	148	148	64	148
·일반수용비(210-01)	22	22	22	-	-	22	22	2	22
·공공요금및제세(210-02)	6	6	6	-	-	6	6	2	6
·임차료(210-07)	79	79	79	-	-	79	79	39	79
·시설장비유지비(210-09)	34	34	34	-	-	34	34	17	34
·관리용역비(210-15)	7	7	7	-	-	7	7	4	7

3. 사업 설명

1) 사업목적·내용

(1) 근복기금(신용계정) 정보화경비(정보화)

사업목적	신용보증사업계정 사업의 원활한 수행
사업내용	보증·담보 여력이 낮은 취약계층의 정상 금융생활 복귀 지원 등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2) 사업개요

(2-1)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사업근거	○「근로복지기본법」 - 제91조(근로복지진흥기금의 용도) 근로복지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6.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2008년 ○ 추진 배경 - 기존 : 고용보험회계와 산재보험회계에서 50%씩 부담 - '08년부터 : 고용보험, 산재보험, 임금채권, 근로복지진흥기금에서 분담 (근로복지진흥기금 2.1% 분담. 단, 자산취득비는 4.2% 분담)

(2-2) 사업규모

○ 사업기간 : 계속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계획액 기준, 기금운용계획변경 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사업비	148	148	148	148	148

(2-3)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근로복지공단

○ 사업 수혜자 : 근로자, 근로복지공단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3) 기능별(내역사업별) 산출 내역

(3-1) 내역사업별 세부 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계획액(수정)(A)	2027년 정부안액(B)	증감 (B-A)
합 계	148	148	-
근복기금(신용계정) 정보화경비(정보화)	148	148	-

○ 근복기금(신용계정) 정보화경비(정보화) (2026년) 148 → (2027년) 148백만원, 전년 동

- (설명) 전산장비 유지관리 및 정보시스템 운영지원을 위해 전년 수준의 예산 요구
- (산출) 전산장비 유지관리 120백만 원, 정보시스템 운영지원 28백만 원

4) 사업효과

(4-1) 최근 5년(2023년~2027년)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해당없음

(4-2) 성과지표 이외의 최근 4년(2023년~2026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해당없음

(4-3) 향후(2027년 이후) 기대효과

○ 신용보증사업계정 사업의 원활한 수행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해당없음

8) 최근 3년간(2024년~2026년)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8-1) 정부 사업평가: 해당없음

(8-2) 국회 지적사항: 해당없음

(8-3) 감사원, 총리실, 기타(언론, 시민단체 등) 결과: 해당없음

4. 최근 4년간(2023년~2026년) 결산내역

1) 결산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연도	당초 계획액	수정 계획액 (A)	전년도 이월액	기금변경 증감액 등	계획 현액	집행액 (B)	집행률 (B/Ax100)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3년	148	148	-	-	148	148	100.0	-	-
2024년	148	148	-	-	148	148	100.0	-	-
2025년	148	148	-	-	148	148	100.0	-	-
2026년	148	148	-	-	148	64	43.2	해당없음	해당없음

2) 연도별 결산 주요사항 : 해당 없음

5. 기타 추가자료: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8) 신용보증대위변제 (3064-308)

1. 사업 총괄 정보

1) 사업 기본 정보

(1-1) 일반 정보

소관	실·국	과·팀	기금	계정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퇴직연금복지과	근로복지 진흥기금	신용보증 사업계정

(1-2) 코드·명칭 정보

구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080	08E	3000	3064	308
명칭	사회복지	노동	근로조건보호및 복지증진	신용보증대위변제	신용보증대위변제

2)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N	Y	N	N	N	N

3)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Y	N	N	N	N	-	-

4) 기능별(내역사업별)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내역사업명	소관	사업시행주체
신용보증대위변제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근로복지공단

2. 지출계획 총괄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사업명	2025년 결산액	2026년 당초계획액 (A)	2026년 수정계획액	2027년 요구액	2027년 정부안액 (B)	증감액 (B-A)	증감률 (B-A) /A×100
신용보증대위변제	86,331	37,734	60,315	27,329	27,329	△10,405	△27.6

1)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계획액 (수정)	2025년 계획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계획액 (수정)	2026년 계획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86,331	86,331	86,331	-	-	60,315	60,315	49,036	27,329
·신용보증대위변제	86,331	86,331	86,331	-	-	60,315	60,315	49,036	27,329

2) 비목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계획액 (수정)	2025년 계획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계획액 (수정)	2026년 계획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86,331	86,331	86,331	-	-	60,315	60,315	49,036	27,329
·반환금및손실금(710-03)	86,331	86,331	86,331	-	-	60,315	60,315	49,036	27,329

3. 사업 설명

1) 사업목적·내용

(1) 신용보증대위변제

사업목적	보증·담보 여력이 낮은 취약계층 등에 대한 신용을 보증함으로써 금융회사를 통한 융자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소득격차 해소와 생활 안정에 기여
사업내용	저소득·저신용 근로자 등이 신용보증지원으로 정책자금을 융자받은 후 원리금을 연체할 경우 대위변제금 지급 및 사후 관리

2) 사업개요

(2-1)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사업근거	○ 「근로복지기본법」 **제22조(신용보증 지원 및 대상)**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담보능력이 미약한 근로자(구직신청한 실업자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재해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가 금융회사 등에서 생활안정자금 및 학자금 등의 융자를 받음으로써 부담하는 금전채무에 대하여 해당 금융회사 등과의 계약에 따라 그 금전채무를 보증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증대상 융자사업 및 보증대상 근로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보증채무의 이행 등)** ① 제22조제1항에 따라 융자사업을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은 같은 조의 계약 내용에 정하여진 보증채무의 이행청구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단에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 등의 보증채무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22조제2항의 계약 내용에 따라 대위변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추진경위	○ '00. "근로자 보증 부담 완화를 위한 「근로자신용보증지원제도」 도입 추진" 대통령 보고 (노동부문 국정개혁 과제) ○ '01. 8.「근로자복지기본법」제정·공포(법률 제6510호) ○ '02. 1.「근로자신용보증지원제도」시행 ○ '10. 12.「근로복지기본법」개정 시행 ○ '14. 12. 보증한도 상향(1,000만원→2,000만원) ○ '15. 5. 채무조정제도(지연이자 감면제도) 도입 ○ '16. 1. 보증대상 확대(산재보험에 가입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19. 4. 지연이자 인하 및 채무조정제도 개선 ○ '20. 7.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보증한도 상향(2,000→3,000만원)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보증한도 한시 상향(2,000→3,000만원*) * '20. 7. 1.이후 융자신청서 접수하여 '20년 융자마감일까지 융자실행을 완료한 경우에 한함 ○ '20. 12. 보증대상 확대(특수형태근로종사자(전체),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

(2-2) 사업규모

○ 사업기간 : 계속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계획액 기준, 기금운용계획변경 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사업비	33,550	30,195	86,331	60,315	27,329

(2-3)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근로복지공단

○ 사업 수혜자 :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정책자금 융자 대상자 중 신용보증을 신청하는 자(저소득 근로자, 산재근로자, 구직 등록한 실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3) 기능별(내역사업별) 산출 내역

(3-1) 내역사업별 세부 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계획액(수정)(A)	2027년 정부안액(B)	증감 (B-A)
합 계	60,315	27,329	△32,986
신용보증대위변제	60,315	27,329	△32,986

○ **신용보증대위변제 (2026년) 60,315 → (2027년) 27,329백만원, △54.7%**

- (설명) 최근 보증 규모, 대위변제율, 보증잔액, 보증료 환급비율 등을 감안한 대위변제금 및 조기상환 보증료환급분 지급 소요 요구
- (산출) 신용보증대위변제 26,884백만원, 신용보증보증료환급 485백만원

4) 사업효과

(4-1) 최근 5년(2023년~2027년)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해당없음

(4-2) 성과지표 이외의 최근 4년(2023년~2026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연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3년	- 신용보증지원실적: 51,289명, 3,068억 원(누적 894,207명, 42,740억 원) - 예산집행 실적(실적/계획): 33,550백만 원/33,550백만 원 ⇒ 100.0% - 대위변제금 회수 실적: 7,320백만 원(누적 105,652백만 원)
2024년	- 신용보증지원실적: 36,608명, 1,929억 원(누적 930,815명, 44,670억 원) - 예산집행 실적(실적/계획): 30,195백만 원/30,195백만 원 ⇒ 100.0% - 대위변제금 회수 실적: 8,173백만 원(누적 113,825백만 원)
2025년	- 신용보증지원 실적 34,833명, 1,701억 원(누적 965,648명, 46,371억 원) - 예산 집행 실적(실적/계획): 86,331백만 원/86,331백만 원 ⇒ 100.0% - 대위변제금 회수 실적: 9,647백만 원(누적 123,472백만 원)
2026년	- 신용보증지원실적: 36,854명, 1,739억 원(누적 1,002,502명, 48,111억 원) - 예산집행 실적(실적/계획): 49,036백만 원/60,315백만 원 ⇒ 81.3% - 대위변제금 회수 실적: 6,955백만 원(누적 130,427백만 원)

(4-3) 향후(2027년 이후) 기대효과

○ 보증·담보 여력이 낮은 취약계층에 대하여 매년 2,000억 원 내외의 신용보증 지원을 통해 저신용·저소득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 보증지원 후 원리금 6개월 이상 연체 등이 발생한 경우 대위변제금을 지급하며, 구상채권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매년 80억 원 내외 회수하여 기금 건전성 강화에 기여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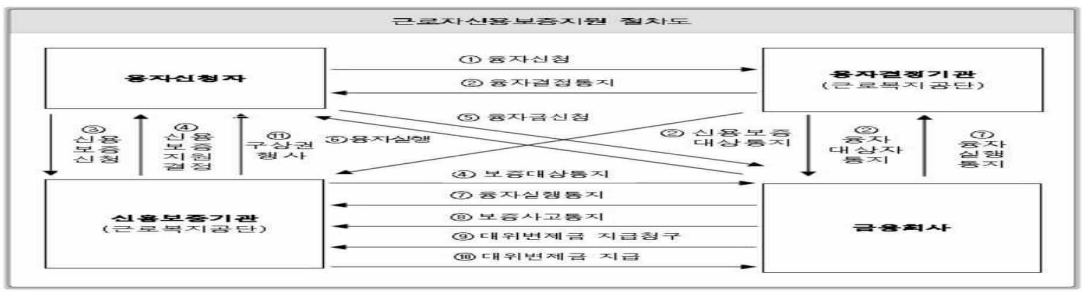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추진 절차

- 사업계획 수립(근로복지공단) → 근로복지진흥기금 기금운용심의회 심의 → 고용노동부장관 승인 → 근로복지공단 시행

○ 업무프로세스



- 근로자가 융자와 보증을 신청하면 공단에서 융자 대상 여부를 심사하고 융자결정과 보증 지원을 하고, 이후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실행
- 융자가 정상적으로 상환되면 절차가 종료되지만, 연체가 발생하면 보증사고 통지, 보증채무 이행 청구, 대지급금 지급 및 구상권 행사 절차 진행

8) 최근 3년간(2024년~2026년)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8-1) 정부 사업평가: 해당없음

(8-2) 국회 지적사항

구분	연도	주요내용
기노위	2024년	○ 지적 : 기금별 분담 방안 및 구상채권 관리 및 회수율 제고 방안 마련 필요 ○ 조치 : 구상채권 회수율 제고 방안 마련 및 구상채권 회수율 제고를 위한 회수활동 강화

(8-3) 감사원, 총리실, 기타(언론, 시민단체 등) 결과: 해당없음

4. 최근 4년간(2023년~2026년) 결산내역

1) 결산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연도	당초 계획액	수정 계획액 (A)	전년도 이월액	기금변경 증감액 등	계획 현액	집행액 (B)	집행률 (B/Ax100)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3년	33,550	33,550	-	-	33,550	33,550	100.0	-	-
2024년	30,195	30,195	-	-	30,195	30,195	100.0	-	-
2025년	31,659	86,331	-	54,672	86,331	86,331	100.0	-	-
2026년	37,734	60,315	-	22,581	60,315	49,036	81.3	해당없음	해당없음

2) 연도별 결산 주요사항

연도	유형	금액 (백만원)	사유
2025년	계획 변경	21,720	2020년 이후 코로나19로 인해 급격히 증가한 융자 건의 거치기간 경과와 2022년 이후 고금리 등의 영향으로 상환능력이 저하된 취약근로계층의 대위변제 급증
2026년	계획 변경	22,581	2020년 이후 코로나19로 인해 급격히 증가한 융자 건의 거치기간 경과와 2022년 이후 고금리 등의 영향으로 상환능력이 저하된 취약근로계층의 대위변제 증가

5. 기타 추가자료

참고 1 신용보증대위변제 사업개요

구분	내용		
사업내용	ㅇ 보증.담보 여력이 부족한 노동자가 신용보증지원으로 정책자금을 융자받은 후 원리금을 연체할 경우 대위변제금 지급 및 사후 관리		
사업근거	ㅇ (법령) 근로복지기본법(제22~27조), 시행령(제4~7조), 시행규칙(제5~6조) ㅇ (규정) 근로자신용보증지원사업관리·운영규정(고시), 근로자신용보증사업 운영규정(공단 규정)		
사업 기간	2002년~	사업성과 ('25년말 누적)	ㅇ 보증 지원: 965,648건, 4,637,113백만 원 ㅇ 대위 변제: 101,518건, 409,671백만 원(변제율: 8.83%) ㅇ 대위변제회수: 123,472백만 원(회수율: 30.14%)
수혜자	ㅇ 저소득노동자, 산재노동자, 직업훈련참가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 등		
보증 제한자	ㅇ 한국신용정보원 정보 등록자, 부정대부 등으로 대부취소자, 외국인·해외동포		
보증 대상 사업	ㅇ 생활안정자금(융자),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보증 한도	ㅇ 각 융자사업별 융자 범위 내 보증, 1인당 최대 2,000만 원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 업종 종사자 1인당 3,000만 원 이내)		
보증료	ㅇ 연0.9~1.0%(법상 최고 한도 1.0%) 융자 실행 시 先공제 및 조기 상환 시 잔여 보증료환급		
사후관리	ㅇ (연체 관리) 금융회사(3개월 미만) 및 공단 소속기관(3~6개월 미만) 협업 관리 ㅇ (대위변제) 6개월 이상 연체 등 사유 시 금융회사 청구에 따른 지급 ㅇ (구상권 행사) 독촉, 지연이자(연9%) 징수, 보전처분·지급명령 등 법적 절차		

참고 2 신용보증 대상 융자 사업 현황('26년)

(단위: 억 원)

구분		융자대상 및 한도	이율/상환/보증료	비고
근로복지진흥기금	생활안정자금	· 대상: 월평균소득이 3인가구 중위소득의 1/2이하인 근로자 · 용도: 의료비, 노부모부양비, 장례비, 혼례비, 자녀양육비, 소액생계비 · 한도: 1,000만 원(단, 혼례비는 1,250만 원, 노부모부양비는 부양자 1명당 연 500만 원, 자녀양육비는 1자녀당 연 500만 원, 소액생계비는 200만 원)	· 이율: 연 1.5% · 상환: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분할 상환 · 보증료: 연 0.9%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생활안정자금	· 대상: 유족, 장해 1~9급, 상병연금수급자,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3인가구 중위소득 이하), 3개월 이상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로서 최저임금 이하에 해당하는 자(의료비, 혼례비, 장례비에 한정) · 용도: 의료·혼례·장례비·취업안정자금, 주택 이전비(전·월세), 차량구입비, 사업자금, 자녀양육비 · 한도: 1,000만 원(주택이전비·차량구입비·사업자금 1,500만 원)	· 이율 : 연 1.25% · 상환 : 1년 거치 4년 분할 2년 거치 3년 분할 3년 거치 2년 분할 상환 중 선택 · 보증료: 연 1.0%	
고용보험기금	직업훈련생계비	· 대상: 고용노동부인정 직업훈련중인 전직실업자 및 비정규직 근로자(가구별 소득이 중위소득 이하인 경우) · 용도: 훈련 기간 중 생계비 · 한도: 2,000만 원(월 200만 원 이내)	· 이율: 연 1% · 상환: 1년 거치 3년 분할 2년 거치 4년 분할 3년 거치 5년 분할 중 선택 · 보증료: 연 1.0%	
임채기금('21.6.9. 시행)	임금 등 체불근로자 생계비	· 대상: 1월분 이상 임금을 받지 못한 자 · 용도: 생계비 · 한도: 체불임금 범위 내에서 1,000만 원	· 이율: 연 1.5% · 상환: 1년 거치 3년 분할 1년 거치 4년 분할 2년 거치 3년 분할 2년 거치 4년 분할 중 선택 · 보증료: 연 1.0%	

사 업 명
(9) 기금관리비(인건비) (7081-101)

1. 사업 총괄 정보

1) 사업 기본 정보

(1-1) 일반 정보

소관	실·국	과·팀	기금	계정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퇴직연금복지과	근로복지 진흥기금	중소복지계정

(1-2) 코드·명칭 정보

구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080	08E	7000	7081	101
명칭	사회복지	노동	고용노동행정지원	근로복지기금운영비	기금관리비(인건비)

2)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N	Y	N	N	N	N

3)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Y	N	N	N	N	-	-

4) 기능별(내역사업별)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내역사업명	소관	사업시행주체
기금관리비(인건비)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근로복지공단

2. 지출계획 총괄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사업명	2025년 결산액	2026년 당초계획액 (A)	2026년 수정계획액	2027년 요구액	2027년 정부안액 (B)	증감액 (B-A)	증감률 (B-A) /A×100
기금관리비(인건비)	9,257	9,581	9,581	10,581	10,581	1,000	10.4

1)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계획액 (수정)	2025년 계획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계획액 (수정)	2026년 계획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9,257	9,257	9,257	-	-	9,581	9,581	6,115	10,581
·기금관리비(인건비)	9,257	9,257	9,257	-	-	9,581	9,581	6,115	10,581

2) 비목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계획액 (수정)	2025년 계획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계획액 (수정)	2026년 계획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9,257	9,257	9,257	-	-	9,581	9,581	6,115	10,581
·보수(110-01)	9,257	9,257	9,257	-	-	9,581	9,581	6,115	10,581

3. 사업 설명

1) 사업목적·내용

(1) 기금관리비(인건비)

사업목적	근로복지진흥기금 중소복지계정사업 종사자 인건비
사업내용	인건비 지급

2) 사업개요

(2-1)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사업근거	○ 근로복지기본법」 제91조(근로복지진흥기금의 용도) 근로복지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6.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추진경위	○ 최초 사업 시작년도: 1993년 - 추진배경 · '93. 12.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 제정·시행 · '94. 5. 근로자복지진흥기금 설치 · '98. 2. 고용정책기본법에 의한 실업대책사업 등 사업범위 확대 · '02. 1. 근로자신용보증지원제도 시행 · '10.12.09.「근로복지기본법」 개정 시행

(2-2) 사업규모

○ 사업기간 : 계속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계획액 기준, 기금운용계획변경 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사업비	8,696	8,933	9,257	9,581	10,581

(2-3)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근로복지공단
○ 사업 수혜자 : 해당 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3) 기능별(내역사업별) 산출 내역

(3-1) 내역사업별 세부 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계획액(수정)(A)	2027년 정부안액(B)	증감 (B-A)
합 계	9,581	10,581	1,000
기금관리비(인건비)	9,581	10,581	1,000

○ **기금관리비(인건비) (2026년) 9,581 → (2027년) 10,581백만원, +10.4%**
- (설명) 중소복지계정 사업수행인력 인건비
- (산출) '27년 인건비 10,581백만원

4) 사업효과

(4-1) 최근 5년(2023년~2027년)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해당없음

(4-2) 성과지표 이외의 최근 4년(2023년~2026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해당없음

(4-3) 향후(2027년 이후) 기대효과: 해당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해당없음

8) 최근 3년간(2024년~2026년)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8-1) 정부 사업평가: 해당없음

(8-2) 국회 지적사항: 해당없음

(8-3) 감사원, 총리실, 기타(언론, 시민단체 등) 결과: 해당없음

4. 최근 4년간(2023년~2026년) 결산내역

1) 결산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연도	당초 계획액	수정 계획액 (A)	전년도 이월액	기금변경 증감액 등	계획 현액	집행액 (B)	집행률 (B/Ax100)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3년	8,696	8,696	-	-	8,696	8,696	100.0	-	-
2024년	8,933	8,933	-	-	8,933	8,933	100.0	-	-
2025년	9,222	9,257	-	35	9,257	9,257	100.0	-	-
2026년	9,581	9,581	-	-	9,581	6,115	63.8	해당없음	해당없음

2) 연도별 결산 주요사항 : 해당 없음

5. 기타 추가자료: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10) 사업운영비(신용보증인건비) (7081-102)

1. 사업 총괄 정보

1) 사업 기본 정보

(1-1) 일반 정보

소관	실·국	과·팀	기금	계정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퇴직연금복지과	근로복지 진흥기금	신용보증 사업계정

(1-2) 코드·명칭 정보

구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080	08E	7000	7081	102
명칭	사회복지	노동	고용노동행정지원	근로복지기금운영비	사업운영비 (신용보증인건비)

2)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N	Y	N	N	N	N

3)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Y	N	N	N	N	-	-

4) 기능별(내역사업별)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내역사업명	소관	사업시행주체
사업운영비(신용보증인건비)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근로복지공단

2. 지출계획 총괄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사업명	2025년 결산액	2026년 당초계획액 (A)	2026년 수정계획액	2027년 요구액	2027년 정부안액 (B)	증감액 (B-A)	증감률 (B-A) /A×100
사업운영비 (신용보증인건비)	3,397	3,516	3,516	3,653	3,653	137	3.9

1)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계획액 (수정)	2025년 계획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계획액 (수정)	2026년 계획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3,397	3,397	3,397	-	-	3,516	3,516	2,293	3,653
·사업운영비(신용보증인건비)	3,397	3,397	3,397	-	-	3,516	3,516	2,293	3,653

2) 비목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계획액 (수정)	2025년 계획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계획액 (수정)	2026년 계획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3,397	3,397	3,397	-	-	3,516	3,516	2,293	3,653
·보수(110-01)	3,397	3,397	3,397	-	-	3,516	3,516	2,293	3,653

3. 사업 설명

1) 사업목적·내용

(1) 사업운영비(신용보증인건비)

사업목적	근로복지진흥기금 신용보증사업 종사자 인건비
사업내용	인건비 지급

2) 사업개요

(2-1)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사업근거	○ 근로복지기본법」 제91조(근로복지진흥기금의 용도) 근로복지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6.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추진경위	○ 최초 사업 시작년도: 1993년 - 추진배경 · '93. 12.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 제정·시행 · '94. 5. 근로자복지진흥기금 설치 · '98. 2. 고용정책기본법에 의한 실업대책사업 등 사업범위 확대 · '02. 1. 근로자신용보증지원제도 시행 · '10.12.09.「근로복지기본법」 개정 시행

(2-2) 사업규모

○ 사업기간 : 계속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계획액 기준, 기금운용계획변경 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사업비	3,206	3,287	3,386	3,516	3,653

(2-3)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근로복지공단
○ 사업 수혜자 : 해당 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3) 기능별(내역사업별) 산출 내역

(3-1) 내역사업별 세부 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계획액(수정)(A)	2027년 정부안액(B)	증감 (B-A)
합 계	3,516	3,653	137
사업운영비 (신용보증인건비)	3,516	3,653	137

○ 복권기금전출 **(2026년) 3,516 → (2027년) 3,653백만원, +3.9%**
- (설명) 신용보증사업계정 사업수행인력 인건비
- (산출) '27년 인건비 3,653백만원

4) 사업효과

(4-1) 최근 5년(2023년~2027년)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해당없음

(4-2) 성과지표 이외의 최근 4년(2023년~2026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해당없음

(4-3) 향후(2027년 이후) 기대효과: 해당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해당없음

8) 최근 3년간(2024년~2026년)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8-1) 정부 사업평가: 해당없음

(8-2) 국회 지적사항: 해당없음

(8-3) 감사원, 총리실, 기타(언론, 시민단체 등) 결과: 해당없음

4. 최근 4년간(2023년~2026년) 결산내역

1) 결산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연도	당초 계획액	수정 계획액 (A)	전년도 이월액	기금변경 증감액 등	계획 현액	집행액 (B)	집행률 (B/Ax100)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3년	3,206	3,206	-	-	3,206	3,206	100.0	-	-
2024년	3,287	3,287	-	-	3,287	3,287	100.0	-	-
2025년	3,386	3,397	-	11	3,397	3,397	100.0	-	-
2026년	3,516	3,516	-	-	3,516	2,293	65.2	해당없음	해당없음

2) 연도별 결산 주요사항 : 해당 없음

5. 기타 추가자료: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11) 기금관리비(기타경비) (7081-201)

1. 사업 총괄 정보

1) 사업 기본 정보

(1-1) 일반 정보

소관	실·국	과·팀	기금	계정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퇴직연금복지과	근로복지 진흥기금	중소복지계정

(1-2) 코드·명칭 정보

구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080	08E	7000	7081	201
명칭	사회복지	노동	고용노동행정지원	근로복지기금운영비	기금관리비(기타경비)

2)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N	Y	N	N	N	N

3)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Y	N	N	N	N	-	-

4) 기능별(내역사업별)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내역사업명	소관	사업시행주체
기금관리비(기타경비)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근로복지공단

2. 지출계획 총괄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사업명	2025년 결산액	2026년 당초계획액 (A)	2026년 수정계획액	2027년 요구액	2027년 정부안액 (B)	증감액 (B-A)	증감률 (B-A) /A×100
기금관리비(기타경비)	1,442	1,932	1,932	1,932	1,545	△387	△20.0

1)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계획액 (수정)	2025년 계획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계획액 (수정)	2026년 계획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1,442	1,442	1,442	-	-	1,932	1,932	1,016	1,545
·기금관리비(기타경비)	1,442	1,442	1,442	-	-	1,932	1,932	1,016	1,545

2) 비목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계획액 (수정)	2025년 계획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계획액 (수정)	2026년 계획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1,442	1,442	1,442	-	-	1,932	1,932	1,016	1,545
·상용임금(110-03)	133	133	133	-	-	140	140	87	147
·일반수용비(210-01)	98	98	98	-	-	112	112	54	195
·공공요금및제세(210-02)	68	68	68	-	-	92	92	11	79
·특근매식비(210-05)	1	1	1	-	-	3	3	0	3
·임차료(210-07)	280	280	280	-	-	294	294	147	336
·유류비(210-08)	1	1	1	-	-	2	2	0	1
·시설장비유지비(210-09)	278	278	278	-	-	313	313	302	253
·복리후생비(210-12)	118	118	118	-	-	118	118	117	124
·일반용역비(210-14)	35	35	35	-	-	20	20	10	18
·기타운영비(210-16)	58	58	58	-	-	38	38	30	38
·국내여비(220-01)	245	245	245	-	-	290	290	129	247
·국외업무여비(220-02)	8	8	8	-	-	8	8	0	8
·사업추진비(240-01)	2	2	2	-	-	2	2	1	2
·관서업무추진비(240-02)	7	7	7	-	-	7	7	4	7
·직책수행경비(250-02)	36	36	36	-	-	36	36	21	36
·일반연구비(260-01)	12	12	12	-	-	366	366	96	16
·고용부담금(320-09)	25	25	25	-	-	25	25	14	26
·자산취득비(430-01)	38	38	38	-	-	66	66	1	9

3. 사업 설명

1) 사업목적·내용

(1) 기금관리비(기타경비)

사업목적	근로복지진흥기금 중소복지사업 관리비용
사업내용	사업 관련 비용 집행

2) 사업개요

(2-1)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사업근거	○ 근로복지기본법」 제91조(근로복지진흥기금의 용도) 근로복지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6.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추진경위	○ 최초 사업 시작년도: 1993년 - 추진배경 · '93. 12.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 제정·시행 · '94. 5. 근로자복지진흥기금 설치 · '98. 2. 고용정책기본법에 의한 실업대책사업 등 사업범위 확대 · '02. 1. 근로자신용보증지원제도 시행 · '10.12.09.「근로복지기본법」 개정 시행

(2-2) 사업규모

○ 사업기간 : 계속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계획액 기준, 기금운용계획변경 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사업비	1,637	1,713	1,442	1,932	1,545

(2-3)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근로복지공단

○ 사업 수혜자 : 해당 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3) 기능별(내역사업별) 산출 내역

(3-1) 내역사업별 세부 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계획액(수정)(A)	2027년 정부안액(B)	증감 (B-A)
합 계	1,932	1,545	△387
기금관리비(기타경비)	1,932	1,545	△387

○ 기금관리비(기타경비) (2026년) 1,932 → (2027년) 1,545백만원, △20.0%

- (설명) 중소복지계정 사업수행 경비
- (산출) 상용임금 147백만 원, 운영비 1,047백만 원, 여비 256백만 원, 업무추진비 8백만 원, 직책수행경비 36백만 원, 일반연구비 16백만 원, 고용부담금 26백만 원, 자산취득비 9백만 원

4) 사업효과

(4-1) 최근 5년(2023년~2027년)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해당없음

(4-2) 성과지표 이외의 최근 4년(2023년~2026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해당없음

(4-3) 향후(2027년 이후) 기대효과: 해당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해당없음

8) 최근 3년간(2024년~2026년)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8-1) 정부 사업평가: 해당없음

(8-2) 국회 지적사항: 해당없음

(8-3) 감사원, 총리실, 기타(언론, 시민단체 등) 결과: 해당없음

4. 최근 4년간(2023년~2026년) 결산내역

1) 결산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연도	당초 계획액	수정 계획액 (A)	전년도 이월액	기금변경 증감액 등	계획 현액	집행액 (B)	집행률 (B/Ax100)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3년	1,637	1,637	-	-	1,637	1,635	99.9	-	2
2024년	1,713	1,713	-	-	1,713	1,713	100.0	-	-
2025년	1,442	1,442	-	-	1,442	1,442	100.0	-	-
2026년	1,932	1,932	-	-	1,932	1,016	52.6	해당없음	해당없음

2) 연도별 결산 주요사항 : 해당 없음

5. 기타 추가자료: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12) 기금관리비(법인세) (7081-202)

1. 사업 총괄 정보

1) 사업 기본 정보

(1-1) 일반 정보

소관	실·국	과·팀	기금	계정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퇴직연금복지과	근로복지 진흥기금	중소복지계정

(1-2) 코드·명칭 정보

구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080	08E	7000	7081	202
명칭	사회복지	노동	고용노동행정지원	근로복지기금운영비	기금관리비(법인세)

2)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N	Y	N	N	N	N

3)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Y	N	N	N	N	-	-

4) 기능별(내역사업별)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내역사업명	소관	사업시행주체
기금관리비(법인세)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근로복지공단

2. 지출계획 총괄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사업명	2025년 결산액	2026년 당초계획액 (A)	2026년 수정계획액	2027년 요구액	2027년 정부안액 (B)	증감액 (B-A)	증감률 (B-A) /A×100
기금관리비(법인세)	20	200	200	200	200	-	-

1)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계획액 (수정)	2025년 계획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계획액 (수정)	2026년 계획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363	363	20	-	343	200	200	-	200
·기금관리비(법인세)	363	363	20	-	343	200	200	-	200

2) 비목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계획액 (수정)	2025년 계획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계획액 (수정)	2026년 계획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363	363	20	-	343	200	200	-	200
·공공요금및제세(210-02)	363	363	20	-	343	200	200	-	200

3. 사업 설명

1) 사업목적·내용

(1-1) 기금관리비(법인세)

사업목적	근로복지진흥기금 중소복지사업 법인세 납부
사업내용	사업 관련 비용 집행

2) 사업개요

(2-1)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사업근거	○ 근로복지기본법」 제91조(근로복지진흥기금의 용도) 근로복지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6.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추진경위	○ 최초 사업 시작년도: 1993년 - 추진배경 · '93. 12.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 제정·시행 · '94. 5. 근로자복지진흥기금 설치 · '98. 2. 고용정책기본법에 의한 실업대책사업 등 사업범위 확대 · '02. 1. 근로자신용보증지원제도 시행 · '10.12.09.「근로복지기본법」 개정 시행

(2-2) 사업규모

○ 사업기간 : 계속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계획액 기준, 기금운용계획변경 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사업비	7,758	5,549	363	363	200

(2-3)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근로복지공단
○ 사업 수혜자 : 해당 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3) 기능별(내역사업별) 산출 내역

(3-1) 내역사업별 세부 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계획액(수정)(A)	2027년 정부안액(B)	증감 (B-A)
합 계	200	200	-
기금관리비(법인세)	200	200	-

○ **기금관리비(기타경비) (2026년) 200 → (2027년) 200백만원, 전년 동**
- (설명) 중소복지계정 사업수행 경비
- (산출) 법인세 200백만원

4) 사업효과

(4-1) 최근 5년(2023년~2027년)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해당없음

(4-2) 성과지표 이외의 최근 4년(2023년~2026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해당없음

(4-3) 향후(2027년 이후) 기대효과: 해당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해당없음

8) 최근 3년간(2024년~2026년)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8-1) 정부 사업평가: 해당없음

(8-2) 국회 지적사항: 해당없음

(8-3) 감사원, 총리실, 기타(언론, 시민단체 등) 결과: 해당없음

4. 최근 4년간(2023년~2026년) 결산내역

1) 결산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연도	당초 계획액	수정 계획액 (A)	전년도 이월액	기금변경 증감액 등	계획 현액	집행액 (B)	집행률 (B/Ax100)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3년	5,549	5,549	-	-	5,549	20	0.4	-	5,529
2024년	363	363	-	-	363	20	5.5	-	343
2025년	363	363	-	-	363	20	5.5	-	343
2026년	200	200	-	-	200	-	-	-	-

2) 연도별 결산 주요사항 : 해당 없음

5. 기타 추가자료: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13) 사업운영비(근로자생활안정대부) (7081-204)

1. 사업 총괄 정보

1) 사업 기본 정보

(1-1) 일반 정보

소관	실·국	과·팀	기금	계정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퇴직연금복지과	근로복지 진흥기금	중소복지계정

(1-2) 코드·명칭 정보

구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080	08E	7000	7081	204
명칭	사회복지	노동	고용노동행정지원	근로복지기금운영비	사업운영비 (근로자생활안정대부)

2)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N	Y	N	N	N	N

3)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Y	N	N	N	N	-	-

4) 기능별(내역사업별)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내역사업명	소관	사업시행주체
사업운영비 (근로자생활안정대부)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근로복지공단

2. 지출계획 총괄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사업명	2025년 결산액	2026년 당초계획액 (A)	2026년 수정계획액	2027년 요구액	2027년 정부안액 (B)	증감액 (B-A)	증감률 (B-A) /A×100
사업운영비 (근로자생활안정대부)	113	113	113	113	93	△20	△17.7

1)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계획액 (수정)	2025년 계획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계획액 (수정)	2026년 계획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113	113	113	-	-	113	113	33	93
·사업운영비(근로자생활안정대부)	113	113	113	-	-	113	113	33	93

2) 비목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계획액 (수정)	2025년 계획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계획액 (수정)	2026년 계획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113	113	113	-	-	113	113	33	93
·일반수용비(210-01)	103	103	103	-	-	103	103	32	83
·공공요금및제세(210-02)	7	7	7	-	-	7	7	-	7
·특근매식비(210-05)	0	0	0	-	-	0	0	-	0
·국내여비(220-01)	2	2	2	-	-	2	2	1	2
·사업추진비(240-01)	0	0	0	-	-	0	0	0	0

3. 사업 설명

1) 사업목적·내용

(1) 사업운영비(근로자생활안정대부)

사업목적	생활안정대부 융자사업 수행
사업내용	사업 관련 비용 집행

2) 사업개요

(2-1)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사업근거	○ **<근로복지기본법>** **제19조(생활안정자금의 지원)** ① 국가는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자 및 그 가족의 의료비 · 혼례비 · 장례비 등의 융자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경제상황 및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이 필요한 시기 등을 고려하여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계비의 융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 · 혼례비 · 장례비 · 생계비 등의 지원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91조(근로복지진흥기금의 용도)** 근로복지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2.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의 융자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생활안정자금의 융자)** ①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에 따른 의료비·혼례비·장례비 등의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이상 근속 중이고 그 임금 수준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근로자로 하며, 그 가족의 범위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②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생계비의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융자 신청일 이전 1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이상 임금이 체불된 사업장의 근로자로서 신청근로자의 소득(배우자의 소득을 포함한다)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근로자로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융자를 받으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융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융자금의 범위, 융자조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추진경위	○ 최초 사업 시작년도: 1996년 -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 수행비

(2-2) 사업규모

○ 사업기간 : 계속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계획액 기준, 기금운용계획변경 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사업비	114	113	113	113	93

(2-3)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근로복지공단

○ 사업 수혜자 : 해당 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3) 기능별(내역사업별) 산출 내역

(3-1) 내역사업별 세부 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계획액(수정)(A)	2027년 정부안액(B)	증감 (B-A)
합 계	113	93	20
사업운영비 (근로자생활안정대부)	113	93	20

○ **사업운영비(근로자생활안정대부) (2026년) 113 → (2027년) 93백만원, △20백만원**

- (설명) 근로자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 수행을 위한 운영비
- (산출) 일반수용비 △20백만원 공공요금및제세, 특근매식비, 여비, 업무추진비 전년과 동일

4) 사업효과

(4-1) 최근 5년(2023년~2027년)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해당없음

(4-2) 성과지표 이외의 최근 4년(2023년~2026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해당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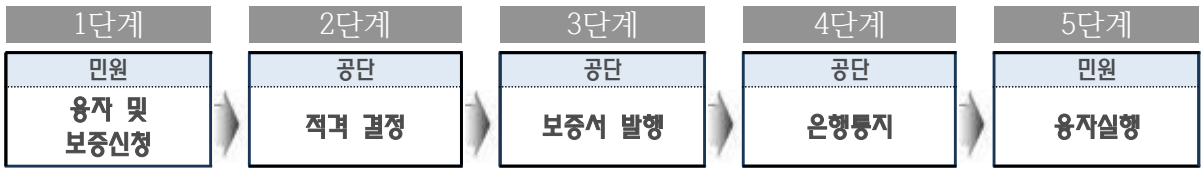
(4-3) 향후(2027년 이후) 기대효과: 해당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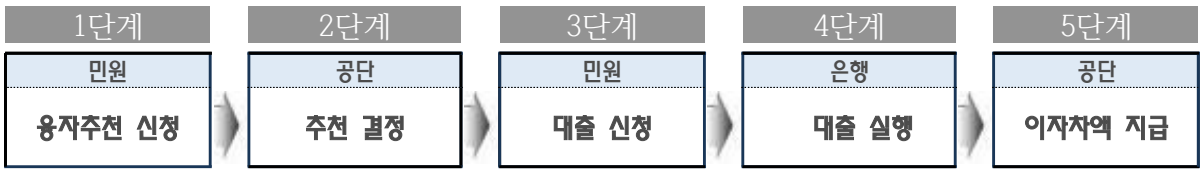
7) 사업 집행절차

○ 생활안정자금(융자)



민원인이 공단에 융자 및 보증신청서을 접수하면 공단에서는 융자 적격여부를 심사·결정하여 융자 예정자를 선정하게 됨. 이후 공단은 융자 예정자의 신용보증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융자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에 대하여 보증서를 발행하게 됨. 이후 민원인은 은행을 통해 최종 융자를 실행함

○ 생활안정자금(이차보전)



민원인이 공단에 이차보전 융자 추천신청서을 접수하면 공단에서는 융자대상 및 사유를 확인하여 추천여부를 결정함. 추천 결정을 통보받은 고객은 은행모바일뱅킹을 통해 대출을 신청하게 되며 이후 은행은 공단의 추천정보를 확인하고 고객의 소득 및 신용을 심사하여 최종 대출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 하고 대출금을 지급하게 됨. 은행은 분기별로 이자차액을 공단에 청구하고 공단은 청구에 따라 은행에 이자차액을 지급함

8) 최근 3년간(2024년~2026년)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8-1) 정부 사업평가: 해당없음

(8-2) 국회 지적사항: 해당없음

(8-3) 감사원, 총리실, 기타(언론, 시민단체 등) 결과: 해당없음

4. 최근 4년간(2023년~2026년) 결산내역

1) 결산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연도	당초 계획액	수정 계획액 (A)	전년도 이월액	기금변경 증감액 등	계획 현액	집행액 (B)	집행률 (B/Ax100)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3년	113	113	-	-	113	113	100.0	-	-
2024년	113	113	-	-	113	113	100.0	-	-
2025년	113	113	-	-	113	113	100.0	-	-
2026년	113	113	-	-	113	33	29.2	해당없음	해당없음

2) 연도별 결산 주요사항 : 해당 없음

5. 기타 추가자료: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14) 사업운영비(근로자휴양시설지원)(7081-205)

1. 사업 총괄 정보

1) 사업 기본 정보

(1-1) 일반 정보

소관	실·국	과·팀	기금	계정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근로기준정책관	근로복지 진흥기금	중소복지계정

(1-2) 코드·명칭 정보

구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080	08E	7000	7081	205
명칭	사회복지	노동	고용노동행정지원	고용노동행정지원	사업운영비(근로자 휴양시설지원)

2)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N	Y	N	N	N	N

3)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Y	N	N	N	N	-	-

4) 기능별(내역사업별)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내역사업명	소관	사업시행주체
사업운영비 (근로자휴양시설지원)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근로복지공단

2. 지출계획 총괄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사업명	2025년 결산액	2026년 당초계획액 (A)	2026년 수정계획액	2027년 요구액	2027년 정부안액 (B)	증감액 (B-A)	증감률 (B-A) /A×100
사업운영비(근로자휴양시설지원)	644	20	20	370	370	350	1,750.0

1)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계획액 (수정)	2025년 계획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계획액 (수정)	2026년 계획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646	646	644	-	2	20	20	4	370
사업운영비(근로자휴양시설지원)	646	646	644	-	2	20	20	4	370

2) 비목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계획액 (수정)	2025년 계획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계획액 (수정)	2026년 계획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646	646	644	-	2	20	20	4 [4]	370
·일반수용비(210-01)	9	9	644	-	-	9	9	0 [0]	9
·공공요금및제세(210-02)	10	10	9	-	-	10	10	4 [4]	10
·임차료(210-07)	-	-	-	-	-	-	-	-	350
·국내여비(220-01)	1	1	10	-	-	1	1	0 [0]	1
·사업추진비(240-01)	0	0	1	-	-	0	0	0 [0]	-
·무형자산(440-00)	626	626	624	-	2	-	-	-	-

3. 사업 설명

1) 사업목적·내용

(1) 사업운영비(근로자휴양시설지원)

사업목적	근로자에 휴양 콘도의 이용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여가 욕구를 충족시키고 건강한 노동력을 재생산
사업내용	공단이 보유한 한화, 소노, 금호 등 리조트(676구좌)를 저렴한 법인 회원가로 제공

2) 사업개요

(2-1)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사업근거	○ **근로자휴양시설지원** -「근로복지기본법」 제91조(근로복지진흥기금의 용도) 근로복지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9. 근로자 정서함양을 위한 문화·체육활동 지원
추진경위	○ **근로자휴양시설지원** - '93. 12. 중소기업근로자 복지진흥법 제정・시행 - '94. 5. 근로복지진흥기금 설치 - '95. 1. 중소기업근로자복지증진 기본계획 수립 - '97. 5. 50인 미만 제조업체 1년 이상 재직 생산직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업개시 - '01. 중소기업 전업종으로 확대 - '04. 11. 고령자와 임금이 낮은 근로자를 우대하도록 선정 우선순위 변경 - '07. 8. 근로자복지통합전산망 실시로 업무 편의성 향상 - '08. 5. 근로자휴양콘도 운영체계 개선을 통한 고객만족도 제고 - '13. 9. 근로자휴양콘도 지원사업 활성화 추진 - '20. 3. 근로자휴양콘도 지원사업 제도개선 추진 * (이용대상 확대) 저소득 근로자 → 전체 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까지 확대 - '25. 6. 취약계층 등 이용 활성화를 위한「근로자휴양콘도 지원규정」개정

(2-2) 사업규모

○ 사업기간 : 계속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계획액 기준, 기금운용계획변경 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사업비	20	646	646	20	370

(2-3)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근로복지공단

○ 사업 수혜자 : 모든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산재보험 적용사업장(워크숍, 교육목적에 한함)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3) 기능별(내역사업별) 산출 내역

(3-1) 내역사업별 세부 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계획액(수정)(A)	2027년 정부안액(B)	증감 (B-A)
합 계	20	370	350-
사업운영비(근로자휴양시설지원)	20	370	350-

○ **(2026년) 20백만원 → (2027년) 370백만원, 증 350백만 원, 근로자휴양콘도 연장 계약 소요비용 반영**

- (설명) 근로자휴양콘도 연장 계약 소요비용 반영
- (산출) 한화콘도 계약 연장 350,000천원

4) 사업효과

(4-1) 최근 5년(2023년~2027년)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해당없음

(4-2) 성과지표 이외의 최근 4년(2023년~2026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해당없음

(4-3) 향후(2027년 이후) 기대효과

○ 휴식을 통한 생산적 노동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업무로 지친 근로자 삶의 휴식처 역할 기대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회원가입) 신청자가 근로복지넷을 통해 회원가입 → **(콘도신청)** 신청자가 공단이 보유한 콘도 및 숙박일수를 선택하여 신청 → **(선정)** 공단이 신청 결과를 통보(평일은 선착순, 주말은 점수 배정 순) → **(결재 및 이용)** 신청자가 콘도 이용 비용 결재 및 해당 시설 이용 → **(시설 계약)** 공단은 법인회원권이 만료되는 시기마다 계약 진행

8) 최근 3년간(2024년~2026년)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8-1) 정부 사업평가: 해당없음

(8-2) 국회 지적사항: 해당없음

(8-3) 감사원, 총리실, 기타(언론, 시민단체 등) 결과: 해당없음

4. 최근 4년간(2023년~2026년) 결산내역

1) 결산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연도	당초 계획액	수정 계획액 (A)	전년도 이월액	기금변경 증감액 등	계획 현액	집행액 (B)	집행률 (B/Ax100)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3년	20	20			20	19	95.0		1
2024년	646	646			646	644	99.6		2
2025년	646	646			646	644	99.7		2
2026년	20	20			20	4	20.0		-

2) 연도별 결산 주요사항

연도	유형	금액 (백만원)	사유
2023년	불용	1	- 계획변경 사유: 해당 없음 - 이월 사유: 해당 없음 - 불용 사유: 집행잔액 1백만원
2024년	불용	2	- 계획변경 사유: 유형자산취득비를 무형자산으로 전용(626백만 원) - 이월 사유: 해당 없음 - 불용 사유: 근로자 휴양시설 만기 회원권 재계약에 따른 차액 2백만 원
2025년	불용	2	- 계획변경 사유: 해당 없음 - 이월 사유: 해당 없음 - 불용 사유: 근로자 휴양시설 만기 회원권 재계약에 따른 차액 2백만 원
2026년			- 해당 없음

5. 기타 추가자료: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15) 사업운영비(신용보증기타경비) (7081-209)

1. 사업 총괄 정보

1) 사업 기본 정보

(1-1) 일반 정보

소관	실·국	과·팀	기금	계정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퇴직연금복지과	근로복지 진흥기금	신용보증 사업계정

(1-2) 코드·명칭 정보

구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080	08E	7000	7081	209
명칭	사회복지	노동	고용노동행정지원	근로복지기금운영비	사업운영비 (신용보증기타경비)

2)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N	Y	N	N	N	N

3)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Y	N	N	N	N	-	-

4) 기능별(내역사업별)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내역사업명	소관	사업시행주체
사업운영비(신용보증기타경비)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근로복지공단

2. 지출계획 총괄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사업명	2025년 결산액	2026년 당초계획액 (A)	2026년 수정계획액	2027년 요구액	2027년 정부안액 (B)	증감액 (B-A)	증감률 (B-A) /A×100
사업운영비 (신용보증기타경비)	842	843	843	843	756	△87	△10.3

1)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계획액 (수정)	2025년 계획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계획액 (수정)	2026년 계획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843	843	842	-	1	843	843	588	756
·사업운영비(신용보증기타경비)	843	843	842	-	1	843	843	588	756

2) 비목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계획액 (수정)	2025년 계획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계획액 (수정)	2026년 계획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843	843	842	-	1	843	843	588	756
·일반수용비(210・01)	367	325	325	-	1	367	329	214	292
·공공요금및제세(210・02)	260	269	269	-	-	260	298	267	260
·특근매식비(210・05)	6	-	-	-	-	6	6	-	6
·일숙직비(210・06)	1	-	-	-	-	1	1	-	1
·임차료(210・07)	-	1	1	-	-	-	-	-	-
·유류비(210・08)	6	-	-	-	-	6	6	-	6
·시설장비유지비(210・09)	1	35	35	-	-	1	1	-	1
·복리후생비(210・12)	43	43	43	-	-	43	43	36	43
·관리용역비(210・15)	-	20	20	-	-	-	-	-	
·기타운영비(210・16)	62	52	52	-	-	62	62	31	50
·국내여비(220・01)	41	41	41	-	-	41	41	24	41
·사업추진비(240・01)	10	9	9	-	-	10	10	2	10
·관서업무추진비(240・02)	2	2	2	-	-	2	2	-	2
·직책수행경비(250・02)	3	3	3	-	-	3	3	2	3
·자산취득비(430・01)	42	42	42	-	-	42	42	12	42

3. 사업 설명

1) 사업목적·내용

(1) 기금관리비(기타경비)

사업목적	근로복지진흥기금 신용보증사업 관리비용
사업내용	사업 관련 비용 집행

2) 사업개요

(2-1)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사업근거	○ 근로복지기본법」 제91조(근로복지진흥기금의 용도) 근로복지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6.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추진경위	○ 최초 사업 시작년도: 1993년 - 추진배경 · '93. 12.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 제정·시행 · '94. 5. 근로자복지진흥기금 설치 · '98. 2. 고용정책기본법에 의한 실업대책사업 등 사업범위 확대 · '02. 1. 근로자신용보증지원제도 시행 · '10.12.09.「근로복지기본법」 개정 시행

(2-2) 사업규모

○ 사업기간 : 계속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계획액 기준, 기금운용계획변경 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사업비	3,206	3,287	3,386	3,516	3,653

(2-3)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근로복지공단

○ 사업 수혜자 : 해당 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3) 기능별(내역사업별) 산출 내역

(3-1) 내역사업별 세부 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계획액(수정)(A)	2027년 정부안액(B)	증감 (B-A)
합 계	843	756	△87
사업운영비(신용보증기타경비)	843	756	△87

○ 복권기금전출 (2026년) 843 → (2027년) 756백만원, △10.3%

- (설명) 신용보증계정 사업수행인력 인건비
- (산출) 일반수용비 292백만 원, 공용요금 및 제세 260백만 원, 특근매식비 6백만 원, 일숙직비 1백만 원, 유류비 6백만 원, 시설장비 유지비 1백만 원, 복리후생비 43백만원, 기타운영비 50백만 원, 여비 41백만 원, 업무추진비 12백만 원, 직무수행경비 3백만 원, 자산취득비 42백만 원

4) 사업효과

(4-1) 최근 5년(2023년~2027년)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해당없음

(4-2) 성과지표 이외의 최근 4년(2023년~2026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해당없음

(4-3) 향후(2027년 이후) 기대효과: 해당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해당없음

8) 최근 3년간(2024년~2026년)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8-1) 정부 사업평가: 해당없음

(8-2) 국회 지적사항: 해당없음

(8-3) 감사원, 총리실, 기타(언론, 시민단체 등) 결과: 해당없음

4. 최근 4년간(2023년~2026년) 결산내역

1) 결산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연도	당초 계획액	수정 계획액 (A)	전년도 이월액	기금변경 증감액 등	계획 현액	집행액 (B)	집행률 (B/Ax100)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3년	816	816	-	-	816	814	99.7	-	2
2024년	843	843	-	-	843	839	99.5	-	4
2025년	843	843	-	-	843	842	99.9	-	1
2026년	843	843	-	-	843	588	69.8	해당없음	해당없음

2) 연도별 결산 주요사항 : 해당 없음

5. 기타 추가자료: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16) 복권기금전출(8999-841)

1. 사업 총괄 정보

1) 사업 기본 정보

(1-1) 일반 정보

소관	실·국	과·팀	기금	계정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퇴직연금복지과	근로복지 진흥기금	중소복지계정

(1-2) 코드·명칭 정보

구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080	08E	8900	8999	841
명칭	사회복지	노동	기금간거래(전출금)	복권기금반환	복권기금전출

2)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N	Y	N	N	N	N

3)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Y	N	N	N	N	-	-

4) 기능별(내역사업별)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내역사업명	소관	사업시행주체
복권기금전출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근로복지공단

2. 지출계획 총괄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사업명	2025년 결산액	2026년 당초계획액 (A)	2026년 수정계획액	2027년 요구액	2027년 정부안액 (B)	증감액 (B-A)	증감률 (B-A) /A×100
복권기금전출	23,441	26,255	26,255	21,109	21,109	△5,146	△19.6

1)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계획액 (수정)	2025년 계획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계획액 (수정)	2026년 계획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23,448	23,448	23,441	-	7	26,255	26,255	3,381	21,109
복권기금 전출	23,448	23,448	23,441	-	7	26,255	26,255	3,381	21,109

2) 비목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계획액 (수정)	2025년 계획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계획액 (수정)	2026년 계획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23,448	23,448	23,441	-	7	26,255	26,255	3,381	21,109
·기금전출금(610-03)	23,448	23,448	23,441	-	7	26,255	26,255	3,381	21,109

3. 사업 설명

1) 사업목적·내용

(1) 복권기금 전출

사업목적	복권기금으로부터 배분된 법정배분금 사용 후 불용액에 대한 반환
사업내용	불용액 반납

2) 사업개요

(2-1)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사업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88조(근로복지진흥기금의 조성) 제1항 제6호 - 「복권 및 복권기금법」제23조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 ○「복권 및 복권기금법」제29조의2(불용액의 복권기금에의 반납) - 기관의 장 등은 해당 복권기금사업의 취소·축소·중단 등으로 인하여 불용액(不用額)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와 금액을 지체 없이 복권위원회에 통보하고 해당 금액을 복권기금에 반납하여야 한다.
추진경위	○ 고용취약계층 한시생계비 융자원금 상환액, 근로복지기금지원 사업비, 퇴직연금사업운영 사업비 및 신용보증대위변제 불용액 반납

(2-2) 사업규모

○ 사업기간 : ’04년 ~ 계속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계획액 기준, 기금운용계획변경 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사업비	206	9,714	23,448	26,255	21,109

(2-3)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 수행
○ 사업시행주체 : 근로복지공단
○ 사업 수혜자 : 해당 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3) 기능별(내역사업별) 산출 내역

(3-1) 내역사업별 세부 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계획액(수정)(A)	2027년 정부안액(B)	증감 (B-A)
합 계	26,255	21,109	△5,146
복권기금전출	26,255	21,109	△5,146

○ 복권기금 전출 (2026년) 26,255 → (2027년) 21,109백만원, △19.6%
- (설명) 복권기금으로부터 배분된 법정배분금 사용 후 불용액에 대한 반환
  · 고용 취약계층 한시생계비 융자원금 상환액 반납
  · 근로복지기금지원 사업비 불용액 반납
  · 퇴직연금사업운영 사업비 불용액 반납
  · 신용보증대위변제 사업비 불용액 반납

- (산출)
  · 고용 취약계층 한시생계비 융자 원금 상환액 16,609백만원
  · 근로복지기금지원 사업비 불용액 반환액 4,498백만원
  · 퇴직연금사업운영 사업비 불용액 반환액 3백만원
  · 신용보증대위변제 사업비 불용액 반환액 0백만원

4) 사업효과

(4-1) 최근 5년(2023년~2027년)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해당없음
(4-2) 성과지표 이외의 최근 4년(2023년~2026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해당없음
(4-3) 향후(2027년 이후) 기대효과: 해당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복권위원회 납부

8) 최근 3년간(2024년~2026년)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8-1) 정부 사업평가: 해당없음
(8-2) 국회 지적사항: 해당없음
(8-3) 감사원, 총리실, 기타(언론, 시민단체 등) 결과: 해당없음

4. 최근 4년간(2023년~2026년) 결산내역

1) 결산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연도	당초 계획액	수정 계획액 (A)	전년도 이월액	기금변경 증감액 등	계획 현액	집행액 (B)	집행률 (B/Ax100)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3년	206	206	-	-	206	206	100.0	-	-
2024년	9,714	9,714	-	-	9,714	9,714	100.0	-	-
2025년	23,448	23,448	-	-	23,448	23,441	100.0	-	7
2026년	26,255	26,255	-	-	26,255	3,381	12.9	해당없음	해당없음

2) 연도별 결산 주요사항

연도	유형	금액 (백만원)	사유
2025년	불용	7	집행잔액

5. 기타 추가자료: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17)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탁(9005-840)

1. 사업 총괄 정보

1) 사업 기본 정보

(1-1) 일반 정보

소관	실·국	과·팀	기금	계정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퇴직연금복지과	근로복지 진흥기금	중소복지계정

(1-2) 코드·명칭 정보

구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080	08E	9000	9005	840
명칭	사회복지	노동	기금간거래(예탁금)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탁

2)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N	Y	N	N	N	N

3)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Y	N	N	N	N	-	-

4) 기능별(내역사업별)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내역사업명	소관	사업시행주체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예탁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근로복지공단

2. 지출계획 총괄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사업명	2025년 결산액	2026년 당초계획액 (A)	2026년 수정계획액	2027년 요구액	2027년 정부안액 (B)	증감액 (B-A)	증감률 (B-A) /A×100
공공자금관리기금 (총괄계정)예탁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	-

1)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계획액 (수정)	2025년 계획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계획액 (수정)	2026년 계획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20,000	20,000	20,000	-	-	20,000	20,000	20,000	20,000
공공자금관리기금 (총괄계정)예탁	20,000	20,000	20,000	-	-	20,000	20,000	20,000	20,000

2) 비목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계획액 (수정)	2025년 계획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계획액 (수정)	2026년 계획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20,000	20,000	20,000	-	-	20,000	20,000	20,000	20,000
·기금예탁금(480-03)	20,000	20,000	20,000	-	-	20,000	20,000	20,000	20,000

3. 사업 설명

1) 사업목적·내용

(1)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탁

사업목적	근로복지진흥기금 중소복지계정 여유자금 일부를 공자기금에 예탁
사업내용	중기가용자산 공자기금 예탁

2) 사업개요

(2-1)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사업근거	○「공공자금관리기금법」제1조(목적) -「공공자금관리기금법」제6조(관리기금에의 예탁)
추진경위	○ 2018년도 기금존치평가 시 중기가용자산 과다 보유로 공자기금 예탁 권고하여 2018년부터 예탁실시

(2-2) 사업규모

○ 사업기간 : ‘18년～’20년, ‘23년 ～ 계속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계획액 기준, 기금운용계획변경 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사업비	26,000	26,000	20,000	20,000	20,000

(2-3)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근로복지공단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3) 기능별(내역사업별) 산출 내역

(3-1) 내역사업별 세부 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계획액(수정)(A)	2027년 정부안액(B)	증감 (B-A)
합 계	20,000	20,000	-
공공자금관리기금 (총괄계정) 예탁	20,000	20,000	-

○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탁 **(2026년) 20,000 → (2027년) 20,000백만원, 0.0%**

- (설명) 근로복지진흥기금 중소복지계정 여유자금 운용
- (산출) 중기가용자산 일부 예탁

4) 사업효과

(4-1) 최근 5년(2023년~2027년)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해당없음

(4-2) 성과지표 이외의 최근 4년(2023년~2026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해당없음

(4-3) 향후(2027년 이후) 기대효과: 해당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8) 최근 3년간(2024년~2026년)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8-1) 정부 사업평가: 해당없음

(8-2) 국회 지적사항: 해당없음

(8-3) 감사원, 총리실, 기타(언론, 시민단체 등) 결과: 해당없음

4. 최근 4년간(2023년~2026년) 결산내역

1) 결산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연도	당초 계획액	수정 계획액 (A)	전년도 이월액	기금변경 증감액 등	계획 현액	집행액 (B)	집행률 (B/Ax100)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3년	26,000	26,000	-	-	26,000	26,000	100.0	-	-
2024년	26,000	26,000	-	-	26,000	26,000	100.0	-	-
2025년	20,000	20,000	-	-	20,000	20,000	100.0	-	-
2026년	20,000	20,000	-	-	20,000	20,000	100.0	해당없음	해당없음

2) 연도별 결산 주요사항 : 해당없음

5. 기타 추가자료: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18)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탁(9005-841)

1. 사업 총괄 정보

1) 사업 기본 정보

(1-1) 일반 정보

소관	실·국	과·팀	기금	계정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퇴직연금복지과	근로복지 진흥기금	실업대책 사업계정

(1-2) 코드·명칭 정보

구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080	08E	9000	9005	841
명칭	사회복지	노동	기금간거래(예탁금)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탁

2)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N	Y	N	N	N	N

3)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Y	N	N	N	N	-	-

4) 기능별(내역사업별)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내역사업명	소관	사업시행주체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예탁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근로복지공단

2. 지출계획 총괄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사업명	2025년 결산액	2026년 당초계획액 (A)	2026년 수정계획액	2027년 요구액	2027년 정부안액 (B)	증감액 (B-A)	증감률 (B-A) /A×100
공공자금관리기금 (총괄계정)예탁	40,000	40,000	40,000	40,000	40,000	-	-

1)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계획액 (수정)	2025년 계획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계획액 (수정)	2026년 계획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40,000	40,000	40,000	-	-	40,000	40,000	-	40,000
공공자금관리기금 (총괄계정)예탁	40,000	40,000	40,000	-	-	40,000	40,000	-	40,000

2) 비목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계획액 (수정)	2025년 계획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계획액 (수정)	2026년 계획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40,000	40,000	40,000	-	-	40,000	40,000	-	40,000
·기금예탁금(480-03)	40,000	40,000	40,000	-	-	40,000	40,000	-	40,000

3. 사업 설명

1) 사업목적·내용

(1)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탁

사업목적	근로복지진흥기금 실업대책사업계정 여유자금 일부를 공자기금에 예탁
사업내용	중기가용자산 공자기금 예탁

2) 사업개요

(2-1)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사업근거	○「공공자금관리기금법」제1조(목적) -「공공자금관리기금법」제6조(관리기금에의 예탁)
추진경위	○ 2018년도 기금존치평가 시 중기가용자산 과다 보유로 공자기금 예탁 권고하여 2019년부터 예탁실시

(2-2) 사업규모

○ 사업기간 : ‘19년~’20년, ‘23년 ~ 계속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계획액 기준, 기금운용계획변경 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사업비	24,000	24,000	40,000	40,000	40,000

(2-3)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근로복지공단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3) 기능별(내역사업별) 산출 내역

(3-1) 내역사업별 세부 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계획액(수정)(A)	2027년 정부안액(B)	증감 (B-A)
합 계	40,000	40,000	-
공공자금관리기금 (총괄계정) 예탁	40,000	40,000	-

○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탁 **(2026년) 40,000 → (2027년) 40,000백만원, 0.0%**

- (설명) 근로복지진흥기금 중소복지계정 여유자금 운용
- (산출) 중기가용자산 일부 예탁

4) 사업효과

(4-1) 최근 5년(2023년~2027년)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해당없음

(4-2) 성과지표 이외의 최근 4년(2023년~2026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해당없음

(4-3) 향후(2027년 이후) 기대효과: 해당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8) 최근 3년간(2024년~2026년)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8-1) 정부 사업평가: 해당없음

(8-2) 국회 지적사항: 해당없음

(8-3) 감사원, 총리실, 기타(언론, 시민단체 등) 결과: 해당없음

4. 최근 4년간(2023년~2026년) 결산내역

1) 결산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연도	당초 계획액	수정 계획액 (A)	전년도 이월액	기금변경 증감액 등	계획 현액	집행액 (B)	집행률 (B/Ax100)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3년	24,000	24,000	-	-	24,000	24,000	100.0	-	-
2024년	24,000	24,000	-	-	24,000	24,000	100.0	-	-
2025년	40,000	40,000	-	-	40,000	40,000	100.0	-	-
2026년	40,000	40,000	-	-	40,000	40,000	100.0	해당없음	해당없음

2) 연도별 결산 주요사항 : 해당없음

5. 기타 추가자료: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19) 신용보증사업계정 전출(9301-860)

1. 사업 총괄 정보

1) 사업 기본 정보

(1-1) 일반 정보

소관	실·국	과·팀	기금	계정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퇴직연금복지과	근로복지 진흥기금	중소복지계정

(1-2) 코드·명칭 정보

구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080	08E	9300	9301	860
명칭	사회복지	노동	계정간거래(전출금)	신용보증사업계정 전출	신용보증사업계정 전출

2)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N	Y	N	N	N	N

3)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Y	N	N	N	N	-	-

4) 기능별(내역사업별)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내역사업명	소관	사업시행주체
신용보증사업계정 전출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근로복지공단

2. 지출계획 총괄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사업명	2025년 결산액	2026년 당초계획액 (A)	2026년 수정계획액	2027년 요구액	2027년 정부안액 (B)	증감액 (B-A)	증감률 (B-A) /A×100
신용보증사업계정 전출	57,887	40,172	62,753	31,774	31,774	△8,398	△20.9

1)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계획액 (수정)	2025년 계획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계획액 (수정)	2026년 계획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57,887	57,887	57,887	-	-	40,172	62,753	42,138	31,774
신용보증사업계정 전출	57,887	57,887	57,887	-	-	40,172	62,753	42,138	31,774

2) 비목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계획액 (수정)	2025년 계획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계획액 (수정)	2026년 계획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57,887	57,887	57,887	-	-	40,172	62,753	42,138	31,774
· 계정간전출금(610-04)	57,887	57,887	57,887	-	-	40,172	62,753	42,138	31,774

3. 사업 설명

1) 사업목적·내용

(1-1) 신용보증사업계정 전출

사업목적	근로복지진흥기금 중소복지계정에서 신용보증사업계정으로 자금 전출
사업내용	신용보증지원사업 수행

2) 사업개요

(2-1)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사업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92조(회계처리의 구분 등) -**제92조**(회계처리의 구분 등) ① 제88조 제1항 제5호 및 제9호규정에 의한 자금은 기금 중 다른 사업목적으로 조성·운용되는 자금과 각각 구분 계리하여야 한다. ② 제88조 제1항 제5호 및 제9호에 따른 자금은 각각 제91조 제5호 및 제14호에 따른 사업비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91조제5호에 따른 사업비를 위하여 공단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기금안에서 구분 계리하는 자금 간에 상호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추진경위	○ 신용보증사업계정 사업비를 위하여 중소복지계정의 자금 전용 필요

(2-2) 사업규모

○ 사업기간 : ‘18년～’20년, ‘23년 ～ 계속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계획액 기준, 기금운용계획변경 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사업비	23,716	35,352	57,887	62,753	31,774

(2-3)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근로복지공단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3) 기능별(내역사업별) 산출 내역

(3-1) 내역사업별 세부 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계획액(수정)(A)	2027년 정부안액(B)	증감 (B-A)
합 계	62,753	31,774	△30,979
신용보증사업계정 전출	62,753	31,774	△30,979

○ 신용보증사업계정 전출 **(2026년) 62,753 → (2027년) 31,774백만원, △49.4%**

- (설명) 신용보증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사업비 요구액
- (산출)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른 법정배분금 및 신용보증계정 수지차, 신용보증계정의 복권기금 전출금 31,774백만원

4) 사업효과

(4-1) 최근 5년(2023년~2027년)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해당없음

(4-2) 성과지표 이외의 최근 4년(2023년~2026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해당없음

(4-3) 향후(2027년 이후) 기대효과: 해당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신용보증사업계정의 수입으로 지출

8) 최근 3년간(2024년~2026년)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8-1) 정부 사업평가: 해당없음

(8-2) 국회 지적사항: 해당없음

(8-3) 감사원, 총리실, 기타(언론, 시민단체 등) 결과: 해당없음

4. 최근 4년간(2023년~2026년) 결산내역

1) 결산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연도	당초 계획액	수정 계획액 (A)	전년도 이월액	기금변경 증감액 등	계획 현액	집행액 (B)	집행률 (B/Ax100)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3년	23,716	23,716	-	-	23,716	20,200	85.2	-	3,516
2024년	35,352	35,352	-	-	35,352	35,352	100.0	-	-
2025년	31,215	57,887	-	26,672	57,887	57,887	100.0	-	-
2026년	40,172	62,753	-	22,581	62,753	42,138	67.1	해당없음	해당없음

2) 연도별 결산 주요사항

연도	유형	금액 (백만원)	사유
2023년	불용	3,516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으로 융자 예산 909억 원 증가됨에 따라 신용보증사업계정 보증료 수입 증가로 신용보증계정 전출 규모 축소

5. 기타 추가자료: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20) 통화금융기관예치(9713-970)

1. 사업 총괄 정보

1) 사업 기본 정보

(1-1) 일반 정보

소관	실·국	과·팀	기금	계정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퇴직연금복지과	근로복지 진흥기금	중소복지계정

(1-2) 코드·명칭 정보

구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080	08E	9700	9713	970
명칭	사회복지	노동	여유자금운용	여유자금운용	통화금융기관예치

2)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N	Y	N	N	N	N

3)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Y	N	N	N	N	-	-

4) 기능별(내역사업별)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내역사업명	소관	사업시행주체
통화금융기관예치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근로복지공단

2. 지출계획 총괄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사업명	2025년 결산액	2026년 당초계획액 (A)	2026년 수정계획액	2027년 요구액	2027년 정부안액 (B)	증감액 (B-A)	증감률 (B-A) /A×100
통화금융기관예치	1,425	1,000	1,000	1,000	1,000	-	-

1)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계획액 (수정)	2025년 계획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계획액 (수정)	2026년 계획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1,000	1,000	1,425	-	-	1,000	1,000	-	1,000
·통화금융기관예치	1,000	1,000	1,425	-	-	1,000	1,000	-	1,000

2) 비목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계획액 (수정)	2025년 계획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계획액 (수정)	2026년 계획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1,000	1,000	1,425	-	-	1,000	1,000	-	1,000
· 통화금융기관예치금 (470-02)	1,000	1,000	1,425	-	-	1,000	1,000	-	1,000

3. 사업 설명

1) 사업목적·내용

(1) 통화금융기관예치

사업목적	근로복지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여유자금 운용
사업내용	통화금융기관 여유자금 예치

2) 사업개요

(2-1)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사업근거	○ 「근로복지기본법」 제90조(근로복지진흥기금의 관리·운용) - 근로복지진흥기금은 공단이 관리·운용한다. ○ 「근로복지기본법」 제91조(근로복지진흥기금의 용도) -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운용을 위한 수익사업에의 투자
추진경위	- 1993년 근로복지진흥기금 여유자금 운용

(2-2) 사업규모

○ 사업기간 : 계속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계획액 기준, 기금운용계획변경 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사업비	1,000	1,000	1,000	1,000	1,000

(2-3)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 수행

○ 사업시행주체 : 근로복지공단

○ 사업 수혜자 : 해당 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3) 기능별(내역사업별) 산출 내역

(3-1) 내역사업별 세부 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계획액(수정)(A)	2027년 정부안액(B)	증감 (B-A)
합 계	1,000	1,000	-
통화금융기관예치금	1,000	1,000	-

○ 통화금융기관예치금 **(2026년) 1,000 → (2027년) 1,000백만원, 0.0%**

- (설명) 근로복지진흥기금 중소복지계정 여유자금 운용
- (산출) 예치 예상액 1,000백만원

4) 사업효과

(4-1) 최근 5년(2023년~2027년)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해당없음

(4-2) 성과지표 이외의 최근 4년(2023년~2026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해당없음

(4-3) 향후(2027년 이후) 기대효과: 해당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통화금융기관예치

8) 최근 3년간(2024년~2026년)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8-1) 정부 사업평가: 해당없음

(8-2) 국회 지적사항: 해당없음

(8-3) 감사원, 총리실, 기타(언론, 시민단체 등) 결과: 해당없음

4. 최근 4년간(2023년~2026년) 결산내역

1) 결산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연도	당초 계획액	수정 계획액 (A)	전년도 이월액	기금변경 증감액 등	계획 현액	집행액 (B)	집행률 (B/Ax100)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3년	1,000	1,000	-	-	1,000	38,209	3,820.9	-	-
2024년	1,000	1,000	-	-	1,000	15,323	1,532.3	-	-
2025년	1,000	1,000	-	-	1,000	1,425	142.5	-	-
2026년	1,000	1,000	-	-	1,000	-	-	해당없음	해당없음

2) 연도별 결산 주요사항 : 해당없음

5. 기타 추가자료: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21) 통화금융기관예치(9713-971)

1. 사업 총괄 정보

1) 사업 기본 정보

(1-1) 일반 정보

소관	실·국	과·팀	기금	계정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퇴직연금복지과	근로복지 진흥기금	실업대책 사업계정

(1-2) 코드·명칭 정보

구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080	08E	9700	9713	971
명칭	사회복지	노동	여유자금운용	여유자금운용	통화금융기관예치

2)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N	Y	N	N	N	N

3)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Y	N	N	N	N	-	-

4) 기능별(내역사업별)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내역사업명	소관	사업시행주체
통화금융기관예치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근로복지공단

2. 지출계획 총괄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사업명	2025년 결산액	2026년 당초계획액 (A)	2026년 수정계획액	2027년 요구액	2027년 정부안액 (B)	증감액 (B-A)	증감률 (B-A) /A×100
통화금융기관예치	1	2	2	2	2	-	-

1)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계획액 (수정)	2025년 계획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계획액 (수정)	2026년 계획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2	2	1	-	-	2	2	-	2
통화금융기관예치	2	2	1	-	-	2	2	-	2

2) 비목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계획액 (수정)	2025년 계획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계획액 (수정)	2026년 계획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2	2	1	-	-	2	2	-	2
·통화금융기관예치금 (470-02)	2	2	1	-	-	2	2	-	2

3. 사업 설명

1) 사업목적·내용

(1) 통화금융기관예치

사업목적	근로복지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여유자금 운용
사업내용	통화금융기관 여유자금 예치

2) 사업개요

(2-1)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사업근거	○ 「근로복지기본법」 제90조(근로복지진흥기금의 관리·운용) - 근로복지진흥기금은 공단이 관리·운용한다. ○ 「근로복지기본법」 제91조(근로복지진흥기금의 용도) -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운용을 위한 수익사업에의 투자
추진경위	- 1993년 근로복지진흥기금 여유자금 운용

(2-2) 사업규모

○ 사업기간 : 계속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계획액 기준, 기금운용계획변경 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사업비	2	2	2	2	2

(2-3)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 수행

○ 사업시행주체 : 근로복지공단

○ 사업 수혜자 : 해당 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3) 기능별(내역사업별) 산출 내역

(3-1) 내역사업별 세부 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계획액(수정)(A)	2027년 정부안액(B)	증감 (B-A)
합 계	2	2	-
통화금융기관예치금	2	2	-

○ 통화금융기관예치금 **(2026년) 2 → (2027년) 2백만원, 0.0%**

- (설명) 근로복지진흥기금 실업대책사업계정 여유자금 운용
- (산출) 예치 예상액 2백만원

4) 사업효과

(4-1) 최근 5년(2023년~2027년)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해당없음

(4-2) 성과지표 이외의 최근 4년(2023년~2026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해당없음

(4-3) 향후(2027년 이후) 기대효과: 해당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여유자금 통화금융기관 예치

8) 최근 3년간(2024년~2026년)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8-1) 정부 사업평가: 해당없음

(8-2) 국회 지적사항: 해당없음

(8-3) 감사원, 총리실, 기타(언론, 시민단체 등) 결과: 해당없음

4. 최근 4년간(2023년~2026년) 결산내역

1) 결산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연도	당초 계획액	수정 계획액 (A)	전년도 이월액	기금변경 증감액 등	계획 현액	집행액 (B)	집행률 (B/Ax100)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3년	2	2		-	2	6,729	336,473.4	-	-
2024년	2	2		-	2	1	51.2	-	-
2025년	2	2		-	2	1	47.0	-	-
2026년	2	2		-	2	-	-	해당없음	해당없음

2) 연도별 결산 주요사항 : 해당없음

5. 기타 추가자료: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22) 비통화금융기관예치(9713-977)

1. 사업 총괄 정보

1) 사업 기본 정보

(1-1) 일반 정보

소관	실·국	과·팀	기금	계정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퇴직연금복지과	근로복지 진흥기금	중소복지계정

(1-2) 코드·명칭 정보

구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080	08E	9700	9713	977
명칭	사회복지	노동	여유자금운용	여유자금운용	비통화금융기관예치

2)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N	Y	N	N	N	N

3)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Y	N	N	N	N	-	-

4) 기능별(내역사업별)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내역사업명	소관	사업시행주체
비통화금융기관예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근로복지공단

2. 지출계획 총괄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사업명	2025년 결산액	2026년 당초계획액 (A)	2026년 수정계획액	2027년 요구액	2027년 정부안액 (B)	증감액 (B-A)	증감률 (B-A) /A×100
비통화금융기관예치	122,900	188,221	156,179	194,195	185,927	△2,294	△1.2

1)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계획액 (수정)	2025년 계획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계획액 (수정)	2026년 계획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167,335	167,335	122,900	-	-	156,665	156,665	-	185,927
비통화금융기관예치	167,335	167,335	122,900	-	-	156,665	156,665	-	185,927

2) 비목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계획액 (수정)	2025년 계획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계획액 (수정)	2026년 계획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167,335	167,335	122,900	-	-	156,665	156,665	-	185,927
·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470-03)	167,335	167,335	122,900	-	-	156,665	156,665	-	185,927

3. 사업 설명

1) 사업목적·내용

(1) 비통화금융기관예치

사업목적	근로복지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여유자금 운용
사업내용	비통화금융기관 여유자금 예치

2) 사업개요

(2-1)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사업근거	○ 「근로복지기본법」 제90조(근로복지진흥기금의 관리·운용) - 근로복지진흥기금은 공단이 관리·운용한다. ○ 「근로복지기본법」 제91조(근로복지진흥기금의 용도) -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운용을 위한 수익사업에의 투자
추진경위	- 1993년 근로복지진흥기금 여유자금 운용

(2-2) 사업규모

○ 사업기간 : '93년 ~ 계속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계획액 기준, 기금운용계획변경 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사업비	56,892	140,159	167,335	188,221	185,927

(2-3)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 수행

○ 사업시행주체 : 근로복지공단

○ 사업 수혜자 : 해당 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3) 기능별(내역사업별) 산출 내역

(3-1) 내역사업별 세부 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계획액(수정)(A)	2027년 정부안액(B)	증감 (B-A)
합 계	156,665	185,927	29,262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	156,665	185,927	29,262

○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 **(2026년) 156,665 → (2027년) 185,927백만원, +18.7%**

- (설명) 근로복지진흥기금 중소복지계정 여유자금 운용
- (산출) 예치 예상액 185,927백만원

4) 사업효과

(4-1) 최근 5년(2023년~2027년)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해당없음

(4-2) 성과지표 이외의 최근 4년(2023년~2026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해당없음

(4-3) 향후(2027년 이후) 기대효과: 해당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비통화금융기관 예치

8) 최근 3년간(2024년~2026년)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8-1) 정부 사업평가: 해당없음

(8-2) 국회 지적사항:

(8-3) 감사원, 총리실, 기타(언론, 시민단체 등) 결과: 해당없음

4. 최근 4년간(2023년~2026년) 결산내역

1) 결산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연도	당초 계획액	수정 계획액 (A)	전년도 이월액	기금변경 증감액 등	계획 현액	집행액 (B)	집행률 (B/Ax100)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3년	81,402	56,892	-	△24,510	56,892	43,339	76.2	-	-
2024년	172,078	140,159	-	△31,919	140,159	95,800	68.4	-	-
2025년	208,887	167,335	-	△41,552	167,335	122,900	73.4	-	-
2026년	188,221	156,665	-	△31,556	-	-	-	해당없음	해당없음

2) 연도별 결산 주요사항 : 해당없음

5. 기타 추가자료: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23) 비통화금융기관예치(9713-978)

1. 사업 총괄 정보

1) 사업 기본 정보

(1-1) 일반 정보

소관	실·국	과·팀	기금	계정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퇴직연금복지과	근로복지 진흥기금	신용보증 사업계정

(1-2) 코드·명칭 정보

구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080	08E	9700	9713	978
명칭	사회복지	노동	여유자금운용	여유자금운용	비통화금융기관예치

2)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N	Y	N	N	N	N

3)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Y	N	N	N	N	-	-

4) 기능별(내역사업별)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내역사업명	소관	사업시행주체
비통화금융기관예치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근로복지공단

2. 지출계획 총괄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사업명	2025년 결산액	2026년 당초계획액 (A)	2026년 수정계획액	2027년 요구액	2027년 정부안액 (B)	증감액 (B-A)	증감률 (B-A) /A×100
비통화금융기관예치	900	17,696	17,696	40,393	40,393	22,697	128.3

1)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계획액 (수정)	2025년 계획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계획액 (수정)	2026년 계획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6,890	6,890	900	-	-	17,696	17,696	-	40,393
·비통화금융기관예치	6,890	6,890	900	-	-	17,696	17,696	-	40,393

2) 비목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계획액 (수정)	2025년 계획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계획액 (수정)	2026년 계획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6,890	6,890	900	-	-	17,696	17,696	-	40,393
·비통화금융기관예치(470-03)	6,890	6,890	900	-	-	17,696	17,696	-	40,393

3. 사업 설명

1) 사업목적·내용

(1) 비통화금융기관예치

사업목적	근로복지진흥기금 신용보증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여유자금
사업내용	여유자금 운용

2) 사업개요

(2-1)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사업근거	○ 「근로복지기본법」 제90조(근로복지진흥기금의 관리·운용) 제1항 근로복지진흥기금은 공단이 관리·운용한다 ○ 「근로복지기본법」 제91조(근로복지진흥기금의 용도) 제15항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운용을 위한 수익사업에의 투자
추진경위	○ 최초 사업 시작년도: 2002년

(2-2) 사업규모

○ 사업기간 : 계속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계획액 기준, 기금운용계획변경 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사업비	-	21,119	28,621	17,696	40,393

(2-3)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근로복지공단

○ 사업 수혜자 : 해당 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3) 기능별(내역사업별) 산출 내역

(3-1) 내역사업별 세부 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계획액(수정)(A)	2027년 정부안액(B)	증감 (B-A)
합 계	17,696	40,393	22,697
비통화금융기관예치	17,696	40,393	22,697

○ 복권기금전출 **(2026년) 17,696 → (2027년) 40,393백만원, + 128.3%**

- (설명) 신용보증사업계정 비통화금융기관에 예치한 여유자금
- (산출) '27년 말 비통화금융기관 예치 예상액 : 40,393백만 원

4) 사업효과

(4-1) 최근 5년(2023년~2027년)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해당없음

(4-2) 성과지표 이외의 최근 4년(2023년~2026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해당없음

(4-3) 향후(2027년 이후) 기대효과: 해당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여유자금 비통화금융기관 예치

8) 최근 3년간(2024년~2026년)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8-1) 정부 사업평가: 해당없음

(8-2) 국회 지적사항: 해당없음

(8-3) 감사원, 총리실, 기타(언론, 시민단체 등) 결과: 해당없음

4. 최근 4년간(2023년~2026년) 결산내역

1) 결산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연도	당초 계획액	수정 계획액 (A)	전년도 이월액	기금변경 증감액 등	계획 현액	집행액 (B)	집행률 (B/Ax100)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3년	-	-	-	-	-	1,000	순증	-	-
2024년	21,119	21,119	-	-	21,119	17,300	81.9	-	-
2025년	34,901	6,890	-	-	6,890	900	13.1	-	-
2026년	17,696	17,696	-	-	17,696	-	-	해당없음	해당없음

2) 연도별 결산 주요사항 : 해당 없음

5. 기타 추가자료: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24) 비통화금융기관예치(9713-979)

1. 사업 총괄 정보

1) 사업 기본 정보

(1-1) 일반 정보

소관	실·국	과·팀	기금	계정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퇴직연금복지과	근로복지 진흥기금	실업대책 사업계정

(1-2) 코드·명칭 정보

구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080	08E	9700	9713	979
명칭	사회복지	노동	여유자금운용	여유자금운용	비통화금융기관예치

2)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N	Y	N	N	N	N

3)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Y	N	N	N	N	-	-

4) 기능별(내역사업별)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내역사업명	소관	사업시행주체
비통화금융기관예치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근로복지공단

2. 지출계획 총괄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사업명	2025년 결산액	2026년 당초계획액 (A)	2026년 수정계획액	2027년 요구액	2027년 정부안액 (B)	증감액 (B-A)	증감률 (B-A) /A×100
비통화금융기관예치	7,553	9,102	9,102	10,822	10,547	1,445	15.9

1)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계획액 (수정)	2025년 계획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계획액 (수정)	2026년 계획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6,239	6,239	7,553	-	-	9,102	9,102	-	10,547
비통화금융기관예치	6,239	6,239	7,553	-	-	9,102	9,102	-	10,547

2) 비목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계획액 (수정)	2025년 계획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계획액 (수정)	2026년 계획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6,239	6,239	7,553	-	-	9,102	9,102	-	10,547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 (470-03)	6,239	6,239	7,553	-	-	9,102	9,102	-	10,547

3. 사업 설명

1) 사업목적·내용

(1) 비통화금융기관예치

사업목적	근로복지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여유자금 운용
사업내용	비통화금융기관 여유자금 예치

2) 사업개요

(2-1)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사업근거	○ 「근로복지기본법」 제90조(근로복지진흥기금의 관리·운용) - 근로복지진흥기금은 공단이 관리·운용한다. ○ 「근로복지기본법」 제91조(근로복지진흥기금의 용도) -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운용을 위한 수익사업에의 투자
추진경위	- 1993년 근로복지진흥기금 여유자금 운용

(2-2) 사업규모

○ 사업기간 : 계속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계획액 기준, 기금운용계획변경 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사업비	14,024	20,986	6,239	9,102	10,547

(2-3)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 수행

○ 사업시행주체 : 근로복지공단

○ 사업 수혜자 : 해당 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3) 기능별(내역사업별) 산출 내역

(3-1) 내역사업별 세부 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계획액(수정)(A)	2027년 정부안액(B)	증감 (B-A)
합 계	9,102	10,547	1,445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	9,102	10,547	1,445

○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 **(2026년) 9,102 → (2027년) 10,547백만원, +15.9%**

- (설명) 근로복지진흥기금 실업대책사업계정 여유자금 운용
- (산출) 예치 예상액 10,547백만원

4) 사업효과

(4-1) 최근 5년(2023년~2027년)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해당없음

(4-2) 성과지표 이외의 최근 4년(2023년~2026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해당없음

(4-3) 향후(2027년 이후) 기대효과: 해당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여유자금 비통화금융기관 예치

8) 최근 3년간(2024년~2026년)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8-1) 정부 사업평가: 해당없음

(8-2) 국회 지적사항: 해당없음

(8-3) 감사원, 총리실, 기타(언론, 시민단체 등) 결과: 해당없음

4. 최근 4년간(2023년~2026년) 결산내역

1) 결산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연도	당초 계획액	수정 계획액 (A)	전년도 이월액	기금변경 증감액 등	계획 현액	집행액 (B)	집행률 (B/Ax100)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3년	14,024	14,024	-	-	14,024	13,835	98.7	-	-
2024년	20,986	20,986	-	-	20,986	21,737	103.6	-	-
2025년	6,239	6,239	-	-	6,239	7,553	121.1	-	-
2026년	9,102	9,102	-	-	9,102	-	-	해당없음	해당없음

2) 연도별 결산 주요사항 : 해당없음

5. 기타 추가자료: 해당사항 없음